금융결제원10년사

1986~1996

금융결제원

연 혁

■ 금융결제원

19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 통합)
1989.1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 개칭

□ 전국어음교환관리소

1910. 7　사설 경성수형교환소 개설
1917. 3　수형교환소 설립 법제화
1948. 9　서울수형교환소로 개칭
1963.12　서울어음교환소로 개칭
1975. 4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통합
1975.1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로 개편
1984. 5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발족

□ 은행지로관리소

1969.10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설립
1975. 4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통합
1975.10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 발족
1977. 6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

발간사

올해로 저희 금융결제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6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5대 국가 기간전산망중 금융전산망의 구축 운영과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제도의 확립 등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발전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시장의 자유화 · 개방화 · 국제화의 큰 흐름 속에서 국민경제 규모의 증대 및 다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진전 등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지급결제분야에서도 지급결제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전자금융서비스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원은 창립이후 지금까지 급변하는 내외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임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국민의 금융편의 증진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이제 당원은 지나온 10년간의 모든 발자취와 경험을 정리한 금융결제원 10년사를 발간함으로써 과거의 공과를 겸허히 돌아보고 당원과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확립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전 · 현직 임직원과 그동안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원은행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6. 6. 2

원장 申俊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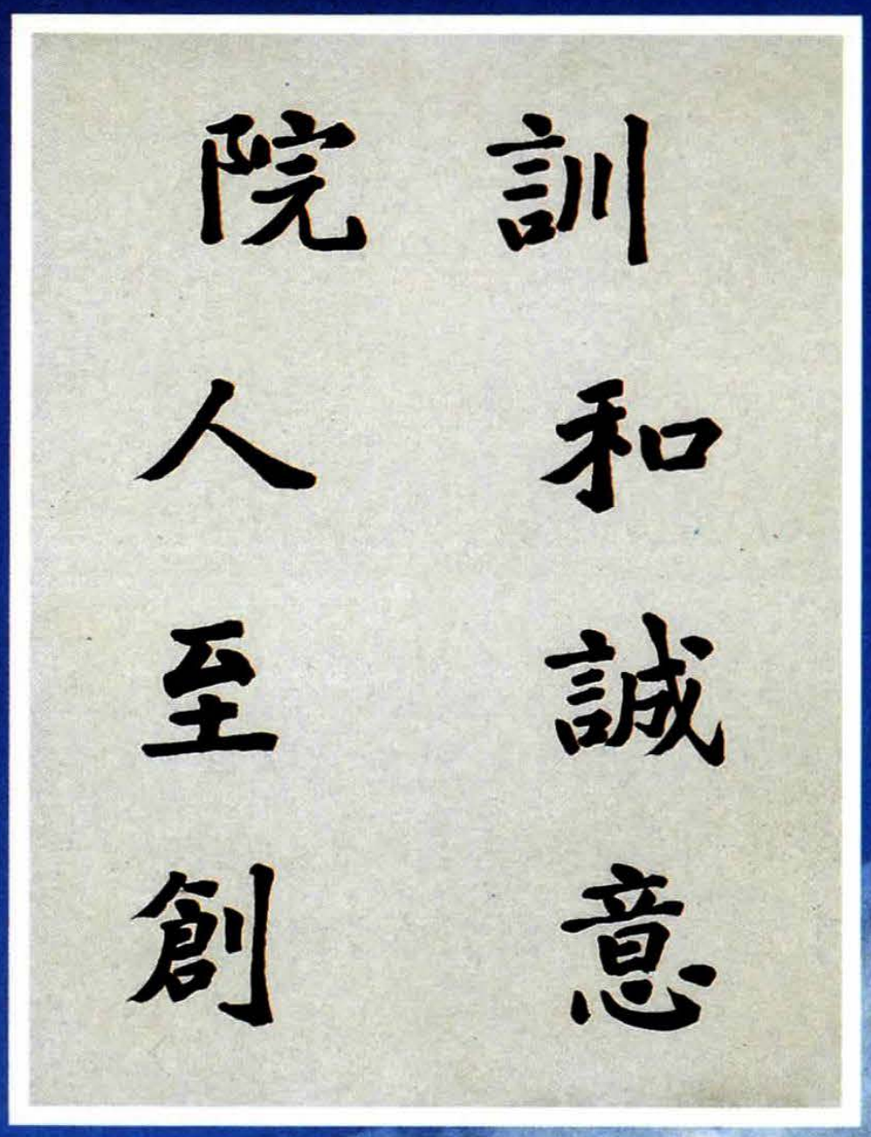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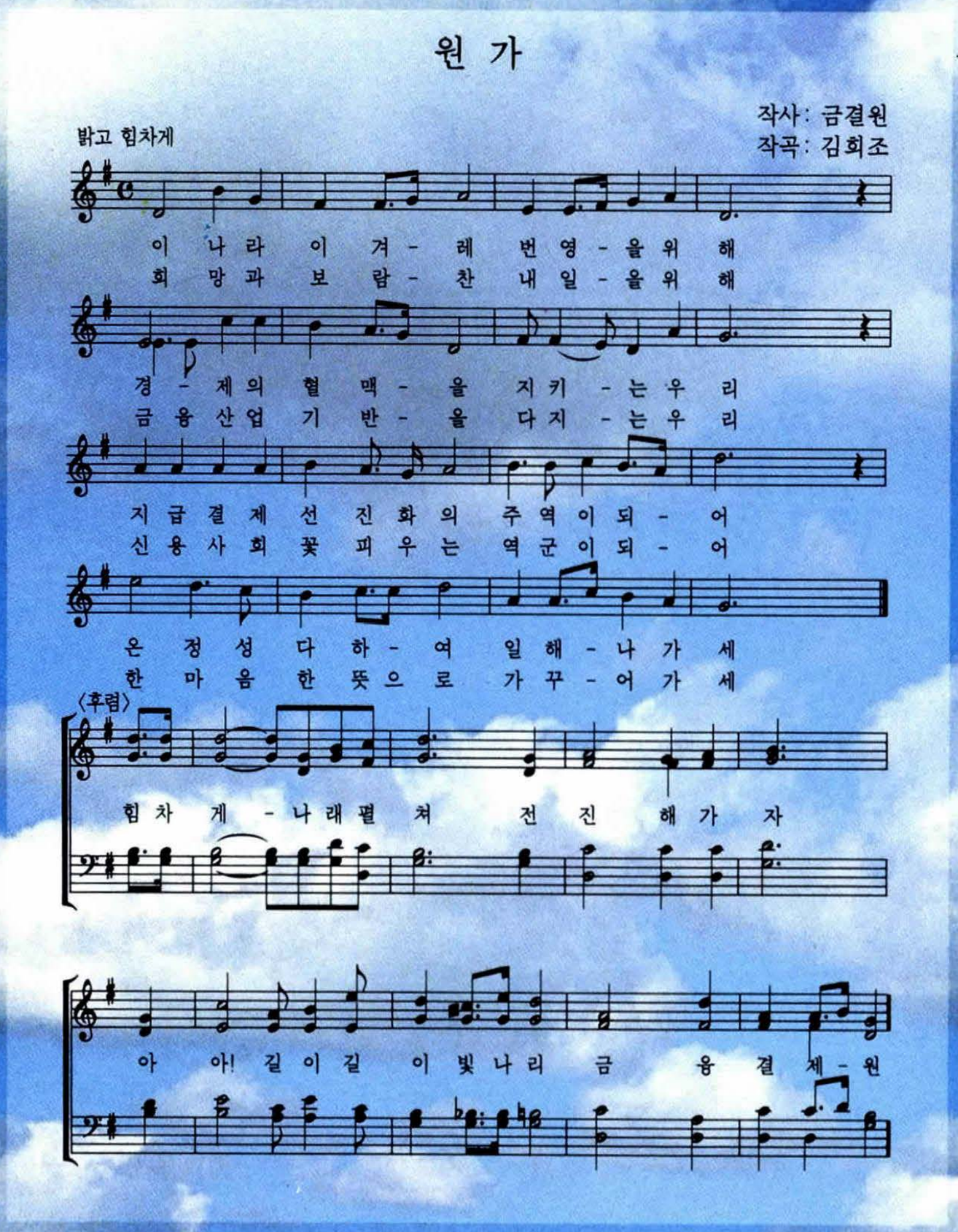
원 가
작사: 금결원
작곡: 김희조
밝고 힘차게
이 나 라 이 겨 - 레 번 영 - 을 위 해
희 망 과 보 람 - 찬 내 일 - 을 위 해
경 - 제 의 혈 맥 - 을 지 키 - 는 우 리
금 융 산 업 기 반 - 을 다 지 - 는 우 리
지 급 결 제 선 진 화 의 주 역 이 되 - 어
신 용 사 회 꽃 피 우 는 역 군 이 되 - 어
온 정 성 다 하 - 여 일 해 - 나 가 세
한 마 음 한 뜻 으 로 가 꾸 - 어 가 세
〈후렴〉
힘 차 게 - 나 래 펼 쳐 전 진 해 가 자
아 아! 길 이 길 이 빛 나 리 금 융 결 제 - 원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ЛАГ

임원진

원장 신복영

전무이사 문 학 모

감사 편 원 득

상무이사 김 문 식

상무이사 양 학 규

상무이사 조 이 남

금융결제원

초대원장 김 재 윤

제2대원장 전 영 수

제3대원장 이 창 수

제4대원장 박 찬 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초대 고광직

은행지로관리소

초대·2대 김동수

3대·4대 김두춘

금융결제원

1

2

3

4

5

6

1. 현판식(좌로부터 박성상 한은총재, 김재윤원장, 정인용 재무부장관, 1986. 6. 2)
2. 초대 김재윤원장의 개원식사
3. 발족 당시의 본부 사옥
4. 정인용 재무부장관의 개원축사
5. 제2대 전영수원장의 취임사 장면(1986. 11. 29)
6. 창립1주년 기념 자축연(1987.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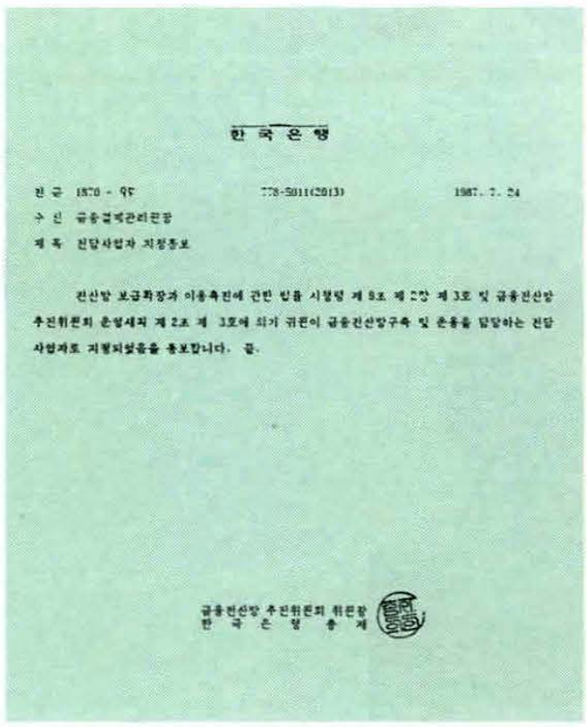

한 국 은 행

진 금 1870 - 95 778-5011(2013) 1987. 7. 24

수 신 금융결제관리관장

제 목 전담사업자 지정통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제 2항 제 3호 및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 2조 제 3호에 의거 귀원이 금융전산망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끝.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 국 은 행 총 재

1

2

3

4

1.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용 전담사업자 지정(1987. 7.24)
2. 현금자동인출기(CD) 중계시스템 도입기념식(1987. 9.24)
3. 지부장 연석회의(1987.11.16)
4. 논산지부 개설(1987.12. 1)
5. CD공동이용시스템 가동기념 테이프커팅(1988. 7. 1)
6.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유공직원 표창(1988. 7. 1)
7. 제3대 이창수원장의 취임사(1989. 1.16)
8. 어음교환 R/S시스템 교체후 시범조작 장면(1989. 2.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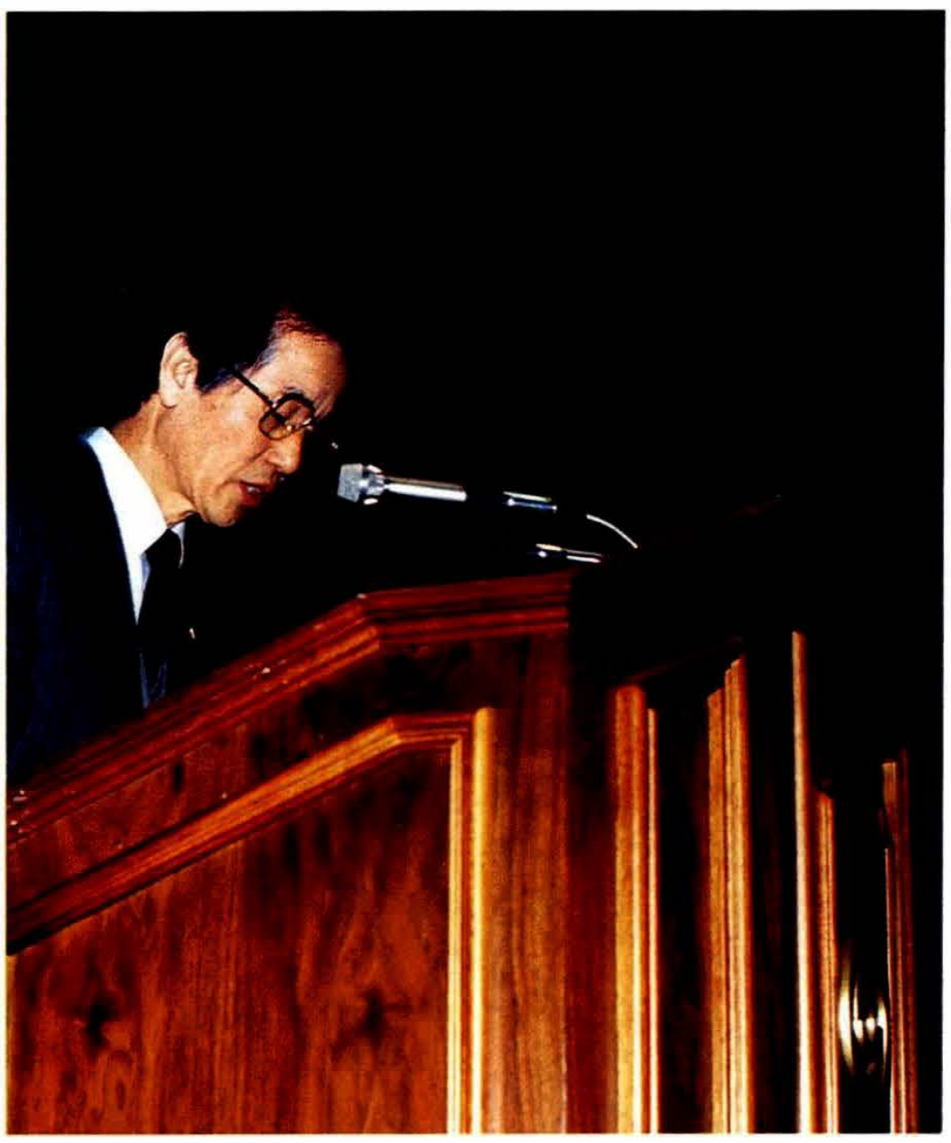

7

6

8

1

2

3

4

5

1989.11.1
法人名稱變更
金融決濟管理院이
金融決濟院으로
名稱을 變更합니다.
金融決濟院
Tel : 556-3550

1.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 가동기념 테이프커팅(1989. 4. 19)
2. 김건 한은총재의 ARS공동운용시스템 시범개통 장면
3. ARS공동운용시스템 구축 경과보고
4. 타행환공동망시스템 가동식(1989. 12. 16)
5. 외화콜거래중개업무 개시기념 테이프 커팅(1989. 12. 1)

1

2

제 87 호

표 창 장

금 융 결 제 원

커 원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추진에 이바지 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함

1991 년 12월 20일

체신부장관 송 인

3

4

5

6

7

8

1. SWIFT 국내도입 특약체결(1990. 8.20)
2. SWIFT 개통 축하연회(1992. 3. 2)
3. 창립 제5주년 기념식(1991. 6. 2)
4. 제4대 박찬문원장의 취임사(1992. 1.14)
5. 이사회(1993. 1.15)
6. 외환거래중개업무용 직통전화시스템 개통식 (1993.10.22)
7. 금융전산망, 무역자동화망 상호접속에 관한 기본협정 조인식(1993. 6.17)
8. 무역자동화망과의 접속업무 개시(1994. 1.25)

1

2

1.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터 가동식(1994. 4. 1)
2. 이천지부 개설(1994. 7. 4)
3. 제5대 신복영원장 취임식(1995. 1. 14)
4. 원장 지부순시중 지부장과의 좌담장면(1995. 4.11)
5. 을지연습(1995. 8.22)
6. 1996년도 시무식(1996. 1. 3)

3

4

5

6

- 인사
- 연수
- 전산기기
- 복지
- 종합체육대회
- 동우회
- 홍보
- 봉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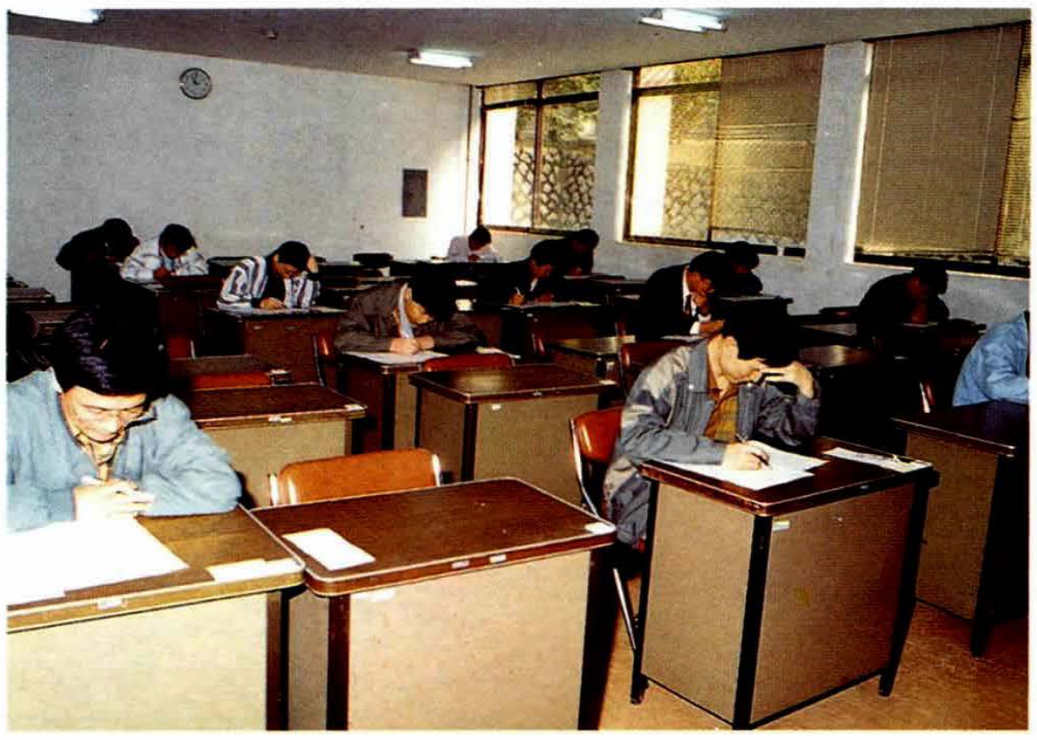

2

3

4

5

1. 신입사원 사령식
2. 책임자 자격고시
3. 타행환재개발 유공직원 표창
4. 정기인사
5. 지급결제 업무관련 모범은행원 표창

1

2

3

1. 고급관리자 집합연수
2. 초급관리자 연수
3. 신입사원 연수

1

2

3

4

5

1.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전대책 세미나
2. 우수직원 해외연수
3. 지부직원 직무연수
4. 금융전산 기술교육
5. 가트너그룹 전문가 초청 금융세미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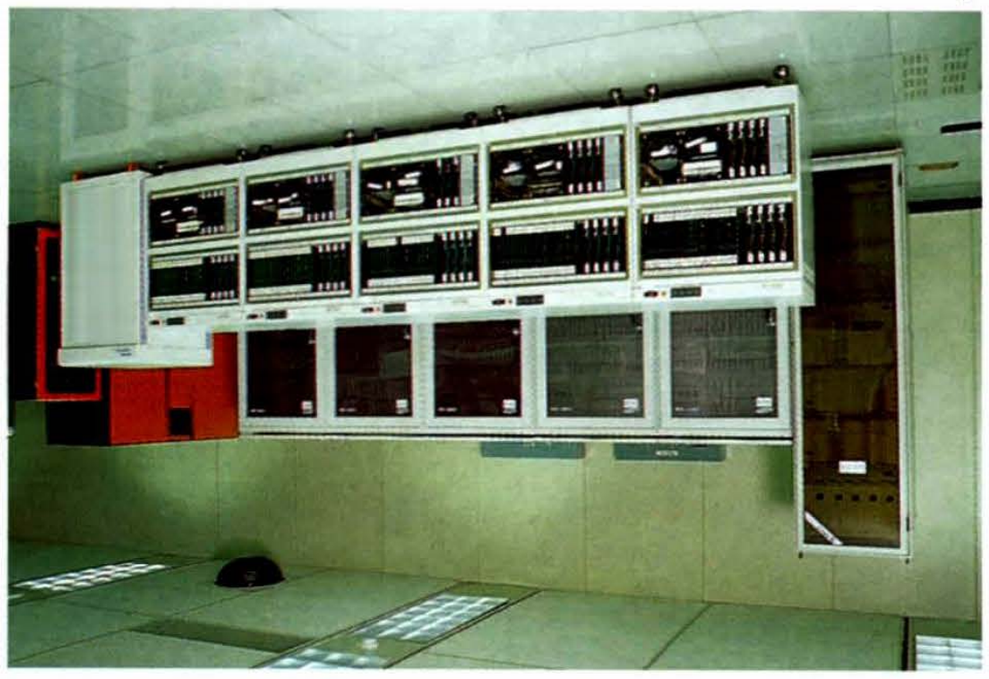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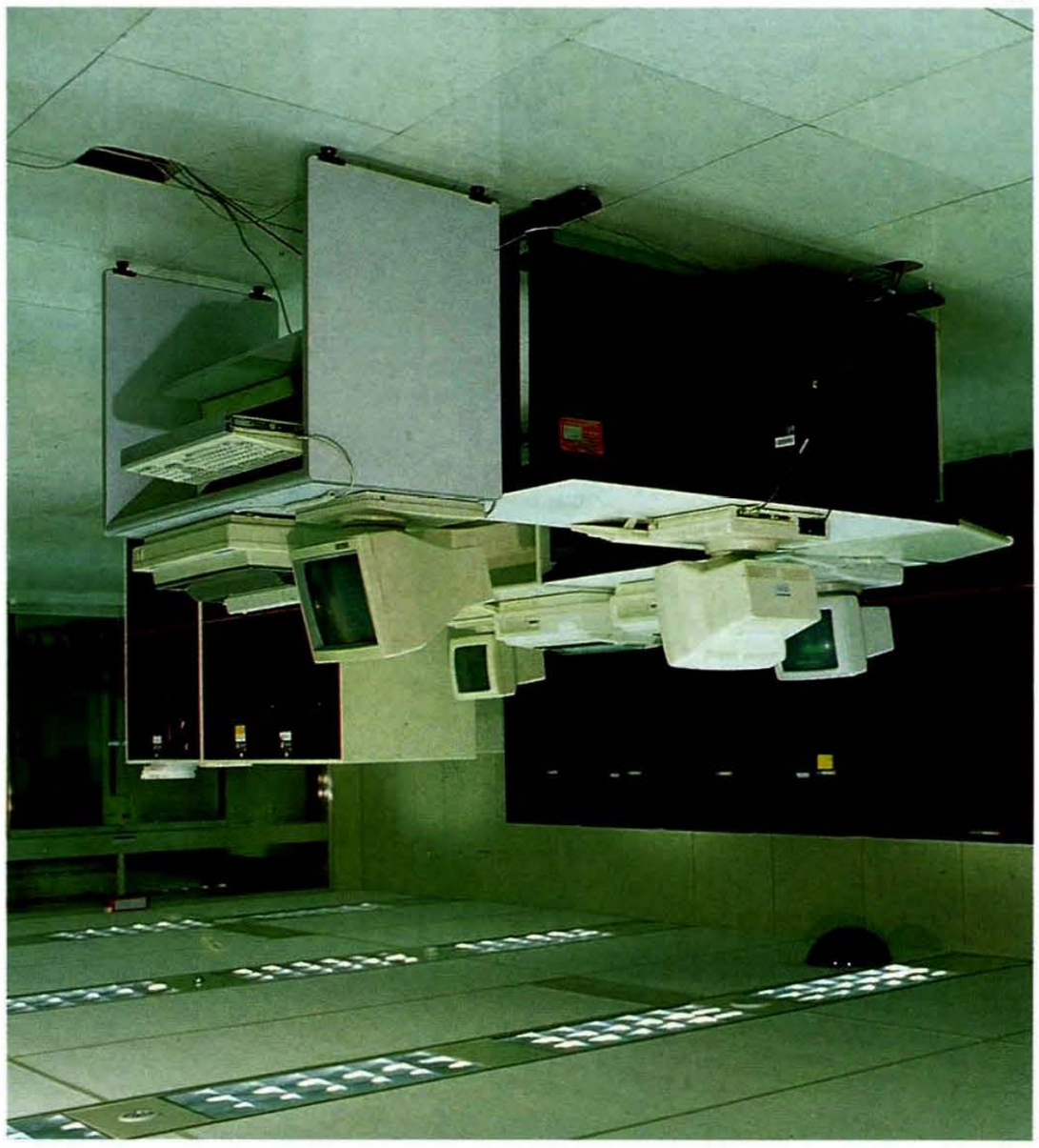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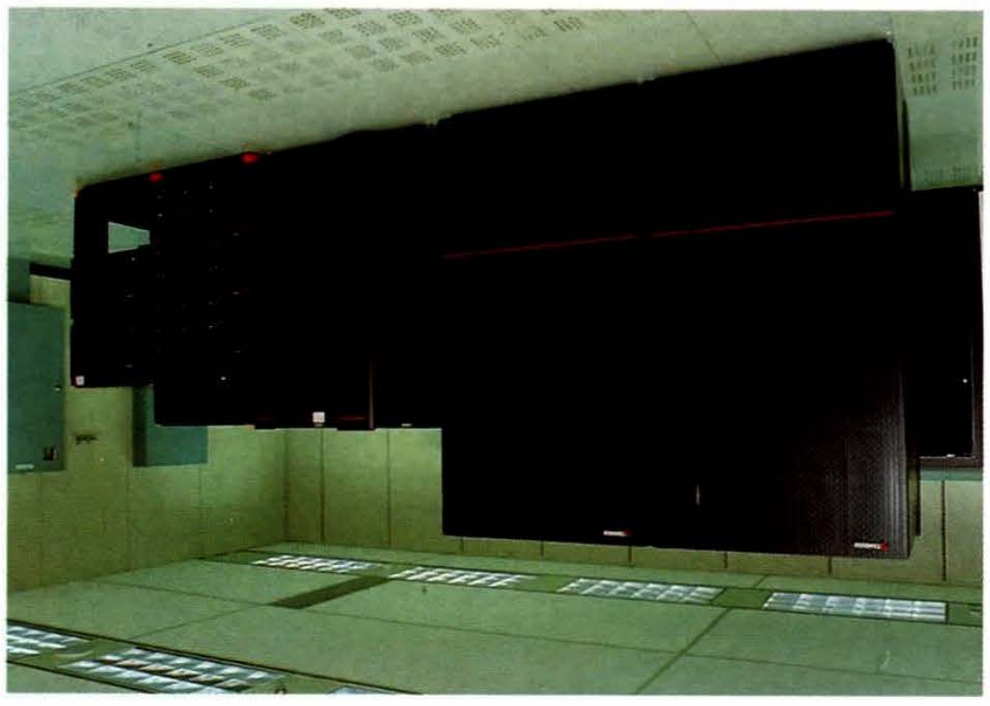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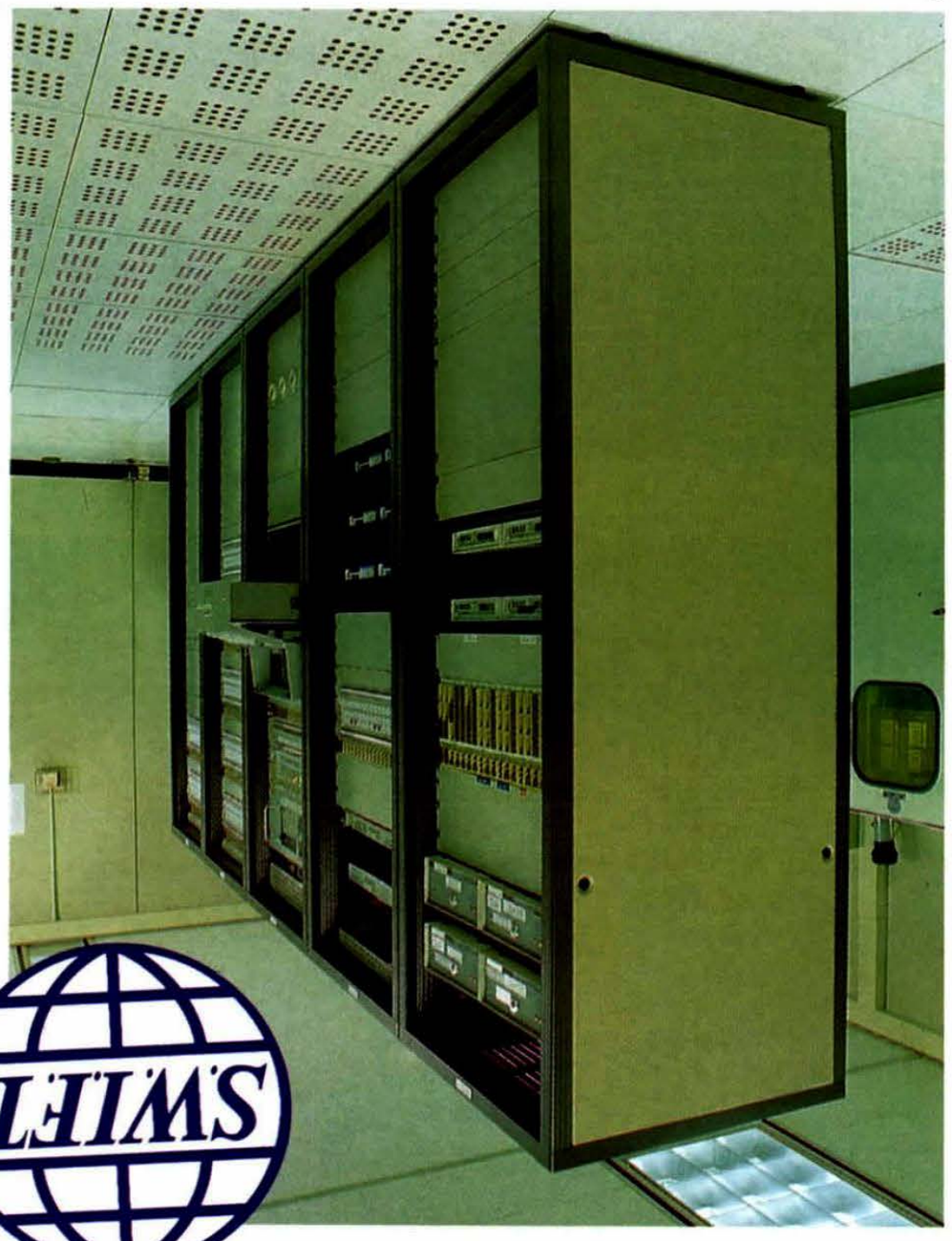

SWIFT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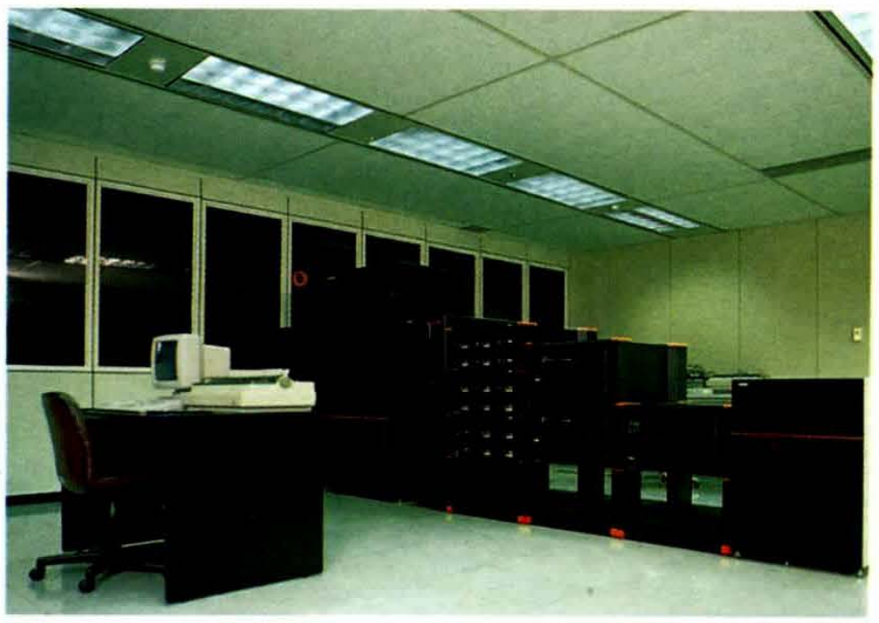

9

10

11

1. 통신시스템
2. SWIFT 시스템
3. CD공동이용시스템
4. ARS공동운용시스템
5. 타행환공동망시스템
6. COM시스템
7. 입력변환기
8. 자금중개시스템
9.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
10. 메인시스템(어음교환, 은행지로)
11. 자동판독분류기(READER/SO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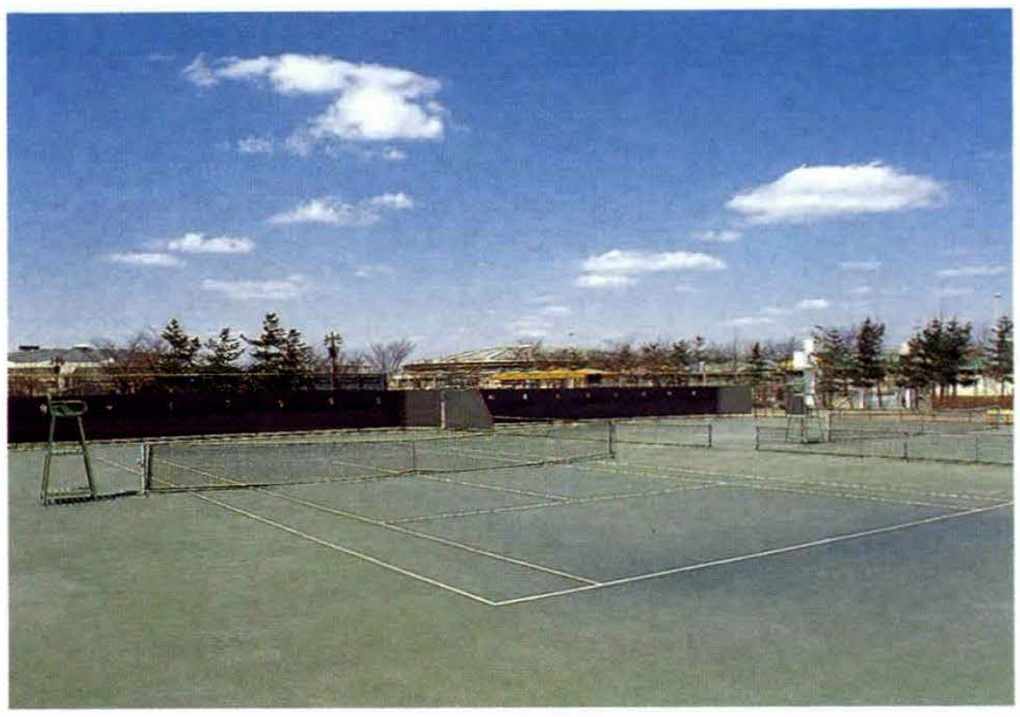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 테니스코트
2. 상설연성장
3. 명절 귀성버스
4. 휴게시설
5. 식당
6. 체력단련 기구
7. 노사협의회
8. 송년가요제
9. 탁구대회

뭉치자 하나로!! 뛰자 미래로!!

다
결

운영이용위단

도전
3
2

도전
도전

1

2

3

1. 산악회
2. 원구회
3. 테니스회
4. 사진회
5. 건강달리기회
6. 볼링회
7. 바둑회
8. 한결회
9. 낚시회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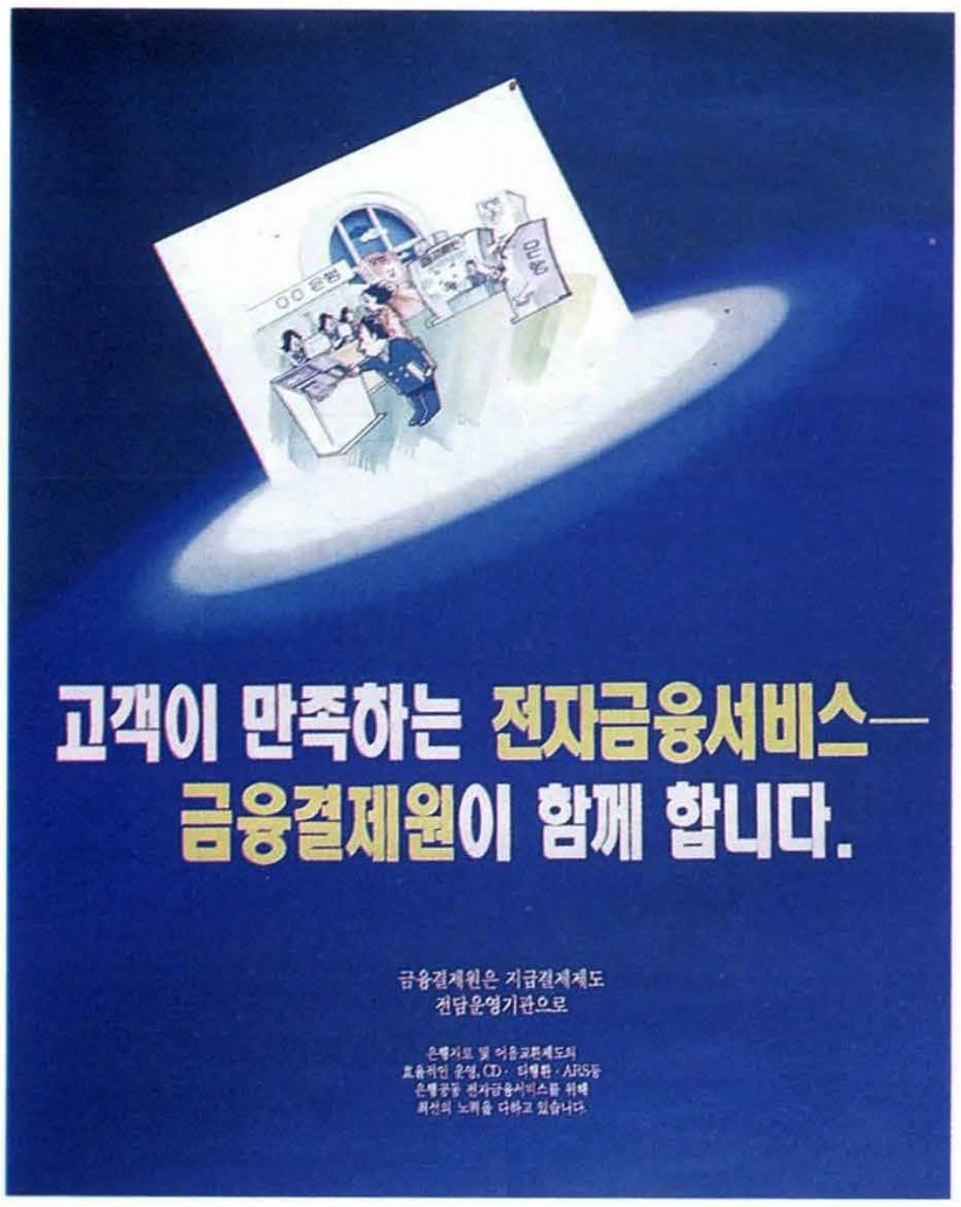
고객이 만족하는 전자금융서비스—
금융결제원이 함께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제도
전담운영기관으로
은행지로 및 어음교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CD · 타행환 · ARS등
은행공동 전자금융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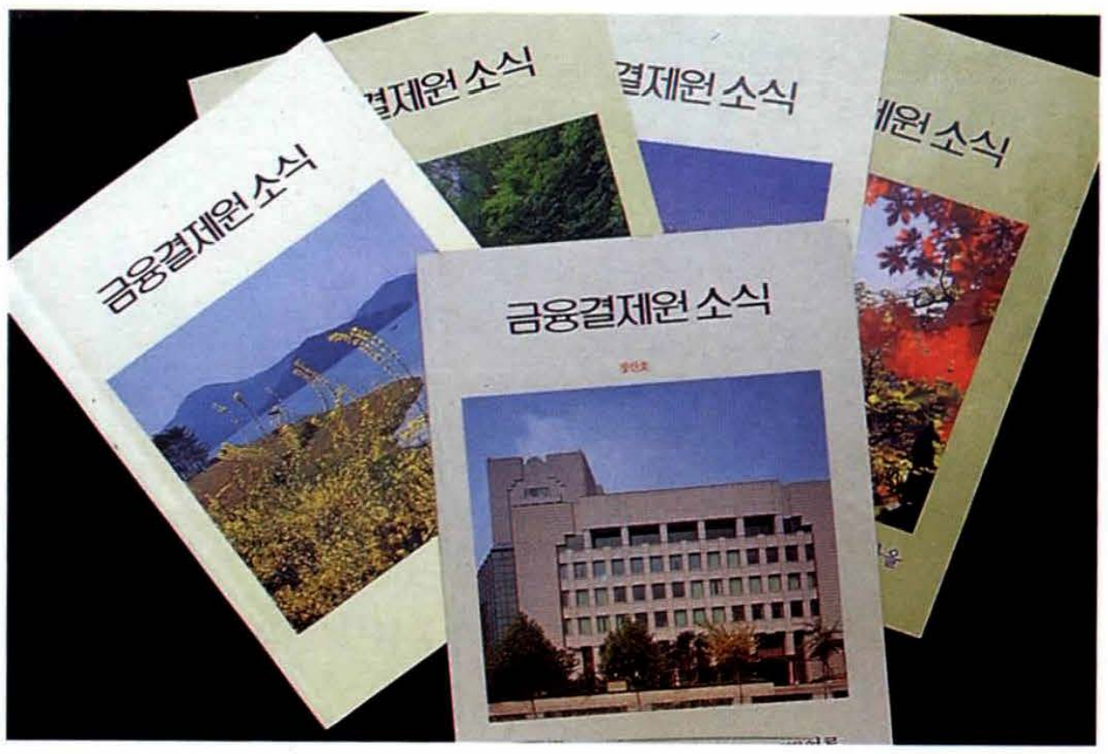

금융실명제로 더욱 편리해진 은행지로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직불·신용카드 VAN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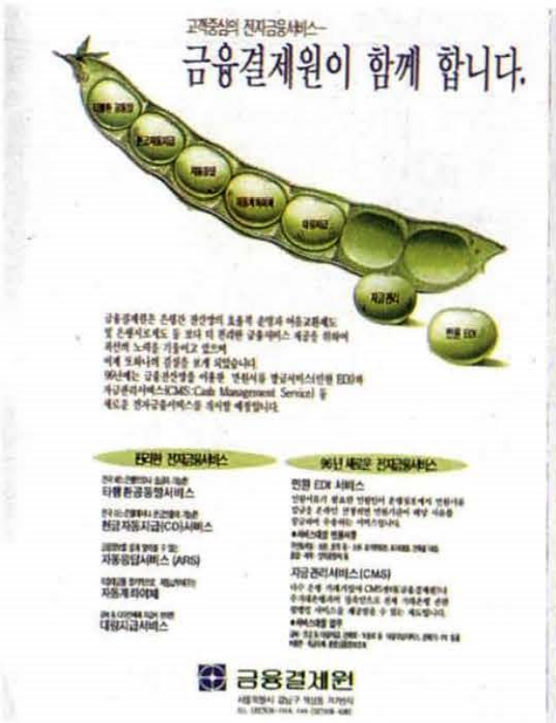
고객중심의 전자금융서비스—
금융결제원이 함께 합니다.
금융결제원

1

2

3

4

1.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2. SBS 장애인돕기 캠페인 협찬
3.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4. 장학금전달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번부 810 - 378 720-3175 1984. 5. 9.

수신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심의운영위원장

제목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법인설립허가

위원	위원장

1. 귀공 제 84 - 1 ('84. 5. 1) 의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제출하신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 32조 및 재무부령 제 916호의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 다 음 -

1. 법인명 :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의 1
3. 설립재산 : 2 금전
4.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 및 재무부령 제 916호
5. 설립목적 :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운영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등을 통한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의확립 및 발전에 기여함. 끝.

발송 1984. 5. 9 재무부

재 무 부 장 관

장애자의 재활·자립-밝아오는 복지사회

-1-

1

2

3

4

5

6

7

1. 법인설립허가서(1984. 5. 9)
2. 창립 현판식(좌로부터 고광직 소장, 최창락 한은총재, 1984. 5. 10)
3. 최창락 한은총재의 창립 격려사
4. 고광직소장의 개소식사
5. 창립기념 촬영
6. 창립식후 다과회
7. 삼천포 어음교환소 개설(1984. 8. 1)

1

2

3

4

5

6

1. 창립 제1주년 기념행사(1985. 5. 10)
2. 창립 제1주년 유공직원 표창(1985. 5. 10)
3. 전산실(1985)
4. 창립 제2주년 기념식(1986. 5. 10)
5. 어음교환분산처리 유공자 표창(1985. 8. 23)
6. 사무국장 연석회의(1985. 11. 26)

은행지로관리소

1

2

3

1.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창립기념 촬영(1969. 10. 1)
2. 제1회 EDPS요원 연수 수료식(1970. 1. 6)
3. Key Puncher 가동식(1970. 3. 2)
4. 금융기관 최초의 컴퓨터 UNIVAC-9400 시스템 가동기념 테이프 커팅(1970. 10. 2)
5. 금융기관 전자계산소 현판식(1975. 10. 1)
6. 금융기관 전자계산소 창립 기념촬영

4

5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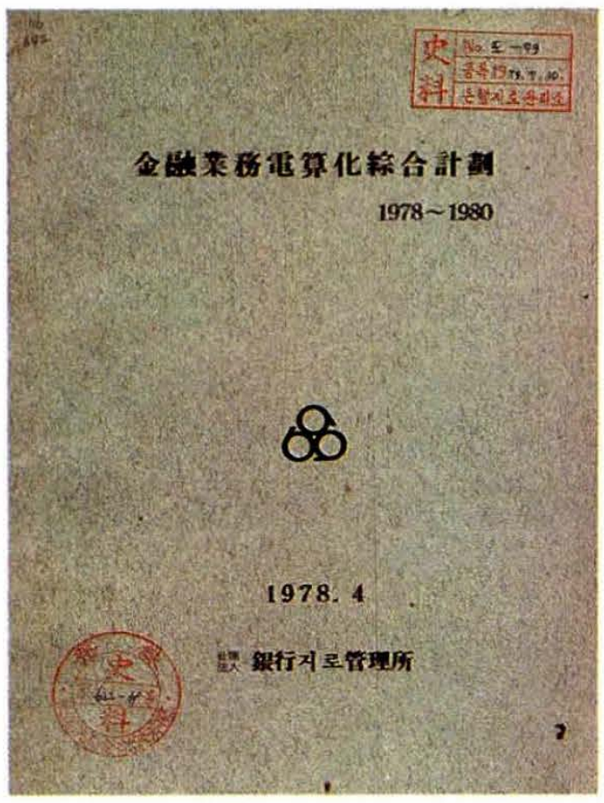

2

3

1. 은행지로관리소 현판식
   (우로부터 김건 한은이사, 김동수 소장, 1977. 6.22)
2. 은행지로센터 개소식(1977. 2. 1)
3. 은행지로장표 접수창구(1977. 2)
4. NCR 기기도입계약 체결(1978. 7.15)
5. 제3대 김두춘소장의 취임사(1981. 8.22)
6. 창립15주년 기념식(1983.10. 4)
7. 1985년도 시무식(1985. 1.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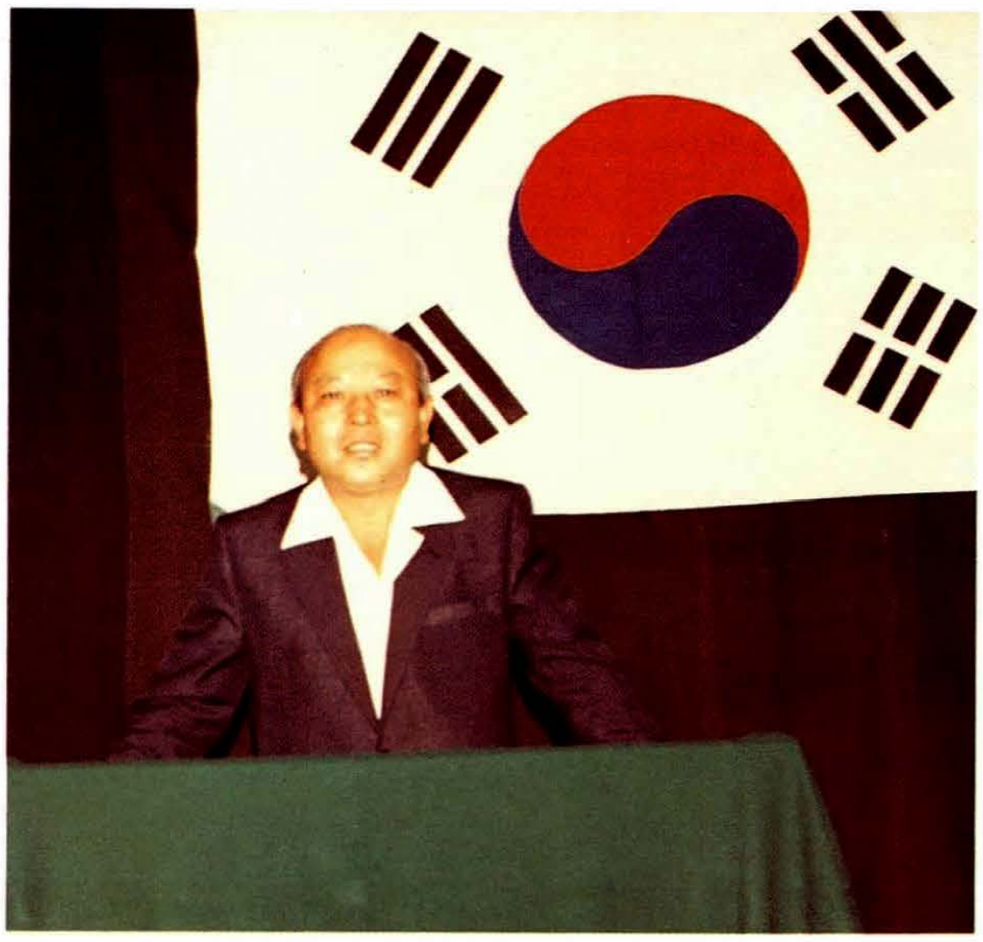

5

6

—다 음—

1. 사무실 이전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2지구 2공구 296-1
(한국감정원 빌딩 6,7,8층)

2. 이 전 일 자 : 1982. 1. 25.

3. 전 화 번 호 : 대표전화 556—3550
(명동분실 : 776—6485
777—4815)

1982. 1. 23

은행지로관리소

소장 김 두 춘

사무실이전안내

은행지로관리소
KOREA BANK GIRO CENTER

7

일러두기

1.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음.
2. 각종 통계 및 자료는 1995년말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내용 특성상 일부는 예외로 하였음.
3. 직위, 기관 및 부서명 등은 당시의 명칭으로 하였음.
4. 당원에서 작성된 자료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5. 화폐단위는 당시의 통용단위로 하였음.

차 례

제1편 연혁

제1장 금융결제원의 설립

제1절 설립배경 ——— 64

제2절 설립경위 ——— 66

제3절 금융결제원 전신기관의 연혁 ——— 70

1. 전국어음교환관리소

2. 은행지로관리소

제2장 금융결제원의 발전

제1절 개요 ——— 76

제2절 설립과 경영기반 구축 ——— 79

제3절 기반확충과 정착 ——— 84

제4절 안정성장과 발전 ——— 88

제2편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도입과 발전

제1장 어음교환제도

제1절 어음교환제도의 의의 ——— 96

제2절 어음교환제도의 기원 ——— 97

제3절 우리나라 어음교환제도의 도입 ——— 98

1. 어음교환소 설립전의 상황(1876년~1910년)

2. 최초의 어음교환소 설립

제4절 어음교환제도의 발전 ——— 102

1. 일제시대(1910년~1945년)

2. 해방이후 정비시대(1945년~1962년)

3. 독자적인 제도의 정착시대(1963년~1979년)

4. 어음교환제도의 안정화시대(1980년~현재)

제2장 은행지로제도

제1절 은행지로제도의 의의 ——— 121

1. 안전성
2. 편리성
3. 저렴성
제2절 은행지로제도의 기원 ——— 123
제3절 우리나라 은행지로제도의 도입 ——— 124
제4절 은행지로제도의 발전 ——— 126
1. 업무의 확대
2. 장표처리의 기계화
3. 실시지역의 확대
4. 참가은행의 확대
5.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의 증가
6. 은행지로제도 운영기관의 변천

제3장 금융전산망의 구축
제1절 금융전산망의 구축추진 ——— 136
1. 금융전산망의 추진배경
2. 금융전산망의 추진목표
제2절 금융전산망의 추진경위 ——— 139
1.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시스템
2.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
3. 타행환시스템
4. 기타
제3절 금융전산망의 구축효과 ——— 145
1. 금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
2.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3. 금융의 국제화에 대비한 기반 조성
4. 대고객 서비스 개선
5. 금융전산망의 구축효과
제4절 금융전산망의 향후 발전방향 ——— 147
1. 전산시스템의 개선 유도
2. 공동전산망사업의 확충
3. 전산망간 연계 확대

4. 안전대책 강화
5. 표준화의 적극 추진
6. 네트워크 확장 구축

제3편 금융결제원의 조직과 경영

제1장 정관

제1절 설립당시의 정관 ——— 154
1. 제정 경위
2. 구성 및 내용
제2절 정관의 변천 ——— 159
1. 변천내용
2. 현재의 정관

제2장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제1절 사원 ——— 163
제2절 준사원 ——— 164
제3절 특별참가기관 ——— 165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 166
제2절 이사회 ——— 167
제3절 위원회 ——— 168
1. 위원회 조직의 변천
2. 현재의 위원회
제4절 임직원 ——— 170
1. 임원
2. 직원
제5절 본부 부서 및 지부 ——— 171
1. 본부
2. 지부

제4장 경영

제1절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 ——— 181

1. 경영이념
2. 경영목표

제2절 사업계획 및 예산 ——— 182

1. 중기발전계획
2. 사업계획
3. 사업실적평가
4. 예산관리

제3절 조사 및 홍보 ——— 189

1. 조사
2. 홍보

제4절 재무관리 ——— 194

1. 자산 및 부채
2. 기본재산
3. 수지상황
4. 회계

제5절 인사관리 ——— 200

1. 인사관리
2. 종합근무평정
3. 연수관리

제6절 복지후생 ——— 213

1. 주거안정 지원
2. 후생시설 운영
3. 의료혜택
4. 생활안정 지원
5. 기타

제7절 업무개선 ——— 220

1. 제안제도
2. 사무자동화

제8절 감사활동 ——— 235

1. 감사조직 및 관련법규

2. 감사활동
제9절 기타 업무 ——— 242
1. 안전관리
2. 노동조합
3. 교양활동지원
4. 금융기관 전용전화

제4편 업무

제1장 어음교환업무

제1절 개요 ——— 256
1. 어음교환소 설립전의 어음교환제도
2. 어음교환소 설립부터 해방까지의 어음교환제도
3. 해방후 1962년까지의 어음교환제도
4.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어음교환제도
5. 1980년 기계처리제도 도입 이후의 어음교환제도
제2절 어음교환 ——— 271
1. 어음교환의 참가
2. 어음교환소 참가지역
3. 어음교환관련비용
4. 어음교환 대상어음
5. 어음교환절차
6. 상호교환제도
7. 야간교환제도
8. 어음교환차액결제
제3절 내국신용장 어음교환 ——— 290
1. 개요
2. 제도의 도입 및 발전
3. 처리절차
제4절 부도관리 ——— 292
1. 개요

2. 부도어음처리
3. 부도량 추이
4. 사고어음처리제도
5. 거래정지처분제도
6. 부도제재에 대한 구제
7. 기타

제2장 은행지로업무
제1절 개요 311
1. 거래의 유형과 종류
2. 참가은행과 점포
3. 실시지역 및 지로장표의 송달
4. 지로거래의 승인과 지로번호
5. 경비분담 및 과태금
6. 지로입출금지시 및 지로차액결제
7. 자금이체기일 및 지로수수료
제2절 일반계좌이체업무 323
1. 개요
2. 처리절차
3.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
제3절 자동계좌이체업무 331
1. 개요
2. 처리절차
3.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
제4절 대량지급업무 336
1. 개요
2. 처리절차
3.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
제5절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339
1. 개요
2. 처리절차
3. 이용실적

제6절 기타 업무 ——— 341
1.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
2. 지방세수납이체업무
3. 통합공과금수납이체업무
4. 채권자계좌이체업무

제3장 금융전산망업무

제1절 개요 ——— 345
제2절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업무 ——— 346
1. 개요
2. 추진경위
3. 서비스 내용
4. 업무량 추이
5. 향후 전망
제3절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업무 ——— 352
1. 개요
2. 추진경위
3. 서비스 내용
4. 업무량 추이
5. 향후 전망
제4절 타행환공동망업무 ——— 358
1. 개요
2. 추진경위
3. 서비스 내용
4. 업무량 추이
5. 향후 전망
제5절 타전산망과의 접속 ——— 363
1. 무역자동화망과의 접속
2.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
3. 점외 CD/ATM 공동이용망과의 접속
4. 경찰전산망과의 접속
제6절 네트워크 확장 ——— 368

1. 제1기(최초~1992년 2월)
2. 제2기(1992년 3월~1994년 1월)
3. 제3기(1994년 2월~현재)

제4장 전산관련 공동업무
제1절 SWIFT ——— 375
1. SWIFT의 설립과 발전
2. 국내 금융기관의 SWIFT 가입
3. 국내 SWIFT사무국의 운영
제2절 일괄전송업무 ——— 381
제3절 COM시스템공동이용업무 ——— 383
제4절 금융기관 공동코드 관리 ——— 385
제5절 기타 업무 ——— 386
1. 위규계좌 점검
2. 금융전산망 안전대책
3. 금융전산 연수
4. 표준화
5. 기타

제5장 자금중개업무
제1절 자금중개업무 연혁 ——— 394
1. 외국환은행의 생성과 발전
2.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설
제2절 자금중개실의 변천 ——— 396
1. 초창기(1970년~1982년)
2. 성장기(1983년~1988년)
3. 발전기(1989년~현재)
제3절 업무내용 ——— 400
1. 외환거래 중개
2. 외화콜거래 중개
3. 원화콜거래 중개
제4절 환율고시 ——— 408

제6장 부가통신사업
제1절 부가통신사업의 도입 ——— 412
제2절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 구축·운영 ——— 414
1. 직불카드 VAN
2. 신용카드 VAN
3. 단말기(CAT) 보급
제3절 자금관리서비스시스템 구축·운영 ——— 420
제4절 기타 ——— 423
1. 지로 EDI
2. 민원 EDI

제5편 금융결제원의 미래상

제1장 금융 및 지급결제환경의 변화
제1절 금융환경 변화 ——— 428
1. 금융자유화
2. 금융시장 개방
3. 금융산업 개편
4. 금융리스크 증대
제2절 지급결제환경 변화 ——— 433
1.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등장
2. 전자지급결제수단 이용 급증
3. 장표지급결제수단 처리방법 개선
4. 지급결제규모 증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
5. 신규업체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제2장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제1절 당면과제 ——— 438
1.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제고
2. 총액결제방법과 차액결제방법의 조화
3. 리스크 관리 강화

제2절 발전방향 ——— 440
1.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개발
2. 전자지급결제수단 이용 확대
3. 장표처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제3장 금융결제원의 미래상
제1절 금융산업에 기여하는 기관 ——— 445
1. 금융하부구조의 안정적 구축·운영
2.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3. 금융기관 이용자 편의 제고
제2절 선진 지급결제기관으로 성장 ——— 447
1.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
2. 사업 다각화
3.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부록편

금융결제원 정관 ——— 452
금융결제원 위원회규정 ——— 469
역대임원 ——— 483
기구도표 ——— 484
역대 본부부서장 ——— 486
역대 지부장 ——— 494
직원명단 ——— 529
기구변천표 ——— 544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 550
성장그래프 ——— 551
업무실적 ——— 557
업무별 참가기관 및 참가지역 ——— 571
임직원변동 일람 ——— 579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 581
전산기기 보유현황 ——— 592
연표 ——— 594

제1편 연혁

제1장 금융결제원의 설립

제2장 금융결제원의 발전

제1장 금융결제원의 설립

제1절 설립배경

당원은 1986년 6월 2일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은행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관련기관과의 금융전산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당원의 설립은 정부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추진 및 관련법규를 근거로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지급결제업무의 전담기관으로서, 지급결제업무와 은행공동의 전산업무를 담당하여 온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당원의 전신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1984년 5월 10일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 신설된 기관으로 어음교환업무와 신용정보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은행지로관리소는 1969년 10월 1일 발족한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를 모태로 1975년 10월 1일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로 설립되어 은행지로업무와 금융업무 전산화 육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운영과 자료처리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결제원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초 정부 주도하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구상 및 추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성공률이나 사회적인 필요성과 수요, 미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과 정보산업의 진흥을 통한 정보화사회의 조기완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고 정보화사회 조기달성을 위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사회전반적으로 전산화·자동화·정보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는 수용태세가 미흡하여 그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정보산업은 기술부족은 물론 그 시장성도 크게 부족하였다. 그래서 산업사회와 정보화사

「電算網調整委」설치
委員 30人구성 위원장에 국무위원
5大 전산망事業 총괄
기본計劃·技術개발 審議
체신부 각각 推進委도 구성

전산망 조정위원회 설치(1987.5)

회에 동시에 통용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서 국가전산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었다. 즉,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산화수요, 특히 정부가 관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전산화 수요를 생산부문에 투입하여 국내 정보산업능력을 확장하는 데 활용하자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사업이 탄생한 것이며 금융전산망사업은 이러한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업무전산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기계화의 일환으로 급여계산업무에 뱃치(Batch)방식에 의한 전산처리를 도입하면서 태동되었으나 본격적인 전산화는 1970년대 후반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본·지점간 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금융전산망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국내 금융기관의 전산화 수준은 본·지점간 온라인(On-line)망 구축 및 과목별 온라인 업무개발을 완료한 상태였으나 후발은행은 창구업무의 전산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었다.

1985년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통화(M1)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43.5%로서 현금선호관습의 뿌리가 매우 깊은 데다 현금 이외에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의 개선 없이는 금융기관의 수신증가가 어렵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중앙은행의 화폐발행부담도 증대되어 현금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자금이체수단을 보급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또한 현금 이외의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어음·수표, 은행지로 등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주로 장표(paper-based)형태였으며 이러한 장표결제수단의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지급결제량의 급증추세는 경제성장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으며 장표형태의 지급결제수단에 계속 의존할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처리비용이 급증하여 경영압박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처리비용절감이 가능한 전자자금이체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금융자유화·국제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금융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고객의 금융행태가 수익중시경향으로 바뀌어 금리면에서 우대받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저축신장세가 은행저축을 크게 상회하고 고객의

금융서비스 개선 내지는 확대요구가 점차 높아져 신상품개발과 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가능케 하는 금융전산망의 구축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금융경제적 필요와 정부의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추진에 따라 1983년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전산망 추진방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1984년 7월에는 금융전산망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 등 추진기구를 발족하였으며 1986년 6월 2일 금융전산망 추진 전담사업자로서 당원이 발족되기에 이른 것이다.

제2절 설립경위

당원의 설립추진은 1985년 5월 총무처장관이 금융전산망 추진기구 설립원칙을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1984년 12월 금융기관의 전자계산조직 도입에 관한 협의권한이 금융전산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장인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되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당원 설립방안이 1985년 7월부터 1986년 4월 기간 중에 작성되었고, 마침내 1986년 4월 18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4차 총회에서 정관변경(안), 은행지로관리소의 인원, 재산, 업무이관에 관한 협약(안),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전국은행연합회간의 신용정보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안), 금융결제관리원 공식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금융결제관리원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을 위한 가지급금 출급 승인(안) 등 당원 설립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었다.

「金融決濟管理院」설립
上半期중 共同결제·정보電算網도 연결
個人·中小企業 評價전담 「信用情報」도 신설

첫번째의 정관변경(안)은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명칭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금융결제관리원을 지급결제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주체로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사업을 확충하였으며 임원을 기존의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의 업무·인원 및 재산일체의 인수 등 관련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었다. 당원의 설립은 전국어음교환관리소를 모체로 하여 은행지로관리소를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는 절차를 취했는데 이는 당시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40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고 기본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재산이관에 따른 제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번째로 은행지로관리소의 인원, 재산, 업무이관에 관한 협약(안)은 은행지로관리소가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인원, 재산 및 업무이관 관련 필요조치사항을 협정하는 내용이었다.

세번째로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전국은행연합회간의 신용정보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안)은 당시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담당하고 있던 신용정보관리업무의 인원, 전산기기 및 이관인원의 인사, 퇴직금 정산 등 필요조치사항에 대하여 양 기관간에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이었는데 신용정보관리업무의 이관은 금융결제관리원 설립준비 실무작업시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동 업무의 인수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수차에 걸친 논의끝에 종국에는 정부의 금융자율화정책 추진취지에 부응하여 신용정보관리업무의 성격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제의하에 전국은행연합회로의 이관이 결정되었다.

네번째로 금융결제관리원 공식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은 당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기구로서 금융결제관리원 공식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으로 위원장 2인, 위원 7인을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금융결제관리원 공식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위원장 :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소 장	고광직
〃 :	은행지로관리소	소 장	김두춘
위 원 :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무부장	조성묵(간사)
	〃	어음교환부장	허윤수
	은행지로관리소	총무부장	정지현
	〃	업무부장	양학규
	한 국 은 행	기획부 차장	김영생
	〃	전자계산부 차장	홍순익
	〃	저축부 차장	한석우

다섯번째의 금융결제관리원 사무실 임차계약체결을 위한 가지급금 출급 승인(안)은 당원 설립에 따라 당시 사용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4번지에 있던 전국은행연합회 소유의 무상임차사무실에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강남구 삼성동 171-2번지에 소재한 한국감정원 건물 일부(약 1,364평)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의 출급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1986년 4월 18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4차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원장관) 앞으로 허가신청하였으나 재무부에서는 동년 5월 19일자로 일부 수정허가 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은 사원·준사원의 자격기준 명확화, 총회 및 이사회 의장직의 선출제 및 임기 신설, 준사원 및 금융결제관리원장에 한하여 총회 출석발언권 부여,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출석자 기명날인, 전무·상무이사의 선임제청권의 원장앞 부여, 감사의 주무관청 승인, 기본재산의 주무관청보고, 경비분담금의 수익자부담원칙 명시, 매년도 결산의 총회승인 기한 변경(매회계년도 종료 2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인사·예산· 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폐시 주무관청보고 명시 등이었다.

아울러 1986년 5월 23일에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6차 총회를 개최하여 1986년도 사업계획변경(안), 198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에 따른 수정의결(안), 금융결제관리원 임원선임(안)을 의결하였는데 1986년도 사업계획 변경(안)은 기승인된 1986년도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사업계획에 은행지로업무 및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었고 198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원 발족에 따른 사업추가, 은행지로관리소 직원 인수 등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경영진으로는 초대원장에 김재윤 한국은행 감사를, 전무이사에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고광직 소장, 상무이사에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구본식 부소장, 주형돈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장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감사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하소곤 감사가 직위를 승계하였다.

그후 1986년 5월 26일 또다시 제7차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는데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전담 상무이사 1인을 증원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써 당원의 임원은 당초 5인에서 6인(상무이사 3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동년 7월 18일 권영달 상무이사가 선임되었다.

한편 은행지로관리소의 해산에 따른 청산은 금융결제관리원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1987년 3월 6일 종결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1986년 6월 2일 설립된 금융결제관리원의 정관상 주요사업으로는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은행지로에 관한 업무,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금융

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처리,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조사·연구업무,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이었다. 또한 설립 당시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4개 사원은행 대표자로 구성되는 총회와 총회 위임사항 및 각종 업무 규약·규정의 제정·개폐를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고, 총회·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거나 위임사항을 의결하는 업무별 5개 위원회와 5부 1실 5과 6담당 40개 지부을 두었으며, 인원은 전국어음교환관리소 263명과 은행지로관리소 275명을 합하여 538명이었다.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당시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1-1-1〉 금융결제관리원 설립당시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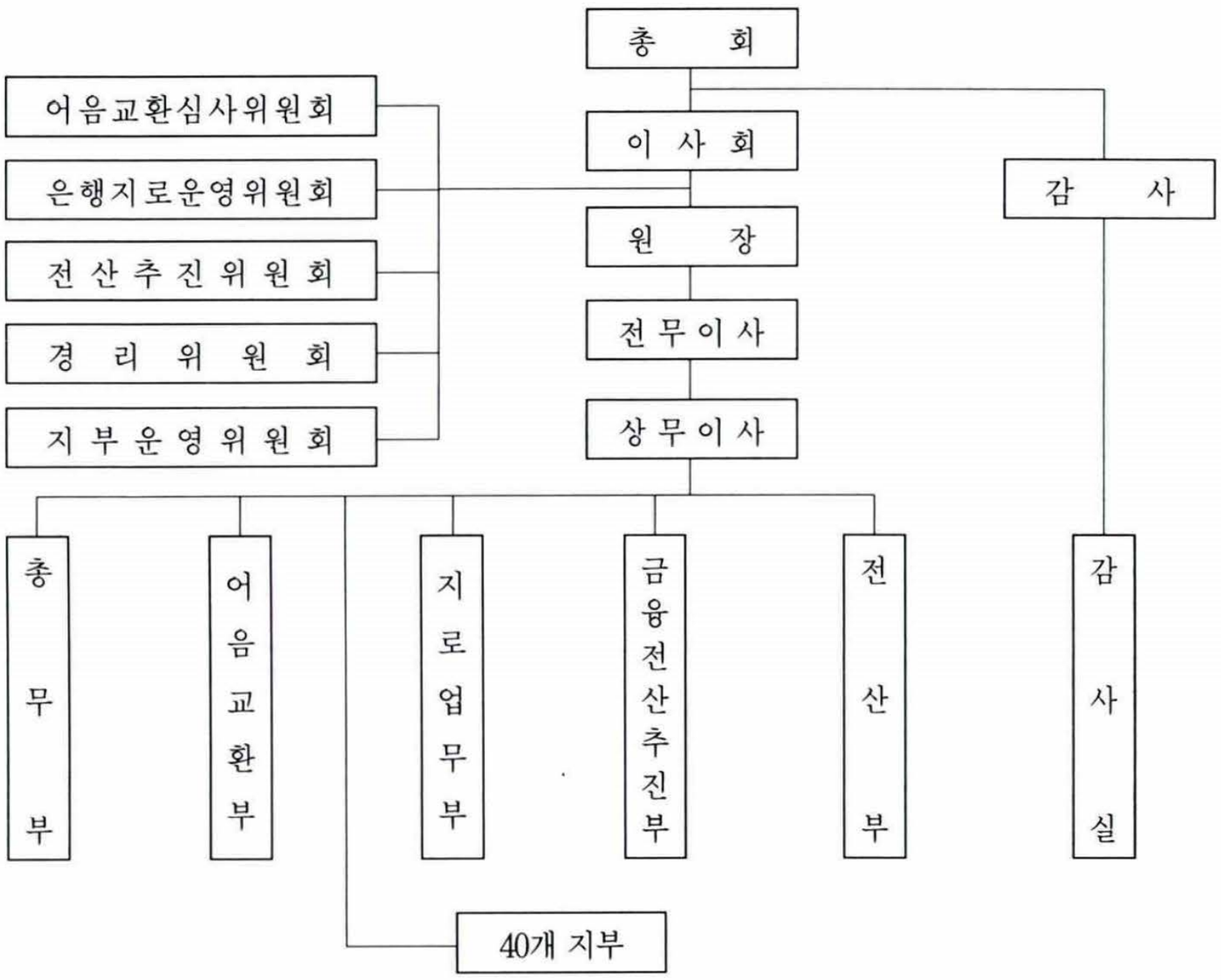

제3절 금융결제원 전신기관의 연혁

1.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1984년 5월 10일 전국은행연합회(당시 전국은행협회)로부터 분리, 신설된 기관으로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의 확립과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질서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 신용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 신설된 것은 당시 정부의 금융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침과 관련하여 금융자율화의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위기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1984년까지는 여·수신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는 전국은행협회 내의 임의단체인 대한금융단 총회에서 정하는 금융단협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면에서 자율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은행원이 대형어음부도사건에 연루되는 등 은행원의 복지향상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의 설립이 요청되었고, 당초 전국은행협회의 주요업무 중 통화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음교환업무와 신용정보관리업무는 정부정책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동 업무를 전국은행협회로 부터 분리하여 이를 전담할 새로운 기관설립이 필요하게 되어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탄생한 것이다. 당초 전국은행협회의 회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직 회장으로서 모든 경영을 직·간접으로 주관하였으나 이후 한국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원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설립일은 1984년 5월 10일이지만 주요업무인 어음교환소 설치·운영은 사실상 1910년 7월 1일 사설 경성수형교환소 개설 이후 지속되어 왔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음교환소 설치·운영지역을 확대하여 왔으며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설립당시에는 37개 지역에 지소를 두고 전국에 서울을 비롯한 38개 어음교환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설립은 1984년 4월 7일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고 준비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준비위원에는 위원장에 고광직 당시 전국은행협회 전무이사, 위원에 한석우 한국은행 저축부 차장, 허윤수 전국은행협회 어음교환부장, 오진식 전국은행협회 신용정보관리부장이 임명되었다. 동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작업에 착수한 후 동년 4월 27일 창립총회에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정관(안), 사무소 설치(안), 임원선임(안), 이사 대표권의 제한규정 제정(안)을 상정, 의결함으로써 설립일자는 동년 5월 10일로 정하고 사무실은 당시 전국은행협회(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번지의 1)에 설치키로 하였으며 임원은 3명으로 하고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소장(대표자)인 고광직 이사 외에는 대표권이 없도록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다. 당시 이사는 고광직, 최창락, 정춘택, 윤근환, 송기태, 김상찬, 이필선, 이석주, 김용운, 김선길, 박종석, 정인용, 유돈우, 김세창, 황창기씨 등이었다. 동 총회 후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설립준비위원장은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령 제916호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여 동년 5월 9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했다. 아울러 같은 날 총회를 개최하여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준사원 참가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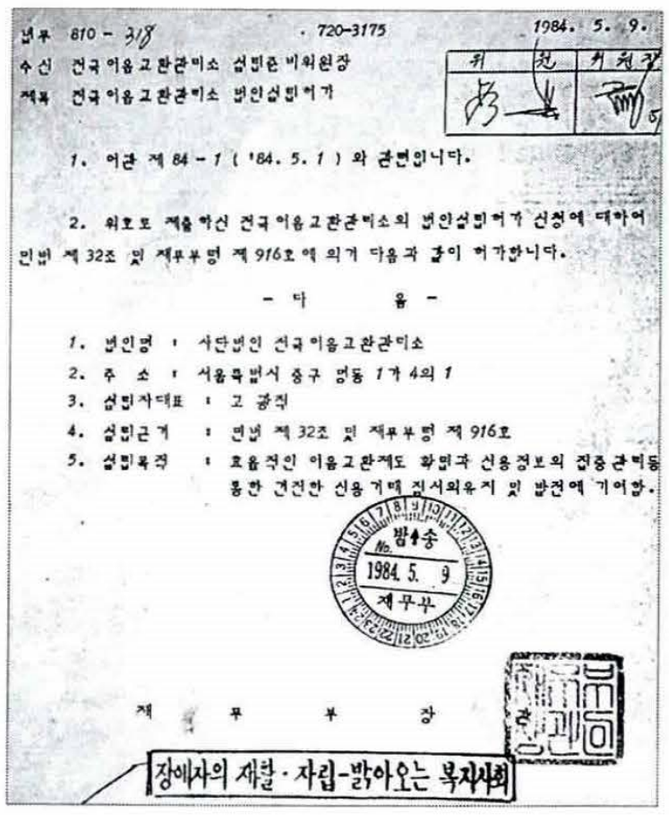

법인설립허가서(1984.5.9)

〈표1-1-2〉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조직도(1986년 5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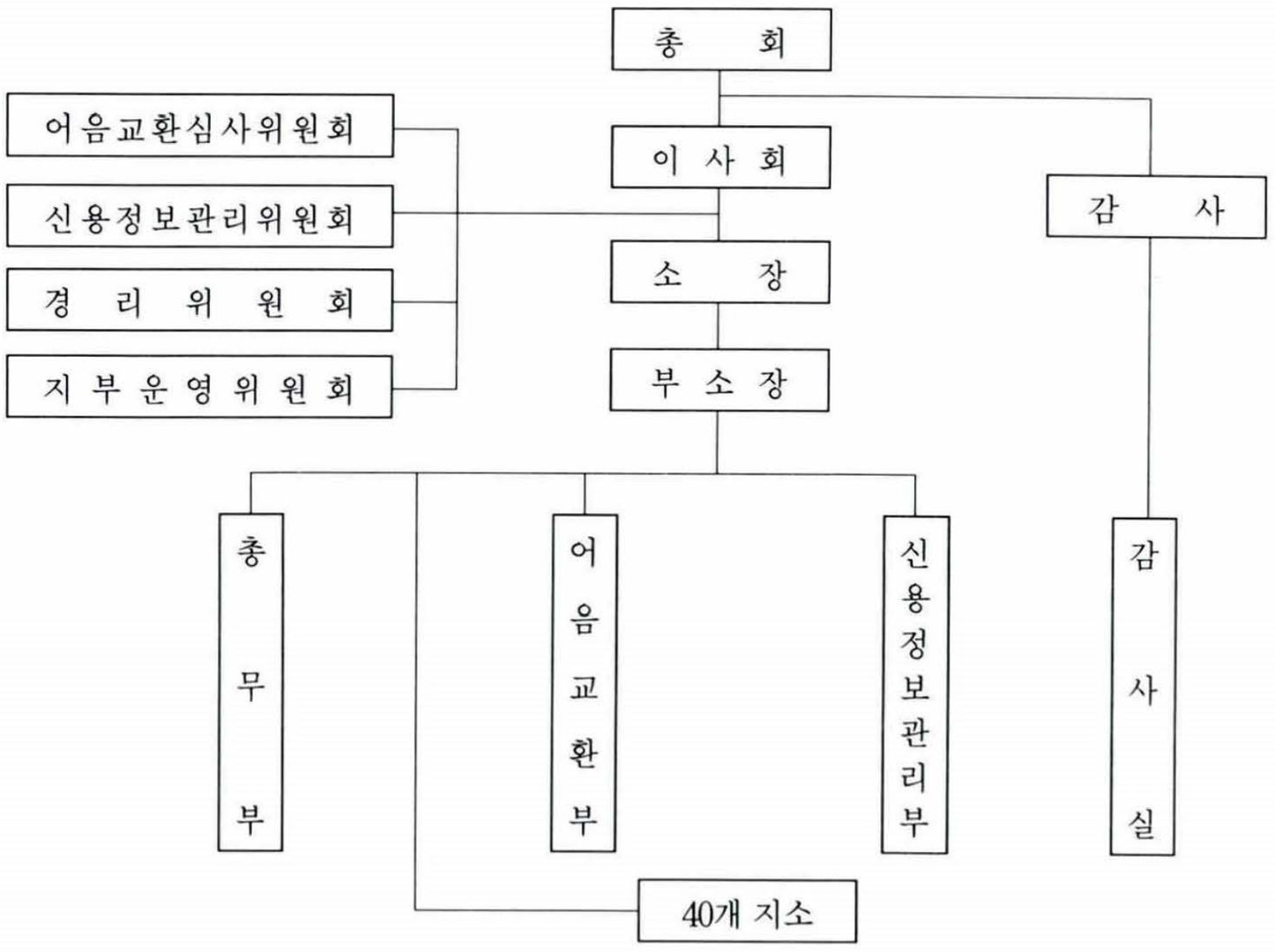

(안)과 1984년도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가예산의 잠정집행(안)을 의결하고 동일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정 및 업무관련 제규약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결제원의 전신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설립되었다.

2. 은행지로관리소

은행지로관리소는 1975년 10월 1일 사단법인 금융기관 전자계산소로 발족하여 197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되면서 은행지로업무를 전담하여 온 기관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전자계산소 또한 1969년 10월 1일 발족된 임의단체인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Korea Banks Computer Center)를 모태로 하고 있다. 1969년 7월 17일 재무부에서 시달된 금융기관 사무기계화지침에 의거 한국은행은 사무기계화에 관한 기본원칙을 전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전자계산조직(EDPS)의 집중화방식을 채택하며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 대한금융단 EDPS 센터를 설치, 공동운영한다는 방침하에 금융기관 사무개발위원회를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지침(1969년 7월 17일)

그간 일반은행에 대하여만 시행하던 사무기계화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전 금융기관에 확대수정하여 적용하기로 그 원칙이 수립되었으니 본건에 관하여 그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단말기 : 각행 공동으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능률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일방향으로 조치한다.
2. 전자계산조직 (EDPS)
   가. 대한금융단이 도입하여 각 금융기관이 공동이용하는 집중화방식을 채택하고 각행별 설치는 불허한다.
   나. 도입기계는 상업은행이 임차를 추진하여 도입단계에 있는 UNIVAC-9400으로 하되, 그간의 비용과 외환은행 구입계약 취소에 따른 비용은 금융기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 및 금융단 EDPS 센터 설치, 대한금융단 EDPS 센터를 설치하여 이에서 공동운영하되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감독원 및 각행 담당이사로 구성되는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성하고 개발위원회규정과 전자계산본부운용요강을 제정하였다.

그후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의 설립을 위해서 1969년 9월 1일 발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5명의 발족 작업반을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동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전자계산본부는 금융기관업무의 기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개선, 금융기관에서 의뢰한 자료의 계산처리, 전자계산조직의 성능과 그 계산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전자계산요원의 양성과 계몽, 금융기관의 전자계산기 설치에 관한 협의, 기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에서 지시하거나 여타 목적사업에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재무부는 1975년 1월 11일 금융업무 전산화지침을 다시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주관하에 금융기관 전산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EDPS요원의 교육, 금융기관 공동업무의 개발 등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제도(Giro System)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후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는 1975년 4월 1일 해체되고 사단법인 서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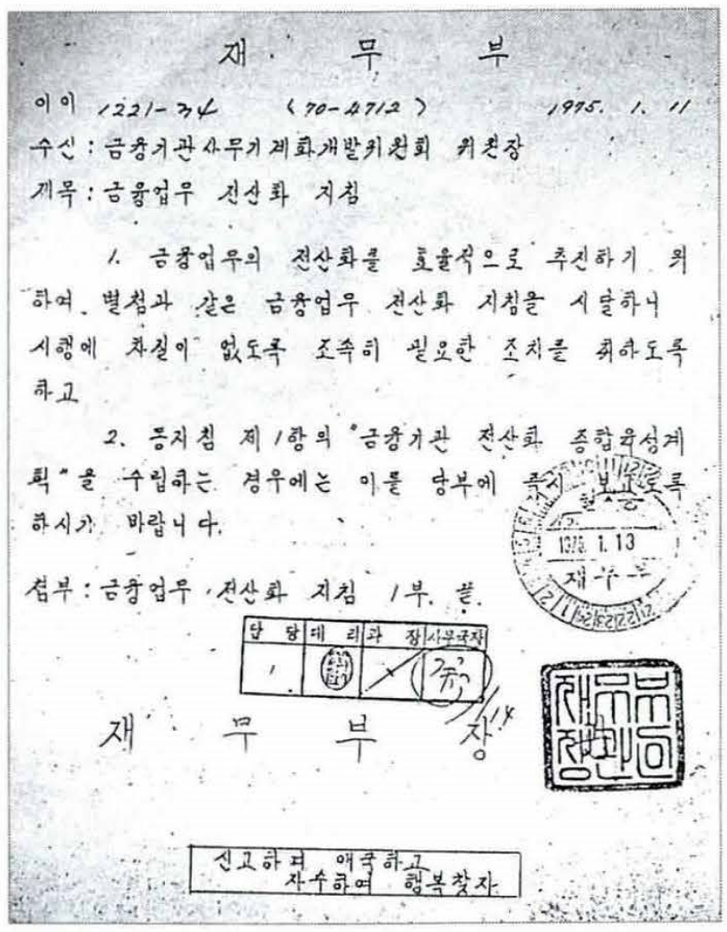

재 무 부

이이 1221-746 (70-0712) 1975. 1. 11

수신 : 금융기관사무기계화개발위원회 위원장

제목 : 금융업무 전산화 지침

1. 금융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은 금융업무 전산화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2. 동지침 제1항의 "금융기관 전산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부에 즉시 보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금융업무 전산화 지침 1부. 끝.

1975. 1. 13 재무

담당	데리과장	사무국장

재 무 부 장

신고하면 애국하고 사수하여 행복찾자

금융업무 전산화지침(1975. 1. 11)

금융업무 전산화지침(1975년 1월 11일)

1.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주관하에 금융기관 전산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EDPS요원의 교육, 금융기관 공동업무의 개발 등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2.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할 것
   ① 금융기관 전산화 육성계획
   ②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할 사항〔계좌이체제도(Giro System), 내국환집중결제제도, 어음교환제도 등〕
   ③ 각 금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확장계획
   ④ 기타 중요한 사항
3.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에 외부 EDPS전문가 3~4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동 위원회가 각 은행의 전자계산조직 도입 및 확장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전자계산조직의 기종, 성능, 용량 등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비경제적인 시설이 도입되지 않도록 할 것

행협회내 전자계산부로 업무가 승계되었으나 재무부의 금융업무 전산화지침에 의거 금융업무 전산화의 효율적 개발·육성을 통한 은행업무의 개선과 국민경제 발전도모를 위하여 동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전자계산소의 설립을 한국은행 주관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1975년 7월 24일 금융기관 전자계산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초대소장이 된 김동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교영 서울은행협회 전자계산부장, 이관홍 한국은행 조사제2부 조사역, 양학규 서울은행협회 전자계산부장대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설립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은행지로관리소의 전신기관인 금융기관 전자계산소가 1975년 10월 1일 발족되었고, 금융업무 전산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실시, 금융업무 전산화의 공동개발, 금융기관 직원의 전자계산 교육훈련,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운영과 자료처리, 계좌이체제도의 계획·실시 및 조정,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금융기관 전자계산소는 발족후 정식 법인설립 허가신청이 1976년 5월 29일에 이루어져 동년 6월 22일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197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되어 은행지로제도의 연구·개발, 은행지로제도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은행지로업무의 계획·실시 및 조정, 금융업무관련 신

〈표1-1-3〉 은행지로관리소 조직도(1986년 5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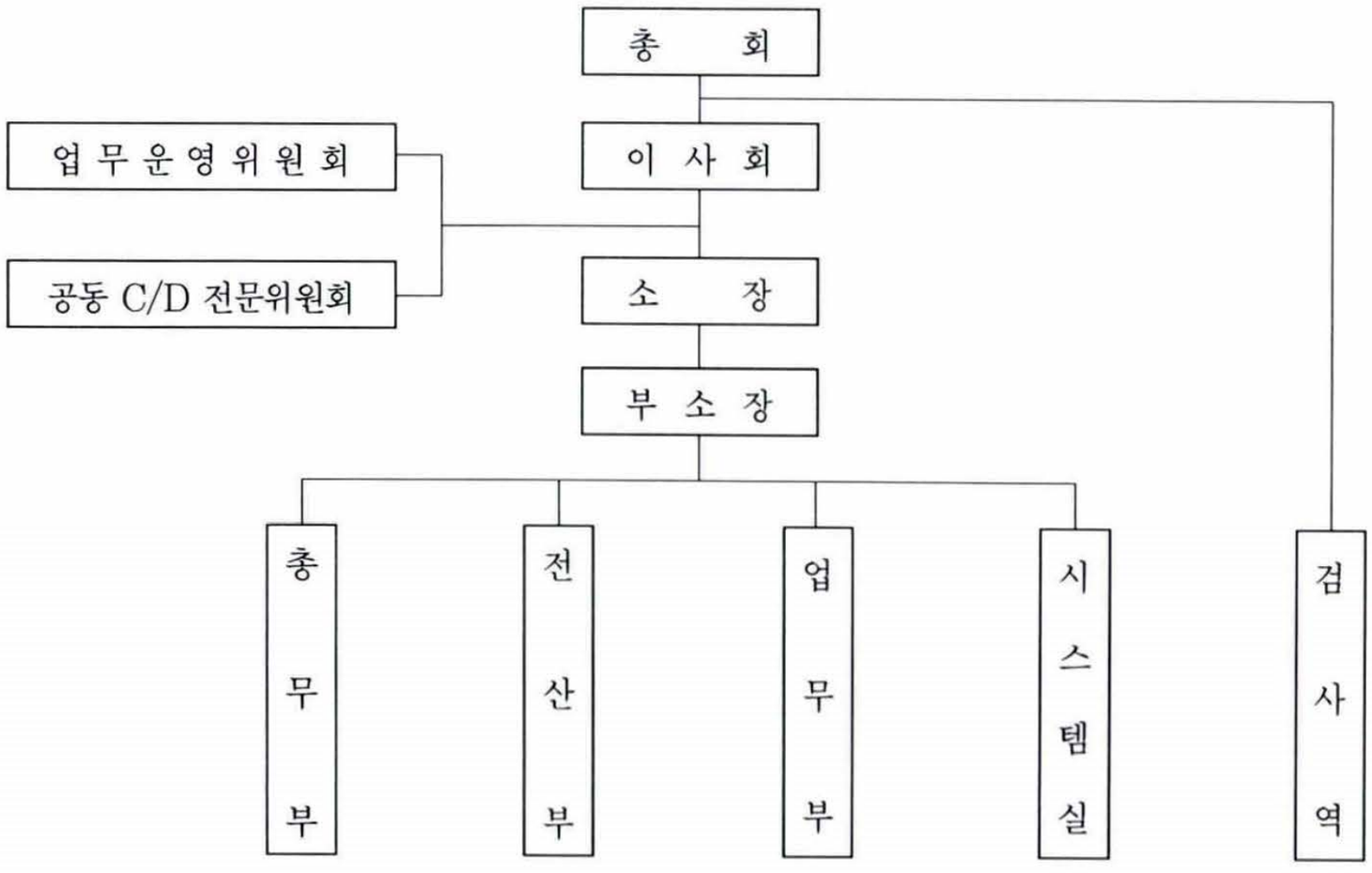

용정보자료의 처리 등의 업무를 추가하였다. 1986년 6월 2일 금융결제원 발족 이전의 은행지로관리소의 조직은 〈표1-1-3〉과 같다.

제2장 금융결제원의 발전

제1절 개요

당원은 1986년 6월 2일 서울 본부와 40개 지부에서 일제히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전담·운영기관으로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후 금융전산망의 구축과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에 매진하여 온 당원은 발족 초기에는 사원은행의 전산화 추진여건 미비와 금융전산망시스템 개발 경험부족 등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으며,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보다 구축기간을 크게 앞당겨 1980년대 말 금융전산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제 당원은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하나인 금융전산망과 어음교환·은행지로 등 지급결제제도를 전담·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자자금이체서비스의 창출·확산과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국민과 사원은행으로부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성장하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성장과 발전은 당원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Know-how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노력과 열의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후 당원은 신규서비스의 창출 및 확산은 물론 업무실적과 경영규모면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오늘의 성장이 있기까지 사원은행의 수익성 제고와 지급결제서비스의 선진화, 대국민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적인 지급결제기관」으로 진입하기 위한 각오로 제반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당원의 업무신장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급결제 업무량은 발족 첫 해인 1986년말 일평균 1,258천건, 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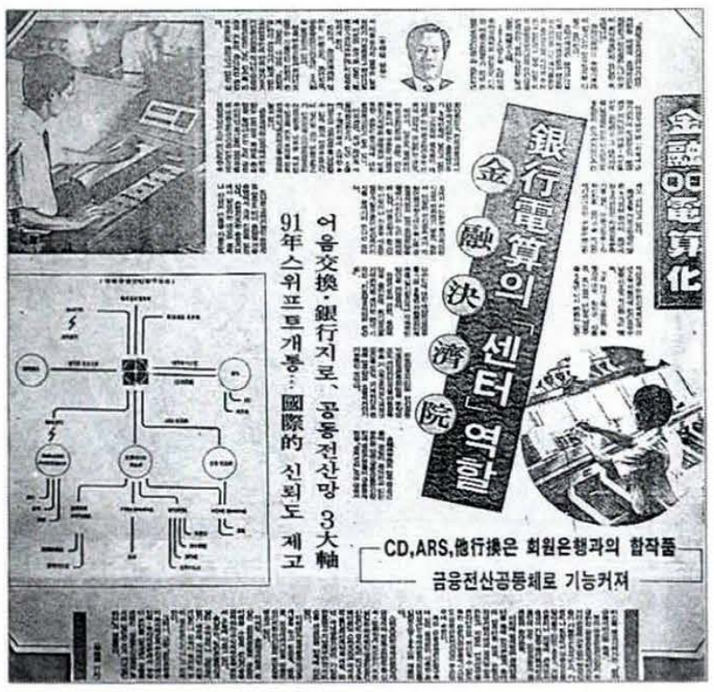

은행전산의 센터역할(1992.8.24)

원에 불과하였으나 CD, ARS, 타행환 등 금융전산망을 모두 구축한 1989년 말에는 2,704천건, 11조원에 이르렀고, 1995년 말에는 일평균 6,479천건, 23조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금융전산망 서비스의 경우 1988년 7월 구축·가동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시스템 이용실적이 첫해에는 일평균 20천건, 약 16억원이던 것이 1995년말에는 일평균 618천건, 1,078억원으로 건수 31배, 금액 67배의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1989년 4월에 구축·가동된 자동응답서비스(ARS) 공동운용시스템 이용실적은 첫해에는 일평균 14천건이던 것이 1995년말에는 일평균 257천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1989년 12월 구축·가동된 타행환시스템 이용실적 또한 첫해인 1990년에는 일평균 21천건, 180억원이었던 것이 1995년 중에는 일평균 471천건, 11,761억원으로 각각 건수 22배, 금액 65배로 급신장하였으며 지속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면에 있어서 금융전산망사업은 1988년 4월 6일 확정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에 따라 대고객서비스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제거, 전국의 1일 결제권화, 전자자금이체의 보급, 금융정보의 체계적 수집·이용, 선진금융기법 도입 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편의증진, 금융시장 발전도모, 신용사회 정착유도, 국가 경쟁력확보를 목표로 제1단계(1988년~1991년)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은 물론, 2단계(1992년~1996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당초의 CD, ARS, 타행환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이외에 대상업무와 서비스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행 공동이용시스템의 정비·확충, 기존 금융전산망 자원의 최대활용, 신규공동이용시스템의 집중개발, 금융전산망의 안전대책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판매대금자동결제망, CMS(Cash Management Service) 등 대고객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 무역자동화망, 경찰전산망 등 대외전산망과의 접속을 추진하는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였다.

또한 직불·신용카드 단말기사업과 온라인 송수신업무 등 VAN수익사업을 개시하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의 어음교환업무와 은행지로업무에 있어서도 금융편의제고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제도·운영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음교환 물량의 대폭적인 증가에의 대처방안으로 서울지역 어음교환처리를 기계화하여 당원에서 집중처리하였고, 1985년 8월 3일 교환소 중심의 처리에 한계가 있어 어음교환 분산처리제도를 도입하여 교환어음의 원활한 처

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설립당시 전국 5개권역 21개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상호교환이 1995년말에는 6개권역 42개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어음교환소 설치 및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여 어음교환소를 당초 40개소에서 50개소로 어음교환 참가지역을 전국 57개시 45개군에서 71개시 67개군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고객의 자금화 편의를 위하여 1987년에는 정액자기앞수표의 대지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호교환권역 소재점포에서 발행한 정액자기앞수표의 수납지역 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정액자기앞수표의 결제 소요기간을 종전 4~7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다.

한편 어음교환량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은행의 인적·물적비용을 절감하고 현송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음·수표 수납점보관제도(Check Truncation)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교환어음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수표발행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그 발행량이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제도도입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다.

은행지로업무에 있어서는 서울지역 자동차세의 지로수납을 실시하고 일반계좌이체업무와 전기 및 전화요금의 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국세 자동계좌이체의 은행지로제를 실시하였으며, 납부자자동계좌이체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한편 지로업무량 폭증에 대처하여 지로OCR처리필 장표의 발송생략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부산권역(부산외 6개지부 관할지역) 지로수납장표의 부산센터 분산처리체제를 구축·가동하였으며 첨단 장표처리기법인 IPS(Image Processing Syste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중개업무에 있어서는 외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외환거래실과 원화콜거래실을 통합하여 자금중개실로 개편하였으며, 외화콜거래 및 시장평균환율 산출·고시업무를 추가하였다.

또한 경영구조에 있어서도 외국은행의 금융결제원사업 참여허용 절차를 마련하여 당원 정관, 사원·준사원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함으로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당원 사업참여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당원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사업별 특별참가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자율경영체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사결정기구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조직에 있어서도 발족 당시 5부 1실 40개 지부에서 현재는 7부 2실 4부속실 49개지부로 확대되었고 인원 또한 발족 당시 538명에서 1995년말 현재는 765명으로 증가하였다.

外銀지점에 은행전산망 개방

가입비 대폭 현실화

제1편 연혁 · 78

제2절 설립과 경영기반 구축

1980년대초 세계 각국은 정보사회를 지향하여 국가차원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었으며 급속한 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산업기술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정부 행정, 기업과 공장운영, 가계생활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이른바 "정보사회"가 전개되고 있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유지하면서 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술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의한 기술 개발력의 증강, 생산현장의 합리화와 투자 효율화를 통한 생산능력의 확대, 산업의 유기적 분산과 생산소비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경제·사회의 효율성 증대, 사회 구성원의 공평성 제고 그리고 정부, 기업, 국민의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생활 흐름의 표준화와 국제화 등이 필수적이며 이는 정보산업육성과 사회 전반의 전산화, 즉 국가전산화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래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동시에 통용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기반으로서의 국가전산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었으며 금융시장 측면에 있어서도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금융전산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국가·사회경제적 요청에 따라 제반 법규정비 및 준비과정을 거쳐 당원은 1986년 4월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등 준비작업을 거쳐 동년 5월 23일 임원선출 및 임원의 등기 등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완벽한 탄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행지로관리소를 흡수·통합하는 등 영업개시 준비를 마무리한 후 1986년 6월 2일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계 주요인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으며, 본부의 5부 1실과 전국 40개 지부에서 원장을 비롯한 538명의 전 임직원이 일제히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당원 역사의 서장이 열렸다.

이와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확립과 금융전산망의 구축·운영 전담사업기관으로 설립된 당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그 성격면에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사원은행의 공동이익 증진과 금융산업발전 및 대국민 편의증진이라는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즉 사원은행의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산업 발전 및 국민의 편의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익법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제도 전담운영기관이라는 점이다. 어음교환, 은행지로, 금융전산망, 외국환 자금중개 등 우리나라 지급결제거래의 총본산으로서 경제·사회적 책임과 소임이 막중하고 당원의 사업이 곧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셋째, 금융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전담기관으로서 당시 국내 금융기관의 전산화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에도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수년 내에 구축해야 하는 소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금융기관은 본·지점간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개별기관별로 업무처리체계가 달랐고, 전산화방법도 상이하여 이를 은행간 전산망으로 연계·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었다.

넷째,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사원은행 분담에 의존하여 경영상의 제약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전산망사업과 지급결제제도의 효율화사업은 일시적인 선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인적·물적 재원이 소요됨에도 사원은행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었다.

당원 발족 첫해인 1986년과 1987년은 전산화사업의 수용태세가 미흡한 여건 속에서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1986년 7월 금융전산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명실상부한 금융전산화 전담사업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법인 성격상의 제약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거쳐 구축한 전산망을 2,3년 이내에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임을 완수함은 물론 당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경영기반 조성에 전 임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지급결제업무 전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영 전반의 기틀을 다진 기간이었다.

먼저 업무면에 있어 어음교환업무와 은행지로업무는 상호독립적인 업무로서 기존에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에서 각각 운영하여 왔던 관계로

양기관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40여개의 지부조직을 통하여 참가지역확대 등 업무의 저변확대에 주력하였다.

어음교환업무에 있어서는 어음교환 광역화를 목적으로 5개 어음교환소를 신설하고 상호교환지역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1985년 8월부터 어음교환량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도입·실시한 어음교환 분산처리체제를 정착시키고 어음교환 통계업무의 전산화 등 사무자동화, 미결제어음통보제도의 토요일 확대실시 및 타지자기앞수표 등 교환결제제도 개선과 정액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의 대지급제도실시 등을 통한 국민의 어음·수표이용 편의제고를 적극 도모하였다. 또한 콜거래 및 외환거래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금융자금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콜자금공급은 한은차액결제방식으로, 콜자금상환은 어음교환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개선을 추진하였다.

은행지로업무에 있어서는 기관통합에 따라 40여개 지부를 통한 지로실물의 수납 및 본지부간 자료송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로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에서의 지로이용기관 확대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지방세의 지로화, 대상서비스의 실시지역 확대 등 사업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금융결제원의 발족에 따라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기반조성이 필요한 것은 금융전산망의 구축사업이었다. 당시 당원에는 전산개발인력이 어음교환과 은행지로시스템 개발 등 거의 뱃치(Batch)업무에 대한 경험만 있을 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간 전산망인 금융전산망의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추진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다. 또한 은행 점포의 전산화도 1987년말 현재까지 일부 특수은행에서는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금융전산망 구축추진 여건(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용여건)이 미흡한 속에서 우선 금융전산망 구축추진기구의 정비와 추진기본계획의 성안이 급선무였다. 금융전산망 추진을 위한 범 금융권 내에서의 추진기구로는 실질적으로는 1984년 9월에 금융전산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1987년 6월로서 기존의 금융전산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발족됨과 아울러 동 추진기구 운영을 위한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요강」이 제정되면서 부터였다.

이에 따라 1987년 7월 당원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제3호에 의거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었다. 그후

금융전산망 구축 및 운용 전담사업자 지정(1987.7.24)

1988년 4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를 거쳐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이 국가 기간 전산망 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따라서 1986년 6월 당원이 발족한 이후에도 사실상 금융전산망의 구축·추진 기본방안이 없었던 관계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나 CD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외국의 CD공동이용 현상조사와 아울러 CD개발팀 구성 및 교육, 현금카드 표준화 및 카드 발급기 공동이용방안의 수립 등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결작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사업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계획(안) 검토, 합리적인 기종선정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CD공동이용시스템 개발은 데이터통신과 관계되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요건 결정시 실무 및 이론을 자문받을 수 있는 전문가도 위촉·운영하였다.

1987년 중에는 CD공동업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CD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농협외 10개은행 11명을 당원에 파견근무토록 하였으며 각 행과의 인터페이스 접속방법과 현금카드사양, 표준카드(양면 M/S카드), 전문양식, 전문코드 표준화 등 표준화·통일화 사양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CD공동이용시스템 기본설계서 작성 및 시스템 설계를 완성하여 시스템 개발방법을 Package를 활용한 Turnkey Base 방법으로 개발하였으며 1987년 12월 22일 네트워크 테스트가 완료된 은행부터 개별 테스트를 개시하는 한편 CD공동업무 관련규약 및 세부처리지침 등도 제정하였다. 시스템 개발방법에 있어 당초에는 내부 인적 자원을 활용, 자체개발을 상당기간동안 추진하였으나 경험부족 및 조기구축 필요성을 감안, Turnkey Base 방식으로 추진토록 변경한 것이다.

한편 각 금융기관들도 개발추진팀을 구성하여 당원에서 결정한 표준화·통일화 사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H/W 및 S/W를 구입·설치하고 당원 중계시스템에의 접속 및 테스트 등을 실시하였으며, 당원은 1987년 7월부터 8월의 기간 동안 전산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당원은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1987년 12월 31일 프로그램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9월 22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음성정보서비스(ARS) 공동운용시스템 구축 추진에도 착수하였고 타행환업무도 타당성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경영관리면에 있어서도 1986년 6월 2일 새로이 발족되면서 정관 등 41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기구통합에 따른 제반 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여 당원 발족에 따른 사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양기관의 제반 상이한 부분을 최대한 조정하여 업무체계 정립에 주력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적평가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1987년에는 사무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사옥확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성안하고 건물구입시 세제상 지원을 재무부 세제국에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옥확보사업은 부득이 중단된 바 있다.

당초 사무실은 본관이 중구 명동 1가 4-1번지 전국은행연합회건물 구관 5개층을 무상사용하고 지로업무부와 금융전산추진부는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을 유상임차 사용하였으나, 1987년 12월 14일 어음교환부 및 콜거래실 이외의 임원실, 총무부 및 감사실 등을 포함하여 본부를 강남구 삼성동 171-2번지 소재의 한국감정원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1986년 중에는 CD공동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각 부서의 전산요원을 금융전산추진부내 CD전담반(34명)으로 파견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책임자자격고시제도를 도입하고 연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된 양기관의 인원을 부서별·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여 금융전산망업무 등 신규업무 소요인력에 충당하였으며 지부의 어음현송운전기사 용역제 및 특수인력사용을 도입, 운영하였다.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 지원 및 시설관리에 주력하여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추진을 위한 사무실과 전산실관련 조성공사 등 환경조성을 적기에 완료하였고 금융기관 전용전화교환기도 공전식에서 전자식 자동전화교환기로 교체 완료하였다.

한편 1986년 6월 2일 은행지로관리소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개시하여 동년 9월 은행지로관리소에 대한 채권신고 마감을 위하여 일간지에 3회에 걸쳐 채권신고최고를 하였으며 동년 11월에 잔여재산의 금융결제관리원앞 이관허가를 얻어 동년 12월 이관을 완료함과 아울러 중부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또한 당원이 업무를 개시한 후인 1986년 6월 16일에는 CIP제정실무반을 구성, 운영하여 동년 7월 31일에 당원의 원훈을 「인화·지성·창의」로 정하는 한편, 심볼마크외 8종, 서식류 9종, 사인류 8종, 차량류 1종을 표준화하였고 당원 영문명칭을 현행의 KFTC(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로 확정하였다. 또한 발족과 더불어 당원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은행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관련기관과의 금융전산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당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었다.

제3절 기반확충과 정착

1986년 당원 출범이후 1987년말까지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전산망의 구축운영 전담기관으로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수행과 경영의 기반을 다진 기간이었다면,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전산망 등 각종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운영 및 지급결제서비스의 개선·확충을 통하여 사업과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정착시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동안 당원은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이용시스템, 자동응답서비스(ARS) 공동운용시스템 및 타행환시스템 등 제1단계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을 계획된 일정 이내에 성공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서비스 대상업무와 실시지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당원의 능력을 대내외에 크게 과시하였고 이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당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당원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은 물론 사업영역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지급결제제도 운영면의 개선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의 선진화 토대를 강화해 나갔다.

당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동 기간 중 처리실적면에서는 1987년중 지급결제 처리건수가 일평균 1,550천건, 5.2조원이었던 것이 1991년 중에는 4,382천건, 20.6조원으로 건수 2.8배, 금액 4.0배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다.

개별사업측면에서는 먼저 어음교환업무는 참가지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88년부터 1991년의 기간중에 18개 시군지역을 신규참여토록 하고 2개

金融革命의 물결 ②
電算化와 서비스革新
현금 필요없는 사회
카드가 모든 決済수단으로
금융전산화와 서비스혁신(1988. 11. 17)

어음교환소를 신설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1988년도에는 거래정지처분제도의 강화사업을 중점추진하여 가계수표 발행인에 대한 통지범위를 전 참가은행앞으로 확대하고 사고신고담보금제도를 개선하여 정당한 어음소지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담보금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지급정지가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년간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 부도 3회 발생시 거래정지처분토록 하였으며 정액자기앞수표 100만원권을 신설하였고 어음교환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NCR시스템을 IBM Main System과 TRACE 1000 R/S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전산처리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1989년도에는 서울지역 어음교환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야간교환은행 참가기준을 완화(전체 교환장수의 5%이상 → 1%이상)하였으며 교환대상어음에 무역어음(환어음)을 추가하였다.

1990년에는 교환 회부대상어음에 은행신용카드 차액결제대금영수증과 현송금영수증을 추가하였으며 교환제도의 개선추진에 참고하고자 동경어음교환소 규약해설집을 번역·발간하는 등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부도관리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비효율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1991년에는 농협중앙회를 야간교환에 참가토록 하고 교환어음중 정액자기앞수표의 지급은행 본점보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어음교환 통계활용의 효율성과 편의제고를 위하여 어음교환통계자료집(1960년~1990년)을 발간하였다.

콜 및 외환거래업무에 있어서 원화콜거래업무는 당초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1989년 10월 4일부터 수익사업체제로 변경, 운영하고 콜거래 중개방법을 집중거래방식에서 전화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콜거래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국신용평가(주)와 한국신용평가(주)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외환거래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하여 AP, Reuter 통신단말기를 설치운영하였고 외화자금거래 중개업무를 개시하였다. 1990년에는 외환거래 중개업무를 전산화하고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경에 따라 외환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당원에서 시장평균환율은 물론 주요 25개국의 통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을 산출·고시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외환거래의 현물환거래 1일 가격변동폭을 확대(±0.4%→±0.6%)하고 외환거래의 선물환대상물을 O/N (Overnight) 1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화콜거래의 중개대상통화에 일본엔화를 추가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은행지로업무에 있어서는 1988년부터 1991년의 기간 중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처하여 처리체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종 지로서비스 실시지역확대 및 지로대상업무 확대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로이용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1988년부터 1991년의 기간 중 신규로 5,734개의 업체가 증가하였다. 제도·운영 개선면에 있어서는 1988년 통합공과금 수납이체업무의 실시지역을 서울전역과 부산, 광주광역시로 확대하였으며 MICR 및 정액OCR장표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장표건수를 R/S기로 집계토록 하고 Reject Re-Entry시스템을 도입, 통합공과금 오류정정방법을 개선하였다.

1989년에는 자동계좌이체업무를 온라인 출금가능한 전국 전 점포에 확대하는 한편 지로 입출금자료를 M/T화하고 통합공과금업무에 Reject Re-Entry 시스템을 도입, 실시하는 한편, MICR장표 수수료를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고 지로과태금제도를 신설·운영하였다.

1990년에는 통합공과금업무를 도청소재지 및 인구 40만 이상의 11개시 지역에 확대하였으며 지방세업무에 서울시 주차위반과태료 수납업무를 추가하였고, 지로이용홍보를 위하여 은행지로제도 교육용 비디오테이프을 제작 배포하였다. 또한 처리체제 개선을 위하여 B장표 계좌명 처리방법을 전산화하고 지방세 Reject Re-Entry시스템을 도입, 가동하였으며, 지로일계표는 각행 수납점에서 엔코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1991년에는 189개 대량이용업체에 대해 처리필OCR장표의 발송을 생략하였으며 Reject율 감소를 위하여 수납인 잉크색상을 변경하고, MICR장표의 OCR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IPS(Image Processing System) 등 지로업무 처리방법 개선방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도 개시하였다.

금융전산망업무에 있어서는 1988년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이용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동년 7월 국책은행 및 12개 시중은행 전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동년 10월 20일 지방은행 전점포에 확대실시한 이후 지속적인 참가기관 확대와 신규서비스 추가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1988년에는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CD공동이용시스템 온라인 차액결제, 지로차액결제업무에 적용시행하였으며 음성정보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과 타행환시스템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기반을 조성하였다.

1989년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1단계로

금융조회 및 안내업무를 대상으로 조흥은행 포함 13개 은행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타행환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우선 1단계로 1989년 12월 현금입금 승인거래와 추심업무를 기업은행외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전산망의 1단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은행간 지급결제기구인 SWIFT가입을 추진하여 1989년 8월 국내SWIFT이용자규약을 제정하고 49개 은행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1990년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업무에 은행계 신용카드의 정보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10개 지방도시 확대실시 및 서비스업무 추가와 CD공동업무, 타행환업무의 참가은행 확대 등으로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및 금융기관의 사무합리화에 기여하는 한편, SWIFT가입을 위하여 1990년 8월 2일 국제특정 통신회선 사용계약 및 특약을 데이콤 및 SWIFT와 체결하였으며, 데이타의 원활한 전송과 통신회선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통신전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영관리면에 있어서는 1988년에는 직제규정을 개정, 각 부서의 세부업무 분장을 원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업무관련 각종 제재금·과태금의 적립방안을 확정하였으며 당원 업무전반에 대한 통할·조정 및 기획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총무부내에 기획실을 신설하였고 당원 업무 이용활성화와 대외 위상제고를 위한 국·영문 소개서와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주요업무 연혁집을 발간하였다.

1989년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과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년도별 업무계획의 수립·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고 어음교환부내에 자금중개실을 신설,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효율적인 지부운영관리를 위하여 모지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또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목적사업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지침에 따른 콜거래중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부산권역의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 등 부산지부업무 전산화방안을 검토, 입안하여 중점 추진하였으나 당원 집중처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이유로 관련기관과의 협의 도중 유보된 바 있다.

1990년에는 당원 CI를 정비하여 메뉴얼을 발간하였으며 당원의 심볼마크 및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한 바 있다. 또한 예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본지부

예산통합관리방식의 도입,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분산되어 있던 당원 사무실의 한국은행 전산센터로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 이전전담반을 설치·운영하였다.

1991년에는 당원의 사원, 준사원 가입에 관한 지침과 기본재산의 운용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총무부내에 급여후생과를 설치하였다.

제4절 안정성장과 발전

창립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전산망을 성공적으로 개발 구축하여 조기에 정착시키고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지급결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와 운영개선을 통하여 당원의 발전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2년에서 1995년의 기간중에는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경영면에 있어서는 금융의 국제화·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사업별 특별참가제도를 신설하고 제2차 중기발전계획(1992~1994년)과 제3차 중기발전계획(1995~1997년)을 통해 장기 업무발전방향을 성안, 운영하는 한편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여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본·지부 경비분담기준을 일원화하고 각종 분담금을 은행본부가 일괄분담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관리체제를 구축하였고 삼성동 한국감정원빌딩과 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건물 등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실을 현재의 역삼동 본관건물로 이전, 입주함으로써 사원은행과 고객의 이용편의제고는 물론 사무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부 등 4개지부 사옥을 확보하였다.

대구지부

아울러 CITI은행의 어음교환, 은행지로 및 타행환공동망사업 특별참가와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의 은행지로사업 및 금융전산망사업 특별참가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당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금융자유화추진의 일환으로 당원업무관련 서비스수수료를 자율화하였으며 VAN 수익사업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체 재원조달 기반을 조성하였다.

업무처리실적면에서도 전체 지급결제량이 매년 30%이상씩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 사원은행의 수익성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매년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금융전산망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CD, ARS, 타행환 업무실적이 매년 70~80%이상 급증하고 새로운 전자자금서비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전체 지급결제량에 대한 전자자금이체 비중을 크게 높여왔으며, 아울러 각종 제도·운영면의 개선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어음교환업무에 있어서는 동 기간중 4개 어음교환소가 신설되고 1개시 14개군이 신규로 어음교환에 참가하였으며 제도·운영면의 개선에 있어서는 1992년에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1993년에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징수에 따른 교환량 감소로 시행시기가 유보된 바 있으며, 상호교환지역에서 발행한 정액자기앞수표를 당지교환에 회부토록 개선하여 현송물량의 80%를 감소시켰다.

1993년에는 상호교환제도를 개선, 상호교환지역의 부도어음반환시각을 사유발생지역에 한하여 연장토록 하였으며 부도자의 거래정지처분기준을 완화, 연간 부도어음입금 가능회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하고 부도신고 및 통지취소 제도를 신설하였다.

1994년에는 상호교환지역 소재점포가 발행한 일반자기앞수표에 대하여도 당지에서 교환결제토록 개선하고 부도어음의 직접반환에 따른 불편과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교환을 통하여 부도어음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거래정지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거래정지처분효력 일시정지제도를 신설하고 취소신청사유에 전자결제시스템 장애를 추가하였다. 한편, 가계수표부도관리를 강화하여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사유로 인한 부도횟수가 연간 2회이면 거래정지처분토록 하였다.

1995년도에는 재해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을 제정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였고 전국어음교환소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어음교환소 설치 및 광역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부도어음신고서 입력방법을 개선하여 대폭적인 업무효율화를 기하였다. 또한 가계수표 부도증가에 대처하여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 발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어음교환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커다란 발전과 개선을 이룩하였다.

자금중개업무에 있어서 1992년도에 콜거래중개 대상통화에 마르크화를 추

가하고 전화자동녹음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외환시장 정보통신채널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개시설 및 업무의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여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외화콜거래 정보의 전송방법과 외환매매 정보제공관련 통신접속방법을 개선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환율고시 대상통화에 중동지역 4개국 통화를 추가하고 외화콜거래중개 대상통화에 파운드화를 추가하는 한편 선물환거래종목에 분기물 4종 추가, 환율 1일 변동폭 확대, 미달러화 기준환율 고시시각의 변경(09:00 → 08:30) 등을 통하여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정부의 외환중개전문회사의 설립추진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및 시장개방에 대처하였다.

1995년도에는 SWAP(원/달러) 중개업무를 도입 추진하고, 「원-달러화」선물환 평가환율의 산출방안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당일결제 현물환(Value today) 거래시간을 단축하고 환율 1일 변동폭을 MAR±1.5%에서 MAR±2.25%로 확대함으로써 중개업무의 활성화를 기하였다.

은행지로업무에 있어서는 1992년도에 급증하는 지로장표 처리량에 대처하여 권역별 지로업무 분산처리방안을 성안하고 지로장표 Reject 감소를 위하여 수납인 잉크색상을 변경시행하였으며 A장표 이용수수료 부과방법을 의뢰인부담에서 이용업체부담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등 지로제도 적용업무의 이탈방지 방안을 강구, 수납대행계약시 당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통합공과금 실시지역을 18개시에서 47개시로 확대하여 지로활성화를 기하였다.

1993년도에도 처리체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75개학교와 33개업체를 대상으로 OCR장표의 발송을 생략하고 자동계좌이체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출금결과 M/T작성방법을 변경, 출금불능분만을 수록, 송부토록 하는 한편, 국세 및 체신보험료의 자동계좌이체를 실시하였으며 이용매체를 추가, M/T 또는 F/D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지로업무 관련자료 수록매체 추가(M/T → C/T 또는 M/T), MICR장표이용업체의 IJP를 이용한 OCR장표발행 이용전환, 통합공과금 미수요금 우선납부제 폐지, 통합공과금 장표(수납필통지서) 발송생략, 자동계좌이체신청 처리결과 M/T 작성방법 표준화, 은행의 자동납부 변경신청절차 신설 등 많은 업무성과가 있었다. 또한 본부 집중처리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은행지로업무체제에서 부산권역에 대한 분산처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은행지로이용 활성화 및 확대발전을 도모하

였다.

1994년에는 자동납부신청서를 은행점포외의 수납기관에서도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계좌이체 OCR장표의 발송생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ARS를 통하여 은행지로업무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납부자자동계좌이체제도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편의제고와 사무생산성을 증진하였다.

1995년에도 IPS 도입추진, 지로실시지역 전국확대,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의 은행지로업무 특별참가, 자동계좌이체 출금결과자료 송부방법 개선, 대량지급의뢰 명세자료의 제출기일 단축과 은행지로 이용가능예금종목(개인연금신탁) 추가, 지로장표 대량이용업체의 자동계좌이체 전환유도 추진 등 은행지로제도이용 활성화와 업무처리 효율화를 기하였다.

금융전산망업무에 있어서는 1992년도에는 금융전산망과 외부 전산망의 접속원칙 완화, ARS시스템을 이용한 동일인 및 타인명의 계좌이체실시와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실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였고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인 SWIFT업무를 개시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원활한 국제업무수행에 기여하였다.

1993년에는 CD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동행내 계좌이체와 타행간 계좌이체시스템의 개발추진, 타행CD기를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업무실시,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한 송금한도 확대와 ARS시스템을 이용한 타행환계좌이체 추진, ARS 자기앞수표 조회업무의 10개 지방도시 확대 및 이용시간의 24시간 확대실시와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음성문 개선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점외 CD/ATM 및 경찰전산망과의 접속추진으로 금융전산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원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전산망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최신 전산기법의 소개를 통하여 업무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1994년도에는 CD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타행간 계좌이체실시, ARS공동운용시스템의 가계수표 사고조회 및 신고업무실시, 타행환 송금한도확대, 직불카드관련 금융VAN 수익사업체제 구축, 종합무역자동화망(KTNet)과의 접속 가동, 일괄전송 전용시스템 구축, 금융전산망 네트워크 정비, 서비스이용 홍보강화 등으로 금융전산망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스템 장애예방 및 사후처리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네트워크 감시를 위한 대형스크린을 설

「書類없는 무역시대」 개막

금융·무역網 접속 오늘부터 稼動

금융망과 무역망 접속 가동(1994. 1. 25)

치 · 운영하는 등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나아가 전자자금이체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1995년에도 우체국 및 농 · 수 · 축협 회원조합의 금융전산망 특별참가, CD 공동이용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ARS공동업무 실시지역 확대,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의 타행환 송금실시, 무역자동화망 지정사업자(DACOM) 추가에 따른 접속 및 대상업무확대와 운영시간 연장실시로 서비스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기하였으며 IC카드의 표준개발, 펌뱅킹 서비스의 화일포맷 표준화 추진, 금융전산네트워크의 이중화와 우회경로 확보 등을 통하여 금융전산망운영 효율화와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VAN 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VAN 업무추진, 단말기 보급을 위한 판매유통조직 구축, Help Desk 운영 등의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지로자료 온라인 송수신업무, 민원서류 우편발급제도의 VAN서비스 추진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기반을 조성하였다.

경영관리업무에 있어서도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중 각종 신규사업의 증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5부 2실 2부속실이던 조직이 7부 2실 4부속실로 확대되었고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조직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원가를 제정하였으며 사보「금융결제원 소식」을 창간하였다. 이후 당원의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전략팀을 신설하고 기존의 조사홍보과를 폐지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의 도입 ·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여자사원제도를 폐지하고 종합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여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 · 시행하였으며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정규 · 비정규 인력의 적정사용, 각종 연수강화 등을 통하여 각종 업무증가에 적의 대처하였다.

제2편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도입과 발전

제1장 어음교환제도

제2장 은행지로제도

제3장 금융전산망의 구축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지급결제제도란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금전적 가치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장치를 총칭하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중계센터 및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은행제도가 도입되어 현금 이외에 어음·수표가 주요 지급결제수단으로 유통된 것은 1910년 7월 경성수형교환소가 한국은행내에 개설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어음교환제도와 환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사회가 고도로 다기화되고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되어감에 따라 대량의 지급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의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인 은행지로제도를 1977년 도입하여 장표와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 및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초 은행계 신용카드가 도입되고 중반이후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금융기관의 전산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은행간 공동전산망인 현금자동인출기(CD), 자동응답서비스(ARS), 타행환시스템이 구축되어 자금결제, 정보조회, 송금 및 자료 송수신 등의 금융업무를 금융기관의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펌뱅킹, 홈뱅킹 및 직불카드 등 새로운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1986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수단중 어음·수표는 어음교환소, 은행지로는 은행지로관리소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이후 양 기관이 통합하여 지급결제전담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발족되고 5대 국가기간전산망중 금융전산망을 전담 운영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기관에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은행, 우체국 및 신용카드회사 등이 있고 그 중계센타로서 금융결제원 그리고 참가기관간 최종적인 자금결제와 지급결제관련 정책 및 감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있다. 당원은 어음교환제도, 은행지로제도 및 5대 국가기간전산망인 금융전산망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국민의 금융편의 증진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급결제수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액결제의 편리성과 현금선호성향이 높아 현금과 전통적인 어음·수표 특히 자기앞수표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은행지로 및 금융전산망을 통한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금융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신용사회의 진전으로 지급결제규모가 매년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년 6월 이후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당원업무에 특별참가함으로써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서도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재의 시장경제하에서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거래가 실행되는 통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가 급속히 확대되고 국민경제에서 지급결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면서 결제시스템상의 리스크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제반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원을 비롯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서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제1장 어음교환제도

제1절 어음교환제도의 의의

어음·수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시대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인들간에 무역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환어음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어음의 효시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산업혁명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히 전개된 17세기에는 무역대금의 결제를 위한 환어음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대금을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통하여 결제하게 되었고, 은행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함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서 어음·수표가 주요한 지급결제수단이 되었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자신이 받은 어음·수표대금을 청구하려면 지급인에게 직접 실물을 제시하여야 하나, 수표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급인의 자격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고 어음도 대부분이 은행거래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므로 어음·수표의 지급제시는 은행에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급점포가 먼 거리에 소재한 경우에는 직접제시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지인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어음·수표대금의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다.

신용거래의 발전으로 어음·수표가 대량 유통되면서 은행간에는 어음·수표의 거래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 바, 어음교환은 은행제도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간편한 지급결제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어음교환이란 일정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받은 어음·수표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서로 교환하고 그 교환차액만을 주고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제2절 어음교환제도의 기원

은행간의 어음교환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73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런던어음교환소에서의 어음교환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당시 런던에 있던 약 30개의 은행은 타은행이 지급장소로 되어 있는 어음·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직접 상대은행에 일일이 돌아다녔으나, 이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의 거래원들이 롬바아드가(Lombard Street) Five Bells라는 카페에서 만나 서로 수취할 어음을 교환하게 되었다. 그후 은행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Five Bells의 한 방을 빌려 어음교환실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1773년에 이 어음교환실의 사용료 지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19세기 후반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어음교환소의 설립이 진행되었다. 뉴욕에서는 1853년 은행이 57개로 늘어나 신속한 대금수취와 간편한 결제방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생겨 어음교환소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보스톤(1856년) 등 각지에 설립되었다.

유럽에서는 1864년 오스트리아 빈을 시작으로 1872년 프랑스 파리, 1883~1884년에 걸쳐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에 차례로 설립되었는데 이들 모두 런던, 뉴욕의 어음교환제도와 동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어음교환제도의 토대가 된 일본은 1879년 12월 대장대신의 인가를 얻어 오사카(大阪)어음교환소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1887년 12월에 제2의 어음교환소인 토쿄(東京)어음교환소가 설립되었다.

어음교환소는 어음·수표의 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법률적으로도 그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인정함에 따라 어음법·수표법상에 특별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지정제도로 발전되었다. 어음교환소 지정제도는 1906년 오스트리아 수표법에서 최초로 채택되었고 1908년 독일 수표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이후 1931년과 1932년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통일 어음법·수표법 제정으로 어음법에서도 어음교환소 지정제도를 채택하였다.

제3절 우리나라 어음교환제도의 도입

1. 어음교환소 설립전의 상황(1876년~1910년)

가. 근대적 은행제도의 성립과 발전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은행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재래의 대금업자인 객주, 외획(外劃)*, 계 등이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용수단으로는 전통적인 어음제도(於音制度)가 있었다.

* 외획 : 군수가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기 전에 직접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지시하는 탁지부대신의 명령으로, 관청간의 송금(지방관청의 경비지출을 필요로 할 때, 국고에 임시차입금이 필요할 때 등)과 민간송금을 국고로 인수한 때(상행위상 환송금의 필요가 있을 때, 상인으로부터 이를 국고에 의뢰해 왔을 때 등)에 내려진다.

근대적인 은행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문호가 개방된 이후 1878년 6월에 일본 다이이찌(第一國立)은행(1896년 제일은행으로 개칭) 부산지점의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1889년 제18은행, 1892년 제58은행의 한국 지점이 각각 설치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은행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으며, 일본은행의 진출에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 상공인들은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적 금융기관의 창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 존속하는 민족계은행은 1897년에 설립된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과 1899년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한국상업은행의 전신)이 있으며, 일반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담보대부 또는 신용대부와 어음발행 및 환업무를 취급하였다.

1906년 3월 21일 공포된 은행조례(勅令 제12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최초의 은행관련 법령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주요내용은 점포를 공개하고 증권의 할인, 환사업, 제예금 및 대부를 하는 자를 은행이라 하며,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이 은행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의 휴일은 명절일, 경축일, 일요일 및 은행에서 정한 날로 하였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였다.

* 탁지부대신 : 현 재정경제원장관

1905년 화폐개혁으로 인하여 금융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파산한 상인들을 위하여 1906년 한일은행(1943년 한성은행과 합병)이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 고유의 어음과 외획제도의 폐지로 중단상태에 이른 지방의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06년 3월 농공은행조례가 공포되었다. 농공은행은

농공업의 개량·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대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주식회사형태로 설립되었고, 동년 7월부터는 일반은행업무도 취급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여 동년 6월 서울에 한성농공은행이 최초로 설립된 후 계속하여 평양, 대구, 전주, 광주, 원산 등 5개 주요도시에도 설립되었다. 1907년에는 농공은행의 보조기관으로 「지방금융조합규칙」에 의하여 농촌 및 도시에 대한 금융기관으로서 지방금융조합이 설치되었다.

〈표2-1-1〉 예금과 대출금 비교(1910년 6월말 현재) (단위: 원, %)

구 분	예 금	비 중	대 출 금	비 중
민족계은행	1,790,783	17.8	2,008,100	16.0
일본계은행	8,262,836	82.2	10,573,939	84.0
합 계	10,053,619	100.0	12,582,039	100.0

자료: 「한국재정시설요강」 p168

나. 어음유통 및 수형조합

1905년 9월 30일 통감부는 약속수형조례와 수형조합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금융공황의 원인이 백동화어음(白銅貨於音)의 남발이었다는 구실로 우리나라 전통어음의 발행을 금지시키고, 수형조합원에 의한 약속수형 발행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906년 1월 한성수형조합이 발족되었다. 수형조합은 조합원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어음의 사용을 장려하였고, 은행에서도 가장 낮은 이율로 할인해 줌에 따라 어음의 효용성이 점차 인정되어 어음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수형조합조례(탁지부령 제15호)의 주요내용

제1조 수형조합은 상업의 덕의를 중시하며 어음의 신용을 유지하고 또한 약속수형조례를 준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형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4조 조합원의 가입과 제명을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탁지부대신에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료: 「한국화폐금융사연구」 pp450~451

한성수형조합에 이어 1906년 3월 평양수형조합이 발족하고 10월 대구수형조합, 11월에 진주·전주·광주수형조합이 설립되었다. 1909년 6개 수형조합의 보증금액은 3,483천원, 지급금액은 3,573천원으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연간 보증금액은 36.7%, 지급금액은 63.1% 증가하였고 수형조합원수도 580명으로 약3배가 증가하였다.

〈표2-1-2〉 수형조합의 보증 및 지급금액 (단위: 원)

연 도	조합원수	전년이월금액	금년보증금액	금년지급금액	연말현재금액
1906	201	-	1,363,319	823,729	539,590
1907	433	539,590	3,733,289	3,245,069	1,027,810
1908	536	1,027,810	3,857,430	3,991,300	893,940
1909	580	893,940	3,483,039	3,572,614	804,365

자료: 「조선금융사항참고서」 pp63~64

2. 최초의 어음교환소 설립

가. 설립배경

1910년 7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어음교환소인 경성수형교환소가 한국은행내(京城府 本町 三丁目 11番戶)에 설치되었다. 어음교환소의 설립은 우리나라 화폐사나 은행의 발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이는 1910년 당시에도 경성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표로 유통되는 예금통화가 많아서 어음교환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금융백년사에 의하면 1910년 당시 한국은행 총재 이치하라(市原盛宏)가 한국은행 간부들에게 우선 경성에서라도 수형교환소를 만들어서 시중은행의 어음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수형교환소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1910년 6월 23일에는 탁지부대신이 경성수형교환소를 한국은행내에 설치한다는 인가를 내렸고, 동년 6월 29일까지 당시 경성에 본·지점을 두고 있던 은행들은 탁지부대신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수형교환소에 조합은행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1910년에는 경성에는 5개 은행의 본점(한국은행, 대한천일은행, 한성

은행, 한일은행, 한호농공은행)과 6개 은행의 8개 점포(제일·130·18은행 경성지점, 130·18은행 용산출장소, 한성·한일은행 동막〈마포〉출장소, 대한천일은행 남대문출장소)가 일반은행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

〈표2-1-3〉 1910년 6월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현황

구 분		점포수			비 고
		본점	지점	계	
중앙은행(한국은행)[1]		1	12	13	경성본점, 인천, 평양, 원산, 대구, 진남포, 목포, 군산, 마산, 성진, 부산, 나남, 신의주
농공은행		6	27	33	본점(경성, 대구, 평양, 전주, 광주, 원산)
일반은행[2]	본점은행	4	4	8	한성은행(수원지점, 동막출), 대한천일은행(남대문출), 한일은행(동막출), 밀양은행
	지점은행	-	16	16	제일은행(3), 130은행[3](8), 18은행(5)
소계		11	59	70	
금융조합		-	120	120	
합계		11	179	190	

자료: 「금융제도론」 p36

주: 1) 한국은행은 1911년 조선은행으로, 6개 농공은행은 1918년에 조선식산은행으로 통합
2) 일반은행중 본점은행은 우리나라에 본점을 둔 은행, 지점은행은 우리나라에 지점을 둔 일본계은행임
3) 130은행은 58은행이 개칭된 은행임(이후에 야스다(安田)은행에 합병됨)

나. 조직 및 인원

경성수형교환소 설립당시의 관련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한국은행에서 어음교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당시 일본에서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직접 운영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경성수형교환소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조합은행 대표자로 구성된 총회가 있었는데, 정기총회는 1년에 2회(1월, 7월) 개최되었고, 임시총회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2개이상 조합은행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였다. 총회는 조합은행의 신규가입 또는 제명, 위원·감사의 임면, 경비예산의 결정, 어음교환소규약의 개정 등을 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였다.

업무집행기관인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임기 1년의 조합은행 대표자 3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였으며 총회의

의장도 맡았다. 위원회는 교환소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감사 이하의 교환소 직원의 임면과 급여를 결정하며 위원장은 총회의 소집과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교환소 직원으로는 감사와 서기를 두었는데 감사는 어음교환사무 및 기타 일반서무를 담당하여 교환소를 대표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위원과 감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서기가 있었는데 그 인원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표2-1-4〉 경성수형교환소 조직도(설립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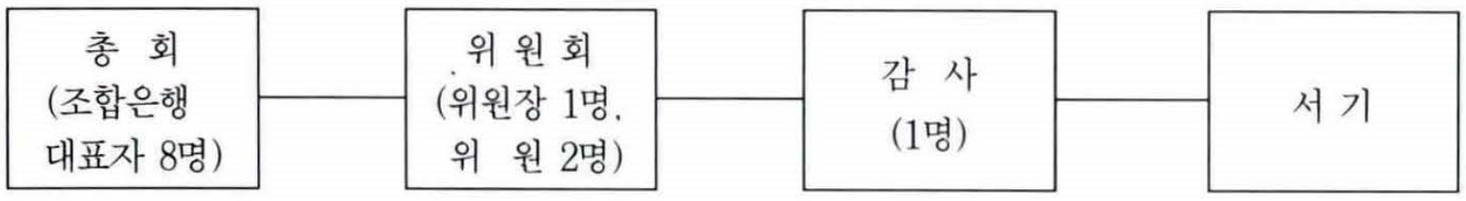

제4절 어음교환제도의 발전

1. 일제시대(1910년~1945년)

가. 금융기관의 변화 및 발전

1911년 2월 28일 조선은행법이 공포되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폐지되고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중앙은행격인 조선은행이 설립되어 예금, 대출, 환업무 등 일반은행업무도 같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중의 호경기로 인하여 자본금 5만원 이하의 소규모 은행이 많이 설립되어 1919년에는 은행수가 17개가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전세계적인 불경기와 만주사변에 이은 전시금융체제로 인하여 은행간의 합병이 진행되어 1945년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에 본점을 둔 은행은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한국상업은행의 전신) 뿐이었다.

1928년에 공포된 은행령(制令 제5호)에서는 은행을 「예금을 받고 금전의 대

부 또는 어음할인과 함께 환거래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그 설립은 자본금 200만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한정하였다. 또한 지급준비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어 예금총액의 10% 상당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하였다.

〈표2-1-5〉 일제시대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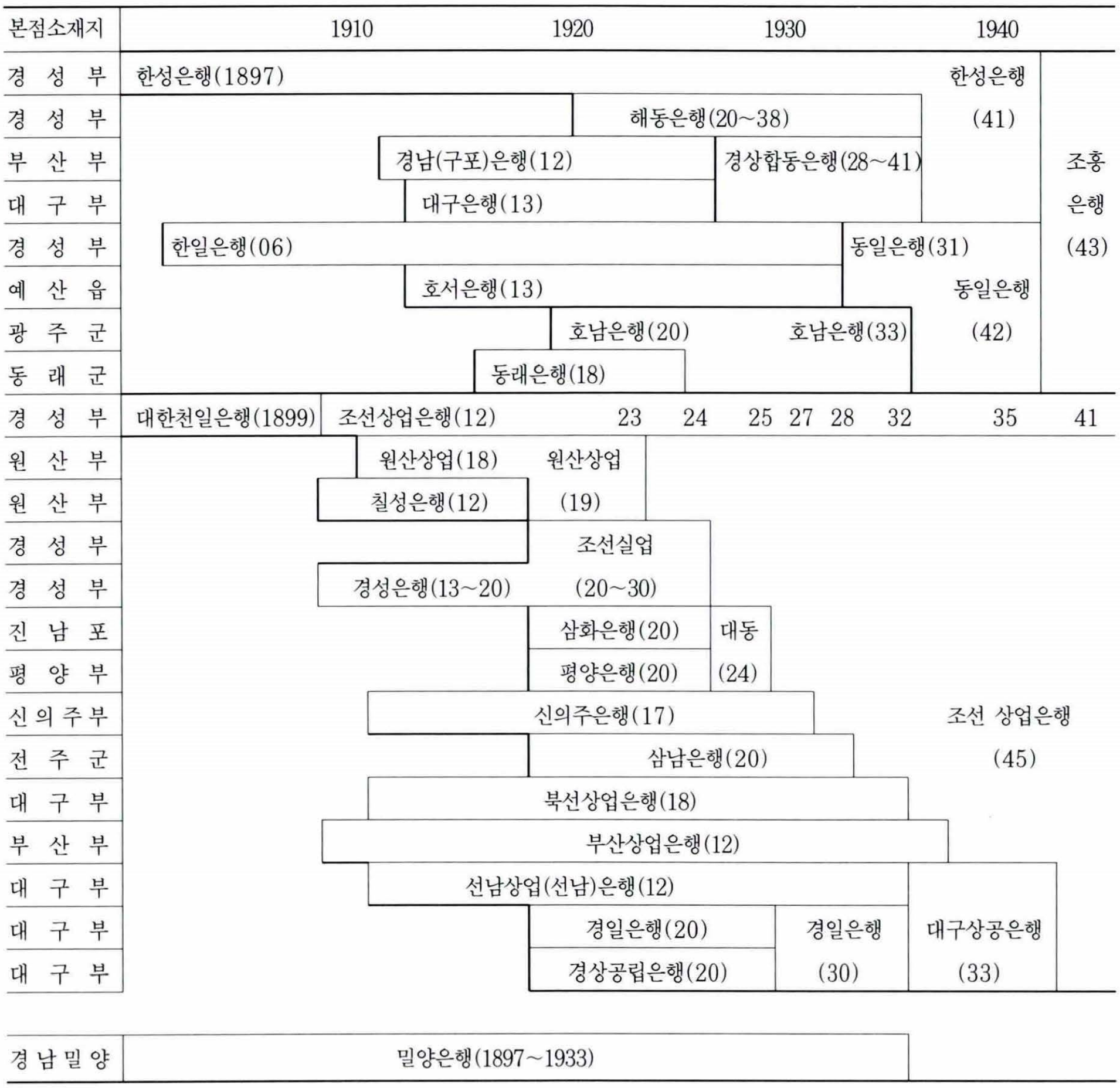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의 일반은행사」 pp38, 97, 161, 226 참조
주: ( )은 설립년도 또는 존속기간

특수은행으로는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과 조선저축은행(朝鮮貯蓄銀行)이 있었는데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공포된 조선식산은행령에 의하여 6개농공은행의 업무를 인계받아 설립되었고 농공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이외에 일반은행의 업무도 취급하였으며, 조선저축은행은 1929년 7월 저축은행령에 의해 설립되어 영세자금의 성격을 가진 저축예금을 취급하였다.

1918년 10월에 조선금융조합령이 실시됨에 따라 지방금융조합이 금융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조합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도시의 중소상공업자와 서민에 의한 시군금융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1918년에는 상부기관으로 각도에 금융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고 1933년 9월에는 중앙기구로서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발족하였다.

〈표2-1-6〉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금융추세 (단위: 천원, %)

구 분	1911	1927	1937	연평균 증감율
은행권발행금액	25,006	136,360	297,501	9.7
은 행 예 금	18,599	151,778	458,168	13.1
은 행 대 출 금	30,690	287,316	957,914	14.1
금 융 조 합 예 금	-	16,915	169,253	25.9
금융조합대출금	1,182	39,719	237,426	22.6
우 편 저 금	4,365	17,752	64,388	10.9
어 음 교 환 금 액	9,490	107,039	1,961,815	22.8

자료: 「조선금융론십강」 p180
주: 금융조합 예금의 연평균 증감율은 1927년부터 1937년 기준

〈표2-1-7〉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수 변동추이 (단위: 개)

구 분		1910	1935	1939	1941	1943
은 행	합 계	11(59)	10(187)	9(212)	7(219)	5(241)
	조 선 은 행	1(12)	1(12)	1(14)	1(14)	1(15)
	조선식산은행	6(27)	1(60)	1(66)	1(66)	1(69)
	조선저축은행	-(-)	1(5)	1(12)	1(14)	1(20)
	일 반 은 행	4(20)	7(110)	6(120)	4(125)	2(137)
금 융 조 합		-(120)	14(698)	14(723)	14(723)	14(614)
수 형 교 환 소		1	9	10	11	11

자료: 「금융제도론」 p36
주: ( )은 지점, 출장소임. 금융조합의 본점은 연합회와 지부임

나. 어음교환소의 설치 및 운영

1910년이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로 대도시와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어음·수표의 유통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조선은행 지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음교환소가 계속 설치되었다. 1910년 12월 인천, 4월 부산, 1918년 1월 평양, 1920년 2월 원산, 1921년 7월 대구, 1923년 12월 목포, 1924년 2월 군산에 각각 설치되어 1924년에는 8개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어음교환소의 증가에 따라 어음교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910년에는 59천장 20,490천원에서 1924년에는 2,099천장 939,111천원으로 14년사이에 연평균 장수는 29.0% 금액은 31.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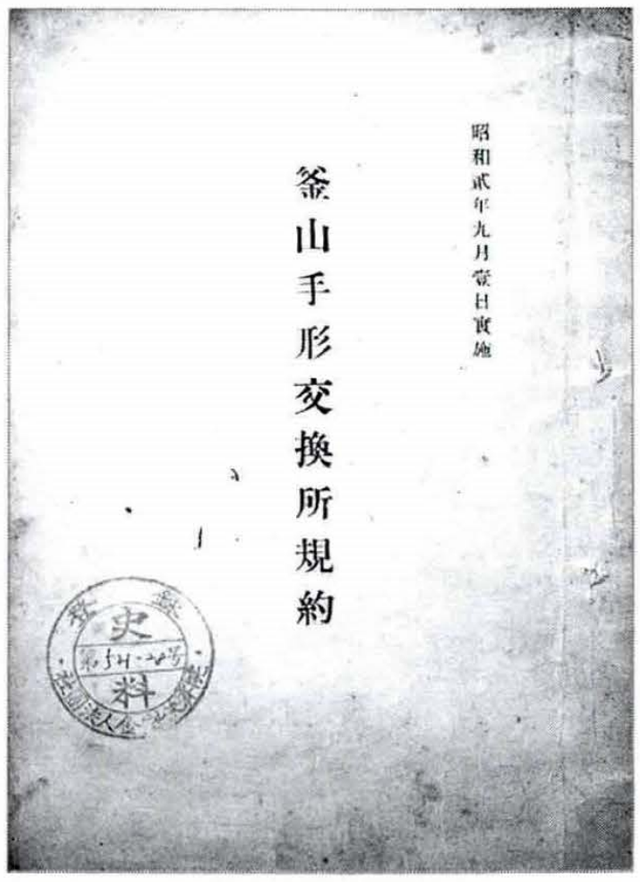
昭和弐年九月壹日實施
釜山手形交換所規約
史料

부산수형교환소규약(1927.9.1)

〈표2-1-8〉 어음교환소별 어음교환량 비교(설립년도, 1924년) (단위: 장, 천원, %)

교환소	설립년도	설립년도 어음교환량		1924년 어음교환량		연평균 증감율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경 성	1910. 7	59,419	20,490	1,180,665	504,935	23.3	25.7
인 천	1910.12	21,021	9,413	132,727	108,543	15.2	20.7
부 산	1911. 4	58,953	12,615	350,895	168,266	14.7	22.1
평 양	1918. 1	82,305	28,505	165,834	44,695	12.3	7.8
원 산	1920. 2	6,917	4,077	69,653	18,111	78.1	45.2
대 구	1921. 7	40,892	21,734	87,932	29,328	29.1	10.5
목 포	1923.12	3,540	1,916	37,213	19,004	-	-
군 산	1924. 2	-	-	74,170	46,229	-	-
전 국	-	-	-	2,099,089	939,111	29.0	31.4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p150
주: 연평균 증감율은 각 어음교환소별 설치년도에서 1924년까지의 기하평균

이에 따라, 1933년 어음교환량은 2,290천장 1,090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교환장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전시금융체제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1944년 12개 어음교환소의 교환량은 2,763천장 9,509백만원으로 연평균 장수는 2.2%, 금액은 22.5% 증가하였다.

또한 1937년부터 부도장수는 계속 감소하였으나 교환금액 증가와 마찬가지로 부도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부도장수는 1937년 3,862장에서 1944년에는 1,083장으로 연평균 16.6%가 감소되었으나 부도금액은

1,619천원에서 4,047천원으로 연평균 14.0%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도율은 계속 감소하여 1944년에는 장수, 금액 모두 0.04%에 불과하였다.

〈표2-1-9〉 부도량 비교(1937~1944년) (단위: 장, 천원, %)

구 분	1937		1944		연평균 증감율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전 국	3,862(0.13)	1,619(0.08)	1,083(0.04)	4,047(0.04)	-16.6(-0.09p)	14.0(-0.08p)
경 성	1,247(0.08)	668(0.05)	536(0.04)	2,158(0.03)	-11.3(-0.04p)	18.2(-0.02p)
지 방	2,615(0.19)	951(0.13)	547(0.04)	1,889(0.07)	-20.0(-0.15p)	10.3(-0.06p)

자료: 「조선통계연보」 pⅢ-99
주: ( )은 부도율

다. 어음교환소의 지정

우리나라 최초의 어음교환소인 경성수형교환소는 탁지부대신으로부터 단체 설립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법률적 지위에 관한 효력은 없었고 경성부내 조합은행이 임의로 만든 사설단체에 불과하였다.

일본에서는 1911년 상법 개정시 사법대신이 어음교환소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동년 12월 2일에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던 어음교환소를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17년 3월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한 일본 상법 제5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령 제17호에 의하여 당시 운영되고 있던 경성, 인천, 부산 3개의 어음교환소가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1918년 평양수형교환소로부터 1930년의 목포수형교환소까지 6개 지역의 어음교환소가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지정을 받았다. 한편, 1933년 12월 일본의 수형법(手形法: 어음법), 소절수법(小切手法: 수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제의 조선민사령에 의거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148호에 의하여 기존의 9개 수형교환소가 새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 함흥·청진·해주·광주·대전 등 5개 어음교환소가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지정을 받았다.

당시의 지정신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지만 일본에는 1933년 12월 26일 공포된 사법성(司法省) 훈령 제3호에서 수형교환소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수형 및 소절수의 교환에 관한 합의규칙 및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에는 어음교환소를 먼저 개설하고 이후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형법과 소절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33년 12월 28일 칙령 제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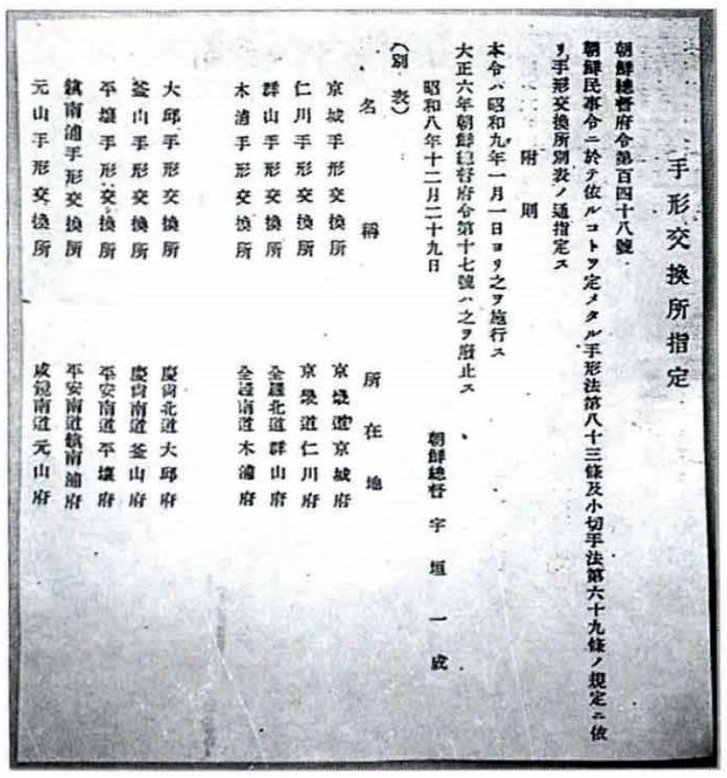

手形交換所指定

朝鮮總督府令第百四十八號

朝鮮民事令ニ於テ依ルコトヲ定メタル手形法第八十三條及小切手法第六十九條ノ規定ニ依リ手形交換所別表ノ通指定ス

附 則

本令ハ昭和九年一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大正六年朝鮮總督府令第十七號ハ之ヲ廢止ス

昭和八年十二月二十九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別表)

名稱	所在地		
京城手形交換所	京畿道京城府	慶尚北道大邱府	
仁川手形交換所	京畿道仁川府	慶尚南道釜山府	
群山手形交換所	全羅北道群山府	平安南道平壤府	
木浦手形交換所	全羅南道木浦府	平安南道鎭南浦府	
大邱手形交換所		咸鏡南道元山府	
釜山手形交換所			
平壤手形交換所			
鎭南浦手形交換所			
元山手形交換所			

수형교환소 지정(1933.12.29)

호로 「소절수법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일시되는 자 또는 시설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1934년 1월 1일부터는 금융조합과 조선금융조합연합회도 은행과 같이 수표의 지급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소절수법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일시되는 자 또는 시설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령 제2호

소절수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일시되는 자 또는 시설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34. 1. 6 조선총독 우가키(宇垣一成)

조선민사령에서 정한 소절수법 적용에 있어서 다음에 게기된 자는 은행과 동일시한다.

금융조합,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부 칙

본령은 1934. 1. 1부터 적용한다.

자료: 「수형법, 소절수법 및 관계법령」 p204

라. 어음교환소 운영기관의 변화

경성은행집회소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8개 수형교환소는 각각 해당지역에 있는 조선은행 본점 또는 지점내에 설치되었으나, 조선은행과는 별도의 조직인 해당지역 금융단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후 금융기관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업무개선을 위한 협의기관의 설치가 요구되어 1928년 10월 31일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동년 11월 1일 현 한국은행 신관자리(京城府 北米倉町 93番地)에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를 설립하여 경성수형교환소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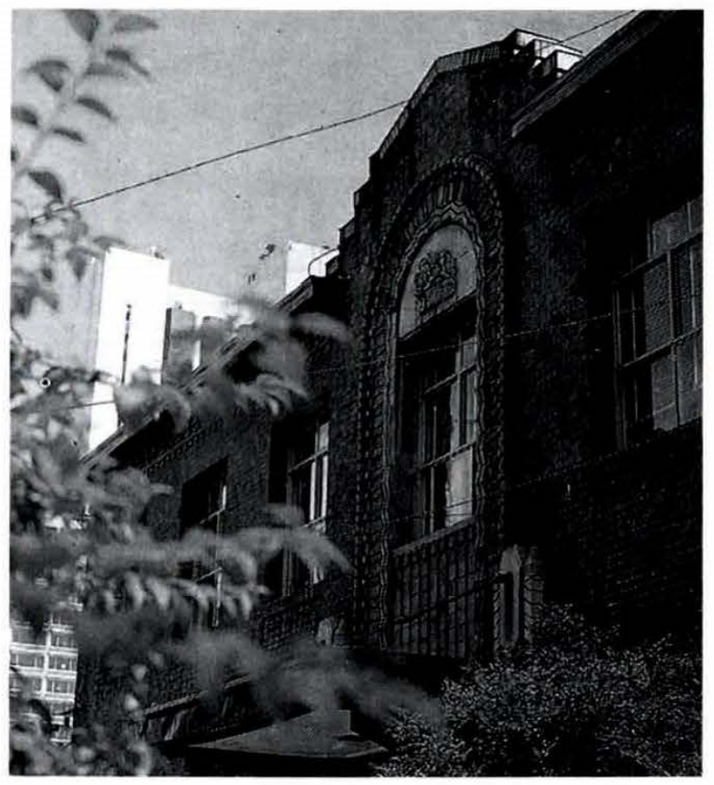

구 경성은행집회소 건물

은행집회소가 어음교환소를 운영하는 이유

은행집회소는 은행 및 경제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조직은 사단법인(동경, 경도, 경성은행집회소 등)이거나 재단법인(대판, 신호은행집회소 등)이며 이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은 거의 없다. 은행집회소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수형교환소는 수형교환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자체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은행집회소의 설비를 이용하는 면이 편리하다. 이를 위하여는 동시에 양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설비사용료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수형교환소의 가입자격에 은행집회소의 사원 또는 조합은행일 요건을 부가하는 이유이다.

자료: 「수형교환론」 p43

경성은행집회소의 사원자격은 경성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은행과 동

양척식주식회사로, 설립당시 사원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사, 다이이찌은행 경성지점, 조선상업은행, 한성은행, 야스다(安田)은행 경성지점, 야마구찌(山口)은행 경성지점, 제18은행 경성지점, 한일은행, 해동은행의 11개 은행이었다.

집회소에는 이사 3명과 서기장 1명 및 약간 명의 서기를 두었는데 이사중 1명은 상임이사로 집회소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1928년 경성은행집회소 설립시 상임이사(교환소의 위원장)는 조선은행 총재 가토(加藤敬三郎), 이사(교환소의 위원)는 조선식산은행 두취(頭取)* 아리가(有賀光豊), 다이이찌은행 경성지점장 아자가와(淺川眞砂), 서기장(교환소의 감사)은 야마우찌(山內菊彦)였다.

*두취(頭取) : 現은행장

〈표2-1-10〉 은행집회소와 수형교환소의 조직 관계

은행집회소	이 사		서기장(1명)	서 기
	상임이사(1명)	비상임이사(2명)		
수형교환소	위 원		감 사(1명)	서 기
	위원장(1명)	위원(2명)		

또한 1931년 8월 25일 부산은행집회소가 설립되어 부산수형교환소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당시 사원으로는 부산에 본점을 둔 부산상업은행 및 경남은행, 그리고 지점을 둔 조선은행, 다이이찌은행, 야스다은행, 제18은행, 조선식산은행, 한성은행, 조선상업은행 등 총 9개 은행이었다.

또한 1941년말에는 은행합병으로 경성은행집회소의 사원(가맹은행)은 1928년 설립시에 비하여 3개 은행이 줄어든 8개 은행(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다이이찌은행 경성지점, 야스다은행 경성지점, 상와(三和)은행 경성지점, 조선상업은행, 한성은행, 동일은행)이었고 준사원(객원)은 4개 기관(조선저축은행,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선신탁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이었다.

〈표2-1-11〉 일제시대 어음교환소 운영기관(1938년 당시)

운 영 기 관	설치장소	어 음 교 환 소 명
은행집회소(2개)	은행집회소	경성(1928.11~), 부산(1931. 8~)
어음교환소(8개)	조선은행내	대구
	조합은행내	인천, 평양, 원산, 목포, 군산, 진남포, 함흥

자료: 「수형교환론」 p43

2. 해방이후 정비시대(1945년~1962년)

가. 금융제도와 기관의 정비

8·15 해방으로 일본금융권과의 연계가 끊어져 금융체계가 붕괴되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저축성향의 하락으로 금융활동은 거의 정체되었고, 소련군의 진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 금융기관의 활동은 거의 정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무진회사와 신탁회사는 일반은행의 업무도 취급하였고, 조선환금은행이 설립되어 부분적인 금융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1947년 7월에는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따라 전체 은행점포의 약 25%인 107개 점포가 폐쇄되었다.

조선은행은 통화신용 조절기능을 부여받지 못하여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1950년 6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표2-1-12〉 해방이후 1962년까지의 금융기관 변화

<table>
<tr><th>1945~1949</th><th>1950~1954</th><th colspan="3">1955~1962</th></tr>
<tr><td>1. 중앙은행</td><td colspan="5"></td></tr>
<tr><td>조선은행(1909.10)</td><td colspan="5">한국은행(1950. 6)</td></tr>
<tr><td>2. 일반은행</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조흥은행(1897. 2 → 1943.10)</td></tr>
<tr><td>조선상업은행(1899. 1)</td><td colspan="5">한국상업은행(1950. 4)</td></tr>
<tr><td>조선저축은행(1929. 7)</td><td colspan="2">한국저축은행(1950. 5)</td><td colspan="3">제일은행(1958.12)</td></tr>
<tr><td>조선신탁은행(1932.12)</td><td>한국신탁은행(1950. 4)</td><td rowspan="2">한국흥업은행
(1954.10)</td><td colspan="3" rowspan="2">한일은행(1960. 1)</td></tr>
<tr><td>조선상호은행(1946. 4)</td><td>한국상공은행(1950. 6)</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서울은행(1959.12)</td></tr>
<tr><td>3. 특수은행</td><td colspan="5"></td></tr>
<tr><td>농공은행(1906. 6)</td><td>조선식산은행(1918.10)</td><td colspan="4">한국산업은행(1954. 4)</td></tr>
<tr><td colspan="3">금융조합 및 연합회(1907. 8)</td><td>농업은행(1956. 4)</td><td colspan="2">농업협동조합(1961. 8)</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2">중소기업은행(1961. 8)</td></tr>
<tr><td>대한무진회사(1948)</td><td colspan="5">한국무진회사(1950. 6) → (국민은행으로 변경)</td></tr>
<tr><td>조선환금은행(1946. 7)</td><td colspan="5">한국은행에 흡수(1950. 6)</td></tr>
<tr><td>한국수산업회(1949. 1)</td><td colspan="3">대한수산중앙회</td><td colspan="2">수산업협동조합(1962. 4)</td></tr>
</table>

자료: 「금융기관총람」 pp9~10

실질적인 중앙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일제시대의 금융법령 및 체계가 민주적인 자주금융체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쟁기간 동안에는 일정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상당기간 혼란스러웠으며, 휴전이후 1962년까지의 복구기간 동안에는 특수은행인 농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일반은행인 서울은행이 신설되어 은행수가 늘어났고 은행명칭도 시대에 맞게 개칭되었다.

나. 어음교환소의 정비

해방후 소련군이 진주한 이북지역의 평양 등 6개 어음교환소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46년초에 금융기관을 정비하면서 신용수단인 어음·수표의 사용이 억제되었고 어음교환소도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지역에서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정치상황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1949년 8월 21일 전주(법무부령 제2호), 11월 1일 여수(법무부령 제3호)에 어음교환소가 설치되어 전쟁전인 1950년초에는 10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9월 1일에는 경성은행집회소와 경성수형교환소가 각각 서울은행집회소와 서울수형교환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의 특색은 해방으로 인한 경제혼란과 엄청난 인플레이션 등으로 교

〈표2-1-13〉 어음교환량 및 부도량(1945~1947년) (단위: 장, 천원, %)

구 분			1945	1947	연평균 증감율
어음교환	전국	장수	934,250	921,671	12.6
		금액	7,760,746	111,287,350	278.7
	서울	장수	580,606	574,888	10.9
		금액	6,197,680	74,627,763	247.2
부 도	전국	장수	812	10,070	268.8
		금액	12,308	612,417	701.9
	서울	장수	678	6,971	236.6
		금액	11,555	413,438	579.5
부 도 율	전국	장수	0.09	1.09	362.4
		금액	0.16	0.55	107.3
	서울	장수	0.12	1.21	318.8
		금액	0.19	0.55	88.1

자료: 「조선통계연보」 pp100~101

환장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교환금액은 장당 발행금액이 1945년 8천원에서 1947년 121천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불안을 반영하여 부도율은 1945년에 장수 0.09%, 금액 0.16%에서 1947년에는 장수 1.09%, 금액 0.55%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경제혼란 속에서도 1951년 11월 1일 청주(법무부령 제5호), 1956년 11월 1일 마산(1956년 11월 15일 지정), 1955년 12월 13일 춘천(법무부령 제15호)어음교환소가 각각 신설되었다. 전쟁기간 중에는 어음교환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전쟁초기에 각 은행들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아 어음교환소도 전쟁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어음교환소는 1950년 7~9월, 1951년 1~10월까지 폐쇄되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어음교환량이 적었는데 특히, 1951년에는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교환량은 560천장에 2,758십억원이고, 장당 발행금액은 492만원이었다. 이 기간에 장당 발행금액이 높은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재정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이었다. 1950년에서 1962년까지의 어음교환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장수 31.4%, 금액 99.1%이었으며, 부도율은 장수기준 0.54%포인트(1962년 1.01%), 금액기준 0.25%포인트(1962년 0.39%) 감소하였다.

다. 어음교환소 운영기관의 변천

전쟁기간중에는 서울은행집회소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은행집회소내의 임시사무실에서 은행간 협의 등 한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어음교환소는 폐쇄하였다. 1951년 하반기부터 휴전협정이 시작되고 일부은행들이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동년 11월에 임시 어음교환소를 설치하여 어음교환업무를 재개하였고, 1953년 10월 정부의 환도와 함께 서울은행집회소도 서울로 이전하였다.

이 기간에는 어음교환소의 조합은행들이 각각 대구, 광주, 대전은행집회소를 설립하였는데, 은행집회소 설립후에는 집회소가 어음교환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대구은행집회소는 1952년 8월 15일에 설립되어 한국은행 대구지점 2층에 설치되었으며 사원은행은 대구에 지점을 두고 있던 8개 은행(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상공은행, 신탁은행, 저축은행, 금융조합)이

었다. 그후 1958년 9월 30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1959년 1월 10일 현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또한 광주은행집회소는 1957년 4월 1일 7개의 사원은행(한국은행, 산업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흥업은행, 농업은행)으로 설립되어 한국은행 광주지점내에 설치되었고, 대전은행집회소는 1957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한편, 나머지 8개 어음교환소는 은행집회소 없이 해당지역 금융단에 의해 독자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해방이후 1962년까지의 기간 동안 어음교환소 조직은 일제시대와 동일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이 1950년대에 들어서야 제정되었고 민법, 상법 역시 1960년대에 시행될 정도로 일제 잔재가 아직도 사회 전영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표2-1-14〉 전국 어음교환소 운영현황(1962년말 현재)

사단법인 은행집회소(3)	임의은행집회소(2)	어음교환소(8)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춘천, 군산, 청주, 목포, 여수, 마산, 전주

3. 독자적인 제도의 정착시대(1963년~1979년)

가. 금융기관의 발전

1963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금융산업도 많은 발전을 하였고, 금융기관의 구조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및 단기상업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일반은행과 특수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으로 정비되었다.

이 기간의 특색은 경제개발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은행제도가 개편되었는데 외환전문기관으로서 한국외환은행,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은행, 기업의 수출지원과 장기신용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각각 특수은행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1967년 7월 21일 Chase Manhattan Bank 서울지점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금융기관의 서울 집중화현상을 탈피하고 지역경제개발을 위하여 1967년 10월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1971년 4월 충북은행까지 10개 지방은행이 설립되어

지역금융 활성화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신탁전문은행인 한국신탁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하였다.

은행 및 점포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져 1979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24개 은행 1,761개 점포로 1963년과 비교해서는 13개은행, 892개의 점포가 늘어났다.

〈표2-1-15〉 금융기관 현황(1963, 1979년) (단위: 개)

구 분			1963	1979	증 감
중 앙 은 행		은행수	1	1	-
		점포수	9	15	6
특 수 은 행		은행수	5	8	3
		점포수	676	913	237
일반은행	시중은행	은행수	5	5	-
		점포수	184	530	346
	지방은행	은행수	-	10	10
		점포수	-	303	303
	외국은행	은행수	-	-	-
		점포수	-	52	52
	소 계	은행수	5	15	10
		점포수	184	833	649
합 계		은행수	11	24	13
		점포수	869	1,761	892

자료: 「금융기관총람」 pp42~45

나. 어음교환소 설치의 확대

1962년 1월 20일 어음법(법률 제1001호), 수표법(법률 제1002호)이 제정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에 의하여 어음교환소 지정이 이루어져 동년 12월 31일에는 법무부령 제75호로 14개 어음교환소가 새롭게 지정을 받았으며 용어도 일본식의 수형교환소에서 어음교환소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등 어음교환소규약의 체계도 종래의 일본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체계로 전면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발전과 금융기관의 성장으로 그동안 어음·수표 유통량이 적어

商法어음手票法通過
最高會議 常任委
株式은全額拂入主義
授權資本制採擇·會社는四種類

어음법, 수표법 제정 공포(1962.1.20)

어음교환의 필요성이 없었던 중소 도시지역에도 어음교환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 1월 1일 제주, 1965년 1월 1일 강릉·충주·이리·포항(1964.12.5 법무부령 제81호), 동년 8월 1일 수원·원주·천안(1965.7.8 법무부령 제82호), 동년 12월 1일 진주, 1970년 1월 4일 충무·울산·속초(1969.12.10 법무부령 제169호)에 어음교환소가 개설되어 1970년에는 무려 25개 교환소로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어음교환소가 없는 중소 도시지역의 금융단으로부터 어음교환소 설치요구가 계속되고 참가은행의 교환소 운영비용의 분담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어음교환소 설치시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7월 14일 서울은행집회소 이사회(金曜會)에서 1일어음유통장수, 금융기관 점포수, 인구 및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대출금의 평잔 등 6개 항목에 의하여 어음교환소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어음교환소 설치기준을 제정하였다.

〈표2-1-16〉 어음교환소 설치기준(1972. 7.14 제정)

항 목	비 중	기 준 치	비 고
1일어음유통장수	30	170장	• 기준치는 전년도 어음교환량 하위
금융기관점포수	30	5개	5개 어음교환소(천안, 원주, 강릉
인 구	10	80천명	충주, 이리)의 전년도 하반기 평균임
요구불예금평잔	20	500백만원	• 지수합계가 100점 이상일 때
저축성예금평잔	5	1,300백만원	어음교환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대 출 금 평 잔	5	1,200백만원	
합 계	100	-	

이후 경제성장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 설치기준을 1975년 6월과 1978년 12월에 걸쳐 두차례 개정하였으나, 급격한 경제성장에 의해 기업 및 일반국민의 어음·수표 사용량이 증가되어 어음교환소 신설이 계속되었다. 1973년 7월 26일 경주, 1975년 10월 1일 안동, 1979년 4월 2일 순천과 구미(1979.2.14 법무부령 제209호)에 어음교환소가 신설되어 1979년에는 29개 지역에서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일평균 어음교환량이 20천장 3십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에는 304천장 956십억원이 되어 연평균 장수는 19.5%, 금액은 44.9%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음교환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서울지역에서는 1970년대 초

반부터 어음교환의 기계처리를 검토하여 1980년 1월부터 서울어음교환소(은행지로관리소에서 대행)에서 기계처리를 실시하였다.

부도량은 1960~70년대의 경제발전에 따라 비교적 낮은 증가를 보여 부도율은 1963년에 장수 0.94%, 금액 0.46%에서 1979년에는 0.13%와 0.10%로 0.81%p와 0.36%p가 감소되어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다.

다. 어음교환소 운영기관의 전국 단일화

1975년 4월 1일 서울은행집회소는 서울어음교환소,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등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서울은행협회로 확대개편되었고, 1975년 11월 1일에는 전국은행협회로 변경되었다. 전국은행협회로 개편되면서 지방의 어음교환소 가운데 해당지역 은행집회소가 운영하던 6개 교환소와 교환소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7개 교환소가 전국은행협회의 지부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어음교환소는 종전과 같이 해당지역 금융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표2-1-17〉 전국은행협회하의 어음교환소 운영기관 현황(1979년 현재)

구 분		어음교환소명
전국은행협회	본부(어음교환부)	서울(1)
	지 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춘천, 강릉, 청주, 전주, 목포, 마산, 제주(13)
지역 금융단	어음교환소	원주, 속초, 충주, 천안, 군산, 이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울산, 진주, 충무(15)

그러나 전국은행협회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역금융단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소의 인사, 회계업무 및 금융단 공동행사에 따른 경비분담 등을 관장하게 되어 전국 단일체계에 의한 어음교환소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어음교환소규약의 전면개정시 기존의 위원회를 총회와 같이 사원은행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확대개편하고,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로 명문화하였다. 이사회의 확대개편으로 예산 및 결산업무의 승인만 총회에서 담당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이사회는 규약의 제정 및 개폐, 직원의 임면 및 급여결정, 교환소 신규가입 허용 및 가입금 등을 결정하였다.

사원은행 부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어음교환소 직원의 직제는 교환부장, 차장, 대리, 서기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교환부장은 서울은행집회소의 서기장을 임면하고 이사회와 심사위원회의 지시감독하에 어음교환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서울은행협회로 개편되기 전에는 서울은행집회소와 서울어음교환소가 별도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구성원이 동일하였다 하더라도 집회소의 총회를 마친 후에 연이어 교환소의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5년 4월 서울어음교환소의 운영기관이 서울은행협회로 된 후에는 교환소의 독자적인 총회, 이사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협회의 총회에서 교환소에 관한 사항도 처리하게 되었다.

4. 어음교환제도의 안정화시대(1980년~현재)

가. 금융기관 현황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함에 따라 금융기관도 질적·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1980년대 전반에 외국자본과 합자한 신한, 한미은행이 설립되었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축협중앙회가 분리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6개은행(동화, 동남, 대동, 하나, 보람, 평화은행)이 설립되었고, 외

〈표2-1-18〉 금융기관 규모 및 예금 등의 추이

구 분	1980	1990	1995. 7월
은 행 수(개)	24	30	33
점 포 수(개)	2,056	4,187	6,380
점포당인구(명)	19,124	10,394	7,030
은행총자산(억원)	486,124	1,020,920	3,817,749
예 금(억원)	124,219	840,541	1,309,122
대 출 금(억원)	122,044	740,286	1,432,711

자료: 「금융정보('95. 9월호)」 p60
주: 은행수는 한국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수(수출입은행 포함)

환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현재는 1980년과 비교하여 은행은 9개, 점포는 4,324개가 늘어나 은행 및 점포가 대폭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금융의 자율화 및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나. 어음교환 기계처리제도의 도입

1970년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어음교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종전의 수작업방식에 의한 어음처리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2월 어음교환업무 기계화처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1980년 1월부터 서울지역 교환어음에 대하여 기계처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어음교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어음교환소의 집중처리방식만으로는 원활한 교환결제가 곤란하여 처리물량 집중에 따른 위험분산과 교환처리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1985년 8월부터 대형은행들이 자행 수납어음을 직접 기계처리하고 제시어음을 야간의 특정시각에 교환하는 분산처리방식이 도입 실시되었다.

다. 어음교환소의 전국적 운영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제개발에 의한 금융수요의 증가로 소규모의 시와 읍에도 금융기관이 설치되면서 어음유통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7월 24일 전국은행협회 이사회에서는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역주민들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어음교환소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무려 23개의 어음교환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9월 설치기준 항목중 인구, 예금 및 대출금평잔 항목을 삭제하고 인근 어음교환소와의 현송거리 및 시간, 1일어음유통장수 및 금액, 금융기관수 등을 감안한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어음교환소 설치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에는 인근 어음교환소와의 거리가 가깝고 독자적인 어음교환소 업무수행이 불필요한 진해와 사천(구삼천포) 어음교환소를 각각 창원 및 진주어음교환소에 통·폐합하였으며, 양산어음교환소와 서산어음교환

소를 신설함으로써 1996년 3월 현재 전국에 모두 50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고 있다.

어음교환량은 기계처리가 실시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장수 17.4%, 금액 24.6%로 계속 증가되었다.

〈표2-1-19〉 전국 어음교환관리소 설치현황

교환소	개설일자	지정일자	교환소	개설일자	지정일자
서 울	1910. 7. 1	1917. 3	서 산	1995.12.18	1995.11.16
부 산	1911. 4. 1	1917. 3	공 주	1987.12. 1	1987. 2. 5
대 구	1921. 7. 1	1921. 7. 1	논 산	1987.12. 1	1987. 6.16
인 천	1910.12. 1	1917. 3	전 주	1949. 8.21	1949. 8.20
광 주	1943. 5. 1	1943. 5. 1	군 산	1924. 2. 1	1924. 1. 1
대 전	1944. 5. 1	1944. 5. 1	익 산	1965. 1. 1	1964.12. 5
수 원	1965. 8. 1	1965. 7. 8	정 읍	1982. 4. 1	1981.10.13
성 남	1981. 1. 5	1980.12.10	남 원	1985. 5. 6	1985. 3.15
안 양	1981. 1. 5	1980.12.10	목 포	1923.12. 1	1931. 1
부 천	1981.12. 1	1981.10.13	여 수	1949.11. 1	1949.11. 5
의정부	1981.12. 1	1981.10.13	순 천	1979. 4. 2	1979. 2.14
평 택	1986.11. 3	1986. 5. 9	해 남	1991. 4.19	1991. 1.15
안 산	1990. 8.10	1990. 3. 6	포 항	1965. 1. 1	1964.12.5
이 천	1994. 7. 4	1994. 6. 2	경 주	1973. 7.26	1975. 8.22
춘 천	1955.12.13	1955.12.13	안 동	1975.10. 1	1975. 8.22
강 릉	1965. 1. 1	1964.12. 5	구 미	1979. 4. 2	1979. 2.14
원 주	1965. 8. 1	1965. 7. 8	김 천	1982. 2. 1	1981.10.13
동 해	1980. 7. 1	1980. 5.28	영 주	1982. 2. 5	1981.10.13
속 초	1970. 1. 4	1969.12.10	창 원	1956.11. 1	1956.11.15
태 백	1986.10.13	1986. 5. 9	통 영	1970. 1. 4	1969.12.10
청 주	1951.11. 1	1951.11. 1	울 산	1970. 1. 4	1969.12.10
충 주	1965. 1. 1	1964.12. 5	진 주	1965.12. 1	1981.10.13
제 천	1982. 1. 4	1981.10.13	김 해	1994. 7.11	1994. 6. 2
천 안	1965. 8. 1	1965. 7. 8	양 산	1995.12.18	1995.11.16
홍 성	1987. 8.17	1987. 6.16	제 주	1963. 1. 1	1963.12.31

주: 1) 1984.4.1 삼천포어음교환소 개설(1984.6.7 지정) → 1995.5.10 사천어음교환소로 개칭 → 1995.11.16 폐쇄
2) 1982.2.18 진해어음교환소 개설(1981.10.13 지정) → 1995.11.16폐쇄
3) 개칭 : 1995.1.1 정주·충무→정읍·통영, 1995.5.10 이리→익산, 1994.6.2 마산→창원

부도율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장수, 금액 모두 0.10% 이하로 떨어져 경제호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1992년부터는 경제불황과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속출로 부도율이 계속 상승하여 1995년 부도율은 장수 0.11%, 금액 0.20%에 달하여 1980년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표2-1-20〉 어음교환량 및 부도량 추이(1980, 1995년)

구 분			1980	1995	연평균 증감율
어음교환	전국	장수(천 장)	108,374	1,010,470	17.4
		금액(십억원)	325,812	6,416,338	24.6
	서울	장수(천 장)	82,422	492,520	14.0
		금액(십억원)	275,847	5,490,448	24.9
부 도	전국	장수(장)	199,700	1,138,438	15.8
		금액(백만원)	551,810	12,984,858	28.1
	서울	장수(장)	96,540	568,107	14.3
		금액(백만원)	311,400	6,527,796	30.3
부 도 율	전국	장수(%)	0.18	0.11	-0.07p
		금액(%)	0.17	0.20	0.03p
	서울	장수(%)	0.12	0.12	-
		금액(%)	0.11	0.12	0.01p

라. 어음교환소 운영기관의 안정화

1984년 5월 10일에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전국은행협회에서 분리 발족(1984.5.9 법인설립 허가)하면서 전국은행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서울 및 13개 어음교환소와 해당지역 금융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25개 어음교환소를 모두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하나의 기관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어음교환소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의사결정기구로서는 총회, 이사회와 그 하위에 어음교환심사위원회를 두었고 각 지소에는 지소운영위원회를 두어 해당지역의 어음교환소규약 개폐 권한 등을 부여하였다.

1963년 12월에 신설된 심사위원회는 1982년 2월 그 기능이 환전문위원회에 흡수되었으나 1984년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발족하면서 어음교환심사위원회로 새로이 구성되었다. 당시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고, 위원은 사원은행 관련부서장과 어음교환부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당원의 경영자율화 추세에 발맞추어 1992년부터 위원회 위원은 당원 어음교환부장과 8개 위원은행(이사회 이사은행)의 어음교환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현재 당원의 어음교환부장이 맡고 있다.

어음교환부는 서울지역의 교환어음기계처리업무와 서울어음교환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은 물론 어음교환소의 신설·폐쇄 및 전국의 어음교환소운영에 관한 업무지도 등을 맡고 있으며, 49개 지부에서는 해당지역의 어음교환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2-1-21〉 어음교환소 운영기관 변천연혁(1995년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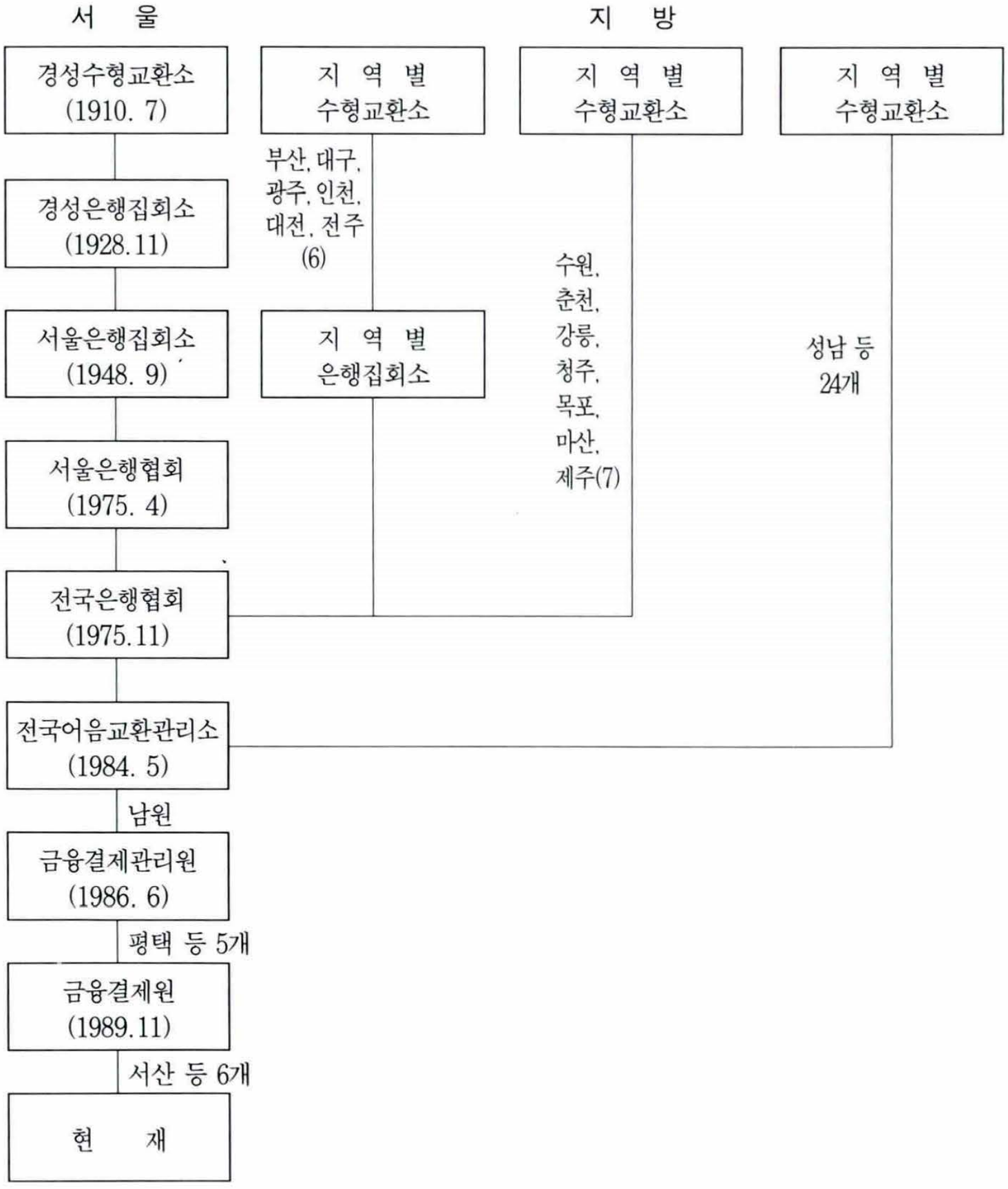

제2장 은행지로제도

제1절 은행지로제도의 의의

신용사회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지급결제수단으로 현금 이외에 어음수표 등이 널리 보급되어 왔는데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지로제도가 도입되어 주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거래에 수반된 자금결제를 하나의 제도만으로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여러가지 제도가 상호보완하면서 경제거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온 것이다.

지로제도는 거래당사자가 현금 또는 수표(어음포함)를 이용하는 대신에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방식에 의하여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각종 자금거래를 결제하는 제도로 사회적 여건상 신속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일내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또한 저렴성이 중시되는 일반서민의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로제도는 제도의 획일성, 단순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신속성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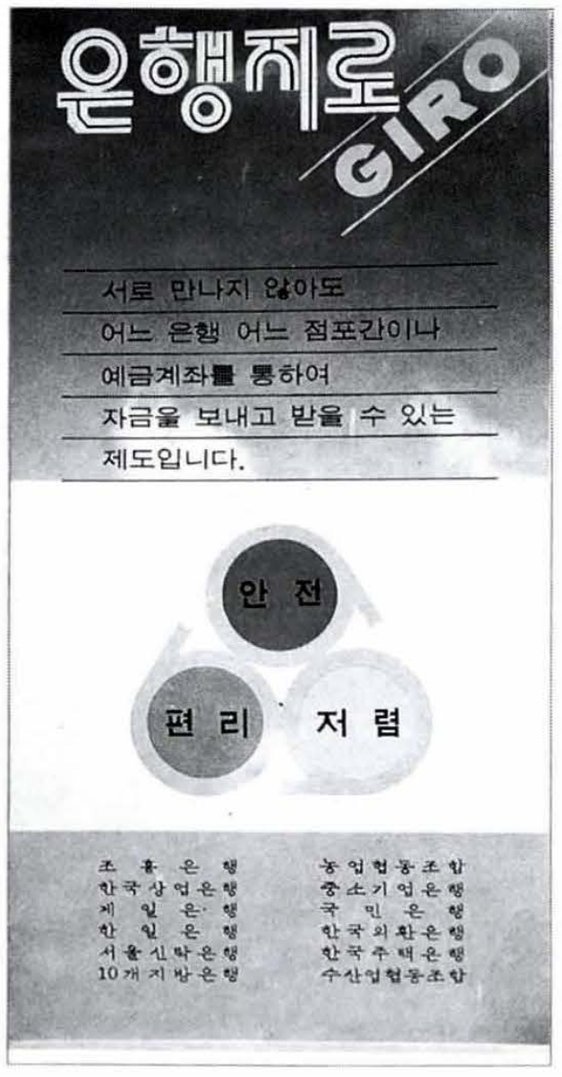

1. 안전성

지로제도는 자금이 은행의 예금계좌간에 계수만 이동하므로 현금이나 수표와 같이 분실, 도난 및 위·변조의 위험성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결제자금이 없으면 거래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소지인이 지급제시해야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수표거래보다 안전하다. 따라서 지로제도는 사회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지급결제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이다.

2. 편리성

지로제도는 현금이나 수표거래와 같이 거래 당사자가 만나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예금의 온라인 타점입금이나 은행간 타행환 송금과 달리 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송금 사유와 송금인 내역이 수취인에게 통보되므로 편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수표제도와는 달리 국민 누구나 이용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를 활용하여 수납·지급할 수 있어 집금·배금업무에 효율적이고, 주문 및 할부판매 등의 판매방식을 가능케 하여 매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지급 및 수납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3. 저렴성

지로제도는 일반국민의 주된 지급수단으로 발전된 제도로서 고액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저렴성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처리비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함은 물론 기계화에 의한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의 지로이용수수료는 이용금액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로제도를 통하여 금융기관은 유통과정의 자금을 예금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지급을 위한 현금보유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현금통화 수요와 발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및 신용의 이전이 일상생활화되어 국민의 은행이용도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와 결제기구를 통한 수납대행업무 처리방법의 단일화로 사무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2절 은행지로제도의 기원

지로라는 말은 원(Ring, Circle), 회전(Circulation, Revolution)의 뜻을 가진 희랍어의 GUROS에서 유래한 말로서 지로제도는 경제적 가치가 돌고 돌아 순환되면서 경제사회의 자금을 결제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6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로제도는 나라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전통과 역사가 달라 실시되는 제도의 모양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제기구를 통하여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체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결제하는 근본원리는 동일하다. 여기에는 결제기구가 하나만 존재하는 중앙집중처리체제의 형태와 여러 개의 결제기구가 존재하는 분산처리체제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전자의 경우이고 독일은 후자의 경우이다.

지로제도의 원시적인 형태는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곡물을 영주나 군주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시킨 농민들이 그 곡물의 범위 내에서 곡물반출청구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청구서는 일반적인 채무결제의 수단으로 통용되었고 언제라도 제시만 되면 그 액수만큼의 곡물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곡물창고 지로제도는 프톨레마이우스(Ptolemies)왕조시대(B.C 323~330)의 이집트에서 가장 번창하였다. 그 후 부유한 상인들간의 거래 및 대외무역에 이용하기 위하여 주화나 귀금속을 사용하는 은행제도(Banking System)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지로제도는 은행제도와는 별개로 주로 서민들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지로제도는 1883년 오스트리아의 우편저축은행(Post Savings Bank)이 실시한 계좌이체제도(Credit Transfer System)를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부유층만이 은행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민들의 지급결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로제도가 도입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급증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지로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으며, 금세기에 급속도로 발전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자료처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로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로제도는 금융기관(은행)이 실시하는 은행지로제도(Bank Giro)와 체신기관(우체국)이 실시하는 우편지로제도(Post Giro)가 있다.

제3절 우리나라 은행지로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지로제도의 효시는 1910년에 도입 실시된 우편대체계좌제도라 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자금결제방법인 은행지로제도가 실시된 것은 1977년 2월부터이다. 어음교환제도와 환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사회가 고도로 다기화되고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되어 감에 따라 대량의 지급결제거래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대중의 새로운 지급결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발달한 컴퓨터산업은 선진 각국의 금융기관에 그 영향력을 미쳐 업무처리에 큰 전환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증가하는 업무량의 효율적인 처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1960년대 말부터 컴퓨터에 의한 업무처리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1969년 10월 1일 금융기관 공동의 컴퓨터센터인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가 발족하여 1970년 10월 금융기관 최초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 각행 전산요원의 기술연수 및 자료처리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은행지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은행지로제도의 도입은 금융업무 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975년 1월 11일 각 금융기관에 시달된 재무부의 『금융업무 전산화지침』에서 계좌이체제도(Giro System)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7월 개최된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는 「금융업무 전산화 종합육성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1976년 1월 은행지로제도 도입실무반(13개 은행, 13명)이 편성되어 동년 8월 은행지로제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준비실무반(10

개은행 10명)을 편성하여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가의 은행지로제도를 직접 시찰하는 등 지로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또한 1976년 11월에는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의 지로처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드디어 동년 12월 31일 은행지로제도 실시계획이 금융기관전산화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되어 1977년 2월부터 서울지역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은행지로제도가 실시되었다. 첫해에는 7,820천건 118,877백만원이 수납처리되었다.

은행지로제도가 은행지로관리소에 의한 집중처리제도로 본격 도입되기 이전인 1969년 2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에서 상업, 농협 등 개별은행 단위로 공공요금(수도요금, 전기요금, TV시청료, 전화요금)의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해약자의 증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5년에 이르러 일부는 폐지되었다. 이후 1974년 8월 서울시 수도요금을 시작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공과금의 전반적인 수납대행제가 확대되고 1976년 2월 14일 「공공요금 수납대행창구 확대실시」(국무회의 의결) 계획에 따라 각 은행 점포에 50번 창구(부산은 20번)가 설치되면서 은행의 수납대행에 의한 공과금 자진납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시세 및 공과금의 계좌이체는 시금고은행에서 수작업으로 처리되었으며 1977년 은행지로제도의 도입이후에도 존속하였다.

은행지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금융기관 어느 점포에서나 자금결제 및 수납창구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여수신의 서비스로부터 일반 지급행위를 위한 자금결제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요구불예금에 지급결제기능(공공요금 등의 자동계좌이체)이 부여되어 현금인출 감소·예금증가·자금조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중에 밀착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일반의 금융기관 이용관습을 높이게 되었고 사회 전반의 인력 및 경비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절 은행지로제도의 발전

1. 업무의 확대

1977년 2월 1일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의 은행지로제도 도입이후 지로화 대상업무를 계속 확대하여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 및 가계당좌예금거래를 위한 급여계좌이체업무 이외에 1979년 4월 1일부터 정부공사대금, 물품구매대금 등 국고세출금의 채권자계좌앞 이체업무를 취급해 오다가 1981년 이후 대상거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1981년부터 범용성이 있는 지로제도인 일반계좌이체제도와 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대량지급업무 및 자동계좌이체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은행지로제도의 중추가 되는 업무들이 1981년에 대부분 도입되어 업무의 확대와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은행지로업무취급안내(1982.3.17)

1983년에는 통합공과금수납이체업무, 1986년에는 지방세수납이체업무를 새로이 실시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은행간 계좌이체방식인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를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계좌이체업무 및 통합공과금수납이체업무는 폐지되고 현재는 일반계좌이체, 전기요금수납이체 및 지방세수납이체업무의 3가지 장표업무와 자

〈표2-2-1〉 은행지로업무 확대내용

실시일자	해 당 업 무	비 고
1977. 2. 1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	
5.16	가계당좌예금 거래를 위한 급여계좌이체업무	- 대량지급에 흡수
1979. 4. 1	채권자계좌이체업무	- 1995. 3. 1 폐지
1981. 3. 1	일반계좌이체업무	
7. 9	대량지급업무	
8. 1	자동계좌이체업무	
1983.10. 1	통합공과금수납이체업무	- 1994.12.26 폐지
1986. 5. 1	지방세수납이체업무	- 재산세 등의 수납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고 1995.5.1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처리
1994. 4.30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동계좌이체, 대량지급 및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의 3가지 비장표업무 등 6개 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가. 채권자계좌이체업무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채권자에게 대금지급시 채권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시켜주는 제도로 종전의 은행 송금방식에서 야기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부담 및 송금의뢰시 은행직원에 의한 다액의 자기앞수표 운반에 따른 사고위험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지로방식으로 개발·처리하도록 하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1979년 3월 20일 업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3월 23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후 동 제도는 타행환제도의 실시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5년 3월 1일부터 당원 집중처리방식을 폐지하고, 각행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

나. 일반계좌이체업무

종래의 전기요금 수납처리, 국고금 채권자계좌이체, 가계당좌예금계좌앞 급여이체 등 특정업무 위주의 지로제도에서 벗어나 보험료, 물품대금, 월부금 등 대량수납 및 일반송금을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성 있는 일반지로업무 개발실시의 일환으로 1981년 3월 1일부터 일반계좌이체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당원으로부터 지로번호와 특수장표를 승인받은 수납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각종 대금을 수납할 때 이용하며, 고객이 지로장표와 함께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면 수납된 자금을 수납업체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그 내역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 지로이용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다. 대량지급업무

급여, 연금, 배당금 등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지급인(이용기관)이 당원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제도로 1977년 5월 16일 급여계좌이체업무를 시초로 1981년 7월 9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라. 자동계좌이체업무

전화요금, 전기요금, 보험료 및 카드대금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대금을 수납기관(수취인), 납부자(지급인) 및 은행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납부자가 거래은행 또는 수납기관에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해당 납기일에 거래은행이 납부자의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결제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주는 제도로 1981년 8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일반계좌이체업무와 마찬가지로 지로제도의 주요한 업무로서 특히 비장표업무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마. 통합공과금수납이체업무

정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시책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수신료 및 도시가스요금 등 6개 요금을 한장의 고지서에 통합고지하여 이를 각각 요금별 수납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제도로 1983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용산구, 동작구), 대전시, 경주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제주시 등 47개시 지역으로 확대실시되었으나 정부의 통합공과금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1994년 12월 26일 폐지되었다.

바. 지방세수납이체업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 및 경기도내 12개시 지역에서 고지·발부되는 지방세(재산세) 고지서를 은행지로방식으로 처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입금하여 주는 제도로 1986년 5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후, 1988년 3월에는 서울시의 자동차세가, 1990년 11월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추가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처리 필요성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1991년 1월 서울시가 지로제 이용을 해지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5월 30일 경기도내의 시들이 재산세수납의 지로이용을 해지함으로써 현재는 주정차위반과태료만 처리하고 있다.

사.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고객이 주거래은행(급여입금계좌 등 개설은행)이 아닌 타은행(수취은행)에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나 정기적금 불입 등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 타행환으로 송금을 하거나 직접 수취은행 창구에 가서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94년 4월 30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지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날자(납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고객의 주거래은행에서 출금하여 납기일에 수취은행의 지정계좌로 자동입금시켜 주는 편리함으로 그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장표처리의 기계화

지로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장표의 분류 및 집계를 수작업 처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지로통지서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량처리체제 개발을 위하여 1981년 8월 14일 은행지로관리소내에 OCR전담반을 설치하였다. 1982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기종선정 등 기계화 추진일정을 수립, 추진하여 1983년 10월부터 통합공과금업무를, 12월부터는 일반계좌이체업무를 자동판독분류기(Reader/Sorter)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표2-2-2〉 Reader/Sorter 관련기기 도입설치 현황(1983년)

설 치 일 자	기 기 명	기 종	대 수
1983. 7. 15	Reader/Sorter	Trace-I System	1대
1983. 10. 15	Encoder	MICR TK-7000	9대

이후 계속된 업무의 급격한 증가로 R/S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본부에는 5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94년 4월 1일부터는 부산지부에도 지로처리센타를 설치하여 2대의 R/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지역에서 수납한 지로장표를 처리하고 있다.

3. 실시지역의 확대

지로제도의 실시지역은 1981년까지는 서울지역으로만 국한되었으나 일반계좌이체업무, 자동계좌이체업무 및 대량지급업무가 실시되면서 그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장표수납업무는 1982년 경기도내 10개시 지역을 추가 실시한 데 이어 계속 실시지역을 확대하여 1985년에는 전국 61개 시단위 행정구역중 41개 시지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대개는 어음교환소에 참가하는 지역이 지로실시지역으로 포함되므로 1980년대의 어음교환소 신설 및 참가지역 확대에 따라 계속 확대되었다.

그후 1992년에는 공주시에서도 지로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상주, 점촌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지역에서 지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4년 8월 1일에는 해남군 등 7개군에서도 지로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당원지부 관할 전지역이 지로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95년 6월 1일부터는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의 은행지로업무 참가를 계기로 지리적 여건상 정해진 기일내에 장표송달이 곤란한 옹진군, 울릉군 및 지도읍을 제외한 신안군과 제주도 추자도, 우도 등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였다.

자동계좌이체업무 및 대량지급업무도 장표수납업무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海南등 慶·全南7개郡
내달은행지로網 개통

8월1일부터 전남 해남·장흥·강진·영암·완도·진도군과 경남 산청군에 있는 은행점포에서도 공과금 납부등 은행지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북 상주시·점촌시와 강원·전북·경남북의 32개군에서는 아직도 지로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다.

27일 금융결제원은 전남과 경남의 7개군에서 지로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확충, 8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남 등 7개군 지로실시
(1994.7.28)

〈표2-2-3〉 지로실시지역 확대현황

연도	실 시 지 역	비 고
1977	서울	- 어음교환소 참가군단위 행정구역 포함
1982	인천,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천안, 의정부, 부천, 송탄, 평택, 구리	
198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울산, 마산, 경주, 나주, 김해, 창원	
1984	이리, 군산, 목포, 구미, 진해, 청주, 춘천, 강릉	
1985	포항, 진주, 여수, 순천, 원주, 동해, 영천, 광명, 동두천, 과천	
1987	삼척, 온양, 여천, 충주, 제천, 정주, 남원, 김천, 영주, 안동, 속초, 태백, 제주, 서귀포	
1989	서산, 충무, 장승포	
1990	삼천포	
1991	밀양	
1992	공주	- 전국 시중 상주, 점촌 제외
1994	해남지부 관할 6개군	- 당원 지부관할 전지역 실시
1995	전국(일부 도서지역 제외)	- 옹진군, 울릉군 제외

주: 실시지역명은 당시의 지명 및 행정구역 기준

서울시 지역에서만 실시되었으나 장표수납업무의 실시지역 확대에 맞추어 그 실시지역을 계속 확대하였다. 이후 1982년 7월 경기 일원 10개 지역에 이어 1983년 8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실시지역을 광역화하였으며, 또한 1980년대에 각행의 행내 전산화의 완성에 따라 전국 점포간 온라인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198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여, 이제 비장표업무는 전국 어느 곳의 점포에서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4. 참가은행의 확대

지로제도 도입 당시의 참가은행은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의 13개 사원은행과 실시 직전인 1977년 1월 28일 은행지로 가입승인을 득한 10개 지방은행 및 수협중앙회 등 모두 24개 기관이었다. 이중 지로업무를 취급하지 않

〈표2-2-4〉 은행지로업무 참가은행 현황

참가일자	참 가 은 행	비 고
1977. 2. 1	농협중앙회, 조흥, 한국상업, 제일, 한일,	사 원
	서울, 중소기업, 국민, 한국외환, 한국주택, 한국신탁은행	〃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준사원
	수협중앙회	〃
1982. 7. 7	신한은행	사 원
1983. 3.17	한미은행	〃
9.16	축협중앙회	준사원
1989. 2.13	한국산업은행	사 원
〃	장기신용은행	준사원
9. 5	동화은행	사 원
11. 1	동남은행	〃
11. 7	대동은행	〃
1991. 7.15	하나은행	준사원
9. 2	보람은행	〃
1992.11. 2	평화은행	〃
1993. 4.12	CITI은행	특별참가기관
1995. 6. 1	우체국, 농·수·축협 회원조합	〃

주: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1980년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 1995년 서울은행으로 개칭

지로서비스 全國확대

우체국·농수협등 참여따라

괄금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은행지로서비스가 올 6월부터 업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우체국과 농수축협 회원조합의 은행지로사업에 참가함에 따라 이처럼 지로서비스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로서비스가 실시되는 지역은 기존의 72개시 73개군에서 74개시 1백개군으로 확대된다.

은행지로서비스란 물품구입대금 보험료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 등을 잔표나 자동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은 각종 공과금을 시나 읍소재 은행창구를 찾아가 납부할는지 또는 수납기관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옹진군, 경북 울릉군, 제주도 북제주군내 추자도와 운도, 전

우체국, 농수축협 은행지로업무 참가
(1995.4.13)

는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실제 22개 은행이 은행지로업무를 취급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신한 및 한미은행이 사원으로 축협중앙회가 준사원으로, 그리고 1989년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이 지로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뒤이어 동화은행의 신설 등으로 참가은행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외국계은행인 CITI은행이 특별참가은행으로 지로업무에 참가한데 이어 1995년 6월에는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의 금융서비스 편의제고를 위하여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은행지로업무에 특별참가함으로써 1995년말 현재 한국은행을 제외한 16개 사원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16개 준사원은행 및 우체국 등 5개 특별참가기관 등 모두 37개 기관이 은행지로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5.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의 증가

〈표2-2-5〉 업무별, 이용기관 현황 (단위: 개)

연도	일반 계좌이체	자동 계좌이체	대량지급	통합공과금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1981	612	3	14	-	-	-	-
1982	911	5	30	-	-	-	-
1983	1,770	11	40	5 (3)	-	-	-
1984	3,155	15	200	5 (3)	-	-	-
1985	4,274	18	279	5 (3)	-	-	-
1986	5,836	19	349	22 (5)	61(18)	-	-
1987	7,195	27	418	22 (5)	61(18)	-	-
1988	8,846	39	465	56 (7)	94(18)	-	-
1989	10,436	59	506	77(18)	82(23)	22(1)	-
1990	11,493	78	547	77(18)	82(23)	22(1)	-
1991	14,359	104	601	78(18)	60(22)	-	32(21)
1992	16,916	129	636	106(46)	49(21)	-	62(39)
1993	17,601	170	609	109(47)	52(22)	-	101(68)
1994	20,653	220	630	109(47)	34(20)	-	111(76)
1995	22,989	246	645	-	-	-	108(66)

주: ( )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수

가 이용기관

은행지로제도는 제도 자체의 편리성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이용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납·지급행위의 효율성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납기일에 납부되는 자동계좌이체제도 이용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나. 이용실적

은행지로 이용실적은 실시 첫해인 1977년에는 8백만건, 1,191억원에 그쳤

〈표2-2-6〉 은행지로업무 이용실적

연도	건수		금액		건당금액	
	천장	전년대비 증감율	십억원	전년대비 증감율	원	전년대비 증감율
1977	7,820	-	119	-	15,217	-
1978	10,269	31.3	169	42.0	16,467	8.2
1979	10,859	5.7	429	154.1	39,506	139.9
1980	11,583	6.7	685	59.5	59,138	49.7
1981	13,026	12.5	978	42.8	75,081	27.0
1982	16,699	28.2	1,302	33.2	77,969	3.8
1983	24,534	46.9	1,865	43.2	76,017	2.5
1984	36,710	49.6	2,780	49.1	75,729	-0.4
1985	51,906	41.4	3,703	33.2	71,341	-5.8
1986	70,387	35.6	4,980	34.4	70,752	-0.8
1987	91,550	30.1	6,936	39.3	75,762	7.1
1988	114,536	25.1	10,222	47.4	89,247	17.8
1989	160,638	40.3	15,099	47.7	93,994	5.3
1990	189,259	17.8	17,675	17.1	93,391	-0.6
1991	225,753	19.3	22,195	25.6	98,315	5.3
1992	277,784	23.0	28,143	26.8	101,313	3.0
1993	336,414	21.1	35,215	25.1	104,678	3.3
1994	407,218	21.0	43,756	24.3	107,451	2.6
1995	509,014	25.0	47,705	9.0	93,720	-12.8

으나, 일반계좌이체업무 등 대상업무가 확대되기 시작한 1981년에는 13백만건, 9,7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가 통합하여 금융결제관리원이 발족된 1986년에는 70백만건, 4조 9,800억원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다. 지로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1995년에는 509백만건 47조 7,048억원의 실적을 보여 하루 평균 172만장, 1,612억원을 처리하는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6. 은행지로제도 운영기관의 변천

은행지로제도는 금융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개발 육성함으로써 은행업무의 개선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1일 비법인격의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한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에서 도입추진하였다.

전자계산소는 사무국 아래에 총무과, 개발과, 연수과, 자료처리과로 조직된 1국 4과 체제로 출범하여 1977년 2월 1일 지로제도 실시와 함께 연수과를 폐지하고 설치된 업무과와 기획과에서 지로업무를 전담하였다. 동년 6월 22일에는 은행지로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자계산소를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하였으며 조직은 변화가 없었으나, 금융업무전산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업무운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1984년 7월 13일 최신의 컴퓨터 및 통신회선 기법을 도입하고 지로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급결제제도의 활용을 강화하고자 시스템실을 신설하였다. 은행지로관리소는 금융결제관리원으로 통합되기 전인 1986년 6월 1일까지 존속하여 지로업무 이외에 교환어음기계처리업무와 신용정보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81년 4월, 1986년 5월 동업무를 전국은행연합회로 각각 이관하였다.

1986년 6월 2일 지급결제업무 전담기관인 금융결제관리원이 발족하면서 은행지로제도의 운영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통합되었고 이때부터 지로업무부에서 은행지로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업무운영위원회를 은행지로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1992년 12월 위원회 위원을 당원 지로업무부장과 8개 사원 및 준사원(이사회 이사선임 은행)의 은행지로업무 관련부서장으로 구성하는 한편 의장은 당원의 지로업무부장이 담당하게 되었다. 지로업무부는 현재 은행지로제도의 선진화, 지로처리체제의

개선 및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로제도의 조사 및 기획·추진과 지로자료 처리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지방에서는 해당지역 지방은행 직원을 파견받아 지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업무홍보, 섭외 등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고 각 은행 취급점에 대한 업무지도 및 이용기관으로부터 조회응답 미숙 등 제반 문제가 있어 1983년 8월과 10월에 걸쳐 지방 어음교환소내에 설치되었던 21개의 지방분소를 1987년 6월 1일에 지방 지역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폐지하여 당원 지부 직원이 직접 지로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제3장 금융전산망의 구축

금융전산망은 당원과 금융기관의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금융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네트워크시스템을 말하며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로서 은행 금융기관의 공동업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신속화는 물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기관의 업무전산화는 금융전산망을 구축할 당시 이미 종합온라인처리단계에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전산망이 구축될 수 있었다.

1988년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을 시작으로 금융전산망이 구축·가동됨으로써 기존 금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금융거래에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창출하여 대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금융시장개방 및 세계화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금융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지급결제업무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1절 금융전산망의 구축추진

1. 금융전산망의 추진배경

1980년대 초반의 정보기술관련 산업환경은 칼라TV의 조기방영,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정 등으로 가전제품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국제 경쟁력의 확보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반도체산업을 새로이 육성하고 지원하여 전자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자교환기의 국산화를 통하여 전화사업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컴퓨터산업의 경우는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요가 없

고 기존 시장은 이미 국내에 진출한 외국 컴퓨터 메이커들에게 잠식되어 급증하는 컴퓨터 수요를 계속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당시 민간기업은 물론 각 금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던 전산망의 상호호환성 문제 및 자료의 표준화 문제로 인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확보할 수 밖에 없어 불필요한 경비지출 및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물론 자료활용의 제약이 컸었다. 국가기간전산망은 이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기간전산망의 기본구상은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국내 정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1983년 10월 정보산업육성위원회(1983년 5월 구성)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1984년 3월 정보산업육성위원회의 개편으로 구성된 국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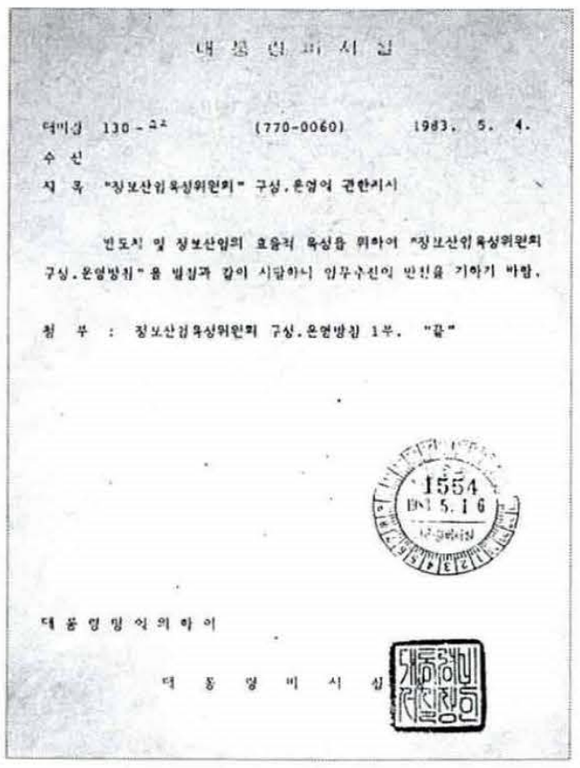
대 통 령 비 서 실

대비경 130-[illegible] (770-0060) 1983. 5. 4.

수 신

지 목 "정보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지시

반도체 및 정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정보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방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 부 : 정보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방침 1부. "끝"

1554
1983.5.16

대통령명의의하이

대 통 령 비 서 실

정보산업육성위원회 구성 · 운영
(1983.5.4)

〈표2-3-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1995년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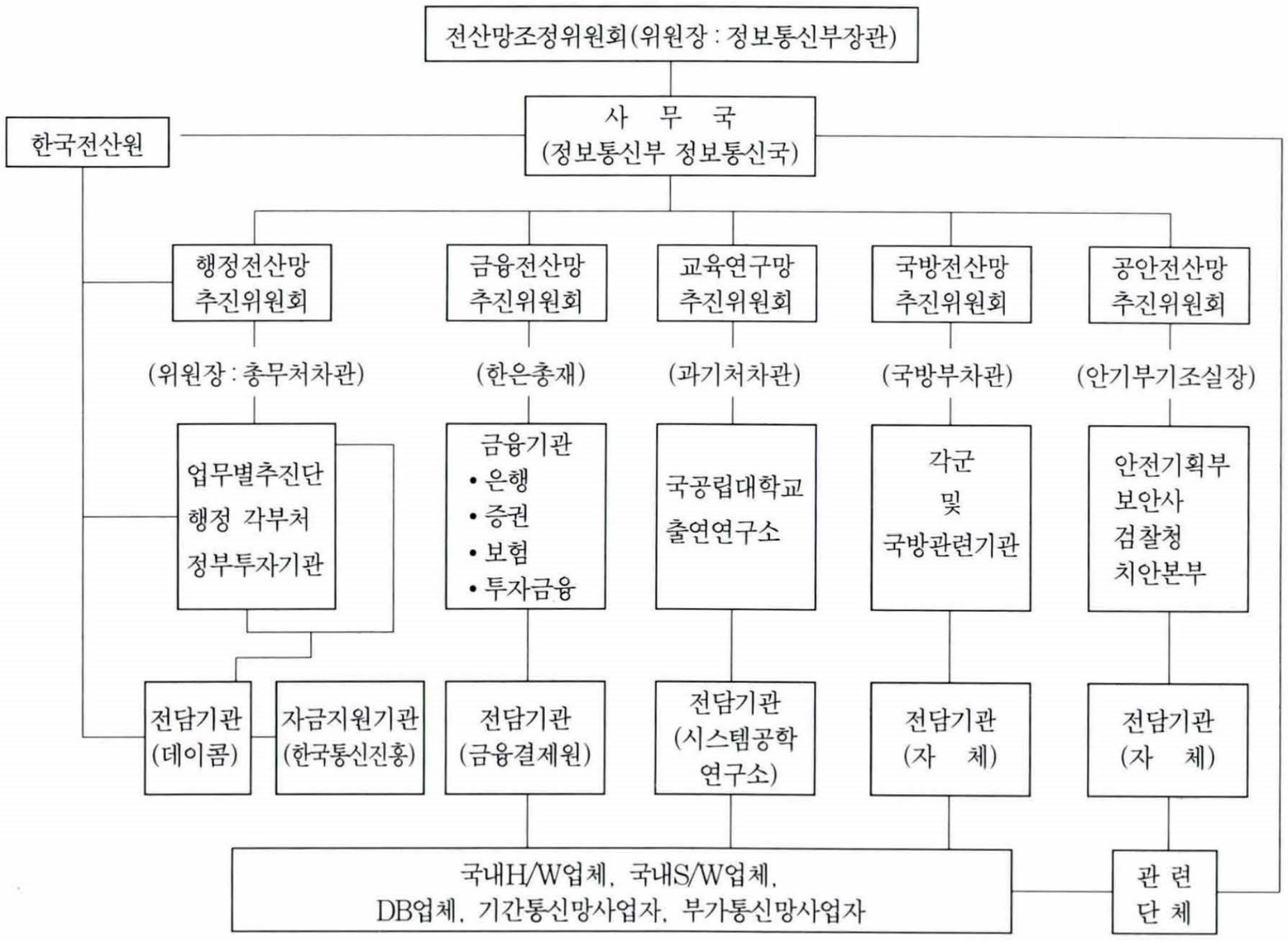

간전산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가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갔다. 국가기간전산망중 금융전산망사업은 전산망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년 5월)이 제정되고 전산망조정위원회(1987년 5월)가 발족된 이후 1988년 4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 금융전산망의 추진목표

금융전산망은 기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창출하여 대국민 금융편의를 증진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정비 확충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관련 정보유통을 원활화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유도하며,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여건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

〈표2-3-2〉 금융전산망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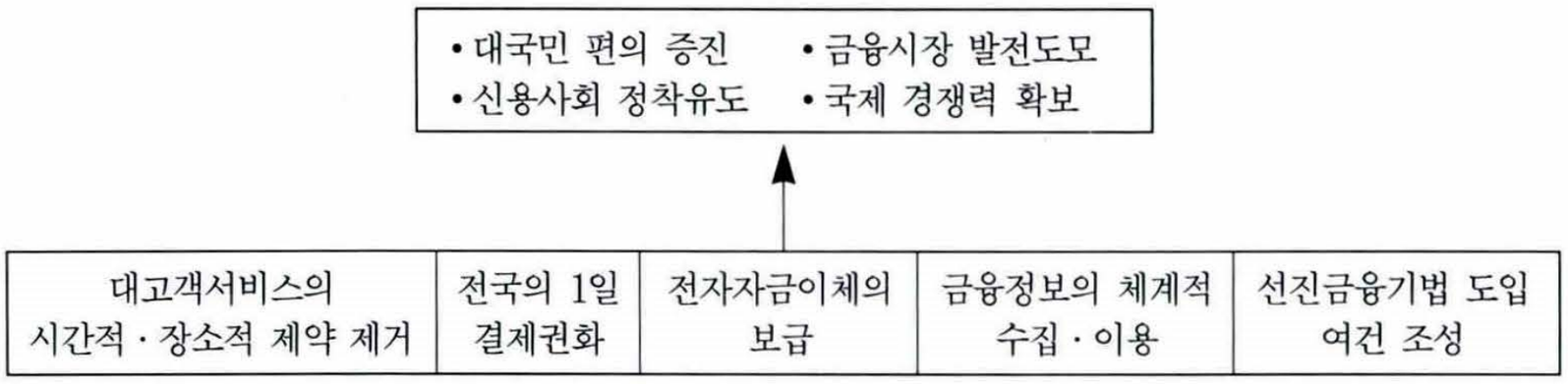

그 추진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대고객서비스의 시간적 · 장소적 제약을 제거하여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무실 또는 공공장소에서도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둘째로 전국의 1일 결제권화로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당일 결제할 수 있고, 셋째로 전자자금이체의 보급으로 현금, 수표 중심의 현행 지급결제 관행을 지양하고 전자자금이체(EFT)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넷째로 금융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 이용으로 개인 및 기업 등에 관한 신용정보와 기타 금융관련 정보를 적기에 수집 ·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로 선진금융기법 도입여건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금융기법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에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참여기관별로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전산망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였다.

〈표2-3-3〉 금융전산망사업 추진기구별 기능

기구(기관)명	분 장 업 무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 금융전산망 사업대상 선정 및 분석 • 금융전산망업무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각 소위원회 (증권, 보험, 투자금융)	• 분야별 전산망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등
각 전담사업자	• 관련위원회가 확정한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른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 • 중계센터로서의 메시지 교환 • 참여기관간 자금거래 차액의 집계 및 결제 의뢰 • 금융전산망 내외부 타전산망 센터와의 상호접속 등
참여 개별금융기관	• 관련위원회가 운영세칙에 의거 요청하는 업무 • 관련 전담사업자가 개발하는 공동이용시스템중 개별 금융기관 해당부분의 설계, 개발 및 운영 •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대고객 거래 관련기록(화일 또는 DB)의 유지 보관 등

제2절 금융전산망의 추진경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에서 「우리나라 금융전산화 현황과 금융전산망 추진방안」을 작성하여 1984년 7월 정부 및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 보고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7월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금융전산망 기본방향이 수립되고 금융전산망사업을 추진할 금융전산위원회가 발족하여 동년 11월 한국은행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CD공동이용 및 M/S표준화방안, 은행간자금결제의 온라인화 등 금융전산망관련 단기시책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를 추진기구로 하여 당원이 시스템 개발 및 구

금융전산망추진방안 주요내용

1. 금융전산망은 대국민 편의증진과 지급결제제도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망으로 구축함.
2.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전산위원회를 설치함.
3. 네트워크의 구축 운용과 시스템 개발실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함.
4. 금융전산망을 이용하게 될 공동업무는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크고 또 은행간 자금결제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를 우선 대상사업으로 추진토록 함.

축·운영업무를 담당하며 진행되었다. 이러한 추진조직은 1987년 1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고 동년 6월 금융전산추진위원회 운영세칙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담사업자로 당원이 명문화되었다.

한편 1987년 6월 당초 은행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던 금융전산망사업에 증권, 보험, 투자금융 및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분야별 소위원회를 추진기구로 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금융전산망은 명실상부한 전 금융기관의 전산망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표2-3-4〉 금융전산망사업 추진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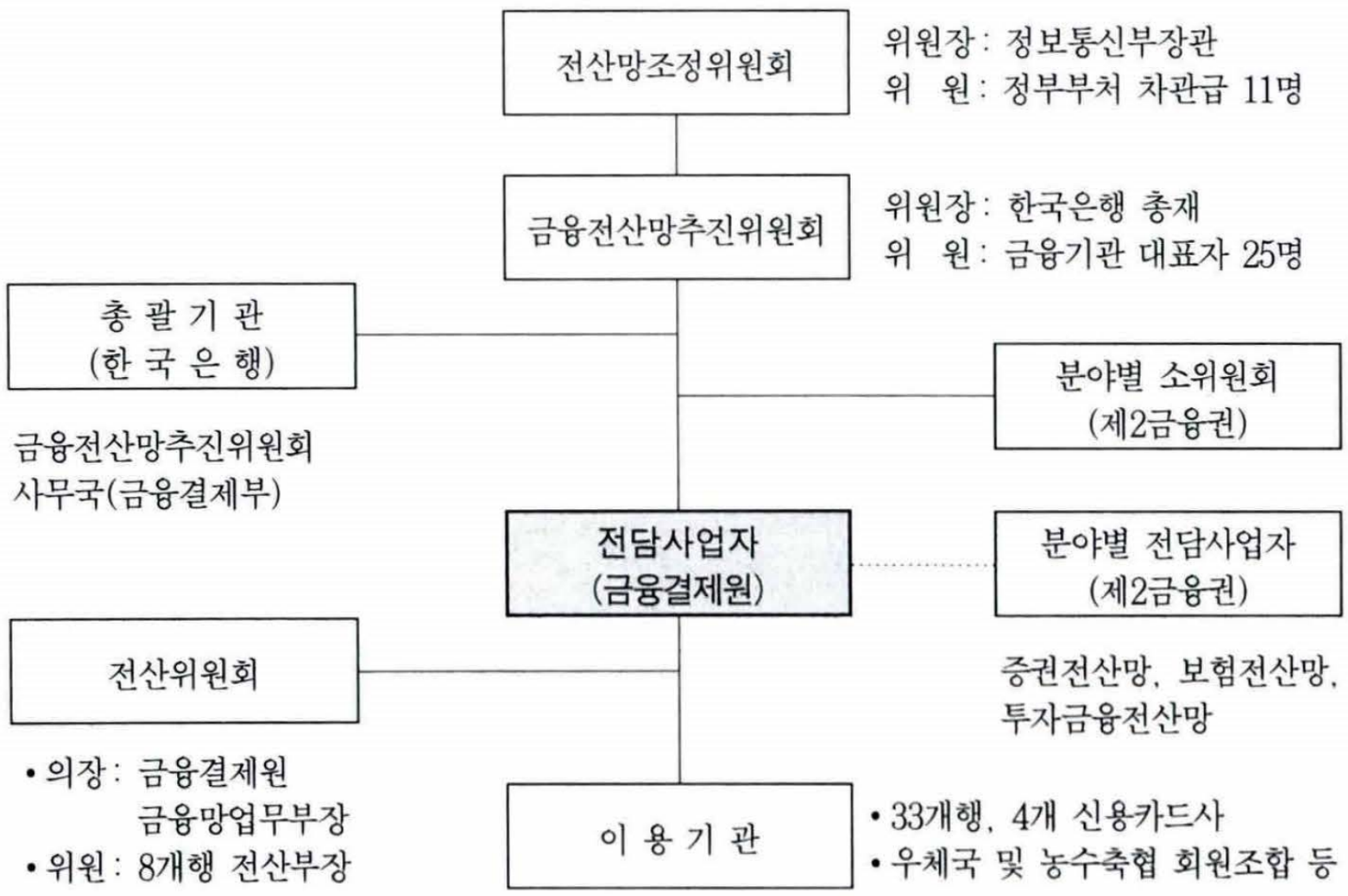

국가 5대 기간전산망 중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 국가의 정보화에 선두적 역할을 한 금융전산망은 은행간 공동망인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시스템,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 및 타행환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었고 이후 대외 전산망과의 접속 및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추진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의 진전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전산분야에서도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와 원칙하에 1992년부터 2단계 금융전산망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스템의 정비·확충과 금융전산망사업 초기추진과정에서 미흡하였던 시스템의 안전대책과 표준화 등을 중점추진하게 되었고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과 자금관리시스템 등 대고객전산망의 구축도 아울러 계획하였다.

1.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 공동이용시스템은 고객이 다른 은행의 CD(Cash Dispenser)나 ATM(Automatic Teller Machine)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업무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각 금융기관의 컴퓨터와 금융전산망 중계센타인 당원의 시스템을 상호접속하여 1988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CD공동이용업무는 당원 설립이전인 1981년 11월부터 점포외 CD의 설치운영시 예견되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에서 오는 인적·물적 낭비를 막고 은행창구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며 고객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은행별로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망을 전 은행간 온라인망으로 구축하여 개별은행의 CD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은행지로관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78년 4월 금융업무 전산화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은행지로관리소에 CD전담반이 설치된 것은 1981년 10월이었고 이때부터 CD공동이용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었다. 1982년에는 금융기관 전산담당자들과 은행지로관리소 직원들로 공동CD실무작업반이 구성되고, 1983년 5월 공동CD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초자료조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구축 등 CD공동업무 추진을 도모하였다. 한편 1982년 2월에는 CD취급의 근거가 되는 현금자동지급기 취

급지침이 제정되었다. 이후 CD공동이용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하나로 1986년 7월 16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당원에 CD공동이용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우선 각 은행별로 상이한 현금카드의 규격을 표준화하였고 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작업을 완료한 1988년 4월 서울소재 12개은행 13개점포에서 시범실시된 후 동년 7월부터 12개은행의 전국소재 점포로 확대실시되었으며 동년 10월에는 10개 지방은행이 참가하여 예금취급 전 금융기관에서 CD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다. CD공동이용시스템은 1988년 초기 구축작업 후 지속적으로 업무량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당원 중계센터와 참가은행간 통신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1993년 9월에는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업무 및 점외 CD/ATM망과의 접속업무를, 1994년 2월에는 타행간계좌이체업무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CD공동이용시스템에 참가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시킴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2.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

자동응답서비스(ARS) 공동운용시스템은 고객이 전자식(MFC)전화기, 팩시밀리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관련정보를 음성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ARS공동운용시스템은 당초 개별기관별로 구축운용키로 하였으나 전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동운용키로 하고 1987년 9월 당원이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통신네트워크 구성 등 일련의 사전작업과 제도적인 준비를 통해서 1989년 4월 잔액조회, 무통장입출금거래내역조회, 환율안내, 금융상품안내, 신용카드업무를 13개은행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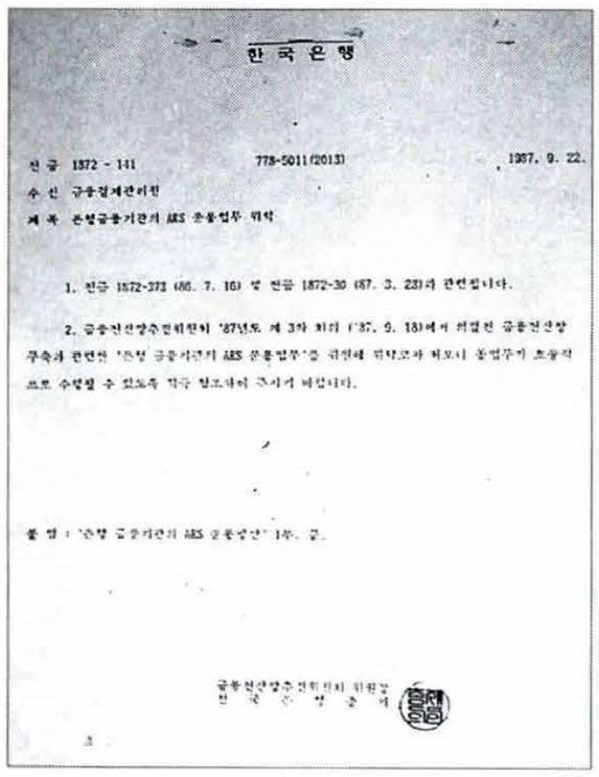

한 국 은 행

전 금 1872 - 141 778-5011(2013) 1987. 9. 22.

수 신 금융정책관리인

제 목 은행금융기관의 ARS 운용업무 위탁

1. 전금 1872-373 ('86. 7. 16) 및 전금 1872-30 ('87. 3. 23)과 관련됩니다.

2.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87년도 제 3차 회의 ('87. 9. 18)에서 의결된 금융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은행 금융기관의 ARS 운용업무"를 귀행에 위탁코자 하오니 동업무가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방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은행 금융기관의 ARS 운용업무" 1부. 끝.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위원장
한 국 은 행 총 재

ARS시스템 구축업무 위탁
(1987.9.22)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은 당초 개별기관별로 구축운용키로 하였으나 전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동운용키로 하고 1987년 9월 당원이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통신네트워크 구성 등 일련의 사전작업과 제도적인 준비를 통해서 1989년 4월 잔액조회, 무통장입출금거래내역조회, 환율안내, 금융상품안내, 신용카드업무를 13개은행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지방 네트워크의 구성을 완료하여 1990년 12월에는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실시되었고 1991년에는 FAX 통지업무를, 1992년 1월에 자기앞수표 24시간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와 동행내 계좌이체업무를 추가하였으며 1994년 10월에는 가계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

무를 실시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시스템 운영시간도 대폭 연장하여, 금융기관 이용고객의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금융사회로의 진전 및 홈뱅킹, 펌뱅킹 실시를 위한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3. 타행환시스템

타행환시스템은 고객이 거래은행이나 거래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당원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금융전산망중 가장 늦게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원은 1988년 2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타행환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어 동년 7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시스템 기본설계를 마친후 1989년 12월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온라인 송금업무, 추심대전송금업무 및 자기앞수표조회업무를 실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참가기관의 확대로 어느 은행, 어느 점포에 가서도 현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참가함으로써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고객들도 타행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에는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기타

당원은 CD, ARS, 타행환시스템 이외에 1992년 3월에는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기관과의 자금결제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시스템을 당원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1988년 4월)과 대량의 데이타 수수가 가능한 일괄전송시스템(1990년 12월)을 개발하여 당원과 금융전산망 참가은행간 자료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1993년 1월 경찰전산망과의 접속을 통하여 은행계좌 부정사용범의 현장검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94년 1월 무역자동화망과 접속하여 무역관련업무의 자동화에 기여하였다.

1995년부터는 기존 전산망을 이용한 부가가치통신망을 구축하여 고객의 물

품구입 및 대금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불카드서비스와 신용카드 거래승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산화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은행간 E-MAIL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신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 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다.

〈표2-3-5〉 금융전산망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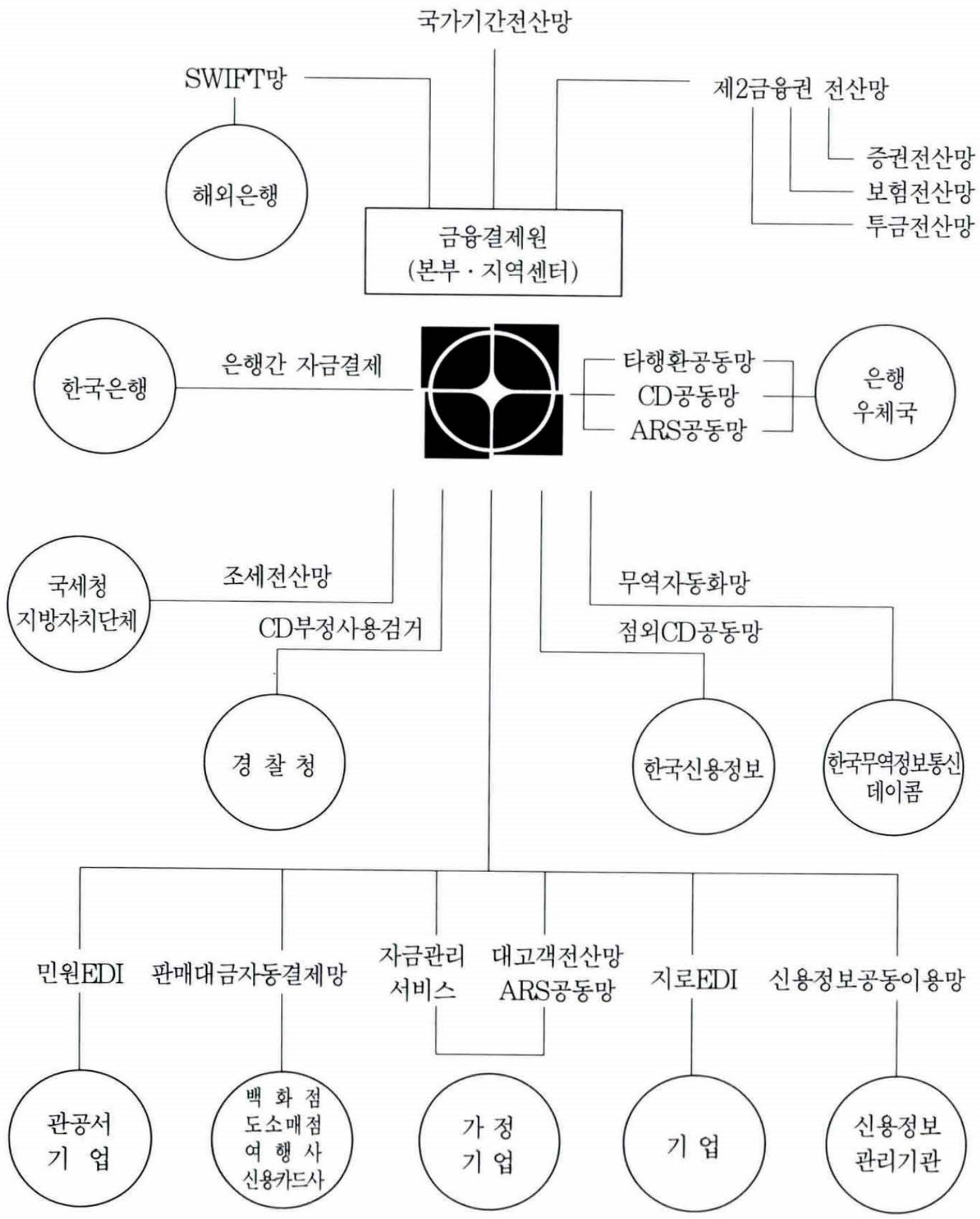

제3절 금융전산망의 구축효과

1. 금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

1988년부터 금융전산망이 구축 운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종래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영업점별 전산화도 거의 완료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고객이 직접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뱅킹업무를 점차 확대해 나감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고객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또한 무인자동화 점포 및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소형기계화 점포가 설치되는 한편, 이미 구축된 금융전산망의 고객이용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이외의 수익원 다변화에 도움을 주었다.

2.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금융전산망의 구축으로 현금 및 수표, 지로 등 장표(paper-base)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을 비장표(paperless)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인 전자자금이체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의 처리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는 금융전산망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전자자금이체수단에 의한 지급결제처리시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처리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3. 금융의 국제화에 대비한 기반 조성

금융의 자유화·국제화로 경쟁격화, 수익악화에 직면한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금융전산망 구축으로 이에 대처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CD공동이용시스템, ARS공동운용시스템, 타행환시스템, 은행간자금결제시스템 등 금융전산망을 구축·운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영업기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고 있다.

4. 대고객 서비스 개선

종전에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의 거래점포에 가야 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중에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CD공동이용시스템, ARS공동운용시스템, 타행환시스템 등 금융전산망 구축으로 현금인출, 송금 및 잔액조회 등을 고객의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인근 금융기관 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ARS공동운용시스템의 경우 전화 및 팩시밀리 등을 통해 가정, 사무실 등에서도 금융기관 거래내역조회, 수표조회, 환율정보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점포외벽 및 공공기관 등에 CD/ATM기의 설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금융전산망 이용매체도 팩시밀리, 개인용컴퓨터 등으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고객이 금융기관 점포 밖에서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을 넘어서까지도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대고객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현행 은행지로의 처리기간이 최단 2일인데 비해 타행환시스템의 경우 현금송금시 즉시 처리되는 등 금융전산망을 통해 신속한 자금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고객 및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같은 수준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서비스의 광역화를 가져왔으며 고금리상품, 복합금융서비스 등 신종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정보, 기타 생활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5. 금융전산망의 구축효과

은행간 공동전산망의 구축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CD공동이용시스템은 현금사회에서 카드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완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금융기관 측면에서는 DIY 뱅킹시스템 도입여건을 조성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D의 이용도를 제고하였다. 대고객 측면에서는 고객의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은 수표없는 사회(Checkless Society)를 촉진하고, 금융기관은 업무처리의 생산성 제고 및 신용리스크의 축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타행환시스템은 현금 및 수표없는 사회(Cashless & Checkless

Society)의 조기 달성과 신속한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은 지급결제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처리경비 절감, 대고객서비스 개선효과를 거두었으며,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거래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ARS공동운용시스템 실시로 기업·은행간 전산망, 가정·은행간 전산망 및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 등의 실시기반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측면에서는 DIY 뱅킹 확대, 영업점 업무효율화 및 대고객서비스 개선, 은행의 이미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고객은 금융거래시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4절 금융전산망의 향후 발전방향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및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한편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 가속, 금융기관 고객의 수요 다양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전산망 발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로 금융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전산망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되 건전한 경쟁질서하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둘째로 전산망 기반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신속·안전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국민 금융편의 제고는 물론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시스템의 개선 유도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영업 및 경영전략지원을 위한 정보계 및 대외계시스템 개발 확대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촉진한다. 전산시스템은 대형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집중처리시스템에서 중소형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한 기능별 · 지역별 분산처리시스템으로 전환 촉진한다. 다만, 개별은행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업무별 · 지역별 분산처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분산처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업무처리능력의 향상, 업무처리시간의 단축, 장애의 국지화로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사용자 컴퓨팅(End-user Computing)에 의한 전산자원 이용도 제고,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신기술 채용 및 전산환경변화에의 신속한 대응 및 멀티벤더(Multi-vendor)화로 대형 컴퓨터공급업체 종속에서 탈피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시간 및 장소의 제약없이 금융업무를 직접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각종 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지역을 다양화함으로써 창구의 업무부담 완화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CD/ATM을 점포외벽 또는 점포외 지역에 설치하고, 홈뱅킹 및 펌뱅킹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폰(Smart Phone) 또는 스크린폰(Screen Phone)* 등 매체의 보급을 확대하여 가능하게 한다.

* 스마트폰(스크린폰) : 조작이 간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화면과 카드판독장치가 부착된 전화기

2. 공동전산망사업의 확충

가. IC카드의 조기 도입기반 조성

금융거래의 안전성확보와 은행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IC(Integrated Circuit)카드 또는 이를 이용한 전자지갑(Electronic Purse)의 조기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전자지갑이 실물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전자화폐로서 보편화될 경우 화폐발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지갑이 도입될 경우 비밀번호와 거래정보의 암호화처리 등으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여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신회선비용 및 카드발급비용의 절감과 화폐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능을 하나의 IC카드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거래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 IC카드가 가장 많이 보급된 프랑스의 경우 카드의 부정사용금액과 건수비율이 1988년중 435백만 프랑, 0.18%에서 1992년중 360백만프랑, 0.04%로 카드관련 범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나. 공동자금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

당원 중계센터와 은행 및 기업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다수은행관련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995년 10월부터 공동CMS(Cash Management Service)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고객서비스 증진 및 금융기관의 수익원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현행 지로업무중 자동이체 및 대량지급의 상당부분이 공동 CMS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산망간 연계 확대

가. 은행전산망과 제2금융권 전산망의 연계추진

은행과 보험, 증권, 투자금융업의 관련업무중 지급결제의 원활화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산망을 상호연결한다. 전산망 연계추진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전산망의 최대활용을 위해 각 중계센터와의 접속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나. 금융전산망과 해외전산망간 접속 추진

카드를 이용한 각종 금융거래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CD/ATM망 및 EFT/POS망 등의 중계를 담당하는 해외전산망과 국내망과의 접속을 추진한다. 해외전산망과 접속함으로써 외국인이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CD/ATM 및 EFT/POS망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직불카드(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동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완벽한 외환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국제적인 CD/ATM망 및 EFT/POS망의 중계기구와 국내망과의 접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안전대책 강화

당원은 금융전산망 중계센터로서 전산장애 및 사고, 금융거래자료의 불법유출 등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전자자금거래의 위변조 방지 및 정당성 확인을 위하여 데이타의 암호화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함은 물론 자연재해 등 불가

항력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전산망 풀백업(Full Backup)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2-3-6〉 미국, 일본의 백업센터 설치현황

전산시스템	본 부	Backup Center
미 국 Fedwire (미연준이사회)	Richmond	Dallas
일 본 Bojwire (동경은행연합회)	동 경	오사카

주 : ( )은 시스템 운영주체

5. 표준화의 적극 추진

당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금융업무전문위원회(TC68) 국내 간사이며, 금융전산업무관련 표준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표준화 대상업무를 선정·추진하며, 국내외 표준화활동기구(ISO/TC68, 산업표준심의회, 전산망표준심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전산원, 중소기업청 등 표준화추진 관련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등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6. 네트워크 확장 구축

금융전산망업무가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모든 장애에 대비한 금융전산망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 고객의 다양한 요구증대 등 환경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효율성을 갖춘 네트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성, 확장성 및 효율성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네트워크(회선, 통신장비)의 이중화,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등을 통하여 환경변화(업무량증가, 업무추가 등)에 적기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전산 네트워크(통신장비, 기기 등)의 이중화를 통하여 장애에 대비하여야 하며, 둘째로, 확

장성이 용이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처하고, 업무추가 및 확대에 대비하며, 셋째, 금융전산망 백업센터 구축이 용이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향후 ATM(비동기 전송모드), B-ISDN(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등의 고속망으로 전환이 용이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3편 금융결제원의 조직과 경영

제1장 정관

제2장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제3장 조직

제4장 경영

제1장 정관

제1절 설립당시의 정관

1. 제정 경위

당원의 정관은 어음교환, 은행지로 및 금융전산망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주체로서 금융결제원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목적 및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는 최상위의 규정으로서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정관을 근거로 그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때 작성된 기초정관은 1986년 4월 18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86-4차 총회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와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부에 정관허가 신청을 하여 동년 5월 19일 재무부 법무22002-262호에 의해 일부 수정허가를 받았다. 이를 동년 5월 23일 제86-6차 총회에서 수정결의함으로써 전문 11장 37조 및 부칙 2조의 금융결제원 정관이 확정되었다.

2. 구성 및 내용

설립당시 정관은 다음과 같이 11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2장 사 원(제5조~제10조)
제 3장 총 회(제11조~제16조)
제 4장 이사회(제17조~제21조)
제 5장 위원회(제22조)
제 6장 임 원(제23조~제26조)

〈표3-1-1〉 정관허가 당시의 주요 수정내용

원 안	수 정 안
제5조(사원 및 준사원) ① 관리원의 사원은 대한민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으로서 사원총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조(사원 및 준사원) ① 관리원의 사원은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하 제1항의 사원과 본항의 준사원을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준사원으로 관리원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준사원으로 관리원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희망에 따라 준사원이 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한국은행총재가 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 유고시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의장) ① ·····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대표로 있는 사원 금융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좌 동)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총회의 결의방법) ①~③ (생 략)	제1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③ (좌 동)
④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원은 서면에 의하여 다른 출석사원에게 표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이 없다.	⑤ 준사원 및 원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제18조(이사회 의장) ①~② (생 략)	제18조(이사회 의장) ①~② (좌 동)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기본재산) 관리원의 기본재산은 사원의 출자, 가입금 및 기타 자산으로 한다.	제29조(기본재산) ① 관리원의 기본재산은 사원의 출자금, 가입금, 참가금 및 기타 법인존립의 근간이 되는 재산으로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표3-1-1〉 정관허가 당시의 주요 수정내용

원 안	수정안
제30조(경비) ……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과 사원의 경비분담금 및 사원이 아닌 자로서 사업에 참가하는 자의 경비분담금과 참가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경비) ① ……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과 사원 및 준사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경비분담금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원 및 준사원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해산시의 자산처분) ①~② (생 략) ③ 어느 사원이 특별히 한 출자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그 사원에 귀속한다.	제35조(해산시의 자산처분) ①~② (좌 동) ③ (삭 제)
	제37조(보고) 관리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사, 예산(회비징수기준 포함), 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제2조 ①~③ (생 략) ④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관련업무와 인원 및 전산기기를 이관한다.	부 칙 제1조~제2조 ①~③ (좌 동) ④ …… 신용정보 관련업무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한다.

제 7장 사무부서 및 직원(제27조~제28조)
제 8장 출자 및 회계(제29조~제32조)
제 9장 정관변경(제33조)
제10장 해 산(제34조~제35조)
제11장 보 칙(제36조~제37조)

이와 같이 구성된 정관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원과 준사원의 자격을 가입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원과 준사원을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기관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사업별 특별참가제도를 어음교환업무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당원의 운영에 관한 각급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을 사원은행이 담당하고 모든 사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가. 사업

1. 어음교환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은행지로에 관한 업무
3.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4.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
5.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관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나. 사원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다. 총회

○ 구성 : 사원 전원

○ 의장 : 총회에서 선출, 의장유고시 의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직무대행자

○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 신입사원의 가입승인, 가입금의 결정 및 사원의 제명
- 출자금 및 경비분담금 또는 경비분담방법의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 기타 의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이사회

○ 구성 : 사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 전원과 원장

○ 의장 : 이사회에서 선임

○ 의결사항

-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 업무수행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위원회

당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급 위원회 설치

바. 임원

○ 원 장 : 총회에서 선임, 임기 3년, 중임가능

○ 전무이사(1인) : 원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 임기 3년, 중임가능

○ 상무이사(2인이내) : 원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 임기 3년, 중임가능

○ 감 사(1인) : 총회에서 선임(재경원장관의 승인요), 임기 2년, 중임가능

사. 사무부서 및 직원

○ 사무부서 : 이사회 의결로 설치

○ 직원의 임면 : 원장

아. 출자 및 회계

○ 기본재산 : 사원의 출자금, 가입금, 참가금 및 기타 법인존립의 근간이 되는 재산

○ 경비 :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과 사원 및 준사원의 분담금으로 충당

○ 회계년도 : 1월 1일~12월 31일

제2절 정관의 변천

1. 변천내용

당원의 정관은 1986년 5월 19일 제정이후 총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은 22개로서 지부신설과 관련된 제3조(사무소)가 8회로 가장 많이 개정되었고, 제4조(사업)가 2회, 나머지는 한번씩 개정되었다.

정관의 변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5월 31일 개정시에는 평택, 태백어음교환소가 법무부령 제287호(1986.5.9)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 운영할 지부를 평택시와 태백시에 신설하였다. 또한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상무이사 1명을 증원하였다. 1987년 7월 6일 공주어음교환소가 법무부령 제294호(1987.2.5)로 논산, 홍성어음교환소가 법무부령 제300호(1987.6.16)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 운영할 지부를 공주시, 논산군 및 홍성군에 신설하였고, 금융전산위원회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개칭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1989년 9월 28일에는 원명칭을 금융결제관리원에서 금융결제원으로 변경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장내외 콜시장 통합추진정책과 6개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콜거래중개업무 승인 등 주변여건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콜거래중개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원의 목적사업에 「콜거래중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재무부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지침에 따른 콜거래중개에 관한 업무」로 수정허가를 받았다. 이때의 개정으로 당원의 목적사업은 현재와 같이 정해졌다.

그리고 행정구역명의 변경에 맞추어 지부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및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제3조의 단서조항에 행정구역명이 변경될 경우 그 지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규정운영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1990년 5월 17일 개정시에는 안산어음교환소가 법무부령 제340호(1990.3.

6)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 운영할 지부를 안산시에 신설하였다.

1991년 3월 5일에는 해남어음교환소가 법무부령 제347호(1991.1.15)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 운영할 지부를 해남군 해남읍에 신설하였다.

1992년 1월 24일에는 상임고문직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 등 당면한 제반 문제점의 해결은 물론 당원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1992년 7월 6일 정부의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1992.4.1)에 따라 당원 사업에 외국은행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원가입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사원, 준사원 이외의 기관도 당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업별로 특별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 12월 30일 개정시에는 당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이사회와 각급 위원회의 의장직을 당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와 구성원이 동일한 이사회 이사를 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원 및 준사원은행의 그룹대표 8인으로 변경하고 회의소집권한을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과 운영을 자율화·활성화하였다.

〈표3-1-2〉 회의체 구성변경 내역

구 분		종 전	변 경
이사회	의 장	이사회 선출	원장(당연직)
	이 사	사원 대표자 전원 및 원장	원장 및 총회 선임이사 8인
위원회	의 장	한국은행 관련부서장(당연직)	각 위원회 선임
	위 원	사원 및 당원 관련부서장	당원 관련부서장 및 이사회 선임위원 8인

1994년 6월 2일에는 이천, 김해어음교환소가 법무부령 제384호(1994.6.2)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 운영할 지부를 이천군과 김해시에 신설하고, 한국은행 창원지점과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마산지부를 창원으로 이전하고 지부명칭을 창원지부로 변경하였다.

1994년 12월 27일에는 정관 제5조 제3항에 의해 당원의 일부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하여 경비를 분담하고 있는 특별참가기관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취득, 소멸 및 제명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다.

1995년 11월 17일 개정시에는 전국 어음교환소 정비방안에 따라 추진된 서산, 양산어음교환소 신설 및 진해, 사천어음교환소 폐쇄조치가 법무부령 제416호(1995.11.16)로 공포되어 서산시, 양산군에 지부를 신설하고 진해·사천지부를 폐지하였다.

2. 현재의 정관

현재의 정관은 전문 11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당시 정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2장 사 원(제5조~제10조)
제 3장 총 회(제11조~제16조)
제 4장 이사회(제17조~제21조)
제 5장 위원회(제22조)
제 6장 임 원(제23조~제26조)
제 7장 사무부서 및 직원(제27조~제28조)
제 8장 출자 및 회계(제29조~제32조)
제 9장 정관변경(제33조)
제10장 해 산(제34조~제35조)
제11장 보 칙(제36조~제37조)

제1장 「총칙」에서는 당원의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와 지부의 설치장소 및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명칭은 1986년 6월 2일에 정한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에서 1989년 11월 1일 금융결제원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은행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관련기관과 금융전산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어음교환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둘

째, 은행지로에 관한 업무 셋째,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넷째,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과 전산처리 다섯째,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및 대행 여섯째,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지침에 따른 콜거래중개에 관한 업무 일곱째, 개별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타 결제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해당 행정구역에 둔다고 정하고 있는데 1995년말 현재 당원의 지부는 49개에 이르고 있다.

제2장 「사원」에서는 사원 및 준사원의 가입, 사업별 특별참가제도, 자격의 취득과 소멸 및 제명처분, 사원의 대표권, 사원명부의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총회」에서는 구성, 의장, 회의소집, 의결방법, 의결사항, 의사록 등 총회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이사회」에서는 구성, 의장, 회의소집과 의결방법, 의결사항, 의사록 등 이사회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임원」에서는 원장·전무이사·감사 등의 수, 임기, 선임방법,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사무부서와 직원」에서는 부서의 설치, 업무분장,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출자 및 회계」에서는 기본재산, 경비, 출자금 등의 반환청구금지, 회계년도 및 예산,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장 「정관변경」에서는 변경허가,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장 「해산」에서는 해산의 절차와 재산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1장 「보칙」에서는 준사원 및 사업별 특별참가기관에 대한 준용규정과 주무관청앞 보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당원은 은행법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사원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가입시 금융기관의 희망에 따라 사원 또는 준사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1년 6월 24일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최초 가입하는 기관은 준사원으로 하고 가입 후 일정요건을 취득한 준사원에 대하여는 사원 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한편, 1992년 6월 27일에는 특별참가제도를 신설하여 사원 또는 준사원이 아닌 사업별 참가희망기관은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가금의 합리적 산출을 위하여 동년 10월 17일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지침과 기준으로 하나, 보람, 평화은행이 준사원으로, CITI은행,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여 1995년말 현재 당원 사원은 17개기관, 준사원은 18개기관이며 6개 기관(CMB 서울지점 포함)이 특별참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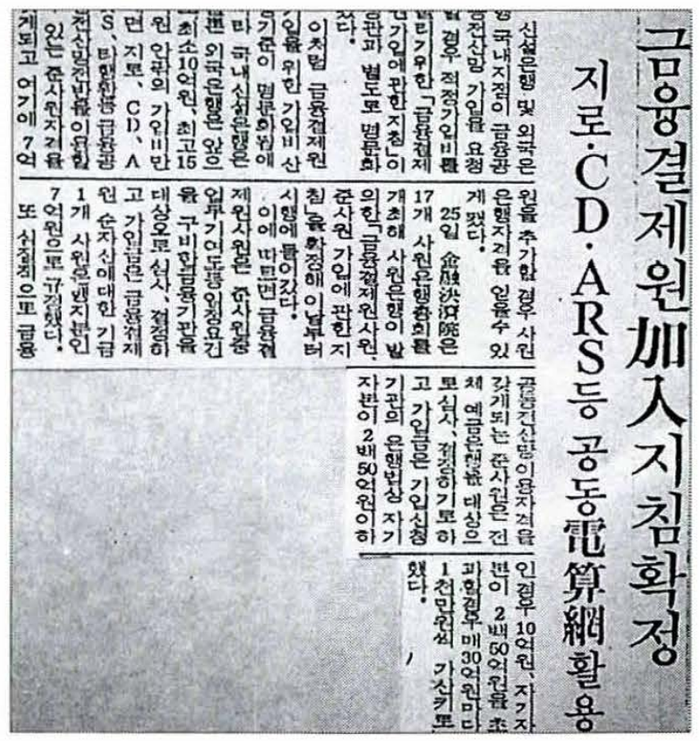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지침 제정
(1991.6.24)

제1절 사원

초창기 사원자격은 대한민국내 본점을 둔 14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1986년 4월 그 자격요건을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27일 외국은행이 당원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별사업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동 자격을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이 사원이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정관, 자기자

〈표3-2-1〉 사원 가입자격의 변천

기 관 명	기 간	사 원 자 격	명 칭
경성수형교환소	1928.11	경성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주)	조합은행
서울수형교환소	1961. 8	서울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주)	조합은행
은행지로관리소	1975.10~1986. 5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사 원
전국어음교환관리소	1984. 5~1986. 5	대한민국내 본점을 둔 금융기관	사 원
금융결제원	1986. 6~1992. 6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사 원
	1992. 6~현 재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사 원

주: 사단법인 경성(서울)은행집회소 사원

본 및 점포현황 등을 제출하여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원의 자격은 총회의 가입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총회에서 정한 가입금을 납입하고 사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취득하게 된다.

가입금은 당초에는 명시적인 규정없이 총회에서 결정되었으나 1991년 6월부터 기존 사원의 기득권을 감안하여 가입결정 최근 월말의 당원 기본재산에 소유물조정금을 합산한 순재산액에 대한 기존 1개 사원지분의 100%를 적용하여 산정해 오고 있다.

한편, 사원은 당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별도의 승인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원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뿐만 아니라 당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서면에 의한 탈퇴 통고,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의 상실, 파산선고,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소멸 및 정관 제10조에 의한 제명 등의 경우는 사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제2절 준사원

준사원은 사원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지방은행, 신규가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사원으로의 가입, 가입금의 결정, 탈퇴절차와 사업참가의 범위 등은 사원과 동일하며 준사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가입금은 가입 결정 최근 월말 현재 개별적으로 참가가 가능한 당원 사업별 참가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존에 특별참가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준사원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분담금이 총실적분담금의 3% 이상인 경우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특별참가기관

특별참가기관이란 당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 어음교환, 은행지로 및 금융전산망업무에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특별참가제도는 1985년 10월 어음교환업무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개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면서 시작되었고 우체국은 1910년 7월 객원으로 어음교환에 참가하던 것을 인정하여 별도의 참가절차없이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 후 1991년 6월 24일 어음교환업무 이외의 여타 업무에도 특별참가제도가 신설되었다.

1995년말 현재 어음교환업무에 3개기관(CMB서울지점 포함), 은행지로업무에 5개기관, 금융전산망업무에 5개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특별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당원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기일까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특별참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참가금은 최근월말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기투자비용과 신규 참가기관의 참가에 따른 예상수익, 영업규모,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잉여금의 합계액) 비중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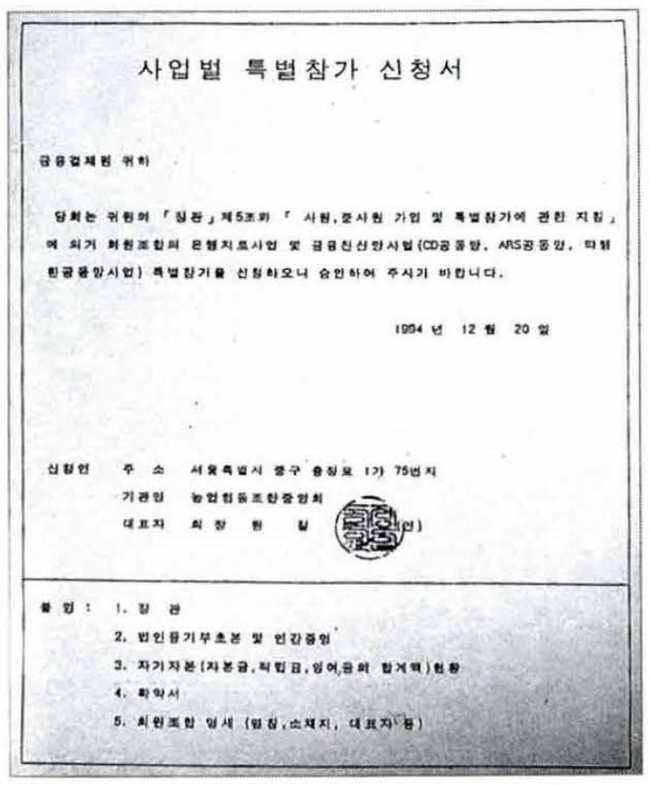

사업별 특별참가 신청서

금융결제원 귀하

당회는 귀원의 「정관」제5조와 「 사원,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회원조합의 은행지로사업 및 금융전산망사업(CD공동망, ARS공동망, 타행환공동망사업) 특별참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년 12 월 20 일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75번지
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최 장 원 (인)

붙임 : 1. 정 관
2. 법인등기부초본 및 인감증명
3. 자기자본(자본금,적립금,잉여금의 합계액)현황
4. 확약서
5. 회원조합 임서 (임원,소재지, 대표자 등)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특별참가 신청서 (1994. 12. 20)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총회는 당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총 사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한국은행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원에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의 의장은 사원 중에서 선출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대표로 있는 사원 금융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에게 미리 통지한 목적사항 외에는 출석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의결할 수 없으며, 정관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사원은 1개의 표결권을 가지며, 준사원과 원장은 표결권 없이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사원이 기명날인한 후 본부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신입사원의 가입승인, 가입금의 결정 및 사원의 제명
3. 출자금 및 경비분담금 또는 경비분담방법의 결정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6. 이사회 이사의 선임

7. 기타 의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이사회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과 총회에서 의결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구이다.

당원 설립 당시의 이사회 이사는 사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 전원과 원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원의 사업과 조직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량도 차츰 늘어나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총회와 동일한 구성형태 및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30일, 이사회의 구성원을 사원은행 그룹별로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8인과 원장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이사회 의장을 원장이 맡도록 하고 사원의 발의 및 회의소집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이사회의 합리적인 조직과 효율적 운영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원장 이외의 이사는 사원 중 한국은행 1인, 특수은행 2인, 시중은행 4인, 준사원 1인이며, 임기 2년의 비상임으로 당원에 대한 대표권은 없다. 의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되며,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한국은행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업무수행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위원회

당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각급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위원회 조직의 변천

당원 설립 당시에는 본부에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전산추진위원회 및 경리위원회를, 각 지부에 지부운영위원회를 두었다. 본부의 각급 위원회는 사원은행의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운영하고 한국은행의 관련 부서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었으며 당원의 관련 부서장은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당원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방법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위원회 기구의 변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정 경과를 간추려 살펴보면 1987년 6월 25일 각급 위원회의 위원에 당원의 관련 부서장을 포함토록 하였고 1991년 6월 24일 당원의 업무 다기화에 따라 각급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1992년 12월 30일에는 위원회 위원 수를 18인에서 9인으로 축소 조정하고 당연직 의장제를 호선제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 현재의 위원회

현재 당원은 본부에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전산위원회 및 경리위원회를, 각 지부에 지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부의 각급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 8인과 당원의 관련 부서장 1인으로 구성하고 지부운영위원회는 당원 지부장과 지부 관할지역내의 사원 또는 준사원인 금융기관의 주된 점포의 장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소속된 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은 사원은행 4분의 1 이상 또는 당원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어음교환심사위원회는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어음교환소의 신규가입·탈퇴·제명 및 제재, 서울어음교환소 참가료 및 위탁료의 결정, 서울어음교환소 규약을 비롯한 어음교환 관련규약의 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한다.

나.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은행지로운영위원회는 은행지로업무 운영·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관련규약의 제정·개폐 및 관련계약 체결, 참가은행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심의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한다.

다. 전산위원회

전산위원회는 금융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위탁한 사항,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 추진 및 전산처리,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관련업무 규약의 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한다.

라. 경리위원회

경리위원회는 당원의 공동사업 등에 따른 경비분담과 당원의 세무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당원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한다.

마. 지부운영위원회

각 지부운영위원회는 관할 지역내에서 해당 지방어음교환소 규약의 제정·개폐, 어음교환소 참가료 및 제수수료와 참가기관에 대한 제재, 불량거래처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및 이의 취소·해제, 은행지로업무의 이용촉진과 금융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제4절 임직원

1. 임원

임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관리하고 당원의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진으로 원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3인 이내 그리고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원장은 당원을 대표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최고 경영자로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무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무이사는 원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분장하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선임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감사는 당원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에서 선임하되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직원

당원의 직원은 일반직원과 서무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원은 책임자와 계장, 사원 및 기원으로 나누며 다시 책임자는 1급 내지 4급, 계장은 5급, 사원 및 기원은 5급과 6급으로 각각 구분하여 소정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서무직원은 주임과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하며 수위, 경비, 운전, 전화교환과 잡역 등의 직무에 종사하고, 별정직원은 촉탁 및 의무, 기술 등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직원의 직급에 따른 직위는 다음과 같다.

〈표3-3-1〉 일반직원 직위표

직 급	직 위 명
1 급	부장, 실장, 지부장, 검사역, 조사역
2 급	차장, 지부장, 실장, 검사역, 조사역, 비서역
3 급	과장, 지부장, 차장, 검사역, 조사역, 비서역, 기술역
4 급	과장대우, 대리, 검사역, 조사역, 비서역, 기술역
5 급	계장, 사원, 기원
6 급	사원, 기원

제5절 본부 부서 및 지부

1. 본부

설립 당시 당원의 본부 조직은 총무부, 어음교환부, 지로업무부, 전산부, 금융전산추진부와 감사실로 구성되었으며 총무부에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리담당을, 어음교환부에는 교환관리담당, 부도관리담당, 야간처리담당을, 지로업무부에는 지로기획과와 지로1과, 지로2과를, 전산부에는 전산개발과와 전산운영과를 두어 5부 1실 5과 6담당 체제로 출발하였다.

그후 사업영역 확대 및 업무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많은 질적 변화를 거치

면서 당원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1996년 2월말 현재의 9부 1실 3부속실 18과 2팀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가. 조직의 변천

당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원의 조직은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하였으며 그 구성과 운영면에서 절대적으로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0년간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격동의 시기로 세계사의 일대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통일 독일이 출범하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공산주의 종식 선언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동서냉전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였으며, 세계경제질서가 자본주의 틀 아래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확산으로 EC, NAFTA, ASEAN 등 경제블럭화가 심화되었으며 UR협상이 타결되고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국가간 무역전쟁이 격심해졌다.

국내 금융환경 또한 자유화, 개방화, 국제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와 금융산업구조 개편 등 금융제도의 혁신적인 조치가 단행되고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금융기관간에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격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당원 또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당원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원은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모두 14차례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融시장 97년께 완전開放

점부, 對策회의 3단계 시행… 年內 일정마련

점부는 오는 97년께 금융시장을 완전개방할 계획이다.

점부는 21일 오후 李弼鎬 재부부2차관보재로 재부부 경제기획원 실국부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자유화및 개방계획을 위한 제2차 대책반회의를 갖고 오는 97년까지 금융시장을 선진국수준으로 개방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육해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OECD등 선진국이 금융시장 완전개방토록 요구한데 따라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금융자유화및 개방계획을 수립, 개방압력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점부는 이에따라 1단계로 오는 93년까지의 단기 개방일정을 4차IPT에서 제시하고 이어 오는 6월말까지 94-96년의 중기 개방일정을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97년께의 완전개방에 필요한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3단계에 걸쳐 금융시장을 개방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육해안에서는 OECD등 선진국이 금융시장 완전개방토록 요구한데 따라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금융자유화및 개방계획을 수립, 개방압력에 대처해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1992.2.21)

먼저 1988년 4월 1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제정과 함께 당원이 추진해온 금융전산망의 1단계 구축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정리·조정하여 업무분장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총무부를 3담당에서 3과 체제로 개편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당원 업무전반에 대한 통할·조정 및 기획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총무부 안에 기획실을 신설하였다.

이듬 해인 1989년 6월 23일의 조직개편에서는 임원의 효율적인 비서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무부 안에 비서실을 신설하고 어음교환부를 3담당에서 4과 체제로 정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IMF 8조국 가입(1988.11.1)과 함께 정부가 외환관리 자유화 및 콜시장 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내 외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9년 10월 14일에는 어음교환부 안에 자금중개실을 신설하여 외환매매거래와 원화 콜 및 외화 콜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금융자유화·개방화·국제화의 급진전에 따른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및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1990년 1월 1일자로 기획실을 총무부에서 별도 부서로 분리하여 종합기획과와 경영관리과를 설치하였으며, 이듬 해인 1991년 1월 22일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무부에 급여후생과를 신설하였다.

1992년 8월 1일에는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전산자원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조직 단위간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동 개편의 핵심은 전산부문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금융전산추진부와 전산부를 금융망업무부·전산개발부·전산운영부로 재편하고 금융망업무부에 금융망기획과와 금융망추진과를, 전산개발부에 개발1과와 개발2과를, 전산운영부에 운영1과와 운영2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금융전산망을 비롯한 전산관련 업무의 기획·개발·운영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조사연구의 필요성 증대와 대외 홍보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기획실에 조사홍보과를 신설하고 아울러 총무부에 관재과와 안전관리과를, 지로업무부에 지로3과를 신설하는 한편, 어음교환부 교환처리1과와 교환처리2과를 교환처리과로 통합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당원 조직은 6부 2실 2부속실 22과로 정비되었다.

이듬해인 1993년 4월 1일에는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동년 8월 4일에는 6과 1부속실로 규모면에서 비대해진 총무부를 총무부와 인사부로 분리하여 총무부에 서무과·관재과·경리과·안전관리실을, 인사부에 인사과·급여후생과와 비서실을 두었다.

이후 대외적으로 UR협상이 타결되어 WTO체제가 출범하고 국내에서는 금

융실명제의 전격 실시와 함께 단계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연이어 단행되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사원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졌다.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당원 또한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인 도전과 제약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원은 내부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첨단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확산과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원은 대고객전산망 관련 VAN사업 등 수익사업에 진출하여 1994년 7월 직불카드 VAN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으며, 1995년 2월 8일 금융망업무부 안에 부가통신사업실을 신설하여 VAN사업 등 수익사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1995년 9월 18일에는 당원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실 안에 경영전략팀을 신설하고 조사홍보과를 폐지함으로써 경영이념의 확산과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직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당원은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금융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서류발급제도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이용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당원이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 23일 다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는 바, 민원서류발급제도 개선추진과 CMS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과 직불·신용카드 VAN 등 기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실을 금융망업무부에서 별도 부서로 분리하고 명칭을 VAN사업부로 변경하는 한편, 기획실도 명칭을 기획부로 변경하였으며, 동년 2월 13일에는 조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망업무부 안에 조세전산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설립 당시 5부 1실 5과 6담당 체제로 출발했던 본부 조직은 당원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여러 차례의 확대 개편을 거듭한 끝에 9부 1실 3부속실 18과 2팀 체제를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표3-3-2〉 조직변천표

일 자	변 경 내 용	직 제
1986. 6. 2 (설립당시)	• ~~총무부~~: 총무, 인사, 계리담당 • 어음교환부: 교환관리, 부도관리, 야간처리담당 • 지로업무부: 지로기획과, 지로1과, 지로2과 • 전산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 금융전산추진부 • 감사실	5부1실 40개지부 (5과6담당)
10.13	• 태백지부 신설	5부1실 41개지부
11. 3	• 평택지부 신설	5부1실 42개지부
1987. 8.17	• 홍성지부 신설	5부1실 43개지부
12. 1	• 공주 · 논산지부 신설	5부1실 45개지부
1988. 4. 1	• 기획실 신설(~~총무부~~) • ~~총무부~~ 체제개편(3담당 → 3과) 총무, 인사, 계리담당→~~총무~~과, 인사과, 계리과 • 과 명칭 변경(지로기획과 → 지로추진과, 전산개발과 → 전산과, 전산운영과 → 운영과)	5부1실1~~부~~속실 45개지부 (8과 3담당)
1989. 6.23	• 비서실 신설(~~총무부~~) • 어음교환부 체제개편(3담당 → 4과) 교환관리, 부도관리, 야간처리담당 → 교환관리과, 부도관리과, 교환처리1과, 교환처리2과 • 과 명칭변경(전산과 → 전산개발과, 운영과 → 전산운영과)	5부1실2~~부~~속실 45개지부 (12과)
10.14	• 자금중개실 신설(어음교환부)	5부1실3~~부~~속실 45개지부
1990. 1. 1	• 기획실을 별도부서로 총무부에서 분리(기획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5부2실2~~부~~속실 45개지부 (14과)
8.10	• 안산지부 신설	5부2실2~~부~~속실 46개지부
1991. 1.22	• 급여후생과 신설(~~총무부~~)	5부2실2~~부~~속실 46개지부 (15과)
4.19	• 해남지부 신설	5부2실2~~부~~속실 47개지부
1992. 8. 1	• 금융전산추진부와 전산부를 3개 부서로 개편(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전산개발부: 개발1과, 개발2과,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 4개 과 신설 - 조사홍보과(기획실), 관재과, 안전관리과(~~총무부~~), 지로3과(지로업무부) • 과 통합 및 명칭변경 교환처리1과, 교환처리2과, 교환관리과(교환운영, 접수) → 교환처리과(어음교환부) ~~총무~~과 → 서무과, 계리과 → 경리과(~~총무부~~)	6부2실2~~부~~속실 47개지부 (22과)
1993. 4. 1	•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실로 개편(~~총무부~~)	6부2실3~~부~~속실 47개지부 (21과)
8. 4	• ~~총무부~~를 총무부와 인사부로 분리 ~~총무부~~: 서무과, 관재과, 경리과, 안전관리실, 인사부: 인사과, 급여후생과, 비서실	7부2실3~~부~~속실 47개지부 (21과)

〈표3-3-2〉 조직변천표

일 자	변 경 내 용	직 제
1994. 2.17	• 전산개발부 과체제 폐지	7부2실3부속실 47개지부 (19과)
7. 4	• 이천지부 신설	7부2실3부속실 48개지부
7.11	• 김해지부 신설	7부2실3부속실 49개지부
1995. 2. 8	• 부가통신사업실 신설(금융망업무부)	7부2실4부속실 49개지부
9.18	• 경영전략팀 신설, 조사홍보과 폐지(기획실)	7부2실4부속실 49개지부 (18과1팀)
11.24	• 진해, 사천지부 폐쇄	7부2실4부속실 47개지부
12.18	• 서산, 양산지부 신설	7부2실4부속실 49개지부
1996. 1.23	• 부가통신사업실을 별도 부서로 금융망업무부에서 분리하여 VAN사업부로 설치 • 기획실을 기획부로 명칭변경	9부1실3부속실 49개지부
2.13	• 조세전산팀 신설(금융망업무부)	9부1실3부속실 49개지부 (18과2팀)

나. 현재의 조직과 업무

현재 당원의 본부 조직은 기획부, 총무부, 인사부, 어음교환부, 지로업무부, 금융망업무부, VAN 사업부,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 및 감사실과 인사부 부속 비서실, 어음교환부 부속 자금중개실, 총무부 부속 안전관리실의 9부 1실 3부속실 체제를 갖추고 각 부실 아래 18과, 2팀을 두어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금중개실과 비서실에는 독립부서에 준하는 직무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들 본부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획부에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경영전략팀을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사업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법규에 관한 사항
- 종합기획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지급결제제도의 조사연구 및 홍보의 총괄

2) 총무부에 서무과, 관재과, 경리과, 안전관리실을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문서 및 서무에 관한 사항
• 관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 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경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 인사부에 인사과, 급여후생과와 비서실을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연수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비서에 관한 사항

4) 어음교환부에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와 자금중개실을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어음교환업무에 관한 사항
• 외환거래 및 환율고시에 관한 사항

5) 지로업무부에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지로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지로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금융망업무부에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와 조세전산팀을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금융전산망업무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전산관련 공동업무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전산기기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조세전산화업무에 관한 사항

7) VAN 사업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VAN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익사업

〈표3-3-3〉 현재의 조직도표(1996. 2. 13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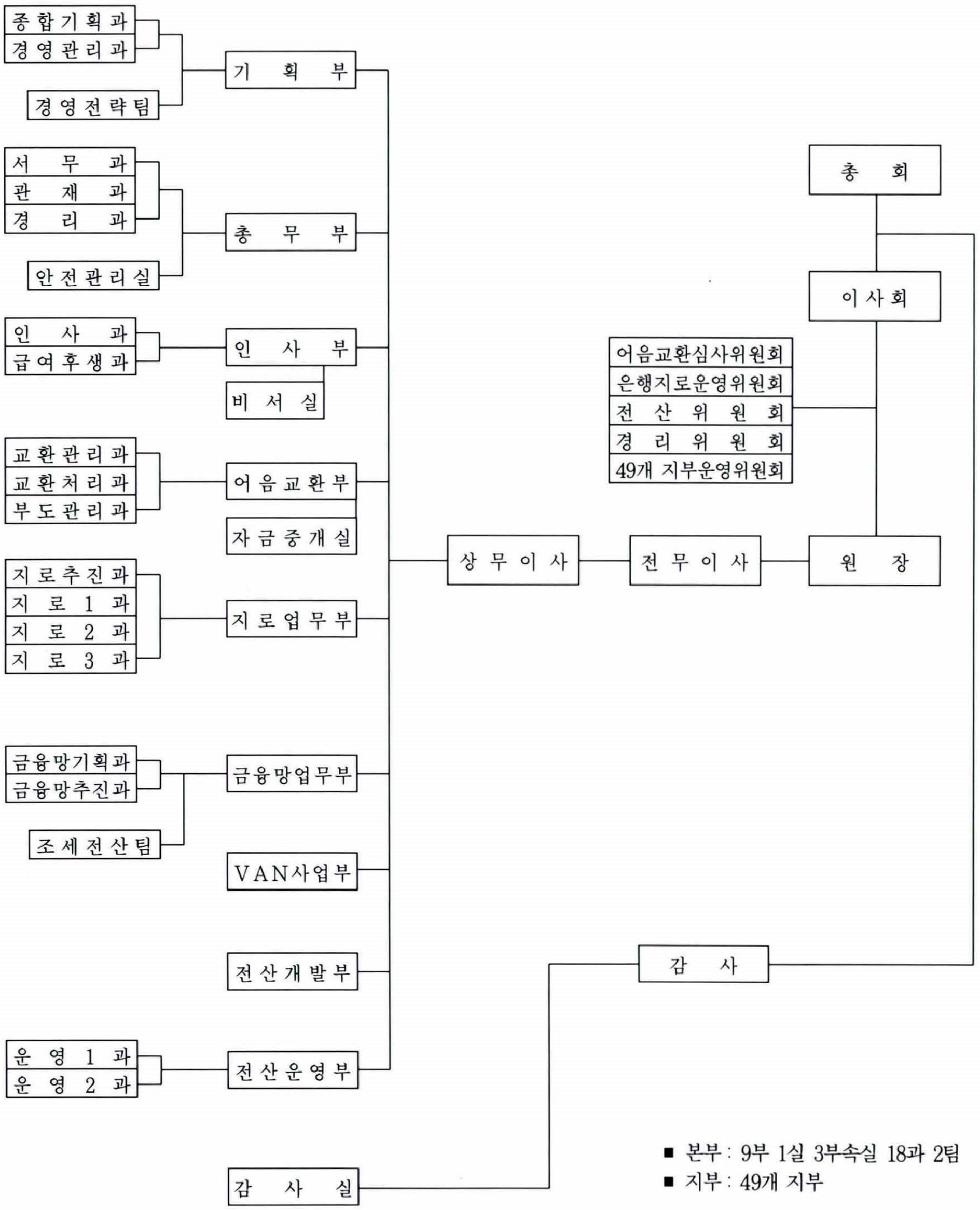

8) 전산개발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EDP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9) 전산운영부에 운영1과, 운영2과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전산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통신설비 및 회선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감사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사고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지부

지부는 관할지역의 어음교환업무와 은행지로업무, 금융전산망업무 및 금융기관 전산관련 공동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내 어음·수표의 교환 및 결제와 불량거래자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제도 운영 등 지방어음교환소의 운영 관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부의 개폐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규모 및 여건 변화와 지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상공인들의 여론 등 지방어음교환소 설치·운영의 필요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설립 당시 40개의 지부 조직으로 출발한 당원은 이후 이러한 지방어음교환소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은행지로제도와 자동응답서비스(ARS)실시 여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부 증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설립 이후 당원의 지부 신설 경과를 살펴보면, 1986년 10월 13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53-71번지에 태백지부를 개설하였고 이어서 동년 11월 3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66-1번지에 평택지부를 개설하였다.

이듬 해인 1987년 8월 17일에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6번지에 홍성지부를 개설한 데 이어 동년 12월 1일에는 충청남도 공주군 중동 73-4번지에 공주지부를,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161-3번지에 논산지부를 각각 개설하였다.

1990년 8월 10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5-3번지에 안산지부를 개설하였고 다음해인 1991년 4월 19일에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3-9

번지에 해남지부를 개설하였다.

또한 1994년 7월 4일에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증일리 2번지에 이천지부를 개설하였고 곧이어 7월 11일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06-9번지에 김해지부를 개설하였다.

이듬 해인 1995년 11월 24일에는 인근 지부와 가깝고 경제적 관련도가 밀접하여 지부를 통합하는 것이 어음교환 등 업무처리에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해지부와 사천지부를 폐쇄하여 인근의 창원지부와 진주지부로 각각 통합하였으며, 동년 12월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85-1번지에 서산지부를,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148-27번지에 양산지부를 각각 개설함으로써 당원은 전국적으로 49개의 지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당원은 1990년 1월 1일, 지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모지부를 두어 관할 지부의 업무지도와 지원을 담당토록 하는 모지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처음으로 지정된 모지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강릉지부 등 6개 지부로 이들은 관할지역 내 소규모 지부에 대한 업무 지도·교육과 인력 지원, 고충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1995년 5월 4일에는 모지부를 기존의 6개 지부에서 수원, 인천, 춘천, 청주, 창원, 제주지부를 추가하여 12개 지부로 늘리고 모 지부장에게 관할지역내 지부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포상추천, 4급 이하 직원의 이동 및 파견, 지부장의 출장 및 휴가 승인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모지부제도의 활성화를 기하였다. 이로써 당원의 지부 조직은 권역별로 모지부를 중심으로 본부 조직과 긴밀한 유대 속에 관할지역내 자금결제의 원활화와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1995년말 현재의 지부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3-4〉 지부조직

모지부	관 할 지 부	모지부	관 할 지 부
인천지부	부천, 의정부, 안산지부	수원지부	안양, 성남, 평택, 이천지부
춘천지부	원주지부	강릉지부	동해, 속초, 태백지부
대전지부	천안, 홍성, 서산, 공주, 논산지부	청주지부	충주, 제천지부
광주지부	목포, 여수, 순천, 해남지부	전주지부	군산, 익산, 정읍, 남원지부
부산지부	울산, 통영, 김해, 양산지부	창원지부	진주지부
대구지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김천, 영주지부	제주지부	-

제4장 경영

당원은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획부 주관하에 장단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 및 통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제1절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

경영이념은 당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본이념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도별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1. 경영이념

경영이념은 당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경영목표의 지도기준으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며 건전한 조직문화의 창달은 물론 의사결정, 대외활동 및 경영전반의 기본신조로서 지급결제전담기관인 당원의 역할과 이미지 부각에 촛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급결제제도 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세계화를 주도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지급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당원 고유의 역할 증진과 사원은행 경영합리화 및 국민의 금융편의를 제고한다.

셋째, 「희망과 보람의 일터」로서 개인과 조직의 역량과 창의력을 결집하여 당원의 발전을 도모한다.

2. 경영목표

경영목표는 경영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내외 금융환경 및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수립된 경영목표와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의 조직, 인원 및 업무의 통합시기로 조직과 사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경영의 최대목표로 하였다.

초창기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1990년부터 1992년 기간중에는 경영의 목표를 지급결제제도의 세계화에 두고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고도화, 금융정보유통의 원활화, 고객만족의 금융서비스 개발 및 개선, 경영내실과 혁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1993년부터 당원중심의 신경영체제하에서 경영의 목표를 세계 및 고객지향에 두고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기관간 공조체제의 강화, 선진기법의 지급결제제도 도입, 대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각화, 사원은행의 수익성 제고 및 전자자금이체의 확산(Cashless, Checkless, Paperless Society 지향) 등을 통하여 당원의 성장·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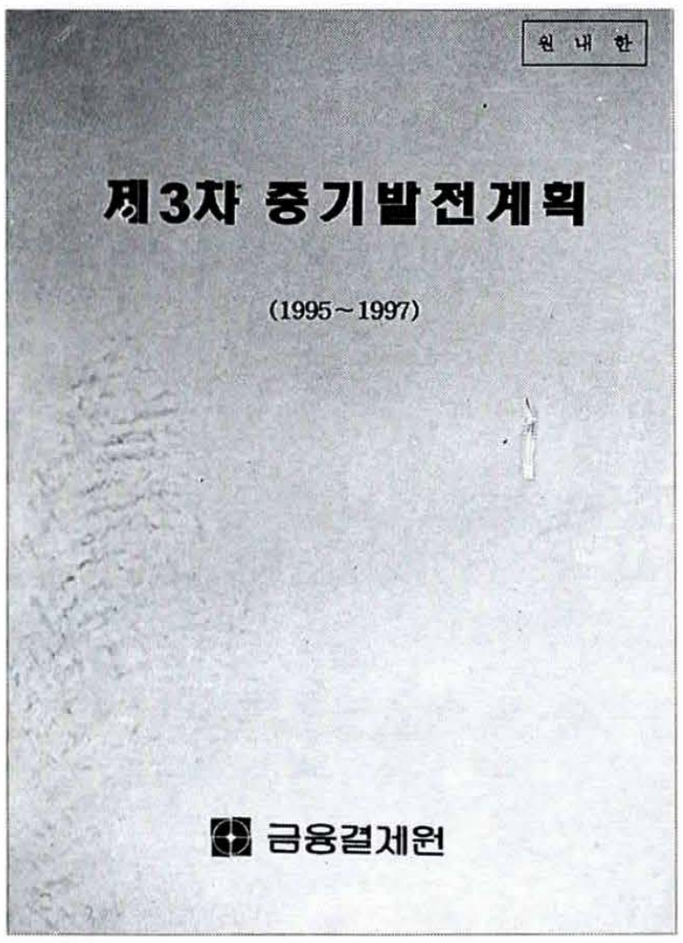

제2절 사업계획 및 예산

당원은 대내외 경영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중기발전계획

당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금융산업의 세계화·자율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당원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의 기본목표로서 일관성 있는 경영관리를 위하

여 중기발전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다. 동 계획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및 실천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사업추진의 행동지침으로 활용하며, 계획기간중의 금융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방식으로 1989년 1차계획을 시작으로 3차계획까지 수립하였다.

〈표3-4-1〉 중기발전계획 수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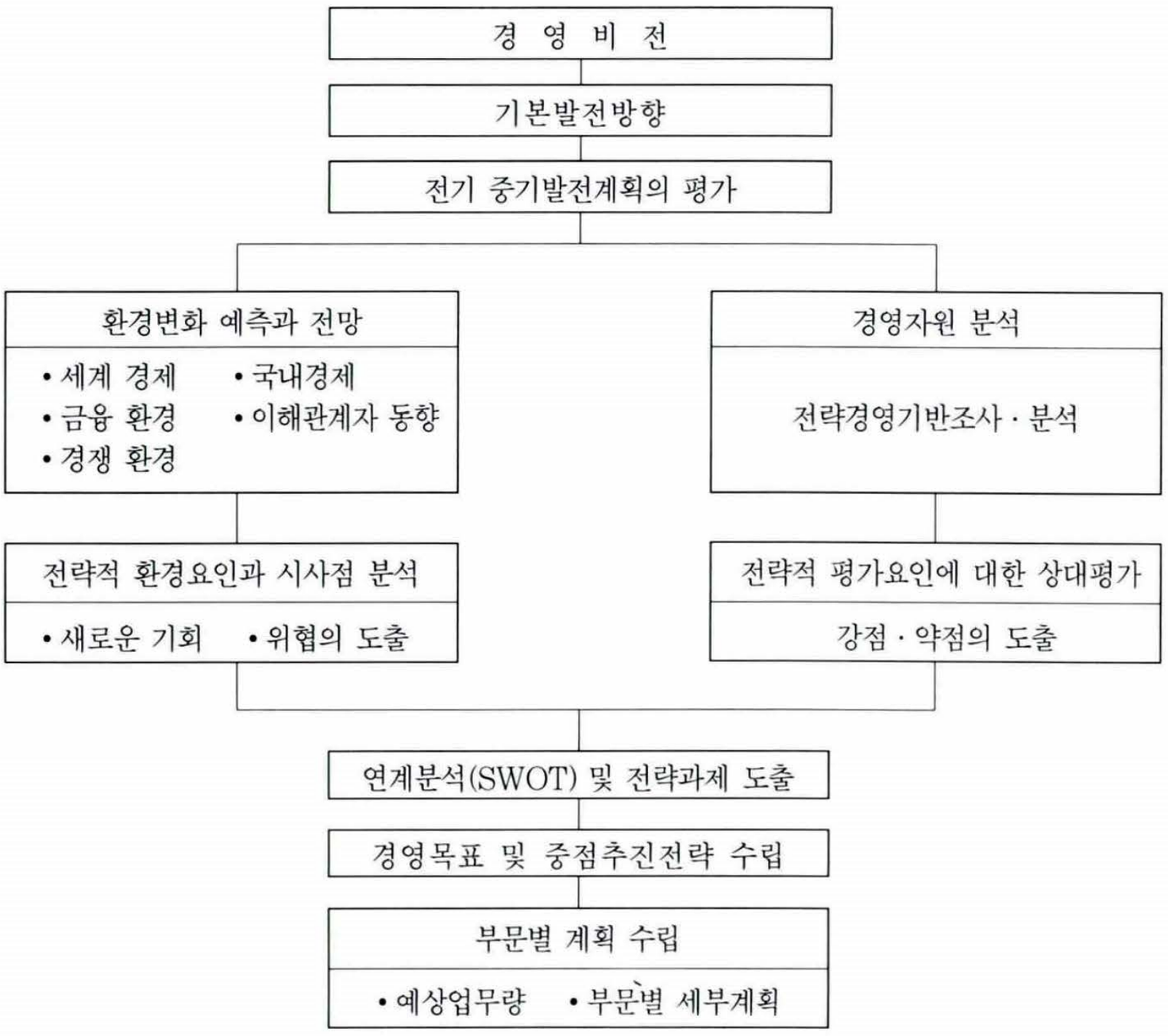

제1차 중기발전계획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제도의 선진화,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과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목표로 수립되어 1992년까지 일정에 따라 착실히 수행되었다. 제1차 계획에서는 급변하는 제반환경과 금융 자율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당원의 발전비전을 제시하였다.

제2차 중기발전계획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 당원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당원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체계적

〈표3-4-2〉 연차별 중기발전 세부추진계획

제1차(1989~1991)	제2차(1992~1994)	제3차(1995~1997)
• 어음교환 처리체제 개선 (Check Truncation제도 도입 추진) • 은행지로업무 분산처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은행지로업무 실시지역 및 업무 확대 • Electronic Banking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 • 금융전산망 표준화 추진 • 경영정보시스템(MIS) 도입 검토 • 자율경영체제의 구축 • 선진 지급결제제도 조사 연구의 강화	• 지방어음교환소 설치기준의 정비 및 어음교환 Back-up 체제 정비 • 부도정보제공업무의 개선 • 은행지로제도 개선 - IPS(Image Processing System) 연구검토 - 정액 OCR 및 MICR장표 발송생략 추진 - 조회업무 지부 실시 • 금융전산망 업무 - 타전산망과의 연계 - 가정 · 은행간 전산망 (Home-Banking) 구축 추진 - SWIFT 가입 - 표준화 추진 • 자금중개기능 강화 • 경영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 조직의 효율적 운영	•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 (정액자기앞수표) 도입검토 • 전국 부도정보 통합관리체제 구축 추진 • 상호교환제도 개선방안 강구 • IPS 도입 추진 • 자동계좌이체 자동납부자 Master File 당원 집중관리 • 지로업무의 금융전산망과 연계서비스 개발 강구 • CD 및 타행환시스템의 제2금융권과 연계서비스 개발 검토 • CMS(Cash Management Service)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타전산망과의 연계 • 금융전산망 Back-up 강화

으로 제시하였다.

제3차 중기발전계획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금융 개방화 · 국제화 · 자율화 등 환경변화와 경영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3-4-3〉 제3차 중기발전계획 목표년도(1997년)의 당원모습

업무규모	• 어음교환	1,886백만장	• 은행지로	801백만건
	• C D	538백만건	• ARS	107백만건
	• 타행환	321백만건	• SWIFT	15백만건
	• 부가통신	179백만건		
경영일반	• 기본 재산	1,147억원	• 예산(일반)	616억원
	• 인 원	774명	(수익)	25억원

2. 사업계획

당원의 사업계획은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목표년도의 금융환경 및 여건 변화의 예측과 전망 등을 통하여 매년 각 사업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며 각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 통제,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영능률향상과 업무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표3-4-4〉 사업계획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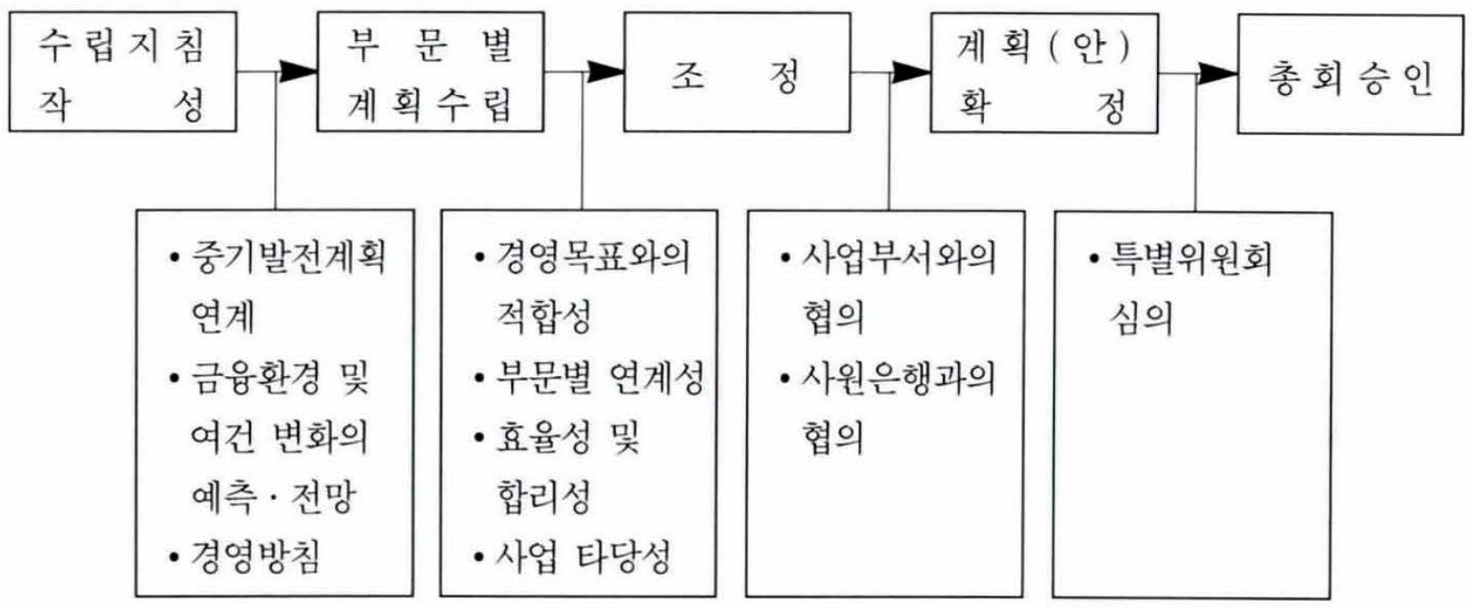

초창기인 1986년에서 1988년까지는 당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성 제고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신규사업으로 금융전산망의 기반구축과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도약기인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대고객서비스 향상, 금융전산망 구축·운영으로 자금의 신속·정확한 결제 및 정보화사회의 기반구축, 경영합리화를 통한 금융정보유통의 원활화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1992년이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징수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및 은행간 공조체제 강화, 대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각화, 사원은행의 수익성 제고, 경영합리화의 도모 등을 통하여 당원 사업의 확대는 물론 다각화를 기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였다.

3. 사업실적평가

사업실적평가회의

당원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능동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업무효율화, 생산성·서비스 향상 및 경영합리화를 제고시킴은 물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사업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성장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상반기실적과 연간실적으로 구분하여 임원, 본부 과장급이상 책임자, 모지부장이 참석하는 사업실적평가회의를 개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물론 계획대비 미진사업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실적평가는 업무계획량과 전년동기 업무량과의 대비를 통하여 증감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차기 사업계획의 목표업무량, 인력 및 기기설비 수급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계획수립 및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3-4-5〉 당원의 최근 주요 사업계획 대 사업실적 비교 (단위: 천장, 천건, %)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실적	계획	달성율	실적	계획	달성율	실적	계획	달성율
어음교환		838,595	1,599,500	52.4	898,623	947,484	94.8	1,010,470	1,156,366	87.4
은행지로		336,414	362,669	92.8	407,218	403,219	101.0	509,014	533,835	95.4
CD공동업무		53,234	48,955	108.7	102,672	82,995	123.7	182,891	131,816	138.7
ARS공동업무		49,543	42,417	116.8	63,044	72,990	86.4	75,957	66,165	114.8
타행환업무		55,474	54,431	101.9	89,900	80,245	112.0	139,406	109,853	126.9
자금중개(건)	외환매매(₩/$)	144,505	112,696	128.2	202,273	212,355	95.3	262,002	337,647	77.6
	외화콜(₩/$)	6,453	5,946	108.5	6,722	6,891	97.5	4,732	7,576	62.5
	〃 (₩/¥)	2,667	1,968	135.5	2,359	3,965	59.5	2,623	2,775	94.5
합 계		1,486,885	2,228,582	66.7	1,772,811	1,810,144	97.9	2,187,095	2,346,033	93.2

4. 예산관리

가. 예산편성

당원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

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산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기업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으로서, 당원의 경우 일반사업예산과 수익사업예산으로 구분한다. 일반사업예산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제분담금 등의 수입예산과 소유물비 및 경비예산인 지출예산으로 구분된다. 수익사업예산은 카드관련 VAN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카드이용수수료 등의 수입예산과 자본예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당원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수입예산, 지출예산의 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총칙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은 수입과 지출간의 균형이 고려되고 있다.

당원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앞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의결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총체주의 원칙, 결산과 예산의 지나친 유리를 방지해야 하는 예산엄밀의 원칙, 예산 각 항목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계상된 금액 초과지출과 예산의 이월사용을 금한 예산한계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다. 예산의 편성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관리자(기획부장)는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실장에게 통보한 후 요구예산을 종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경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재적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있다.

확정된 예산은 정관 제37조와 총리령 제556호에 의거 주무관청인 재정경제원에 보고하고, 예산관리자는 확정된 예산을 예산담당자(본부는 총무부장, 지부는 지부장) 앞으로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회계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전기실적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가예산의 집행범위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한편 1992년도 이전에는 본·지부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분담금을 수입하고 지출함에 따라 예산관리가 번잡하고 예산의 내부 통제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본·지부 경비분담기준 일원화 및 분담금의 은행 본점 일괄분담방식으로 1991년 12월 9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13일 총회 승인을 얻어 1992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별·은행별 분담금의 불균

형을 해소하였고 본·지부 전체의 예산을 각행 본점에서 일괄 분담하여 동 분담금을 당원 본부에서 집중관리함으로써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1) 수입예산

당원의 소요경비는 기본재산 운영수익과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기본재산 운영수익이란 출자금, 가입금, 참가금 등의 이자수입 또는 동 재원으로 구입한 국공채 등의 운영수익을 의미하며 경비분담금은 사원 또는 준사원이 당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를 일정 기준에 의하여 분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기본분담금, 어음교환실적분담금, 지로실적분담금, CD실적분담금, ARS실적분담금, 타행환실적분담금, 외환거래분담금, 유선통신이용분담금 등으로 구분되며, 분담금 산출기준 및 분담방법 결정은 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기본분담금은 당해년도 총수입 예산액에서 전기이월금, 제실적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국은행이 20%를 선분담하고, 여타 사원은행이 10%를 균등분담하며, 한국은행을 제외한 사원 및 준사원은행이 기본분담금 분담기준에 의거 70%를 분담하고 있으며, 경비분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 실적분담금은 각 사업별 사원 및 준사원은행 등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실적 등에 근거한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2) 지출예산

지출예산은 당원이 회계년도 기간중에 소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을 예상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지출목적에 따라 1차적으로 소유물비, 인건비, 경비, 전산업무비, 예비비의 5개 항으로 구분하고 46개의 목으로 세분하고 있다.

나. 예산통제

예산통제는 계수통제에 의해 당원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당원에서는 예산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자가 예산담당자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정기배정, 자동배정, 수시배정으로 구분된다. 정기배정은 자동배정 및 수시배정 대상비용을 제외한 여타의 경상적 비용에 대하여 배정하는 것이고, 자동배정은 규정 등에 의거 그

집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비용에 대한 소요액을 본부 및 각 지부에서 집행한 금액을 배정액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수시배정은 그 실시방침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 등을 사업실시 방침 및 집행지침 등이 확정된 후에 예산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관리자와 예산담당자는 정기배정, 자동배정 및 수시배정시마다 예산대장을 기록유지하여 각 비목별 배정예산총액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다.

제3절 조사 및 홍보

당원의 조사 및 홍보는 국내외의 전반적인 지급결제동향과 선진지급결제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장단기 발전방향과 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당원업무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경제편의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해 왔다.

초기의 조사업무는 개별업무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선진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현황파악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홍보업무 또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업무의 확대나 신제도의 도입시마다 수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6년 당원 발족 이후 조직체계의 확립과 현업업무처리에 안정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확충됨에 따라 지급결제업무의 이용확산과 당원의 이미지제고 등 대외홍보의 필요성이 점증하여 1992년 8월 1일 기획실내에 조사홍보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조사홍보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금융의 자유화·개방화·국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금융기관간 경쟁이 가열되고 경영혁신이 추진되는 등의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18일 기획실내에 경영전략팀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홍보과는 폐지되고 기존 조사업무는 경영전략팀에서, 홍보업무는 종합기획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1. 조사

당원은 지급결제제도의 전담기관으로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조사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여 경영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연구대상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하는 어음교환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은행지로에 관한 업무, 금융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위탁한 업무,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3-4-6〉 주요 조사연구자료 발간현황(1995년말 현재)

발간번호	조 사 연 구 자 료 명	발간일자	발 간 부 서
1986-3-01	지급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향후 전망	1986. 9	금융망업무부
1987-3-01	지급결제제도의 전망	1987. 6	〃
1988-3-01	SWIFT	1988. 9	〃
1988-3-02	금융기관 등 컴퓨터시스템의 안전대책기준 해설서	1988. 9	〃
1988-3-03	일본의 지급결제제도	1988.12	〃
1989-3-01	일본의 금융전산망 현황	1989. 7	〃
1989-3-02	음성정보 서비스공동망 종합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1989. 7	〃
1990-3-01	동경어음교환소규칙 해설집	1991. 1	어음교환부
1990-3-02	싱가포르 BCS의 지급결제서비스	1990. 4	금융망업무부
1991-3-01	일본의 금융네트워크현황	1991. 1	〃
1992-3-01	스웨덴 은행지로연차보고서(1991)	1992.11	지로업무부
1992-3-02	네덜란드은행지로연차보고서(1990)	1992.11	〃
1992-3-03	금융전산정보	1992.12	금융망업무부
1993-3-01	외국의 지급결제제도 - 해외연수보고서 종합	1993. 5	기 획 부
1993-3-02	12th Payment Systems International Conference	1993. 6	〃
1993-3-03	유럽3개국의 지급결제제도 - 영국, 독일, 벨기에	1993.12	〃
1994-3-01	데이타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1994. 6	전산개발부
1994-3-02	미국 일본의 지급결제제도	1994.10	기 획 부
1994-3-03	'94 조사연구 자료	1994.12	전산개발부
1995-3-01	서울어음교환소규약 해설	1995. 1	어음교환부
1995-3-02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의 안전대책 기준 해설서	1995. 4	금융망업무부
1995-3-03	IC카드사용 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구조	1995.12	〃
1995-3-04	'95 조사연구 자료	1995.12	전산개발부

조사연구는 기획부와 각 부서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기획부에서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당원업무 관련 금융경제에 관한 사항,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도서 및 자료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고유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자료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주요 조사연구지 발간실적을 내용별로 보면, 1995년말 현재 지급결제제도 관련 8권,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11권, 기타 업무 관련 4권 등 총 23권이 발간되었다.

한편, 당원은 조사연구와 고유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도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도서실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도서는 물론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도서와 각종 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는데, 1995년말 현재 일반도서 8,633권, 업무자료 451권, 시청각 자료 424종 등 총 9,508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도서실 전경

2. 홍보

당원의 홍보업무는 고객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당원사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업무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당원의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당원의 홍보업무는 방송, 신문, 간행물 및 자체 홍보물 등의 매체와 대외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당원이 홍보업무의 개념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1992년에 기획부내 조사홍보과를 신설하여 홍보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는 일천하다.

당원 발족 초기에는 은행지로제도의 정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은행지로업무 홍보가 대부분이었고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및 각종 연수교재와 이용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외에 신규업무의 도입이나 업무 확대시에는 대중매체인 신문, 잡지를 홍보매체로 이용하였으나 제반 사정으로 그 이용은 미미하였다.

당원 설립초기에는 홍보활동이 미미하였으나, 금융전산망의 구축이 진행되

면서 당원 이미지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1988년부터는 국·영문 소개서를 통하여 당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소개를 하는 한편 당원 로고와 명칭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88년.이후 금융전산망 서비스의 개시 등으로 점차 홍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홍보매체도 팜플렛, 이용안내서 등의 매체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 대중매체로 확대하였으며 CI 및 원가제정, 사보발간 등을 통하여 직원의 일체감과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였다.

당원의 홍보는 성격상 상업광고의 형태가 아닌 공익성격의 단순 업무홍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이미지 광고도 병행하는 추세이며, 1994년 4월부터는 VAN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카드단말기(BANK-POS)에 대한 광고 추진 등 예전에 비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홍보활동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홍보예산의 추이를 보면 1986년도 16,823천원이었던 광고선전비 예산이 1995년에는 548,230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당원의 업무내용이나 이용도측면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4-7〉 광고선전비 집행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예산액	16,823	18,464	17,612	45,181	61,520	113,346	152,799	409,160	449,598	548,230
집행액	6,468	4,433	5,352	28,014	36,108	73,904	103,509	404,409	133,602	361,017

가. 전파매체를 통한 홍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당원 인지도 제고수준의 협찬광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4월 SBS-TV와 라디오의 공익캠페인 「장애인을 가족처럼」에 협찬사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 MBC-TV의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1995년 4월 MBC-TV 「세계로 50년 미래로 50년」, 동년 12월 CBS-FM 라디오 「신용사회 만들기」 캠페인 등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원 홍보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는 비용상의 장점때문에 은행지로업무 및 금융전산망 업무 이용과 관련하여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팜플렛 또는 소책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각종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국민에 대한 당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한편 1988년부터는 매 2년 단위로 당원 조직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업무 소개서를, 1996년부터는 연차보고서를 국문과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CI 메뉴얼

일반고객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의 당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장표 및 디자인물 등에 당원의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CI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1986년 6월 실무작업반을 편성하여 동년 7월말에 원훈, 영문명칭 및 기구 등을 확정하고, 환경설계연구소에 작업을 의뢰하여 동년 12월에 당원 CI 제정작업이 완료되었다.

CI 기본항목은 원 마크외 8종, 응용항목은 서식류 9종, 사인류 8종, 차량류 1종으로 각각 구성되었고, 그 후 기존 CI를 보완하여 1992년 12월 CI 메뉴얼을 책자로 발간하여 홍보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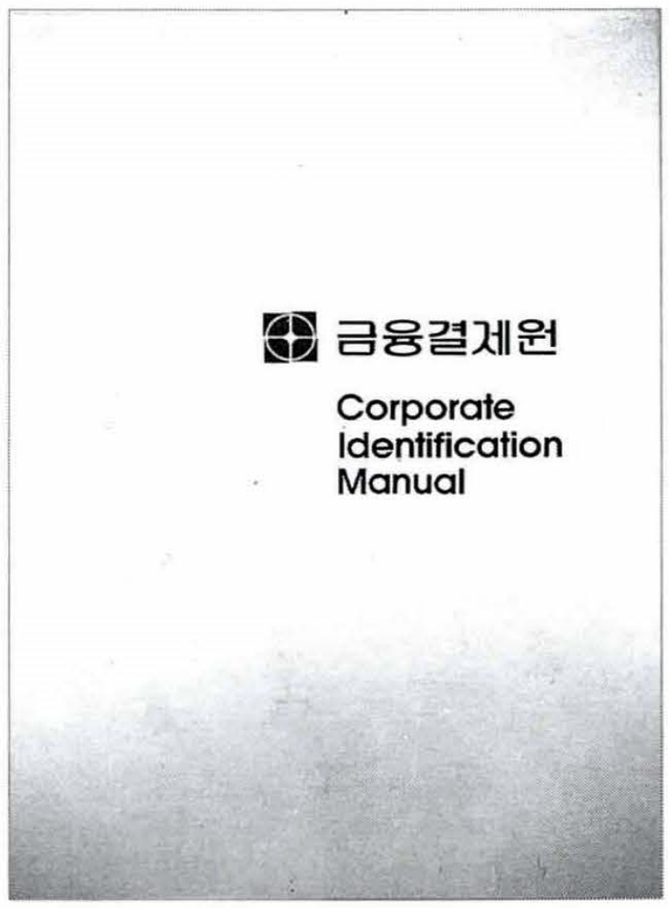

CI 메뉴얼

라. 사보 「금융결제원소식」

오늘날 기업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사보는 전 직원에게 동질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발행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다.

당원도 원내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대하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직원들간에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1992년 8월에 사보 「금융결제원소식」을 창간하였다.

사보에는 주요업무 실시 및 개선 등을 소개하는 원내소식, 임직원의 동정, 부서탐방, 직원들의 글솜씨를 뽐내는 역삼광장 등을 담고 있으며, 1995년말

현재 통권 제14호까지 발행되었다.

사보는 5×7배판 크기에 40면의 계간지 형태로 매회 1,200부를 발간하여 임직원, 유관기관 및 퇴직 임직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마. 원가 제정

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조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1992년 12월부터 원가제정을 추진하여 1993년 2월 당원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원가가사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현상공모에 접수된 총 11편중 가작 1편, 장려상 2편을 채택하여 시상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 가사를 확정하였다.

한편, 확정된 원가 가사를 사가제작 전문용역업체인 소라기획에 작곡 및 제작을 의뢰하여 동년 5월 2절 6행의 원가를 제정, 1993년 창립기념식부터 공식행사에 사용하였다.

당원의 원가는 김희조 작곡의 밝고 빠른 행진곡풍으로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신용사회구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당원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제4절 재무관리

당원은 발족 이후 조직 및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 당원 사원·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의 증가 등으로 1995년말 현재 자산 및 부채규모는 1986년 당시보다 약 30배 이상 성장하였다.

당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제외한 운영비용을 사원은행의 분담금으로 조달하며 총회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1. 자산 및 부채

당초 자산은 예치금, 유가증권, 보증금, 고정자산 및 가지급금 과목만으로 이루어졌으나 1986년 미수금, 1987년 주택구입지원금, 1992년 본·지부, 1993년 국민연금전환금 과목이 추가되었다. 한편 부채는 충당금, 소유물조정금, 적립금, 출자금, 가수금 과목에서 1986년 예수금 과목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6년의 총자산의 규모는 32억원에서 1995년말 현재 92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자산과 부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항목중 기본재산, 충당금 및 사원은행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치금은 1986년 24억원에서 1989년부터는 사원 및 준사원과 특별참가기관의 증가에 비례하여 1995년에는 39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자금은 사원은행에 안분 예치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당원소유의 토지, 건물이 없는 45개 지부에 대한 지속적인 사무실임차에 따라 그 면적과 비용의 증가로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1986년말 16억원에서 1995년말 현재 13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한 주택임차보증금은 당원 직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는데 1986년에 5억원에서 1995년말 8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직원주택구입지원금은 1987년 초기 지원당시에는 3억원이었으나 이 또한 1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집기와 전화가입권이 전부였던 고정자산은 1993년 4개지부 토지, 건물의 매입이후 대폭 증가하여 1995년말 현재 고정자산은 216억원에 이르고 있다.

자산항목중 당원 보유 유가증권은 각종 계약 체결시 법령에 의거 구입한 국공채로 1995년말 현재 3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및 기본재산과목에서는 기본재산이 41.2%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충당금, 소유물조정금 순으로 되어 있다.

부채 및 기본재산은 예수금, 미지급금, 충당금, 소유물조정금, 기본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금은 원천징수세액 등 각종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한 것으로 전체 부채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미지급금은 1993년 4개지부 부동산 매입대금(분할납부금액)중 미납부금액으로 1995년말 현재 35억원이 계리되어 있으며,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

으로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매년 적립 사용되고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1986년 10억원에서 1995년말에는 3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감가상각충당금도 1986년 2억원에서 1995년말에는 4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당원의 부채 및 기본재산과목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소유물조정금이 있는데 이는 집기 등 고정자산에 대한 대충과목으로 사원은행으로부터 경비를 조달하여 집행하는 당원(비영리법인)의 회계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 기업회계의 자본금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물조정금은 1986년 3억원에서 1995년에는 고정자산의 증가추세와 비례하여 19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당원의 고유업무인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업무와 금융전산망업무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재산

당원의 자본금 성격을 지니는 기본재산은 출자금, 가입금, 참가금 기타 법인 존립의 근간이 되는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재산은 종전에는 적립금계정으로 처리하던 것을 1986년에 이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여기에 출자금, 가입금 및 주택임차기금 과목을 신설하였다. 이후 1989년 가입금 및 별도적립금, 1992년 참가금과목을 추가하여 1995년말 현재 기본재산을 7개 과목으로 세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1986년에는 21억원이었던 기본재산이 당원 조직 및 업무확대 등으로 1995년말 현재 573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기본재산의 규모증대에 따라 이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1991년 7월 11일 「기본재산의 운용지침」을 제정하였다. 이후 동 지침에 따라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그 상황을 결산시 총회에 보고해 오고 있다.

기본재산을 그 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입금은 1988년부터 1992년 기간중 동화, 동남, 대동은행이 사원으로 하나, 보람, 평화은행이 준사원으로 가입하면서 납부한 것으로 1995년말 현재 66억원이 적립되었다. 한편 참가금은 1993년부터 CITI은행, 우체국 및 농·수·축협중앙회 회원조합이 당원사업에 특별참가하면서 적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217억원이 적립되었다.

적립금은 초창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였으나 이후에는 전화가입권, 유형고

정자산, 지급보증금 등에 대한 자금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 금융결제원으로 개편시에는 은행지로관리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인수분과 1985년 CITI은행 및 CMB 서울지점이 어음교환에 특별참가하면서 납부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차기금은 사무실과 주택자금으로 구분하여 매년 경비예산(소유물비 임차보증금)에 편성하여 그 자금을 조성해 왔다. 사무실임차기금은 당원 발족 이후 지속적인 지부신설과 업무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1995년말 현재 임차사무실은 전국 45개 지부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2년 한국은행 강남지점내로 입주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1995년 10월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임차기금은 수혜직원의 증가로 1995년말 현재 설립 당시보다 약 19배 증가한 94억원이다.

광주지부 부동산 매입(1993.8.3)

〈표3-4-8〉 기본재산(1986년~1995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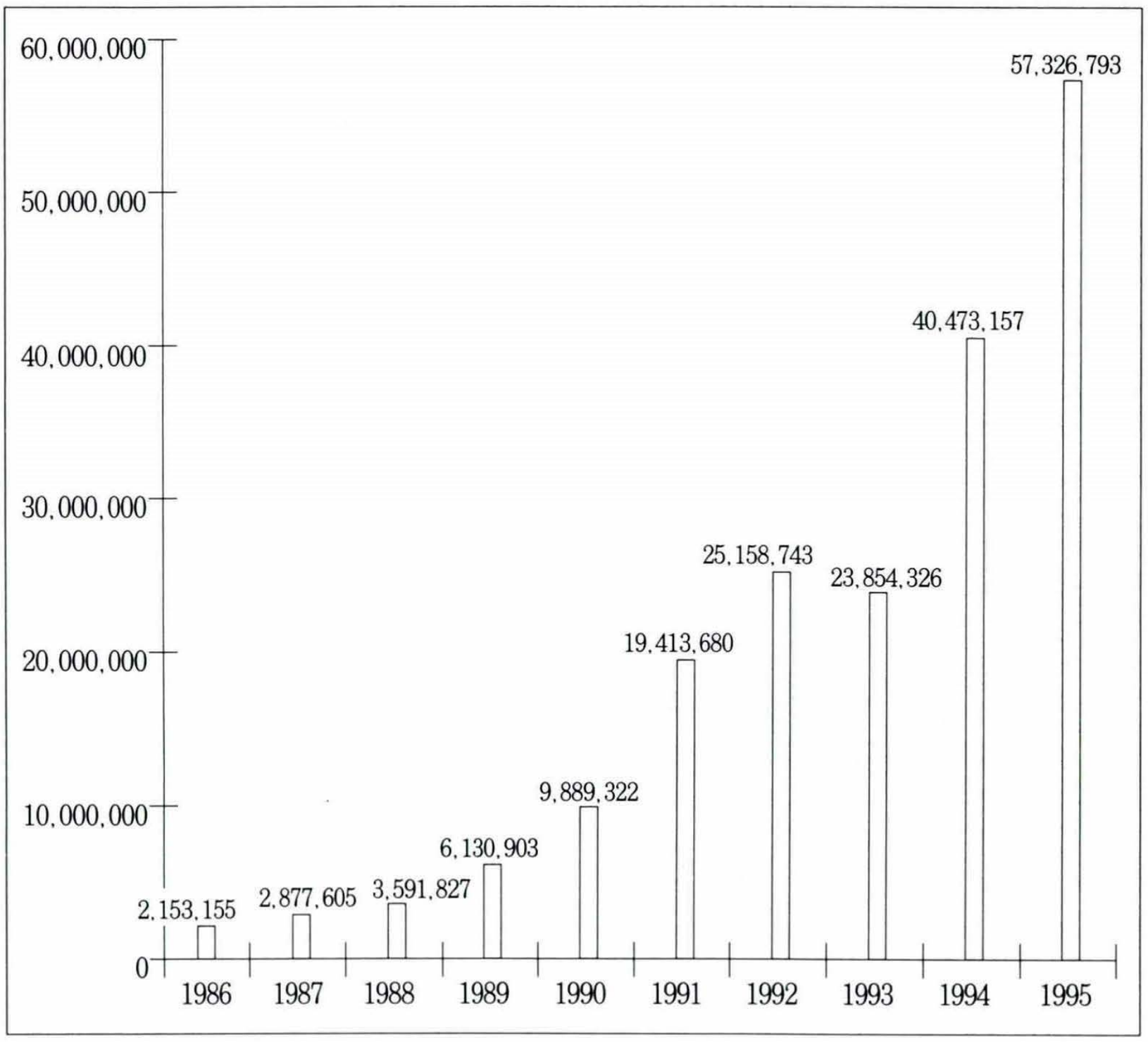

한편, 사원은행의 경비절감에 기여하고자 1989년 1월부터 종전 경비에 충당하던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관련 제재금 및 과태금을 별도적립금계정으로 적립하여 기본재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지부의 부동산매입, 광주지부 신축부지 매입 및 대구지부 건물증축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3. 수지상황

창립이후 기존업무의 유지발전과 각종 신규사업의 확대추진 등으로 당원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수지면에서도 많은 증가추이를 기록하였다. 당원의 수지상황은 일반 영리법인의 수익과 비용의 측정, 인식을 통해서 정확한 손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수입과 지출의 집행이 예산 대비 적정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후기이월하여 다음년도 수입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다.

먼저 당원의 수입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은 사원 및 준사원은행의 각종 분담금과 예금 및 국공채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비영리법인인 당원의 주수입원은 사원은행의 각종 분담금이다. 그 규모를 보면 1986년 104억원에서 1995년말에 이르러서는 471억원으로 약 5배가 증가되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분담금이 1986년에는 전체수입의 83.6%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예금 및 국공채 이자수입(1.0%), 잡수입(0.1%) 순이었다. 그런데 1995년에는 분담금이 93.8%, 예금 및 국공채 이자수입 5.4%, 잡수입 0.8%로 분담금의 비중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예금이자수입은 가입금, 참가금 등의 기본재산 증가에 따라 다소 높은 증가추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지출부문은 소유물비, 인건비, 경비, 전산업무비로 대별되는데 전체 지출 규모 및 증가추이는 수입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증가추이를 비목별로 보면 1986년에 비해 1995년말 현재 소유물비가 2.1배, 인건비가 4.1배, 경비가 5.1배, 전산업무비가 3.9배 증가하였다. 그 구성면에 있어서도 1986년에는 소유물비가 16.6%인 15억원, 인건비 38.0%인 34억원, 경비가 25.6%인 23억원, 전산업무비가 19.8%인 18억원에서 1995년말 현재 각각 10.5%인 46억원, 39.2%인 175억원, 31.1%인 139억원, 19.3%인 86억원이 집행되었다.

4. 회계

가. 당원 회계의 특성

당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계년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처리는 내부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다. 특히 모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계리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수익과 비용의 공정 타당한 측정을 통해서 정확한 당기손익을 구하는 영리법인과 달리 총회에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회계정보의 제공에 회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원과 같은 비영리 법인회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회계 주체를 기금으로 보는 기금회계(Fund Accounting)라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조달한 자원은 법규나 정관 또는 자원제공자가 지정한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받으며 영리법인과는 달리 자원을 특정목적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원별로 그 조달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비영리법인에서의 자금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각각 구분된 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금을 회계실체로 하여 경제적 거래사상을 인식, 측정, 보고하는 것을 회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산회계에 대한 확대실시라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 회계에 있어서 예산이란 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작성되는 영리회계에 있어서의 예산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영리법인 회계에서의 예산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며, 현실적으로 특정 예산기간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는 소요자금이 사원으로부터 각종 회비의 성격으로 조달됨으로써 이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제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원 회계는 영리법인에서보다 예산회계가 더욱 강조되고 확대되어 실시되는 것이며 당원도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비영리법인회계에 대한 별도의 통일된 회계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 실정에 맞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처리제도의

구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나. 수익사업 구분경리

당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비영리사업과 별개의 회계단위로 구분경리하고 있다.

당원은 1989년 10월 4일 재무부 승인에 따라 콜거래 중개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동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개시 초년도인 1989년에는 약 6백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듬해에는 약 8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1991년 5월 1일자로 폐지되어 수익사업 잔여재산중 제자산은 일반사업의 해당계정으로 원입처리되고 임의적립금 129백만원은 별도적립금 계정으로 대체처리되어 창립이후 처음으로 시작했던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마감하였다. 그후 1994년 12월 22일 직불카드 거래중개업무 등에 대한 수익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1995년 4월 1일자로 동 사업을 개시하고 이에 따른 구분경리를 실시하고 있다.

제5절 인사관리

1. 인사관리

인사관리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채용, 이동, 전직,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직원 스스로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확보하게끔 조직화하는 방법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말하는데 당원은 원내외 환경과 직원의 자아실현에 부합되는 인사관리를 기본목표로 하여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직원구분

직원은 역할이나 담당직무의 특성에 따라 일반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으로 구분하며 이외에 상용사무원, 용역인력, 파트타이머 등 특수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일반직원중 사원과 별도로 여자사원제도가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1993년 5월 여자사원제도를 폐지하고 사원직으로 흡수통합하였다.

일반직원은 1급~6급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동일직급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1990년 7월 5일부터 4급 과장대우제, 5급 계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무직원은 주임,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일

〈표3-4-9〉 직급별 인원변동 추이

(단위: 명)

구 분		1986.6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본부	1 급	6	7	6	6	6	7	7	8	10	12	10
	2 급	7	7	6	6	9	9	11	8	10	12	14
	3 급	10	14	15	16	19	22	23	24	24	25	27
	4 급	30	35	39	45	49	52	57	58	64	65	77
	사원(남)	-	-	-	-	-	-	-	-	207	219	246
	사원(여)	-	-	-	-	-	-	-	-	154	141	154
	사 원	125	126	134	153	167	189	191	220	-	-	-
	여자사원[주]	89	89	86	89	116	148	147	134	-	-	-
	서무·청경	38	38	37	36	36	35	34	35	36	33	32
	상용사무원	100	101	92	65	37	3	3	3	-	-	-
	본부소계	405	417	415	416	439	465	473	490	505	507	560
지부	1 급	5	4	6	4	4	5	6	6	6	6	6
	2 급	15	21	22	18	18	18	11	11	12	14	16
	3 급	14	12	12	16	18	18	25	26	24	24	27
	4 급	8	11	13	12	13	14	15	15	17	21	17
	사원(남)	-	-	-	-	-	-	-	-	42	46	48
	사원(여)	-	-	-	-	-	-	-	-	53	61	68
	사 원	24	24	26	25	30	35	39	42	-	-	-
	여자사원	43	44	47	49	48	48	49	50	-	-	-
	서무직원	19	19	19	19	19	19	19	19	18	18	17
	지부소계	128	135	145	143	150	157	164	169	172	190	199
합 계		533	552	560	559	589	622	637	659	677	697	759

주: 1993년 5월 여자사원제도 폐지, 년도말 기준

반직원 및 서무직원에 부적합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별정직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나. 인원현황

1986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발족한 당시 직원규모는 기존의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직원 259명과 은행지로관리소 직원 274명을 합하여 총 533명(본부 405명, 지부 128명)이었다. 이후 사무자동화와 교육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불구하고 신규업무의 확장과 기존업무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약 28명의 인원이 증가하여 1995년말 현재는 759명(본부 560명, 지부 1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다. 채용 · 이동 및 전직

(1) 채용

직원의 채용은 정년퇴직시까지 당원에서 함께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 인사관리업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당원 초창기에는 신입사원과 경력직원 채용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나, 1993년부터 당원 인력이 성숙됨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을 인력확보의 기본축으로 하고, 경력직원의 채용은 인력확보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직원은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정원범위내에서 적정 필요인력을 일반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며 일반직원은 경력사원, 중견사원 및 초급사원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공모전형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 정기채용은 주로 매년 1~2월, 수시채용은 매년 8~9월에 이루어져 왔으나 1995년부터는 정기채용 시기를 10~11월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소수정예의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1995년 12월부터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입직원은 중견사원, 초급사원 등으로 구분하여 연령범위의 제한을 두어 인력의 연령별 구성을 적정화하고 있으며, 법률적 결격사유가 없고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잠재능력이 보다 뛰어난 자를 여러 단계의 전형과정을 통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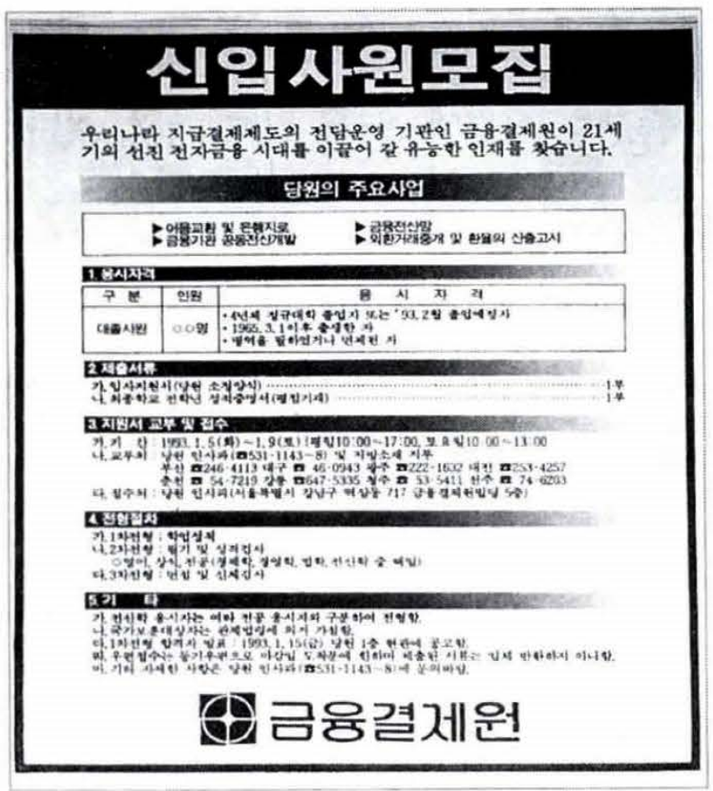
신입사원모집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전담운영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21세기의 선진 전자금융 시대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당원의 주요사업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
▶금융기관 공동전산개발
▶금융전산망
▶외환거래중개 및 환율의 산출고시

1. 응시자격

구 분	인원	응 시 자 격
대졸사원	○○명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93.2월 졸업예정자 • 1965.3.1이후 출생한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원 소정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평점기재) 1부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1993. 1. 5(화)~1. 9(토) (매일10:00~17:00, 토요일10:00~13:00
나. 교부처 : 당원 인사과(☎531-1143~8) 및 지방소재 지부
부산 ☎246-4113 대구 ☎ 46-0943 광주 ☎222-1602 대전 ☎253-4257
춘천 ☎ 54-7219 강릉 ☎647-5335 청주 ☎ 53-5411 전주 ☎ 74-6203
다. 접수처 : 당원 인사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 금융결제원빌딩 5층)

4. 전형절차

가. 1차전형 : 학업성적
나. 2차전형 : 필기 및 실기전사
○영어, 상식, 전공(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산학 중 택일)
다. 3차전형 : 면접 및 신체검사

5. 기 타

가. 전산학 응시자는 여타 전공 응시자와 구분하여 전형함.
나. 국가유공자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가점함.
다.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1993. 1. 15(금) 당원 현관에 공고함.
라.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원 인사과(☎531-1143~8)에 문의바람.

금융결제원

〈표3-4-10〉 채용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급		1	3	-	-	-	2	2	-	-	-
2 급		8	5	2	-	1	2	-	-	-	-
3 급		-	3	1	1	-	5	2	1	-	-
4 급		-	-	-	-	-	-	-	1	-	-
사원	남	23	26	31	33	47	48	41	40	36	61
	여	3	11	9	3	12	14	12	8	11	26
서무·청경		2	-	-	1	-	-	3	2	-	-
계		37	48	43	38	60	71	60	52	47	87

한편 결원지부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1989년 8월 29일 「촉탁지부장 임용규정」을 제정하여 동 규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36명의 촉탁지부장을 임용하였으나 1994년 4월 30일 향후 정년퇴직자의 집중해소 및 당원 자체인력만으로도 지부장 충원이 가능하여 촉탁지부장제도를 폐지하였다.

(2) 배치 및 이동

직원에 대한 배치 및 이동은 개인의 능력, 적성, 희망근무지, 부서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능력개발은 물론 조직의 업무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사이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 적성과 희망, 본인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소속부서장의 소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며 원칙적으로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1995년 5월부터는 지부 인력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권역별로 업무지도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이하 직원의 모지부관내 지부간 인사이동명령을 모지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직

전직은 일정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직원을 다른 직종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서무직원의 별정직원으로의 전환이 있다. 종전에는 여자사원을 5급 중견사원으로 전직시키기 위한 중견사원 전환고시제도가 198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1993년에 폐지되었다.

한편 서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할 목적으로 1986년 6월 5일 「서무직원의 별정직원 전직요령」을 제정하여 서무직원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 현재 만50세 이상이거나 근속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근무성적, 근속년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별정직원으로 전직시키고 있다.

전직이 결정된 서무직원에 대하여는 전직당시 서무직원 보수수준보다 낮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직원의 호봉을 부여(준용)하나, 전직된 후에도 담당 직무와 채용 당시의 직종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표3-4-11〉 직원 전직현황 (단위: 명)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여자사원 → 사 원	3	4	3	13	180 주)	-	-
서무직원 → 별정직원	2	4	3	7	15	5	1

주: 1993년 5월 일괄 사원전환

라. 승진과 고시

승진이라 함은 차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으로서, 그 선발기준은 능력이 우수하고 자세가 모범적이며 상위직급의 업무수행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표3-4-12〉 일반직원 승진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계
1989	-	3	8	14	25
1990	2	4	6	12	24
1991	2	8	16	21	47
1992	3	2	10	16	31
1993	5	9	10	17	41
1994	2	6	8	15	31
1995	1	5	10	19	35
계	15	37	68	114	234

일반직원은 직급별로 당해직급에서의 최저복무기간인 승진소요 최저년한이 경과하여야 하며, 특히 5급은 책임자 자격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승진심사는 이러한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근무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하며 임용권자가 선발, 승진시킨다. 6급사원이 11호봉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5급으로 자동승진 임용하되, 임용권자가 정하는 승진 결격사유 및 추가기준이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시기를 연장 조정한다.

서무직원은 2등급의 경우 18호봉 또는 근속년수 13년째, 3등급은 12호봉 또는 근속년수 7년째에 도달한 때에 각각 1등급 및 2등급으로 승진 임용하며, 1등급의 주임 승진은 26호봉 또는 근속년수 21년째에 해당하는 자 중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임용한다.

한편 5급 사원의 업무지식 증진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책임자 승진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제정된 「책임자자격고시요령」에 의거 책임자자격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책임자자격고시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 신설된 외국어에 한하여 1994년부터 상·하반기에 한번씩 연간 2회 실시하고 있다.

책임자 자격고시

〈표3-4-13〉 책임자자격고시 과목현황

구 분	배 점	출 제 범 위
관 리 업 무	100	관계법규, 정관, 규정, 경영경제관련 상식
어 음 교 환 지 로 업 무	100	어음관련법규, 어음교환처리, 부도관리 거래정지처분, 자금조정 지로관련법규, 일반이체 등 지로업무 전반
전산업무기초	100	전산기초, 프로그래밍언어, 데이타통신 전산관련 업무
외 국 어	100	영어, 일어 중 택일

〈표3-4-14〉 책임자자격고시 실시현황 (단위: 명,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응시인원	55	66	90	121	221
합격인원	19	12	12	27	40
합 격 율	34.5	18.2	13.3	22.3	18.1

주: 1995년은 상반기시험(외국어) 포함

마. 복무관리

당원의 집무시간은 시업시각 09:30, 종업시각 17:30(토요일 13:30)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 부서장이 인사부장과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1995년 6월부터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 및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당원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조출근무와 격일제 야간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근무복장은 사무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단정한 복장을 원칙으로 남자직원은 하절기에는 노타이에 단색 와이셔츠, 동절기에는 양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5급이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부터 유니폼착용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부터 전직원의 토요일 근무복장을 자율화하였다.

한편 직원의 사기앙양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유공자와 과오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포상과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며 포상 또는 징계등급에 따라 이를 종합근무평정에 가감점하고 있다. 징계의 경우에는 대상직원의 평소 품행, 과거 포상사실, 개전의 정, 전후사정 및 그 정도를 감안하여 경중에 따라 징계구분을 달리하여 양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하여는 10년근속, 20년근속으로 나누어 당원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표3-4-15〉 포상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급	-	1	-	-	-	-	-	-	-
2 급	-	2	5	2	2	3	3	2	2
3 급	12	9	9	8	10	9	7	9	8
장 려	7	7	11	15	12	15	14	14	15
계	19	19	25	25	24	27	24	25	25
10년 근속	37	14	12	15	44	51	56	36	45
20년 근속	4	14	4	9	8	2	4	4	2

바. 기타 인사제도

(1) 고충상담과 자기신고서

전직원과 직접적인 인사상담을 통하여 조직내 인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및 개인적인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인사정보로 활용하며 조직활성화 및 의욕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자기신고서를 제출받아 현 직무의 만족도, 이동 희망여부, 자기계발정도, 건강 및 각종 애로사항 등을 종합분석하여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고충상담 장면

(2) 인사위원회

조직 구성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개개인의 애로나 고충사항 또는 회사에 대한 불협화음이나 문제점의 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수습책을 강구하고 인사의 기본방침, 중요 인사제도 및 직원의 포상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인사위원회를 초창기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3) 직무분석

당원 발족이후 각종 업무확대와 업무량 증대로 조직, 인력구조 및 업무수행태도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와 업무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1993년 8월 6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처음으로 전부서를 대상으로 직무조사서와 개인면접을 통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분석 실시결과 부서내 조직 및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기존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2. 종합근무평정

당원은 1984년 제정된 「종합근무평정요령」에 의거 직원의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연수성적, 경력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 수치화 하여 직원의 승진, 이동, 연수 등 인사관리 전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합리적이며 공평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고자 종합근무평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5년 12월 근무성적배점의 상향조정, 절대평가제 및 상향식 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인사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력중심 인사제

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합근무평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종합근무평정은 근속기간 3월(1년내 퇴직예정자 제외) 이상의 2급내지 5급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과 7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종합근무평정대상이 아닌 직원에.대하여는 연간 2회(6월,12월 기준) 근무성적평정만을 실시하며 경력 및 가감점평정은 인사부장이 평가한다.

한편 근무성적평정은 경력, 근무성적, 연수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시 평정자 개인의 감정 또는 주관에 의한 평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정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평정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A,B,C,D,E의 6단계로 구분하며 S 또는 E 평정시 그 근거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3. 연수관리

직원연수는 조직 구성원의 인격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통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당원 발전은 물론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원 연수는 경영이념, 주변환경의 변화 및 대응, 과거 연수의 분석 및 중장기 연수계획, 예산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종합연수계획을 수립, 이에 의거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된 연수는 설문조사, 평가,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고 개인별로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 인사, 연수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86년 당원 발족당시의 연수업무는 총무부 소속 인사담당 관할로 시작되

〈표3-4-16〉 연수 실시현황

(단위: 명)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직급별연수	24	-	53	135	161	152	169	164	174	278	1,310
직능별연수	90	235	63	145	106	72	88	116	93	95	1,103
자기계발연수	60	66	99	96	93	116	197	81	122	175	1,105
국내학술연수	-	-	-	-	-	-	1	2	2	3	8
기 타 연 수	28		276	392	338	314	209	70	57	224	1,908
해 외 연 수	3	10	19	29	18	20	34	35	31	49	248
계	205	311	510	797	716	674	698	468	479	824	5,682

었고 외국어연수 외에 각종 원내외연수가 실시되었으며 1987년에는 특히 전산 관련 원외연수가 많이 보강되어 1988년에는 연수담당계를 신설하였다. 연수담당계의 신설 이후 1992년 신임대리 합숙연수 및 PC교육 신설, 1993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금융 최고경영과정 신설, 1994년 관리자 합숙연수 및 지부직원 직무연수 신설, 1995년 해외학술연수 및 국제금융과정(MBA)을 실시하고 계장훈련과정 및 4급책임자과정을 신설하는 등 연수업무가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질적·양적 규모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연수실 및 각종 관련시설의 확보, 직급별 연수이수학점제의 도입 및 연수담당 전문인력의 양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수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당원 연수는 연수실시지역을 기준으로 국내연수와 해외연수로 구분되며 국내연수는 직급별연수, 직능별연수, 자기계발연수, 국내학술연수, 기타 연수로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해외출장 및 해외학술연수로 구분된다.

〈표3-4-17〉 연수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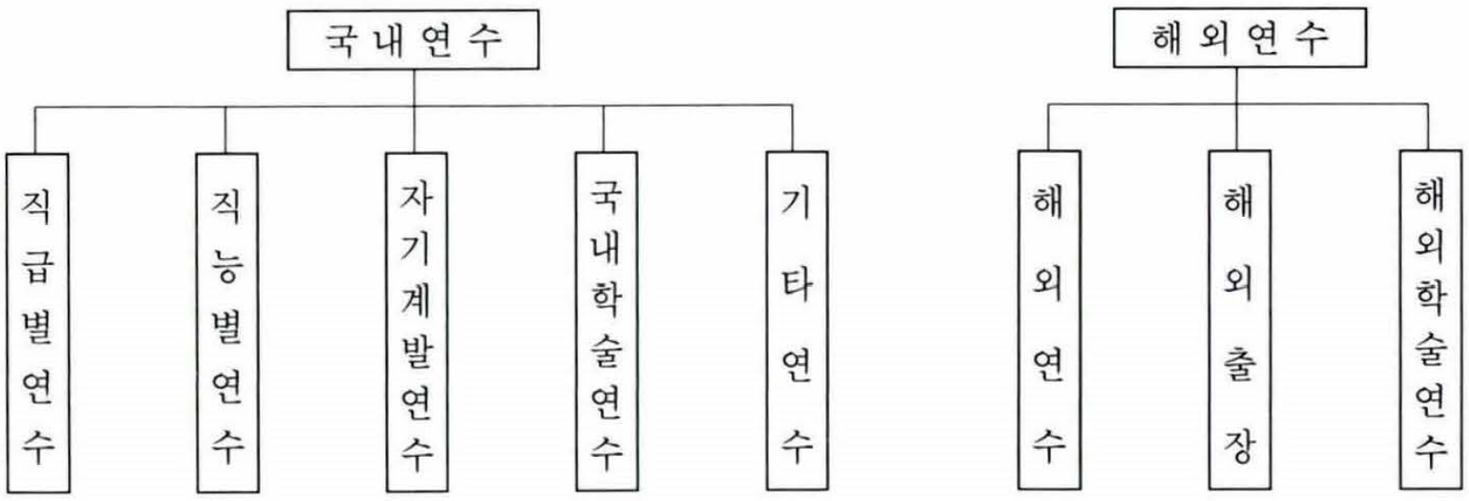

가. 직급별 연수

직급별 연수는 각 직급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과 조직 및 인력관리능력의 배양 및 정신자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로서 1986년 신입직원연수가 실시된 이후 1989년에 통신연수로 중견사원과정(5급)과 초급관리자과정(4급)이 신설되었고, 1992년에는 신임대리 합숙연수, 1993년에는 금융최고경영과정 파견연수(1급), 1994년에는 3급이상 직원 및 임원이 참여하는 관리자합숙연수, 1995년에는 계장훈련과정 및 4급 책임자훈련과정이 신설되는 등 연수과정의 체계화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표3-4-18〉 직급별 연수 실시현황 (단위: 명)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신입직원연수	24	-	31	49	51	50	38	47	40	82	412
중견사원연수	-	-	-	. 60	87	66	76	63	42	71	465
초급관리자연수	-	-	-	26	23	24	35	36	30	48	222
중간관리자연수	-	-	22	-	-	12	20	16	60	75	205
고급관리자연수	-	-	-	-	-	-	-	2	2	2	6
계	24	-	53	135	161	152	169	164	174	278	1,310

나. 직능별 연수

직능별 연수는 초기에 부서단위의 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원내연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전산관련 지식습득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에의 원외연수가 시작되면서 점차로 원외연수의 범위가 각 부서별 업무관련 지식습득 필요성에 따라 넓혀져 갔다.

직능별 연수는 각 업무관련 연수와 지부직원 연수로 구분된다. 업무관련 연수는 조직원 및 조직단위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위탁 및 내부연수로 진행되며 지부직원연수는 본지부 관련 주요업무 처리능력 향상 및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지부직원을 대상으로 합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다. 자기계발연수

자기계발연수는 크게 통신연수, 어학연수, PC교육으로 구분된다. 먼저 통신연수는 한국금융연수원 등 연수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를 통하여 교재에 의한 자체학습을 위주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인데 교육의 충실이수 여부는 과제물 제출 및 집합평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설과목은 전산업무기초, 은행원의 민상법기초, 금융경제기초, 외국환업무기초, 은행실무 법률기초 및 국제금융기초 등으로 업무수행의 기초가 되는 각 분야 실무지식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어학연수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어학능력의 향상이 상

당히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연수의 한 과정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TOEIC통신과정, 위탁연수 및 영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영어집중과정 등이 있다. 위탁연수는 외국문화원 또는 사설 외국어학원 등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소수의 어학능력 우수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였으나 점차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집중과정을 유지시키는 한편 위탁과정에 외국어학원의 청취 및 회화과정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PC교육은 사무자동화 마인드조성 및 사무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1992년부터 원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실무활용까지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다.

〈표3-4-19〉 자기계발연수 실시현황 (단위: 명)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금융연수원통신연수	38	38	45	30	39	49	57	51	60	75	482
어 학 연 수	22	28	54	66	54	67	62	30	39	100	522
P C 연 수	-	-	-	-	-	-	78	-	23	40	141
계	60	66	99	96	93	116	197	81	122	215	1,145

라. 국내 학술연수

1992년부터 새로운 학술이론 및 경영기법을 습득케 하여 부문별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당원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 학사이상의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통계학, 법률학, 행정학, 전산관련 학과 및 기타 당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석사과정에 진학할 직원을 선발하여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마.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크게 해외연수와 해외출장 및 해외학술연수로 이루어진다. 해외연수는 업무관련 조사·연구 및 지식습득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로서 선진 지급결제시스템, 전산처리기법 등의 조사·연구와 업무관련 교육 및 우수

직원연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해외출장은 당원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세계경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전시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한편 학술연수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최대한 장기간의 연수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학연수와 석사학위 등 학위취득을 위한 연수가 있는데 1995년부터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표3-4-20〉 해외연수 실시현황 (단위: 명)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해 외 연 수	3	9	16	23	14	15	25	27	23	35	190
해 외 출 장	-	1	3	6	4	5	9	8	8	13	57
해외학술연수	-	-	-	-	-	-	-	-	-	1	1
계	3	10	19	29	18	20	34	35	31	49	248

바. 기타 연수

직원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의식을 배양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마을교육, 각종 교양강좌, 시찰교육 및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6절 복지후생

당원은 복지규정에 의거 직원의 안전과 보건, 체력단련, 각종 후생의 제공, 재해보상 및 연월차휴가 등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가. 주택구입자금

1987년 9월부터 무주택 직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내집마련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당초에는 최고 10백만원까지 대여하였으나 1988년 4월 15백만원, 1989년 11월 20백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996년 1월부터는 무이자의 20백만원 이외에 10백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 8.5%로 대여해 주고 있다.

원금상환은 제도 도입초기에는 연리 4%에 3년거치 7년 균등분할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 9월부터 무이자에 1년거치 125개월로 상환기간을 조정하였고 1989년 11월 150개월, 1993년 12월부터 현재의 200개월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시책으로 1987년 26명에 2.6억원이던 주택구입자금 지원 취급규모가 1995년 127명에 1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3-4-21〉 주택구입자금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인 원	26	44	53	71	81	87	109	131	127
금 액	260	528	672	1,018	1,179	1,460	1,784	2,463	1,937

나. 전세보증금 지원

1984년 5월부터 무주택 직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대여해 주고 있다. 당초에는 최고 10백만원이었으

나 임대료의 상승에 따라 1994년 10월부터 최고 40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표3-4-22〉 전세보증금 변천내역 (단위: 천원)

1984년 5월			1995년말 현재	
직급별	서울, 부산, 대구	기타 지역	서 울	기타 지역
1·2급	10,000 이내	9,000 이내	40,000 이내	35,000 이내
3급	8,500 이내	7,500 이내		
4급	7,500 이내	6,500 이내		
5급 이하	6,500 이내	5,500 이내		

또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당원 실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2개월이내 결혼예정직원 및 지부로 이동된 미혼직원 등에 대하여도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여시 채권보전은 연대보증인 입보, 전세권 설정, 주택관련 보증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5년말 현재 전세보증금 수혜직원은 전직원의 30%에 해당하는 227명이고 금액은 81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3-4-23〉 전세보증금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인 원	106	104	131	147	170	184	190	206	218	227
금 액	803	806	1,092	1,497	2,749	3,827	5,312	6,549	7,234	8,116

다. 대용사택

지부장의 인사이동에 따른 주거안정과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용사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1993년 8월 2일 태백지부의 사택을 시초로 1995년말 현재 29개지부에 대용사택을 운영하고 있다.

라. 직원합숙소

직계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지방에 거주하는 독신 직원들에게 주거확보의 애로점을 해소하여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확보에 경제적 부담이 큰 지역인 서울, 부산지역에 직원합숙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89년 5월 강남구 삼성동 158-6번지 소재 지상3층 지하1층 대지면적 182.40㎡, 연면적 340㎡의 건물을 임차하여 25명의 입소인원으로 개소한 합숙소는 그후 1991년 4월 송파구 가락본동 3-8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 5층, 20객실의 빌라를 임차하여 35명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3년 6월 19일 신입직원들의 입소난 해결을 위해 동 지역 소재 성미빌라 3층 2개 세대를 추가로 임차하여 1995년말 현재 직원합숙소 입소인원은 총 49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로의 부산권역 분산처리에 따라 부산지부로 이동된 여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3년 11월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22-15번지에 객실 3개 규모의 여직원 합숙소를 설치하였다.

직원합숙소 생활모습

2. 후생시설 운영

가. 상설휴양소

1984년 7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약 한달동안 직원 및 직원가족의 휴가 편의 도모를 위한 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해 왔다. 1986년에는 주로 전국 유수 하계휴양지에 여관, 모텔 등 집단숙박시설을 임차·운영하였으나 콘도미니엄이 대중 휴양시설로서 정착되는 추세에 따라 당원도 1992년부터 콘도미니엄을 임

〈표3-4-24〉 상설휴양소 운영현황(1995년말 현재)

콘 도 명	이용가능 장소	숙박시설
대명콘도	설악, 양평, 홍천, 제주	240실
대명상호체인	도고온천, 해운대	
삼립 하일라콘도	설악, 경주 등	90실
현대 훼미리콘도	설악	400실
현대상호체인	남원, 부곡, 싸이판, 제주 등	
무주리조트	무주	150실

차 · 운영하고 있다.

한편 휴가기간의 사계절 분산 · 촉진효과와 하계휴가기간중 집중 임차 · 운영에 따른 비용의 비효율성을 감안, 1993년부터 콘도미니엄 구입으로 전환하고 1995년말 현재 11개 지역에 콘도미니엄 26구좌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고 있다.

나. 구내식당 설치

1991년 10월부터 단체급식 전문업체인 (주)고은유통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식사 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 학자금 지원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치원생에게 월 50,000원 범위내에서 실비지급하고, 중학생이상 2인이내의 자녀 또는 제매에게 등록금의 100%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라. 귀성차량 운행

설날 및 추석에 고향을 찾는 직원가족들의 귀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 대구, 목포, 광주, 전주지역에 전세버스를 임차 · 운행하고 있다.

3. 의료혜택

가.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매년 전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진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 지정 일반건강진단만을 실시하였으나 1994년부터 기본진료 이외에 초음파검사, 흉부X-RAY검사 등 여러 종류의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종합건강진단제를 도입하여 1996년 1월부터는 만 35세이상으로서 10년이상 근속직원에 대하여도 2년에 1회씩 종합건강진단을 확대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해 오고 있다.

나. 의료보험

1984년 6월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질병, 부상, 분만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보건향상과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보험료는 식대 및 통근비를 제외한 월정급여(통상임금)의 3%(본인 1.5%, 회사 1.5%)이며 본인은 물론 직원이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에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법정급여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 분만비 등이 있으며 부가급여에는 장제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이 있다.

4. 생활안정 지원

가. 국민연금

당원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상실시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불입액은 월보수액을 기초로 정해진 등급표에 따라 당초에는 직원과 당원이 각각 1.5% 해당액을 갹출토록 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본인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퇴직금전환금항목이 추가되었고, 적용률도 각 2%씩 상향조정되어 총 6%로 갹출료율이 조정되었다. 가입자와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나. 사원복지연금

당원은 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기준봉급+직책수당+결제원수당+업무수당+가족수당)의 2%이상을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통상임금의 5%를 지원하고 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의거 1990년 2월 28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2년 1월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으로 동 기금을 법정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학자금, 장학금,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지급 등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3-4-2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출 연 금	1,406,990	1,999,990	2,420,000	2,420,000
지원인원	120	138	184	689
지원금액	120,010	143,010	166,040	412,698

라. 고용보험

당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장제도(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하나로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 조정 및 경기 변동에 따른 휴업시 전직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0.6%(직원 0.3%, 회사 0.3%) 부담이고, 고용안정사업에는 0.2%,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0.5%의 요율을 적용

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표3-4-26〉 고용보험 사업내역(1995년말 현재)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수급권자
실 업 급 여	기본급여, 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근로자
고 용 안 정 사 업	고용조정(휴업수당, 전직훈련,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유휴인력고용촉진(육아휴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설(직장보육시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내 직업훈련지원, 교육훈련 및 이에 따른 유급 휴가지원, 직업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 대부	
	고령자 교육수강 장려금 등 지원	근로자

마.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시 휴업보상을 비롯한 치료비, 장해보상금, 장례비 및 유족보상 등을 해주고 있으며 업무상 이외의 사망시에도 1,000만원의 유족보상금과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바. 재해부조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재해 복구를 위하여 기준봉급의 600%~1,000%의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 직원공제회

당원 창립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제회는 회원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융통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회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사회 ·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융자, 회원상호간 상부상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3-4-27〉 직원공제회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출자금	144,113	197,079	259,517	316,018	404,072	515,996	599,315	628,313
대출금	142,852	186,600	217,120	227,610	368,310	432,310	420,167	426,107
회 원	-	-	-	476	493	544	425	472

5. 기타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후생비로서 식대, 체력단련비, 교통비 및 직원 애경사시에 지급하는 경조금이 있고, 휴가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월차 휴가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매년 전직원대상 체육대회와 부서별 춘추계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등반대회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단합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양그룹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7절 업무개선

당원의 업무개선은 제안제도의 운영과 업무전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창기부터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하고 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작업 업무의 기계화·전산화를 도모해 왔다.

1. 제안제도

당원은 업무능률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업무개선에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자기표현의 기회를 충족시켜 업무에 적용시키려는 데 있다.

업무개선은 조직의 확대와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전산기기의 발전과 사무자동화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그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제안업무는 처음에 총무부에서 담당하다가 1990년 1월부터 기획부가 총무부에서 분리,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경영관리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다.

제안제도는 1984년 5월 제정된 「제안제도 실시요령」에 의거, 개별직원 이외에 단위조직별로도 제안을 모집하여 운영하여 왔다. 1989년 6월에는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 제도를 대폭 변경하였다. 우선 제안의 대상, 방법 및 그 심의와 평가방법을 조정, 보완하였다. 즉 접수제안의 기록·관리, 제안의 재심사, 제안장려기간의 운용 및 채택 제안의 권리귀속 등을 신설하였고 채택제안의 시상금을 현실화하여 최고 3배까지 상향조정하였다.

〈표3-4-28〉 시상기준표

등 급	1984년 5월		1995년말 현재	
	득 점	상 금	득 점	상 금
1 급	91~100	200,000원	181~200	600,000원
2 급	90~81	100,000원	161~180	450,000원
3 급	80~71	60,000원	141~160	300,000원
4 급	70~61	30,000원	111~140	200,000원
5 급	-	-	80~110	100,000원
노력상(불채택제안)	-	30,000원 이하	-	100,000원 이하

또한 1995년 1월에는 제안심의의 간결화와 신속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개선을 위하여 부서장 추천에 의한 제안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 4월 1일에는 직원들이 PC 등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층에 건설적인 제안이나 의견을 직접 전달하여 조직내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경영개선의 도모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열린 제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제안제도의 도입이후 1995년까지 제안건수는 총44건으로 이중 9건이 채택되어 실제업무에 반영되었다. 제안의 내용은 경영관련 사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은행지로 14건, 어음교환 8건, 전산 5건, 자금중개 1건 등 업무관련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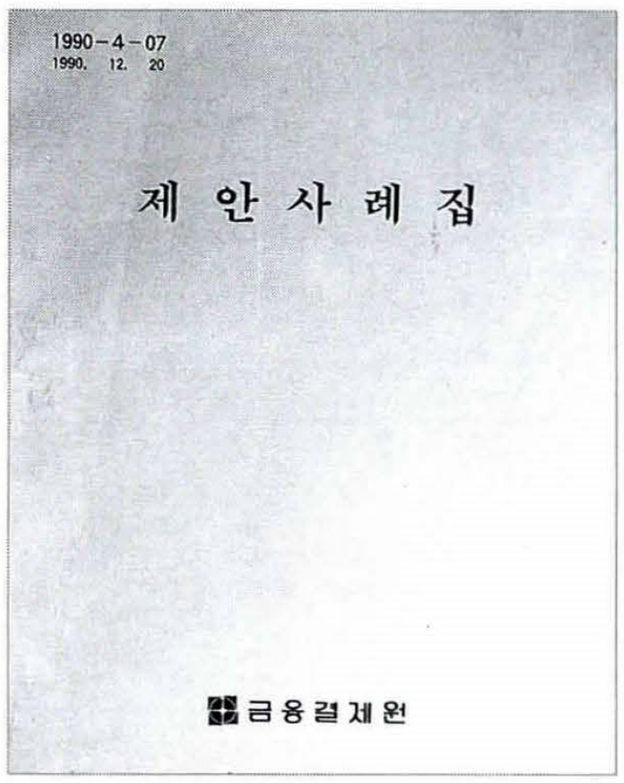

〈표3-4-29〉 업무개선제안의 접수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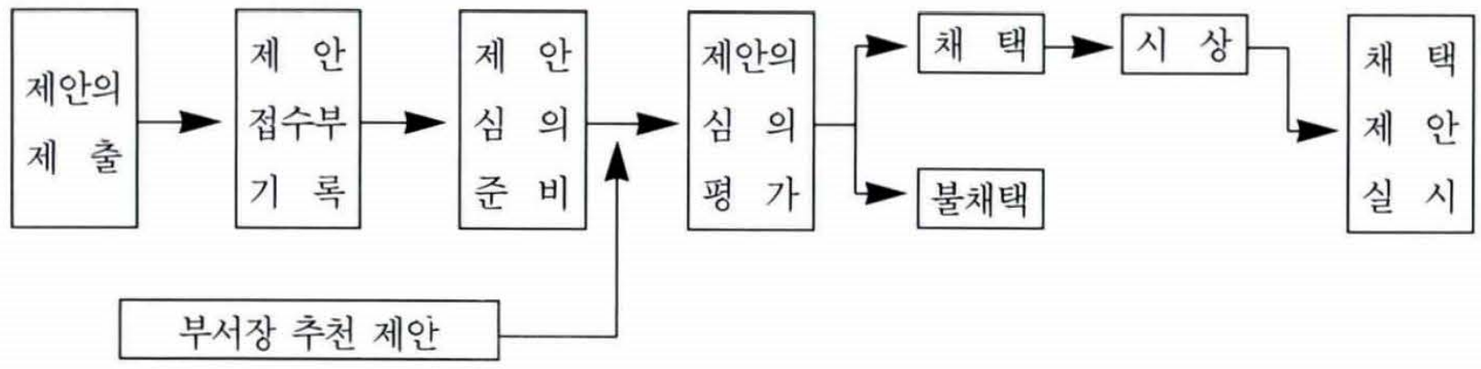

한편 1990년 12월에는 그동안 채택되었거나 노력상이 부여된 제안을 「제안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업무참고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이후 직원 제안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표3-4-30〉 채택 제안 내역

구 분	제 안 제 목
1987	• 일반이체 MICR장표의 OCR화(OCR서비스의 다양화)
	• 일반이체 처리체제 개선방안
1988	• 전산 DATA명칭의 표준화와 활용방안
	• 일반이체 수작업처리업무 전산화(수수료명세서의 띠지 작성)
1989	• 대 은행 및 지로 이용기관앞 자료전송방법 개선
1991	• TRAY재질 변경제작(TRAY를 프라스틱 재질로 변경제작)
1992	• ARS시스템을 이용한 지로업무조회 및 안내
1994	• 문서작성방법 등의 개선
1995	•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의 부도어음입금통보서 제출방법 변경

〈표3-4-31〉 제안제도 접수현황 (단위: 건)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접 수	1	1	11	6	6	3	7	3	-	4	2	44
채 택	-	-	2	2	1	-	1	1	-	1	1	9
노력상	-	-	2	-	1	1	2	1	-	2	2	11

2. 사무자동화

가. 개요

(1) 사무환경의 변화와 사무자동화

고도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의 질과 양이 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화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당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 기업에서 사무자동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사무자동화는 1950년대 공장 설비나 생산공정 등 프로세스 자동화를 모델로 하여 진공관 소자로 실용화된 계산기를 사무에 적용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1960년대 고도성장시대이후 1973년 석유파동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큰 변화를 주었고 1970년대 말까지 크게 진전되어 왔던 생산부분의 합리화, 자동화로 생산부문은 괄목할 만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으나, 사무부문은 그 생산성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높아 사무관련 비용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으므로 사무업무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업적 풍요로 개성화된 사회풍토가 조성됨에 따라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형태가 변화하게 되어 그에 상응한 대량 정보처리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사무자동화는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는 물론, FA(Factory Automation), EA(Engineering Automation), SA(Store Automation)와 같은 각각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적인 네트워크들을 통합하여 통합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발전시킴으로써 종합적인 효율성 향상을 꾀하는 추세이다.

(2) 사무자동화의 성격 및 기대효과

사무자동화는 정보의 수집, 창조, 처리, 축적, 검색이라는 전통적 사무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며 근래에는 이와 병행하여 경영전략의 입안, 실행, 평가라는 좀더 적극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기본발상은 정보의 시스템화와 기술적 지원에 의해 개인의 지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와의 기본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사무자동화의 또 다른 특징은 그 대상인데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나 EDPS가 계수적인 정보와 구조적 · 정형적이며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사무자동화는 문서의 작성, 보관, 검색, 배포, 개인의 대화, 회의 등 비계수정보와 비구조적 · 비정형적 · 창조적 업무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다.

사무자동화는 기본적으로 • 도큐멘테이션 기능 • 커뮤니케이션 기능 • 정보이용 기능 • 자동업무처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만족도를 높이고 정보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활용을 최적화하여 각종 비용을 삭감시킬 수 있다.

나. 당원의 사무자동화 추진경위

당원 사무자동화 사업의 본격적 추진은 1993년 7월 수립된 사무자동화추진계획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1970년대말 급여 프로그램

〈표3-4-32〉 사무자동화용 기기 도입현황 (단위: 대)

기기명 / 도입년도	WP 전용기기	PC					프린터
		XT	286	386	486	586	
1984	1	-	-	-	-	-	1
1985	-	2	-	-	-	-	2
1986	2	3	-	-	-	-	5
1987	-	-	-	-	-	-	-
1988	4	1	-	-	-	-	1
1989	1	5	6	1	-	-	12
1990	3	10	10	-	-	-	7
1991	1	-	7	1	-	-	12
1992	-	-	-	80	-	-	64
1993	-	-	-	51	6	-	34
1994	-	-	-	-	30	1	13
1995	-	-	-	-	43	32	27
현재보유 주)	-	-	6	132	79	33	142

주: 1995년말 현재 내용년수 만료기기 제외

의 개발을 시초로 하여 집기, 비품관리시스템(1982년 개발), 감사관리시스템(1990년 8월 개발), 공제회관리시스템(1991년 10월 개발), 차량관리시스템(1993년 6월 개발)과 같은 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 그리고 1984년 12월 워드프로세서 전용기기 도입 및 1985년 6월 XT급 PC(TG-88CA)와 프린터(LQ-1500)를 도입한 것을 시초로 한 사무자동화용 기기 도입을 들 수 있다.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은 1990년 1월 1일 기획부소관 업무로서 규정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1991년 9월 27일 전산부로 동 업무가 이관되었고 1992년 8월 1일 금융망업무부로, 1994년 2월 17일 다시 전산개발부로 이관되어 동년 2월 25일부터 사무자동화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사무자동화추진계획은 1993년 7월 정보관리 및 활용의 효율화, 정보축적, 업무개선, 부문별 업무정보의 경영정보화 등을 목적으로 정보화시대에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립되었으며, LAN 구축과 통합 DB 구축을 위해서 • 시범운용단계 • 본격추진단계 • 완성(통합 OA)단계로 단계적인 추진을 할 것과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무자동화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였고, 각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3-4-33〉 사무자동화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1단계	시범운용단계	- 관리업무전산화, 사무자동화기기의 연차별 추가도입 - 1단계 표준화(문서인장관리규정, 워드프로세서 표계산용 스프레드쉬트, 부서구분코드)
2단계	본격추진단계	- LAN (Backbone) 구축 및 시험실시, 전자문서 송수신 - 문서보관 · 검색시스템 구축 - HOST와의 접속추진 2단계 표준화(부서간 업무처리절차)
3단계	완 성 단 계	- DB의 구축 및 통합, 전자결재시스템 및 화상정보시스템 구축 - 외부망 접속을 통한 외부 DB 활용

이 3단계 계획안에 따라서 대부분의 관리업무가 개발 혹은 보수되었으며 관리업무 이외의 다른 사무자동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추진되었다.

1993년 12월 사무자동화 표준 수립
- 표준 워드프로세서 및 스프레드쉬트

1994년 5월 사무자동화 추진 전담반 구성
- 전담반 운영, 문서 표준 및 용지 규격화 추진
인사정보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6월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관리기준 협의
9월 표준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문서 작성 표준안 협의
1995년 4월 LAN구축 기본계획 수립
5월 LAN구축관련 기본계획 설명 및 각부서 협조사항 협의
8월 사무자동화용 PC 수급계획 수립
- LAN 구축 및 전자결재 대비(1997년도까지 PC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직원을 기준으로 1인 1대 배정추진)
10월 LAN 구축 2단계 추진계획 수립
11월 LAN 케이블 설치

현재까지의 당원 사무자동화사업은 결국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이라는 목표달성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단계별로 보면, 1995년 10월 시범운영 단계의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원내 LAN 구축 기본계획과 원내 LAN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추진단계와 완성단계의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완성된 상태이다. 아직은 기술적·물리적 기반조성은 물론, 관리체계 정비와 당원내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성공적인 구축의 조기실현을 기대해 볼 만 할 것이다.

다. 사무자동화 추진현황

(1) 사무자동화용 기기 현황

1985년부터 본부 부서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PC는 1995년말 현재 본부에 174대, 지부에 61대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무자동화 추진의 기반이되는 기기현황을 살펴보면 〈표3-4-34〉와 같다.

(2) 관리업무 개발

(가) 집기·비품관리

1982년 개발된 집기·비품관리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

〈표3-4-34〉 본 · 지부 사무자동화용 기기 현황 (1995년말 현재)

(단위: 대)

부 서 명	PC					프린터	공유기
	계	286	386	486	586		
기 획 실	16(4)	-	8(4)	6	2	6	3
총 무 부	15	-	6	8	1	12	5
인 사 부	13(3)	-	8(3)	4	1	7	3
비 서 실	9(2)	-	3(1)	2(1)	4	3	-
어 음 교 환 부	9 *13	-	5	3 *13	1	9	6
자 금 중 개 실	5	-	2	2	1	3	1
지 로 업 무 부	23	3	8	11	1	14	5
금 융 망 업 무 부	23(11)	-	15(11)	6	2	7	4
부가통신사업실	7	-	-	7	-	2	1
전 산 개 발 부	38(4) *1	-	21(4)	2 *1	15	13	14
전 산 운 영 부	13(1) *1	-	7(1)	5 *1	1	9	5
감 사 실	3	-	1	1	1	2	-
인 사 부 소 속	-	-	-	-	-	-	-
본 부 합 계	174(25) *15	3	84	57 *15	30	87	47
지 부	61	3	48	7	3	55	9
계	235(25) *15	6	132	64 *15	33	142	56

주: 1995년말 현재 내용년수 만료기기는 제외.
( )는 NOTEBOOK(수량 포함), * 는 단말기(수량 미포함)

고 좀 더 다양한 입 · 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PC와 UNISYS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재개발되었으며 1995년 10월부터 대량출력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PC용으로 개발하여 사용중이다.

(나) 감사관리

감사관리시스템은 1990년 8월 DBASEⅢ+로 개발되었으나 처리속도 향상과 다양한 출력 및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1992년 9월 C언어로 재개발을 추진, 1993년 1월 그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중이다.

(다) 공제회관리

1991년 5월 수작업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던 공제회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동년 10월 그 개발을 완료하여 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

(라) 차량관리

1993년 3월 개발추진, 동년 6월 완료된 차량관리시스템은 당원 보유차량의 차적관리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관리하고 기간별·차량별·본지부별 검색 및 출력을 용이하게 하여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다.

(마) 회계관리

1993년 9월 개발계획을 수립, 1994년 2월 개발완료된 회계관리시스템은 회계업무의 복잡하고 다양한 계산업무를 전산화하고 각종 장부 및 회계현황을 자동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바) 소모품관리

1993년 12월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소모품관리의 전산화를 추진, 1994년 8월 개발을 완료하여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처리시간·오류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각종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게 하였다.

(사) 도서관리.

1994년 6월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한 도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당원 실정에 맞는 효율적 도서관리를 위하여 개발에 착수, 동년 8월 완료하였고 1995년 12월 LAN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완료하였다.

(아) 예산관리

1993년 12월 개발계획을 세워 1994년 12월 완료된 예산관리시스템은 반복적이던 수치계산을 자동화하고 각종 통계자료작성 및 예산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신속·정확한 예산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 기기관리

전산기기의 수량 및 계약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산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5년 5월 기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추진되었고 동년 9월 그 개발이 완료되었다.

(3) 사무자동화추진전담반 구성

1993년 7월 수립된 사무자동화추진계획에 의해 원내 사무자동화업무의 효

율적 구축·추진과 추진단계별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원내 사무자동화 관련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1994년 5월 사무자동화 추진전담반이 구성되었다.

그 구성을 보면, 사무자동화 추진을 총괄하는 전담반장은 전산개발부의 사무자동화 담당과장이고 구성원은 기획실, 총무부, 인사부, 어음교환부, 지로업무부, 금융망업무부, 전산운영부의 4급책임자 각 1명씩이며 간사는 전산개발부 사무자동화 담당대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자동화업무는 당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당원 전체의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부서간 협조가 특별히 요구되므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무자동화추진전담반은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당원 표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표준안과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관리기준, 그리고 원내 LAN 구축을 위한 각 부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4)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1990년 당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던 인사관리업무와 UNISYS 기기로 전산처리하고 있던 급여업무를 종합해 인사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 일단 1992년 6월 개발 완료하였으나 하드웨어의 처리성능을 높이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994년 4월 인사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5년 12월 개발이 완료된 이 시스템은 Client/Server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다양한 화상정보와 조건검색, 비정형 보고서기능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조작이 쉽고 간편하다. 또한, 전용기기와 전용 DBMS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처리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원내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가) 추진배경 및 목적

당원은 어음교환, 은행지로, 금융전산망 등의 주요업무용 주전산기와 기타 업무 및 사무자동화용 전산기기(중·소형 컴퓨터, PC, 프린터 등)를 이미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을 상호 연결하여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당원이 보유하고 있는 H/W 및 S/W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비용절감,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며, 첨단 전산관련 기술축적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LAN 도입을 통한 종합정보통신망구축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현황

1993년 7월 수립한 사무자동화계획에 기초하여 1995년 4월, LAN Backbone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여 원내 LAN구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5년 10월 원내 LAN구축 2단계 추진계획(이하, 2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LAN 구성 기본방향을 설정, 적용업무를 결정하였고 시스템 3단계 구축방안, 시스템 구성방식, 본지부의 시스템 구성을 확정하였다.(그림1)

2단계 계획은 기본계획의 업무적용 단계와 완성단계의 세부계획과 함께 1996년도 중에 이 두단계를 조기구축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 계획의 내용을 보면 당원 주요업무의 현업처리 HOST 및 서버(금융전산망 HOST, 은행지로업무 HOST, 부도관리용 서버, 은행지로통합서버)를 LAN에 접속하게 되고 전자우편,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문헌정보검색, 문서보관 검색 등이 가능해지며, 외부통신망(Internet, 한국은행, 기타 어음교환, 은행

〈표3-4-35〉 시스템 3단계 구축방안

구 분		내 용	비 고
1단계	Backbone 구축 단계(1995년)	○ LAN의 기본틀인 통신로 설치	인사정보·도서관리시스템을 수정, LAN에 접속
2단계	업 무 적 용 단 계 (1996년)	○ 본부중심의 LAN 접속업무 실시 - E- MAIL 및 전자결재시스템 접속 - 문서 보관· 검색시스템 접속 - OA관련 프로그램(예산관리, 소모품관리 등) 접속 - 본·지부간 LAN 구축 시범 실시	전자결재시스템은 적정 시기에 실시
3단계	완 성 단 계 (1997년)	○ 원내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 업무처리 HOST 접속 - 통합 DB 서버 접속 - 멀티미디어(화상회의등 이미지처리) 시스템 접속 - 본· 지부간 LAN 구축	

〈그림1〉 본지부의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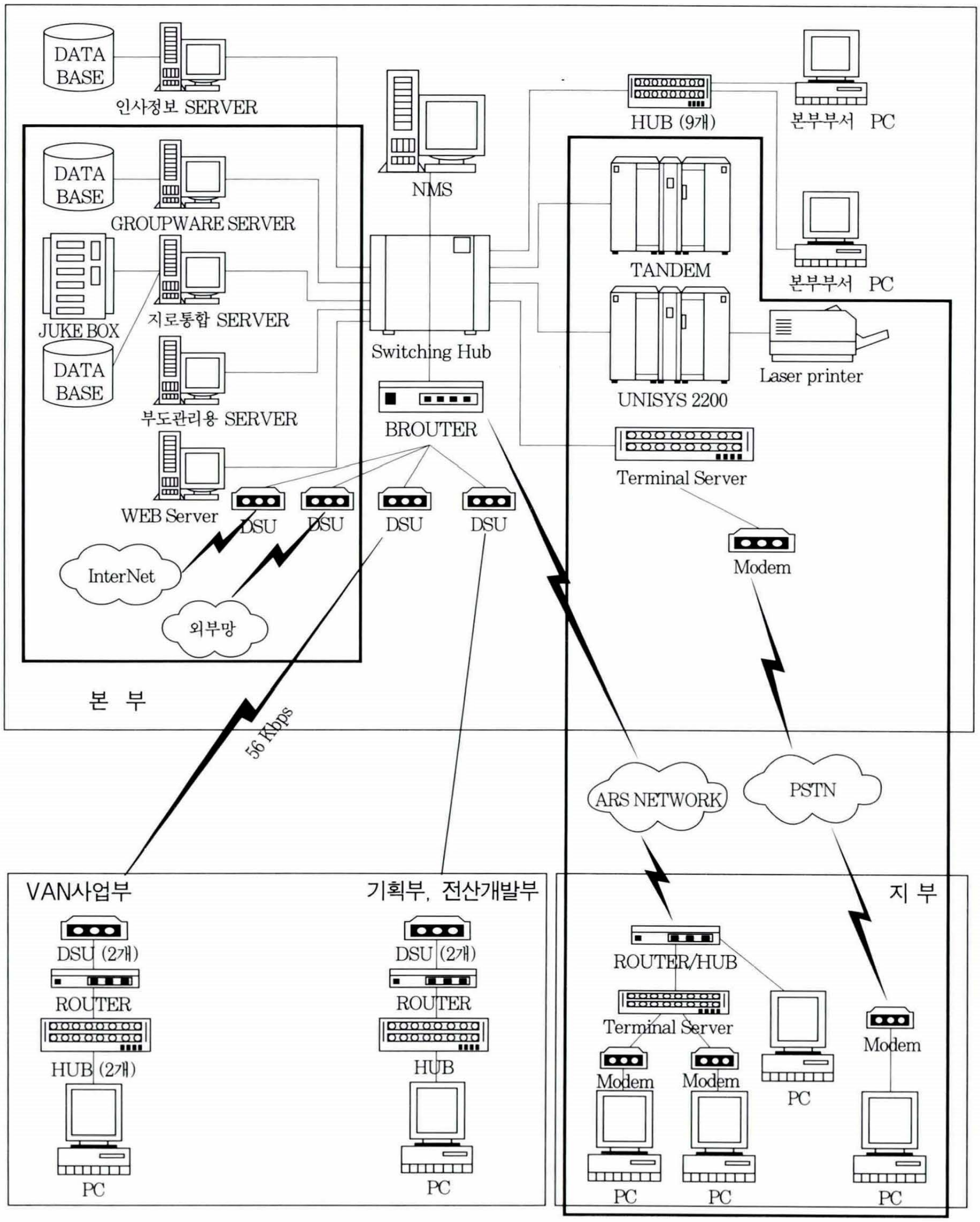

〈그림2〉 지부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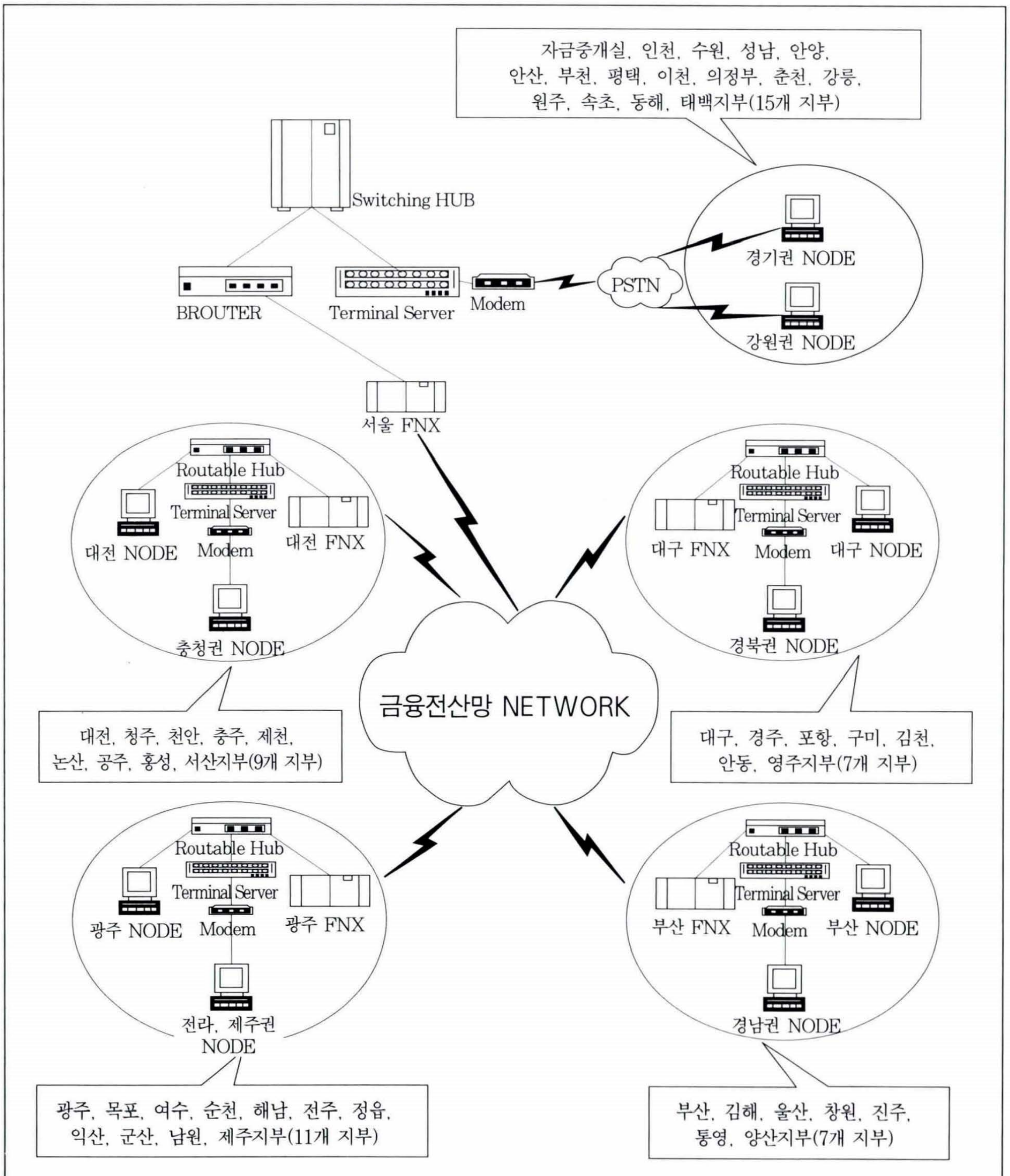

지로업무 참가은행 등) 접속이 원활해지고 본·지부간 LAN 접속이 실현됨에 따라 본부뿐 아니라 본·지부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자료전송이 가능해지게 된다.(그림2)

〈표3-4-36〉 시스템 구성방식

구 분	내 용	사 양
망구성(TOPOLOGY)	일렬로 구성된 LAN 케이블 접속방법	BUS
전 송 매 체	피복 없는 이중 와선	UTP[1](10Mbps 이상)
접 근 방 식	경쟁적인 회선점유방법	CSMA/CD[2]
전 송 방 식	디지탈 전송방식	Baseband[3]
원 거 리 전 송 회 선	고속전용회선	56 Kbps 이상
LAN접속 PROTOCOL	기기 상호간의 표준통신 규약	TCP/IP,[4] NOS[5]
네트워크 관리 PROTOCOL	네트워크 장비관리를 위해 부가된 표준관리기능	SNMP[6]

주: 1) UTP(Unshielded Twisted-Pair wire): 내잡음성을 위한 보호 피복이 없는 이중와선의 일종
2) 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 반송파 감지 다중 액세스/충돌 검출
3) Baseband: 전송로에 데이터를 송출하기 위한 디지털 전송 방식
4)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멀티벤더의 컴퓨터 사용환경에서 컴퓨터 기종이 PC에서 SUPER COMPUTER까지 접속 가능하고 LAN 및 WAN환경에 친화성이 높은 프로토콜로 Ethernet상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컴퓨터 고속통신 프로토콜
5) NOS(Network Operating System): PC LAN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
6)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TCP/IP 기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

(다)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의 의의 및 기대효과

정보의 질과 정보를 얻어 활용하기까지의 신속함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리만큼 정보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시점에서 당원의 정보통신망 구축은 정보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새로운 조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그 구축에 따라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구조와 업무처리 절차를 자동화·합리화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신속·정확하고 또한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의 재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개방된 환경이 조성되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보다 빠른 의사결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음교환, 은행지로 등의 업무처리 HOST 및 서버의 LAN 접속을 통해서 대은행 서비스가 신속해지고 효율화되

어 당원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원내 정보고도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향후 추진방향

당원은 우선적으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의 완성을 당면과제로 안고 있다. LAN Backbone 구축을 완성시키고, 그룹웨어 도입을 통해서 전자우편,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문헌정보 보관검색, 문서 보관검색기능 등을 가능하게 하며, 현재 개발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각 관리업무들을 LAN에 접속시키고, 본·지부간으로 LAN을 확대 구축하며, 금융전산망, 은행지로, 부도관리 등 주요 업무처리 HOST 및 통합 DB 서버를 LAN에 접속하는 등 이미 2단계 계획에서 언급하였던 업무를 1996년도에 추진예정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기반구조의 구축이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의 가시적인 안건이나, 사실 그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표준화, 변화에 대한 의지확산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물리적 기반구조의 구축은 그러한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당원업무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간접부문이어서 그 업무개선이나 사무자동화의 도입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그 효과검증을 위해 기능별·업무별 분석과 현황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업무개선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강구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물리적 기반구조의 구축 •당원내 업무처리 절차개선 •지속적 분석, 관리를 통한 개선으로 당원 종합정보통신망의 기본적 구축이 실현되면 이후 추진해야 할 방향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접속추진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화는 다시 두가지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다양한 사용자를 수용하고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문자나 기호뿐만 아니라 각종 이미지, 화상, 음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멀티미디어화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인간의 협조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거나 고난도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시스템의 고기능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1995년을 그 원년으로 하여 현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정보공유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이 사업은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인데 그 1,2 단계에서 각 LAN간 고속 접속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원은 이미 각종 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의 표준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외부시스템과의 빈번한 접촉이 생길 것이므로 각 부문별 보안작업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의 실제적인 사무자동화 역사는 일천하지만, 정보통신망 구축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무자동화 업무가 당원 전체의 업무효율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제8절 감사활동

1. 감사조직 및 관련법규

가. 감사조직

(1) 감사의 목적

감사활동은 기관의 조직이나 제도의 운영 및 업무 집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필요조치를 강구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직접적 기능 뿐만 아니라 감사업무 수임기구의 존재만으로도 제반업무가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의미부여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감사활동은 집행기구와 다른 측면에서 제반업무를 객관적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집행기구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감사활동은 당원의 전신기관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

소 당시에도 수행하고는 있었으나 감사조직 체계와 활동은 존재의 상징성 유지 정도로 미약하였으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감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6년 6월 2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금융결제관리원이 발족되면서 조직운영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통제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한 이후부터라 하겠고 감사업무의 수임기구로서 감사실을 설치하여 사고의 사전예방, 주요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감사조직의 발전

감사조직은 총회에서 선임하는 임기 2년의 상임감사와 그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감사실이 있는데 당원 초기에는 감사실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실장,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검사역과 서무담당 직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87년 이후 CD, ARS, 타행환시스템 구축운영 등 금융전산망업무의 본격 추진 및 어음교환, 은행지로 등 업무량의 신장으로 예산 및 조직의 확장은 물론 감사업무도 종전의 일반 행정관리업무 위주에서 전산업무관련 부문의 비중이 증대되어 감사실의 역할강화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1987년과 1990년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1명의 검사역을 증원하여 1995년말 현재 감사실장, 검사역, 사원 등 총 6명의 인원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검사역의 감사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1988년부터는 자체연수의 실시와 외부의 감사교육전문기관에 검사역을 파견하여 최근의 국내외 감사동향 및 최신 감사기법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역의 자질향상과 감사업무의

〈표3-4-37〉 감사조직(1995년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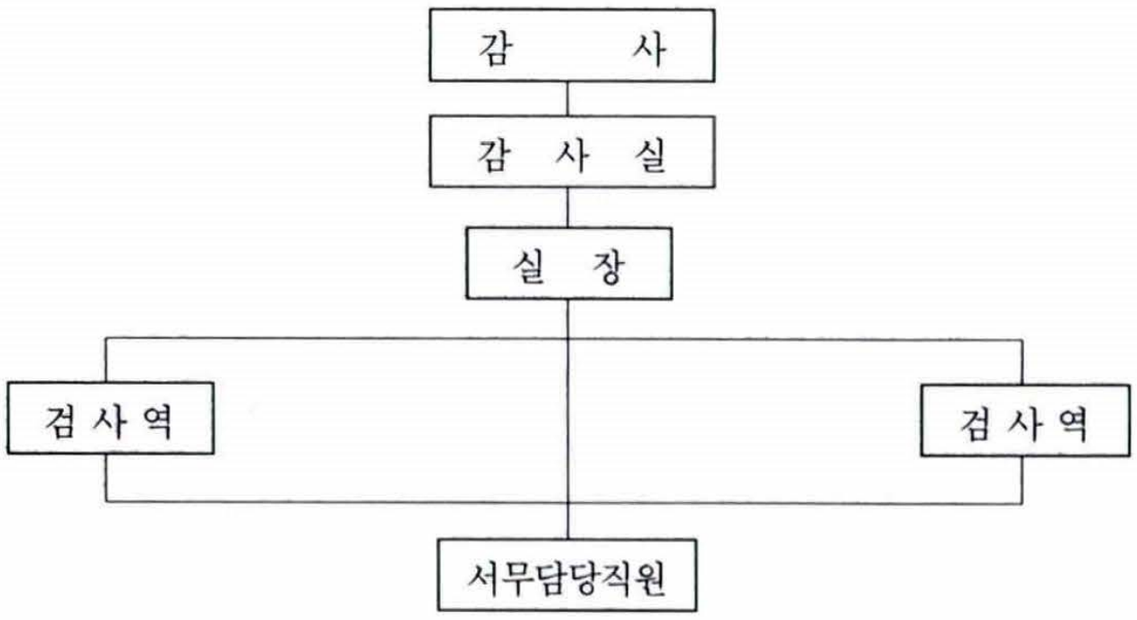

향상을 도모하였고 1989년에는 감사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업무담당 경력 책임자를 검사역으로 일부 보임하여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3)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

감사실은 제반 업무에 대한 경영평가 수임기구로서 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 및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며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감사관련 법규

당원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당원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제반 경영활동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자체 감사를 선임하여 재산상황 및 직무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기초한다.

따라서 감사의 직무대행 조직인 감사실의 설치운영은 민법상의 감사선임조항을 그 근기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감사업무수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감사규정은 1984년 5월 9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서 제정한 이후 1986년 당원 발족당시 1차 개정되었고, 2차 개정(1989.12.13)시에는 감사방법, 감사보조기관 설치, 이의신청, 긴급보고, 외부감사의 통할 등 대폭 개정하여 현재의 감사규정체계로 정비되었으며 그후 원 명칭의 변경, 검사역의 자격 등 문구수정을 포함하여 총 4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감사규정 시행세칙은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사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6년 11월 1일 제정된 이래 감사규정의 개정, 일부 보고서식 변경 등에 따라 5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감사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

• 관련법규

- 민법 : 감사의 선임(제66조), 감사의 직무(제67조),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제37조)을 규정

- 재정경제원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규정(제13조)
- 재정경제원 감사업무처리지침 : 감사대상기관(제3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제13조), 처분요구사항의 조치기한(제14조), 이의신청의 제출 및 처리(제15조), 조치결과의 보고 및 처리(제16조) 등을 규정
- 재정경제원 산하기관 사고보고에 관한 지침 : 사고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

• 내부규정

- 정 관 : 감사의 선임 및 직무를 규정(제26조)
- 감사규정(전문 18조 부칙) :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규정
- 감사규정시행세칙(전문 27조 부칙) : 감사규정 세부시행사항을 규정

2. 감사활동

감사활동은 당원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적부 및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 지도, 개선하는 평가지도활동으로 감사업무 및 감사관련업무가 있다.

가. 감사업무

(1) 감사의 구분

감사의 종류는 감사주체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감사방법에 따라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감사시기에 따라 사전감사와 사후감사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가) 일반감사

일반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사후에 실시하는 업무감사와 회계년도 종료 후 재무제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결산감사를 말한다.

(나) 특별감사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장이 별도 의뢰하는 경우 특정사항에 대하여 일반감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가 별도로 정한 서류(16개항목)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감사업무 처리절차

일반감사업무의 실시과정은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4단계로 처리된다.

〈표3-4-38〉 일반감사처리 흐름도

(가) 감사계획

매년도초에 감사목표, 방침, 실시계획 등을 포함하여 감사운영계획을 수립 확정하며 감사실시전 감사시행계획을 작성, 결재 후 감사실시증을 교부받아 감사명령에 임한다.

(나) 감사실시

수반검사역은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감사실시증을 제시하고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사전에 결정된 분장업무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 부정, 과실, 사고발견시에는 그 행위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질의서 등 필요한 기록사실을 징구하고 감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감사대상부서장 및 관계직원에 대한 강평회를 개최한 후 귀임하여 감사실장에게 출장결과를 보고한다.

(다) 감사결과보고

감사종료 후 15일이내에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종합평가와 적출사항 및 조치의견 등 지적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결재를 받는다.

(라) 사후관리

감사결과보고서는 기획부를 경유 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전말을 회부토록 요구하며, 회신내용은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감사결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차기 감사시 그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나. 감사관련 업무

(1) 공람문서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문서중 전무이사 이상의 결재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후 감사실에 회부하면 검사역은 공람문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감사에게 공람한다.

(2) 입찰입회

계약담당부서장이 감사실장앞 입찰입회를 의뢰하면 검사역이 입찰에 입회하여 입찰관련서류 및 입찰과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한다.

(3) 외부감사 수감 통할

외부감사기관으로 부터 감사자료제출 요구 공문이 접수되면 감사실장은 각 부서에서 작성한 수감자료를 외부감사기관에 제출하며 외부감사가 실시되면 매일 각 부서의 수감상항을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감사 종료에 따른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시 해당부서로 부터 지적내용 처리전말을

제출받아 감사에게 보고한 후 외부감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은 감사결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4) 사고보고 및 처리

사고보고요령에서 규정한 사고발생시 각 부서장은 지체없이 인사부장을 경유 원장과 감사에게 서면보고하며, 동 내용은 감사 또는 기관장 명의로 재정경제원에 보고한다. 감사는 사고관련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인사부장은 그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통보한다

다. 감사활동

(1) 내부업무감사

감사활동 실적은 당원 발족당시에 비하여 많은 향상과 진보가 있었는데 감사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실시초기 대비 일반감사는 약 190%, 문서공람은 약 450%, 입찰입회는 약 140% 증가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기관통합으로 인한 업무체제를 조속 정비하기 위한 위규적발 위주의 감사방침에 따라 지적건수 증가율이 1987년 이후 매년 약 13%~35% 증가하여 왔으나 점차 업무가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1990년부터는 매년 지적 건수가 감소 추세

〈표3-4-39〉 감사업무 운영실적 (단위: 회)

연도별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문서공람	입찰입회
	결산감사	업무감사				
1986	1	16		1,212		
1987	1	27		1,377		
1988	1	34	1	1,104	112	
1989	1	34	4	957	351	
1990	1	40	1	797	469	
1991	1	41		742	420	11
1992	1	47	1	911	507	23
1993	1	48		977	565	14
1994	1	48		984	545	20
1995	1	48		803	612	26

주: 1986~1989년 까지의 일상감사건수는 지출증빙서건수 포함

에 있으며, 특히 감사제도를 지도 및 개선위주의 감사로 전환한 1994년이후부터는 지적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현지조치 건수는 증가되고 있어 감사활동 목표에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외부감사 수감 통할

대외 감독기관 관련 업무인 외부감사 수감 통할은 내부업무감사에서 간과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인의 시각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당원 발족이후 총 6차례의 외부감사를 수감하였는데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간은 매년 재정경제원장관의 위임 대행감사기관인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정기업태감사를 받아왔으나 1990년부터는 재정경제원의 주요 산하기관에 대한 직접감사방침에 따라 격년 주기로 재정경제원의 정기업무감사를 수감함으로써 당원업무의 개선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제9절 기타 업무

1. 안전관리

재해 및 도난으로부터 당원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비상사태에서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관리업무는 총무부 중대본부에서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중대본부는 1992년 8월 1일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과로 개편되었다. 이후 자체 경비구역의 확대 및 전산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등 보안기능 강화를 위하여 1993년 4월 1일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하였고 동년 7월 1일에는 재정경제원 보안산하기관으로 지정되어 그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안전관리업무에는 보안 및 비상계획업무, 경비업무, 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소방업무 등이 있다.

가. 보안 및 비상계획업무

보안업무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재정경제원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당원의 경영기밀, 중요시설 및 인원 등을 보호 관리하는 것으로 199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7월 9일 보안규정, 1994년 4월 26일 카드키 관리기준과 팩시밀리 운용기준을 제정하였고 1994년 10월 보안업무 실무편람을 발간하는 등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였다.

매월 첫주 금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진단을 통해서 업무수행 결과의 점검분석 및 취약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보안관리의 자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보안정책심의회와 보안협의회를 편성하여 심의회는 보안업무 기본계획과 관련 제반규정의 관리, 보안사고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협의회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한편 비상계획업무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사태별 조치사항 등의 계획업무로서 당원은 1994년부터 비상계획(충무계획) 훈련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을지연습」에 참가해 오고 있다.

을지연습장면

나. 경비업무

당원은 1984년 5월 제정된 경비규정에 따라 각종 시설의 보호와 재해, 도난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주간 집무시간에는 청원경찰,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함께 경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직원에 의한 안전점검당번제를 실시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3-4-40〉 경비근무자 변천내역 (단위: 명)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청 원 경 찰	13	13	13	16	16	16
용역경비원	5	5	5	7	7	7

주: 야간은 2개조로 편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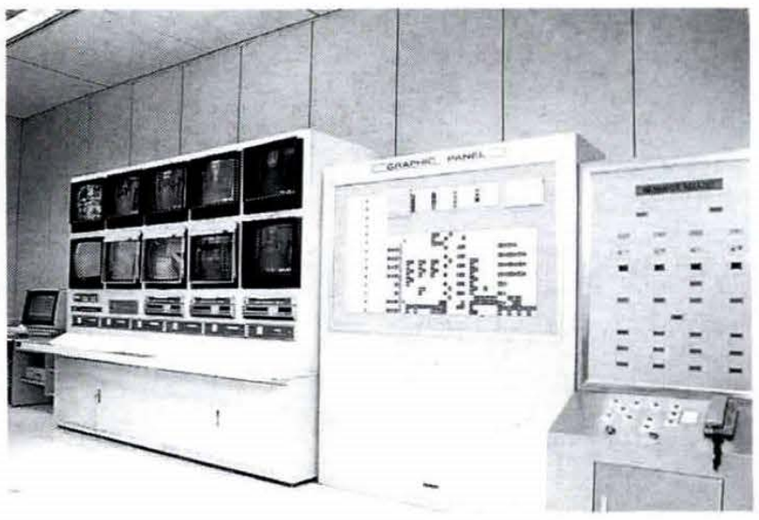

경비상황실

종전 삼성동 본관과 명동 별관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던 경비업무는 인력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후 1992년 2월 현사옥으로 전부서가 이전하면서 경비근무체제가 단일건물로 일원화되었고 경비상황실과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인력에만 의존해온 경비업무를 보완하면서 경비근무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원의 경비구역은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핵심방어지대로 구분 설정하여 중요시설 및 구역에는 초소와 기계경비시설(CCTV 카메라, 초음파탐지기, 카드리더 장치, 도어디텍터, 경비순회장치,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이를 경비상황실과 연결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자세 확립 및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종합경비강화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다. 예비군업무

당원 직장 예비군은 비상동원 체제를 확립하여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군의 동원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적 침투시 당원 시설과 인명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5월 21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예비군중대로 발족되었다.

당원의 예비군 조직은 예비군 중대장을 중심으로 중대본부, 동원예비군 소대, 향방예비군 소대로 편성되어 1995년말 현재 대원수는 165명이다.

〈표3-4-41〉 예비군대원 변천내역 (단위: 명)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원수	134	153	165	140	142	165

대원에 대하여는 매년 일정에 따라 동원훈련, 일반훈련, 지상협동훈련, 방패훈련, 소집점검 등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86년 6월 4일 방위협의회를 편성하여 예비군 중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라. 민방위업무

당원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당원의 시설과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방공, 소방, 구조, 복구 등의 자위적 활동을 목적으로 1988년 2월 1일 57명의 대원으로 발족하여 1995년말 현재 대원의 수는 193명에 달하고 있다.

〈표3-4-42〉 민방위대원 변천내역 (단위: 명)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원수	95	98	120	178	172	193

민방위대 조직은 원장을 대장으로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두고 부대장인 전무이사 지휘하에 6개 소대(본부, 기동, 화생방, 소수방, 방호복구, 의료구호)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분기 「민방위의 날」에는 직원들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직장 방호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대피훈련, 비상탈출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복구훈련,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 소방업무

소방업무는 각종 화재를 사전에 예방 또는 진압하여 당원의 재산 및 직원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자체 방화대의 편성운영은 물론 전산실과 사무실내에 각종 소방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민방위훈련시에는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발생시 재난복구능력의 배양과 자위소방안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물 점검 및 사무실 안전점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소방 및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각종 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당원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노동조합

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발전

당원의 노동조합은 1984년 5월 24일 창립총회에서 이무홍 초대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조합명,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채택하여 출범한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노동조합을 모태로 하여 출범하였다. 당원 발족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무노동조합인 금융노동조합은 1960년 6월 1일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을 효시로 하여 결성되었다. 1960년 6월 23일에는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가 발족하여 단일 산업별 조직체계로서 1961년 8월 19일 「전국금융노동조합」으로 개편된 이후 각 금융기관 노조는 전금노 산하지부로서 활동해 왔다.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종전의 산업별 체제에서 기업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노동조합도 1984년 5월 발족과 동시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회원 노조로 가입하였다. 1986년 6월 13일에는 금융결제관리원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년 조합임역원을 재구성하여 대표위원에 하용록, 이영진을 임명하는 등 통합된 조직의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이보다 먼저 전국은행연합회(1970.10.30)와 은행지로관리소(1978.12.8)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다.

당원 노동조합은 1986년 10월 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명실상부한 조합원

〈표3-4-43〉 위원장 변천내역

	성 명	재 임 기 간		성 명	재 임 기 간
1 대	이 무 홍	1984. 5.10~1985. 5.31	7 대	김 일 중	1993. 1. 1~1994.12.31
2 대	하 용 록	1985. 6. 1~1986. 6. 1	8 대	김 일 중	1995. 1. 1~ 현 재
3 대	하 용 록	1986. 6. 2~1986.12.31	은 행 지 로 관 리 소		
	이 영 진	1986. 6. 2~1986.12.31	1 대	노 재 관	1978.12. 8~1980.12.19
4 대	김 은 규	1987. 1. 1~1988.12.31	2 대	이 영 진	1980.12.20~1983.12.31
5 대	이 영 진	1989. 1. 1~1990. 8.31	3 대	노 충 호	1984. 1. 1~1985.12.31
6 대	이 창 주	1990. 9. 1~1992.12.31	4 대	이 영 진	1986. 1. 1~1986. 6. 1

의 권익보호 및 대변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잡았다. 그후 노동조합은 계속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한편 1988년 6월 이후부터는 상용사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동년 7월 12일 조합원 자격을 본부 직원에서 본·지부 직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분회조직과 대의원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과정과 전달경로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조합원의 증가 및 제반여건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1993년 1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심도있는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노동조합의 조직

노동조합의 조직은 1984년 당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총회와 집행위

〈표3-4-44〉 당원 노동조합 조직도 (1995년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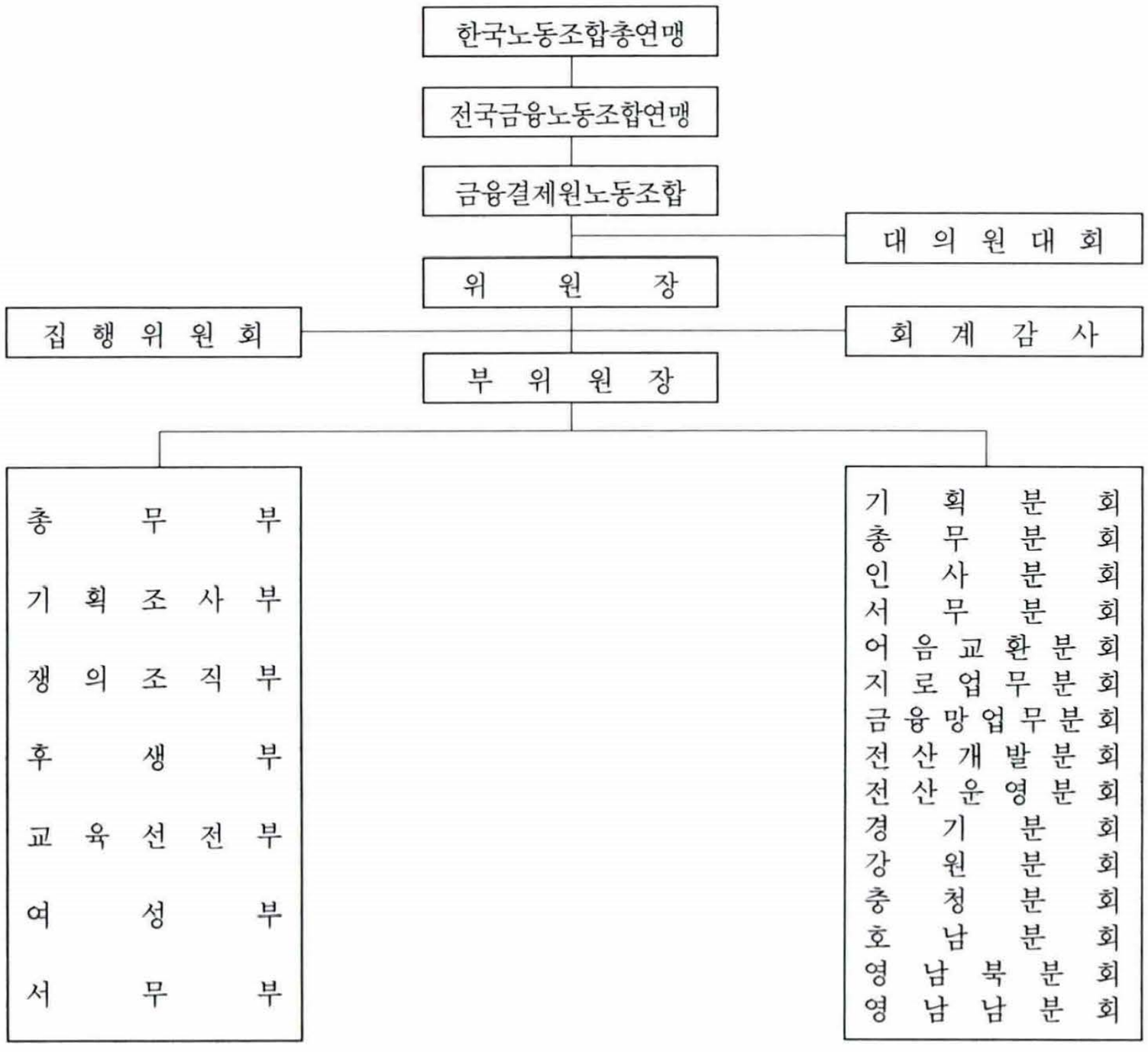

원 으로 위원장, 부위원장(2명), 회계감사, 총무부장, 후생부장, 쟁의부장, 여성 부장, 고용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6년부터 조합전임 2명과 직원 2명이 상주하였으며 1990년 4월 1명이 증원되어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부장, 여성부장,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다.

1984년 5월 당시 3개분회 130명으로 출발한 노조는 조직변경 및 지속적인 사업의 확대로 1995년말 현재 15개 분회 606명으로 구성된 노조로 성장·발전하였다. 현행 노동조합의 조직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의체로는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및 분회총회를 운영하고 있다.

〈표3-4-45〉 조합원수 변동추이 (단위: 명)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조합원수	130	252	385	402	493	515	543	554	576	594	604	606

다. 노동조합의 활동

(1)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많은 기능중 가장 중심적인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행해지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당원 노조는 1986년 10월 6일 「금융결제관리원 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노동조합의 부단한 노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갱신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은 갱신을 거듭하면서 당원 발전은 물론 조합원의 임금 및 복지증진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당원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원활한 운영과 단체협약 이외의 조합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매분기마다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바탕으로 한 근로자의 복지후생과 당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 교육홍보

노동조합의 교육홍보활동은 조합원의 조합의식을 높이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로서 1985년부터 신입직원에 대한 노동조합 소개 및 조합활동 사항, 노동조합 동지애 인식 및 관련 법규 등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1993년 신입직원 연수시부터 노동조합 소개시간이 배정되었다.

또한 1986년부터 조합홍보물 「노조통신」을 발행하여 조합의 활동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호소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6년 3월에는 「조합소식」, 「결제원 노설」로 이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교육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조합운영과 이론무장을 통한 조직역량 배가를 위하여 1988년 9월 「노동조합 제규정집」을 발간하여 조합원 권익보호의 길잡이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교육홍보활동은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식과 단결력 제고는 물론 자주적 · 민주적 조합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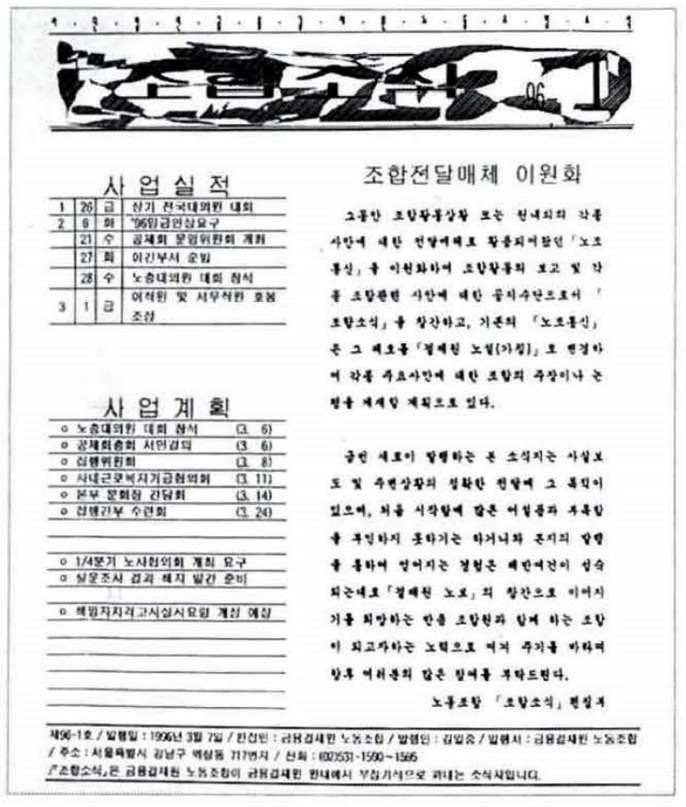

조합소식 96

사 업 실 적

1	26	금	상기 전국대의원 대회
2	6	화	'96임금인상요구
	21	수	공제회 운영위원회 개최
	27	화	야간부서 운행
	28	수	노총대의원 대회 참석
3	1	금	여직원 및 사무직원 호봉 조정

사 업 계 획

○ 노총대의원 대회 참석	(3. 6)
○ 공제회총회 서면감독	(3. 6)
○ 임원위원회	(3. 8)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3. 11)
○ 본부 운영장 간담회	(3. 14)
○ 임원간부 수련회	(3. 24)
○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 실무조사 결과 배치 일간 운비	
○ 핵심자지각고시실시요람 개정 예정	

조합전달매체 이원화

노동안 조합활동상황 또는 현대의의 각종 사안에 대한 전달매체로 활용되어왔던 「노조통신」을 이원화하여 조합활동의 보고 및 각종 조합관련 사안에 대한 공지수단으로서 「조합소식」을 창간하고, 기존의 「노조통신」은 그 내용을 「결제원 노설(가칭)」로 변경하여 각종 주요사안에 대한 조합의 주장이나 논평을 게재할 계획으로 있다.

금번 새로이 발행하는 본 소식지는 사업보고 및 주변상황의 정확한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처음 시작함에 앞선 어설픔과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기는 하거니와 본지의 발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는 해당여건이 성숙되는대로 「결제원 노보」의 창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만큼 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합이 되고자하는 노력으로 여직 주기를 아끼며 많은 어려움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

노동조합 「조합소식」 편집자

제96-1호 / 발행일 : 1996년 3월 7일 / 편집인 : 금융결제원 노동조합 / 발행인 : 김입중 / 발행처 : 금융결제원 노동조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 전화 : (02)531-1590~1595

*「조합소식」은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의 금융결제원 판내에서 무집기석으로 퍼내는 소식지입니다.

(3) 기타

당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각종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1993년 12월부터 매년 노동조합주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분회 및 조합원 상호간 친목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서적류 주문판매 및 필름현상인화 등 각종 편의제공 이외에도 사진전람회, 문예지발간, 등반대회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통하여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 교양활동 지원

당원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여 새로운 목표 달성과 시대여건에 맞는 기업문화를 창달하고자 교양그룹 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다. 교양그룹은 테니스회, 한결회, 산악회, 낚시회, 바둑회, 원구회, 볼링회, 사 진회, 건강달리기회, 설우회 등 10개 그룹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정의 자금지원은 물론 전문강사의 초빙, 각종 전시회 개최 등에 따 른 문화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3-4-46〉 교양그룹 등록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명)

그룹명	등록일자	회원수	그룹명	등록일자	회원수
한 결 회	1986. 6.17	150	원 구 회	1987. 7.25	88
테니스회	1986. 9. 7	49	볼 링 회	1991. 5.22	59
산 악 회	1986. 9.17	96	사 진 회	1993. 3.31	40
낚 시 회	1986. 9.29	44	설 우 회	1994.11.15	45
바 둑 회	1986.11.18	53	건강달리기회	1994.11.24	50

가. 한결회

은행지로관리소의 여직원 모임인 은지회를 모태로 출범하여 1987년 1월 7일 한결회로 새롭게 단장한 이후 공제회운영, 각종 교양강좌개설(예절교육, 지점토, 꽃꽂이, 차밍스쿨, 수지침 등), 장학사업 등 활발한 활동과 불우이웃 돕기의 일환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해 왔다. 1995년말 현재 본부에 근무하는 책임자 4명을 포함하여 15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 테니스회

테니스회

1986년 9월 7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결성, 1995년말 현재 49명이 참여하여 매주 화요일 정기 테니스 모임을 갖고 재경원장관기쟁탈 테니스대회 준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다. 산악회

1986년 9월 17일 원내의 산악운동을 전개하여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산악회는 1995년말 현재 96명의 회원이 매월 정기산행 및 기획산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라. 낚시회

1986년 9월 29일 결성되어 1995년말 현재 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낚시모임을 통하여 정서함양에 일조하고 있다.

마. 바둑회

1986년 11월 18일 결성되어 1995년말 현재 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2회씩 현재까지 18회의 원내 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바둑인구의 저변확대,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취미생활의 다양화에 기여해 왔다.

바. 원구회

1987년 7월 25일 축구 동호인으로 결성된 원구회는 1995년말 현재 8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은 물론 지방으로의 원정경기를 통하여 체력단련 이외에도 지부 직원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활동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사. 볼링회

1991년 5월 22일 볼링 동호인이 주축이 되어 출범하여 1995년말 현재 5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 의욕적으로 참여해 왔다.

아. 사진회

1993년 3월 31일 영상미학을 추구하는 동호인모임으로 출범한 사진회는 1995년말 현재 4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강사초빙 강좌 및 촬영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자. 설우회

1994년 11월 15일 겨울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키동호인 모임으로 출범하여 1995년말 현재 4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차. 건강달리기회

1994년 11월 24일 모든 운동의 기본인 달리기를 통하여 회원의 심신단련은 물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출발한 건강달리기회는 1995년말 현재 50명의 회원이 주로 휴일 아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4. 금융기관 전용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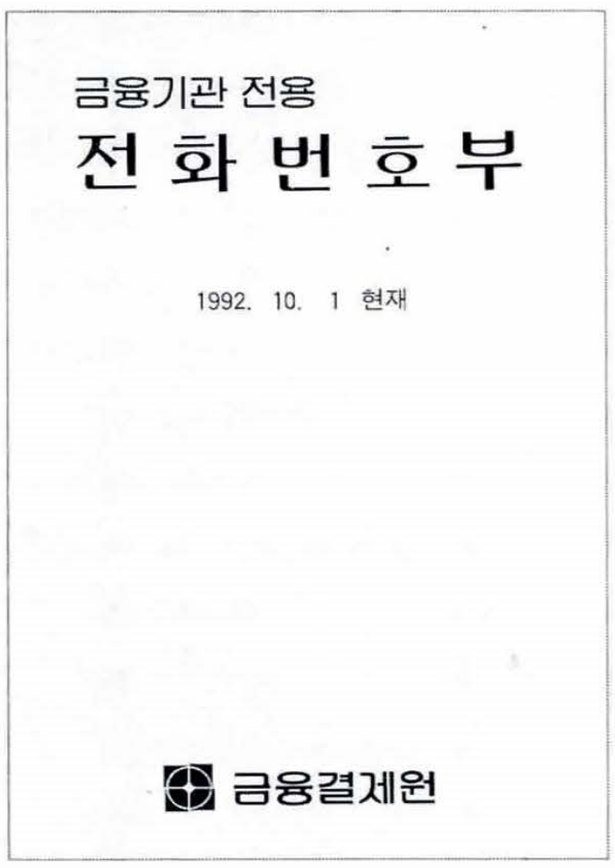

금융기관전용 전화번호부

금융기관 전용전화는 전화가설이 수요에 비하여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던 시절에 금융기관 상호간 및 본지점간의 연락과 어음교환업무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957년 2월 15일 체신부 체전 제472호로 설치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사설 전화시설」로 한국은행내에 처음 가설되었다. 이후 이 시설은 전국은행연합회로 이전되었고 1984년 5월부터 당원이 이를 운영하게 되었다

전화시설 설치 당시는 휴전후 전재 복구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마련 작업이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고 전국에 6개은행 728개의 점포가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9년 10월 인천, 1970년 5월 부산, 1970년 12월 대구 등 지방 주요도시에도 금융기관 전화시설이 설치되었다. 지방의 전화시설은 이용도가 낮고 점차 시설이 노후화되어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1984년 9월 31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의 전화시설은 모두 폐지되었고 이후부터는 국선전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1962년 1월 20일 전신법이 신전기통신법으로 개정되면서 체신부는 1957년 설치된 당초의 전화시설은 전신법에 위배되며 전신전화 연락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본점과 지점에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1962년 1월 11일 이의 허가취소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한금융단은 1962년 1월 12일 기존 전화시설의 계속적인 사용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동년 3월 13일 기존 시설은 폐지(1962년 3월 25일)하되 전용전화회선으로 사용하도록 회신해 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전용전화의 효시가 되었다. 당시 서울 중앙전화국은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이미 사용중인 99회선을 전용전화회선으로 가설하는 데는 약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1987년 전화교환기를 공전식(수동식)에서 전자식 자동전화 교환기로 교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설전화 시설허가 취급에 관한 건
(1962. 1.12 체신부앞 건의문)

1. 금융기관에 있어서 수표 및 어음교환사무의 신속여부는 곧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바 지대함으로 사설 통신시설 없이는 도저히 방대한 교환량을 감내할 수 없음으로 만부득이 막대한 고정투자를 하여 시설하였든 것
2. 금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달성에 정비례 내지 가속도적으로 경제활동의 규모확대에 수반하야 더욱 자금영달 및 기타 사무량의 증대를 초래할 것임으로 이 사설시설 없이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임

전화 설치이후 1989년 한국통신에서 「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 개정시 「전용회선 공동사용 특례인정범위」에 당원이 포함되지 않아 시설확충에 있어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참가기관에 대한 전용회선 증설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는 외환매매 및 콜거래 중개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 이에 당원은 「국내전용회선 공동사용 특례인정범위」에 포함하여 줄 것을 체신부, 한국통신, 중앙전화국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요청하며 약 1여년간에 걸쳐 협의한 결과, 1992년 12월 28일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위한 전용회선의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199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으로써 위기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용전화 도입 당시 수개 은행에 불과하던 사용기관은 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신설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종합금융회사의 참가로 크게 증가하여 1995년말 현재 당원외 106개 기관에 378회선이 가설되어 있다.

〈표3-4-47〉 사용기관 및 회선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개)

구 분	사 원	준사원	외국은행	종합금융회사	정부기관	기타 기관	계
기관수	17	18	50	15	3	3	106
회선수	167	68	87	19	31	6	378

주: 정부기관은 청와대, 재정경제원, 국가안전기획부

전용전화에 대한 회선사용료는 매월 당원에서 우선 납부하고 각 참가기관에는 분기별로 회선사용료 및 유지보수료(전용전화 교환원 인건비, 기기 수리비 등)를 분담 청구하며, 정부기관 회선사용료는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연락

및 정보유통을 감안하여 1984년 3월 6일 각 금융기관의 의결로 17개 사원이 75%, 8개 준사원이 15%, 10개 지방은행이 10%를 분담해 왔다.

〈표3-4-48〉 유선통신 이용분담금 내역 (단위: 백만원)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58	88	74	68	68	70	71	70	71	112	116	135

한편 전용전화 13회선으로 90여개 기관과 업무를 수행하는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잦은 통화대기 및 정확한 송수신의 곤란 등으로 1993년 9월 30일 금융기관 전용전화 이외에 당원 자금중개실과 각 참가기관 Dealing Room간에만 전용으로 연결하는 84회선의 직통전화를 설치하였다. 이후 직통전화는 1994년 8회선, 1995년 3회선이 증설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전용 및 직통전화는 금융기관간 정보유통 및 외환거래, 콜거래중개의 원활화와 상호간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향후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화 중개센터의 안정적 구축과 업무 확대등을 통하여 신속과 정확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제4편 업무

제1장 어음교환업무

제2장 은행지로업무

제3장 금융전산망업무

제4장 전산관련 공동업무

제5장 자금중개업무

제6장 부가통신사업

제1장 어음교환업무

제1절 개요

1. 어음교환소 설립전의 어음교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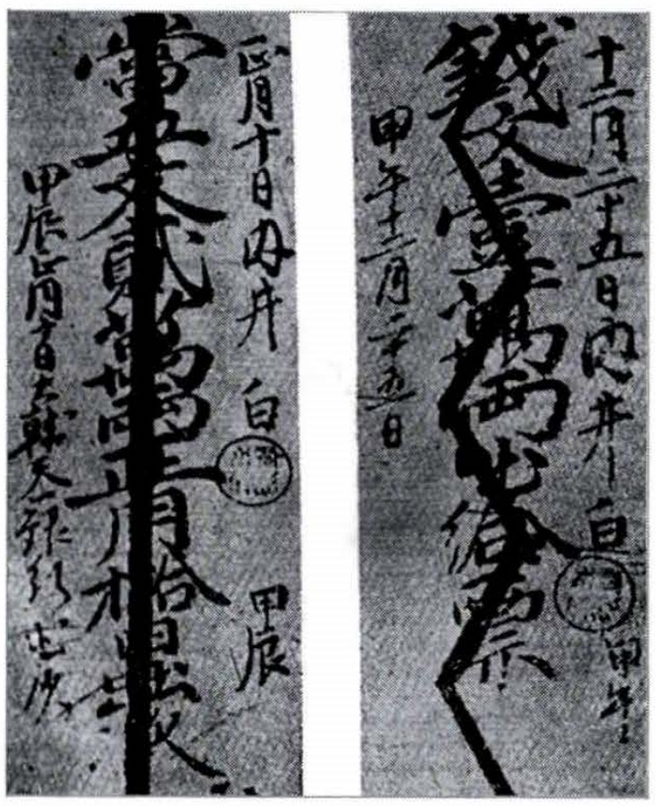
전통적인 어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음(於音)은 상인들이나 객주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던 것으로, 어음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긴 종이의 중앙에 금액을 쓰고 그 양편에 발행연월일과 발행인의 주소, 성명을 기입하여 날인한 후 가운데를 잘라 오른쪽은 채권자에게 주고, 왼쪽은 채무자인 발행인이 가지고 있다가 소지인이 어음금을 청구하면 양쪽을 대조하여 지급하였다. 권리이전방식은 배서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실물인도이므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경화(硬貨)를 대신한 상거래상의 유통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후 이조말기에는 어음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채권자에게 교부하였고, 어음기일은 원칙적으로 1파수(派收, 한 장날에서 다음 장날까지의 일수) 또는 2파수로 되어 있었으며 길어도 1개월~2개월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1905년 9월 30일 약속수형*조례(約束手形條例)의 제정으로 약속수형(약속어음)을 백동화나 엽전 등 구화폐로는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신화폐로만 발행하게 하였다. 약속수형의 금액은 환 또는 원으로만 표시하게 하였고,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형조합조례(手形組合條例)에 의하여 조직된 어음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하였다. 이 어음은 기명식이었으며 배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나 어음이 지급거절되면 배서인은 피배서인의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1906년에 설립된 수형조합이 금융과 상업면에서 적지 않은 실적을 올리게 되자 1906년 11월 16일 수형조례(手形條例)가 공포되어 종래의 약속수형조례는 폐지되었다. 이때 수형조례상 수형의 종류는 약속수형외에 위체수형(爲替手形)*과 소절수*(小切手)가 추가되었고 조합원에 한하여 수형을 발행할 수 있

*위체수형 : 환어음.
*소절수 : 수표

【약속수형조례의 주요내용】

제1조 약속수형은 재산과 신용을 기초로 발행한 것이니 상업상 편리에 공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속수형의 금액을 환 또는 원으로 표시하고 광무 5년(1905년) 칙령 제4호 화폐조례에서 정한 화폐나 동일한 품위, 용량, 형체를 가진 일본통화 혹은 태환권 및 은행권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구화폐나 엽전으로서는 지급을 얻지 못할 것이다.(이하 생략)

제5조 본령에 의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하는 자는 수형조합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수형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제6조 약속수형에는 좌개(左開)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이에 기명날인함을 요한다.(이하생략)

제8조 약속수형은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자료: 「조선금융사정참고서」 p51

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었다. 이 조례는 현재 어음법, 수표법의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으며 총 4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수형일반에 대한 내용인 수형의 정의, 발행인 등의 책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위체수형, 제3장 약속수형, 제4장 소절수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수형조례의 주요내용】

제 1조 본 조례에서 수형이라 함은 위체수형 · 약속수형 및 소절수를 말한다.

제13조 위체수형은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31조 소절수의 발행인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 본령에서 정한 수형이외의 수형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의 발행, 교부를 하지 못한다.

자료: 「조선금융사정참고서」 pp53~60

2. 어음교환소 설립부터 해방까지의 어음교환제도

가. 경성수형교환소 설립 당시의 어음교환제도

1910년 7월 경성수형교환소 설립시의 교환소규약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당

시의 교환제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경수형교환소규칙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경수형교환소는 1891년 3월 일본은행이 참가하면서 중앙은행에서의 교환차액결제방법을 채용하였고, 1894년에는 상업어음(약속어음, 환어음)의 지급을 위하여 거래은행을 지정하는 방법이 만들어졌다. 또한, 1894년 7월에는 어음·수표의 신용도를 높이고 신용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거래정지처분제도를 실시하였고, 1900년 6월에는 동경중앙우체국이 객원으로 어음교환에 참가하였다.

경성수형교환소의 조합은행은 경성부(현 서울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은행업을 하며, 조선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당시 경성부에는 8개 은행 13개 점포가 있어 8개 은행이 경성수형교환소에 가입하여 어음교환에 참가하였다. 조합은행이 되려면 총회에서 출석조합은행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으나, 설립당시에는 경성수형교환소와 개별적으로 가입계약을 맺어 참가하였고 가입금은 1,000원이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우체국은 객원으로 참가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성격이었던 조선은행은 조합은행으로 참가하였고 경성우체국만이 객원으로 참가하였다. 한편 조합은행이외의 은행 또는 금융조합은 조합은행에 위탁하여 대리교환에 참가할 수 있었다.

〈표4-1-1〉 교환어음종류별 어음교환량(전국) (단위: 장, 천원, %)

종 류	1911				1943			
	장 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장 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수 표	184,815	74.5	54,832	75.6	2,140,391	61.8	5,449,700	70.2
송 금 환 어 음	9,896	4.0	4,141	5.7	145,410	4.2	416,311	5.4
약 속 어 음	547	0.2	268	0.4	147,328	4.3	601,010	7.7
사 불 명 령	16,576	6.7	6,995	9.6	131,491	3.8	428,205	5.5
우 편 환	21,742	8.8	2,524	3.5	827,253	23.9	513,050	6.6
공 사 채 , 이 표	9,697	3.9	46	0.1	3,006	0.1	5,379	0.1
잡 증 권	4,651	1.9	3,749	5.2	68,829	2.0	349,085	4.5
합 계	247,924	100.0	72,556	100.0	3,463,708	100.0	7,762,740	100.0

자료: 「조선통계연보」 p135

조합은행은 다른 조합은행이 지급할 어음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전부 교환에 회부하도록 하여 어음교환을 통한 어음결제를 유도하였다. 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교환어음에는 수형조례법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이외에 우체국이 지급할 우편환증서, 공사채 및 이표도 포함되었다. 1911년에는 교환어음가운데 수표가 전체장수의 74.5%, 금액의 75.6%를 차지하였다.

수납은행이 제시하는 어음에 교환인을 날인하는 교환인제도는 1910년 경성수형교환소 설립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환방법은 수교환방식으로 교환소에서 은행간에 서로 교환하고 교환결제자료를 작성하여 수형교환소 감사에게 제출하면 교환이 종료되었다. 교환소 감사는 교환결산이 종료되면 즉시 조선은행에 교환총결산표를 제출하고 조선은행에 있는 조합은행 당좌계정의 대차대체(貸借對替)에 의하여 교환결제하였다. 이때 결제금액이 부족한 은행은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조선은행에 직접 입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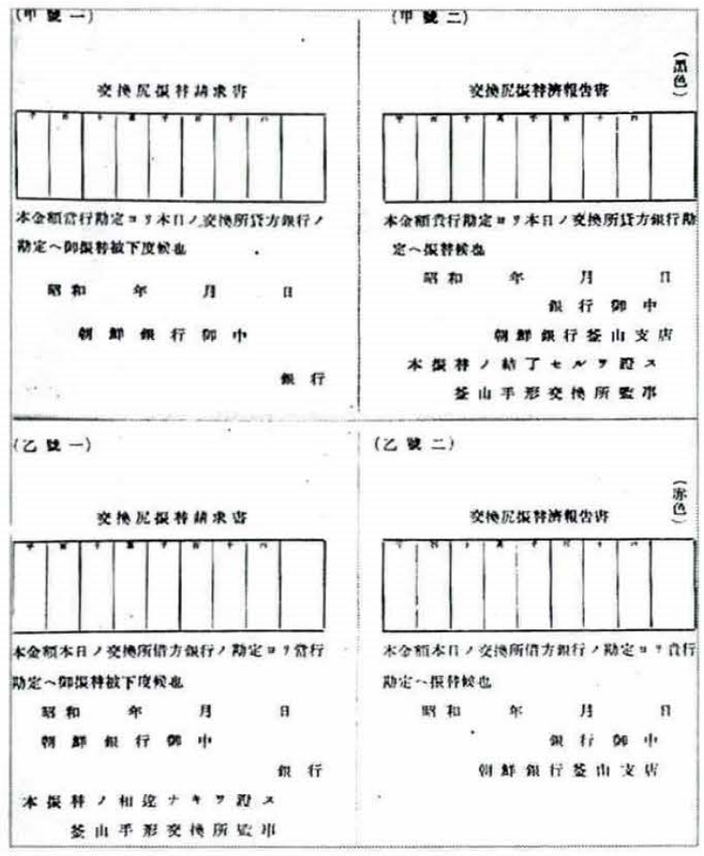
(甲號一)
交換尻振替請求書
本金額當行勘定ヨリ本日ノ交換所貸方銀行ノ勘定ヘ御振替被下度候也
昭和 年 月 日
朝鮮銀行御中
銀行
(甲號二)
交換尻振替濟報告書
(黃色)
本金額當行勘定ヨリ本日ノ交換所貸方銀行勘定ヘ振替候也
昭和 年 月 日
銀行御中
朝鮮銀行釜山支店
本振替ノ結了セルヲ證ス
釜山手形交換所委市
(乙號一)
交換尻振替請求書
本金額本日ノ交換所借方銀行ノ勘定ヨリ當行勘定ヘ御振替被下度候也
昭和 年 月 日
朝鮮銀行御中
銀行
本振替ノ相違ナキヲ證ス
釜山手形交換所委市
(乙號二)
交換尻振替濟報告書
(赤色)
本金額本日ノ交換所借方銀行ノ勘定ヨリ當行勘定ヘ振替候也
昭和 年 月 日
銀行御中
朝鮮銀行釜山支店

교환결제자료(1927년 당시)

부도처리는 지급은행이 부도어음에 부도사유를 기재하여 교환한 날의 오후 3시(당시 은행영업종료시간)까지 어음을 제시한 은행에 반환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였으며, 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은행(제시은행)은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된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에 한하여 부도신고서를 작성하여 교환소에 제출하였다.

나. 어음교환소의 지정 및 신용제도의 확립

1917년 9월 경성, 인천, 부산수형교환소가 조선총독부령 제17호에 의하여 지정을 받았고, 1933년 12월에는 일본의 수형법(手形法)과 소절수법(小切手法)이 제정되어 조선총독부령 제148호에 의하여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원산, 대구, 목포, 군산, 진남포의 9개 수형교환소가 그 법에 의한 교환소로 새로 지정을 받았다.

어음교환소 지정의 효력은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가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으로 인정(현행 어음법 제38조 제2항 및 제77조 제1항 제3호, 수표법 제31조)되고, 어음교환소의 지급거절선언이 지급거절증명방법의 하나가 된다는 점(현행 수표법 제39조 제3호)이다. 지정받은 어음교환소와 임의단체인 사설(私設) 어음교환소와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어음교환소라는 실체를 인정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

일제시대에는 부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된 부도사유와 관련되지 않은 부도사유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합은행은 발행인의 신용에 관련된 부도인 예금부족과 무거래의 경우에만 교환소에 부도신고하였다.

〈표4-1-2〉 경성수형교환소 교환어음종류별 부도내역(1926, 1928년) (단위: 장, 원, 명, %)

종 류	1926				1928			
	장 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장 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수 표	484	53.7	65,699	28.0	472	61.2	83,535	32.0
약 속 어 음	170	18.8	82,120	35.0	96	12.5	60,234	23.1
환 어 음	248	27.5	86,711	37.0	203	26.3	117,336	44.9
합 계	902	100.0	234,530	100.0	771	100.0	261,105	100.0
발 행 자[주]	543	1.7	-	431.9	410	1.9	-	636.8

자료: 「경성상업회의소 통계연보」 p23

주: 발행자란의 구성비는 발행자 1명당 부도건수 및 금액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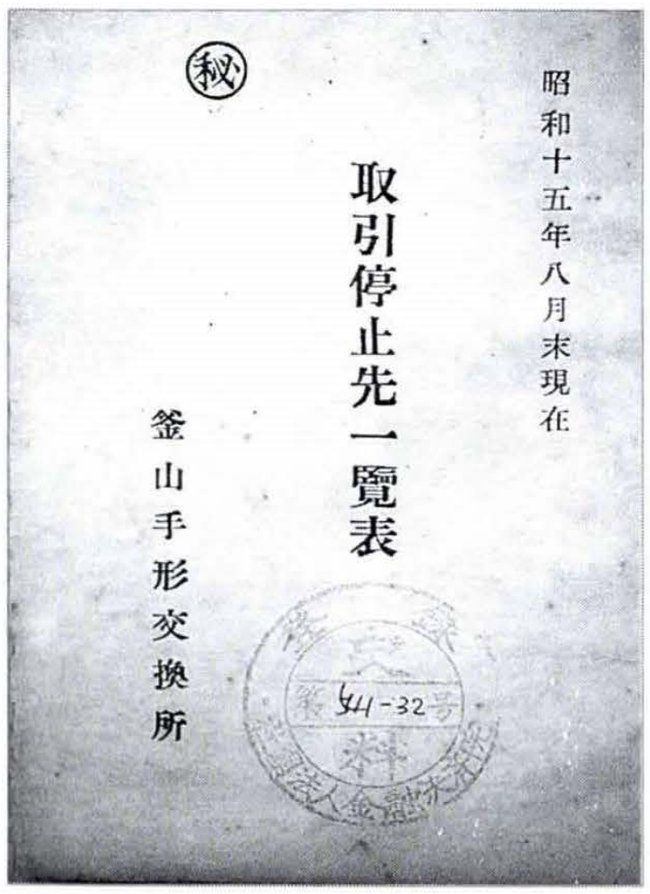

거래정지자명부

어음교환소는 발행인이 부도된 날의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제시은행에 부도금액을 입금하고 제시은행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연 2회까지 거래정지처분을 유예하였다.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는 예금부족으로서 익영업일까지 입금사실의 통보가 없는 경우, 예금부족으로 연 3회이상 입금사실이 있는 경우, 무거래 등 3가지로 한정하였다.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만 2년간 조합은행 및 대리교환위탁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할 수 없었으나, 1920년대에는 당좌예금 및 대출거래만을 할 수 없도록 금융상의 제재를 완화하였다. 거래정지처분제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도자를 신용거래에서 배제하여 어음수표의 유통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거래정지자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거래정지처분의 취소 및 해제가 있었다. 조합은행의 착오로 거래정지가 된 경우에는 교환소위원장의 승인으로 취소하였고, 거래정지자의 신용회복에 의한 해제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회에서 출석은행의 3/4이상 동의를 얻어 해제를 승인하였다.

3. 해방후 1962년까지의 어음교환제도

이 기간에는 어음교환소규약 이외에 어음교환 및 부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수형교환에 관한 보충사항(18개조)』과 『수형교환에 관한 주의사항(10개조)』으로 별도 규정하여 은행들이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어음교환 참가은행의 범위는 본점은 물론 지점 및 출장소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합은행의 참가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교환원의 성명과 인감을 교환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교환원이 한 행위가 조합은행을 대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교환인에는 연월일, 은행명, 교환이라는 문자를 넣도록 하였으며, 교환인이 찍혀 있는 어음은 교환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어음교환을 통한 지급제시를 강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지급수표의 교환예외취급, 공사채 및 이표교환에 관한 교환회부방법,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교환회부방법, 화환어음의 교환회부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교환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환당일 영업종료 30분전까지 지급

〈표4-1-3〉 어음교환소별 참가은행 현황(1962년)

구분	한국	산업	기업	농협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우체국	계
서울	1	1	12	4	15	13	14	12	9	1	10(82)
부산	1	1	6	4	4	5	4	5		1	9(31)
대구	1	1	3	5	2	2	2	2		1	9(19)
인천	1	1		3	1	1	1	1	1	1	9(11)
광주	1	1	1	3	1	1	1	1		1	9(11)
대전	1	1	1	4	1	1	1	1		1	9(12)
춘천		1	1	2			1	1		1	6(7)
청주		1	1	2	1	1	1	1		1	8(9)
전주	1	1	1	2		1	1	1		1	8(9)
군산	1			1	1		1	1		1	6(6)
목포			1	1	1		1	1		1	6(6)
여수			1	1			1	1		1	5(5)
마산			1	2		1	1	1		1	6(7)
계	8(8)	9(9)	11(29)	13(34)	9(27)	9(26)	13(30)	13(29)	2(10)	13(13)	10(215)

자료: 「금융기관점포총람」 p42
주 : ( )는 점포수

준비금에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서울어음교환소가 한국은행에 교환결제용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어 서울어음교환소계정을 통하여 결제하였다.

부도어음의 반환시 지급은행은 수표는 표면에, 어음은 부전에 부도선언을 하도록 구분하였고, 교환소에 제출하는 부도수형계(不渡手形届: 현행의 부도어음신고서)와 부도수형입금계(현행의 부도어음입금통보서) 양식이 신설되었다. 부도어음대전의 회수방법은 지급은행이 제시은행에 직접 부도반환하면서 현금으로 받던 방식에서 제시은행이 발행한 부도수형지불통지서를 지급은행이 다음날 교환에 회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거래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부도사유중 무거래부도는 다른 조합은행에 거래가 있고 부도된 다음 날에 입금하면 1년간 1회에 한하여 거래정지처분을 유예하였다. 부도어음입금계가 제출된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유예해 주는 부도회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강화하였으나, 거래정지기간은 오히려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제재를 완화하였다.

거래정지기간중에 다시 부도를 낸 사람에 대하여는 처음의 거래정지기간을 무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동안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거래정지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도록 신용상의 제재를 강화하였다.

거래정지자에 대한 구제조치인 거래정지처분 취소사유에 어음의 위조, 변조, 사취, 분실 또는 도난 등에 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발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였다.

4.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어음교환제도

가. 어음교환제도의 현대적 정비

우리나라 최초의 어음·수표법이 196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어음교환제도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어음교환소규약은 어음교환소가 설립된지 50여년동안 체계적인 규정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문중에는 사문화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용어가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8월 은행감독원의 주관하에 각행 실무자로 구성된 규약개정 실무자회의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년 12월 30일 사원총회 의결로 규약을 전면개정하였다.

규약의 주요개정내용은 우선 명칭을 수형교환소에서 어음교환소로 바꾸고 「어음교환에 관한 보충사항」을 규약의 관련조문에 삽입하였으며,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별 예비교환제도와 대리교환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조합은행을 사원은행, 가맹은행 및 객원으로 구분하여 향후 신규 참가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음교환의 통계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음교환월보와 부도어음월보를 매월 작성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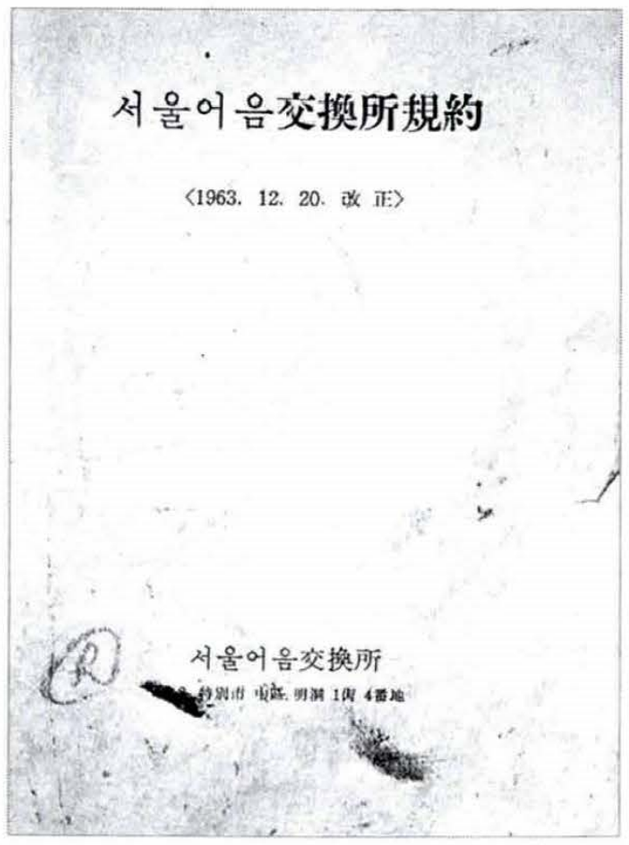
서울어음交換所規約

〈1963. 12. 20. 改 正〉

서울어음交換所

서울어음교환소규약(1963. 12. 30)

나. 1963년 이후의 제도변화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본격 설치하기 시작하고 여타 금융기관이 계속 설립됨에 따라 이들 은행의 교환참가에 대비하여 1967년에 대리교환규정을 신설하여 대리교환제도를 대폭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6월 30일 한국주택금고(한국주택은행의 전신)가 처음으로 대리교환에 참가하였고, 동년 7월 21일에는 미국의 CMB(Chase Manhattan Bank) 서울지점이 외국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교환에 참가하였다.

〈표4-1-4〉 주요은행의 대리교환 참가현황

참가년월일	위탁은행	수탁은행	참가년월일	위탁은행	수탁은행
1967. 6.30	한국주택금고	국민은행	1969. 1.10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7.21	C.M.B	한일은행	1972. 8.11	대구은행	조흥은행
8.25	동경은행	외환은행	8.11	부산은행	제일은행
9. 1	내셔날은행	한일은행	12.22	경기은행	조흥은행
10.20	미쯔비시은행	조흥은행	1974. 7. 1	제주은행	한국신탁은행
12. 1	아메리카은행	상업은행	12.12	경남은행	상업은행

현재의 준사원은행이라 할 수 있는 가맹은행으로서의 어음교환참가는 1972년 7월 28일 수협중앙회가 처음으로 참가하였고, 그후 대리교환으로 참가하던 10개 지방은행의 서울지점이 1977년 4월(경기은행)과 1978년 8월(9개은행)에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으로 참가하였다. 1979년 서울어음교환소 조합은행은 전국은행협회 사원은행 12개, 가맹은행 11개, 객원 1개(우체국) 등 총 24

〈표4-1-5〉 서울어음교환소의 조합은행(1979년)

전국은행협회 사원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객 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충청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기은행, 전북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충북은행	서울중앙우체국
12	11	1

개 은행이었다.

1970년대에는 대도시지역과 인근 지역의 경제적 관련이 높아져서 각 어음교환소의 참가지역을 인근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1979년 당시 서울어음교환소에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의정부시, 고양군, 김포군, 파주군, 구리시, 광주군에 소재하는 점포도 서울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교환대상지역으로 하였다. 또한 1977년 3월에 서울어음교환소와 인천 및 수원어음교환소간에 상호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어음교환소 참가지역을 더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65년 10월 1일에는 어음법 · 수표법상의 지급거절사유를 포함한 8개 부도

〈표4-1-6〉 전국 어음교환소별 참가지역(1979년)

교환소	참가지역	교환소	참가지역	교환소	참가지역
서 울	서울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의정부시, 고양군, 김포군, 파주군, 광주군, 구리시	원 주	원주시	포 항	포항시, 영일군
		속 초	속초시	순 천	순천시
		강 릉	강릉시	경 주	경주시, 경주군
		청 주	청주시	안 동	안동시
부 산	부산시, 양산군, 김해군	충 주	충주시	구 미	구미시
대 구	대구시, 경산군	천 안	천안시	마 산	마산시
인 천	인천시	전 주	전주시	진 주	진주시, 진양군
광 주	광주시	군 산	군산시	울 산	울산시
대 전	대전시	이 리	이리시	충 무	충무시, 통영군
수 원	수원시, 평택읍, 안성군	목 포	목포시	제 주	제주시, 서귀포, 한림읍
춘 천	춘천시	여 수	여수시, 여천읍		

반환사유(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신고서접수, 위·변조,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 인감서명상이, 지급지상위)를 규약에 명시하여 참가은행이 부도반환사유를 통일성있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부도반환사유의 명확화 및 가계수표의 신설에 따라 1966년 4월 1일에는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을, 1977년 5월 13일에는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를 부도사유에 추가하였다.

또한 분실, 도난 등 사고어음에 대한 부도처리방법도 당초의 사고신고계만 제출하면 되던 것을·1964년 1월부터는 경찰관서에의 도난신고접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정지처분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1969년 1월부터는 증빙서류 제출후 소송취하 등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신고시 어음금 해당액을 거래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사고신고예수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수출입국정책에 부응하여 수출업자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은행의 신용으로 원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국신용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른 내국신용장어음을 교환하기 위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마산의 7개 지역에 내국신용장어음교환실이 설치되었다.

5. 1980년 기계처리제도 도입 이후의 어음교환제도

가. 어음교환의 기계화 (1980년대 상반기)

(1) 서울어음교환소의 기계처리 실시

1970년대 들어서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어음교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어음교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이 과다하여 종전의 수교환방식으로는 원활한 교환결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계처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1971년 7월 서울어음교환소 기계화 기초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한 결과, 일평균 예상교환량이 16만건이 되는 1980년 이후가 기계화실시의 적기라고 판단하여 1979년 2월 서울지역 어음교환업무 기계화처리 기본방침을 확정하여, 1980년 1월 11일부터 MICR 자동판독분류기(Reader/Sorter)에 의한 어음교환 기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어음교환 기계처리장면

사전준비작업으로 1977년 7월 30일 어음·수표에 은행점포번호 표시제를 확대하고 1978년 7월 교환어음처리용 기기를 도입하는 한편 8월부터 금융기관에서 MICR용 수표용지를 사용토록 하였다. 1979년에는 어음규격 및 양식을 통일하고 금융기관 점포코드를 부여받은 점포만이 교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환소 분류어음 및 기계처리용 장표의 MICR인자요령과 수입어음명세 M/T작성요령을 제정하였다.

기계처리 초기에는 참가은행당 5개 점포씩 총 50개 점포의 정액자기앞수표에 대하여만 기계처리를 하였으나, 1980년 3월 22일에는 161개 점포, 11월 21일에는 서울어음교환소 가입 전점포(670개)로 대상점포를 계속 확대하였고, 1982년부터는 서울어음교환소가 종전 은행지로센타에서 처리하던 기계처리업무를 인수하여 직접 담당하였다. 1980년 28.2%에 불과하였던 기계처리비율이 1984년에는 대상어음의 확대등으로 73.1%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1981년 8월에는 먼거리에 있는 점포가 교환소까지 실물을 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내 주요지역에 권역별로 3개 파출분소를 설치하였다.

〈표4-1-7〉 서울어음교환소 어음교환 기계처리량 (단위: 천장, %)

구 분	어음교환장수	기계처리장수	점유율
1980	82,422	23,325	28.3
1981	107,827	68,893	63.9
1982	147,023	90,185	61.3
1983	177,043	128,778	72.7
1984	167,725	122,688	73.1

서울어음교환소의 기계처리실시로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종전 수교환방식에서 기계교환방식으로 대폭 개정하고, 규약체계도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규약과 시행세칙으로 이원화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8개 지방 어음교환소는 종전과 같이 수교환을 계속함에 따라 교환처리절차는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

어음교환소의 경비분담금은 그동안 각 참가은행이 교환지급금액에 따라 참가료(이후 교환수수료로 명칭변경)를 납부하였으나, 서울어음교환소의 기계처리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비용을 분담하기로 기

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각 참가은행은 총경비분담금중 30%는 교환지급금액 비율로, 70%는 교환소분류어음 수취장수 비율로 부담하였다.

어음교환 대상어음은 본·지점간에 대차결제하던 자행타점권도 교환회부토록 의무화하고 교환에 회부 가능한 제증서의 종류를 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등 20개로 명문화하였다. 기계처리실시에 따라 교환어음의 제시시각을 교환당일 어음교환 개시시각(11:30)에서 교환전일 영업종료후 특정시각(20:30)으로 변경하였고, 은행별로 일괄 제시하던 방식에서 각 점포에서 실물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지급어음의 수취도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의 금고실에 설치된 자행 투입함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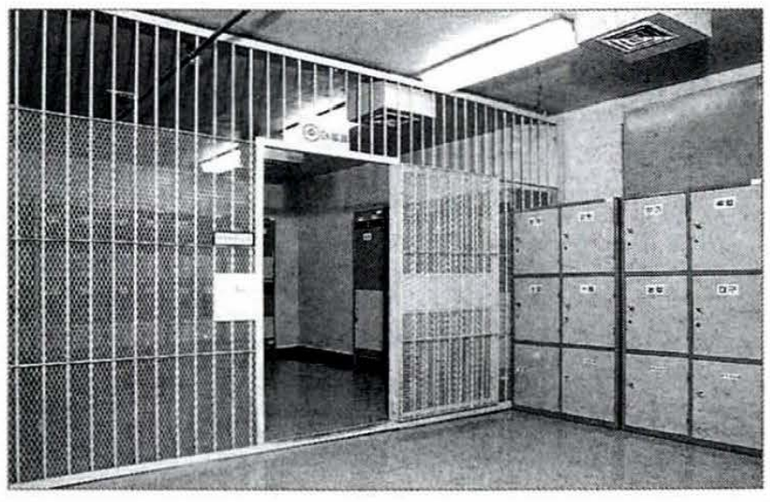
금고실

(2) 어음교환제도의 변화

1980년에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먼거리에 소재한 점포들간에도 어음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호교환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인근 6개 어음교환소로 상호교환이 확대되었고, 지방경제의 중심지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5개권역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9개 어음교환소가 상호교환을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어음·수표 사용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어음교환업무의 기계처리실시로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은행고객들의 자금화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종전에는 입금 익익영업일(입금일+2영업일)에 돈을 찾을 수 있던 것을 입금한 다음날 오후 2시 30분이후에는 즉시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자기앞수표의 발행량이 증가됨에 따라 발행·수납은행간에 발생하는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이를 보전해 줄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1983년 1월에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협약』이 제정·시행되었다.

나. 분산처리실시와 서비스 제고(1980년대 하반기)

(1) 야간교환제도의 실시

1980년 1월 서울어음교환소에서 기계처리를 실시한 이후 어음교환량이 일

평균 278천장에서 1984년에는 일평균 563천장으로 급증하여 업무처리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미결제어음통보제도 실시로 지급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어음교환소의 처리능력만으로는 원활한 교환결제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교환소의 처리물량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교환처리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1985년 8월부터 8개 대형은행이 자행의 제시어음 및 지급어음을 직접 기계처리하고, 자체처리한 어음을 야간의 특정시각에 서로 모여서 교환하도록 하는 야간교환제도를 실시하였다. 1985년 8월 기업·국민·조흥·한일은행이 최초로 참가한 이래 대형은행들이 계속 야간교환에 참가하여 1995년말 현재에는 서울어음교환소 36개 참가은행중 16개 은행이 야간교환에 참가하고 있고, 전체 어음교환량의 약 84.3%를 처리하고 있다.

〈표4-1-8〉 서울어음교환소의 야간교환실시후 당원과 야간교환은행 기계처리량 (단위: 천장, %)

구 분	어음교환장수	당 원	야간교환은행
1986	195,673	59,508(30.4)	112,423(57.5)
1988	300,959	93,937(31.2)	171,155(56.9)
1990	443,344	100,535(22.7)	294,669(66.5)
1992	631,809	85,717(13.6)	490,819(77.7)
1994	449,805	87,460(19.4)	349,827(77.8)
1995	492,520	77,136(15.7)	415,351(84.3)

(2) 지급결제제도의 효율화

198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은행이 본·지점간 온라인을 구축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기앞수표는 자행 어느 점포에서도 즉시 사고신고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7월에는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자기앞수표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타지 자기앞수표의 당지 교환결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였다.

동일 어음교환소 소재점포가 아닌 다른지역 점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도 당지의 어음교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어음교환소 소재지역의 점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결제기일을 단축하였다. 더나아가 1992년 7월에는 상호교환제도를 개선하여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점포가 발행한 정액자기앞수표도 당지의 어음교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은행의 어음현송에 따른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他지역 발행수표 現金교환
7월부터 서울등 일부서 시행
이틀決濟서 하루면 가능
韓銀 상호어음交換制 개정…내년 全國확대

타지자기앞수표 당지교환결제제도 시행
(1987.7.1)

경감시켰으며, 1994년 12월에는 일반자기앞수표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1988년 5월에는 지방어음교환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던 지방어음교환소규약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규약(안)을 만들었다. 표준규약은 어음교환소별로 규약을 달리 규정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적용근거를 단일화시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어음교환소는 기계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어음교환소의 교환처리절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전국 단일의 어음교환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고어음에 대한 부도처리방법도 사고신고예수금제도에서 1987년부터는 정당한 어음권리자에게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고신고담보금제도로 변경하였고, 1989년부터는 법원으로부터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금을 입금토록 하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제도도 도입되었다.

다. 업무 전산화 추진(1990년대)

(1) 부도관리의 전산화 및 구제제도의 발전

1989년에는 부도관리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부도자 정보조회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부도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1990년(지부는 1992년)부터 전산에 의한 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List로 통지하던 각 참가은행에 대한 부도정보자료를 1993년 1월부터 일괄전송으로 송부함으로써 신속·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도업무 처리인력 및 인쇄비용을 절감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1994년 9월에는 부도반환절차를 부도발생 다음날 교환을 통한 역교환방식으로 변경하여 참가은행이 제시점포에 직접 부도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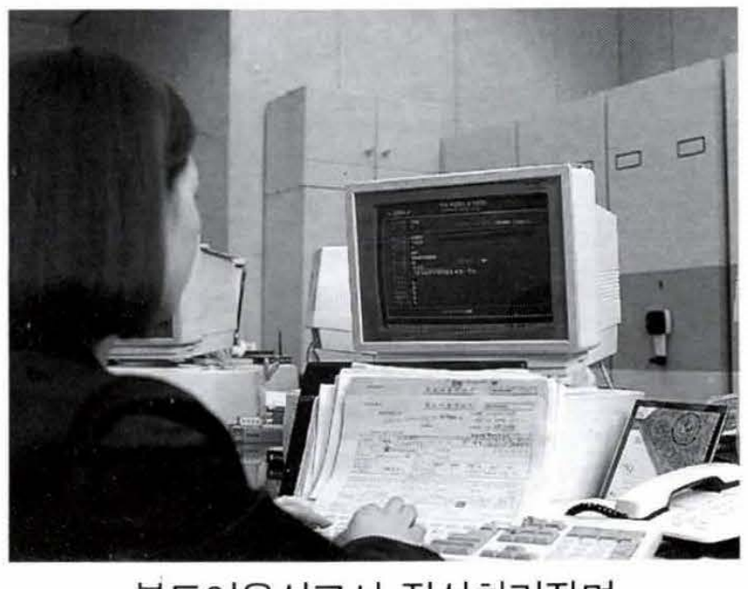
부도어음신고서 전산처리장면

1993년 9월 참가은행의 착오에 의한 부도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 취소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4년 12월에는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부도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한번 부도처리되면 처리과정상의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어음발행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다.

1993년 8월 정부의 중소기업 부도방지 및 정상화 촉진시책에 발맞추어 중

소기업에 대하여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유예기간(30일)중에 부도어음을 정리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구제제도를 활성화하였다.

〈표4-1-9〉 거래정지처분자의 구제현황(전국) (단위: 명, %)

구 분		1993	1994	1995	증감율
거래정지처분건수		17,051(1,421)	32,763(2,730)	34,347(2,862)	48.5
구제조치	취 소	81(6.8)	206(17.2)	312(26)	102.9
	해 제	28(2.3)	99(8.2)	112(9.3)	133.4
	합 계	109(9.1)	305(25.4)	424(35.3)	109.4
구제조치율		0.6	0.9	1.2	36.2

주: ( )은 월평균임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참가은행의 업무착오와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여 거래정지처분된 경우 어음교환심사위원회(지부운영위원회)의 취소승인이 있기까지 거래정지처분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 발행인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전자적 지급결제제도의 도입추진

어음교환물량의 급격한 증가(1992년 일평균 397만장, 1982~1991년 연평균 증가율 약 25%, 자기앞수표 점유율 93%)로 업무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실물현송상의 어려움이 많아 현행의 실물교환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표내용을 전산정보화하여 교환결제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3월 9개은행 실무자로 구성된 도입준비반에서 10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3년 1월부터 은행의 각종 수수료 자율화 시책에 따른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부과와 금융실명제의 실시여파 등으로 어음교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초기투자비용도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3년 7월 동 제도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기로 하였다.

〈표4-1-10〉 어음교환장수(일평균)의 증감추이 (단위: 천장, %)

구 분	전 국		서 울	
	일평균 장수	증감율	일평균 장수	증감율
1992년	3,971	-	2,127	-
1993. 1~2	4,270	7.5	2,198	3.3
1993. 3~6	2,495	-37.2	1,267	-40.4

주: 증감율은 1992년 교환량 대비

제2절 어음교환

1. 어음교환의 참가

가. 참가은행

참가은행이라 함은 어음교환소에서 이루어지는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여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일반참가은행과 특별참가은행으로 구분된다.

일반참가은행은 당원의 사원 및 준사원으로서 어음교환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이며 당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원 또는 준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어음교환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자격을 상실한 날에 탈퇴된다. 1996년 3월 현재 일반참가은행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관은 당원의 사원 및 준사원 35개 은행중 한국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33개 은행이며 그 은행의 모든 점포가 해당지역의 어음교환소에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점포신설시 해당지역 어음교환소에 참가신고(서면)만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특별참가은행은 일반참가은행이외의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일시되는 자로서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과 우체국이다.

1985년 8월 CITI은행 서울지점과 CMB 서울지점은 서울어음교환소에 특별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1989.12.22 개정 : 대통령령 제12857호)

1. 우체국
2.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단위농업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1항 제3호의 2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 농업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을 행하는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7.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제1항 제13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10.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제11호의 사업을 행하는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표4-1-11〉 어음교환소별 참가은행 및 점포수(1995년말 현재)

(단위: 개)

교환소명	참가은행	점 포	대리교환 위탁은행	교환소명	참가은행	점 포	대리교환 위탁은행	교환소명	참가은행	점 포	대리교환 위탁은행
서 울	36	2,582	190	속 초	10	20	10	여 수	14	37	20
부 산	30	542	67	동 해	8	21	8	순 천	17	63	43
대 구	28	419	81	태 백	5	9	2	해 남	9	34	67
인 천	30	256	26	청 주	23	109	63	포 항	21	62	15
광 주	24	216	111	충 주	11	20	16	경 주	15	25	18
대 전	27	207	43	제 천	8	19	16	안 동	10	16	19
수 원	24	150	28	천 안	19	50	32	구 미	17	43	18
안 양	25	121	6	공 주	6	10	14	김 천	7	11	13
성 남	24	101	3	홍 성	11	32	80	영 주	7	14	12
부 천	25	90	12	논 산	9	20	34	창 원	26	176	71
의정부	17	63	27	서 산	11	32	34	울 산	27	127	18
평 택	13	48	22	전 주	22	97	44	진 주	18	56	50
안 산	23	60	7	군 산	20	40	26	통 영	10	38	42
이 천	13	31	29	익 산	15	37	19	김 해	15	31	13
춘 천	18	39	21	정 읍	7	14	33	양 산	17	29	-
강 릉	15	30	12	남 원	6	6	5	제 주	16	85	32
원 주	11	25	22	목 포	16	38	17	계	36	6,401	1,611

주: 참가은행 및 점포는 금융기관공동코드집에 의한 실제참가 기준임

참가승인을 받았고, 1994년 1월 CITI은행은 『금융결제원 사원·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특별참가기관으로 승인받아 전국의 모든 어음교환소에 특별참가하게 되었다. 우체국은 전국의 모든 어음교환소규약에서 해당지역의 대표우체국을 특별참가은행으로 규정함에 따라 특별참가하고 있다.

참가은행은 어음교환차액결제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지점에 있는 국고예탁금계정을 통하여 교환차액을 결제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서울어음교환소에는 36개은행 2,582개 점포가 참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6개은행 6,401개 점포가 참가하고 있다.

〈표4-1-12〉 참가은행 참가연혁(서울어음교환소)

은 행	참가일자	비 고	은 행	참가일자	비 고
한 국	1910. 7. 1	• 경성수형교환소 사원 (구한국은행)	산 업	1910. 7. 1	• 경성수형교환소 사원 (한호농공은행)
조 흥	1910. 7. 1	• 경성수형교환소 사원 (한성은행)	상 업	1910. 7. 1	• 경성수형교환소 사원 (대한천일은행)
우체국	1910. 7. 1	• 경성수형교환소 객원	제 일	1929. 7. 1	• 경성은행집회소 객원 (조선저축은행)
한 일	1932.12.16	• 경성은행집회소 객원 (조선신탁주식회사)	농 협	1934. 1. 1	• 경성은행집회소 객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서 울	1959.12. 1	• 서울은행집회소 사원	기 업	1961. 8. 1	• 서울은행집회소 사원
국 민	1962. 2. 2	• 서울은행집회소 사원	외 환	1967. 1.30	• 서울은행집회소 사원
주 택	1967. 7.10	• 서울은행집회소 사원	수 협	1969. 1.10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경 기	1969.12. 8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대 구	1967.10. 7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부 산	1967.10.25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충 청	1968. 4.22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광 주	1968.11.20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제 주	1969. 9.19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전 북	1969.12.10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강 원	1970. 4. 3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경 남	1970. 5.22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충 북	1971. 4.24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장 기	1980. 6. 2	•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신 한	1982. 7. 7	• 전국은행협회 사원
한 미	1983. 3.16	• 전국은행협회 사원	축 협	1983.12. 1	• 어음교환관리소 준사원
C.M.B	1985.10. 5	• 서울어음교환소 특별참가은행	CITI	1985.10. 5	• 서울어음교환소 특별참가은행
동 화	1989. 9. 5	• 금융결제관리원 사원	동 남	1989.11. 1	• 금융결제관리원 사원
대 동	1989.11. 7	• 금융결제관리원 사원	하 나	1991. 7.15	• 금융결제원 준사원
보 람	1991. 9. 2	• 금융결제원 준사원	평 화	1992.11. 2	• 금융결제원 준사원

나. 대리교환

대리교환제도는 어음교환에 간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어음교환량과 점포가 적어 직접 참가하기에는 부적합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수·축협중앙회의 회원조합들이 일반참가은행에 어음교환사무를 위탁하여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제도이다.

1910년 경성수형교환소 설립시에는 일본제도를 원용하여 규정되었고 금융조합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효율성이 없어 폐지하였다가 1963년 12월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다시 제정되었고 대리교환 참가승인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었다. 1974년 12월에는 참가은행의 업무편의를 위해 참가승인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하였다. 1995년말 현재 대리교환으로 어음교환에 참가하고 있는 위탁금융기관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단위 및 특수 농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이고 전국에 1,611개로 교환소당 평균 32개가 참가하고 있다.

〈표4-1-13〉 대리교환위탁은행 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개)

구 분	외국은행	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축협	합 계
전 국	61	1,202	112	236	1,611
서 울	49	57	18	66	190
지 방	12	1,145	94	170	1,421
교환소당 평균	1.2	24.0	2.2	4.7	32.2

대리교환위탁은행의 자격은 참가은행이외의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일시 되는 자이고 일반참가은행 점포를 대리교환 수탁은행으로 하는 대리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재지역 어음교환소에 대리교환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교환참가의 특징은 참가은행과는 달리 자행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어음교환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참가승인을 받은 어음교환소에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 어음교환소 참가지역

어음교환소 참가지역이라 함은 특정의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는 은행점

포의 범위를 정한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1960년대 이후 대도시지역은 인근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로 되었고 어음교환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음교환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인근 지역까지 참가지역이 광역화되었다. 그래서 1979년 당시에는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이 서울특별시에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의정부시, 고양군, 김포군, 파주군, 구리시, 광주군으로까지 광역화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초에는 어음교환량의 증가와 교통장애에 따른 어음현송

〈표4-1-14〉 어음교환소별 참가지역 현황(1995년말 현재)

교환소	참가지역	교환소	참가지역	교환소	참가지역
서 울	서울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군, 파주군, 가평군, 광주군	안 산	안산시, 시흥시	남 원	남원시
		이 천	이천군, 여주군, 양평군	목 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춘 천	춘천시, 홍천군	여 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강 릉	강릉시	순 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구례군
부 산	부산광역시	원 주	원주시, 횡성군		
대 구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동 해	동해시, 삼척시	해 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속 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 천	인천광역시	태 백	태백시	포 항	포항시
광 주	광주광역시,나주시,곡성군,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함평군	청 주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연기군	경 주	경주시
				안 동	안동시
				구 미	구미시, 칠곡군
대 전	대전광역시,금산군,옥천군 논산군 두마면[주] 영동군	충 주	충주시	김 천	김천시
		제 천	제천시, 단양군	영 주	영주시
수 원	수원시, 오산시, 화성군, 용인군	천 안	천안시, 아산시	창 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성 남	성남시	홍 성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안 양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공 주	공주시	울 산	울산시
부 천	부천시	논 산	논산군, 부여군	통 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군, 연천군, 양주군, 철원군	서 산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진 주	진주시, 사천시, 함양군 산청군
		전 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군 산	군산시, 서천군	김 해	김해시
평 택	평택시, 안성군	익 산	익산시	양 산	양산군
		정 읍	정읍시, 고창군	제 주	제주도전역(추자도 제외)

주: 논산군 두마면 용동 · 석계 · 부남 · 정장 · 남선리

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양, 부천, 성남, 의정부시에 어음교환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95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개특별시, 5개광역시, 64개시, 68개군 지역에서 8,012개 점포(전국의 전점포중 약 98%)가 50개 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으며 상주, 문경의 2개시와 26개 군소재 164개 점포(전국의 전점포중 약 2%)가 어음교환에 미참가하고 있다.

한편 어음유통량이나 금융기관점포수 등이 적어 어음교환에 참가하지 못하는 지역에도 참가지역에 준하는 어음교환 또는 부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1966년 3월 11일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당좌거래규제협정과 어음처리규약을 제정하였다. 1966년 당시 전체 1개특별시, 1개직할시, 30개시, 138개군중 미참가지역은 10개시 136개군으로 군지역이 대부분 미참가하고 있었다.

3. 어음교환관련비용

가. 어음교환 가입비용

어음교환소의 모든 업무설비는 참가은행의 투자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음교환업무에 일반참가은행으로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참가은행으로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참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교환 위탁은행으로 간접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음교환소별로 정한 대리교환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10년 경성수형교환소 설립후 어음교환소 조합은행은 가입금으로 1,000圓을 납부하였다. 1928년 경성은행집회소 설립이후에는 은행집회소의 사원으로 가입시 가입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어음교환소 참가에 따른 별도의 가입금은 없어졌다. 1963년 12월에 신설된 가맹은행은 은행집회소 사원이 아니므로 어음교환소 참가에 따른 교환가입금을 납부하였지만, 1984년 5월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발족되면서 준사원(가맹은행)은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참가료 납입규정을 삭제하였다.

1985년 8월에는 특별참가은행이 신설되어 CITI은행 서울지점과 CMB서울지점의 경우 각각 1,400만원, 1,200만원의 참가료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표4-1-15〉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및 특별참가은행의 참가료(특별참가금)

참가일자	참가은행명	참가료(특별참가금)	산 출 근 기
1972. 7. 8	수협중앙회	100만원	• 경영실적을 고려(자본금 17억원)
1977. 4. 1	경기은행	100만원	• 수협중앙회에 준함(자본금 50억원)
1978. 8. 1	9개 지방은행	200~300만원	• 자본금, 예금, 대출금 합산금액이 1천억원 이상 300만원, 미만시 200만원 • 300만원: 대구, 부산, 경남은행(3개)
1980. 6. 2	장기신용은행	600만원	• 부산은행등과 비교하여 자본금 30%, 업무량 70% 감안(자본금 500억원)
1983.12. 1	축협중앙회	400만원	• 자본금 고려(자본금 34억원)
1985. 8. 3	C.M.B CITI은행	1,200 만원 1,400 만원	• 부산은행 참가료와 물가상승을 감안
1994. 2.16	CITI은행	7,000 만원	•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

CITI은행의 경우 1994년 2월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7,000만원의 특별참가금을 납부하면서, 당원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어음교환소에 특별참가은행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어음교환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1994. 11. 2 개정)】

- 어음교환 특별참가금의 성격 및 범위
  - 투자비용 = 기투자비용 + 신규유발투자비용
- 어음교환 특별참가금의 산출
  - 투자비용에 참가신청기관의 영업규모비중을 적용하여 분담규모 산출
  - 특별참가금 = (기계설비비용 × 영업규모비중) + (S/W개발비용/기참가기관수) + 신규유발투자비용 + (예상수익 × 영업규모비중)
  - 영업규모비중은 참가은행의 (원화예금비중 × 90%) + (자기자본비중 × 10%)

대리교환위탁은행은 1910년부터 대리교환 참가승인시 인허료 200원을 납부하고 결제자금 부족금정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무기명 국공채권 2,000원을 납부하였다. 1963년에는 대리교환 인허에 따른 참가료로서 이사회가 정한 인허료와 교환차액부족금 등에 대비한 보증금을 교환소에 납입하였다. 1967년 6월에는 보증금제도는 폐지하였고, 1974년 12월에는 인허료를 대리교환위탁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리교환위탁료 결정을 심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변

경하였다. 그러나, 1979년 11월에는 서울어음교환소 기계처리 실시와 더불어 위탁료의 결정주체가 서울은 이사회, 지방은 지부운영위원회이었으며, 위탁료도 서울은 20만원, 지방은 10만원으로 이원화하였다.

나. 어음교환처리비용

교환소의 어음교환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은 교환실적에 따라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는 은행이 분담하며 매년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다.

1910년에는 경성수형교환소의 예산중 반은 조합은행이 평등하게 분담하였고 나머지 반은 그 앞선 반년의 교환금액에 따라 분담하였다. 그러나 은행집회소가 어음교환소를 운영하면서 은행집회소의 예산으로 경비를 충당하였고 과태금 및 부도제재금은 은행집회소 예산에 전입금 과목으로 이전하였다. 1967년 6월 제정된 『가입금 및 참가료 사정기준요강(査定基準要綱)』에서는 참가료(어음교환경비분담금)의 납부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1967년 가입금 및 참가료 사정기준 요강】

1~2. : 생략

3. 참가료(가맹은행 및 대리교환)

서울어음교환소의 수지상황은 별첨과 같이 소요경비보다도 제재금 등의 수입이 더 많은 형편이므로 참가료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기본참가료 6개월 : 가맹은행 2만원, 대리교환위탁은행 1만원

2) 6개월간의 지급교환고에 따라 별도참가료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맹은행	대리교환위탁은행
지급교환고	30억원까지	2만원	1만원
	50억원까지	4만원	2만원
	100억원까지	6만원	3만원
	300억원까지	8만원	4만원
	300억원초과	10만원	5만원

1980년 1월에는 서울어음교환소에서 기계처리를 실시하면서 객원인 우체국을 제외한 사원·가맹은행은 3개월마다 기본수수료 6만원과 교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어음금액(30%)과 지급어음장수(70%)에 의해 납부하였다. 1983년 7월부터는 객원인 서울중앙우체국에 대하여도 어음교환수수료를 분담

하도록 하였다.

1985년 8월부터는 야간교환은행의 기계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금액과 장수의 비율을 2대 8로 변경하고, 자행 점포간 및 야간교환은행간의 교환장수는 분담금에서 제외하였다. 1992년 1월에는 당원 본·지부간 분담금 산출기준이 상이하고 어음교환경비분담에 대한 결정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어음교환관련비용의 산정을 총회에서 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종전의 어음교환소별로 납부하던 것을 자행 본부를 통하여 당원의 본부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어음교환실적분담금 산출기준】

- 기계교환처리지역(서울)
  - 어음교환사업비용의 20%
    기간중의 어음교환을 통한 총지급어음금액(단, 야간교환에 참가하는 은행의 경우 총지급어음금액에서 자행점포간 지급어음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비례하여 분담
  - 어음교환사업비용의 80%
    기간중의 기어음 수취장수(단, 야간교환에 참가하는 은행의 경우 기어음 수취장수에서 야간교환을 통하여 수취한 기어음 및 자행점포간에 교환된 기어음을 차감한 장수)에 비례하여 분담
- 수교환처리지역(49개 지부)
  - 어음교환사업비용의 30%: 어음교환을 통한 총지급어음금액에 비례하여 분담
  - 어음교환사업비용의 70%: 어음교환을 통한 총지급어음장수에 비례하여 분담

한편, 어음교환 간접참가에 따라 어음교환소에 납부하는 교환수수료는 1967년 6월 참가료 명목으로 매 6개월간의 지급어음금액에 따라 1~5만원을 납부하였고, 1980년 1월에 매 3개월마다 기본수수료 6만원을 내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1992년 1월부터는 위탁은행이 수탁은행에 위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폐지하였다.

대리교환 위탁은행의 교환실적은 수탁은행의 교환실적에 포함되어 수탁은행에서 어음교환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은행에서는 어음교환비용 분담기준을 참고하여 수탁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수수료는 1967년 6월에 신설되었으며 위·수탁은행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후 1974년 12월 업무

의 신속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1980년 1월에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제도가 폐지되어 수탁은행과의 상호합의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4. 어음교환 대상어음

어음교환 대상어음은 어음교환을 통하여 결제가 가능한 어음, 수표 및 제증서를 말한다. 1910년 어음교환소 설립당시 교환대상어음에는 수표, 송금환, 환어음, 약속어음, 사불명령(仕拂命令), 우편환증서, 공사채와 이표 및 기타 잡증권이 있었다. 그러나 1925년의 통계를 보면 인천·평양어음교환소에는 약속어음 교환량이 없고, 인천·부산·평양·대구어음교환소에는 공사채 및 이표의 교환량이 없었다.

1964년 1월에는 은행감독원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던 수표(당좌, 자기앞,

〈표4-1-16〉 어음교환소별 교환어음종류별 교환량(1925년) (단위: 장, 천원, %)

구 분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원산	대구	군산	목포	전국	구성비
수 표	장수	763,996	104,283	245,302	135,530	59,765	80,372	59,698	35,131	1,484,077	70.2
	금액	268,664	80,095	123,869	37,948	14,455	27,559	34,226	17,801	604,617	62.0
송 금 환	장수	31,475	7,143	56,295	4,174	2,651	3,172	3,131	1,622	109,663	5.2
	금액	46,000	4,296	35,511	1,824	571	1,437	2,493	645	92,777	9.5
약속어음	장수	57,050	-	2,875	-	8,858	123	7,177	2,662	78,745	3.7
	금액	29,632	-	2,415	-	3,354	75	7,750	1,104	44,331	4.5
사불명령	장수	46,043	1,581	4,716	13,402	536	5,336	764	337	72,715	3.4
	금액	56,149	830	4,121	4,688	223	1,447	219	23	67,700	6.9
우 편 환	장수	207,053	9,140	66,491	25,370	4,942	13,832	2,768	-	329,596	15.6
	금액	68,190	694	3,700	1,182	492	848	214	-	75,320	7.7
채권이표	장수	1,015	-	-	-	28	-	125	6	1,174	0.1
	금액	139	-	-	-	1	-	3	-	144	0.1
잡 증 권	장수	21,084	1,129	11,101	3,322	383	200	1,310	545	39,074	1.8
	금액	52,906	3,761	22,484	4,969	467	56	4,457	1,221	90,321	9.3
합 계	장수	1,127,716	123,276	386,780	181,798	77,163	103,035	74,973	40,303	2,115,044	100.0
	금액	521,680	89,677	192,100	50,611	19,562	31,423	49,362	20,794	975,209	100.0

자료: 「조선총독부통계연보」 p168

송금수표)의 규격을 통일하여 어음교환소규약에 반영하였으며, 1970년 10월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던 어음양식을 신용거래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양식으로 통일하면서 약속어음, 환어음규격을 규약에 명시하였다. 1977년 4월에는 개인수표의 일반확대를 목적으로 한 가계수표가 신설되었으며 1986년 3월에는 원화여행자수표가, 1993년 11월에는 보증가계수표가 신설되었다. 또한 어음의 규격 및 색채는 위·변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하도록 하였다.

〈표4-1-17〉 어음·수표제도의 변천내역

구 분			실시일	비 고
어음	약속어음		1905. 9	• 약속수형조례 시행부터
	환어음		1906.11	• 수형조례 시행부터
수표	당좌수표		1906.11	
	송금수표		1906.11	
	국고수표		1906.11	
	자기앞수표	일 반	1956. 3	• 일제시대에는 수표에 지급보증제도 시행
		10만원권	1970. 1	
		30만원권	1981. 7	
		50만원권	1981. 7	
		100만원권	1981. 7	
	가계수표		1977. 4	• 가계수표제도 시행
	원화 여행자수표		1986. 3	• 원화여행자수표제도 시행
	보증가계수표		1993.11	• 보증가계수표제도 시행

그리고 어음, 수표 이외의 제증서는 그동안 은행간 자금결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관행적으로 교환에 회부하다가 기계처리가 실시되면서 1980년 1월에는 그 증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교환회부가 가능한 제증서의 종류(1995년말 현재)】

1. 일반거래고객과 관련된 증서 (6개)
   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정기예금이자청구서, 정기예금증서(만기도래분), 국·공·회사채권 및 이표, 우편환증서(대체수표, 대체지급증서 포함)

2. 은행간 자금결제에 관련된 영수증 (19개)
   환대전청구서, 콜자금상환영수증, 시공금수납금영수증, 국고자금영수증, 정사과부족금영수증, 국민투자기금발행영수증,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영수증, 차입담보이자 어음기일도래분영수증, 환매기일도래분영수증, 전국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저축추진중앙위원회·한국금융연수원·한국금융연구원발행영수증, 산업합리화자금관련영수증, 감정수수료영수증, 신용조사수수료영수증, 내국신용장결제대전영수증, 주택금융신용보증관련보증료영수증, 콜자금결제통지서, 은행신용카드차액결제대금영수증, 현송금영수증, 국민연금징수금영수증
3. 기타 당사은행이 사전 합의한 증서

5. 어음교환절차

가. 일반원칙

교환원은 어음교환소에서 참가은행을 대리하여 어음교환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교환원이 처리한 어음교환관련행위는 참가은행의 행위이다. 교환원에 대한 규정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있었는데 당시에는 수교환에 의하여 어음교환을 수행하였으므로 많은 교환원이 필요하여 모든 교환원을 교환소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1980년 1월 기계처리실시로 교환소에 출입하는 교환원이 줄어듬에 따라 주임교환원만을 신고하도록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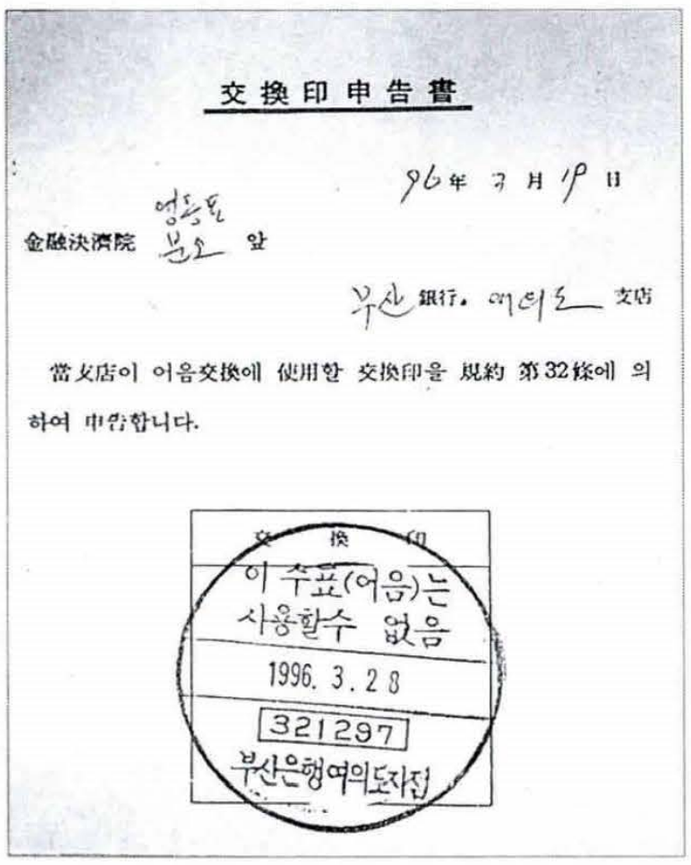
交換印申告書

96年 3月 19日

金融決濟院 영등포 분소 앞

부산 銀行 에덴 支店

當支店이 어음交換에 使用할 交換印을 規約 第32條에 의하여 申告합니다.

交換印
이 주표(어음)는 사용할수 없음
1996. 3. 28
321297
부산은행여의도지점

교환인 신고서

교환인은 제시·지급은행간의 교환어음에 대한 영수배서의 효력이 있으며 교환인이 날인된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교환을 통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환과정이나 지급처리 종료후 분실된 어음의 위·변조유통에 의한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다. 경성수형교환소 설립시에는 교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으나, 1959년 4월에는 교환인에 나타내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년·월·일, 은행명, 교환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교환인이 찍혀있는 어음은 어음교환을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1980년 1월에는 교환인의 규격을 규약에 명시하였고 1985년 8월부터는 마이크로필름 촬영기가 등장하여 교환인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8월에는 부도업무처리시 지급은행이 제시은행에 신속히 부도통보를 할 수 있도록 교환인에 전화번호를 추가하였다. 교환인은 어음의 뒷면에

약품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특종의 잉크를 사용하여 찍고 있다.

특정횡선은 수표에 있던 횡선제도를 교환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특정횡선이 표시된 어음이 분실되어 은행이 아닌 자가 지급제시하면 수납 및 추심의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반드시 횡선내 표시된 제시은행에만 어음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정횡선은 어음표면에 표시하며 은행명, 점포명, 창구번호가 표시된다. 1963년 12월 규약부록인 『교환절차의 실제와 주의사항』을 보면 참가은행은 모든 제시어음에 특정횡선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1월부터 특정횡선의 규격, 특정횡선내 표시사항, 표시색채등 특정횡선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1982년 12월부터는 특정횡선의 누락시 제시은행에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나. 어음교환절차

어음교환방식은 서울어음교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계처리방식과 부산을 비롯한 지방어음교환소에서 실시하는 수교환처리방식이 있다. 서울어음교환소는 1980년 1월 기계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어음교환방식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고 1985년 8월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음교환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의 참가은행에도 자동판독분류기(Reader/Sorter)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어음을 분산하여 기계처리하게 되었다.

기계교환처리는 제시은행의 처리절차, 교환소의 처리 및 지급은행의 처리절차순으로 구분된다. 제시은행 영업점은 수납한 어음을 자기앞수표와 기타어음으로 구분하고 기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기계교환어음과 수교환어음으로 구분한다.

제시은행은 기어음실물 및 계수보고제표를 교환소 또는 파출분소에 평상일은 교환일의 전영업일 영업종료후 2시간 30분이내(토요일은 3시간이내)에 제출하고, 수어음봉투에 봉함된 수어음실물은 교환소내에 설치된 금고실의 자행수어음용투입함에 상호교환시간까지 투입한다.

어음교환소는 참가은행으로부터 접수한 기어음 실물 및 계수보고제표 하단의 MICR인자내용을 자동판독분류기(R/S)로 판독하여 기어음실물은 지급은행별로 분류하고 참가은행의 교환차액을 산출하여 기계처리가 끝난 실물과 교환차액 관련자료를 지급은행의 투입함에 투입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참가은행은 어음교환소에서 처리된 자행 지급어음실물의 수취를 위하여 교환일 영업개시 2시간 30분(토요일은 3시간 30분)전까지 어음교환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참가은행은 지급어음을 수취할 때 교환소에서 교부하는 제보고서가 있는지 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장수와 실제 어음실물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취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앞으로 참가은행의 교환차액을 결제 청구한다.

수교환처리는 제시은행의 처리절차, 지급은행의 처리절차 및 교환소의 처리

서울지역의 기계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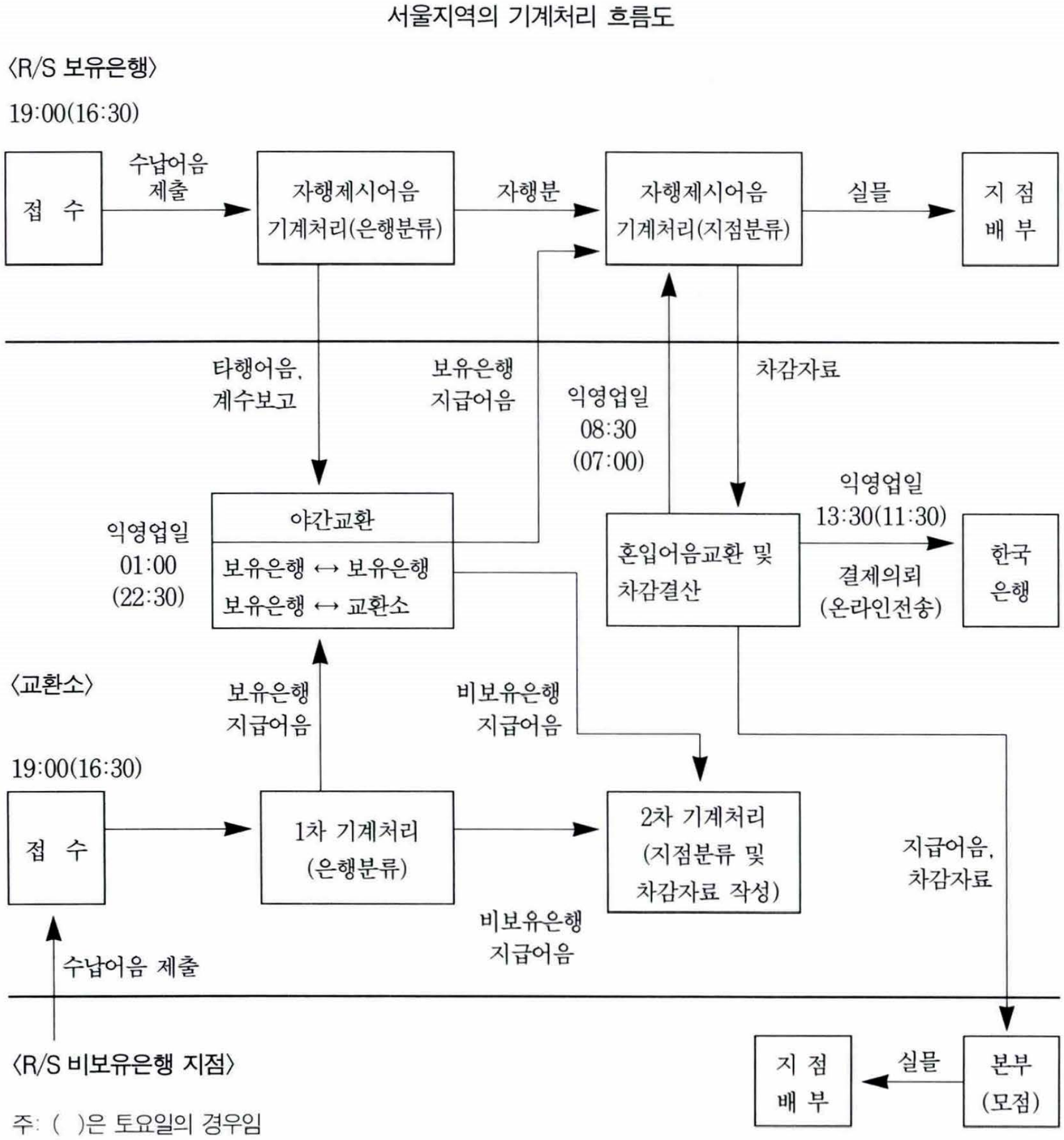

주: ( )은 토요일의 경우임

순으로 구분된다. 제시은행 영업점은 수납한 어음을 지급은행 및 어음종류별(자기앞수표와 기타어음)로 분류하고 각각 장표를 붙여 소재지역 모점에 전달한다.

참가은행 모점은 수납 익영업일인 교환일 아침에 어음교환소에서 서로 교환한다. 지급은행은 실물과 장표의 계수가 맞으면 교환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어음교환소에 제출한다. 어음교환소는 참가은행이 제출한 교환어음차감표를 확인하여 교환어음총결산표를 작성한 후 한국은행 앞으로 참가은행의 교환차액을 결제 청구한다.

〈표4-1-18〉 어음교환소별 어음교환 개시시각(1995년말 현재)

교환소	평상일	토요일	교환소	평상일	토요일	교환소	평상일	토요일	교환소	평상일	토요일
부 산	09:30	07:00	춘 천	10:00	09:30	서 산	10:00	09:00	구 미	11:00	09:30
대 구	09:30	08:00	강 릉	09:00	09:00	전 주	09:30	07:50	김 천	10:30	09:30
인 천	10:00	07:30	원 주	10:00	09:30	군 산	11:00	09:00	영 주	10:00	09:30
광 주	09:30	08:30	동 해	10:00	09:00	익 산	09:30	08:30	창 원	10:00	09:00
대 전	09:30	08:00	속 초	11:00	09:00	정 읍	10:00	09:00	통 영	10:00	09:15
수 원	09:30	07:30	태 백	10:30	09:40	남 원	09:30	09:00	을 산	09:40	09:10
성 남	09:30	07:30	청 주	09:40	09:10	목 포	10:30	09:30	진 주	10:00	09:00
안 양	09:30	07:30	충 주	09:30	09:00	여 수	10:30	09:20	김 해	10:00	08:30
의정부	09:30	07:30	제 천	09:50	09:50	순 천	10:30	09:50	양 산	10:00	08:30
부 천	09:30	07:20	천 안	09:40	08:00	해 남	11:00	09:30	제 주	10:00	09:30
평 택	09:30	07:30	홍 성	10:00	08:30	포 항	10:00	09:30			
안 산	09:30	07:30	공 주	09:30	09:20	경 주	10:30	09:00			
이 천	09:30	08:30	논 산	10:30	09:00	안 동	10:30	10:00			

6. 상호교환제도

상호교환이란 몇개의 교환소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동일권역에 있는 어음교환소가 특정 어음교환소에 모여 상대지역에서 지급할 어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교환은 1977년 3월 2일부터 서울과 인천, 수원어음교환소간에 최초로 실시되었고 지역간 경제의존도가 커지면서 인근 어음교환소로 계속 늘어나 현

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강릉 등 6개권역에서 42개 어음교환소가 상호교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교환의 무분별한 확대실시를 막기 위하여 1992년 10년 15일에는 상호교환실시지침을 제정하여 신청지역의 상호교환어음비율, 현송 소요시간 및 거리 등을 감안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지침의 제정이후로는 1994년에 김천, 1995년에 해남이 상호교환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표4-1-19〉 전국 어음교환소의 상호교환 실시연혁

권 역	교환소	실시일	권 역	교환소	실시일	권 역	교환소	실시일
서 울	서 울	1977. 3. 2	서 울	천 안	1986.11.10	대 구	구 미	1982.11. 1
	인 천	1977. 3. 2		홍 성	1989. 6. 1		김 천	1994.10. 4
	수 원	1977. 3. 2		서 산	1995.12.18	광 주	광 주	1983. 3. 2
	안 양	1981. 1. 5	(대 전)	논 산	1991.10.15		목 포	1983. 3. 2
	성 남	1981. 1.10	부 산	부 산	1984. 5.10		여 수	1988. 1.11
	의정부	1981.12. 1		창 원	1985. 8. 2		순 천	1988. 1.11
	부 천	1981.12. 1		울 산	1984. 5.10	(목 포)	해 남	1995. 4.20
	평 택	1986.11. 3		진 주	1989.10. 4	전 주	전 주	1981. 3.16
	안 산	1990. 8.10		김 해	1994. 7.12		군 산	1981. 3.16
	이 천	1994. 7.16		양 산	1995.12.18		익 산	1981. 3.16
	춘 천	1985. 7. 2	대 구	대 구	1982.11. 1		정 읍	1987.12. 1
	원 주	1986.11.10		포 항	1985. 8. 1	강 릉	강 릉	1986.11. 1
	청 주	1985. 5. 7		경 주	1985. 8. 1		동 해	1986.11. 1
	충 주	1986.11.10					속 초	1986.11. 1
	대 전	1985. 7. 2						

주: 1) 실시일은 최초 상호교환실시일
2) ( )은 해당어음교환소와만 상호교환을 하는 경우임

서울권역의 상호교환은 교환일 오전 수어음 교환시간(평상일은 영업개시시각 1시간 30분후 토요일은 30분후)에 서울어음교환소에서 실시하였다.

1985년 8월 야간교환제도가 신설되면서 수교환제도가 폐지되었고 교환차액결제자료 작성을 위하여 교환일 전영업일 야간에 실시하였다(평상일은 교환일 전영업일 영업종료후 5시간 30분까지 토요일은 6시간까지). 다만, 서울 상호교환권역을 제외한 부산 등 상호교환은 각 권역의 특정어음교환소에서 교환일(수납 익영업일) 어음교환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1977년 실시이후 상호교환량은 연평균 30%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2년 7월부터 정액자기앞수표를 당지에서 교환하도록 개선하였고, 1994년 12월 1일부터는 일반자기앞수표도 당지에서 교환하게 됨에 따라 상호교환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표4-1-20〉 상호교환량(전국)

(단위: 천장, 십억원, %)

구 분	상호교환량		전년대비 증가율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86	42,183	24,822	-	-
1987	53,414	32,779	26.6	32.1
1988	71,757	47,837	34.3	45.9
1989	88,643	62,772	23.5	31.2
1990	115,049	88,385	29.8	40.8
1991	148,754	115,014	29.3	30.1
1992	113,378	103,943	-23.8	-9.6
1993	16,341	80,882	-85.6	-22.2
1994	14,545	92,916	-11.0	14.9
1995	15,120	79,505	4.0	-14.4

7. 야간교환제도

야간교환은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중 비교적 교환장수가 많은 참가은행들이 자동판독분류기(R/S)를 보유하여 당일 수납한 어음을 기계처리하여 야간에 서로 교환하는 제도이다. 당원은 자체적으로 자동판독분류기를 보유하지 못한 비보유은행들이 수납한 어음을 처리하고 있다. 1985년 8월 야간교환제도 도입당시 야간교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환장수의 5% 이상인 은행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행 등 8개은행이 승인을 받아 참가하였다. 1989년 6월에는 야간교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교환의 참가승인기준을 1%로 완화하여 1995년말 현재 16개은행이 야간교환에 참가하고 있다. 야간교환시각은 평상일은 교환일의 전영업일 영업종료후 7시간 이내,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이내이었으나, 1986년 12월 야간교환은행의 처리시간이 촉박하여 평상일은 교환일의 전영업일 영업종료후 8시간 30분, 토요일은 9시간 이내로 조정하였다.

야간교환장면

야간교환 참가은행은 자행 점포가 수납한 어음을 제출받아 자동판독분류기로 지급은행별로 분류한다. 야간교환은행은 야간교환시각에 교환소에 모여서 서로 교환하고, 자동판독분류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나머지 은행이 지급할 어음과 제보고서는 당원에 제출한다.

〈표4-1-21〉 야간교환은행의 참가연혁 및 교환량(일평균)

(단위: 천장, %)

은행명	참가일시	참가 직전년도(서울)			은행명	참가일시	참가 직전년도(서울)		
		총교환량	자행 교환량	점유율			총교환량	자행 교환량	점유율
기업은행	1985. 8	1,126	107	9.5	신한은행	1989. 7	2,020	63	3.1
국민은행	1985. 8	1,126	167	14.8	외환은행	1990. 2	2,482	105	4.2
조흥은행	1985. 8	1,126	113	10.0	농협중앙회	1991. 5	3,006	233	7.8
한일은행	1985. 8	1,126	124	11.0	동화은행	1992. 5	3,668	39	1.1
주택은행	1985.10	1,126	57	5.1	한미은행	1992. 6	3,668	58	1.6
상업은행	1985.10	1,126	131	11.6	서울중앙우체국	1995. 1	3,008	53	1.8
제일은행	1985.10	1,126	128	11.4	평화은행	1995. 6	3,008	49	1.6
서울은행	1986. 3	1,198	114	9.5	수협중앙회	1995. 7	3,008	32	1.0

주: 어음교환량은 제시장수+지급장수

8. 어음교환차액결제

어음교환의 결과로 발생한 참가은행의 교환차액(총제시금액에서 총지급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에 있는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정(우체국은 국고예탁금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환어음의 차액결제는 경성수형교환소 설립시부터 중앙은행을 통하여 결제되었으나 1964년 1월부터는 현금으로도 교환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1980년 1월부터는 다시 한국은행내에 있는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어음교환소가 중앙은행에 당좌계정을 보유하여, 교환승부(勝負)에서 진 은행이 그 금액만큼을 어음교환소계정에 입금하면 어음교환소에서는 입금된 전체금액을 출금하여 이긴 은행에게 이긴 금액만큼을 그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교환차액을 결제하였다. 그후 1976년 4월에는 중앙은행에 있는 어음교환소계정을 없애고 직접 참가은행간에 대차를 결제

하는 대차결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89년 1월에는 당원과 한국은행간에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교환차액결제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되었다.

또한 어음교환의 차액결제와는 별도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는 동수표의 발행은행과 수납은행과의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1983년 1월부터 자기앞수표에 대한 자급조정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자기앞수표를 수납한 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자기앞수표의 해당금액만큼을 받아 두었다가 다음 영업일에 되돌려 줌으로써 자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이는 자기앞수표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각 참가은행간에 발행량과 수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자금운용상에 손실이 생기는 은행이 나타남에 따라 도입되었다.

도입초기에는 자기앞수표량이 미미한 한국은행과 우체국을 제외하고 실시하였으나 우체국의 자기앞수표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은행의 손실이 커지게 되어 1994년 10월부터는 우체국도 참가하였다. 또한 자금조정의 대상어음은 자기앞수표외에도 자기앞수표와 같이 자금조정이 필요한 원화여행자수표, 콜자금결제통지서, 현송금영수증 및 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 등이 있다.

어음교환소는 한국은행에 결제일 13:30(토요일은 11:30)까지 차액결제청구를 하며, 참가은행은 차액결제시각인 결제일 15:00(토요일은 13:00)까지 현금, 한국은행앞 수표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의 계좌이체방법으로 결제부족자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만일 결제시각을 경과하여 영업종료시까지 부족자금의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은행은 부도은행이 되고 그 은행이 지급할 어음을 제외하고 다시 교환어음 차액결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내국신용장 어음교환

1. 개요

내국신용장이란 해외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국내의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또는 수출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수출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견질(見質)로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 거래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물품공급자에게 대금지급의 보증용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제도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내국신용장어음)을 내국신용장어음교환실에서 서로 교환하고, 교환차액에 대하여는 자금을 받아야 할 은행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반어음과 함께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출용원자재 공급업자가 대금을 회수하는데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환어음의 추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내국신용장어음의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도모하는데 있다. 내국신용장은 금액표시에 따라 원화표시내국신용장과 외화표시내국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추심방법에 따라 추심전 매입어음과 단순한 추심어음으로 구분한다.

2. 제도의 도입 및 발전

1967년 10월에는 수출용원자재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수출용완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초로 내국신용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교환규약은 없었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내국신용장교환이 실시되면서 1977년 6월 3일 전국은행협회 이사회 결의로 내국신용장교환실규약이 제정되었다.

1977년 7월 1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마산 어음교환소에서 실시되었고 이후 지부 신설과 상호교환지역의 확충에 따라 인천, 광주, 마산이 제외되고 구미, 창원, 전주, 울산이 추가되어 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8개 어음교환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81년 11월 20일에는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지급거절일과 영수증교부일이 도착보고서

교부일로부터 제3영업일에서 제2영업일로, 제4영업일에서 제3영업일로 하루씩 단축되었으며, 1984년 5월에 내국신용장교환실규약이 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참가은행은 어음교환참가은행 36개은행중 한국은행, 장기신용은행, 우체국, CITI은행, CMB를 제외한 31개은행과 일본은행인 미쯔비시(三菱)은행, 후지(富士)은행을 합쳐서 총 33개은행이다.

3. 처리절차

국내수출업자가 거래은행에 내국신용장개설을 의뢰하면, 개설은행은 국내공급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한다. 국내공급업자는 내국신용장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추심)을 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자행 본점에 추심의뢰하여 내국신용장어음교환실에서 개설은행에 교부한다. 개설은행은 내국신용장어음 도착보고서를 추심의뢰지점에 교부하고, 매입은행은 교환일로부터 제2영업일내에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없으면 내국신용장결제대전영수증을 어음교환소에 교환회부하여 대금결제를 한다.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은 내국신용장어음 도착보고서 교부일로부터 제3영업

내국신용장 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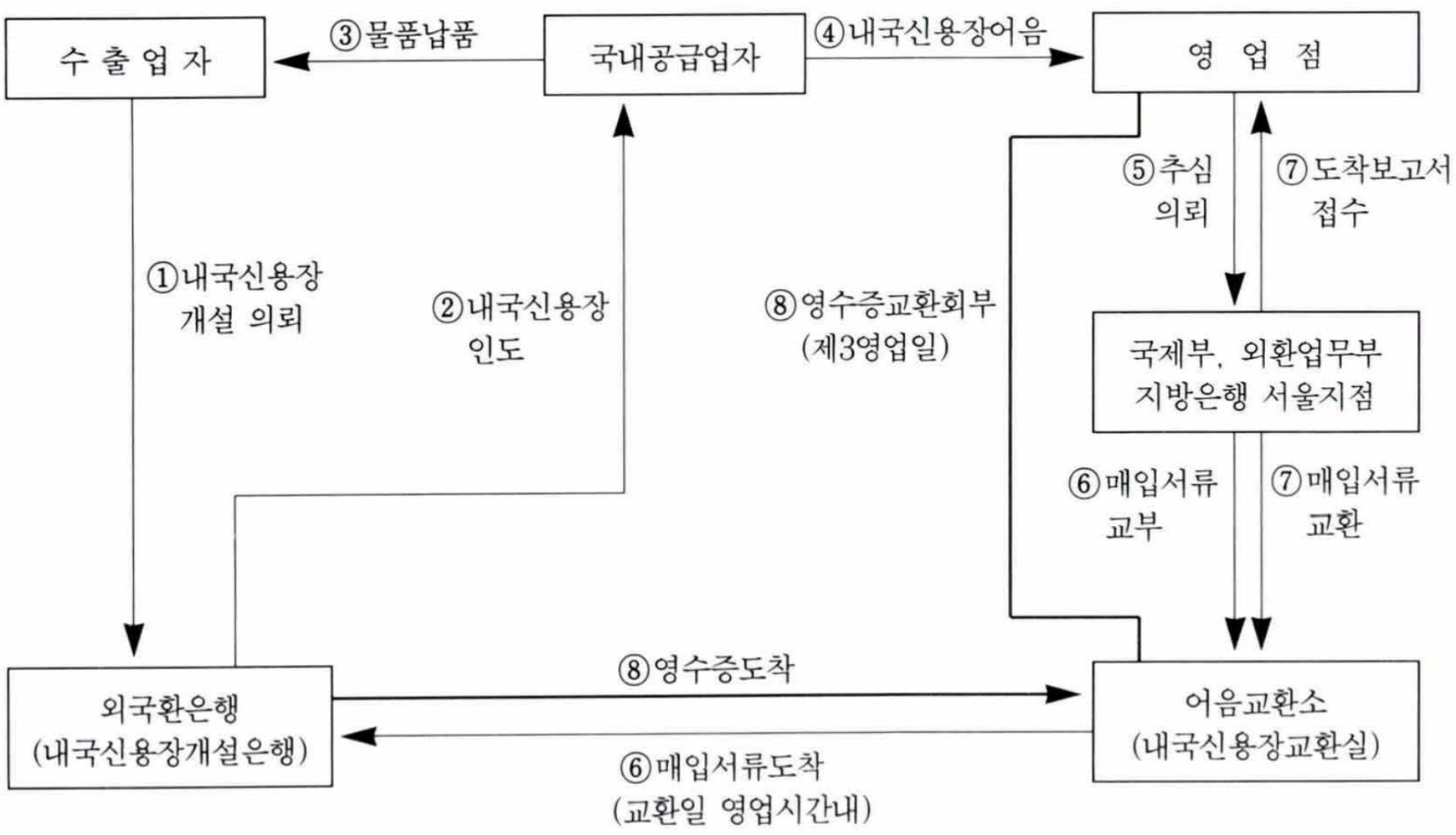

일에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내국신용장결제대전영수증을 교환에 회부하여 차액결제하고,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거주자계정에서 출금하여 내국신용장어음 도착보고서 교부일로부터 제3영업일이내에 외환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추심의뢰계정을 통해 수혜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전국 내국신용장 교환량은 1977년의 5만장에서 수출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1995년말에는 장수 1,120천장, 교환금액 28,396백만불에 이르렀다.

〈표4-1-22〉 내국신용장 교환실적 (단위: 천장, 백만US$)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전 국	1,095	24,993	1,098	23,804	1,122	24,430	1,145	27,344	1,120	28,396
서 울	953	22,032	942	21,292	974	19,905	977	22,394	937	21,982

제4절 부도관리

1. 개요

어음·수표 및 제증서의 부도는 어음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어음중에서 발행인의 지급자금이 부족하거나, 어음·수표법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도관리는 어음발행인(채무자)의 부도내용을 각 어음교환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1910년 경성수형교환소 설립시부터 실시하였다. 어음교환소의 운영목적은 처음에는 어음의 원활한 교환결제에 한정되었으나, 어음·수표의 원활한 유통과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정지처분제도의 운영으로 확대되었다.

부도관리업무는 부도자원장정리, 참가은행앞 부도정보통지 및 부도통계 등의 제반업무로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하였으나 1990년(지부는 1992년)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함으로써 부도관리를 체계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부도어음처리

가. 부도어음신고서

부도어음신고서란 은행거래고객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될 경우 참가은행이 부도어음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어음교환소에 신고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당원은 각 참가은행이 제출하는 부도어음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부도자를 제재하고 부도통계를 작성한다.

1910년부터 해방전까지는 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은행이 예금부족과 무거래 부도에 대하여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방후에는 부도와 관련된 양쪽은행에서 모든 부도에 대하여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부도어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부도어음종류, 금액, 부도사유, 지급일과 발행인(지급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부도자의 제재를 위하여 작성되어 유효한 통계자료로 사용되었다. 1986년 1월에는 부도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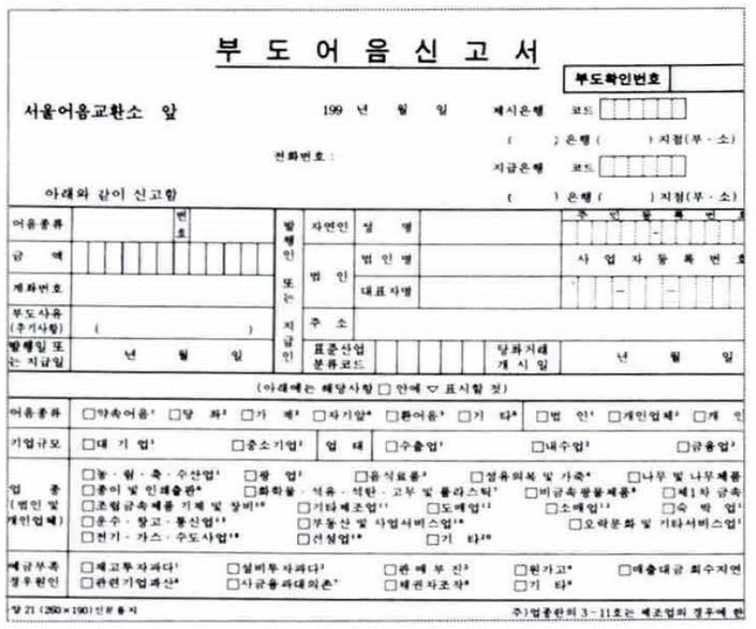
부 도 어 음 신 고 서

부도확인번호

서울어음교환소 앞

199 년 월 일 제시은행 코드

( ) 은행 ( ) 지점(부·소)

전화번호 :

지급은행 코드

아래와 같이 신고함 ( ) 은행 ( ) 지점(부·소)

어음종류	번호	발행인 또는 지급인	자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 액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대표자명	
부도사유 (주기사항)	( )		주 소		
발행일 또는 지급일	년 월 일		표준산업분류코드	당좌거래 개시일	년 월 일

(아래에는 해당사항 □ 안에 ▽ 표시할 것)

어음종류	□약속어음 □당 좌 □가 계 □자기앞 □환어음 □기 타	□법 인 □개인업체 □개 인	
기업규모	□대 기 업 □중소기업	업 태	□수출업 □내수업 □금융업
업 종 (법인 및 개인업체)	□농·임·축·수산업 □광 업 □음식료품 □섬유의복 및 가죽 □나무 및 나무제품 □종이 및 인쇄출판 □화학물·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기타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숙 박 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기 타	
예금부족 경우원인	□제고투자과다 □설비투자과다 □판 매 부 진 □원가고 □매출대금 회수지연 □관련기업과산 □사금융과대의존 □채권자조작 □기 타		

규격 21 (260×190) 인쇄용지 주) 업종란의 3~11호는 제조업의 경우에 한

부도어음신고서

〈표4-1-23〉 서울시 업종별 부도수형표(1949년 2월) (단위: 명, 장, 천원, %)

구 분	인 원	수 표		약속어음		환어음		합 계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기계기구공업	27	30	1,489	1	11	-	-	31	1,500
화 학 공 업	32	39	3,435	-	-	1	67	40	3,502
기 타 공 업	9	9	220	2	500	-	-	11	720
광 업	6	16	573	-	-	-	-	16	573
농림·수산업	5	5	318	-	-	-	-	5	318
토목건축업	24	31	912	-	-	-	-	31	912
무 역 업	67	86	4,878	2	936	-	-	88	5,814
운 수 업	3	5	109	-	-	-	-	5	109
출판통신업	14	14	951	1	100	-	-	15	1,051
공 공 단 체	15	32	874	-	-	-	-	32	874
유락·오락업	-	-	-	-	-	-	-	-	-
일 반 상 업	113	138	7,012	3	1,400	1	120	142	8,532
일 반 개 인	-	-	-	-	-	-	-	-	-
기 타	294	343	27,774	15	4,672	8	1,818	366	34,264
합 계	609	748	48,545	24	7,619	10	2,005	782	58,169

규모, 업태, 업종 및 예금부족의 원인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중 판매부진을 원인으로 한 부도가 12.8%, 거래정지처분이 12.5%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4년 9월에는 유선과 FAX에 의한 부도통보 및 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급은행은 제시은행이 부여한 부도확인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어음교환소는 지급은행이 보고한 부도어음중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도어음에 한하여 부도사유별, 발행인별로 구분하여 부도발생 익영업일에 전 참가은행앞으로 부도통지를 한다. 어음교환소의 부도통지는 1910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부도통지의 대상이 되는 부도사유는 처음부터 거래정지처분이 될 신용과 관련된 부도에 한정하였고 1994년 1월에 규약에 명시하였다. 부도

〈표4-1-24〉 예금부족 원인별 부도 및 거래정지처분(전국)

(단위: 부도-장, 정지-명,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재고투자과다	부 도	209	351	240	163	0.3	162	0.2
	정 지	30	64	34	22	0.2	21	0.2
설비투자과다	부 도	915	1,155	1,081	1,018	1.6	1,142	1.4
	정 지	129	199	192	156	1.4	136	1.0
판 매 부 진	부 도	7,641	13,589	10,051	9,882	15.6	10,440	12.8
	정 지	1,083	2,201	1,800	1,652	14.9	1,752	12.5
원 가 고	부 도	179	216	131	156	0.2	104	0.1
	정 지	14	40	20	12	0.1	10	0.1
매출대금회수 지연	부 도	5,569	9,489	7,676	8,615	13.6	11,306	13.8
	정 지	768	1,613	1,256	1,287	11.6	1,684	12.0
관련기업파산	부 도	297	381	277	400	0.6	538	0.7
	정 지	58	112	72	86	0.8	113	0.8
사금융과대의존	부 도	202	242	186	139	0.2	159	0.2
	정 지	21	51	33	20	0.2	38	0.3
채 권 자 조 작	부 도	42	31	14	13	-	19	-
	정 지	2	4	3	3	-	5	-
기 타	부 도	25,787	33,158	31,810	43,136	67.9	57,820	70.8
	정 지	3,456	5,193	5,569	7,882	70.9	10,218	73.1
계	부 도	40,841	58,612	51,466	63,522	100.0	81,690	100.0
	정 지	5,561	9,477	8,979	11,120	100.0	13,977	100.0

통지대상 부도사유는 예금부족, 무거래, 사고신고서 접수, 위·변조,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 송달,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이다.

나.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의 취소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의 취소는 참가은행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부도로 발행인이 부당한 금융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전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당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발행인의 금융거래에 큰 피해가 있었다. 따라서, 1993년 8월에는 참가은행의 착오에 의한 부도와 1994년 12월에는 참가은행 또는 참가은행과 당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부도시에도 취소신청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부도신고의 취소는 착오은행이 어음교환소에 신고한 부도사실에 대하여 부도된 날의 다음 영업일 영업개시후 1시간 30분까지 점포장의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소신청하면 어음교환부장(지부장)이 이를 확인하여 부도사실을 취소하고 참가은행에 통지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부도통지의 취소는 착오은행이 거래정지처분일의 영업개시후 1시간 30분까지 점포장의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소신청하면 어음교환부장(지부장)이 확인하여 이미 통지된 부도사실을 취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참가은행이 거래정지처분일의 영업개시후 1시간 30분을 경과하여 부도통지를 취소신청하면 관계참가은행의 검사부장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부도통지가 취소된다.

1993년 9월부터 1995년말까지 서울지역에서의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 취소는 200건이었고, 참가은행에서 업무착오사실을 조기에 확인함에 따라 대부분

〈표4-1-25〉 부도신고 및 통지취소건수(서울) (단위: 건)

구 분		1993. 9~12	1994	1995
취 소	신고취소	10(2.5)	6(0.5)	60(5.0)
	통지취소	38(9.5)	39(3.3)	47(3.9)
	합 계	48(12.0)	45(3.8)	107(8.9)

주: ( )은 월평균임

부도익익영업일에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부도반환사유

부도반환사유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며 어음·수표법, 기타 관계법률 및 거래약관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1965년 10월에는 부도처리의 통일성과 명료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음·수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부도반환사유를 8가지(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변조, 제시기일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상이, 지급지상위)로 한정하였다. 이후 사회경제의 발전과 다양화되어 가는 거래형태를 수용하고 어음유통상의 악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1966년 4월에는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을 추가하였고, 어음·수표 이외의 제증서에 대하여도 어음·수표의 부도반환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1977년 5월에는 『가계수표제도』가 시행되면서 가계수표 장당최고발행한도초과가 추가되었고, 1980년 1월에는 『안내서미착』을 추가하여 현재는 11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1980년 1월에는 지급자금이 부족하거나 당좌거래사실이 없는 발행인이 고의로 형식불비된 어음이나 신고된 인감서명과 다른 인감서명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부도제재를 받지 않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와 형식불비 또는 인감서명 상이가 경합하면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부도처리하였다. 또한, 1985년 8월에는 가계수표가 장당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되

〈표4-1-26〉 사유별 부도현황(전국)

(단위: 장, 백만원, %)

구 분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신고서 접수	위·변조	기타	합계
1991	장수	65,894	214,667	1,110	156,431	5,868	16,987	460,957
	금액	553,858	2,242,589	17,146	475,401	27,539	424,004	3,740,537
1995	장수	165,171 (14.5)	716,527 (62.9)	1,357 (0.1)	231,221 (20.3)	4,306 (0.4)	19,856 (1.7)	1,138,438 (100.0)
	금액	1,841,149 (14.2)	9,764,408 (75.2)	14,956 (0.1)	1,008,042 (7.8)	72,073 (0.6)	284,231 (2.2)	12,984,858 (100.0)
연평균 증감율	장수	29.2	39.2	6.0	11.9	-7.0	6.8	28.2
	금액	37.7	50.1	2.7	22.4	29.4	-7.2	40.3

주: ( )은 부도사유별 점유율

고 지급자금이 없으면 예금부족으로 처리하여 발행인의 부도제재를 강화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수표가 사고신고서접수로 부도되면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허위로 사고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지급자금이 없고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고신고접수는 예금부족으로 처리하고 사고신고서 접수를 주기하도록 하였다. 1995년 전체 부도량중 무거래 부도는 장수 62.9%, 금액 75.2%를 차지하고 있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증가율도 가장 높아 이미 거래정지된 자가 거래정지되기 전에 발행한 어음의 부도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라. 부도어음의 반환

부도어음의 반환은 발행인과 지급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교환을 통하여 청구된 어음을 지급거절하고 소지인에게 부도된 어음을 돌려주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은행에 반환하는 절차이다.

1910년에는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을 교환당일 영업종료시간인 오후 3시까지 어음을 제시한 은행에 직접 반환하였다. 그후 1970년 3월에는 부도반환시각을 영업시간종료 10분전까지로 하였고, 1981년 8월에는 토요일은 영업시간 종료후 2시간까지 연장하여 어음교환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1980년 1월부터 약속 및 환어음은 당일 영업시간까지, 국공채 및 이표는 익영업일 정오까지, 우편환증서는 익일 영업시간까지로 어음종류에 따라 부도반환시각을 구분하였으나, 1994년 1월부터는 어음종류별 구분없이 평상일은 영업시간까지, 토요일은 영업종료후 2시간까지로 통일하였다.

한편, 1984년 1월에는 고객이 입금한 어음의 자금화가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음(미결제어음)에 대하여는 실물을 부도반환하기 전에 미리 제시은행에 통보(토요일을 제외한 평상일에 한하여 영업종료 1시간전까지)하는 미결제어음통보제도가 신설되었다. 1987년 1월에는 토요일에도 영업시간종료 30분전까지 미결제어음통보를 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켰고, 1987년 3월에는 평상일의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을 영업시간종료 2시간전까지로 단축하여 교환당일에 대부분의 어음이 자금화되었다.

부도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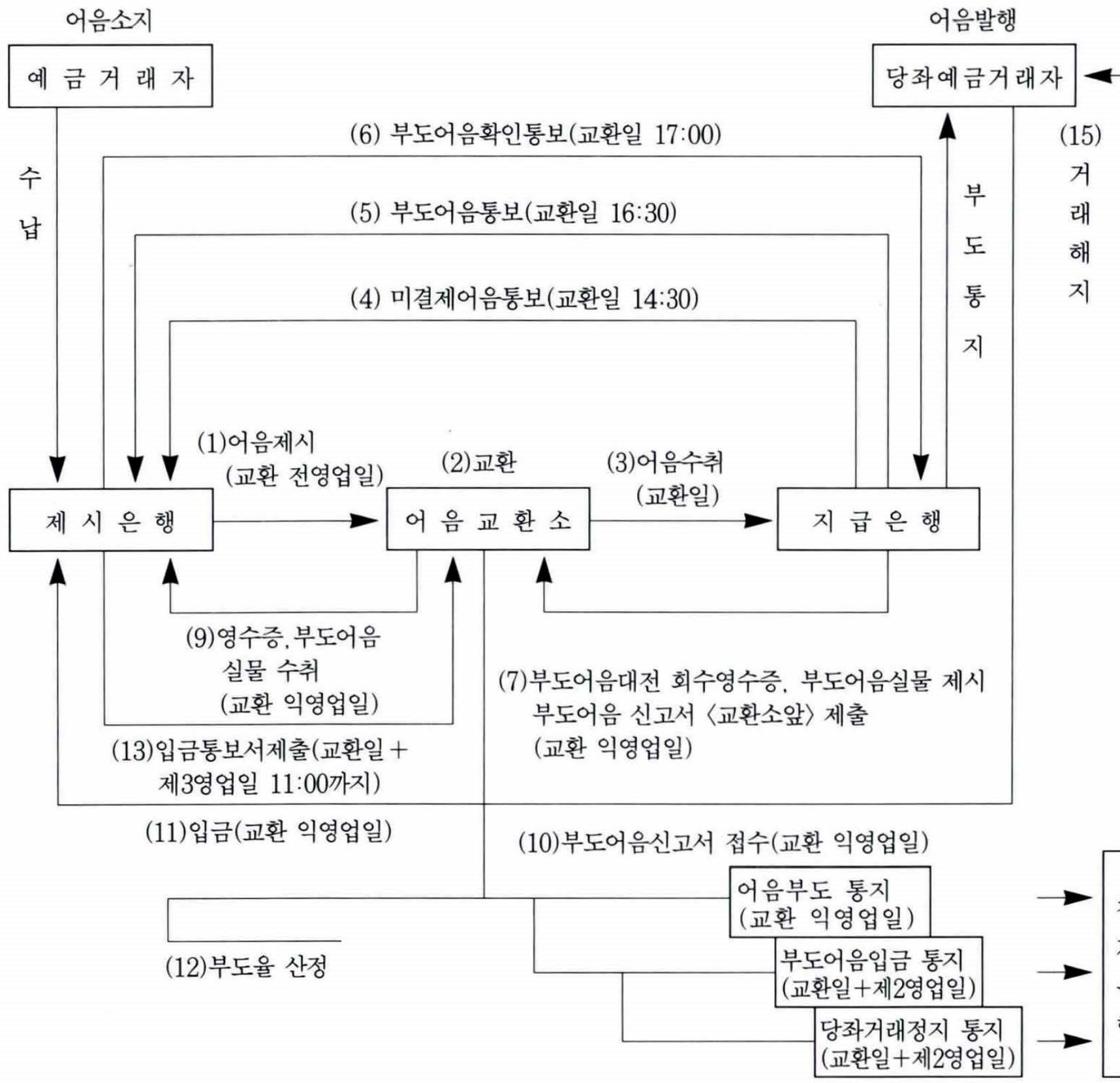

또한 1992년 7월 정액자기앞수표의 상호교환제도 및 교환처리방법이 당지교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지교환 모점의 빈번한 R/S기기 장애 등으로 상호교환 전지역의 미결제어음통보 및 부도반환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이용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종전에 상호교환권역에서 운영되던 연장제도를 각 어음교환소별로 연장하도록 변경하여 고객이 입금한 다음 날에 자금화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도량이 크게 증가하고, 도시교통난이 심화되어 부도일 영업시간내에 실물을 직접 반환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표4-1-27〉 어음교환소별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사례(1995년중) (단위: 회)

교환소명	기계장애	실물과다	계	교환소명	기계장애	실물과다	계
서 울	13	1	14	평 택	1	-	1
인 천	30	9	39	천 안	1	-	1
수 원	21	2	23	원 주	1	-	1
안 양	10	5	15	안 산	1	-	1
성 남	10	2	12	청 주	1	-	1
의정부	2	-	1	대 구	6	3	9
강 릉	1	1	2	부 산	13	3	16
대 전	2	3	5	창 원	6	1	7
군 산	2	-	2	울 산	-	1	1
광 주	5	2	7	김 해	1	-	1
목 포	1	3	4	제 주	-	1	1
여 수	2	1	3	합 계	130	39	169
순 천	-	1	1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9월부터는 어음교환소 설립이후 8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부도어음반환방법을 지급은행에서 부도당일 전화 및 FAX를 통하여 부도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부도어음실물은 부도익영업일 어음교환을 통하여 제시은행에 반환(역교환)하도록 변경하였다.

〈표4-1-28〉 일평균 부도어음장수의 증가추이(전국)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부도장수(장)	1,557	2,339	2,137	3,317	3,846
전년대비 증감율(%)	28.1	50.7	-8.0	55.2	15.9

마. 부도어음대전의 회수 및 입금

교환일에 교환한 어음은 은행간 교환차액결제를 통하여 지급은행계좌에서 제시은행계좌로 어음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지급은행은 어음교환에 의해 부도어음실물을 제시은행에 반환하고 해당어음 대금을 다시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도어음대전의 회수라 한다.

처음에는 실물을 직접 제시은행에 반환하면서 어음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1964년 1월에는 기존의 현금수수방식이 업무량증가에 따라 위험성이 커져 부도어음실물을 반환받은 은행(제시은행)이 "부도어음지급통지서"를 발행하여 교환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1980년 1월에는 그 명칭을 "반환어음지급통지서"로 바꾸었다. 그러나 1994년 9월부터는 지급은행이 부도어음대전회수영수증을 발행하여 부도어음실물과 함께 교환에 회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부도어음대전의 입금은 발행인이 부도된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내에 소지인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시켜주는 제도로 처음에는 제시은행이나 지급은행 어느 한 곳에 할 수 있었으나, 지급은행에 입금하면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지급제시(재교환)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1964년 1월부터는 제시은행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부도어음대전을 받은 제시은행은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금통보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 횟수 이내이면 거래정지처분의 제재를 유예하였다. 당초에 부도어음입금통보서는 부도어음대전을 입금한 다음 영업일 교환개시시각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984년 1월에는 부도어음대전을 입금시킨 다음 영업일 영업개시후 1시간 30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다.

1993년 7월에는 연간 부도유예회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 제재를 완화하여 1992년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 비

〈표4-1-29〉 예금부족부도의 거래정지처분 비율(전국) (단위: 장, 백만원, %)

구 분	거래정지처분 사유				예금부족부도 합계	
	예금부족		1년간 4회이상 입금			
	장 수	금 액	장 수	금액	장 수	금 액
1992	34,236 (40.0)	396,568 (41.3)	8,276 (9.6)	137,018 (14.3)	86,563	959,828
1993	31,838 (37.2)	392,263 (40.5)	5,964 (7.0)	82,720 (8.5)	85,503	969,228
1994	55,664 (36.5)	577,705 (39.5)	8,969 (5.9)	86,766 (5.9)	152,475	1,462,049
1995	63,464 (38.4)	839,257 (45.6)	9,987 (6.0)	105,871 (5.8)	165,171	1,841,149

주: ( )은 총예금부족부도에 대한 점유율

율이 장수 49.6%, 금액 55.6%이던 것이, 1995년에는 장수 44.4%, 금액 51.4%로 각각 5.2%p와 4.2%p가 감소되었다.

3. 부도량 추이(1954년 이후)

서울지역의 부도금액은 1954년에 37억원에서 1962년 19억원, 1975년에는 301.8억으로, 1985년에는 5,449.6억원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65,27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이 처음 시작된 1962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도금액이 34,357배 증가하였다. 금액부도율(부도금액÷교환금액×100)은 1954년 1.16%에서 경제발전에 따라 하락하여 1965년에는 0.47%, 1985년에는 0.05%, 1989년에 0.02%까지 계속 하락하였다가 1990년 0.04%로 증가한 후 1995년말 현재 0.12%로 다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 이후 부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1989년 이후 경기침체 및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대형업체의 고액부도가 급증함은 물론 은행지로나 타행환 등 전

〈표4-1-30〉 부도량 및 부도율 추이(서울)

연 도	부도금액 (십억환·원)	금액부도율 (%)	연 도	부도금액 (십억원)	금액부도율 (%)	연 도	부도금액 (십억원)	금액부도율 (%)
1954	3.7	1.16	1968	10.74	0.33	1982	481.83	0.08
1955	5.9	0.84	1969	22.10	0.39	1983	513.00	0.06
1956	12.5	0.69	1970	31.69	0.50	1984	502.71	0.05
1957	10.0	0.69	1971	31.50	0.41	1985	544.96	0.05
1958	11.4	0.67	1972	24.40	0.28	1986	617.29	0.07
1959	14.6	0.64	1973	16.57	0.14	1987	807.57	0.06
1960	19.50	0.59	1974	17.22	0.09	1988	637.46	0.03
1961	19.61	0.83	1975	30.18	0.11	1989	669.20	0.04
1962	1.90	0.41	1976	44.85	0.11	1990	873.68	0.02
1963	2.66	0.47	1977	65.88	0.10	1991	2,136.59	0.02
1964	3.59	0.41	1978	88.39	0.07	1992	3,572.35	0.04
1965	4.85	0.47	1979	186.74	0.08	1993	3,431.24	0.07
1966	7.58	0.56	1980	311.40	0.11	1994	5,097.38	0.10
1967	7.46	0.30	1981	331.39	0.08	1995	6,527.80	0.12

주: 1954~1961년의 통화단위는 환임

자자금이체와 같은 새로운 결제방법의 등장으로 부도율 산출시 분모가 되는 교환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되고 있다.

4. 사고어음처리제도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거래은행에 어음에 대한 사고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 해당어음이 어음교환을 통하여 지급은행에 제시되면 지급은행에서는 사고신고서접수를 부도반환사유로 하여 제시은행에 부도반환하고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급자금이 없을 경우 이러한 사고신고제도를 악용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1964년 1월부터는 공시최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에만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고신고제도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1969년 1월에는 사고계제출이 있더라도 어음금 해당액을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미입금시에는 부도제재를 하는 사고신고예수금(事故申告預受金)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87년 1월에는 사고신고예수금을 발행인이 제3자와 공모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예수금을 인출해 가거나 지급은행이 상계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수금을 담보금으로 변경하고, 지급은행과 발행인간에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사고신고담보금제도의 시행으로 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할 수 없게 되자, 일부 발행인은 어음금의 일부(1/10정도)만을 공탁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정지가처분명령(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을 받아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부도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0월에는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시에도 법원공탁금과 관계없이 거래은행에 어음금액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미입금시에는 부도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1987년 1월에는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가계수표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고신고시 담보금의 입금금액을 장당 최고발행한도금액이내로 한정하여 한도이내발행을 유도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발행인이 가계수표의 한도초과발행을 남발하고 사고신고를 접수하는 악용사례가 빈번하여 다시 어음금 전액을 담보금으로 입금하

도록 변경하였다.

한편, 1980년 1월에는 위·변조신고된 어음은 다른 사고신고와 구분하여 고소장·고발장·경찰관서발행 사고확인서 사본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조건으로 어음금 해당액의 별단예금 입금을 면제하였다. 또한 1983년 7월부터는 가계수표에 대하여, 1986년 3월부터는 기타 모든 수표에 대하여 거래은행의 고발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위·변조된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고발하여야 할 대상이며, 허위신고시에는 허위신고자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 거래정지처분제도

거래정지처분제도는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어음을 정당한 이유없이 부도를 내거나 그 밖에 당좌(가계당좌)계정거래약관 또는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발행인을 참가은행과 2년간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거래상 신용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금융거래의 신용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10년 7월 경성수형교환소 운영시부터 실시하였고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발행인을 제재하는 부도사유의 변경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어음·수표의 유통질서 확립조치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다.

거래정지처분이 되는 부도사유는 11가지 부도사유가운데 6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첫째는 예금부족에 의한 부도로 교환소에 부도어음대전의 입금사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1910년부터 실시되었다. 둘째는 사고신고서제출, 지급정지가처분명령송달 또는 위·변조신고에 의한 부도어음으로 담보금 등의 입금사실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로 1969년 1월 사고신고예수금제도 도입시에 신설되었다. 세째는 위·변조 어음으로 관련증빙자료제출을 조건으로 어음금액 해당자금의 별단예금입금의무를 면제받고 기한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며, 1980년 1월 위·변조 예수금제도와 더불어 도입되었다.

넷째는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이상 입금통보서가 제출된 예금부족,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어음의 부도가 있는 경우로 1910년 7월에는 연간 입금회수를 3회로 하였으나 1959년 4월에는 2회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4년 1월에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및 어음제출시간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어음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3회로 늘렸고, 1993년 7월에는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하여 4회로 완화하였다. 다섯째, 거래없는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로 지정하여 무거래 부도된 경우로 역시 예금부족과 마찬가지로 19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1940년대에는 다른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 1년간 1회에 한하여 입금을 허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은 전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이상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이다. 1989년 1월 가계수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가계수표가 장당 발행한도초과로 연간 3회이상 부도되면 거래정지처분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1994년 12월에는 2회로 강화하였다.

부도사유별 거래정지처분 현황을 보면 1995년 예금부족과 1년간 4회이상 부도어음대전을 입금한 경우가 인원 90.6%, 장수 93.1%, 금액 92.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정지처분 대상어음은 초기에는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한 어음, 수표로 한정하여 운영되었다. 1964년 1월에는 발행인이 국가 또는 은행이고 미리 예금이 되어 있어 거래정지처분이 불필요한 국고수표, 자기

〈표4-1-31〉 부도사유별 거래정지처분건수(전국)

(단위: 명, 장, 백만원, %)

구 분		예금부족	무거래	1년간 4회이상 입금	가계수표 한도초과	사고신고서 접 수	위·변조	합계
1991	인원	7,541	1,102	2,577	40	73	31	11,364
	장수	22,993	2,233	6,192	54	130	57	31,659
	금액	200,074	14,385	64,901	364	2,187	576	282,487
1995	인원	25,503 (74.3)	2,648 (7.7)	5,602 (16.3)	527 (1.5)	25 (0.1)	42 (0.1)	34,347 (100.0)
	장수	63,464 (80.4)	4,777 (6.1)	9,987 (12.7)	602 (0.8)	39 (0.1)	42 (0.1)	78,911 (100.0)
	금액	839,257 (82.0)	73,179 (7.2)	105,871 (10.4)	2,905 (0.3)	796 (0.1)	1,127 (0.1)	1,023,136 (100.0)
연평균 증감율	인원	41.1	24.9	27.3	125.8	29.7	11.3	36.4
	장수	32.7	22.0	16.9	113.6	20.6	-2.1	29.0
	금액	47.4	58.4	24.6	104.5	39.9	35.7	42.7

주: ( )은 부도사유별 점유율

앞수표, 송금수표, 예금증서를 거래정지처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1986년 3월에는 원화여행자수표를, 1994년 1월에는 표지어음 및 회사채 등 제증서를 거래정지처분 대상어음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부도량 가운데 거래정지처분 대상어음(당좌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 환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기준으로 인원 87.7%, 장수 88.2%, 금액 9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1990년대 가계수표의 부도량이 크게 급증하여 금액은 연간 141.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4-1-32〉 어음종류별 부도량(전국)

(단위: 명, 장, 백만원, %)

구 분		당좌수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환어음	기 타	합 계
1991	인원	22,900	56,510	56,077	111,484	2	152	247,125
	장수	39,281	108,040	104,516	208,873	3	244	460,957
	금액	667,613	99,989	31,001	2,899,192	53	42,687	3,740,537
1995	인원	79,394 (10.3)	279,419 (36.1)	95,050 (12.3)	319,683 (41.3)	11 (-)	172 (-)	773,699 (100.0)
	장수	104,875 (9.2)	386,815 (34.0)	134,497 (11.8)	512,008 (45.0)	11 (-)	232 (-)	1,138,438 (100.0)
	금액	2,114,316 (16.3)	1,565,330 (12.1)	50,735 (0.4)	9,231,329 (71.1)	87 (-)	23,063 (0.2)	12,984,858 (100.0)
연평균 증감율	인원	39.9	69.5	17.9	34.2	50.8	9.6	36.4
	장수	30.4	51.8	8.7	29.5	21.7	52.4	16.9
	금액	37.7	141.4	14.4	37.8	71.0	-6.6	40.3

주: ( )은 점유율

거래정지처분의 효력은 1910년에는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당좌거래 및 대출거래를 금지하였으나 1940년대에는 당좌거래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거래정지기간내에 다시 부도를 낸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무거래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한편 1959년 4월에는 거래정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거래정지자의 제재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1982년 12월부터는 가계수표 부도자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계당좌거래에 한하여 거래정지기간을 만 1년에서 만 2년으로 연장하였고 1983년 4월부터는 모든 당좌거래에까지 확대하였다.

6. 부도제재에 대한 구제

가. 거래정지처분 취소제도

거래정지처분 취소제도는 거래처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참가은행의 착오 등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음발행인이 부당하게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구제제도이다. 1910년 7월 어음교환소 설립시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부의하여 출석은행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였으나, 1964년 1월에는 업무위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변경하였다. 취소신청기한은 거래정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서 1980년 1월에 15일이내로 연장하였고, 1984년 10월에는 15일이 경과하여도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처의 불이익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였다.

한편, 1994년 12월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금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어음의 부도가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였을 때에도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또한 참가은행에서 취소신청을 한 후 취소승인까지의 기간이 너무 긴 점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최종적인 취소승인이 없더라도 어음교환부장은 취소신청 접수일로부터 고객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정지처분효력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거래정지처분 해제제도

거래정지처분 해제제도는 발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지만 거래정지기간내라도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당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제도이다.

당초에는 거래정지를 받은 자가 현저히 신용을 회복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 기간내라도 거래정지처분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총회에서 출석은행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하였다. 그리고 1959년 4월에는 해제신청의 요건을 현저히 신용을 회복하였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특히 신용회복의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을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1964년 1월에는 기간규정을 삭제하였다.

한편, 1993년 8월에는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부도방지 및 정상화 촉진대책에 따라 거래정지처분후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유예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부도어음을 정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제도를 활성화하였다.

〈표4-1-33〉 기업규모별 거래정지처분 현황(전국) (단위: 명, %)

구 분	법 인			개인업체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계		
1991	5	2,008	2,013	4,146	6,159
1992	8	3,706	3,714	7,055	10,769
1993	6	3,396	3,402	6,100	9,502
1994	5	4,498	4,503	6,752	11,255
1995	5	6,026	6,031	7,961	13,992

그러나, 구제제도의 활성화로 일부기업이 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정지처분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1년 내에는 다시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거래정지처분의 해제승인은 종전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해제요건을 완화한 이후에는 1993년 10건, 1994년 46건, 1995년 59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표4-1-34〉 거래정지처분 취소 및 해제 현황(서울) (단위: 건,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취 소	16	73	84	54	71	45	34	35	55	141	211
해 제	3	2	5	2	4	2	-	1	10	46	59
계	19	75	89	56	75	47	34	36	65	187	270

7. 기타

가. 제재금 및 과태금

제재금이란 어음발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참가은행이 발행인으로부터 받아 교환소에 납

입하는 벌칙금을 말한다. 1910년 당시에는 부도어음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은행에 부도자 1명당 3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고, 1959년 4월에는 발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예금부족과 무거래부도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1965년 10월에는 사고신고서접수, 인감서명상이와 인감불선명을 추가하면서 그 대상어음을 당좌수표, 약속어음 및 환어음으로 명시하였고, 부과기준도 부도자에서 부도장수로 바꾸었다. 1977년 5월에는 가계수표제도가 실시되어 가계수표를 부과대상에 추가하였다.

1963년 이사회 제정 제재금(서울)

건 명	부 과 금
부도어음입금계가 있는 1회의 어음부도(1인에 대하여)	100원
부도어음입금계가 없는 어음부도	300원
부도어음입금계가 있는 경우라도 전조합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 이상의 어음부도가 있을 때	300원

그러나 가계수표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개설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가계수표 부도시 제재금을 거래은행이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가계수표에 대한 제재금부과는 1981년 11월부터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4년 1월부터는 형식불비중 발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정정인누락 또는 상이, 금액·발행일자오기와 약정용지상위(각 1만 5천원)를 추가하였다.

과태금이란 참가은행이 교환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어음교환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교환소가 해당

1963년 이사회 제정 과태금(서울)

건 명	부 과 금
교환차액결제자금의 입금이 지연되었을 때	50원
부도어음대전지급이 이유없이 지연되었을 때	50원
정당한 이유없이 교환원이 결석하였을 때	100원
부도 또는 거래정지가 관계조합은행의 착오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100원
어음부도계를 익일 교환개시시각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300원
당좌거래해약계를 해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500원
무거래의 이유로 부도를 내었을 때	500원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당좌예금거래를 하였을 때	1,000원

참가은행에 부과하는 벌칙금을 말한다. 1910년에도 현재와 유사한 과태금제도가 있었는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의 계속거래를 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취소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30원의 과태금을 부과하였고, 어음교환업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없이 과태금을 부과하였다.

과태금 항목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업무처리방법의 개선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완되었다. 특히, 1993년 8월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의 취소제도가 도입되면서 관계은행 착오로 인하여 부도신고 및 통지를 취소하는 때에는 거래정지처분의 취소신청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부과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994년 9월에는 부도반환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부도어음통보를 지연하였거나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그해 12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가동에 따라 교환차액에 대한 부족자금을 지연하여 입금시킨 경우 등을 과태사항으로 추가하였다.

나. 증명서 발급

참가은행이 법인에 대한 당좌예금을 신규로 개설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거래정지처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면 어음교환소는 부도어음신고서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도정보로 거래정지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가 1987년 2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1995년 중에 5,044건이 발급되었다.

다. 통계업무

어음교환 및 부도상황은 경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고 제반 경제정책 결정에 하나의 지표가 됨에 따라 어음교환 및 부도통계작성의 체계화, 신속성, 정확성이 요구되었다.

1964년 1월에는 어음교환 및 부도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음교환 및 부도어음의 월보작성의무을 규약에 신설하였다. 1980년 1월에는 통계작성의 신속을 위하여 월보작성기간을 매익월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으며 1985년 8월부터 참가은행 및 위탁은행은 교환월보 및 기타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교환소에 보고하도록 하여 통계작성의 체계성을 높였고, 1990년 4월부터는 일별 총교환실적자료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참가은행 본부의 일별 수어음종류별표의 제출의무를 규정하였다.

현재 본부에서는 각 지부별로 어음교환 및 부도통계월보를 접수받아 총 27종에 달하는 전국어음교환 및 부도통계월보를 작성하여 당원은 물론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제2장 은행지로업무

제1절 개요

1. 거래의 유형과 종류

은행지로의 거래유형은 지급인의 예금계좌 보유 여부에 따라 입금이체와 계좌이체로 나뉜다. 입금이체는 예금계좌가 없는 지급인이 예금계좌를 보유한 수취인에게 금융기관 점포를 이용하여 수취인계좌로 입금이체하는 거래형태로 각종 공공요금, 물품판매대금의 수납과 같은 집금거래에 편리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로는 일반계좌이체, 전기요금수납이체 및 지방세수납이체업무가 있다. 일반계좌이체는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양당사자간에 지급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수취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현금의 수수없이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로의 가장 이상적인 거래형태이다. 현재 일반계좌이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금거래에 편리한 자동계좌이체업무와 배금업무에 널리 이용되는 대량지급업무 및 정기적으로 정액을 송금할 수 있는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가 있다.

은행지로이용안내 창구

한편 은행지로의 거래종류는 수취인과 지급인 수의 다소에 따라 대량수납, 대량지급 및 기타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대량수납업무

대량수납업무는 전국 각지의 다수인으로부터 각종 대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은행에서 수납된 자금을 수납기관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통보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계좌이체, 전기요금수납이체 및 지방세수납이체업무와 같은 장표업무와 비장표업무중 자동계좌이체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나. 대량지급업무

대량지급업무는 급여, 연금 등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자금을 지급기관의 거래은행에서 인출하여 여러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각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다. 기타 업무

기타 지로업무로서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일대일로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는 일반계좌이체업무중 표준장표 B양식에 의한 송금과 정기·정액 송금에 이용할 수 있는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가 있다.

또한 지로거래를 이용하는 수단이 전통적인 고지서인지 또는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자적 매체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장표업무(Paper-base Giro), 후자의 경우 비장표업무(Non Paper-base Giro)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장표 이용이 많은 실정이나 점차 편리성 및 효율성 등의 장점으로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비장표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장표업무는 일반계좌이체 등의 업무와 같이 수납기관이 장표로 납부자에게 고지하고, 납부자가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장표는 당원이 집중처리하고 수납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업무로, 비장표업무에 비해 처리비용 과다소요, 업무집중시 처리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전통적인 영수증 확인 관행 등으로 그 이용은 계속 늘고 있다.

비장표업무는 자동계좌이체 등의 업무와 같이 납부자, 수취인 및 은행이 사전 약정 등에 의해 자금을 주고 받을 때 그 수단을 마그네틱테이프 및 플로피 디스켓과 같은 전자매체나 일괄전송(File Transfer)과 같은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비장표업무는 처리비용의 절감 및 신속·정확한 처리로 향후 지로거래의 주요 지급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참가은행과 점포

가. 참가은행

참가은행이란 당원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지로업무의 수납 및 지급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국은행을 제외한 당원의 사원 16개 은행과 준사원 18개 은행중 한국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16개 은행 및 우체국 등 5개 기관이 특별참가은행으로 은행지로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표4-2-1〉 참가기관 현황(1995년말 현재)

사 원	준 사 원	특별참가기관
산업, 기업, 국민, 외환, 주택, 농협,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은행	수협, 장기, 축협,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하나, 보람, 평화은행	농협회원조합, 수협회원조합 축협회원조합, 우체국, CITI은행
16개 은행	16개 은행	5개 기관

특별참가은행은 「금융결제원 사원·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 사원·준사원 이외의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일시되는 자로서 은행지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참가하는데, CITI은행은 1993년 1월,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은 1994년 12월에 특별참가 승인을 득하였다.

참가은행은 은행지로차액결제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우체국은 국고금계정)를 보유하여야 하며, 당원의 은행지로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나. 참가점포

참가은행의 모든 점포는 비장표업무와 장표업무 모두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은행지로미실시지역에 소재한 참가은행 점포는 장표업무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장표업무에는 1995년 6월 1일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의 특별참가를 계기로 옹진군, 울릉군 및 신안군(지도읍 제외)과 제주도 추자도 및 우도 등 도서지역에 소재한 점포를 제외한 참가은행의 모든 점포가 참여하고 있으며, 1995년말 현재 지로장표를 수납하고 있는 점포수는 13,800개이다.

비장표업무 실시 초기에는 참가은행의 온라인화 미비로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참가은행이 자체 전산망을

완비하여 전국적인 온라인처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1989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참가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다만, 우체국은 자체 시스템의 개발 지연으로 1996년 3월부터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및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등 비장표업무 전부를 취급하게 되었고, 농협 회원조합도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에 대하여 동년 2월부터 취급하였다.

〈표4-2-2〉 지역별 지로취급 점포현황(1995년말 현재)

지역	은행	점포	지역	은행	점포	지역	은행	점포	지역	은행	점포
서울	38	2,845	광주	28	348	충북	26	529	경북	26	1,123
부산	34	805	대전	30	346	충남	24	793	경남	30	1,446
대구	32	571	경기	29	1,841	전북	25	761	제주	20	245
인천	34	464	강원	23	646	전남	22	1,037	전국	38	13,800

3. 실시지역 및 지로장표의 송달

가. 실시지역

비장표업무의 경우 실시지역에 제한이 없으나 장표업무는 은행 점포에서 수납한 장표를 당원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상 정해진 처리기일을 준수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6월 1일

〈표4-2-3〉 지로 미실시지역 현황(1995년말 현재)

전국 확대 이전(1995. 5월)	전국 확대 이후(1995. 6월)
- 2개시 29개군 • 시지역 : 경북 상주, 문경 • 군지역 : 인천 - 옹진 강원 - 화천, 양구, 평창, 인제, 영월, 정선 전북 - 진안, 임실, 부안, 무주, 고창, 장수, 순창 전남 - 고흥, 신안(지도읍 제외) 경북 - 군위, 영덕, 울진, 울릉,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예천 경남 - 합천, 하동, 함양, 남해, 거창, * 제주 - 추자도, 우도	- 2개군(도서지역) • 인천 - 옹진 • 경북 - 울릉 * 전남 - 신안(지도읍 제외) * 제주 - 추자도, 우도

전국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기 이전에는 전국 72개시 94개군 중 어음교환소 참가지역인 70개시 66개군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이후 미실시 2개시 29개군 중 옹진군과 울릉군 등 2개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지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한편 장표 송달문제로 지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옹진군, 울릉군 및 지도읍을 제외한 신안군과 제주도 추자도, 우도 등의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지로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지로장표의 송달

지로장표의 송달은 어음교환 참가지역의 경우 당원 지부 또는 어음교환 당번은행에 집중하여 특급우편 또는 소화물 운송제도나 상호교환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음교환 미참가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당번은행에 집중하여 빠른우편을 이용하여 당원에 송달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은 당원 부산지부로, 기타 지역은 본부로 집중하여 자료를 처리, 은행간 차액결제, 수납기관앞 수납대금 이체입금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 직접제출

서울 및 부산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는 점포는 수납한 장표를 당원으로 직접 제출하고 있다. 어음교환 야간교환에 참가하고 있는 서울의 16개 은행은 자행 본점에서 지점분을 모두 취합하여 어음교환 상호교환시간에 당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여타 은행은 당원 본부 또는 198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파출분소에 직접 제출하고 있다.

지로장표 접수장면

〈표4-2-4〉 최초의 파출분소 운영 현황

지 역 별	설 치 일 자	파출접수창구 설치장소
영등포 지역	1981. 8. 1	한국상업은행 영등포지점
강 남 지역	1981. 8.31	서울신탁은행 논현동지점
성 동 지역	〃	제 일 은 행 청량리지점

〈표4-2-5〉 지역별 장표송달방법(1995년말 현재)

송달방법	본 부 송 달	부산지부 송달
직접제출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 - 자행본부취합 제출은행(어음교환 야간교환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주택, 수협, 농협,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한미, 동화, 평화, 우체국 - 개별제출은행 : 기타 R/S 비보유은행	부산어음교환소 참가지역
상호교환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산, 이천, 춘천, 원주, 청주, 충주, 대전, 천안, 홍성, 서산, 공주, 논산어음교환소 참가지역	창원, 울산, 진주, 김해, 양산어음교환소 참가지역
특급우편	대구, 광주, 전주,. 군산, 익산, 여수, 순천, 포항, 구미, 김천, 제주어음교환소 참가지역	통영어음교환소 참가지역
소 화 물 운 송 편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제천, 정읍, 남원, 목포, 해남, 경주, 안동, 영주어음교환소 참가지역	
빠른우편	어음교환소 미참가지역 - 상주, 문경시 - 화천, 양구, 평창, 인제, 영월, 정선, 진안, 임실, 무주, 부안, 장수, 순창, 고흥, 군위, 영덕, 울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예천군	어음교환소 미참가지역 - 합천, 하동, 남해, 거창군

(2) 상호교환편 송달

서울과 상호교환하는 인천 등 17개 어음교환소와 부산과 상호교환하는 창원 등 5개 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는 점포는 지로장표를 당원 지부 또는 당번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어음교환 상호교환편을 이용하여 본부 또는 부산지부로 송달하고 있다. 논산과 공주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수납한 장표를 해당지부로 제출하고, 지부에서는 이를 다시 대전지부에 송달하여 대전과 서울의 상호교환편을 활용하여 본부에 제출하고 있다.

(3) 특급우편을 이용한 송달

서울 및 부산과 상호교환을 하지 않는 어음교환소에 참가하고 있는 점포는 수납한 장표를 당원 지부에 제출하고, 지부는 이를 우체국의 특급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본부 및 부산지부로 송달하고 있다.

(4) 소화물 운송편을 이용한 송달

종전에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장표를 송달하던 강릉 등 11개 지부지역의 특급우편제도가 1994년 9월 폐지됨에 따라 이들 지부는 대한통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장표를 송달하고 있다. 해남지부는 수납된 장표를 상호교환편으로 목포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목포지부의 소화물운송편에 포함하여 본부로 송달하고 있다.

(5) 빠른우편을 이용한 송달

수납한 장표를 송부할 방법이 없어 지로를 취급할 수 없었던 지역에 대하여 1995년 6월부터 전국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소재 점포가 수납한 지로장표를 1994년 9월부터 도입, 실시된 우체국의 빠른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송달하고 있다. 현재 당원 지부 참가지역 이외의 2개 시 25개 군에 소재한 점포들이 수납한 장표는 해당지역 당번은행에 제출하고 당번은행에서 취합된 장표를 빠른우편으로 당원으로 송달하고 있다.

4. 지로거래의 승인과 지로번호

가. 지로거래의 승인

당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수납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당원으로부터 지로거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는 당원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고 이용자가 자기 주거래은행에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는 수납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참가은행 및 당원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각종 지로거래신청서

〈표4-2-6〉 지역별 · 업무별 지로이용기관 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일반이체	12,354	1,806	1,246	1,100	588	903	2,330	371	416	296	407	158	292	633	89	22,989
자동이체	175	18	7	4	5	7	7	2	5	-	2	1	1	11	1	246
대량지급	562	2	1	7	2	22	35	2	2	2	2	-	1	5	-	645
합 계	13,091	1,826	1,254	1,111	595	932	2,372	375	423	298	411	159	294	649	90	23,880
구 성 비	54.8	7.6	5.3	4.7	2.5	3.9	9.9	1.6	1.8	1.2	1.7	0.7	1.2	2.7	0.4	100.0

1995년말 현재 승인기관은 일반계좌이체 22,989개, 자동계좌이체 246개, 대량지급 645개 및 지방세업무 108개 기관이다.

나. 지로번호

지로번호는 당원이 거래승인을 받은 이용기관에게 부여하는 7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서 이용기관의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등을 당원이 등록, 관리하고 있어 납부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지로번호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산업별 분류번호 2자리, 일련번호 4자리, 그리고 번호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번호 1자리 등 7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지로번호는 일반계좌이체 및 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량지급은 8자리의 승인번호를, 지방세수납업무는 징수기관 구분코드 6자리를 지로번호 대신 사용하고 있으며, 1개 기관에 1개의 지로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37개 은행을 통하여 23,880개가 부여되었다.

5. 경비분담 및 과태금

가. 경비분담

당원이 은행지로제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별 지로수납실적에 따라 전 참가은행이 분담하며 매년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경비분담기준은 당초에는 전년도 지로수납실적에 따라 총경비의 30%는 수납건수, 30% 수납금액, 40%는 수납적수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량지급 급여이체의 경우 수납은행은 수수료 수입 및 자금운용 수익 등 급여이체 취급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이체 수납실적이 많으면 지로경비도 많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참가은행이 급여이체 추진에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점, 일반계좌이체중 수수료가 면제된 학자금, 한국어린이재단회비 등의 장표 수납은행이 불리한 점과 1985년 7월 재무부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수지예산을 전년도 10월말까지 재무부에 제출

하여야 함에 따라 수지예산과 은행 분담액을 동시에 의결하기 위해서는 분담액 산정기준이 되는 지로수납실적 대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86년 3월 당원 총회에서 종전의 기준은 유지하되 수수료 면제분은 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보완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지로실적분담금 산출기준

- 지로부문 총경비의 30% : 참가은행의 수납건수에 비례하여 분담
- 〃 30% : 〃 수납금액 〃
- 〃 40% : 〃 수납적수 〃

단, • 대량지급 급여이체 : 건수, 금액에서 제외
• 기타 수수료 면제분 : 건수에서 제외
• 지로수납실적 대상기간 : 전전년도 10월 ~ 전년도 9월

나. 과태금

지속적인 장표업무의 증가에 따라 은행의 수납장표 집계 착오시 당원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은행의 지로장표 관련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지로일계표와 장표의 건수, 금액오류시 및 지로일계표의 점별코드 상이시 과태금을 부과하였으며, 1994년 12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가동에 맞추어 참가은행의 차액결제자금 입금 지연시에도 과태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로과태금 부과대상 및 금액

부 과 대 상	금 액
지로차액결제자금 납입의 지연	50만원
지로일계표와 장표의 건수 · 금액 오류	500원 (건당)
지로일계표상의 수납점코드 오류(미기재 포함)	2,000원(건당)

6. 지로입출금지시 및 지로차액결제

가. 지로입출금지시

지로제도 실시초기의 수취인 또는 지급인앞 입·출금지시는 지시서에 의해서만 가능하였으나 1981년 10월부터 대량지급 온라인계좌분에 대한 입금지시는 수취인 계좌앞 입금처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하여 각행에 송부하였다. 1982년 2월 3일에는 자동계좌이체 출금지시도 마그네틱테이프를 이용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일반계좌이체 입금지시방법도 마그네틱테이프로 전환하여 일괄입금처리(Center Cut)체제로 전환하고 1988년 금융전산망이 구축 가동됨에 따라 일괄전송(File Transfer)으로 은행에 대한 입금지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은행지로업무관련 자료중 상당수가 일괄전송에 의해 참가은행과 수수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일괄전송이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자료들도 전부 일괄전송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 지로차액결제

은행지로업무의 은행간 자금결제는 차액결제방법에 의하고 있으며, 참가은행은 지로차액(총수납금액에서 총지급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있는 당좌예금계정으로 결제한다.

지로차액은 지로업무 종류별로 계산하여 각각 결제하지 않고, 각 업무별 수납금액의 합계와 지급금액의 합계의 차액을 은행간 지로차액결제금액으로 한다. 한편 특별참가기관인 우체국은 국고예탁금계정을, 농·수·축협 회원조합은 각 중앙회의 당좌예금계정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있다. 차액결제절차는 결제일에 당원이 각 참가은행으로 09:30까지 지로결제지시서를 10:30까지 한국은행에 지로결제의뢰서 및 지로결제통지서를 송부하고, 참가은행은 결제시각인 11:30까지 차액결제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면 현금, 한국은행앞 수표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의 계좌이체방법으로 결제자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한편 종전 결제지시서 등 장표에 의한 지로차액 결제의뢰방법은 당원과 한국은행간에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1988년 12월 1일부터 일괄전송으로 하고 있다.

7. 자금이체기일 및 지로수수료

가. 자금이체기일

은행지로업무의 자금이체기일은 각 업무별로 상이하며, 수납일 단위로 이체하는 것과 마감일(납기일)에 따라 수납기간 단위로 이체하는 2종류가 있다. 수납일 단위로 이체하는 업무는 일반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와 대량지급업무이며, 수납기간 단위로 일괄하여 이체하는 업무는 전기요금과 지방세수납이체업무이다.

또한 장표업무인 일반계좌이체는 수납지역에 따른 자료송달방법 및 소요기간의 차이로 자금이체기일이 수납일에 이은 2영업일에서 4영업일까지로 3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계좌이체 이외의 여타 업무는 수납지역에 관계없이 일원화되어 있다.

일반계좌이체의 경우 서울 및 서울과 상호교환지역은 2영업일, 기타 지방어음교환소 참가지역은 3영업일, 어음교환소 미참가지역은 4영업일로 되어있다. 한편 서울과 상호교환지역중 대전, 청주, 춘천 및 원주지역의 경우 종전에 특

〈표4-2-7〉 업무별 자금이체기일(1995년말 현재)

업 무 별	자 금 이 체 기 일
일 반 계 좌 이 체	- 서울 및 서울과 상호교환지역 : 수납일에 이은 2영업일 (단, 면지역은 3영업일) - 기타 어음교환소 참가지역 : 수납일에 이은 3영업일 (단, 면지역은 4영업일) - 어음교환소 미참가지역 : 수납일에 이은 4영업일
전 기 요 금	- 동력분 : 납기일에 이은 4역일주)(납기일 : 5, 10, 18, 25, 말일) - OCR분 : 〃 6영업일 (납기일 : 5, 10, 25, 말일)
지 방 세	납기일에 이은 15일(납기일 : 말일)
자 동 계 좌 이 체	- 전기요금 동력분 : 수납일에 이은 4역일 - 전기요금 OCR분 : 〃 6영업일 - 기타 : 〃 3영업일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수납일에 이은 1영업일
대 량 지 급	이체지정일

주: 역일은 달력으로 정해지는 날짜를 말함

급우편으로 제출하던 지로자료를 1987년 4월 1일부터 상호교환편을 이용하도록 변경하여 자금이체기일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였다.

나. 지로수수료

지로수수료는 지방세수납이체업무를 제외한 모든 지로거래에 부과되고 있다. 수수료는 수납기관(대량지급의 경우 지급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나, 일반

〈표4-2-8〉 최초의 은행지로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결정일자 및 회의체
전 기 요 금		건당 23원	1978. 1.13 은행지로관리소 이사회
일반계좌 이 체	표준장표	선납 계좌이체 : 50원 입금이체 : 100원 추가요금 : 50원	1981. 2. 6 〃 업무운영위원회
	특수장표	별납 80원	
대 량 지 급		건당 50원(급여는 면제)	1981. 7. 9 〃 〃
자동계좌 이 체	일반요금	건당 20원	1981. 7. 9 〃 〃
	전기요금	건당 23원	1981.11. 6 〃 이사회
	전화요금	건당 30원	1982. 5.19 〃 업무운영위원회

〈표4-2-9〉 현행의 은행지로 수수료(1995년말 현재)

업무종류			납부시기	납부자	금액(건당)	비 고
일반계좌 이 체	표준장표	A양식	별납(후납)	수납기관	100원	1992. 6. 1 선납에서 변경
		B양식	선납	송금인	은행자율	1994. 5. 2 자율화
	특수장표	OCR	별납	수납기관	80원	1981. 3. 1부터 적용
		정액OCR			80원	〃
		MICR			100원	1989. 1. 4 80원에서 인상
전 기 요 금			〃	〃	40원	1992. 6.10 23원에서 인상
지 방 세			〃	〃	면제	1986. 5. 1부터 적용
자 동 계 좌 이 체	전기요금		〃	〃	40원	1992. 6.10 23원에서 인상
	전화요금				30원	1982. 7. 1부터 적용
	기 타				50원	1982. 5. 1 20원에서 인상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선납	송금인	은행자율	1994. 3.24 자율화
대 량 지 급			〃	의뢰기관	〃	1994. 5. 2 자율화

계좌이체업무중 B장표 이용시와 납부자자동계좌이체의 경우는 송금인이 부담하고 있다. 지로수수료의 결정은 당초 은행지로운영위원회(은행지로관리소의 업무운영위원회에 해당)에서 하였으나 1994년 5월 일부 업무의 수수료 자율화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수수료는 선납수수료와 후납(별납)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선납수수료는 각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자동계좌이체업무는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가 약정되어 있다.

한편 일반계좌이체의 경우 은행지로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각급 학교가 수납하는 학자금과 한국어린이재단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결연후원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적십자회비 및 꽃동네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의 후원금에 대하여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전기요금이외의 지로수수료는 1980년 10월 「금융기관 계좌이체 확대실시」시 결정되어 1988년 6월 일부 인상한 이후 물가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지로이용의 확대에 비례하여 수수료도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전년에 비해 54.5% 증가한 311억원에 달하였다.

〈표4-2-10〉 은행지로 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 액	4,250	5,945	8,143	10,260	12,931	15,584	20,103	31,068
증감율	-	39.9	37.0	26.0	26.0	20.5	29.0	54.5

제2절 일반계좌이체업무

1. 개요

일반계좌이체제도는 수납기관이 사전에 당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에게 납부할 금액이 기재된 지로장표를 송부하고 납부자가 은행에 납부한 자금을 수납기관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고 수납된 내역을 수납

일반계좌이체작업광경

기관에 통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납기관은 전은행의 점포를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납부자 역시 어느 은행 점포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신문구독료, 도시가스요금, 무선호출요금 및 회비 등 각종 요금의 수납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각종 지로장표

가. 지로장표

지로장표는 고객용인 은행지로영수증, 수납은행용인 은행지로의뢰서와 당원처리 및 수납기관 통보용인 은행지로통지서의 3매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용도 및 당원의 처리방법에 따라 표준장표와 특수장표로 구분할 수 있다.

(1) 표준장표

표준장표는 수납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납부자가 돈을 받을 사람의 지로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을 직접 기재하여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에 비치해 놓은 장표로 A장표와 B장표가 있다. A장표는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수납기관에 송금할 때 사용하며, 지로번호와 금액 및 납부자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B장표는 지로번호가 없는 자에게 송금할 때 사용하는 장표로서 수취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와 금액 및 납부자(송금자)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용할 수 있다. 현재 B장표 이용은 타행환송금제도 및 CD계좌이체 실시 등으로 점차 줄어가는 추세에 있다

(2) 특수장표

특수장표는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수납기관이 장표에 지로번호, 금액, 납부자의 성명 등을 미리 기입하여 납부자에게 고지하면 납부자가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장표로 당원이 정한 규격에 따라 당원이 지정한 적격인쇄업체에서 인쇄하여야 하며 납부자에게 고지하기 전에 당원의 장표테스트에 합격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특수장표로는 OCR, 정액OCR, MICR 장표의 3종류가 있으며, OCR장표는 수납할 금액이 일정하지 않거나 이용건수가 많은 수납기관에서 주로 이용하며 장표의 전산처리부분(OCR Read Band)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로번호, 납부자내역 및 금액을 OCR문자로 인자하여 고지하는 장표로 당원은 수

납된 장표를 자동판독분류기(R/S, Reader/Sorter)로 처리하여 수납내역을 전산매체로 제공함에 따라 수납기관은 고객관리를 전산처리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한 장표이다. OCR장표는 1983년 12월 1일 당원이 R/S를 도입하여 수작업처리체제에서 기계처리체제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장표로 1995년중 이용기관수는 전체의 9.2%인 2,116개 기관에 불과하나 이용건수는 201백만장으로 72.3%에 달하고 있다. 또한 수납처리된 OCR장표를 수납기관에 발송하던 것을 1991년 10월부터 정상처리된 장표는 발송을 생략함으로써 수납기관별 장표의 분류작업이 없어져 당원으로서도 가장 효율화된 장표업무처리방식이다.

정액OCR장표는 신문대금, 학자금 등과 같이 수납할 금액이 일정할 때 사용하며 장표의 전산처리부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로번호와 금액을 OCR문자로 미리 인자하고 납부자의 성명 등은 수납기관에서 수기하여 납부자에게 고지하는 장표로 고객관리를 전산처리할 수 없는 수납기관이 주로 이용하며 당원은 수납처리된 장표를 수납기관에 제공한다. 정액OCR장표는 그간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장표로 이용하던 학자금 등의 처리 효율화를 위해 1985년 도입하였으며 주로 신문대금, 학자금 등의 수납에 이용되고 있다.

MICR장표는 수납할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이용건수가 소량일 때 사용되는 장표로 장표의 하단에 R/S가 판독할 수 있는 MICR문자로 지로번호를 미리 인자하고 수납기관에서 금액 및 납부자내역 등을 수기하여 납부자에게 고지하면 당원은 수납처리된 장표를 수납기관에 제공하고, 수납기관은 당원이 송부한 장표로 고객관리를 한다.

〈표4-2-11〉 장표종류별 이용기관 변동추이 (단위: 개)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OCR	629	816	1,021	1,500	2,116
정액OCR	2,505	3,196	3,693	4,201	4,643
MICR	11,225	12,904	12,887	14,952	16,230
합 계	14,359	16,916	17,601	20,653	22,989

나. 적격인쇄업체

당원은 수납된 지로장표를 R/S시스템에 의해 분당 2,000장의 고속으로 판

독, 분류처리하고 있어서 특수장표는 규격, 지질 및 인쇄상태 등이 규정된 양식으로 인쇄되어야 전산처리가 가능하므로 지로장표를 인쇄할 수 있는 적격인쇄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납기관은 반드시 적격인쇄업체에서 장표를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적격인쇄업체제도는 1993년 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적격인쇄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로장표 인쇄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당원으로부터 인쇄방법을 교육받아 장표테스트에 합격하여야 한다. 적격인쇄업체 지정기간은 2년으로 1995년말 현재 적격인쇄업체는 전국적으로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다. 수납명세의 제공

당원은 수납처리된 내역을 수납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정액OCR 및 MICR장표 이용기관에 대하여는 장표 실물을 송부하고 OCR이용기관에 대하여는 수납명세서 또는 수납명세내역을 수록한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매체로 제공한다. 이중 OCR이용기관에 전산매체로 수납명세를 제공하는 것을 특히 OCR서비스라 한다. OCR서비스는 OCR장표를 이용하는 기관중 수납명세내역을 명세서가 아닌 마그네틱테이프, 플로피디스켓에 수록하여 받기를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OCR서비스승인신청서」를 받아 승인후 제공하고 있다. OCR서비스는 매일 또는 월10회이내의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으며, 1995년말 현재 2,116개 OCR장표 이용기관중 554개 기관에게 OC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12월부터는 부가통신사업실(VAN 사업부의 전신)의 지로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전송으로도 수납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매체를 다양화하였다.

(1) 우편수취

우편수취란 수납처리된 장표와 지로입금통지서를 자금이체일에 수납기관의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이다.

(2) 직접수취

직접수취는 수납기관이 지정한 당원의 본부 또는 지부에서 장표 등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서울은 3개 파출분소에서 자금이체일에, 지방은 당원 지부

에서 자금이체 익영업일에 수취할 수 있으며 OCR서비스는 직접수취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조회검색

당원이 처리한 장표 및 결제관련자료 등을 전산파일,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관하여 참가은행, 수납기관과 납부고객 등의 문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조회검색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리스트와 마이크로필름 등을 이용한 수작업처리체제였으나 1987년 PC와 지로처리용 컴퓨터를 연결하여 온라인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조회응답하고 있으며, 1995년 9월에는 부산지부에도 온라인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산·경남지역에서 의뢰하는 조회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 처리절차

각행 점포에서 수납된 지로장표가 지역별로 정해진 송달방법에 따라 당원 본부 또는 부산지부에 접수되면 장표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른 처리절차를 거쳐 자금이체일에 은행간 차액결제 및 수납기관에 수납명세내역 등을 통지한다.

지로장표 기계처리장면

가. 장표의 입력

OCR 및 정액OCR장표는 R/S로 장표의 컴퓨터처리부분에 인자된 지로번호, 금액 등을 판독하여 입력(Data Capture)하고 MICR장표와 표준장표(A, B양식)는 수작업에 의한 입력변환(Direct Key-in, D/K)방식에 의해 지로번호와 금액을 입력한다.

나. 장표의 분류

OCR장표는 발송이 불필요하므로 R/S Data Capture로서 장표처리가 종결되나, 여타 장표는 수납내역을 장표로 직접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납기관별

로 분류하여야 한다. 정액OCR 및 MICR장표는 다시 R/S를 이용하여 지로번호별(수납기관별)로 분류(Sort)하는 과정을 거치며, A장표는 수작업으로 분류하여 수납기관앞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계좌이체업무 처리흐름도(서울 및 서울상호교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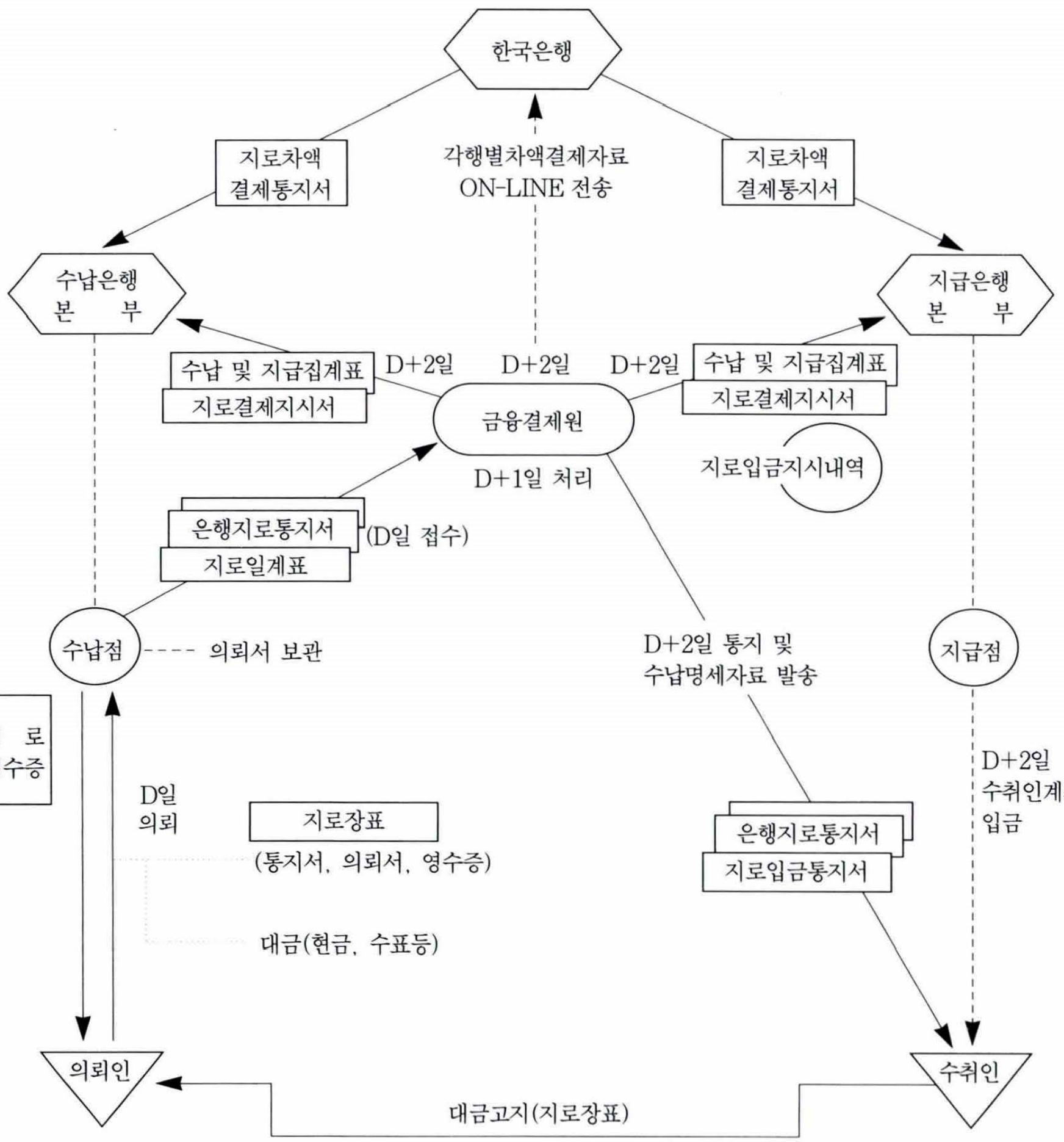

다. 자료의 집계 및 작성

R/S Data Capture 및 D/K하여 입력된 장표는 컴퓨터 처리과정을 거쳐 은행에 필요한 수납집계표 및 차액결제자료 등과 수납기관에 교부하여야 할 지로입금통지서, OCR서비스파일 등을 작성하여 지금이체일에 은행간 지로차액결제 및 수납기관앞 수납자금을 입금함으로써 처리가 종결된다.

3.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

가. 이용기관

일반계좌이체는 그 이용의 편리성과 경제규모의 확대 및 경제활동의 다양화 등 경제여건의 성숙으로 이용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실시 첫해에 612개이던 이용기관이 1986년에는 5,386개로 8.5배나 증가하였고 1995말에는 22,989개로 무려 15년만에 36.5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컴퓨터 및 PC의 보급확대와 Laser Printer로만 발행 가능하던 OCR장표를 소형 사무용 IJP(Ink Jet Printer)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수차례의 테스트와 시범실시를 한 후 1993년 7월부터 이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표4-2-12〉 자금유형별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

구 분	1990		1995		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보 험 료	15,457(17.1)	1,100,522(12.2)	25,381(9.1)	3,036,435(11.3)	64.2	175.9
물 품 대 금	43,352(47.8)	3,545,555(39.3)	80,495(28.9)	9,722,089(36.1)	85.7	174.2
각종사용료	9,111(10.0)	2,518,271(27.9)	121,788(43.8)	9,659,475(35.9)	1,236.7	283.6
부금 및 회비	7,441(8.2)	405,668(4.5)	14,676(5.3)	1,665,595(6.2)	97.2	310.6
학 자 금	6,938(7.7)	747,952(8.3)	10,071(3.6)	1,763,446(6.5)	45.2	135.8
신 문 대 금	7,914(8.7)	31,721(0.3)	25,359(9.1)	186,148(0.7)	220.4	486.8
B 장 표	460(0.5)	669,461(7.4)	208(0.1)	802,443(3.0)	45.2	19.9
기 타	12(-)	8,419(0.1)	279(0.1)	75,393(0.3)	2,225.0	795.5
합 계	90,685(100.0)	9,027,569(100.0)	278,257(100.0)	26,911,024(100.0)	206.8	198.1

주: ( )은 점유율

안내 등으로 OCR장표 사용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OCR장표 이용기관이 1992년 816개에서 1995년에는 2,116개로 증가하여 기간중 전체 이용기관 증가율 35.9%를 훨씬 상회하는 159.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용기관은 상품판매회사, 보험사, 도시가스사 등의 대기업에서부터 신문지국, 학교, 건강식품판매회사 등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수납된 자금유형을 살펴보면 실시초기인 1980년대 초반에는 주로 물품판매대금과 보험료가 대부분이었으나 보험료는 상당량이 자동계좌이체로 전환되고 1990년대 들어 무선호출 및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과 각종 통신서비스의 이용확대로 현재는 각종 사용요금이 물품판매대금과 함께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나. 이용실적

일반계좌이체 이용기관의 증가에 따라 이용실적도 급격히 증가하여 실시 초기년도인 1981년 784천건 49,166백만원에서 1985년도에는 29,185천건 1,548,801백만원, 1990년에는 90,685천건 9,027,569백만원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278,257천건 26,911,024백만원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1994년 12월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로 도시가스요금 수납이용이 신규로 증가하고, 한국이동통신이 무선호출 및 이동전화요금 수납에 일반계좌이체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1995년에는 1994년에 비해 이용건수가 49.1%나 증가하였으며, 1996년 2월부터 데이콤이 시외전화요금을 일반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수납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큰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표4-2-13〉 일반계좌이체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건수	금액	연도	건수	금액	연도	건수	금액
1981	784	49,166	1986	39,369	2,085,060	1991	108,120	11,491,958
1982	2,818	206,190	1987	46,646	2,898,071	1992	129,241	14,130,406
1983	7,698	524,525	1988	57,952	4,050,104	1993	148,651	17,563,084
1984	16,762	1,018,892	1989	72,098	6,122,212	1994	186,591	22,045,457
1985	29,185	1,548,801	1990	90,685	9,027,569	1995	278,257	26,911,024

또한 수납기관의 전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각종 컴퓨터 사용의 일반화로 장표별 이용실적도 OCR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정액OCR과 MICR장표 실적이 1994년에 비해 각각 건수기준으로 9.4%와 3.3% 증가에 그친데 비하여 OCR장표는 76.9%나 증가하였으며, 전체업무량중에서도 72.3%나 차지하였다. OCR장표 사용의 증가 추세는 당원의 적극적인 권유와 이용기관의 호응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4-2-14〉 장표별 이용실적 (단위: 천건, %)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건 수	건 수	증감율	건 수	증감율	건 수	증감율
OCR	70,825(54.8)	81,530(54.9)	15.1	113,733(61.0)	39.5	201,180(72.3)	76.9
정액OCR	20,206(15.6)	25,597(17.2)	26.7	30,815(16.5)	20.4	33,726(12.1)	9.4
MICR	37,895(29.3)	41,197(27.7)	8.7	41,778(22.4)	1.4	43,141(15.5)	3.3
B장표	315(0.3)	327(0.2)	3.8	265(0.1)	-19.0	210(0.1)	-20.8
합 계	129,241(100.0)	148,651(100.0)	15.0	186,591(100.0)	25.5	278,257(100.0)	49.1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 )는 구성비, A장표는 해당장표종류에 포함

제3절 자동계좌이체업무

1. 개요

자동계좌이체제도는 수납기관과 납부자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해당 납기일에 납부자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자동출금하여 수납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편리한 제도이다. 납부고객은 한번만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매달 은행까지 대금을 납부하러 나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연체의 염려도 없게 된다. 또한 수납기관도 수납업무를 전산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납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도실시 초기에는 전화요금, 전기요금과 보험료 수납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납부자는 물론 수납기관의 편리성과 은행 및 당원의 처리 효율성으로 현재는 각종 요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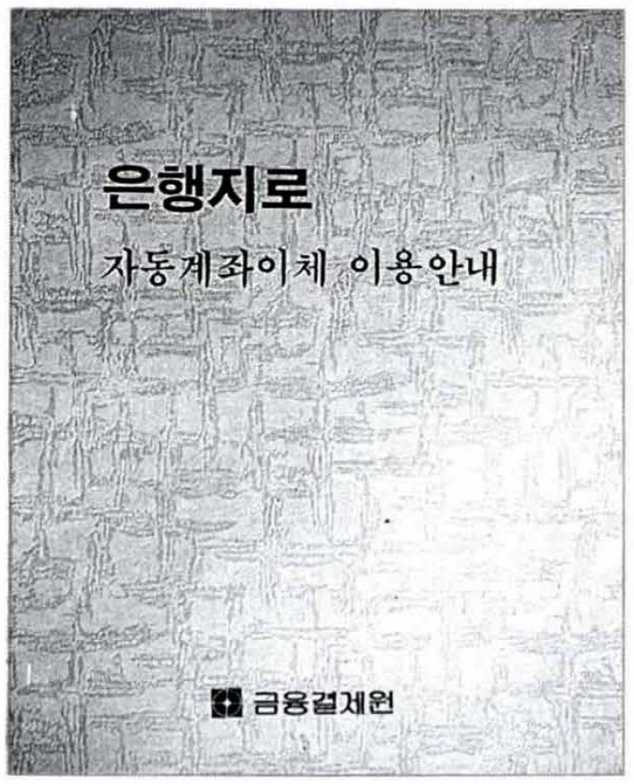

자동계좌이체 안내책자

납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제도 참가자 모두가 장표수납업무를 자동이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2-15〉 자동계좌이체 실시초기의 현황

수납기관	요금종류	승인일자	자동납부 신청접수	처리개시 일 자	자동납부신청자수 (1982년말)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대금	1981. 8. 7	1981. 8.	1981.11.	2,054명
한국전력	전기요금	1981.11. 6(계약)	1981.11	1982. 1	13,340명
롯데백화점	신용카드대금	1982. 4.16	1982. 5	1982. 5.	1,385명
한국통신	전화요금	1982. 5.28(계약)	1982. 6.	1982. 7.	24,092명

2. 처리절차

가. 자동납부 신청

자동계좌이체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납부 신청은 납부자의 거래은행에 비치된 표준서식이나 수납기관이 고객에게 안내시 송부한 신청서에 지로번호, 대금을 납부할 지정계좌번호와 수납기관의 고객관리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거래은행에서만 신청하여야 하는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1일부터는 수납기관에서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납부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995년에는 72개 수납기관이 당원으로부터 직접 접수 승인을 득하여 전체 신청건수의 25.5%에 달하는 262만건의 신규 자동납부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자동계좌이체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은행이 접수한 자동납부 신청은 주2회 당원에 접수되고, 당원은 이를 다시 수납기관별로 분류하여 주 2회 수납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신청내역을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수수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신청서 자체가 당원으로 송부되어 당원에서 신청서 내역을 입력변환하여 수납기관에 제공하였다. 그후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자동납부신청서 서식의 표준화 및 처리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1990년 12월 1일부터 은행에서 접수한 신청서 내역을 M/T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당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나. 자동계좌이체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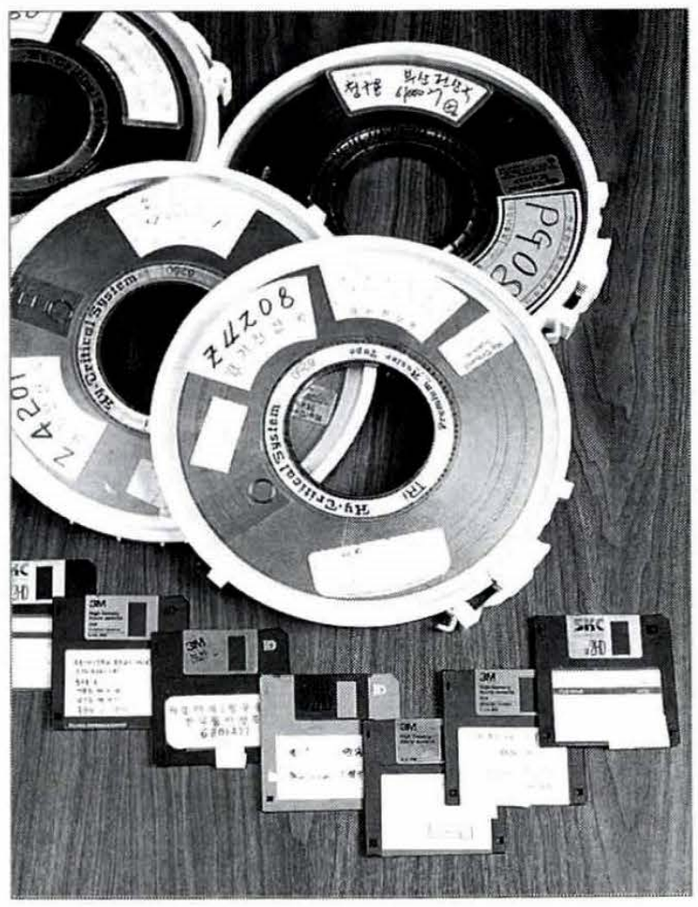

자동계좌이체 청구 M/T

자동계좌이체를 청구하는 수납기관은 납기일전 제3영업일 12:00까지 자동납부 고객에 대한 출금내역을 수록한 마그네틱테이프 등의 전산매체를 당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동계좌이체 의뢰

당원은 각 수납기관의 청구내역을 은행별로 분류하여 해당은행에 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지시를 한다. 출금지시는 카트리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왔으나 1995년말부터는 일부은행에 대하여는 일괄전송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은행에 대하여 일괄전송방식으로 전환하여 자동계좌이체처리의 신속화를 기할 예정으로 있다.

자동계좌이체업무 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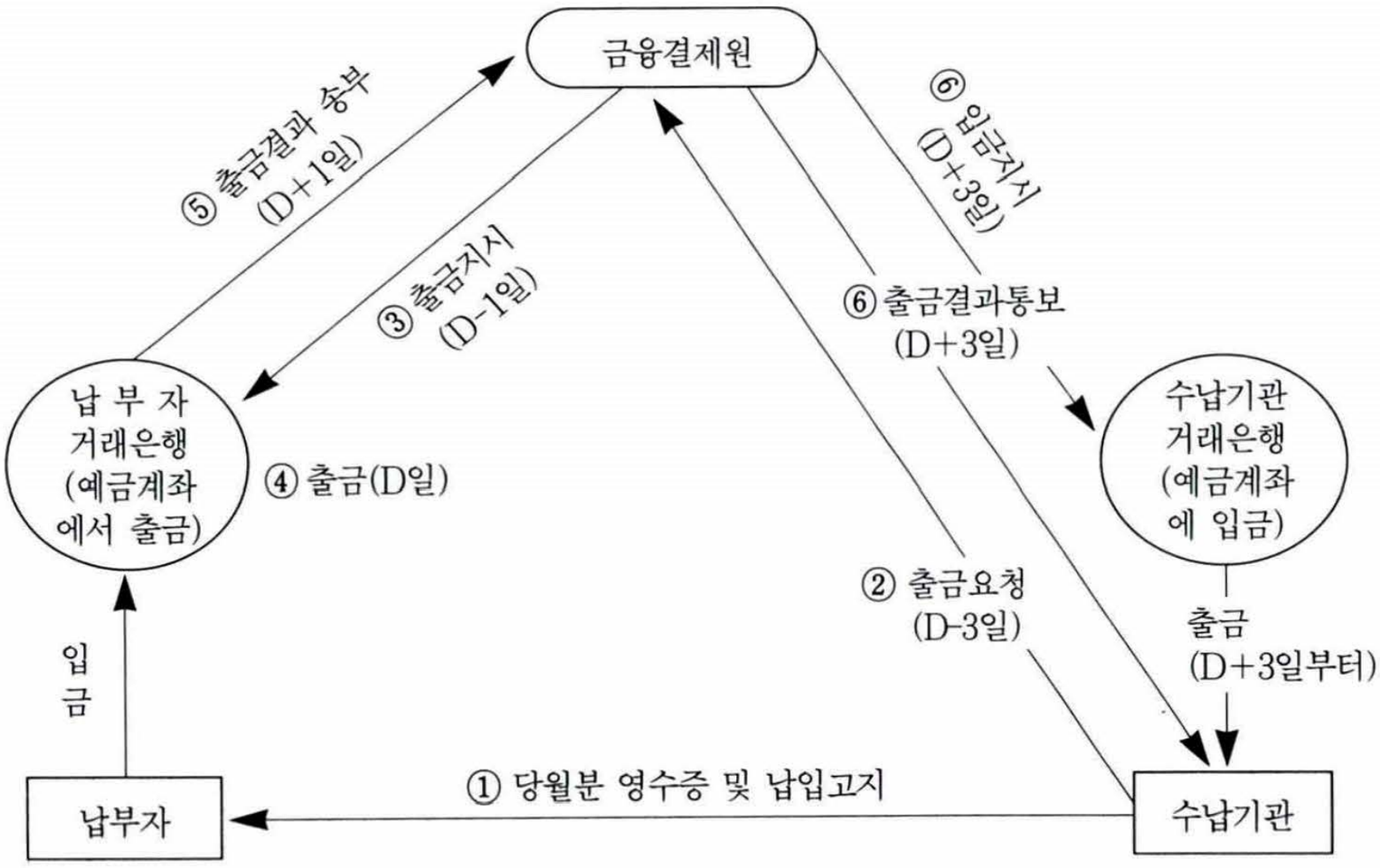

라. 자동계좌이체 출금결과 송부

참가은행은 당원의 출금지시에 따라 출금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출금여

부)를 납기일후 1영업일에 당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도 실시초기에는 출금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1982년 6월 1일부터는 출금불능분만 송부하도록 개선하였다.

당원은 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출금결과에 따라 수납기관별로 출금결과를 작성하고 차액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납기일후 제3영업일에 은행간 차액결제 및 수납기관의 예금계좌에 수납자금을 입금한다. 당원이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출금결과도 역시 1995년 5월 1일부터 출금불능분만 통보하고 있다.

3.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

가. 이용기관

1995년말 현재 자동계좌이체 이용기관은 246개로 1990년의 78개에 비하여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용기관의 71%가 넘는 175개기관이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편중이 심한 실정이다. 그러나 당원과 수납기관의 자료수수가 1995년말부터 일괄전송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향후에는 지방소재 이용기관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기관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공기관과 카드사, 백화점, 대기업의 전자, 자동차 등 판매회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유선방송사, 도서판매회사 등 그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수납된 자금의 유형을 보면 초기에는 전화·전기요금, 신용카드대금과 보험료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에는 일반계좌이체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요금 등의 각종 사용요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나. 이용실적

자동계좌이체 이용기관의 증가와 자동계좌이체제도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용실적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1981년 4백건 25백만원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1985년에는 1,520천건 41,220백만원, 1990년에는 33,157천건 1,339,654백만원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157,125천건 8,572,609백만원의 실적을 보였다. 제도 실시이후 매년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이용실적은 1993년부터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여 20%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

〈4-2-16〉 자금유형별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

구 분	1990년		1995년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전 기 요 금	847(2.6)	100,287(7.5)	23,536(15.0)	1,797,050(21.0)	27.8배	17.9배
전 화 요 금	21,761(65.6)	580,325(43.3)	67,196(42.8)	2,099,122(24.5)	208.8	261.7
통 합 공 과 금	3,125(9.4)	89,305(6.7)	-	-	-	-
도 시 가 스 요 금	-	-	817(0.5)	10,376(0.1)	-	-
이 동 통 신 요 금	35(0.1)	703(0.1)	22,717(14.5)	508,662(5.9)	649.1배	723.6배
리 스 료	25(0.1)	9,036(0.7)	171(0.1)	29,234(0.3)	584.0	223.5
신 용 카 드 대 금	877(2.7)	208,420(15.5)	2,874(1.8)	859,601(10.0)	227.7	312.4
물 품 판 매 대 금	15(-)	2,789(0.2)	2,043(1.3)	460,963(5.4)	136.2배	165.3배
보 험 료	5,446(16.4)	293,973(21.9)	33,920(21.6)	2,292,571(26.8)	522.8	679.9
부 금 · 적 금	1,025(3.1)	54,817(4.1)	2,881(1.8)	480,675(5.6)	181.1	776.9
기 타	-	-	970(0.6)	34,355(0.4)	-	-
합 계	33,157(100.0)	1,339,654(100.0)	157,125(100.0)	8,572,609(100.0)	373.9	539.9

주: ( )는 구성비

는데, 이는 1992년부터 보험사들을 비롯한 일부 수납기관이 개별은행 펌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원이 운영하는 자동계좌이체의 경우도 수납기관에서 직접 자동납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또한 수납기관과 당원간의 자료수수도 일괄전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처리기간도 단축할 예정으로 있어 현재 개별은행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납기관들의 상당수 업무량이 다시 당원 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계좌이체는 현대사회의 가장 편리한 대금결제제도로서 그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2-17〉 자동계좌이체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1981	0.4	25	1986	2,227	79,032	1991	51,105	2,298,005
1982	139	3,199	1987	3,230	155,260	1992	73,259	4,340,019
1983	463	10,151	1988	4,808	259,089	1993	98,746	5,947,700
1984	557	14,274	1989	14,655	652,847	1994	127,395	7,324,617
1985	1,520	41,220	1990	33,157	1,339,654	1995	157,125	8,572,609

제4절 대량지급업무

1. 개요

대량지급은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지급기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여러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편리한 제도로 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지급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대량지급업무는 가계당좌예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1977년 5월 16일 「가계당좌거래를 위한 급여계좌이체업무」로 시작하였다. 1981년 5월 1일에는 M/T에 의해서만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무명칭을 「계좌이체 M/T교환업무」로 바꾸었다가 1981년 7월 9일 M/T 작성체제를 갖추지 못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장표로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취인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시각도 이체일 10:00까지로 보완하는 한편 업무명도 「대량지급업무」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5년 9월 1일부터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 기업체에 확대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 지원금의 지급편의를 위해 개인연금신탁을 이용가능한 예금종목으로 추가하였다.

2. 처리절차

가. 대량지급 의뢰명세 제출

의뢰기관은 수취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을 수록한 대량지급의뢰명세를 이체지정일 제3영업일전 10:00까지 당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뢰명세는 M/T, F/D 이외에 1995년 12월부터 일괄전송이 추가되었으며, 제출기한도 1995년 4월 1일부터 제4영업일전에서 제3영업일전으로 단축하였다.

나. 이체대전의 입금

의뢰기관은 대량지급 이체대전을 이체지정일 2영업일전까지 거래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은행으로부터 급여자금결제보증을 받은 의뢰기관은

급여이체 의뢰분에 한해 이체지정일에 입금할 수 있다.

급여자금결제보증제도란 대량지급제도를 이용한 급여이체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로 이체의뢰대전은 원칙적으로 이체지정일 제2영업일전까지 입금시켜야 하나 급여지급자금의 경우 이체지정일에 입금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급여자금결제보증기간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은 5년, 기타기관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7개 이용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급여자금결제보증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

다. 수취인 계좌앞 입금

당원은 은행별 입금지시내역을 이체지정일 제1영업일전에 참가은행으로 송부하고 참가은행은 수취인이 이체지정일 10:00부터 출금이 가능하도록 입금조치하고 있다.

대량지급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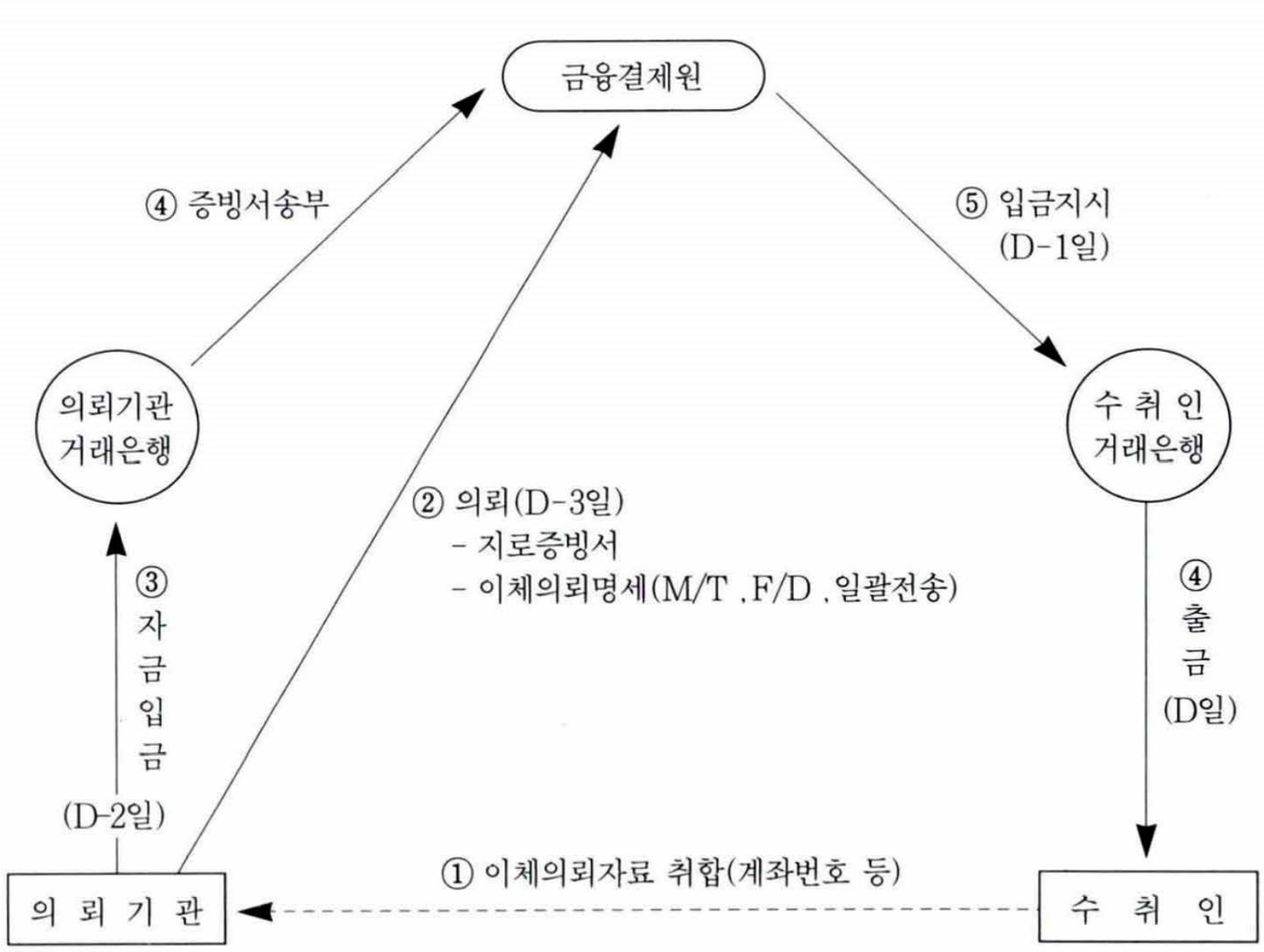

3. 이용기관 및 이용실적

가. 이용기관

대량지급 이용기관은 1995년말 현재 645개로 1990년의 547개에 비하여 17.9% 증가하였으며, 이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449개, 학교가 38개 로 공공기관이 전체 이용기관의 4분의 3인 487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자금의 종류는 급여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이용실적

대량지급 이용기관의 증가에 따라 이용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개별은행을 통한 급여이체가 대량지급제도의 편리성보다 보편화되어 있어 여타 업무에 비하여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4-2-18〉 대량지급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1977	3	233	1984	1,073	367,458	1991	4,728	3,446,963
1978	4	408	1985	1,790	600,193	1992	5,102	4,231,258
1979	3	439	1986	2,162	736,179	1993	5,691	4,997,437
1980	3	412	1987	2,670	981,120	1994	6,381	6,478,893
1981	17	4,318	1988	3,222	1,344,262	1995	6,825	7,819,923
1982	151	41,079	1989	3,870	1,975,407			
1983	418	145,697	1990	4,544	2,742,901			

〈4-2-19〉 자금유형별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

구 분	1990		1995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급여자금	4,234(93.2)	2,688,195(98.0)	6,551(96.0)	6,921,894(88.5)	54.7	157.5
기 타	310(6.8)	54,706(2.0)	274(4.0)	898,029(11.5)	-11.6	1,541.6
합 계	4,544(100.0)	2,742,901(100.0)	6,825(100.0)	7,819,923(100.0)	50.2	185.1

제5절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1. 개요

납부자자동계좌이체제도는 자기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수취은행)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원하는 기간동안 신청인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이체지정일에 수취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은행간 자동계좌이체제도로 1994년 4월 30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타행환으로 송금하거나 직접 수취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대신 거래은행에 한번만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나 정기적금 불입, 각종 회비의 납부 및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송금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수취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당좌, 가계당좌 및 기업자유예금 등 6개 예금중 하나여야 하므로 상기 예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적금, 부금, 연금신탁, 청약저축금 등의 불입시에는 수취은행에 별도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처리절차

가.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자자동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고객은 납부자자동이체신청서에 출금될 계좌번호, 입금할 수취인의 계좌번호, 금액, 이체지정일자, 이체기간등을 기재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기한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이체지정일전 제1영업일에서 제3영업일까지가 대부분이다.

나. 출금 및 입금처리

납부자의 거래은행은 이체지정일 제1영업일전에 지정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출금하여 그 내역을 당원으로 일괄전송하고 당원은 이를 수취은행별로 분류하

여 해당은행에 일괄전송하면 수취은행은 이체지정일 09:30까지 수취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3. 이용실적

제도의 편리성과 계속적인 홍보로 1994년 295천건 68,948백만원에서 1995년에는 1,325천건 293,153백만원으로 건수는 349.2%, 금액은 325.2% 증가하였다.

〈4-2-20〉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

구 분	1994		1995		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월	-	-	47	9,162	-	-
2월	-	-	59	11,418	-	-
3월	-	-	112	26,121	-	-
4월	-	-	69	13,524	-	-
5월	2	386	81	16,130	39.5	40.8
6월	42	11,686	142	34,137	238.1	192.1
7월	14	2,887	95	19,357	578.6	570.5
8월	20	4,128	102	21,110	410.0	411.4
9월	68	17,434	172	41,737	152.9	139.4
10월	32	6,381	120	25,258	275.0	295.8
11월	38	7,624	128	26,950	236.8	253.5
12월	79	18,423	198	48,249	150.6	161.9
합계	295	68,948	1,325	293,153	349.2	325.2

제6절 기타업무

1.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

전기요금수납이체제도는 한국전력, 참가은행 및 당원간에 체결된 「전기요금 수납대행에 관한 은행지로제 실시계약」과 「전기요금 수납대행계약(통합공과금 인수분)」에 의거 은행이 수납한 전기요금을 당원이 집계처리하여 한전의 거래 은행계좌로 수납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업무로 전자의 계약에 의한 것을 동력분 전기요금, 후자의 계약에 의한 것을 OCR전기요금이라 한다.

동력분 전기요금은 1977년 2월 1일 최초의 지로제도로 실시된 업무로 현재는 서울, 인천, 광명, 과천, 구리, 하남, 고양시 등 7개시에서 고지, 수납되는 전기요금장표를 당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OCR전기요금은 1994년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4년 11월 도입된 업무로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있던 요금중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합산하여 고지하는 장표를 처리하는 것으로 종전 통합공과금제도가 실시되던 전국 47개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이용실적은 전기요금의 특성상 큰 증감은 없으나 1989년 11월부터 통합공과금제도의 실시지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후 한전이 자체 처리하던 업무가 상당량 통합공과금에 흡수되었다. 이후 1994년 12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에 포함되어 처리되던 전기요금이 OCR전기요금으로 실시되어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4-2-21〉 전기요금수납이체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1977	7,817	118,877	1984	12,926	784,291	1991	3,420	1,378,925
1978	10,265	168,676	1985	13,415	852,827	1992	3,180	1,323,785
1979	10,827	264,842	1986	13,923	900,189	1993	2,930	1,651,495
1980	11,535	417,273	1987	11,783	925,228	1994	13,059(9,399)	2,145,677(212,654)
1981	12,171	590,790	1988	10,623	1,260,576	1995	64,460(60,105)	3,695,711(1,464,502)
1982	13,008	688,364	1989	2,729	1,194,710			
1983	13,067	721,309	1990	3,014	1,348,998			

주: ( )는 OCR 전기요금

(1) 동력분 전기요금

참가은행이 수납한 전기요금장표를 당원이 은행별로 분류, 집계하여 수납마감일로부터 4역일에 한전에 자금을 이체하여 주며, 여타 업무와는 달리 별도의 수납명세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별로만 집계하여 수납된 장표를 한전에 제공한다. 수납마감일은 월 5회(매월 5, 10, 18, 25, 말일)이며, 수납명세는 한전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다.

(2) OCR전기요금

참가은행이 수납한 OCR전기요금장표를 당원이 R/S처리하여 수납마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한전에 자금을 이체하여 주고 또한 수납명세내역을 M/T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업무로 수납마감일은 1994년 11월 업무개시시에는 매월 10, 20, 말일의 3회였으나 1995년 12월에 현재와 같이 월 4회(매월 5, 10, 25, 말일)로 변경되었다

2. 지방세수납이체업무

지방세수납이체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고지한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각행에서 수납하고 당원이 처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금고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제도로 1986년 5월 1일 서울과 5대 직할시 및 경기도 12개시의 재산세에 대해 실시하였다. 1988년 8월부터는 서울시의 자동차세, 1990년 11월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다가, 1991년 1월 서울시의 지로이용해지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등 여건의 변화로 1995년 5월까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산세수납의 지로제이용을 해지하

〈4-2-22〉 지방세수납이체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1986	5,080	286,088	1991	2,180(257)	162,362(8,010)
1987	5,256	303,912	1992	1,820(305)	154,998(9,281)
1988	7,887	426,393	1993	2,324(662)	187,914(19,870)
1989	9,052	540,975	1994	2,042(892)	154,628(26,772)
1990	8,105(44)	618,289(1,383)	1995	990(990)	35,333(35,333)

주: ( )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용실적

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인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만 지로제로 처리하고 있다. 처리절차는 참가은행이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수납한 지방세장표를 당원이 분류집계하여 익월 15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에 자금을 이체하여 주고 처리된 장표는 해당기관에 송부한다.

1995년말 현재 66개 지방자치단체의 108개 징수기관이 세외수입금인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재산세 등의 이용해지로 1990년 8,105천건 618,289백만원에서 1995년 990천건 35,333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3. 통합공과금수납이체업무

통합공과금수납이체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사용요금, 폐기물수집수수료 및 TV수신료를 한장의 고지서로 통합고지하고 수납된 장표를 당원이 R/S처리하여 각 요금별 징수기관의 계좌로 수납자금을 입금시켜 주는 제도로 1983년 10월 1일 서울시 용산구, 동작구와 대전시, 경주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동 제도는 수납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계량기 검침 및 수금을 위한 호별 방문에 따른 개인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1983년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실시지역을 계속 확대하여 1990년에는 도청소재지 및 인구 40만 이상의 시지역으로 그리고 1994년 12월 동 제도가 폐지될 당시에는 전국 47개 시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1994년 통합공과금제도를 이용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수납하고 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가 자사 요금의 개별적 수납을 추진하자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문제 등으로 동 제도는 1994년 12월 26일 폐지되었다.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있던 6개 요금중 전기요금과 TV수신료는 합산고지하여 당원이 처리하는 OCR전기요금으로, 도시가스요금은 일반이체로 흡수되었고 상하수도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금고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폐기물수집수수료는 19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완전히 폐지되었다.

1983년 3개시에서 처음 실시된 통합공과금수납이체업무는 1986년 5개시, 1988년 7개시, 1990년 18개시, 1992년 46개시 그리고 1993년에는 47개시로

확대되었다. 1994년 제도 폐지시에는 47개시 109개 시·군구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71,227천건 2,633,273백만원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4-2-23〉 통합공과금수납이체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1983	506	14,776	1987	14,607	369,838	1991	56,022	1,725,383
1984	3,470	79,184	1988	17,402	480,950	1992	65,007	2,155,149
1985	3,509	87,040	1989	40,878	1,086,881	1993	77,875	2,664,528
1986	3,411	92,678	1990	49,582	1,418,668	1994	71,227	2,633,273

4. 채권자계좌이체업무

채권자계좌이체제도는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채권자에게 대금지급시 채권자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시켜 주는 제도로 1979년 4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부터 지방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에서도 이체를 의뢰받은 은행이 자행 온라인 입금 또는 타행환송금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도록 바뀜에 따라 당원이 처리하던 채권자계좌이체업무는 폐지되었다.

1979년 29천건 164,161백만원이던 이용실적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제도폐지 전년도인 1994년에는 228천건, 2,904,628백만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지급대금의 특성상 건당 금액도 12백만원에 달하였다.

〈4-2-24〉 채권자계좌이체 이용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연 도	건 수	금 액
1979	29	164,161	1985	92	423,586	1991	178	1,691,348
1980	46	267,061	1986	105	458,843	1992	176	1,807,729
1981	54	333,255	1987	120	531,653	1993	197	2,203,141
1982	70	339,811	1988	133	613,306	1994	228	2,904,628
1983	73	345,805	1989	140	863,313	1995	32	377,017
1984	79	430,933	1990	172	1,179,398			

제3장 금융전산망업무

제1절 개요

금융전산망사업은 정부가 2000년에는 정보화사회를 정착시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한 국가 5대 기간전산망사업 중의 하나로 시작되어 금융전산망 추진기본방향이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초까지 은행전산화는 본·지점간을 연결하는 온라인망을 구축·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컴퓨터 및 통신산업의 발달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로서 은행간전산망(Inter-Bank Network)을 구축하게 되었다. 각 참가기관 전산시스템과 당원 전산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객의 컴퓨터는 공중회선교환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으로 연결함으로써 각종 금융거래 및 금융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당원은 고객의 금융기관 이용도 제고와 동시에 금융기관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8년 7월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시스템, 1989년 4월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 그리고 1989년 12월부터 타행환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또한 홈뱅킹, 펌뱅킹 및 EFT/POS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제2절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업무

1. 개요

CD(Cash Dispenser)공동업무는 각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과 당원에 설치된 중계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을 직접처리하는 업무로써 1960년대말 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개발되어 1970년초부터 전세계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CD공동업무의 도입목적은 먼저 카드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보완기능을 하며 금융기관에서의 DIY(Do It Yourself) 뱅킹시스템 도입여건의 조성과 개별 금융기관의 CD/ATM의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기존 전산자원 및 제도를 공동이용토록 하여 과열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거래의 빈도가 높은 소액의 현금지급 거래를 창구업무에서 분리함으로써 점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더불어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금융기관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고객의 측면에서도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CD를 이용하여 시간과 이동거리를 절약하고 통장 및 도장 없이도 간단한 기계조작만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원과 금융기관들은 은행에서 사용중인 이기종 컴퓨터간의 접속을 통한 기술축적으로 금융전산망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고, 펌뱅킹, 홈뱅킹 등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필요성에 따라 당원은 1986년 7월 16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2. 추진경위

가. 시스템개발 및 구축 단계

금융전산추진위원회에서는 CD공동이용을 위하여 우선 1986년 9월까지 시중은행에서 사용중이던 JIS-Ⅱ형 현금카드DML M/S(Magnetic Stripe) 부

착위치, 코딩 포멧 등을 국제규격(ISO규격)으로 표준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금카드 발급기를 공동이용토록 하였다. 당원에서도 1987년 3월 현금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사양을 제정하는 한편 동년 6월 전문양식, 전문코드 등 표준화 사항을 결정하여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7년 3월 구체적인 CD공동업무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예금을 취급하는 당원의 사원 및 준사원은행(당시 24개행) 전체의 참가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최초 CD공동이용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인력은 43명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원에서 32명, 농협외 10개은행에서 11명을 파견받아 구성하였고, 운영요원 7명은 당원에서 지원하였다.

1987년 5월 20일에는 CD 공동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수립하여 통신장비를 도입, 중계센터와 각행 전산센터간을 통신회선으로 접속하여 공동이용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였다. 동년 6월 30일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CD 공동이용시스템 기본설계서를 확정하여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래밍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CD공동업무 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각각 1988년 2월 및 4월에 제정함으로써 CD공동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인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CD이용 모습

CD공동이용시스템 네트워크구성도

나 . 도입초기단계

CD공동업무는 1988년 4월 최초로 7개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한미) 및 5개 국책은행(농협, 기업, 국민, 외환, 주택)의 서울 소재 12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후 동년 5월 시범 실시 은행의 서울소재 전 점포로 확대하였으며, 7월에는 동 은행의 전국 전 점포에

서 실시하였다. 1988년 10월에는 서울소재 12개 은행 이외에 10개의 지방은행이 CD공동업무에 참가하여 해당지역 금융기관 이용고객들의 CD이용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년 6월 축협중앙회, 1990년 3월 대동은행 및 동남은행이 신규로 CD공동업무에 참여하였다.

다. 참가기관 확대 및 시스템 안정화 단계

1991년에는 수협중앙회(2월), 한국장기신용은행(6월), 동화은행(11월), 하나은행(11월), 및 보람은행(12월)이 신규로 CD공동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은행이 CD공동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은행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중계센터와 참가은행간 통신프로토콜을 X.25로 표준화하여 기존의 다양한 프로토콜사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였다. 업무량 측면에서는 초기의 대폭적인 증가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은행 이용고객의 CD공동업무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었다.

라. 확대실시단계

금융電算서비스 대폭개선

農水畜協도 CD機로 他行換

이용시간 하오10시까지 연장

他은행 발행수표도 送金가능

오는 6월1일부터 우체국과 농·수·축협에서도 현금자동인출기(CD)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고 예금도 인출할 수 있게된다. 또 현재 상오 9시30분부터 하오 4시30분까지로 한정돼있는 CD기 이용시간도 상오8시부터 하오10시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타행환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한국은행은 오는 5월말까지 우체국·농·수·축협의 전산망과 금융전산제원의 금융기관 공동전산망이 연결되고 전산표로그램도 개선돼 오는 6월부터는 타행환송금, CD기 이용, 자동응답서비스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체국과 농·수·축협의 전국 6천7백43개 점포도 금융전산망에 연결돼 전국에서 금융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점포수는 기존의 5천9백10개에서 1만2천6백53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따라 은행이 없는 농어촌지역 주민도 도시주민들과 마찬가지의 금융서비스를 받게 된다. [孫東榮]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에만 국한되었던 초기의 CD공동이용서비스는 이후 이용시간 및 서비스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은행이용고객들이 은행의 영업시간 이후에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공공장소에 CD/ATM을 설치하여 은행 영업시간 종료후에도 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점외 CD/ATM 공동망을 구축하여 1993년 9월 23일 실시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계 신용카드의 CD공동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그 첫단계로 BC 카드를 대상으로 기존의 서비스에 현금서비스 업무를 1993년 9월 추가하였다. 곧이어 외환 및 장은 비자카드사가 11월에 동 서비스에 참가하였으며 국민, 수협, 축협, 한미, 동남, 하나, 전북은행 등도 동 현금서비스 업무에 참가함으로써 전문계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전 은행계 신용카드사(31개은행, 4개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2월에는 타행 CD를 이용하여 동행 및 타행간 자금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좌이체서비스를 CD공동업무에 추가함으로써 고객이 기존의 송금에

〈표4-3-1〉 현금지급서비스 참가기관 현황

구 분	참 가 기 관
1988	농협, 기업, 국민, 주택,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한미, 지방은행(10개)
1989	축협
1990	동남, 대동
1991	수협, 장신, 동화, 하나, 보람
1993	평화
1995	산업, 우체국, 농·수·축협 회원조합
계	33(3)개 기관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이용시간에 있어서는 1995년 9월부터 고객이 영업시간외에도 은행의 365일 코너에 한하여 CD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평일 기준 09:30-17:00에서 08:00-22:00로 6시간 30분 연장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에도 산업은행(1995년 4월), 우체국, 농·수·축협 회원조합(95년 6월)이 CD공동업무에 참가함으로써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 및 도서벽지에서도 CD를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로는, CD/ATM 의 보급확대 및 기기의 성능향상과 더불어 현금입금 등 다양한 서비스의 추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제2금융권과의 연결을 통한 서비스도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3. 서비스 내용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지급 및 잔액조회가 있는데 지급업무에는 계좌에서의 현금지급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가 있으며 잔액조회업무에는 계좌의 잔액조회,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잔액조회가 있다.

초창기 CD공동업무는 은행영업시간 중에만 운영하였으나 1995년말 현재 08:00~22:00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예금의 요구불계좌 거래고객은 CD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995년말 현재 수출입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33개 은행과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참가하

고 있다.

현금자동인출기의 현금지급의 경우 1회 최고거래금액은 70만원, 계좌이체의 경우에 출금한도는 1천만원 미만에서 은행별로 상이하며 입금한도는 1천만원까지로 하고 있다. 다만, 점외 CD지급의 경우 최고 거래금액은 30만원이다. 현금자동인출기의 1일 연속 거래횟수/금액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4. 업무량 추이

초기에는 CD공동업무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업무량이 미미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이용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4년에는 신규업무의 추가 등으로 급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3-2〉 CD공동이용업무 처리실적 (단위: 천건)

구 분	잔액조회	현금지급	현금서비스	점외CD	계좌이체	합 계
1988	1,377	4,536	-	-	-	5,913
1989	4,138	11,431	-	-	-	15,569
1990	5,729	14,858	-	-	-	20,587
1991	7,411	19,590	-	-	-	27,000
1992	9,695	27,965	-	-	-	37,660
1993	12,795	39,170	1,128	141	-	53,234
1994	26,506	58,135	10,226	3,745	4,060	102,672
1995	52,473	84,311	19,371	14,796	11,940	182,891

5. 향후 전망

컴퓨터 및 통신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통합된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대고객접점(Delivery Channel)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전반적으로 화폐의 의미가 장표위주(Paper-based)에서 전자부호의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종이화폐가 점차 소멸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결제접점이 담당했던 역할을 새로운 결제접점이 대신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은행점포의 역할을 앞으로는 ATM이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TM이 현재와 같은 단순 입출금 뿐만 아니라 여타 대출 및 예금 업무의 취급도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부스시에 소재한 헌팅턴은행은 다기능ATM을 이용해 연중무휴로 여·수신 업무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자동인출기로 번역되어왔던 ATM은 은행자동거래기로 개념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4-3-3〉 우리나라 CD/ATM 설치 추이 (단위: 대,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5,150	7,191	9,720	12,484	18,192	26,23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가율)	(36.2)	(39.6)	(35.2)	(28.4)	(45.7)	(44.2)
CD	5,128	7,167	9,659	12,296	17,047	22,799
〈비중〉	〈99.6〉	〈99.7〉	〈99.4〉	〈98.5〉	〈93.7〉	〈86.9〉
(증가율)	(36.5)	(39.8)	(34.8)	(27.3)	(38.6)	(33.7)
ATM	22	24	61	188	1,145	3,432
〈비중〉	〈0.4〉	〈0.3〉	〈0.6〉	〈1.5〉	〈6.3〉	〈13.1〉
(증가율)	(8.3)	(9.1)	(154.2)	(208.2)	(509.0)	(199.7)

그러나 이러한 ATM의 역할도 고객과 보다 가까운 접점의 등장으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ATM거래의 많은 부분이 현금거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소지가 필요없는 선불, 직불, 후불접점의 활성화는 ATM의 비중을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업무

1. 개요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공동업무란 고객이 전자식(MFC) 전화기, 팩시밀리 또는 PC를 이용하여 당원의 중계센타에 금융거래관련 정보를 조회하면 음성, 문자, 화면 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1995년말 현재 전국 31개 은행, 우체국, 그리고 4개 은행계 신용카드사가 당원을 중계센터로 하여 ARS시스템을 공동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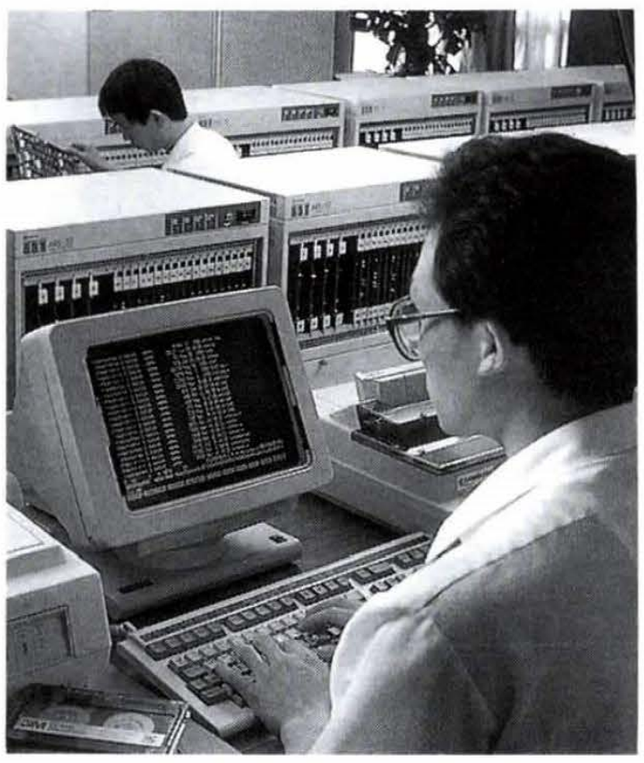
ARS공동운용시스템 조작장면

자동응답서비스 공동운용시스템은 당초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1987년 3월 "금융전산망 1987년도 기본계획" 수립시 각행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였으나, 경비절감 및 전국 이용확대의 용이성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의한 신규 수익원 창출, 대고객 편의 증진, 전화 및 창구 조회업무의 경감에 따른 점포운영의 합리화, 선진 금융서비스의 조기실현 등을 이유로, 또한 고객측면에서는 장소와 지역의 구애없이 참가기관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편리성과 더불어 다수의 참가기관이 공동운용을 희망함에 따라 1987년 9월 18일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참가기관 공동전산망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ARS공동운용시스템은 당원 ARS센터와 각 참가기관 전산센터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각종 매체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금융기관 창구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그에 따른 참가기관 이용도 제고는 물론 향후 홈뱅킹, 펌뱅킹 및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EFT/POS) 실시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 Structure)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추진경위

가. 개발 및 구축단계

전화기 등을 이용한 음성응답서비스의 공동운용 추진방침에 따라 당원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1987년 9월 22일 ARS공동운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8년 1월 시스템 구성 및 개발, 네트워크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동년 3월 이사회에서『ARS 공동운영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2명의 당원 인력 및 각행의 담당자들로 개발팀을 구성하고 음성처리장치, 중계컴퓨터, 메시지 교환장비 및 디지털 전자교환기 등을 도입, 각 은행 네트워크를 접속하여 ARS 공동운용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1988년 10월 25일에는『ARS공동운용시스템 기본설계서』를 확정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작업 및 테스트를 실시하고 아울러 금융전산망 통신프로토콜의 표준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또한, ARS공동업무규약(1989년 4월) 및 시행세칙(1989년 3월)을 제정하여 ARS 공동업무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인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나. 도입초기

개발 및 구축단계에서의 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되어 1989년 4월 19일 서울지역 13개 은행(농협,축협,기업,국민,주택,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신한,한미)을 대상으로 음성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ARS이용에 필요한 이용신청서 제출의 번거로움과 고객인지도 미미 등의 사유로 도입초기에는 업무량이 당초 계획에 비해 극히 저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말 지방소재은행의 ARS공동업무 신규참가 및 고객의 인지도 향상 등으로 인하여 1990년부터 이용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 8월 ARS 이용매체의 확대를 위하여 종전의 음성응답서비스(Audio Response Service)를 자동응답서비스(Automated Response Service)로 변경하여 음성 이외에 문자, 이미지 등의 정보를 PC, FAX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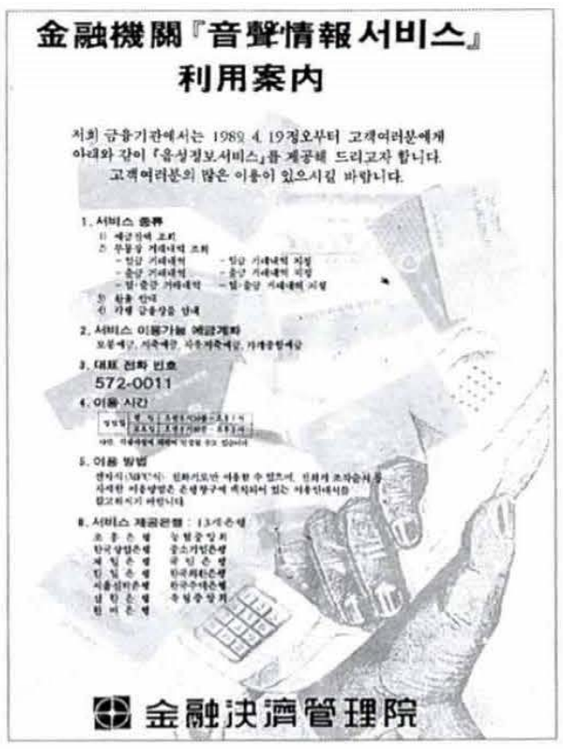

ARS업무실시안내 포스터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고객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조회업무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통지서비스 등 신규업무의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용고객의 범위를 서울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대상지역 선정작업도 아울러 진행하였다.

다. 확대단계

자동응답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말부터 1993년의 기간을 통하여 서비스 매체 및 종류와 대상지역 등의 확대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던 실시지역을 1990년 12월 전국 주요 10개 지방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제주)로 확대하여 지방의 금융기관 이용고객도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사무자동화의 진전 등으로 일반화된 FAX를 통한 통지서비스를 서울 및 지방 5개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PC를 통한 서비스도 서울지역에서 동일 시기에 실시하였다. 1992년 1월에는 동행내 계좌이체가 실시되어 고객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나 PC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PC서비스는 1993년 4월 ARS 지방네트워크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 주요 10개 도시에서도 실시되었다.

自己앞수표 事故조회·申告
은행안가도 計座이체 가능
金融결제원, 自動서비스개시
전화를 이용한 수표조회 및 사고신고서비스 개시

또한 수표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를 1992년 1월부터 개시하여 수표사용자들에게 분실 또는 도난 수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조회시간도 수표이용에 편리하도록 1995년 하반기부터 24시간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였고, 1996년 1월부터는 수원, 천안, 포항, 울산 등 4개 지역에도 확대실시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양적인 확대와 이용매체의 다양화로 고객에게 금융거래의 편의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전환단계

1993년 이후에는 기존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개별은행의 자체 ARS시스템의 구축요구가 점차적으로 증폭됨에 따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개별은행의 ARS시스템의 구축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자동응

답서비스가 당원의 ARS공동운용시스템과 개별은행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개별ARS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개별은행의 ARS시스템 구축허용에도 불구하고 ARS공동운용시스템에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신규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참가기관 확대로 1995년말 현재 35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표4-3-4〉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업무 참가기관 현황(1995년말 현재)

구 분		참 가 기 관
사 원 은 행	15개	농협, 기업, 국민, 외환, 주택, 조흥, 상업, 한일, 제일, 서울,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
준사원은행	16개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장기,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축협, 수협, 하나, 보람, 평화, 제주
특별참가기관	4개	우체국, 농·수·축협 회원조합

또한, 1995년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ARS공동운용시스템의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개별은행의 다양한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기존의 안내업무도 개별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적용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12월에는 종전 09:30~19:00까지의 운영시간을 각행이 원하는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서비스 내용

자동응답서비스는 크게 조회, 안내, 이체, 통지 업무로 구분되며, 전화, PC, FAX 등을 주요매체로 하고 있다. 조회업무에는 자기앞수표, 가계수표의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접수, 무통장거래내역 및 통지조회가 있으며 일정한 시간 및 조건에 의한 통지업무가 있다. 이외에 환율 및 금융상품안내 서비스와 고객의 자금이체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및 사용매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3-5〉 자동응답서비스의 종류와 사용매체

서비스 구분			내 용	사용매체		
				TEL	FAX	PC
조회업무	잔액조회		서비스요구 시점의 잔액	○	·	○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사고조회	서비스요구 시점의 자기앞수표 사고유무 조회	○	·	○
		사고신고접수	수표 사고신고 접수서비스	○	·	○
	무통장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무통장거래로 입금된 최종 5건	○	·	○
		출금내역	무통장거래로 출금된 최종 5건	○	·	○
		입·출금내역	무통장거래로 입·출금된 최종 5건	○	·	○
		입금지정내역	무통장거래로 입금된 고객지정 5건	○	·	○
		출금지정내역	무통장거래로 출금된 고객지정 5건	○	·	○
		입·출금지정내역	무통장거래로 입·출금된 고객지정 5건	○	·	○
	통지조회	시간재통지 요구조회	통지서비스 중 시간통지를 받는 고객이 전화 또는 FAX를 이용하여 재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서비스	○	○	○
		건수재통지 요구조회	통지서비스 중 건수통지를 받는 고객이 전화 또는 FAX를 이용하여 재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서비스	○	○	○
		업무종료후 재통지요구조회	통지서비스 중 업무종료후 통지를 받는 고객이 전화 또는 FAX를 이용하여 재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서비스	○	○	○
		익영업일 재통지요구조회	통지서비스 중 익영업일 통지를 받는 고객이 전화 또는 FAX를 이용하여 재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서비스	○	○	○
		환율재통지 조회	환율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재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의 서비스	·	○	○
통지업무	수시통지		단위 시간마다 통지계약을 한 가입자에게 통지내용이 있으면 통지	○	○	○
	건수통지		단위 시간마다 통지계약을 한 가입자의 통지건수가 일정량 이상 도달할 경우 통지	○	○	○
	업무종료후통지		업무종료 후 일괄적으로 통지	○	○	○
	익영업일통지		당일 발생한 거래내역을 익일 통지	○	○	○
	환율통지		환율 통지계약을 한 가입자에게 당일 환율을 통지	·	○	○
안내업무	환율안내		통화별 대고객 환율 및 집중 고시율	○	·	○
	금융상품안내		금융상품안내	○	·	○
이체업무	이체		서비스 요구 시점에서 고객의 요구계좌로 이체	○	·	○
	이체확인		이체된 내역 중 최종 3건	○	·	○

4. 업무량 추이

ARS공동업무 이용량은 1989년 4월 이래 매년 연평균 약 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융조회 부분에 집중(약 90%)되어 있다. 그리고, 안내 및 통지서비스는 그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수표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서비스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4-3-6〉 ARS공동업무 처리실적 (단위: 천건)

구 분	잔액조회	무통장거래 내역조회	수표조회 및 사고접수	계좌이체	안 내	통 지	신용카드	계
1989	1,108	1,813	-	-	116	-	-	3,038
1990	3,258	6,453	-	-	244	-	254	10,211
1991	8,109	14,563	-	-	502	2	1,688	24,864
1992	11,500	21,026	205	44	583	490	2,518	36,366
1993	15,813	27,826	308	57	590	441	4,508	49,543
1994	21,313	33,639	647	82	561	335	6,467	63,0447
1995	28,025	39,138	1,384	102	628	263	6,417	5,957

주: 1989~1990년 합계에는 지로번호 조회건수 포함

5. 향후 전망

1980년대 후반부터 CD, ARS 및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한 계좌이체가 시행되는 등 소액결제의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전자결제수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참가기관은 독자적인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홈뱅킹 차원에서 독자적인 ARS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소매금융(Retail)업무에 특화, 고객과의 릴레이션쉽(Relationship) 강화에 의한 판매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소매금융 전략차별화를 가능케 해 주는 것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활용인데 전화기 및 PC를 이용한 홈뱅킹과 ATM를 이용해 고객접점(Delivery Channel)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종래에 트랜잭션서비스(Transaction Service)를 제공하는 매체였지만 현재는 선진은행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등 서비스내용의 충실화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업무효율화를 위해

ATM, PC, 전화 등에 의한 전자결제가 은행점포의 역할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자, 음성, 영상 등 복수 매체를 통합,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른바 혼합매체를 이용한 서비스의 연구·실험도 일부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에 게임기 정도로만 인식된 PC가 지금은 비지니스 및 일상생활에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지금은 많은 소비자들이 전화 및 PC를 통한 상품구입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PC보급의 일반화는 금융기관의 고객유치를 위한 홈뱅킹업무의 개발을 촉진시켰으며, 또한 홈뱅킹의 주 이용매체도 전화기에서 PC로 변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원에서는 참가기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 수용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각 참가기관의 개별 요구업무와 다수의 참가기관이 관련된 공통의 신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매체면에서는 전화 서비스와 PC 서비스를 분리 또는 차별화함으로써, 동시 추진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PC는 향후 ARS의 주요 이용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장성(Scalablity)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고객 홍보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ARS공동운용시스템 전체적으로 이용성을 향상시켜 ARS시스템 이용률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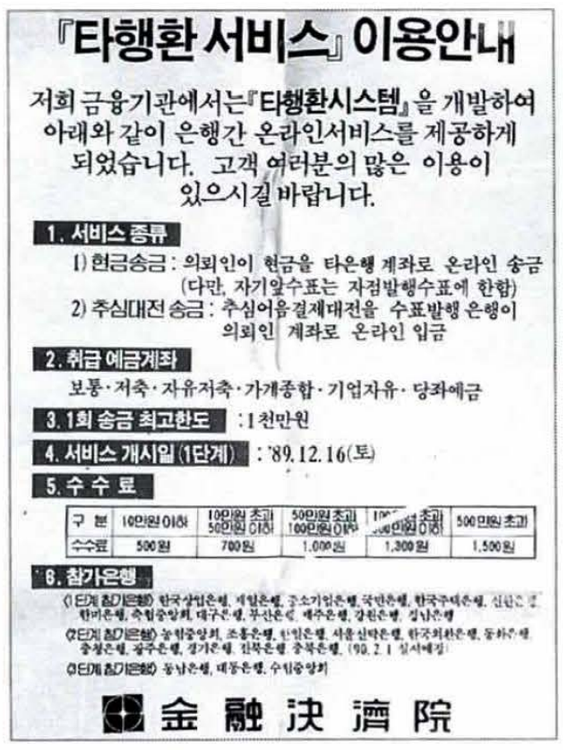
『타행환 서비스』 이용안내

저희 금융기관에서는『타행환시스템』을 개발하여 아래와 같이 은행간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서비스종류
1) 현금송금 : 의뢰인이 현금을 타은행 계좌로 온라인 송금 (다만, 자기앞수표는 자점발행수표에 한함)
2) 추심대전 송금 : 추심어음결제대전을 수표발행 은행이 의뢰인 계좌로 온라인 입금

2. 취급 예금계좌
보통·저축·자유저축·가계종합·기업자유·당좌예금

3. 1회 송금 최고한도 : 1천만원

4. 서비스 개시일 (1단계) : '89.12.16(토)

5. 수수료

구 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수수료	500원	700원	1,000원	1,300원	1,500원

6. 참가은행
(1단계 참가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신탁은행, 한미은행, 축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2단계 참가은행)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한국외환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광주은행, 경기은행, 전북은행, 충북은행, ('90. 2. 1 실시예정)
(3단계 참가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수협중앙회

金融決濟院

타행환업무실시안내 포스터

제4절 타행환공동망업무

1. 개요

타행환공동망업무는 당원 중계시스템과 각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상호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참가은행의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송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당원에서는 1988년 7월 타행환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여 1989년 12월부터 타행환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였다.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은 은행

간 송금 및 조회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기존의 전산자원과 조직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및 대고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자수입 이외의 수익원을 갖게되었다. 고객으로서도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및 광역화로 은행이용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제거됨으로써,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금결제 및 자금이동이 빨라짐에 따라 가계 및 기업 등의 자금운용관리가 쉬워졌다.

2. 추진경위

가. 개발 및 구축단계

당원의 시스템과 각행의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데이터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거래은행과 지역에 관계없이 즉시 송금 및 추심이 가능토록 하여 대고객 서비스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선진금융기법도입을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7년 9월 타행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988년 2월 19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위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당원에서는 1988년 7월 타행환시스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타행환시스템 구축추진계획에 따라 당원에서는 10명의 개발인원이 투입되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

타행환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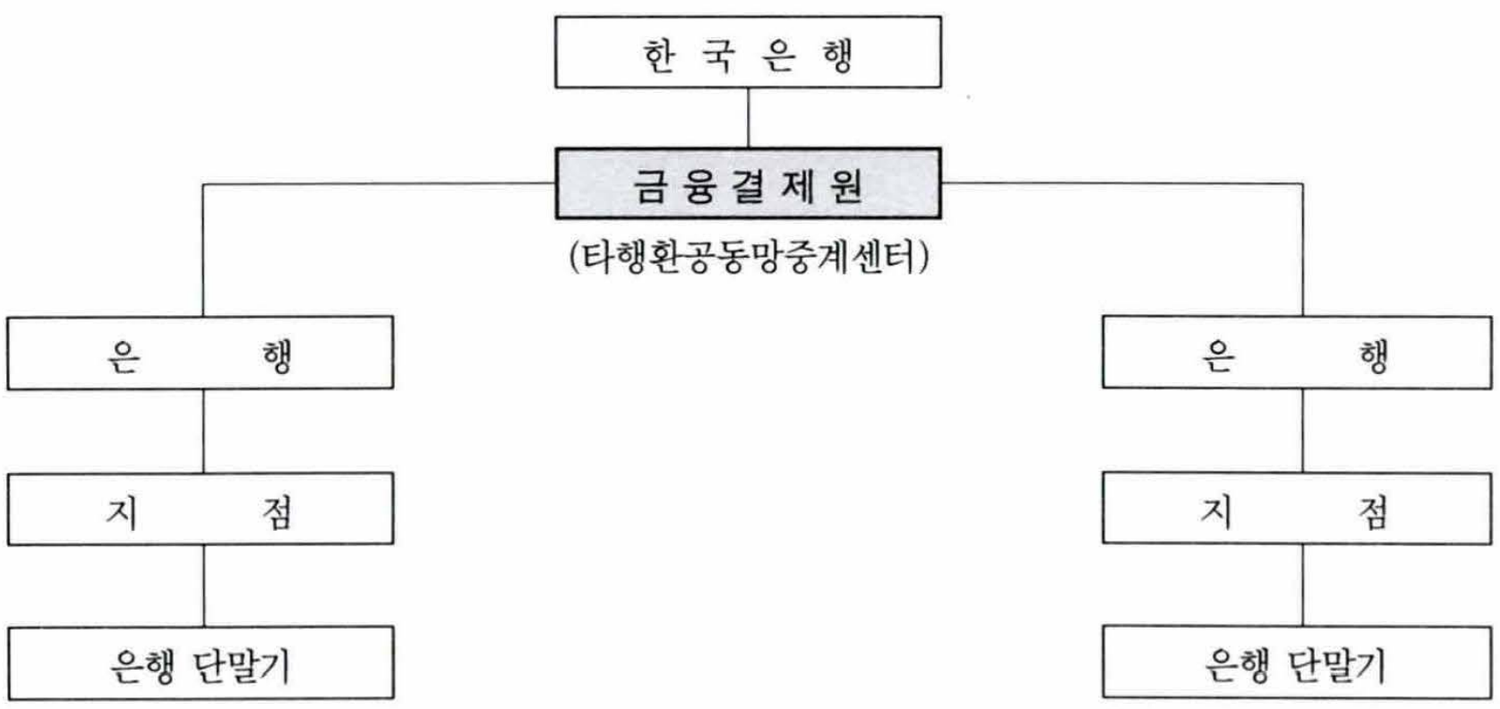

행하는 한편, 1989년 2월 타행환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여 참가기관과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스템 개발 작업과 더불어 타행환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규약(1989년 11월) 및 세부처리지침(1989년 10월)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준비사항을 완료하였다.

나. 도입초기 및 안정화 단계

시스템 구축 및 개발기간을 거쳐 타행환업무는 1989년 12월 서울소재 8개 은행(축협, 기업, 국민, 주택, 상업, 제일, 신한, 한미) 및 5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제주, 강원, 경남)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다. 1990년 4월에는 11개은행(농협, 조흥, 한일,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광주, 경기, 전북, 충북)과 동년 7월에는 3개 은행(장신, 서울, 외환)이 추가로 참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이 타행환업무에 참가함으로써 고객은 은행과 지역에 관계없이 자금의 송금 및 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타행환은 이용량에 있어서 1991년에는 전년보다 253.8 %의 높은 업무신장률을 보이는 등 급속히 확산되었다. 1992년 이후에는 다소 업무신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타행환시스템은 이 시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6개 은행(수협, 하나, 보람, 산업, 평화, CITI)이 추가로 참가하고, 1995년 6월에는 농·수·축협 회원조합 및 우체국의 신규참가함에 따라 1995년말 현재 37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표4-3-7〉 타행환업무 참가기관 현황(1995년말 현재)

구분	참 가 기 관
1989	축협, 기업, 국민, 주택, 상업, 제일, 신한, 한미, 대구, 부산, 제주, 강원, 경남
1990	농협, 장신, 조흥, 한일, 서울, 외환,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광주, 경기, 전북, 충북
1991	수협, 하나, 보람
1992	산업
1993	평화
1994	CITI
1995	농·수·축협 회원조합, 우체국
계	37개 기관

다. 확대 추진 단계

1994년까지 지속적인 참가기관의 확대는 물론 시스템의 안정화를 추진하였고 소프트웨어를 재개발하여 타행환시스템의 효율을 증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타행환 송금한도도 최초 1천만원에서 1993년 7월 3천만원, 1994년 6월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을 송금하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었다. 1995년 12월에는 타행에서 발행한 정액자기앞수표도 타행환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송금대상을 확대하여 고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타행환수수료는 당원 전산위원회에서 정하여 은행공동으로 적용하였으나, 은행공동망 이용서비스수수료의 자율화조치에 따라 1994년 5월 2일부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징구하고 있다.

他行수표도 送金된다

금융결제원 시스템개발… 오늘부터

現金化 불편 없어져

3일부터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기앞수표로도 송금할 수 있게 된

금융결제원은 22일 정액 자기앞 표 송금시스템을 새로 개발, 현 은 물론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타행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 밝혔다.
종전에는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금으로만 송금할 수 있었으며 자 앞수표로 송금하려면 수표발행

은행에 직접 찾아가 수표를 현금화 한 후 송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융결제원은 타행발행 자기앞 수표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액현금소지에 따른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송금할 경우 수취인은 송금 다음날 하오 2시50분이후(토요일은 하오1시20분이후) 수표교환결제가 끝나야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 전산망에는 34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있다.
[孫東

정액자기앞수표 타행환 송금개시

3. 서비스 내용

타행환업무를 통하여 현금의 온라인 송금,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 추심대전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3-8〉 타행환업무 서비스내역

업무명	개 요	업무조건	지급결제
현금송금	의뢰인이 타행(개설은행)의 수취인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	계좌입금시 의뢰인 거래은행에서 의뢰 가능	익영업일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송금	의뢰인이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로 타행의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업무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 입금분에 대하여 수취인은 입금 익일 미결제 어음통보시각(14:50) 이후에 출금 가능	익영업일
추심대전송금	추심어음 결제대전을 추심의뢰은행 의뢰인계좌로 추심 지급은행이 입금 처리해 주는 업무	어음송달자에 의해 지급인이 결제 대전을 지급은행에 지급한 경우에 가능	익영업일
자기앞수표조회	타행수표에 대한 수표발행내역과 사고내역을 수표발행은행으로 단순 조회하는 업무	고객 조회요구가 아닌 은행창구의 보조업무로 이용	-

타행환서비스의 이용가능 예금종목에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종합, 당좌, 기업자유예금이 있으며 고객에 대한 타행환업무는 오전 9시30분에 개시하여 금융기관 영업마감시간에 종료한다.

4. 업무량 추이

타행환시스템을 통한 거래유형은 현금송금이 대종을 이루며 도입초기인 1990년 6,218천건이던 이용건수는 이후 참가은행의 증가 및 고객의 인식제고 등으로 1995년말 현재 139,406천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매년 그 이용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표4-3-9〉 타행환업무량 추이 (단위: 천건)

구 분	현금송금	자기앞수표조회	취소 및 불능건수	소 계
1989	15	1		16
1990	6,041	85	92	6,218
1991	21,680	67	252	21,999
1992	37,216	11	388	37,615
1993	54,911	9	554	55,474
1994	88,924	142	834	89,900
1995	137,714	349	1,343	139,406

5. 향후 전망

고객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운영시간의 연장, 송금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며,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H/W, S/W의 보강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특히,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센터에서 각행으로의 일괄입금업무(납부자 자동계좌이체의 은행입금분, 예약이체를 통한 입금분 등)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은행간 자동계좌이체 부문에서 CD, 타행환, CMS가 주축을 이루면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절 타전산망과의 접속

1. 무역자동화망과의 접속

가. 추진배경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신경제의 기본구상으로 국제시장의 확충 및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통해 생산 및 경영부문의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구축된 금융전산망과의 접속을 통해 금융EDI(전자데이타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무역업체와 은행간에 수수되는 제반 서류(신용장, 수출입승인서 등)의 증가 및 전달수단(인편)의 비전산화로 인한 관련비용(인건비 등) 증가와, 제반 서류 처리시간 과다로 인한 수출입업무의 장애발생 및 동일서류의 재입력과정에서의 오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자동화망과 금융전산망을 연계 접속함으로써 무역관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여 국제무역거래 관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서류처리 비용의 절감은 물론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소화하여 중복 투자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나. 추진경위

(1) 개발 및 구축 단계

무역업체와 은행, 보험회사, 관공서 등 관련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수출입업무 관련절차의 자동화 및 즉시처리, 무역관련 정보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대외경쟁력 극대화,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수출입 정보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스템의 구축이 추진되었다. 1987년 7월 청와대 주재 국가전산화 확대회의에서 무역부문의 자동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공부 주관하에 한국전산원에서 KTnet(무역자동화시스템)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1989년 10월 상공부에서 KTnet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의거

한국무역협회내에 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을, 상공부내에는 무역자동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1990년 4월 및 1991년 1월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였다.

1991년 7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시스템의 접속방안』이 의결되었으며, 당원은 동년 4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접속에 관한 개발을 위탁받음으로써 무역자동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개발위탁에 따라 당원에서는 9개은행 18명의 전산 및 업무 담당자와 함께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종합무역자동화망과의 접속을 위한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였으며, 일부 은행과의 네트워크 접속 등을 통해 1992년 11월에는 9개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당원은 1993년 5월 「금융전산망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의 접속시행계획」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전산망의 접속을 추진하였다. 동년 6월에는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 사업의 전담구축기관간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당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주)간에 체결하였으며,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질적인 접속작업을 추진하였다.

당원에서는 시범사업 실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변환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역자동화망용 호스트컴퓨터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1993년 12월에는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KTnet)간 접속을 위한 규약, 1994년 1월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준비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1월 25일부터 산업, 기업은행 등 33개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장 통지 및 개설, 수출입승인 업무를 실시하였다.

〈표4-3-10〉 무역자동화망접속업무 참가기관

구분	참 가 기 관
1994	산업, 농협, 수협, 축협, 수출입, 장신, 기업, 국민, 주택,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 하나, 보람, 평화, 지방은행(10개)
계	33개 기관

(2) 시스템 안정화 및 확대 단계

실시 초기년도인 1994년에는 무역업체의 인지도가 낮아 업무량이 미미하였

으나, 1995년에는 연간 100만건 정도로 급격히 증가(약 900 %) 하였다. 이에 따라 EDI방식에 의한 자료전달체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1994년 및 1995년도에는 초기 도입된 시스템의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5년 7월에는 제2무역자동화망사업 시행기관인 (주)데이콤과 전산망 접속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자동화망사업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무역업체 및 관련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부산 및 인천세관 소재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관세수납내역 통지, 일계대사용 일반응답서 등을 EDI방식으로 전달하는 관세 국고수납업무를 시범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전국의 모든 세관소재 은행에 확대하였다.

다. 적용업무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을 접속하여 무역업체와 은행간의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출입승인, 신용장개설, 계산서통지, 입·출금통지 등의 각종 자료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송수신하고 있다. 자료전송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주)데이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5년말 현재 업무실적은 1,125천건으로 입금통지, 계산서통지 및 수출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 기대효과

최근 금융EDI는 사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가장 유력한 정보거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EDI를 구현함으로써 첫째, 기업간의 거래시 통일화되지 않은 서류 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둘째 전달/처리속도의 향상을 통한 시간지연 배제와 비용 및 인력손실에 의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 셋째 수작업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 배제 및 전달정보의 손실 우려에 대한 대처 및 보안시스템 유지, 넷째 기업내 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업무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 향후 전망

초기 단계의 EDI는 금융, 유통, 물류, 무역, 철강등 각 산업부문 자체내의

EDI를 중심으로 부문별 EDI가 추진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전문 VAN의 등장과 VAN의 확장, 상호접속 복합VAN의 등장으로 사회전체에 걸쳐 각 산업부문간의 유기적인 EDI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환금융부문 EDI의 경우 1994년 1월 본격 가동된 이후 1995년 상반기에 내국신용장, 계산서통지, 입·출금통지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인 데이콤과 접속을 완료하여 복수의 지정사업자(KTnet, DACOM)를 통하게 됨으로써 다수의 VAN사업자들의 접속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향후 추가될 수 있는 무역업무로는 수출입 대금결제, 수출입대금 처리신청 및 승인업무, 외국환 금융업무, 일반수출입 금융업무 (무역금융 차입신청),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은행 지정신청 및 확인업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외환금융부문 EDI에서 확대가능한 업무는 은행간 자금이체, 은행지로업무(일반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전기요금 등의 수납이체) 및 수표정보교환 결제시스템(Check Truncation)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EDI표준으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업계간 업무별 표준양식 및 통신표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통신프로토콜 및 전송방식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2.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은 지급결제 중계센터인 당원과 한국은행을 통신회선

〈표4-3-11〉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1995년말 현재)

구 분	어음교환	은행지로	타행환 시스템	CD공동이용시스템
결 제 대 상	어음·수표 및 제증서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전기, 전화료, 공과금 등의 수납, 급여이체	개인간·기업간 송금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운 영 기 관	어음교환소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결 제 시 점	익일결제	2~3일 결제 (단, 급여이체는 당일결제)	고객 : 즉시결제 은행 : 익일결제	고객 : 즉시인출 은행 : 익일인출
지정결제시각	15:00(13:00)	11:30(11:30)	11:30(11:30)	11:30(11:30)

주: ( )는 토요일, 어음교환은 각 어음교환소별 차액결제일

으로 직접 연결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거래를 차액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당좌계정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1987년 7월부터 동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여 1988년 4월 CD차액결제자료를 시작으로 지로, 어음교환, 타행환 차액관련자료를 전송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어음교환 및 지로차액결제 관련자료를 한국은행에 직접 전달하여 왔었다.

3. 점외 CD/ATM 공동이용망과의 접속

점외 CD/ATM 공동이용망은 은행들이 CD/ATM을 공동으로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참여은행 고객들에게 연중무휴로 예금의 현금인출이나 잔액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93년 10월 8일부터 가동되었다.

점외 CD/ATM공동이용망 가동(1993. 10. 8)

당원은 1993년 9월 23일 CD/ATM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원의 금융전산망과 점외CD/ATM망을 상호접속하여 일반고객이 공공장소(지하철역, 백화점 등)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현금인출 및 예금잔액 조회업무를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29개은행과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참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19,007천건이고 지급승인금액은 9,780억원으로 CD공동이용시스템에 의한 지급승인금액의 3.1%에 불과하다. 현재 점외 CD/ATM은 226대(1995년 9월 현재, 서울·부산포함)가 설치되어 있고, 현금인출한도는 1회 30만원까지이며 대상예금 및 자금결제절차는 CD공동이용망과 동일하다. 또한 고객이 부담하는 현금인출수수료는 은행영업시간내에는 거래건당 300원, 영업시간외에는 500원이며 잔액조회수수료는 없다.

〈표4-3-12〉 점외CD/ATM 공동이용업무 참가기관 현황(1995년말 현재)

구분	참 가 기 관
1993	농협, 수협, 축협, 장신, 기업, 국민, 주택,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 하나, 보람, 평화, 대구, 부산,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1994	충청
1995	농·수·축협 회원조합
계	32개 기관

4. 경찰전산망과의 접속

金融電算網 - 警察전산網 연결

金決院 銀行계좌 부정사용자 검거체제구축

보호률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이용고객의 예금계좌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을 연결, 분실통장이나 현금지급카드의 부정사용자를 즉시검거할 수 있는 전산지원체제가 구축된다。

금융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의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의 상호접속을 통해 은행계좌 부정사용자에 대한 즉시 검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이와 관련, 최근 금융기관과 경찰청 주전산기를 전용회선으로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이달말부터 우선 업무준비를 마친 25개 은행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범인이 타인 예금의 부정인출을 시도할 경우 해당은행이 이 사실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다시 전산망을 통해 경찰청에 통보하며, 경찰청은 범인이 있는 장소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지령해 즉시 범인검거에 나서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이 시스템의 적용대상을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가계종합·당좌예금 등 6개 예금종목으로 하되 가계종합 및 저축예금의 경우 수표에 한 인출은 물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전산망과 금융전산망접속기사
(1992. 12. 16)

당원은 금융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을 상호접속하여 은행계좌 부정사용 범인의 현금인출시 당원을 통하여 사고계좌번호, 인출장소, 시간 등을 경찰청에 온라인 전송하여 범인의 현장검거 또는 목격자 확보에 기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1993년 2월 15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의 대범죄전쟁 추진대책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관련 지능범죄 및 신종수법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처능력 강화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 동 전산망의 운영시간은 종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으나 1995년 6월 25일부터 종료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중 33개 참가기관을 통하여 324건이 처리되었다.

〈표4-3-13〉 경찰망업무 참가기관 현황(1995년말 현재)

구분	참 가 기 관
1993	산업, 농협, 수협, 축협, 장신, 기업, 국민, 주택,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한미, 동화, 대동, 하나, 보람, 평화,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외한 9개 은행)
1995	농·수·축협 회원조합
계	33개 기관

제6절 네트워크 확장

1. 제1기(최초~1992년 2월)

1988년 4월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 추진원칙,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에 대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당원에서는 이에 따라 금융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통신시스템, 중계시스템의 구성 및 시스템 개발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1987년 3월 수립된 「CD공동망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CD공동이용시스템을 주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성방안」이 동년 5월 작성되었으나 이는 타행환시스템 등의 추가를 예상한 극히 부분적인 검토이었다.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에 맞추어 이미 운영중인 CD공동이용시스템과 그외 여타 전산망의 구축에 대비한 전반적인 금융전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단계적인 추진을 꾀하였다.

가. 기본방침

(1) 중계시스템

중계시스템은 금융전산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간 독립성 유지와 업무의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별 개별시스템으로 구성키로 하였다. 단, 신규업무 추진시의 업무간 연관성, 기존 도입기기의 활용 가능성,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의 기술 동향 및 통신정책 등과 같은 제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의 독립성 유지와 업무별 고유성의 반영이 가능하고 업무집중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도입기기를 활용한 업무집중시스템으로 구성키로 하였다.

(2) 통신시스템

금융전산망 구축 당시 통신시스템은 국내 통신사업법상 전용회선의 사용만이 가능하였고, 각 은행의 시스템은 다수의 통신 프로토콜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통신회선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통신교환장치를 도입하여 회선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수 이기종 참가은행 시스템과의 원활한 접속과 기존 중계시스템이 전담해 온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기능을 일부 분담토록 하여 중계시스템의 관리프로그램 실행시간 단축을 도모하였다.

(3) 중계센터 프로그램 개발

당원 중계시스템의 업무별 사용자프로그램은 향후 다수의 신규 금융전산망 업무의 개발 및 기존 업무의 보수유지측면을 감안하여 당원 주도하에 은행전산요원, 메이커 시스템엔지니어가 참여한 합동개발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통신시스템의 통신관련 프로그램은 그 자체의 난이도와 전문기술 요소 등을 감

안하여 통신관련 프로그램 전문업체에 개발의뢰하였다.

프로그램 개발방법

업 무 구 분	개 발 방 법
중계시스템업무 프로그램	자 체 개 발
통신시스템 통신관련 프로그램	"Package" 또는 "Turnkey Base" 개발방식을 채택하되 당원 개발요원이 참여하여 향후 보수유지의 용이성을 도모

나. 구축단계

당원이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CD, ARS, 타행환시스템은 네트워크 기본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되었는데 그 단계별 세부 구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구축방법

단 계	개 요
제 1 단 계 (1989년 상반기)	• CD공동이용시스템은 현행과 같이 통신회선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각행 시스템과 접속 • ARS공동운용시스템은 통신교환 장비를 통해 별도의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각행 시스템과 접속
제 2 단 계 (1989년 하반기)	• CD공동이용시스템은 현행과 같이 통신회선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각행 시스템과 접속 • ARS, 타행환공동망은 통신교환 장비를 통해 통신회선을 공동사용하여 각행 시스템과 접속
제 3 단 계 (1990년 이후)	• CD, ARS, 타행환공동이용시스템 모두 통신교환 장비를 통해 통신 회선을 공동사용하여 각행 시스템과 접속

2. 제2기(1992년 3월~1994년 1월)

당원이 삼성동에서 역삼동으로 사옥을 이전하는 기간중에도 당시 운용중이던 CD, ARS, 타행환시스템은 업무의 중단없이 계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한편 당시의 통신시스템(FEP)은 OLTP(On Line Transaction Pro-

cessing)전용의 범용컴퓨터로써 통신교환 처리능력과 네트워크 확장성이 낮아 업무량 증가 및 참가기관 확대시 계속적인 기기 증설이 불가피하여 신사옥에 통신교환전용시스템(패킷교환기)을 신규도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업무시스템은 당시 통신시스템을 보강하고 ARS공동업무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이전용 업무시스템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전시 공동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Back-Up체제를 구축하여 이전토록 하였다.

3. 제3기(1994년 2월~현재)

(1) 금융전산망 정비의 필요성

CD, ARS 및 타행환시스템은 포인트 대 포인트방식으로 통신망이 구성되어 회선 및 통신장비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ARS와 타행환시스템은 모뎀베이스의 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모뎀간 회선관리는 물론 통신교환전용장비의 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업무호스트간 논리적 회선연결상태도 관리하고 있으나 CD공동이용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뎀베이스의 망관리시스템에 의해서만 모뎀간 회선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참가기관의 개별업무 참가시마다 제반 조치사항(통신회선 확보, 통신장비도입)이 중복 발생되고, 공동망 개별업무별로 백업 라인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회선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전화, FAX 등 다양한 매체의 수용이 곤란하고, 무역망업무 등 신규업무 추가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되는 등 금융전산망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네트워크 정비방안

네트워크는 통신회선비용이 과다한 지방소재 은행을 중심으로 업무간 통신회선의 공유가 가능하고, 전화 및 FAX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였다. 서울소재은행은 기존 방식대로 접속하되 업무간 회선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은행에 부가장비를 사용하여 통신회선을 공유토록 하였다.

(가) 기간망(노드 ↔ 노드)

기간망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별 중계거점(노드)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 T1급 회선다중화장비 및 패킷교환기를 설치하여 T1(1.544Mbps)/

E1(2.048Mbps)의 통신회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장비간에는 56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을 이용하여 통신회선의 전송품질 향상 및 통신비용 절감을 도모하였고 추후 업무량 증가시 T1급 통신회선으로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나) 액세스망(은행 ↔ 노드)

엑세스망은 지역별 중계거점과 각행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서 현재 지방소재 은행에는 회선다중화장비와 소형패킷교환기를 설치하여 은행과 노드간 통신회선을 공유토록 하고 있고, 서울소재 은행은 무역망업무용시스템과 기존 공동망업무용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실업무량도 56Kbps이상인 은행에 대하여는 회선집중화장비(PAD : Packet Assemble & Disassemble)를 우선 설치하여 통신회선을 공유토록 하였다. 또한 서울소재 은행의 CD공동업무용 통신회선은 기존 통신장비 활용을 위해 포인트 대 포인트(Point-To-Point)방식 그대로 직접 CD업무 호스트에 접속하고, 지방ARE와 ARC간의 통신회선은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T1급 다중화장비에 통합 수용토록 하였다.

(다) 업무호스트 접속

업무호스트(CD, ARS, 타행환, 무역망)는 기존 통신교환전용장비(Packet Switch)에 접속하여 통신회선을 공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CD업무 호스트는 통신교환전용장비와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BASE-24 S/W 문제가 해결(S/W 모듈 추가 및 보수 또는 자체 개발 등)되는 시점까지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T1급 회선다중화장비에 개별 접속토록 하였다.

(라) 기타

네트워크 정비 후 잔여통신장비는 테스트회선 확보, 임차중인 모뎀과 교체 및 신규참가기관 접속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3) 기대효과

(가) 통신회선 비용의 절감

기존의 업무별 포인트 대 포인트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에는 연간 약 7.3억원이 지출되나, 네트워크 정비후에는 연간 4.3억원이 지출되어 매년 약 3억원의 회선 비용이 절감되므로 초기의 기기구입비용 5.9억원은 2년내에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나) 확장성 확보

통신회선 증설시 개별업무 호스트의 통신콘트롤러를 증설하는 대신에 통신장비의 포트 카드만 증설하면 되므로 확장이 용이하고, 네트워크 정비로 생기는 통신장비(Modem 및 Communication Controller) 여유분을 이용하여 업무확대 및 신규 참가기관 접속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다) 망관리의 효율성 증대

현재 운용중인 통신교환 전용장비의 망관리 장비(NM400)를 활용하여 당원업무 호스트와 은행측 업무호스트간의 논리적인 회선관리가 가능해졌고, 회선다중화 장비의 NMS를 활용하여 CD, ARS, 타행환시스템 및 ARS지방시스템에 대한 통합 회선관리가 가능하며 전체시스템에 대한 상태관리, 장애분석 및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라) 기타

신규업무 추가 및 신규참가기관(지방) 증가시 지역간 고속회선 사용으로 시외회선 비용절감과 동시에 서비스 지역확대가 용이해졌다. 문자, 도형,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이루어졌고, 통신장비간 T1 고속회선 구성 및 통신교환장비의 기능에 의해 통신회선의 경제적 사용을 도모하고 전송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 직불카드 수익사업 개시,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요구 증대 등 환경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확장성과 효율성을 갖춘 네트워크가 요구됨에 따라 당원은 네트워크(회선, 통신장비)의 이중화,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환경변화(업무량 증가, 업무추가 등)에 적시 대비를 목표로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소재 참가기관은 업무확대시 수용이 용이하고 통신회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참가기관에 패드를 설치하여 패킷교환기망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소재 참가기관은 패킷교환기로 노드를 추가 신설하여 이기종 이중망(MUX망과 P · S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에 대비한 지역 분산처리와 통신업무량 및 접속대상 시스템수를 고려하여 대전, 대구를 노드 신설지역으로 정했으며, 확대 신설 구축되는 패킷교환기(P · S)망은 우회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형(DELTA) 구조로 접속할 예정이다.

제4장 전산관련 공동업무

금융기관 전산관련 공동업무는 금융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과 금융기관 전산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업무는 각 금융기관이 1975년부터 독자적으로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여 개별적인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직면한 금융기관간에 중복 또는 공통업무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전산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경비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75년 2월 「금융업무 전산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동년 10월부터 금융기관전자계산소 개발과에서 처음으로 전산관련 공동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1975년 당시는 재무부의 「금융업무전산화지침」에 의거 계좌이체제도(GIRO SYSTEM), 내국환집중결제제도 및 어음교환제도의 공동개발이 추진되었다. 그후 1단계 전산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감에 따라 1978년 4월 21일 2단계 금융업무전산화 3개년 종합계획에 의하여 각행의 공동이익이 기대되는 공동코드, 정보교환, DATA BANK, 각종 PACKAGE, COM 활용, CD공동이용, 타행환 온라인개발 및 회선의 공동이용 등 항목을 선정하여 긴급도가 높은 업무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1978년 7월 금융기관공동코드의 제정 및 관리운영업무를 시초로 1982년 12월에는 SWIFT에의 가입을 추진하였고, 1983년 12월에는 전산자료의 보관을 위한 COM 시스템을 은행지로관리소에 설치하여 공동이용하였다. 1984년 7월에는 은행지로관리소에 시스템실이 신설되어 공동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그후 1986년에는 당원 금융전산추진부가 1992년부터는 금융망업무부에서 담당하였다.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 경제사회의 다변화 및 고객의 요구다양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산관련 공동업무에는 SWIFT사무국 설치·운영, 일괄전송, 위규계좌점검, 금융전산 안전대책, 업무표준화, 금융전산연수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신규업무를 발굴하여 금융기관 공동의 이해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1절 SWIFT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은행간 자금결제와 메시지(Message) 교환업무를 신속·저렴·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적인 은행간 금융정보통신망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가입을 추진하여 1992년 3월부터 SWIFT를 통하여 고객송금,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은행간 자금이체 등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SWIFT의 설립과 발전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1960년대 유럽 및 북미 각국의 대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간 금융거래 메시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가 개시되었다. 1970년에 들어서 컴퓨터 및 통신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달로 금융기관의 업무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금융업무의 급팽창과 더불어 사무처리의 표준화와 합리화, 그리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1973년 5월 북미 및 유럽 15개국 239개 은행이 중심이 되어 벨기에

〈표4-4-1〉 SWIFT 본부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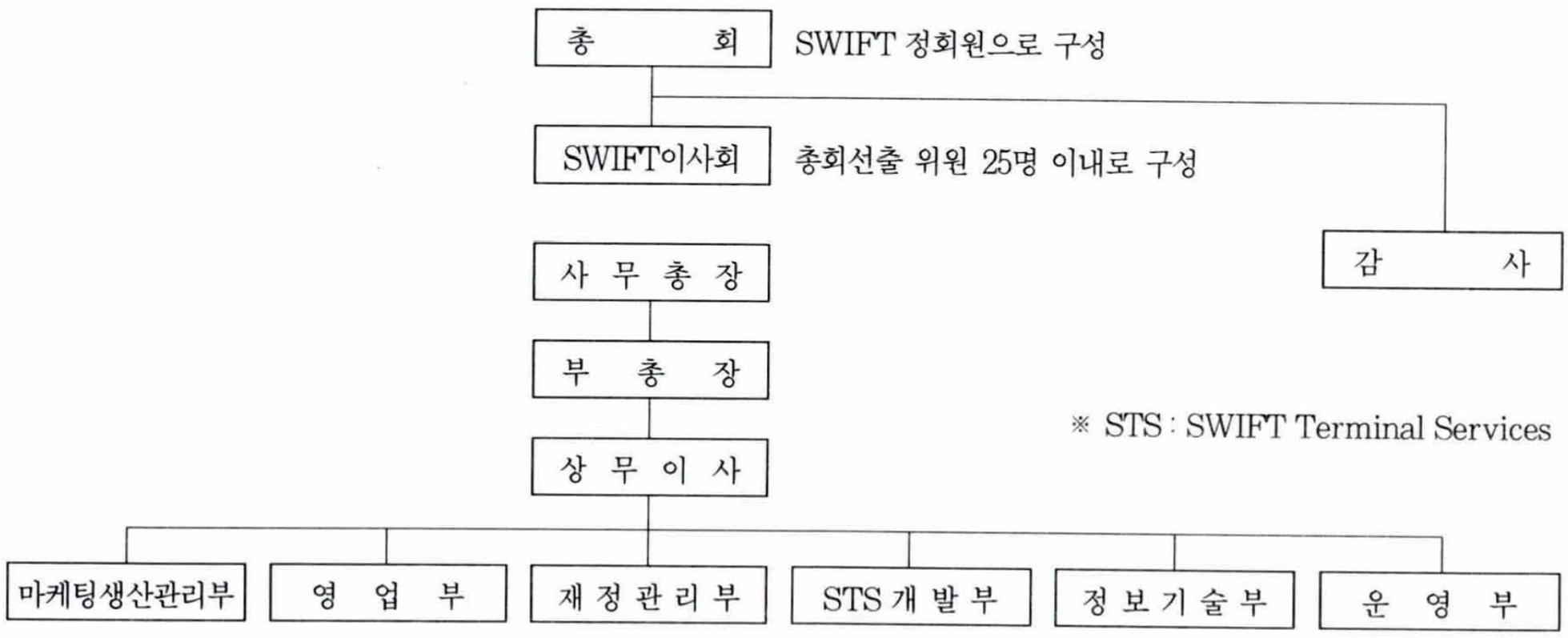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영리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SWIFT를 설립,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후 1977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되어 15개국 450개은행이 사용을 개시하였다. SWIFT본부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25인이내)가 있고 운영기관으로 사무총장, 부총장, 상무이사 및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SWIFT는 중앙과 지역에 통제소를 두고 이를 거쳐 SAP(SWIFT Access Point)와 사용자 터미널을 연결하여 메세지교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143개국 5,229개 은행에서 하루 평균 252만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다.

2. 국내 금융기관의 SWIFT 가입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SWIFT 가입추진은 1982년 8월 23일 국내금융기관 공동으로 「SWIFT가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로관리소에 SWIFT사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은행 국제금융부장명의로 국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3년 2월 SWIFT본부 이사회에서 국별 가입승인을 받아 4월 개별은행 단위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은행을 포함한 16개 외국환은행과 15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Applicant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회원가입에 필요한 국제통신회선의 확보 및 지역처리센타(RP)설치를 위한 장소(SITE)임대차, 중계소관련 RAD(Regional Administration)계약체결 등의 절차와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즉시 가입할 수 없었다.

1984년 8월 SWIFT와 우리나라측 정보통신업체인 데이콤간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동안 가입추진이 중단되었으나 1987년 9월부터 SWIFT본부와 협상이 재개되면서 은행간 전산망사업과 연계하여 가입을 준비해오다가 1989년 2월 24일 체신부에서 당원에 국제전용회선 타인사용 특례인정을 해줌으로써 가입추진이 본격화되었다.

1989년 8월 28일 SWIFT 이용자규약을 제정하고 9월 국내 49개 금융기관(Member 21개, Sub-Member 28개)이 정식으로 SWIFT본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회선 임대차계약 체결과 지역처리센타에 대한 세제문제 등으로 1990년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이후 1990년 8월 국제특정통신회선 사용계약 및 특약체결이 데이콤 및 SWIFT 본부측과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 1991월 2월 4일 가입금 및 출자금의 납부에 이어 3월 13일 제94차

SWIFT이사회에서 최종 가입승인을 받았다.

1991년 6월 1일 당원은 SWIFT본부와 RAD 및 SITE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및 회선 등을 12월까지 설치완료함으로써 1992년 3월 2일부터 국내 지역처리센터(RPC, Regional Processing Center)로서의 업무를 개시하였다.

SWIFT시스템 가동식

3. 국내 SWIFT사무국의 운영

당원은 국내의 SWIFT 개별사용자와 지역통제소간 송수신되는 메시지를 집중시켜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필요한 전산 및 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간 각종 메시지 및 자금결제 등의 중계에 필요한 SAP을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한 행정적·기술적 서비스를 SWIFT본부에 제공(RAD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SWIFT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국내이용자 상호간의 공동이익 도모 및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국내 정회원그룹(NMG, National Member Group)과 이용자그룹(UG, User Group)의 간사로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은 금융망업무부에서 초창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망업무부장이 이를 통할하고 있다. 국내조직은 SWIFT 가입기관 대표자회의(당원 이사회), NMG 및 UG위원회, 당원 SWIFT사무

〈표4-4-2〉 NMG위원회 및 UG위원회의 구성과 기능(1996년 1월 현재)

	N M G 위 원 회	U G 위 원 회
구 성	Member기관의 국제금융부장 또는 동업무 담당부장과 SWIFT사무국장	이용자기관의 국제금융부장 및 동 업무 담당부장과 SWIFT사무국장
의 장	한국외환은행 외환관리실장	한국외환은행 외환관리실장
기 능	1. 국내 SWIFT Regional Processor 설치장소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SWIFT 본부 이사회의 이사후보 추천 3. SWIFT 본부의 장기계획, 업무실시지역의 확장, 지분할당에 관한 한국의 입장 4. SWIFT 가입자격의 확인 및 기본 가입기관의 탈퇴, 제명 및 제재에 관한 기본방침 5. SWIFT 관련 제반 분담금 및 분담방법에 관한 사항 등	1. 국내 SWIFT 이용자 상호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 SWIFT 측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국으로 되어 있다.

SWIFT 가입기관은 가입형태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및 참가자로 구분하는데 1992년 3월 가입당시 정회원 27개, 준회원 28개에서 1995말 현재 정회원 16개, 준회원 8개, 참가자 1개 기관이 늘어나 전체 75개 기관에 이른다.

또한 1990년부터 매년 SIBOS(SWIFT International Banking Operation Seminar)에 참가하여 국제금융업계의 동향과 기술혁신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1994년부터는

〈표4-4-3〉 우리나라 SWIFT 참가기관 내역

정회원(Member Banks)			준회원(Sub-Members)		
구 분	참가기관		구 분	참가기관	
	가입당시	1995년말 현재		가입당시	1995년말 현재
중앙은행	1	1	SAP접속은행[1]	19	23
특수은행	8	8	Cross-Border은행[2]	9	13
시중은행	11	15	계	28	36
지방은행	7	9	참가자(Participants)		
종 금 사	-	5	증권예탁원	-	1
계	27	38	합 계	55	75

주: 1) SAP 접속은행 : 당원의 SAP를 거쳐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은행
2) Cross-Border 은행 : 자행 본점이나 해외 지역본부를 경유, 메세지를 송수신하는 은행

〈표4-4-4〉 SWIFT실적 (단위: 건)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시스템메세지		35,632	43,057	44,397	49,291
은행간메세지	고객송금	638,379	1,129,332	1,580,883	2,102,988
	은행간이체	342,992	746,108	1,003,937	1,280,128
	외환매매	31,442	134,488	239,783	351,532
	추심	23,574	52,817	107,088	170,170
	유가증권	6,275	41,332	121,103	231,644
	신디게이트	30	2	-	6
	신용장	583,886	1,359,544	1,881,797	2,392,988
	여행자수표	196	24	203	274
	특별메시지	92,321	219,852	345,200	514,753
합 계		1,754,727	3,726,556	5,324,391	7,093,774

주: 1992년은 3월~12월 실적임

SWIFT운영, 관리지침 및 메시지표준지침 등의 User Handbook 한국어판을 발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참가 국내 금융기관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체 SWIFT시스템 통신망은 중앙통제소, 부통제소, 지역통제소 및 중계소를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뉴욕)의 중앙 및 부통제소와 홍콩지역통제소 및 당원 중계소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통신메시지에는 서비스메시지, 시스템메시지 및 은행간메시지가 있는데, 이 중 은행간메시지는 SWIFT사용자간 메시지 교환시에 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이용된다. 은행간메시지는 1995년말 현재 성격에 따라 고객송금, 은행간이체, 신용장 등 10종이 있으며 메시지 형태는 204개로 외환관련 메시지 이용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SWIFT를 통한 메시지는 1992년 첫해 1755천건으로 일평균 7,019건이었으나 1995년에는 약4배가 늘어난 7,094천건, 일평균 28,375건으로 신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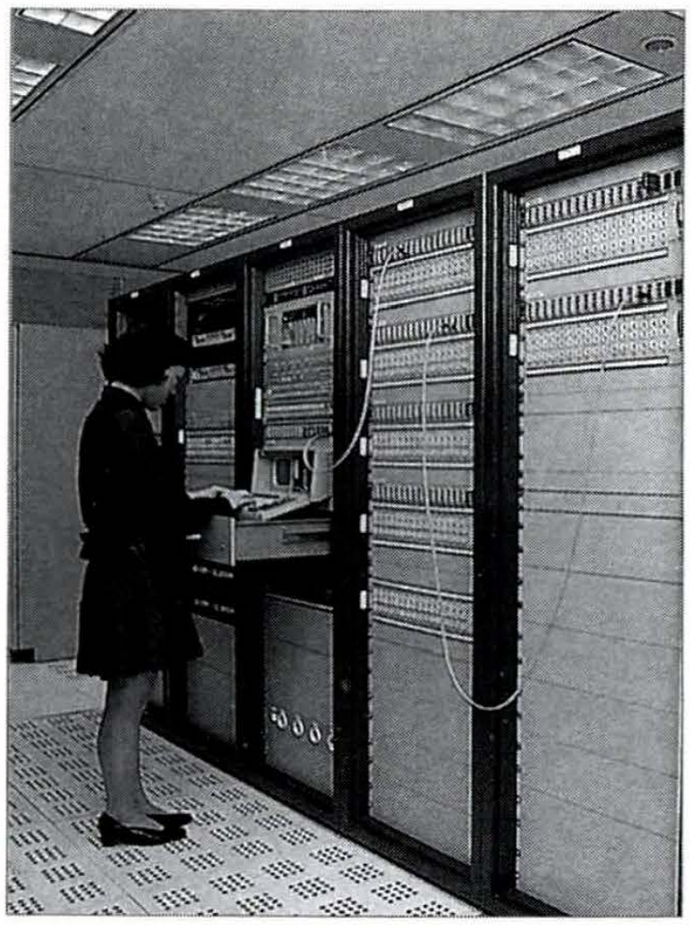
SWIFT 통신시스템

가. 서비스 메시지

시스템에 대한 명령이나 메시지의 수취확인 등과 관련된 메시지

나. 시스템 메시지

사용자와 SWIFT간에 교환되는 메시지이며 인도확인통지, 메시지 검색, 각종 정보통지 등의 메시지

다. 은행간 메시지

(1) 고객송금

비금융기관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 등의 송금시 송금은행이 상대은행에게 보내는 해당금액을 수령인에게 지급하라는 등의 메시지

(2) 금융기관간 이체

금융기관간 송금시 증권거래, 외환거래, 신용장 등과 관련한 자금조치 메시지

(3) 외환거래

외환매매거래, 통화옵션거래, 선도금리계약, 금리스왑거래, 대출/예치거래 등의 외환거래에 사용하는 메시지

(4) 추심

수표 및 어음의 추심과 현금신용장(Cash L/C) 거래와 관련한 메시지

(5) 유가증권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주문, 인수/인도 조건 및 각종보고서 등을 통지와 관련한 메시지

(6) 신디케이트

귀금속거래와 은행단차관거래의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메시지

(7) 화환신용장 및 지급보증서

화환신용장의 발행, 양도나 대금상환/지급, 지급보증서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은행간 주고받는 메시지

(8) 여행자수표

여행자수표와 관련하여 수표발행기관, 송금대행기관, 환급대행기관사이에 교환되는 현송, 판매, 대금결제, 환급 및 재고관리 등과 관련된 메시지

(9) 특별통신

Customer Statement, Balance Report, Credit/Debit의 확인 등과 관련한 메시지

제2절 일괄전송업무

일괄전송업무는 당원과 참가기관 사이에 지로, 부도정보, 공동코드, CD미완료거래등의 자료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신속, 정확, 편리하게 상호교환하는 온라인 송수신업무를 말한다.

1988년 4월부터 가동된 CD공동업무에 참가하는 일부은행에서 업무지침대로 미완료거래 및 오류거래를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여 1989년 10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은행감독원에 접수되면서 자료의 일괄전송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미완료거래 및 무응답거래 통지표나 오류거래내역은 익일 M/T 또는 PAPER로 통지되어 고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1989년 11월 25일 개최된 각행실무자회의에서 온라인에 의한 「CD공동이용업무의 미완료 및 거래내역자료」 전송방안이 강구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마침 1989년 11월 22일 화일전송시스템에 의한 「대은행 및 지로이용기관앞 자료전송방법 개선(안)」이 원내 업무개선제안으로도 제기되었다.

1990년 3월 「대은행 일괄전송시스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동년 7월 23일 시스템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여 8월부터 약 4개월의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최초 제안후 1여년이 지난 동년 12월 3일 주택은행외 10개은행이 처음으로 은행지로자료(일반계좌이체, 채권자계좌이체, 전기요금, 통합공과금, 지방세) 및 CD공동업무 관련자료를 일괄전송하였다. 이후 1993년 1월 4일 부도정보자료, 1994년 4월 30일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를 추가하였고 1996년 중에는 당원과 은행간에 수수되는 모든 자료를 일괄전송할 예정이다.

참가기관은 초창기 11개에서 1991년 국민외 13개은행 1992년 보람은행, 1993년 하나, 충북, 산업, 장기신용은행 1994년 수협, 평화은행 1995년 신용보증기금,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각각 참가하여 1995년말 현재 총34개에 이르고 있다.

〈표4-4-5〉 참가기관수 변천내역 (단위: 개)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기관수	12	25	26	30	32	34

초창기 일괄전송은 일정한 규약이나 지침없이 각 참가기관 자율로 운영되어 원활하지 못하였고 필요에 따라 자료의 송수신이 일어나는 등 자료활용도 미흡하였다. 그후 1995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일괄전송업무 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반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적인 시스템없이 기존의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간의 온라인업무 종료후 지로의 UNISYS 시스템, 어음교환의 IBM시스템 및 금융전산망의 TANDEM시스템을 HYPER-CHANNEL, M/T 및 FOX 등으로 연결하여 심야나 주로 새벽에 운영되었다. 1992년 사옥 이전후에는 CD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그후 1994년 5월에 일괄전송업무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이 수립되어 1994년 12월 전용기기가 도입되었고 전송시간도 영업일 17:00에서 익영업일 16:00까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1990년 2개업무에 24,173천건에 지나지 않았던 업무량도 참가기관 및 대상업무의 확대로 1995년에는 5개업무에 417,706천건으로 늘어났다.

〈표4-4-6〉 일괄전송 실적 (단위: 천건)

구 분	지 로	C D	부 도	공동코드	납부자자동이체	계
1991	24,173		-	-	-	24,173
1992	3,921	40,401	-	-	-	44,322
1993	3,898	35,753	427	-	-	40,077
1994	10,218	167,193	2,071	89	486	180,057
1995	9,087	403,840	2,263	132	2,384	417,706

1993년부터 전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당 전송건수를 20,277건에서 55,353건으로, 회선사용율을 19%에서 51.57%로 개선하고, 전송효율의 향상과 24시간 자료전송을 위해 현재의 송신자 중심의 전송방식을 필요시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자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 이외에 기타 기관에 대하여도 일괄전송 송수신 체제를 구축하고 전송자료의 정보화를 통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은 물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종합온라인정보서비스의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제3절 COM시스템공동이용업무

COM(Computer Output Microfilm)시스템은 Computer에 기록된 정보를 인간이 판독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로 Micro Film에 고속으로 기록·저장하는 시스템으로 1983년 12월부터 COM시스템을 공동 이용하였다.

1975년이후 각행의 독자적인 전자계산조직 도입이후 1977년 서울~부산간 온라인업무의 개시 등 국내 금융기관의 업무전산화가 진전되면서 전산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별도 전산보관매체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4월부터 COM시스템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게 되었다.

COM공동이용방안은 곧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1982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은행지로관리소 업무운영위원회와 동년 12월 3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1983년 5월부터 기기(DX4590, XC/AP) 도입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거쳐 동년 10월 14일 지로관리소에 COM시스템이 설치되었고 12월부터 가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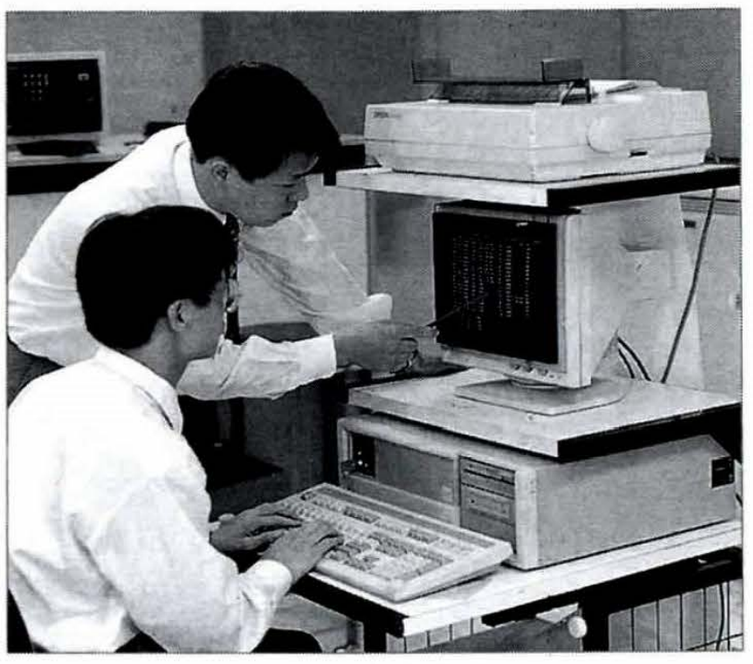

COM작업관경

COM 자료는 은행에서 각종 예금거래 내역·예금원장 등의 증빙자료로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거래내역 제공 등에 활용되며 당원에서는 은행지로 장표의 증빙 및 지로이용업체나 고객의 요청에 따른 조회검색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COM 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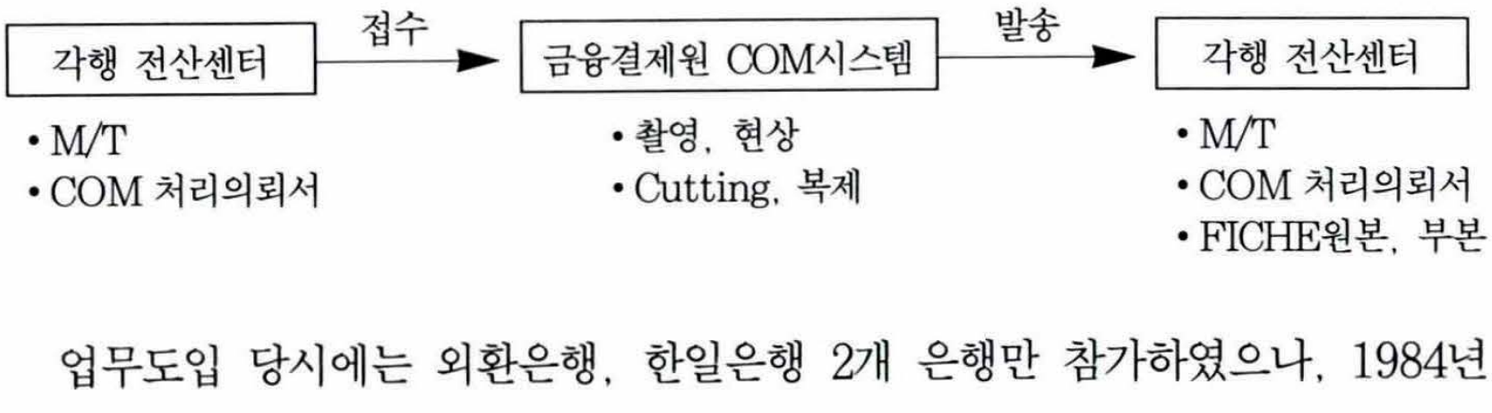

업무도입 당시에는 외환은행, 한일은행 2개 은행만 참가하였으나, 1984년 국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현 서울은행) 및 당원(10월) 1985년 주택은행 1986년에는 기업은행이 참가하여 총 7개 은행이 COM시스템을 이용하였다. 1988년에는 당원의 일반계좌이체 입금지시내역에 대하여 COM화를 실시하였고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3월 28일 촬영, 현상, 복제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1대)을 추가 도입하여 5월부터 가동하였다.

이후 정보처리기법의 급격한 발달(전산자료 보관매체 등) 및 업무여건의 변화로 1990년 2월 한일은행, 1992년 6월 주택은행, 1994년 8월 외환은행, 1995년 3월 제일은행, 동년 5월 국민은행, 9월 서울은행 등이 당원 COM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게 되어 1995년 6월부터 금융기관 공동이용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고 현재는 당원만이 이용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당원만이 COM시스템을 이용하게 됨에따라 1995년 7월 작업처리 과정의 자동화와 신속한 조회응답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COM 대체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회검색 업무량이 많은 당원 일반계좌이체업무의 경우 1996년 7월부터 대체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며 기존 시스템은 은행업무와 검색빈도가 낮은 당원 자동계좌이체나 지방세수납이체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의 COM업무량은 199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던 반면에 당원은 1985년이후 은행지로업무의 증가에 따라 매년 평균 약30%이상 증가하였다.

〈표4-4-7〉 COM 실적 (단위: fiche)

연 도	당 원	참가은행	계	연 도	당 원	참가은행	계
1983	-	-	333	1990	31,930	419,671	451,601
1984	-	-	40,640	1991	39,031	413,732	452,763
1985	5,116	148,961	154,077	1992	47,379	364,636	412,015
1986	7,570	203,044	210,614	1993	57,830	339,983	397,813
1987	13,668	256,616	270,284	1994	78,409	182,487	260,896
1988	17,300	276,524	293,824	1995	106,603	39,886	146,489
1989	24,374	329,126	353,500				

주: 1995년 6월부터 당원분만 처리

제4절 금융기관 공동코드 관리

금융기관 공동코드란 금융기관의 사무기계화를 촉진하고 공동사무처리의 능률화를 위하여 점포, 어음(수표), 예금 등에 부여한 일정한 단위의 숫자코드로 당원에서는 이의 제정, 정정, 추가, 삭제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73년에 금융기관 공동코드 제정반이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에 구성되면서 공동코드의 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1974년 4월 8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에서 「금융기관코드의 제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정」이 제정되고 금융기관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에서 코드의 정정, 추가, 삭제 등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개발위원회는 이보다 먼저 4월 3일 「금융기관코드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코드관리를 위하여 회원금융기관 EDPS(이후 전산담당부서) 담당부서 차·과장으로 구성된 「금융기관코드관리위원회」를 개발위원회 하위기구로 두고 의장은 전자계산본부 사무국장으로 하였다. 그후 규정관리차원에서 1994년 7월 28일 기존의 협정과 규정을 하나의 「금융기관공동코드규약」으로 개편하고 하위 위원회를 「금융기관코드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코드제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1978년부터 년 1회이상 공동코드집이 발간되었다. 한편 1979년에는 점포코드와 지로코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코드체계를 단일화하였다. 당초 전자계산본부 사무국장이 관장하던 코드관리는 조직의 변화에 따라 1992년부터는 금융망업무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공동코드에는 점포코드, 어음교환소코드, 어음(수표)종류코드 및 예금종류코드 등 4종류가 있으며 이중 금융기관의 점포코드가 대종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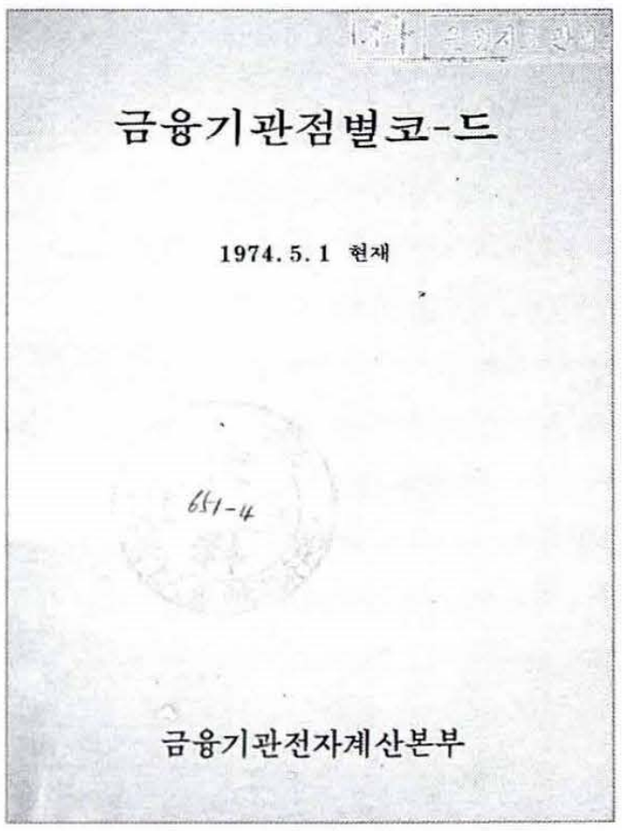

금융기관점별코드집(1974.5.1)

가. 점포코드

점포코드는 어음교환사무의 기계화를 계기로 하여 제일 먼저 제정되었다. 1978년 9월 21일에는 코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점포코드 「설계원칙」을 제정하였다. 점포코드는 금융기관 부·점을 기본단위로 은행코드 2자리, 부·점코드 3자리, 체크디지트 1자리로 모두 6자리가 부여되며 이때 어음교환소코

드도 함께 부여된다. 원시적인 형태의 점포코드는 1964년 1월 은행들이 어음교환 및 장부기입사무의 신속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한글 1자리(교환소 표시), 은행 및 지점번호 4자리이었다. 1995년말 현재 특수은행 10개, 시중은행 14개, 지방은행 10개, 외국은행 58개 기타 3개기관을 포함하여 95개기관에 부여된 점포코드는 전국에 14,760개에 이른다.

나. 기타코드

기타코드에는 어음종류코드, 예금종류코드 및 어음교환소코드가 있는데 이중 1978년 9월 13일에 제정된 2자리수의 어음(수표)종류코드는 1995년말 현재 24종(어음 2, 수표 16, 국공채 2, 기타 4종류)에 이른다. 예금종류코드는 2자리수로 모두 8종의 예금에 부여되었고 어음교환소코드는 전국 50개 어음교환소에 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92년 5월부터 하나의 공동코드 화일을 점별코드 화일과 지로코드 화일로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화일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2월 4일부터 공동코드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점포변동사항(신설, 변경, 폐쇄)의 송수신, 조회, 원장갱신 등을 당원과 34개 참가은행간에 금융전산망으로 온라인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공동코드의 온라인 업무는 1993년 6월 금전위의 의뢰에 따라 당원이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17일 세부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실무적인 작업과정을 거쳐 기존의 ARS공동망시스템과 일괄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제5절 기타 업무

1. 위규계좌 점검

당원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1981.12.31 제정)과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세칙」(1984.7.20 제정) 등에 의하여 해당예금(저축)자의 실명여부,

중복가입 및 한도초과여부 등 전금융기관 공통의 위규계좌 점검업무를 공동업무로서 전담실시하고 있다. 위규계좌의 점검은 연간 1회 내지 3회 정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해당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초창기 점검대상 예금은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이었다. 그후 새로운 예금이 신설됨에 따라 1988년 재형저축, 국민주청약예금 1991년 9월 상여금 재형저축, 1993년 5월 저축장려금부 정기적금, 1994년 10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에 대하여 실시하여 현재는 아래의 4개 예금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 그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4-8〉 주요예금의 점검내용

예금종목	점 검 내 용	점검대상기관
월급여 재형저축	한도초과 가입계좌 및 무자격자 가입계좌	전 취급기관
자유저축예금	예금잔액이 500만원이상이거나 1계좌 이상	〃
상여금 재형저축	분기별 120만원 초과 가입자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3개 취급금융기관 연간납입액이 144만원 (저소득 농어민: 12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	농·수·축협 회원조합

한편 계좌점검 결과를 보면 1987년 위규계좌율은 평균 3.6%로 가계우대정기적금이 최고 약 7%이었고, 저축예금이 약 2%로 가장 낮았다. 이후 지속적인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으로 1995년에는 평균 1.7%로 감소되었다.

〈표4-4-9〉 위규계좌 중복율 (단위: %)

구 분	예금신설일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저 축 예 금 주)	1978. 1. 9	1.98	2.30	1.32	1.91	1.65	-	-	-	-
자 유 저 축 예 금	1985. 4.29	3.52	3.23	2.29	1.59	1.66	2.48	1.94	4.19	-
가계우대정기적금	1985. 4.29	6.97	5.48	2.92	2.23	0.93	1.10	12.20	6.61	-
월 급 여 재 형 저 축	1976. 4. 1	-	4.55	0.88	0.69	0.50	-	0.32	0.18	0.11
국 민 주 청 약 예 금	1988. 2.15	-	30.0	-	33.3	25.0	-	-	-	-
상 여 금 재 형 저 축	1988. 8. 1	-	-	-	-	0.95	-	1.32	1.94	0.55
저축장려금부정기적금	1992. 6.18	-	-	-	-	-	-	0.34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986. 1. 1	-	-	-	-	-	-	-	1.20	13.80
계		3.63	4.26	1.47	1.17	1.12	2.39	1.60	2.02	1.70

주: 1977년 7월 1일 주택저축예금으로 신설, 1978년 1월 9일부터 전금융기관에서 취급개시

2. 금융전산망 안전대책

금융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전대책 강구
(1993.11.26)

컴퓨터와 통신망이 결합된 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금융거래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각종 금융리스크가 증대되고 금융전산망의 장애 및 재해나 금융정보의 유출에 의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금융전산망 중계센터로서 당원에서는 1994년 5월 19일 마련된 금전위의 금융전산망 안전대책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각종 장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와 참가기관간 공조체제 등 제반대책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가. 금융전산망 장애예방 및 사후대책 수립

당원에서는 금융전산망의 장애예방을 위하여 1993년 2월 금융전산망의 안전현황과 대책을 마련하여 1994년 1월 금융전산망 장애예방 및 사후대책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1993년 11월에는 전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1994년 4월 17일 전산시스템 운영지침서의 발간 및 네트워크 감시를 위한 대형스크린의 설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4년 11월에는 시스템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정기적인 예방정비와 적기에 노후기기를 교체하는 한편 업무량의 증가나 여건변화에 맞추어 용량증설 또는 재개발 등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1994년 5월 금융전산망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서울 6개 및 지방 12개 은행의 개별적인 통신회선을 공유토록 하였으며 지부에 ARS 및 네트워크운영지침서를 배부하여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부직원의 인식 제고와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1995년부터 정부의 금융전산망 안전과 관련된 각종 회의(국가기간전산망 안전보안협의회, 금융전산망안전대책위원회 및 전산망보안표준협의회)에 참석해오고 있으며 금융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행 전산담당 실무책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나. 참가기관간 「공동테스트 지침」의 제정 · 시행

1994년 9월 9일 공동테스트 지침을 마련하여 은행간 상호협조체제의 미비로 각 참가기관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변경시 참가기관간의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전산망 참가기관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기관과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그룹내 기관에 대하여 테스트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다. 참가기관간 「긴급연락망」 구축

1994년 11월 3일 금융전산망의 장애 및 사고발생시 이의 신속한 보고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과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금융단 전화망을 구축하여 각 기관의 전산안전 및 보안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였다.

라. 기타

(1) Dual Site Back-up 체제 구축

1996년부터 각종 장애 및 재해에 의한 전산시스템 및 전산센터 기능마비시에도 필수적인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Single Site에 의한 중앙집중식 One Center System의 전산시스템을 Dual Site Back-up체제로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 금융전산망의 암호화 장비 및 암호화 기법 도입

당원에서는 금융전산망을 통해 거래되는 현재의 평문데이타를 암호화하여 비인가자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접근으로 중요한 금융데이타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 장비와 기법의 도입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타 암호화장비등의 사용은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이나 「전산업무 및 데이타통신 보안관리지침」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한편 1995년 12월 19일 당원 직불카드업무용 보안장비(HSM)에 대하여 재경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3)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마련

1993년이후부터 마련된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대책과 금전위에서 마련한 금융전산망 안전대책을 종합하여 당원의 실정에 맞는 전산시스템의 안전대책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3. 금융전산 연수

금융전산네트워크 워크숍

금융전산망의 전담 구축·운영기관으로서 당원은 1993년부터 금융전산과 관련하여 당원과 사원은행간의 공동관심 사항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금융전산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 자문기관 또는 학계, 업계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진정보기술의 소개는 물론 실용화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참여은행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금융전산망을 비롯한 전자결제시스템의 전담운영 및 조사연구기관으로서 당원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금융전산 연수는 금융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직급별로 세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연수를 시행함으로써 당원 및 사원은행 직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관심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발표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선진 금융 시스템 견학 및 관련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4. 표준화

표준화는 국가사회 전산화에 있어서 상호 호환성과 연동성을 제공하는 기반기술중의 하나로서 용어정의 및 시험방법의 통일을 통한 상호이해 실현,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정보시스템간 Interface 및 상호 호환성 실현,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에 그 목적이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금융업무의 전산화가 시작되어 온 이후 금융전산망의 표준화는 금융업무의 전자화,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진전, 금융전산시스템의 다양화, 고도화 추세에 따라 1980년대 후반 금융전산망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추진되었다.

1988년 이후 금융전산망 전담사업자인 당원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추진되었

는데 초창기에는 금융기관의 인식과 전문인력의 부족 및 추진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당면한 개별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 5월 금전위에서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추진계획이 수립되고 당원이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로소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항목 선정 및 표준개발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어음·수표 및 지로장표 등의 외적규격 통일화와 각종 공동코드의 표준화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은행간 금융전산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기관 공동전산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업무처리 절차, 각종양식, 코드, 통신 프로토콜, 전문포맷 등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 발표하는 정보산업분야나 금융업무관련 국제표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업무에 대한 표준화는 1987년 11월 공업진흥청의 지정으로 ISO/TC68(금융부분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인 당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1993년 하반기에는 금전위 사무국에 표준화 담당조직이 신설되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 추진기구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국립기술품질원(1996년 2월),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전산망표준심의회(1994년 12월) 및 한국EDIFACT위원회(1991년 1월)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금융업무의 표준화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전산망표준화 추진 및 표준고시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추진위원회의 직무) 제10호에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였다.

표준화 추진은 최고 의결기구로서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를 두고 사전심의를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실무위원회 산하에 금융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표준의 개발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당원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행하고 있다.

표준 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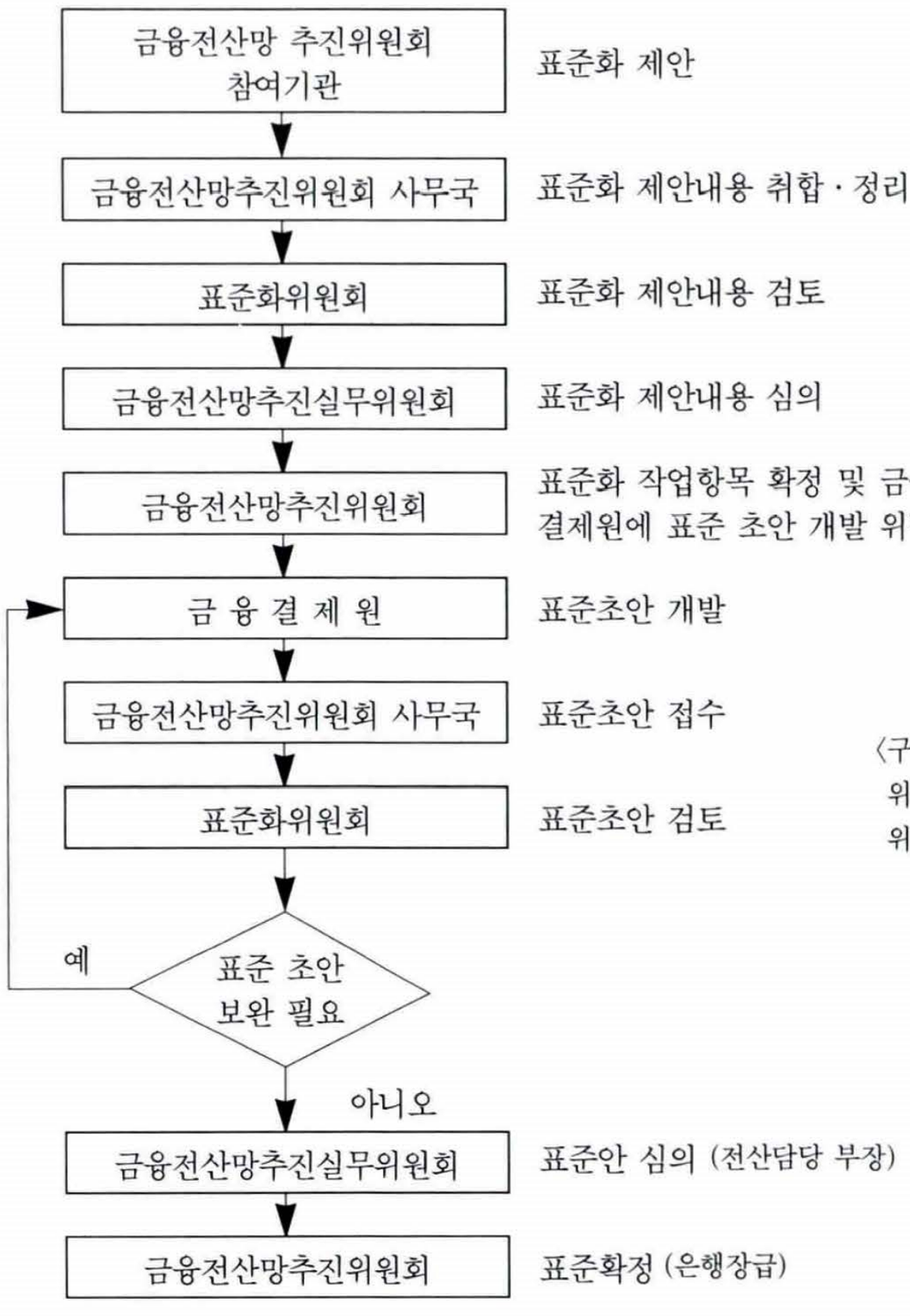

나. 은행업무(ISO/TC68)전문위원회

1987년 11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업진흥청 산업표준심의회 산하에 구성되어 ISO/TC68(금융부문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관련 국제회의 참가자를 추천하며 금융업무관련 표준화를 연구하고 있다.

공업진흥청은 금융전산망 전담사업자인 당원을 1987년 11월 ISO/TC68의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당원은 ISO/TC68, TC68/SC2, TC68/SC4, TC68/SC5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

매년 ISO/TC68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해외 표준화 동향 등을 습득하여 활용하고 있다.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 계획이 수립된 이후 금융전산망업무의 표준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당원이 추진한 표준화업무로는 IC카드의 금융업무 적용을 위한 표준규격개발 및 Firm Banking 서비스의 화일포맷표준화 등이 있으며,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1988년부터 추진해 온 표준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4-10〉 은행금융기관의 주요 표준화실적(1988~1995년)

구 분	주 요 내 용
1. 각종 코드의 제정	- 금융기관 공동코드, CD, ARS, 타행환관련 코드
2. 카드매체의 규격 통일	- 현금, 신용카드 등
3. 전문 Format	- 전문의 길이 및 구성요소
4. 양식, 서식의 제정	- CD거래명세표, 타행환입금의뢰서
5. 전산처리절차(CD, ARS, 타행환)	- 업무개시, 종료절차, 정상거래 장애시 처리절차
6. 통신 프로토콜	- CCITT X.25를 적용
7. 안전대책	
8. IC 카드	- 전기적 · 물리적 특성, 화일구조 및 명령어
9. EFT/POS	- 직불카드 공동협의회 중심으로 작성
10. 펌뱅킹	- 펌뱅킹서비스의 화일포맷

5. 기타

한편 금융기관 전산관련 공동업무의 신규추진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87년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자원 이용효율화 제안제도를 실시하였다. 초년도에는 다수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매년 제안건수가 감소하고 채택제안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은 물론 각행의 관심도 및 활용도가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 1990년 1월 17일 폐지하였다. 또한 은행간 업무연락의 신속화 및 간소화를 위하여 금융전산망을 이용한 은행간 E-MAIL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을 확대하고 신규업무를 발굴하여 금융기관 공동의 이해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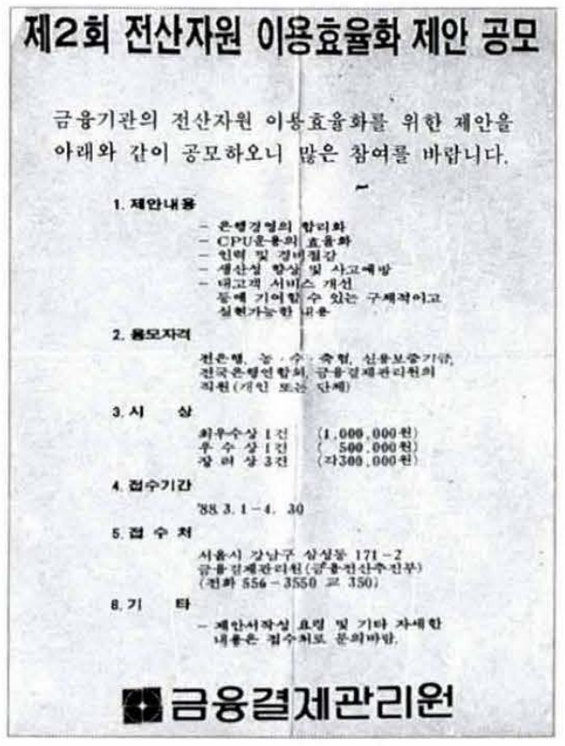
제2회 전산자원 이용효율화 제안 공모

금융기관의 전산자원 이용효율화를 위한 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안내용
- 은행경영의 합리화
- CPU운용의 효율화
- 인력 및 경비절감
- 생산성 향상 및 사고예방
-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

2. 응모자격
전은행, 농·수·축협, 신용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관리원의 직원(개인 또는 단체)

3. 시 상
최우수상 1건 (1,000,000원)
우 수 상 1건 (500,000원)
장 려 상 3건 (각300,000원)

4. 접수기간
'88.3.1-4.30

5.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
금융결제관리원(금융전산추진부)
(전화 556-3550 교 350)

6. 기 타
- 제안서작성 요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자원이용효율화제안공모

제5장 자금중개업무

자금중개업무란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거래와 외화콜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하며 외환매매거래는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화(미달러화)의 매매거래를, 외화콜거래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화자금을 무담보로 대출·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자금중개업무를 당원 자금중개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미달러화에 대한 기준환율과 28개 주요통화에 대한 재정환율도 산출·고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원화콜거래도 중개하였으나, 정부의 원화콜시장통합방침에 따라 1991년 5월부터는 중개하고 있지 않다.

제1절 자금중개업무 연혁

1. 외국환은행의 생성과 발전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는 1945년 10월 조선은행권인 원화와 미달러와의 공정환율을 1달러 대 15원으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외국환업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미군정령에 의하여 1947년 7월 설립된 조선환금은행이 1950년 6월 한국은행에 흡수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외국환 및 무역금융업무를 전담하였다.

당시 일반은행은 자본구조가 취약한 데다가 대외공신력이 약하고 외환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준비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후 1961년 12월31일 「외국환관리법」의 제정공포와 동시에 재무부는 시중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1962년 1월 19일에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외국환은행의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62년 4월부터 5개 시중은행

에서도 외환매매, 여행자수표의 매매, 추심 및 외화송금과 외화간 환전 등 을류 외국환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1964년 12월 외국환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기본법규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그밖에 외자도입법(1966.8.3), 무역거래법(1967.1.16) 등 관련법규가 제정되었다.

1960년대 후반이후의 연 10%이상의 경제성장과 1967년 7월 일련의 무역자유화 조치 등에 따른 급격한 대외거래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는 1967년 1월 30일 한국외환은행을 설립하여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일부업무를 이관하고 갑류외국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년 2월에는 5개 시중은행을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지방 주요도시 점포에서도 외국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였고 1968년 2월중에는 외국은행 지점이 외국환은행으로 국내에 진출하였다.

한편, 1968년부터 시중은행도 해외은행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자금결제도 해외지정은행을 통하여 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환점포도 국내외로 확장되었다.

2.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설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시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외거래규모가 증가하였고 외국환업무 또한 더욱 복잡다기화 되어갔다. 이에 정부는 외환의 은행간 거래를 보다 활발하게 하고 대고객매매율 산출의 기준인 시장율의 형성을 원활하게 하며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간 외환중개기관의 설립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1970년 8월 17일 한국은행이 주관이 되어 개최된 외국환은행 외국부장회의에서 외환교환실의 설치를 합의한 후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 외환중개거래에 관한 제반절차를 규정한 전문 6장 19조의 규약초안을 작성하여 동년 8월 21일 서울은행집회소 이사회(금요회)에서 의결하고 동년 9월 14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으로서 「외환교환실」을 한국은행내에 처음 설치하였다.

외환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외국환은행은 상대은행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고, 중앙은행은 당일의 외환수급상황에 따라 적정수준의 외화를 필요한 은행에 공급하여 효율적인 시장개입은 물론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시장가격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 외환교환실

제정당시 외환교환실규약 체계와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외환교환실 명칭, 장소, 참가은행, 운영위원의 자격
제2장 운영위원회(제5조~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의사록 작성
제3장 조직(제10조~제13조) 외환교환실 조직, 교환원과 서기의 직무 등
제4장 운영(제14조~제16조) 거래통화, 거래방법, 집회시간
제5장 보고(제17조) 당일거래상황의 한국은행앞 보고
제6장 기타(제18조~제19조) 규약위반시 제재사항

외환교환실은 참가기관간 원화자금을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하는 장소로서 초기에는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 협약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비영리기구로서 집회소에서 파견한 서기가 업무를 총괄하는 자율적 조직체로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외환교환실을 당원이 운영하게 된 것은 1984년 5월부터이며 1986년 1월 외환거래실, 1989년 10월 자금중개실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1990년 3월 2일 당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2-41조에 외환매매거래의 중개기관으로 명시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제2절 자금중개실의 변천

1. 초창기(1970년~1982년)

외환교환실의 업무는 초창기 서울은행집회소 총무부 소속으로 여직원 1명과 한국은행 책임자 1명이 관장하였다. 은행간 외환거래는 참가은행 외환교환원이 1일 1회 영업마감시간 1시간 30분전(토요일은 1시간전)까지 외환교환실에 모여 매입 또는 매도의 어느 일방거래만을 사전에 봉서(封書)로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소액우선거래원칙에 따라 거래가 성립되었으며 거래불성립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개입하여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형태를 취했다. 또한 외국환업무의 확대에 따라 초기부터 장외거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은행간 외환거래는 시행초기의 규정미비와 참가기관의 관심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거래량도 1971년 일평균 약 90만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1월 28일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우선 외환교환실을 은행집회소 건물로 이전하고 외환거래시 준수해야 할 세부처리절차인 「외환교환실 거래세칙」을 제정하였다. 외환교환실 거래세칙에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의 결정, 시장율 게시전 거래, 거래통화·시간·순서 등 외환교환실 운영방법과 시장율 계산방법, 기타 지정통화의 거래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교환실 거래방법은 운영위원회(각행 부장급으로 구성)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장시간 조정, 시장율 게시, 외환거래경비분담규정의 신설 및 외환교환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일련의 외환시장 개편조치는 우리나라의 변동환율제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격메카니즘에 의한 환율의 자율적 형성과 국제수지 개선에의 기여, 외환시장의 육성, 한국은행의 시장조작 기능의 개혁, 외국환은행의 경영건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참가기관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와 이를 위한 제반절차의 정비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다.

참가기관의 외국환업무 확대에 따라 1975년 9월 5일부터 거래횟수를 1일 2회로 변경하고 1980년 7월 1일부터 선물환거래제도(무역거래)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설치하였다. 1973년과 1979년의 두차례에 걸친 오일파동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외환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년 2월에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환율변동의 안전성 확보와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단일변동환율제도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되었다. 1981년에는 선진국시장의 거래형태에 맞추어 토요일 거래를 폐지하고 1982년 11월 26일 거래횟수를 1일 1회로 개장시간도 오후 3시로 변경하였다

變動換率制 첫실시
弗當 50전올라
27일
年 4~5%범위서 流動化

변동환율제 실시(1980.2.27)

한편 1975년 7월에는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 조직화하고 거래를 체계화하여 지준예치금 조달의 원활화와 여유자금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원화콜거래실이 은행집회소내에 설치되었다.

2. 성장기(1983년~1988년)

1982년이후로 외환교환실을 통한 외환거래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참가기

관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감에 따라 1983년 5월부터 외환거래방법은 금융단 전화를 이용한 거래방법으로 변경되었다. 외환교환실 운영도 5월 2일 외환시장 운영협의회에서 전국은행협회로 이관되어 전화주문의 접수와 매매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책임자 1명과 여자직원 1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거래시간도 은행영업시간과 유사하게 변경되었다.

1984년 5월 서울은행협회의 조직개편으로 외환교환실 및 콜거래실이 당원의 모태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로 이관되었고 처음에는 총무부에서, 1988년 4월 8일부터는 어음교환부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1984년 7월 23일 외환거래관련 규약, 지침 및 규정 등이 모두 금융단협정과 함께 폐지된 이후 외환교환실은 참가기관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5년 재무부의 정기업무감사(10.28~11.12)에서 외환거래의 방법, 거래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약이 미비되어 있고, 외환시장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 및 운영의 효율화방안 등을 위한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986년 1월 28일 종래의 외환교환실규약을 외환거래실규약으로 새로이 제정하였다.

한편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무역수지가 1986년 43억달러, 1987년 77억달러, 1988년 114억달러로 연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외환거래량도 증가하여 1988년에는 1971년의 41배, 1983년의 3배인 257억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6개의 종금사가 신규로 외환거래에 참가하였고 전체 참가기관은 국내은행 27개, 외국은행 57개를 포함하여 1988년 총 90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3. 발전기(1989년~현재)

1986년부터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과의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환율 절상압력과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압력을 줄이고 미국의 환율조작 주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한국은행 외환관리부의 주관하에 1989년 1월 21일 수립된 「외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외환시장육성전담반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동년 3월 17일 수립된 외환거래실의 중개기능 강화방안에 따라 1989년부터 외환거래실은 업무내용과 외형상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1989년 6월 외환거래실은 대한화재빌딩에서 한국은행 제1별관으로 이전하고 동년 10월 16일 업무성격이 유사한 외환거래실과 원화콜거래실을 자금중개실로 개편하였다. 다만, 원화콜거래실은 사무실의 변동없이 1991년 5월 중개업무의 폐지시까지 명동소재 전국은행연합회 건물에 있었다.

1989년 9월 1일부터는 참가기관앞 시황전달방법을 종래의 전화에서 정보통신매체(AP, Reuter)로 변경하였고 이의 경비분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년 12월 1일부터는 외화(미달러화)콜거래중개업무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 3월 2일부터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로 변경됨에 따라 당원이 미국달러화를 포함한 25개 통화에 대한 환율을 산출, 고시하게 되었고 외환매매거래 중개방법을 수작업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1992년 11월 2일에는 자금중개 기반시설로서 전화자동녹음장치를, 1993년 10월 22일 직통전화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의 확충과 중개기능 제고를 도모하였다. 1995년 2월 25일에는 자금중개실이 직무권한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선진외환시장의 중개기법 습득을 위한 직원연수 및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중개실은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등에서 외환시장으로서의 면모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4년 2월부터 8월까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외환제도개혁을 위한 외환시장 하부구조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외환브로커회사 설립안이 정부에 제시되었고,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1995년 2월부터 8월까지 은행실무자로 구성된 외국환관리법 개정전담팀에서 작성된 외국환관리법(외국환중개회사 설립 포함)이 1995년 11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당원중심의 단일 외환거래중개업무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원은 지난 25년간 외환시장 운영에 대한 Know-how와 시설을 바탕으로 당원 중심의 외국환중개회사로 설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外換브로커제도 도입

外國換관리법 개정안 확정

정안을 확정, 이달중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삼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이번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외환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오는 99년까지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환거래는 지급절차가 간소화되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야하는 지급행위와 지급법이 단순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외국환의 종류별로 전담하는 외환브로커제도가 도입되고 외국환의 매입 매각 등의 의무가 폐지된다.

이와함께 외환자유화추세를 반영, 외환관리시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법률체계를 쉽게하는 제4차 외환법으로 전환된다.

제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개

內外經濟新聞 구독신청 727-0404

外換브로커제도 도입(1995.3.2)

제3절 업무내용

1. 외환거래 중개

외환거래 중개업무란 외국환은행간 원화자금을 대가로 외화의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외국환은행이 대 고객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포지션을 조정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가. 거래절차 및 방법

직통전화시스템 가동(1993. 10. 22)

거래통화는 초창기부터 달러화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6년 10월부터는 엔화가 추가될 예정이다. 외환거래는 1980년 5월 제정된 「외환시장거래에 관한 지침」을 1989년 12월 새로이 「은행간 외환거래 지침」으로 제정하여 일반원칙과 자금중개실의 중개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의뢰는 1983년 5월부터 사용되던 금융단 전용전화가 1993년 10월 22일부터는 당원 자금중개실과 각 참가기관의 딜링룸간에만 전용으로 설치된 직통전화(Direct-phone)로 이루어진다. 거래의 체결과 정보제공은 1990년 3월 중개업무의 전산화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중개업무는 1995년말 현재 15명이 담당하고 있다.

외환거래중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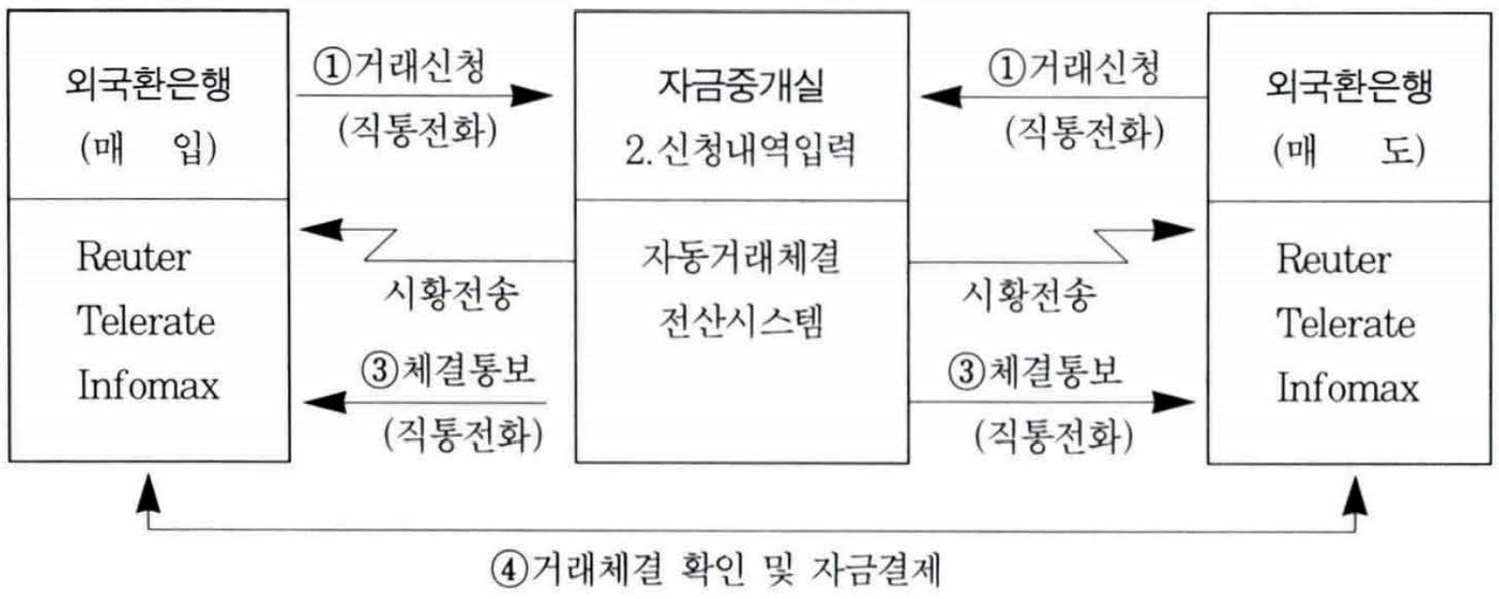

한편 거래는 업무도입 당시에는 은행영업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3시 등 일정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981년 11월부터 현재와 같이 토요일에는 외환거래중개를 하지 않았다. 1983년 5월 거래시간을 09:30~16:00로 변경하고, 1989년 12월에는 오후의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였다. 또한 현물환거래 중 Value Today는 1996년 2월 1일부터 자금결제일이 국제관행인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에 이루어지는 Value Spot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1994년 11월 1일부터 15:00, 1995년 3월 2일 12:00, 1996년 2월 1일부터는 10:30까지만 거래하도록 하였다.

외환거래 참가기관은 1970년 28개에서 1984년 6개의 종금사가 참여하고 지속적인 외국은행 등의 참가로 1995년말 현재 은행 금융기관 이외에 종금사 등 100개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표4-5-1〉 외환거래 참가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참 가 기 관	81	82	86	86	90	98	99	91	90	90	99	100
국내은행	25	25	26	26	27	30	30	32	33	33	33	33
외국은행	50	51	54	54	57	62	63	53	51	51	53	52
기 타	6	6	6	6	6	6	6	6	6	6	13	15

나. 거래종류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에는 현물환, 선물환 및 SWAP거래가 있다. 외환교환실 개설당시에는 현물환거래가 전부였으나 1989년 9월 선물환, 1995년 10월 SWAP이 추가되었다. 현물환거래란 거래체결일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자금의 수도, 결제가 완료되는 거래를 말하며, 선물환거래는 제2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완료되는 거래로 기일물에 따라 17종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표4-5-2〉 선물환거래의 종류

거래종류	기 일	취급개시일자
선물환거래	1일물	1989. 9. 1
	2, 3, 4, 5, 6일물, 1, 2주일물 1, 2, 3, 6개월물, 1년물	1991. 5. 6
	1, 2, 3, 4분기물	1994.11. 1

SWAP거래는 현·선물환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그 종류는 선물환과 동일하다. 최소거래단위는 50만달러 이상 10만달러 배수로, 가격은 10전으로 하고 있다.

다. 업무량 추이

외환거래는 자금중개실을 통하는 장내거래와 은행간 직거래로 성립하는 장외거래로 구분된다. 1971년 6억불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1995년에는 무려 5,000억불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시행되면서 연평균 거래증가율이 30.0%에서 72.0%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전체 거래량에서 장내거래의 증가율이 52.5%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 실시후 73.7%로 크게 증가한데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여지의 감소와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수급의 안정으로 시장실세에 의한 거래가 장내에서 이루어져 1995년에는 장외거래의 비중이 3.8%로 대폭 감소한 데 있었다.

한편 시장평균환율제도 실시 첫해는 시장참가자의 확대 및 새로운 시장형성

〈표4-5-3〉 외환매매 거래량 추이 (단위: 미백만불, %)

구분	합계	증감율	장내거래	비율	장외거래	구분	합계	증감율	장내거래	비율	장외거래
1970						1983	8,631	19.4	5,354	62.0	3,277
1971	622	-	622	-	-	1984	11,405	32.1	5,969	52.3	5,436
1972	812	30.5	812	-	-	1985	7,895	-30.8	6,403	81.1	1,492
1973	1,333	64.2	1,333	-	-	1986	10,544	33.6	9,217	87.4	1,327
1974	1,571	17.9	1,571	-	-	1987	14,271	35.3	13,139	92.1	1,132
1975	2,001	27.4	2,001	-	-	1988	25,740	80.4	24,072	93.5	1,668
1976	3,453	72.6	3,453	-	-	1989	25,481	-1.0	23,334	91.6	2,147
1977	4,368	26.6	4,368	-	-	1990	58,492	129.5	55,312	94.6	3,180
1978	-	-	-	-	-	1991	85.368	46.0	81,791	95.8	3,577
1979	-	-	-	-	-	1992	126.257	47.9	123,816	98.1	2,441
1980	-	-	-	-	-	1992	299,987	137.6	294,381	98.1	5,606
1981	6,418	-	1,364		5,054	1994	516,386	72.1	507,544	98.3	8,842
1982	7,228	12.6	5,552	76.8	1,676	1995	504,700	-2.3	485,615	96.2	19.085

주: 1978~1980년 외환거래량은 자료입수 불가

에 따른 수급 활성화로 업무량이 130% 증가하였으며, 이후 4개년 동안의 연중 거래량이 1,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5차례에 걸친 환율의 1일변동폭 확대, 실수요 증빙제도 완화, 종합포지션한도 확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10월 2일 외국환은행 및 수출입업체에 다양한 환위험 헤지수단을 제공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SWAP 거래는 외국환Position의 제약 등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라. 외환시장 정보제공

외환시장정보는 1983년 참가기관의 개별적인 요청에 응하여 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1989년 9월 2일부터는 외환시장정보를 국제경제정보매체인 로이터, Telerate에, 1992년 6월 22일부터는 국내정보매체인 인포맥스에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과 관련한 경비분담기준을 1989년 6월 30일 새로이 마련하고 1990년 5월 14일에는 이를 「외환거래분담금 경비분담기준」으로 개정하였다.

경비분담금은 정보제공시스템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건비, 물건비 등의 여타 경비로 구분하며 전자는 참가기관의 통신회선수에 비례하고, 후자는 한국은행이 선부담하는 20%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절반은 거래체결금액에, 절반은 거래체결건수에 비례하여 분담토록 하였으나, 1992년 9월에는 정보제공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분담대상비용에서 제외하였다.

외환시장정보는 1일환율변동폭의 확대와 거래량의 증가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가치와 중요도가 점증하고 있다.

한편 1992년 11월 2일에는 자금중개실과 참가기관간 거래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참가기관간 거래이행에 대한 안정성과 당원의 대외공신력을 높이며 사후 증빙자료확보를 위하여 전화자동녹음장치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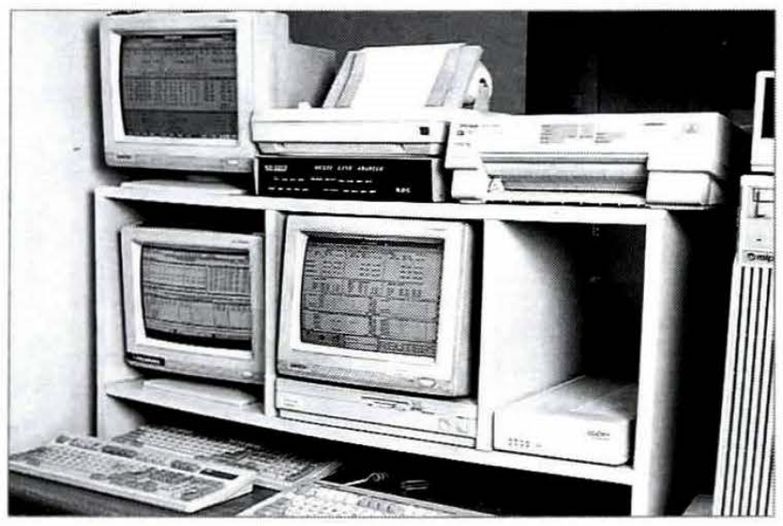
외환거래정보제공 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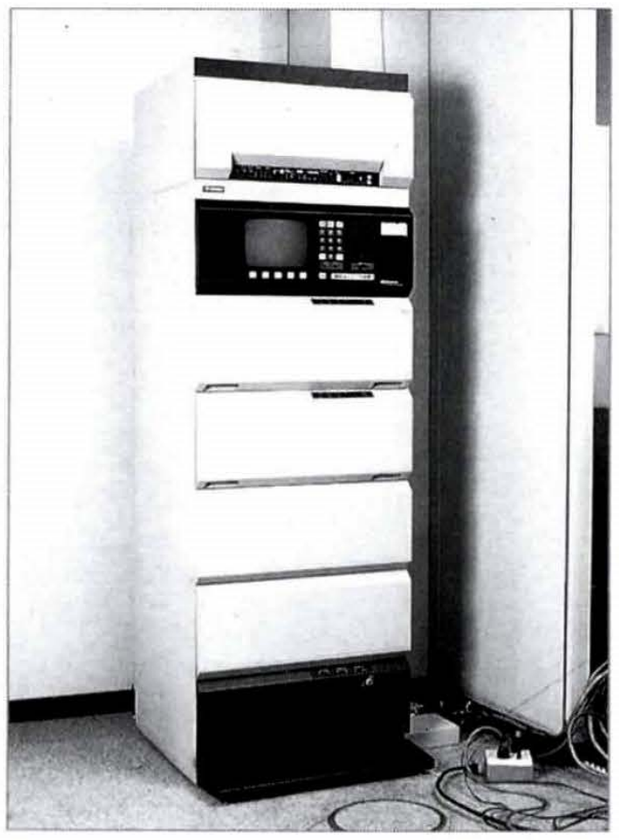
전화자동녹음장치

마. 외환시장운영협의회

1980년 5월 9일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1984년 7월 23일 일시 폐지되었다가 1986년 1월

28일 외환거래규약 제정시 외환시장운영기구로서 다시 신설되었다. 이후 1989년 12월 1일 외환시장운영협의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13개기관을 위원으로 설치하고 1992년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참가하여 현재는 1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5-4〉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변천내역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간사은행		외환		산업	조흥	외환	상업
그룹별대표기관	시중은행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특수은행	산업		산업, 기업			
	지방은행	부산	경기	대구	대구	부산	경남
	외은지점	BTC, 동경		CMB, 동경			
	종금사	한국종금, 현대종금		한불종금		아세아종금	한국종금
당연직		한국외환은행, 외국환평형기금,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회원수		13명	13명	15명	15명	15명	15명

협의회는 외환거래에 관한 의견조정 및 지침의 설정, 외환시장운영에 관한 정보교환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의 검토, 외환거래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기타 외환시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외화콜거래 중개

외화콜거래 중개업무란 외국환은행간 1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무담보로 대여·차입하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198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외화콜시장이 개설되기전 외화수급은 공식적인 중개기관없이 외국환은행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해외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기외화자금시장의 개설로 필요한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조달·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중개통화는 개설당시에는 미달러화 하나이었으나 점진적인 외환자유화 및 국내외환시장 개방의 진전에 따른 시장규모의 증대에 따라 1991년 3월 4일 일본엔화, 1992년 9월 1일 독일마르크화, 1994년 11월 1일 영국파운드화를 추가하여 1995년말 현재 4개국 통화를 중개하고 있다.

참가기관수는 외환매매거래에 참가하는 기관과 동일하며, 1990년 8월 27일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자금운용방침에 따라 국내외화콜시장의 활성화와 국내은행의 만성적인 외화자금부족 해소를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 거래에 참가하고 있다.

거래는 대여·차입 기간에 따라 일물(O/N, T/N, S/N), 주일물(1,2,3주), 개월물(1,2,3,6월), 년물 등 11종이 있다. 최저거래금액은 일본 엔화가 천만엔, 나머지 3개 통화는 10만단위이며 거래신청 및 시장정보제공 등은 외환매매와 동일하며 거래접수 및 체결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거래시간은 외환매매거래에 준한다.

국내시장이 만성적인 자금차입시장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경우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엔화 등 기타 통화는 달러화에 비하여 결제비중이 미흡하여 거래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각 통화별 거래량은 외환시장 규모 및 경상거래규모 확대 등에 따라 개설초기에 비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개설 초기의 미달러화는 첫해에 9억달러에서 1995년에는 454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엔화는 첫해에 1,490억엔에서 1995년에는 2,909억엔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독일마르크화는 첫해에 0.2억마르크에서 1995년 10억마르크로 증가하였고 영국파

외화콜거래 중개장면

〈표4-5-5〉 외화콜거래량 추이 (단위: %)

구 분	미달러(백만)		엔(천만)		마르크(백만)		파운드(백만)	
	거래량	증감율	거래량	증감율	거래량	증감율	거래량	증감율
1989	906	-	-	-	-	-	-	-
1990	27,037	2,884.2	-	-	-	-	-	-
1991	30,307	12.1	14,907	-	-	-	-	-
1992	39,218	29.4	12,247	-17.8	18	-	-	-
1993	47,465	21.0	26,154	113.6	447	2,383.0	-	-
1994	51,139	7.7	24,730	-5.4	726	62.4	20	-
1995	45,401	-11.2	29,091	17.6	998	37.5	57	185.0

운드화는 첫해에 0.2억 파운드에서 0.6억파운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 통화에 대한 중개규모는 대외거래 결제규모 및 자본거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990년 8월 참가당시 약 2억불에 불과하던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콜론 운용규모는 1995년말 현재 약 10억불로 증가하였다.

3. 원화콜거래 중개

원화콜거래 중개장면

원화콜거래 중개업무란 국내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간 15일 이내의 단기 원화자금을 무담보로 대여·차입하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단기 원화자금의 수급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원화 콜시장이 개설된 것은 정부에서 콜자금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콜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단자시장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년 6월 27일 전문 4장 17조의 콜거래실 규약을 제정,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75년 7월 1일 서울은행협회 「금융기관콜거래실」로 신설된 것을 모태로 하여 1984년 5월부터 1991년 5월 1일 정부의 원화콜시장통합방침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당원에서 운영하였다.

콜거래실이 개설되기 전에는 지준예치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일이 타은행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했고 금리도 은행별 또는 건별로 차이가 심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금리자율화,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의 전환 등 금융자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89년 1월 31일 금융기관간 자금부족을 원활히 조정함으로써 금융부문간 자금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금융시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원화콜시장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9년 3월 1일부터 비은행권 중심의 장외콜거래를 참가기관간 직접거래방식에서 중개기관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동년 6월 27일 서울소재 8개 단자회사를 원화콜거래 전문중개기관으로 인가하였다.

또한 동년 10월 4일부터 은행권 중심의 집중 콜거래방식을 중개기관에 의한 점두거래방식으로 전환하고, 당원도 콜거래 중개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콜시

장은 은행권 중심의 장내콜시장과 비은행권 중심의 장외콜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1989년 10월 4일 재무부로부터 콜거래 중개기관으로 당원과 6개 단자사가 지정된 후, 당원은 콜업무를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여 거래의 지침이 되는 종전 콜거래규약을 폐지하고 재무부가 정한 콜거래 중개업무지침에 의거 1989년 9월 29일 콜거래 중개업무방법서를 제정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콜시장 통합이후 중개기관 이용실태를 보면 은행권은 종전대로 당원을 이용하고, 비은행권은 주로 단자회사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원화 콜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어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콜이자율 차이 및 거래행위의 담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였다. 이에 정부는 콜거래중개업무운용지침 개정시 중개기관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공문(금시1224.1 -106, 1991.4.24)을 당원 앞으로 발송하여 1991년 5월 1일부터 당원의 중개기관자격을 취소함으로써 제1,2금융권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원화 콜시장을 단자회사로 단일화하였다. 이로써 1975년 7월 1일부터 운영해 온 당원의 원화콜시장중개업무는 16여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콜거래는 일반콜거래와 지준마감일인 7일과 22일에 일어나는 특별콜거래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는데 최장거래기간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에 맞추어 15일로 하였다. 초기에는 기일물을 1,3,7,15일의 4종으로 하였으나 1989년 9월 29일 5,9,11일의 3종을 추가하였다. 콜거래기관간 자금결제는 은행간은 한은지준계정으로, 비은행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간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은

〈표4-5-6〉 원화 콜거래량 추이 (단위: 미백만불, %)

연 도	거래량	증감율	연 도	거래량	증감율
1975	2,558	-	1984	119,797	2.7
1976	10,207	299.0	1985	158,273	32.1
1977	22,149	117.0	1986	149,840	-5.3
1978	45,939	107.4	1987	179,116	19.5
1979	85,011	85.1	1988	232,033	29.5
1980	65,460	-23.0	1989	191,686	-17.4
1981	50,150	-23.4	1990	399,854	108.6
1982	61,637	22.9	1991	125,526	-68.6
1983	116,699	89.3			

주: 1991.5.1 원화콜거래 중개업무 중지

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업무량은 1975년부터 매년 평균 36.8%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원화자금 수급을 절실하게 느낀 참가기관들의 지속적인 거래 참가와 1980년 중반의 금리 자율화, 통화관리방식의 간접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등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자유화정책의 추진으로 분석된다.

참가기관은 콜거래실 개설당시 한국은행 기금운영부, 5개 특수은행, 5개 일반은행 10개 지방은행 및 9개 외국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29개 은행이었으나 1979년 8월 22일 서울에 본점을 둔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참여함으로써 제2금융권이 최초로 원화콜시장에 참여하였고, 1984년 7월 20일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여 참가기관은 106개로 늘어났다. 또한 1989년 9월 29일 신규로 참가한 157개의 신용금고, 창업투자회사, 신용카드전업사 등은 동년 10월 콜시장통합으로 당원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이어서 1990년 3월 31일 신탁회사와 연기금이 참여하여 원화콜거래 중개업무가 중단되기 직전인 1991년 4월말 참가기관은 총 105개 기관에 달하였다.

〈표4-5-7〉 콜거래참가기관 변천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국 내 은 행	27	27	27	27	27	31	30	30
외 국 은 행	50	50	52	52	56	62	53	53
비은행금융기관	29	29	29	31	32	189	22	22
계	106	106	108	110	115	282	105	105

주: 1989년 10월 4일부터 당원과 6개 단자사가 중개 실시

제4절 환율고시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시한 것을 뜻한다. 즉 양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인 것이다. 따라서 환율제도란 양국통화간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1945년 10월 1일부터 고시되었다. 당시 미군정하의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후 2차례의 화폐개혁

을 거쳐 1964년 5월 3일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 이후에도 환율이 사실상 고정운영됨으로써 4차에 걸쳐 기준환율은 255원에서 480원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그후 1980년 2월 27일 환율의 유동화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복수통화바스켓 페그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환율이 주변환경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여건이나 국내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국내 외환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지 못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1986년부터 특히 미국과의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환율절상의 압력과 해외부문의 통화압력을 줄이고 환율조작 주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1990년 3월 2일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은행간 외환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당원이 미달러화에 대한 기준환율과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에 대한 재정환율을 산출하여 고시토록 지정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입 관련기사(1989. 11. 2)

이때부터 한국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에서 고시하던 환율고시업무가 당원으로 이관되어 1990년 2월 28일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1990년 3월 2일자의 시장평균환율로 적용하고 3월 2일자 거래분을 기초로 미달러화에 대한 기준환율과 일본엔화 등 24개 통화에 대한 재정환율을 산출·고시하게 되었다. 이후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1990년 8월 9일부터 중동지역 4개국 통화의 산출고시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SAR, BHD, AED는 1991년 4월 1일, KWD는 1991년 9월 9일 부터 재개되었다. 1994년 4월 1일에는 대외 교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원화, 태국 바트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및 유럽통화단위 등 4개 통화를 추가하여 현재 29개 통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준환율은 초기에는 자금중개실을 통하여 거래된 전일의 외국환은행간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현물환거래(Value Today)를 거래금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으나, 현물환거래가 Value Today와 Value Tomorrow로 구분됨에 따라 1994년 11월 1일부터 Value Tomorrow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었다.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에 대한 재정환율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하여 산출한다. 일본엔화를 비롯한 5개 통화의 매매중간율(Cross Rate)은 동경외환시장 08:40분대

호가를, 캐나다 달러 등 기타 통화는 뉴욕 외환시장 또는 런던외환시장의 전일종가 등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기준 및 재정환율은 일반고객에게는 ARS, 참가기관에는 정보매체(Reuter, Telerate, Infomax)를 통하여 09:00에 고시한다.

〈표4-5-8〉 환율산출 · 고시통화

1. 미국 달러화	(USD)	2. 일본 엔화	(JPY)
3. 영국 파운드화	(GBP)	4. 독일 마르크화	(DEM)
5. 캐나다 달러화	(CAD)	6. 프랑스 프랑화	(FRF)
7. 이탈리아 리라화	(ITL)	8. 스위스 프랑화	(CHF)
9. 홍콩 달러화	(HKD)	10. 스웨덴 크로네화	(SEK)
11. 호주 달러화	(AUD)	12. 덴마크 크로네화	(DKK)
13. 벨기에 프랑화	(BEF)	14. 오스트리아 실링화	(ATS)
15. 노르웨이 크로네화	(NOK)	16. 네델란드 길더화	(NLG)
17. 사우디아라비아 리얄화	(SAR)	18. 쿠웨이트 디나르화	(KWD)
19. 바레인 디나르화	(BHD)	20. 아랍연방토후국 더히람화	(AED)
21. 싱가폴 달러화	(SGD)	22. 말레이지아 링기트화	(MYG)
23. 뉴질랜드 달러화	(NZD)	24. 스페인 페세타화	(ESP)
25. 필란드 마르카화	(FIM)	26. 중국 원화	(CNY)
27. 태국 바트화	(THB)	28.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IDR)
29. 유럽통화단위	(ECU)		

한편 환율의 1일변동폭은 정부의 외환정책에 따라 1990년 3월에는 기준환율 ±0.4%였으나, 그후 매년 확대되어 1995년 12월 1일에는 기준환율 ±2.25%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나 은행의 환율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의 주요국 통화의 기준 및 재정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5-9〉 환율변동폭 변천내역

구 분	1990.3.2	1991.9.2	1992.7.2	1993.10.5	1994.11.1	1995.12.1
환율변동폭	±0.4	±0.6	±0.8	±1.0	±1.5	±2.25

〈표4-5-10〉 시장평균환율 및 재정환율 추이

(단위: 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US$	717.70 (8.17)	693.20 (3.5)	760.80 (12.31)	716.00 (1.4)	791.60 (6.23)	759.00 (1.4)	813.10 (10.6)	786.60 (1.4)	813.40 (1.10)	788.70 (12.31)	794.80 (2.20)	756.00 (7.28)
¥	574.70 (10.19)	439.36 (4.2)	607.18 (12.31)	510.56 (6.13)	660.72 (10.5)	572.28 (3.13)	798.79 (8.17)	628.88 (1.16)	827.73 (7.12)	715.87 (1.6)	955.44 (4.19)	739.44 (11.3)
DM	486.24 (12.11)	402.84 (3.2)	503.65 (12.27)	395.96 (7.2)	565.18 (9.2)	459.51 (3.6)	508.60 (10.13)	463.03 (7.31)	535.79 (10.21)	457.95 (2.7)	571.21 (3.8)	505.47 (1.7)

주: ( )은 해당 일자임

제6장 부가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이란 컴퓨터와 통신설비를 결합한 부가가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축적하거나 변환처리하는 등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당원의 부가통신사업에는 직불·신용카드 VAN, 자금관리서비스(CMS), 민원EDI업무 등 펌뱅킹업무, 은행지로자료의 온라인 송수신업무 및 단말기보급업무 등이 있다.

제1절 부가통신사업의 도입

당원이 부가통신사업을 도입하기 전 대고객전산망은 1990년 12월 7일 수립된 「금융기관 대고객전산망 도입방안」에 따라 국내 수요의 미흡과 제반규정의 미비 등 금융경제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은행간 전산망이 아닌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당초 「금융전산망 1단계 기본계획」에서는 당원중심의 은행공동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직불카드 이외에 신용카드의 신용조회, 자금이체업무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2년 「금융전산망 2단계 기본계획」에서 신용카드VAN업무가 배제되면서 동 업무는 1987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던 한국정보통신(KICC) 등의 민간 VAN사업자가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 3월 30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EFT/POS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당원은 1994년 4월 11일 이를 전담할 EFT/POS 전담반을 금융망업무부내에 설치하여 은행간 전산망에 의한 대고객전산망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2월 8일 전담반은 EFT/POS업무와 부가통신사업 기반의 조기구축

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조직은 카드 및 단말기사업, 고객사업, 시스템통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96년 1월 23일 VAN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1993년 10월 한국신용정보㈜의 점외CD공동망 운영, ARS공동망의 은행별 개방화 및 다수 VAN사업자의 경쟁적인 EFT/POS업무 참여 등 당시 상황으로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향후 계획사업이 일반가맹점, 신용카드사, 여타 VAN사업자 등과 다원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운영경비를 사원은행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기존의 비영리방식으로는 사업수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업자체의 수수료 수입이나 판매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키로 방침을 정하고 1994년 11월 11일 재정경제원에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이의 허가를 받아 40억원의 기본재산을 출자하여 1995년 4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금융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른 사원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당원에게도 상업마인드의 확산을 촉진시켰고 수익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었다.

〈표4-6-1〉 수익사업 추진경과표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94. 4.11	EFT/POS 전담반 설치	
7.29	직불카드 VAN사업자로 선정	직불카드공동망 참여은행협의회
10. 7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 위탁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11.10	판매대금자동결제(EFT/POS)망 추진계획 의결	금융결제원 총회(제95-5차)
11.11	수익사업 승인신청	재무부 금융국 금융총괄과
11.14	수익사업 승인신청 설명자료 제출	
12.22	수익사업 승인	
1995. 1. 6	수익사업 수행 기본방침 수립	
2. 8	부가통신사업실 신설	전담반 해체
4. 1	수익사업 개시	
1996. 1.23	VAN사업부로 개편	

제2절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 구축·운영

판매대금 자동결제망(EFT/POS)이란 백화점이나 소매점 등에서 현금이나 수표의 수수를 거치지 않고 판매대금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카드 가맹점의 예금계좌로 즉시 자동입금시키는 자금이체 시스템이다. 대상업무는 직불카드(Debit Card)와 신용카드(Credit Card)의 신용조회와 자금이체가 있으며 단말기의 보급 이외에 가맹점과 은행 및 신용카드사간의 거래승인 조회에 대한 중개를 담당하고 있다.

〈표4-6-2〉 결제수단별 대비표

구 분	직불카드(Debit Card)	신용카드(Credit Card)	선불카드(Prepaid Card)
발급 대상	예금계좌 소유자	신용대출 가능자	카드 구매자
사용 한도	예금잔액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카드 구매액
결제 시점	직불	후불	선불
발행 주체	은행	은행, 신용카드사	은행, 신용카드사, 기업

1. 직불카드 VAN

直拂 VAN사업자 최종 選定

金決院·한국신용평가등 5개社

11월부터 본격 서비스

에설

일정기준없이 銀行투표로 결정

카드조회사업 版圖변화 불보듯

직불 VAN사업자로 당원선정 기사
(1994.8.1)

직불카드 VAN업무는 1993년 12월 개정된 「신용카드업법」에 직불카드 관련조문이 신설됨으로써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1994년 4월 29일 재무부의 직불카드 시행안에 따라 1994년 5월 31개 은행이 참여하는 「직불카드 참여은행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다수의 VAN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1994년 7월 29일 협의회는 당원을 비롯한 6개 VAN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였고, 14개 은행으로 구성된 「표준화추진위원회」와 「전산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규약, 전산처리 방법 등을 제정하였다.

당원도 직불카드 VAN사업자로서 개별 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은 물론 은행 VAN사간 자금정산기관으로서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별테스트, 1995년 3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3회에 걸친 종합테스트 및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2회의 시범실시시 점검기관의 역할도 철저히 수행하여 직불카드 제도의 도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표4-6-3〉

구 분	해 당 기 관 명
직불카드공동망 참여은행(31)	농협,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기업, 국민, 외환, 주택,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 수협, 장신, 축협,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하나, 보람, 평화
VAN사업자(6)	금융결제원(KFTC), 카드사연합VAN(비씨/국민), 한국정보통신(KICC),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부가통신(KOVAN), 한국신용평가(KIS)
자금정산기관(1)	금융결제원(KFTC)

직불카드 서비스는 물품구입자금을 직불카드(Debit Card)에 의하여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경유,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하여 가맹점의 예금계좌로 익일 이체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회원자격, 이용한도·시간, 가맹점의 자격기준, 결제계좌 및 수수료와 거래의 유형 등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표4-6-4〉

직불카드	• 회원자격: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거래가 있는 실명의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실명신고된 개인사업자 포함) • 이용한도: 1일 50만원 이내, 1회 10만원 이내, 최저한도 1,000원, 횟수 제한없음 • 이용시간: 매일 08:00~22:00
가 맹 점	• 자격기준: 직불카드 단말기 설치업소로서 불량거래처(적·황색 및 금융부실)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체 및 대표자(일부업종은 1년이상 영업을 하여야 함) • 결제계좌: 직불카드 단말기 1대당 1개 은행에 한함 • 수수료: 기본요율은 2%로 하되 업종에 따라 2%, 1.5%, 1%로 적용
거래유형	• 기본거래: 정상거래, 취소거래, 거래성립조회거래, 잔액조회거래 • 부수거래: 반품/환불거래, 거래증빙거래, 사전승인거래

2. 신용카드 VAN

당원이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에서 배제된 신용카드 조회VAN 업무를 도입하게 된 것은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공여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만 발급되므로 신뢰도면에서 직불카드에 뒤지지 않고 직불카드의 발급량이 많지 않을 경우 EFT/POS의 활용이 저조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여타 직불카

〈표4-6-5〉 직불카드 거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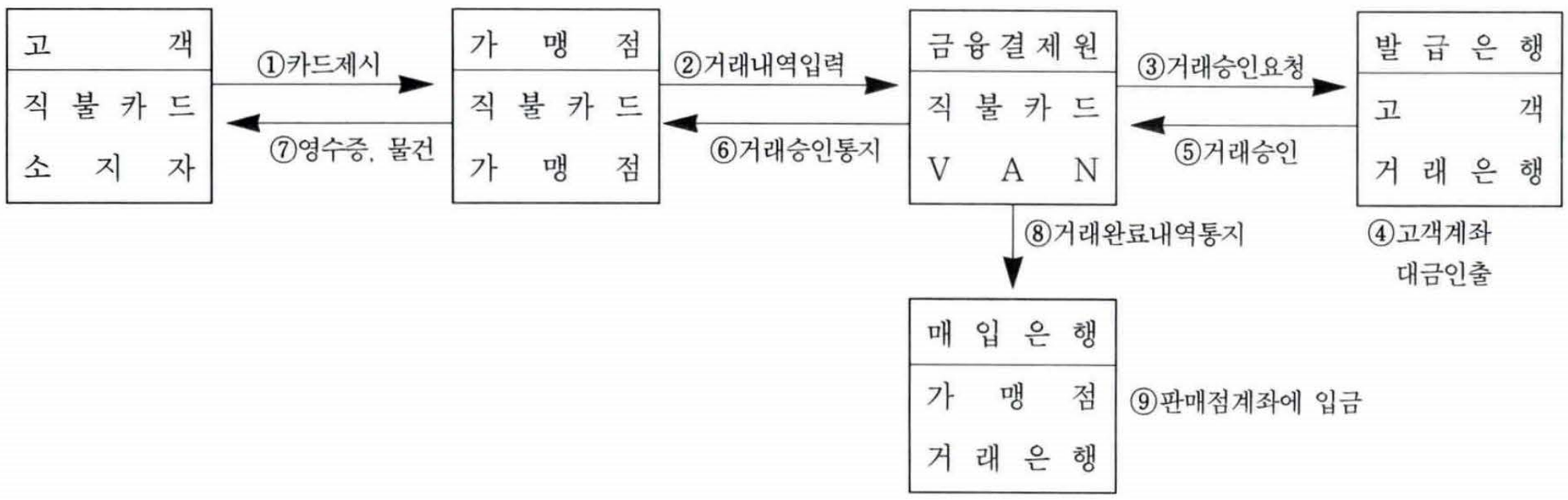

드 VAN사업자 모두가.신용카드 VAN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직불카드 VAN 업무만으로는 경쟁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당원이 판매하는 단말기는 직불·신용카드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성 또한 높아 신용카드 VAN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수익사업으로서의 수익성 동반 상승을 도모하였다.

신용카드 VAN업무는 가맹점이 상품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신용상태를 단말기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맹점은 상품매출 전표를 카드사에 제시하여 상품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서비스는 국내 22개 신용카드사와 개별적인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전산접속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업무도입 당시 시장규모에 비해 VAN사업자가 포화상태라는 신용카드사의 인식과 한편으로 비씨·국민카드사

〈표4-6-6〉 신용카드 거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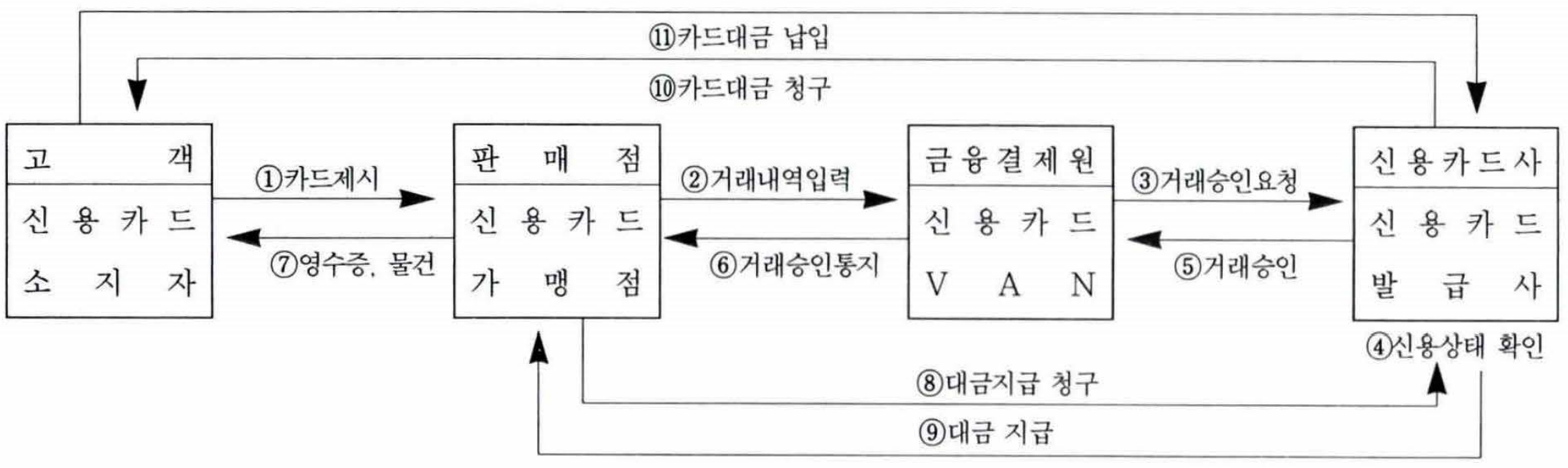

가 직접 신용카드 VAN사업에 나섬에 따라 외환신용카드사와 제휴한 신용카드사들은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전문계 신용카드사인 삼성카드와 1995년 4월 6일, 엘지카드와 1995년 5월 8일 개별접촉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제도가 신용카드사 개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됨으로 인해 22개사가 각기 다른 업무처리방법과 전산처리 사양을 구비하고 있어서 모든 신용카드의 조회VAN 서비스처리체제를 구축하는데 1995년 12월까지 8~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신용카드사별로 다양한 업무처리방법의 표준화와 아울러 당초 금융전

〈표4-6-7〉 국내 신용카드사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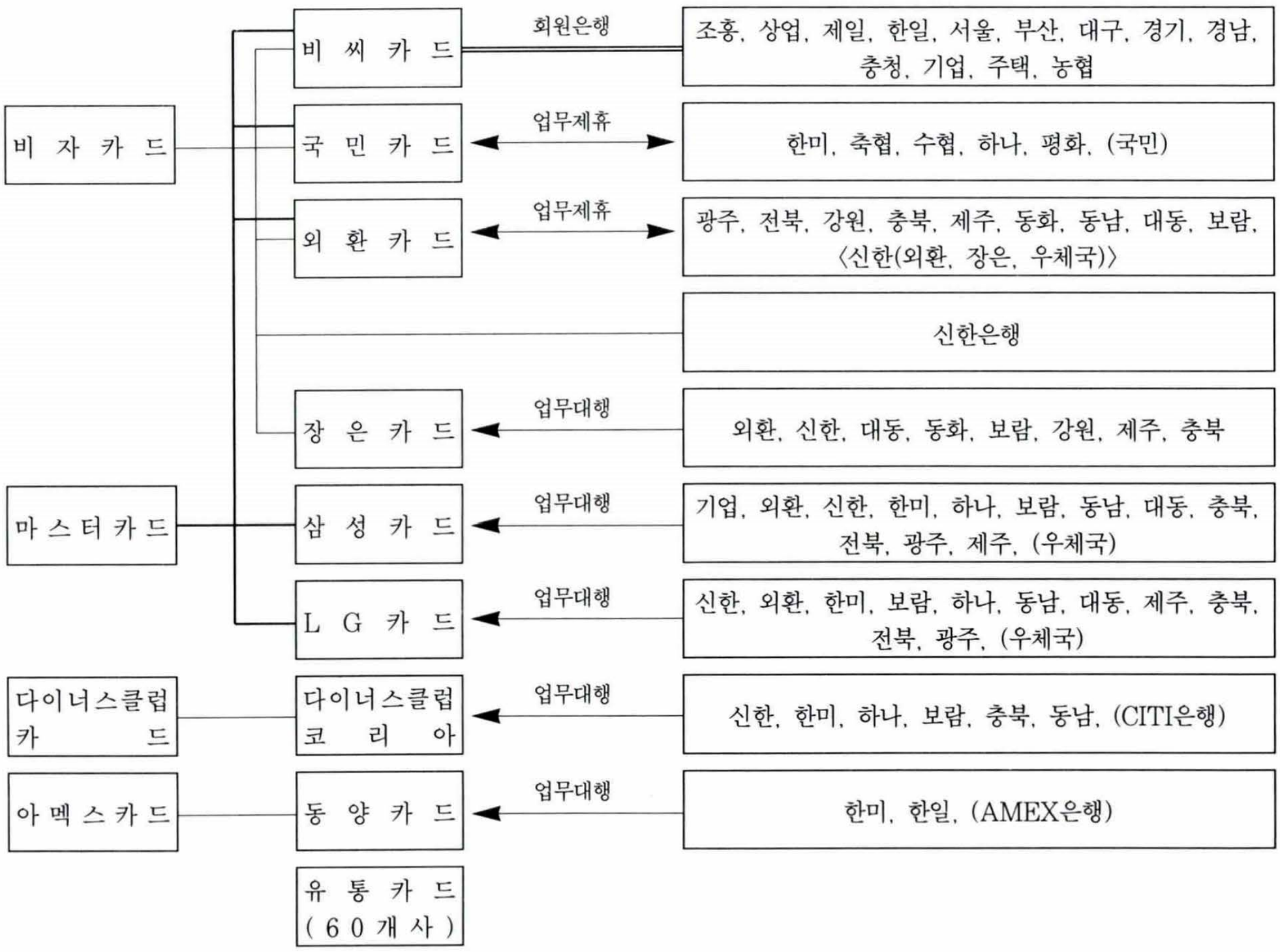

주: ( )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아니며, 〈 〉는 업무대행임

산망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던 신용카드 판매대금자동이체시스템(Draft Capture System*)을 조기에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금융전산처리 전문기관으로서 완벽한 신용카드 VAN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이체(Draft Capture)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일종으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VAN사업자가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전산정보로 신용카드사에 전송하는 신규 서비스임

*CAT : Card Authorization Terminal

3. 단말기(CAT*) 보급

단말기라 함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판독하고 카드거래 내역의 입력과 전송을 위한 단말장치로 단순히 신용카드 조회만 가능한 형태와 영수증발급이 가능한 프린터 부착형이 있다. 단말기 판매는 당원 발족이래 최초의 실질적인 상(商)행위로서 이는 바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VAN업무에 대한 수익성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당원에서는 체계적인 판매망의 구축을 통하여 고품질의 VAN서비스 창출을 위한 각종 부가서비스의 개발과 상품 차별화 등 대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가. 단말기 제조

직불 및 신용카드용 단말기

당원 최초의 직불·신용카드용 단말기는 상표명 「***뱅크포스(BANK POS)***」, 모델명 ***DS-9500D***로 출시되었다. 상표는 1995년 10월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마치고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하였다.

뱅크포스는 상품판매시점에서 판매정보를 처리하는 개념으로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상품 구매시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능에서도 단순한 자기띠(Magnetic Stripe)에 기록된 자료뿐만 아

〈표4-6-8〉 직불카드 단말기 구비사양(표준업무지침)

기본사양	• 비밀번호의 입력 및 암호화를 위한 핀패드(PIN PAD) 부착 • 영수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 내장 • 직불카드 기본거래의 처리 가능 • 자체 보안장치(비밀번호, 사용자 등록 등) 구비
부가사양	• 사전승인 거래 및 수표조회 거래의 처리 • IC카드 수용구조 • 기타

니라 첨단 결제수단인 IC(Integrated Circuit)카드의 처리 및 전 은행 수표의 24시간 조회 이외에도 완벽한 보안장치(Dual Card System)가 장착되어 있으며 프린터 일체형과 프린터 미부착형의 후속 모델도 개발중에 있다.

나. 판매망의 구축

단말기 판매망은 전국규모의 대리점 조직과 대형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한 본사 직판의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1994년 4월 주요 경제지에 대리점 모집광고를 통하여 모집을 개시한 이래 현재 전국 27개지역에 43개의 대리점이 개설되어 있다. 당원의 대리점은 전문 판매직원과 A/S담당직원이 상주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당원 49개 지부를 통하여 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5년 6월12일에는 Help Desk를 설치하여 민원의 응대와 가맹점 등록에 대한 사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표4-6-9〉 전국대리점 현황(1996년 3월말 현재)

지 역	대리점수	대 리 점
서 울	15	한국정보센타, 데이타네트시스템, 현대정보통신, 진광유통, 서광정보, 금성정보시스템, 프린스전자, 우성프라자, 삼성정보통신, 홍진, 한미정보통신, SL Corp, 여신정보통신, 현대정보, 대명정보
부 산	1	연봉물산
대 구	1	마이더스시스템
인 천	1	르네상스정보통신
대 전	2	에이스라인, 하나로정보통신
광 주	2	그린상사, 광주BANKPOS
경 기	8	월드시스템(고양), 경기BANKPOS(수원), 신영정보통신(안양), 유림하이테크(의정부), 해동정보통신(성남), 뱅크포스통신(평택), 두성정보통신(안산), 이송정보서비스(구리)
강 원	1	한국정보센타(강릉)
충 북	1	용우텔레콤(청주)
충 남	1	환웅정보통신(천안)
전 북	3	국도시스템(전주), 전북BANKPOS(익산), 한국카드정보(남원)
전 남	4	전남BANKPOS(순천), 광양BANKPOS(광양), 해남BANKPOS(해남), 청호정보통신(목포)
경 남	2	남풍상사(울산), 금융정보통신(마산)
제 주	1	뱅크통신
계	43	

제3절 자금관리서비스시스템 구축·운영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란 다수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당원이나 주거래은행과의 접속만으로 전체 은행관련 펌뱅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표4-6-10〉

구 분	내 용
참가은행	은행별 펌뱅킹 추진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창구업무를 감축시켜 사무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어 은행의 수익성이 향상됨
이용기관	복수은행관련 금융서비스를 한 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절감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종합적인 자금관리와 운용이 용이해짐
국 가	금융전산망 전담기관인 당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펌뱅킹 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 및 각종 금융사고 예방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Cashless·Paperless Society의 구현이 가능해 짐

그동안 각 은행이 고객서비스개선 및 수수료수입증대를 위해 개별적으로 구축, 추진하여 왔으나, 은행관련 펌뱅킹서비스가 1995년 4월 공동형 펌뱅킹업무의 개발·구축추진방안인 「금융EFT/EDI업무 추진방안」에 따라 1995년 4월 국내 30개 예금취급은행 모두와 업무약관을 체결하여 시작되었다. 1995년 6월에는 금전위로부터 공동형펌뱅킹 자금정산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당원은 1995년 10월 2일 금전위에서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이용시스템」구축방안이 의결되고 1995년 10월 9일 금전위로부터 CMS시스템의 구축, 위탁을 받아 은행공동 펌뱅킹사업의 국내 전담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표4-6-11〉 개별형 펌뱅킹 현황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은 행	5	8	12	18	23
VAN사업자	3	5	6	6	10
이 용 업 체	20	47	1,378	2,852	9,437

CMS시스템은 당원의 금융전산망 등 금융기관의 기존 전산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대량

의 자금이체로 인한 금융사고의 방지뿐만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CMS업무는 직불·신용카드 VAN 업무나 다른 펌뱅킹업무와 연계된 종합상품으로 이용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수납대행업무로서 1995년 8월부터 국민연금 수납대행업무와 한전 급여이체대행 업무를 개시하였다.

국민연금 수납대행업무는 농어촌지역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당원의 은행간 일괄전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 EFT/EDI」업무이다. 기존에 보험료 납부는 국고수납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가입자의 불편이 컸었다.

한전급여이체 대행업무는 조흥은행이 개별형 펌뱅킹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급여를 이체하는 서비스로서 여타 은행으로 급여이체시 당원이 이를 금융전산망의 은행간 일괄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업무이다.

CMS서비스는 당원에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뱁(VAB: Value Added Bank)에 접속된 일반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대량자금이체(입금이체, 출금이체)와 실시간(Real-Time) 이체, 다수은행 거래내역조회·통지(Multi-Bank Report)와 금융정보조회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밖에 금융경제정보(금융상품, 금리, 환율 등)나 사고수표정보(자기앞수

〈표4-6-12〉

서비스내용		업무내용
대량자금이체	대량지급 (입금이체)	급여(상여금), 연금, 배당금 등 각종 자금의 일괄지급을 위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다수은행의 수취인 계좌로 일괄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대량수납 (출금이체)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대금의 일괄수납을 위하여 다수은행의 납부자 계좌에서 수납기관의 계좌로 일괄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실시각 이체	자금지급, 조회 및 통지업무	기업 또는 가정에 설치된 PC, 전화기, HOST, 전용단말기 등으로 거래은행 또는 타행에 온라인 실시각(Real-Time)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다수은행 거래 내역 조회		모든 거래은행에 대한 입출금내역, 예금잔액, 대출거래내역 등 제반 금융거래내역을 한번의 조회에 의해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표, 가계수표) 및 거래정지자 정보 등 기타 관련정보 제공업무뿐만 아니라 참가은행이 요구하는 업무도 수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량자금이체업무는 업무의뢰방법, 자금운영일, 처리기일, 수수료 및 서비스제공자 등에 있어서 기존의 일반지로업무, 개별형 펌뱅킹 및 수납대행업무와는 다르다. 이를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6-13〉 유사업무와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지로업무	공동형 펌뱅킹	개별형 펌뱅킹	수납대행
의뢰방법	OFF-LINE방식 (장표, M/T등)	ON-LINE전송	ON-LINE전송	지로와 동일
자금운영일	0일~3일	1, 2, 3일 형	1일	지로보다 단기
처리기일	3일~6일	0일~2일	0일~2일	지로보다 단기
수수료	50원~80원	자금운영 일수별로 차등화	100원~300원	없음(지로보다 저렴)
서비스제공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은행, VAN	은행

CMS 업무별 처리도

(입금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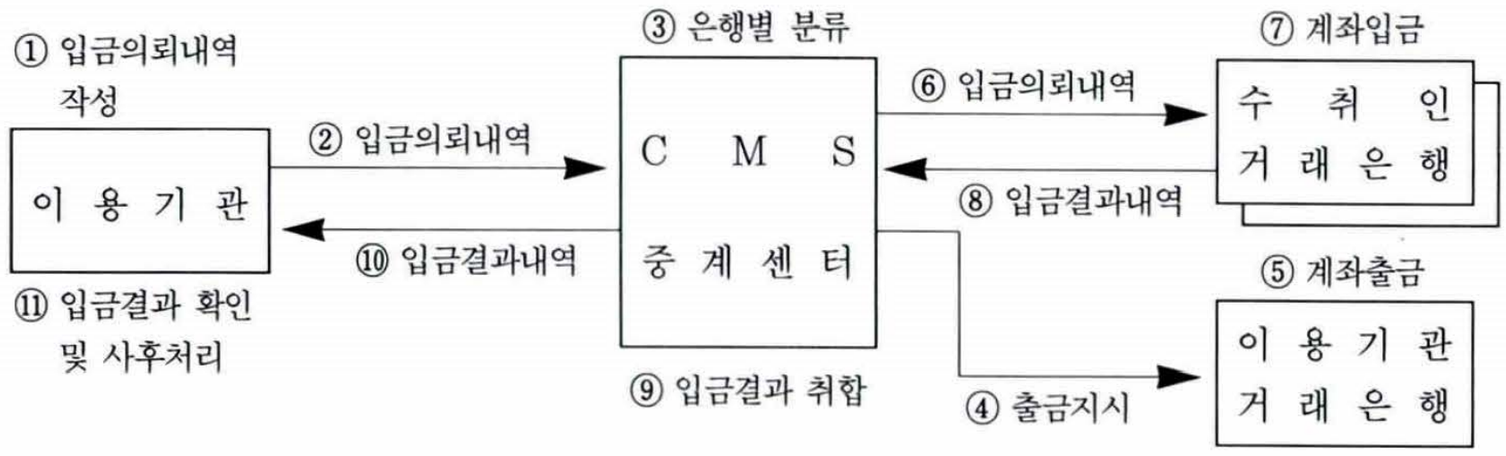

(출금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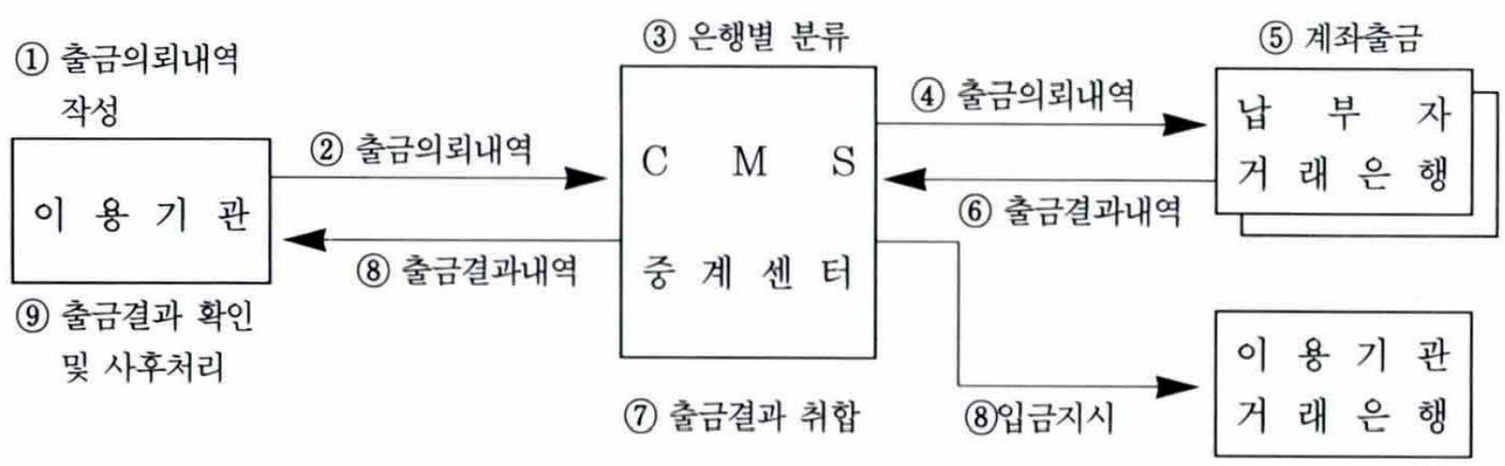

(실시간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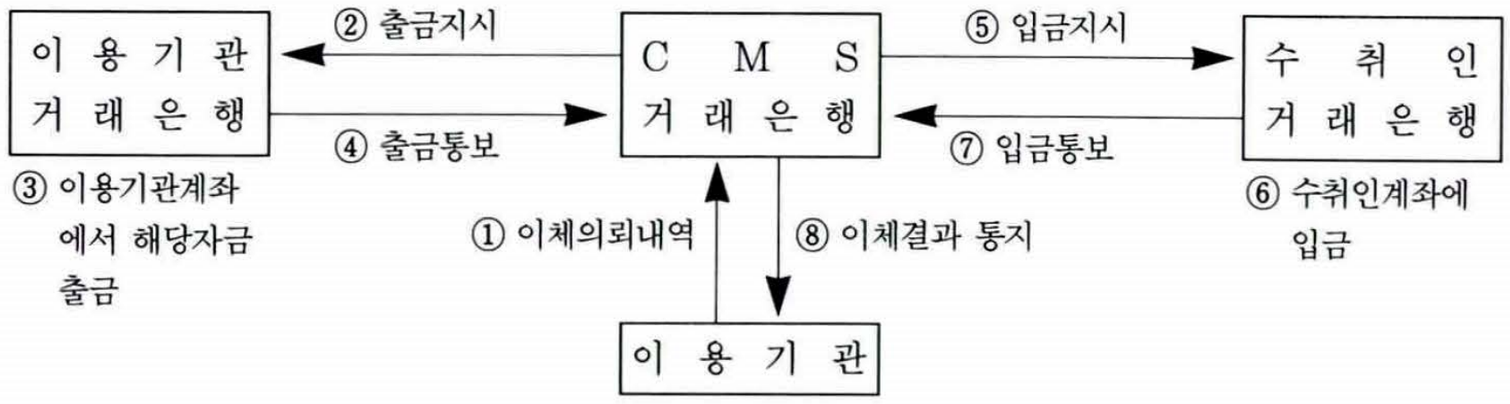

(Multi-Bank Report 및 금융정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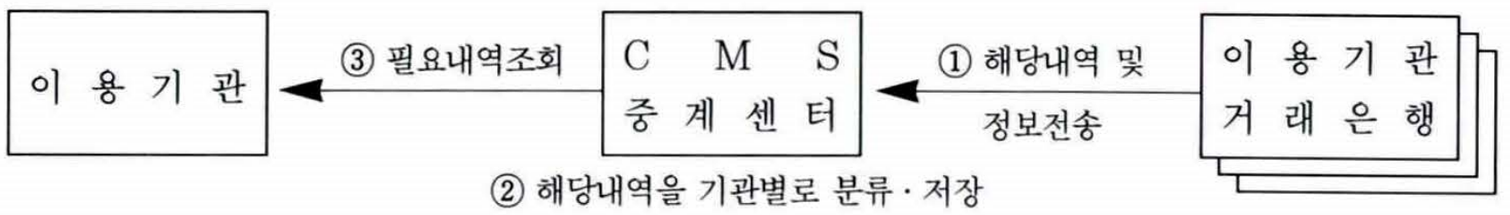

제4절 기타

1. 지로 EDI

지로 EDI는 당원과 지로이용기관 사이에 주고 받는 지로관련 각종자료를 전자사서함(Mail Box)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송 · 수신하는 업무로서 1995년 12월 개시되었다.

이 업무는 당원 사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가 강조된 시점에서 지로관련 업무의 타기관에 의한 유사 업무(펌뱅킹 등)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자료처리 자동화로 지로자료 송 · 수신과 관련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해결함으로써 당원의 고유 사업인 은행지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원내외적으로 구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던 지로 EDI업무는 당초 지로업무부에서 다년간 검토되어 실시기반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수익사업의 개시 즈음에 부가통신사업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지로EDI업무는 1995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995년 7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서울지역(동일통화권 포함)을 중심으로 세부업무별로

5~10개 업체를 설정하여 M/T전송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범실시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중 수렴된 고객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1995년말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었다.

지로EDI 서비스의 이용기관은 호스트 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호스트 컴퓨터 이용기관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개인용 컴퓨터 이용기관은 공개형 프로그램(예: 이야기) 또는 당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당원이 이용기관에 통지·전송하는 업무와 이용기관으로부터

지로 EDI 업무처리도

(지로입금내역〈OCR서비스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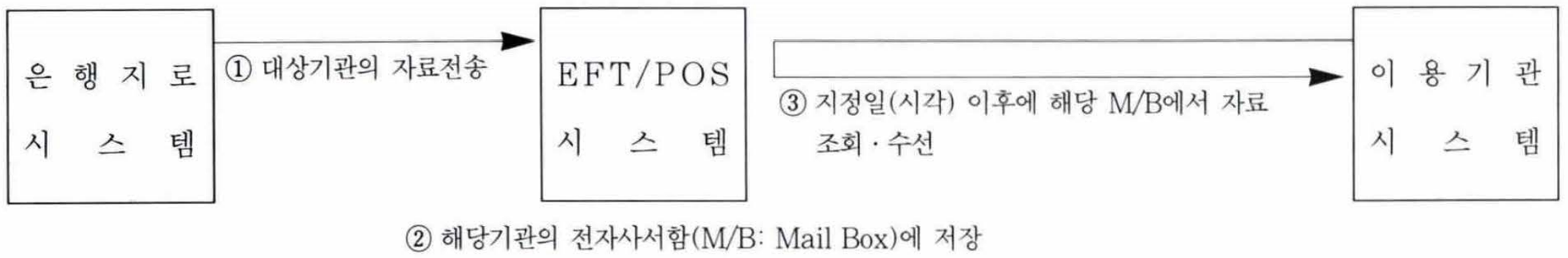

(자동납부 신청명세 및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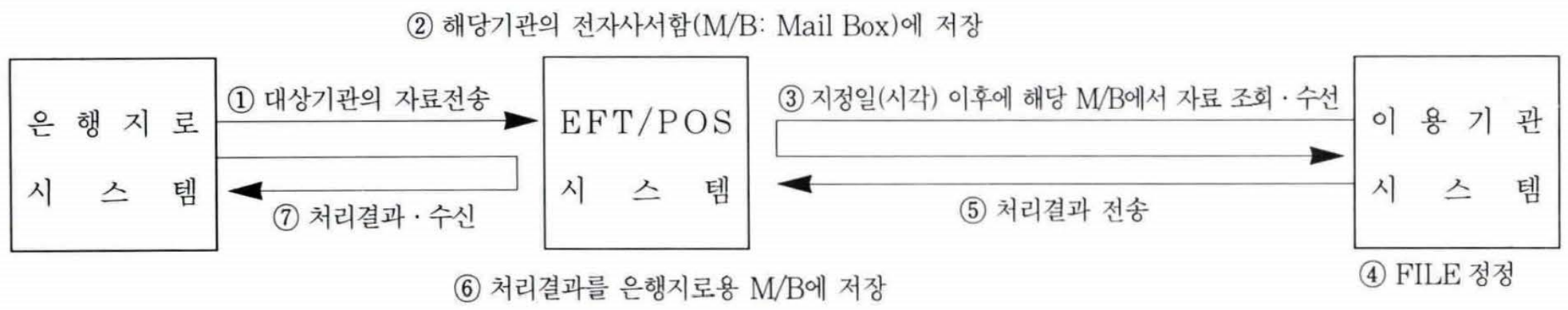

(자동이체/대량지급 청구명세 및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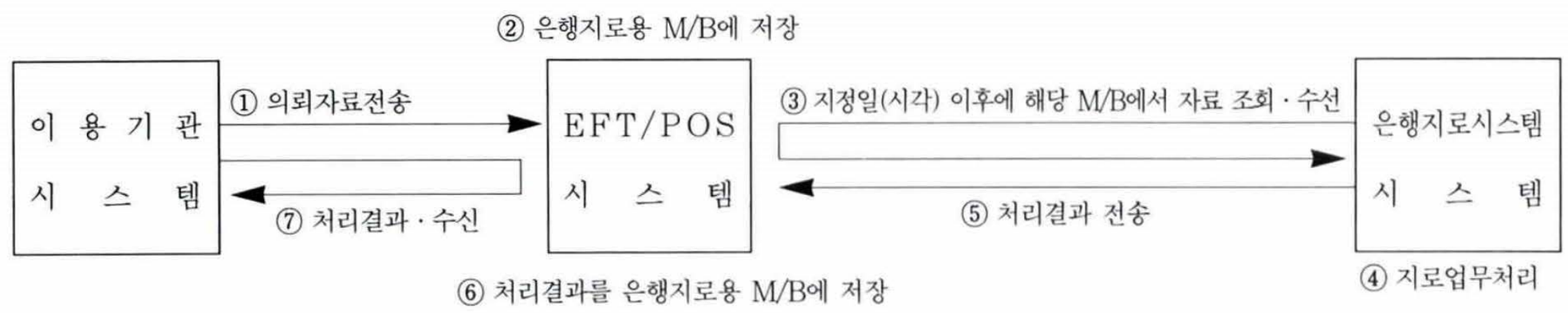

전송·통지받는 업무가 있다. 당원이 통지·전송하는 업무는 지로입금내역, 자동납부신청내역, 자동계좌이체결과명세로서 이용기관의 지로자료를 분류하여 지로EDI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지로 EDI 시스템이 지로자료를 이용기관별로 정리하여 해당기관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면 이용기관은 지정일·시각 이후에 자료를 검색하여 찾아가게 된다.

또한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통지받는 업무는 자동이체신청결과, 자동이체청구자료, 대량지급의뢰자료로서 이용기관이 해당자료를 작성하여 지로 EDI 시스템에 전송하고 지로 EDI 시스템이 자료를 업무별로 분류하여 은행지로용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면 은행지로시스템은 지정일에 자료를 검색하여 은행지로 업무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용요금은 가입비와 서비스 이용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용형태별로 할인제가 적용되고 은행지로방식을 이용하여 매월 징수한다.〈표18, 19, 20〉

2. 민원 EDI

민원 EDI 업무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해당기관을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과 이로 인한 많은 통행수요와 비용의 발생을 국가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 민원기관의 온라인 조회 또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민원수요가 많은 기관이 직접 해당 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조회토록 하는 EDI에 의한 온라인 조회업무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에서 민원서류 발급신청을 접수하고 금융기관이 당원의 전산망을 경유하여 해당 민원기관에 통보하면, 민원기관이 민원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은행창구 신청제도로 구분된다.

민원EDI업무는 1995년 5월 8일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전화로 민원의 발급을 신청한 후 그 대금을 은행에 납입하면 민원을 우송하는 형태로 개선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금전위, 당원이 2개월 가량의 세부 업무협의를 거쳐 1995년 7월 26일 「민원서류 개선대책」이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으로부터 마련되었으며 그후 금전위에서 민원EDI 업무 시스템의 구축을 당원에 위탁하여 수익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민원 EDI업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단위 농·수·축협을 포함한 국내 예

금취급은행과 우체국이며 1996년 상반기부터 시행된 1단계 업무는 은행창구 신청제도로 대상서류는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자치단체 민원실 발급 민원서류로서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4종과 교육부가 지정하는 대학교 증명 민원서류인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등이 있다. 또한 2단계 업무는 원장 전산화가 이루어진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온라인조회 및 전자문서 발급을 가능케 하여 1997년중에 시행된다.

민원 EDI 처리도

(온라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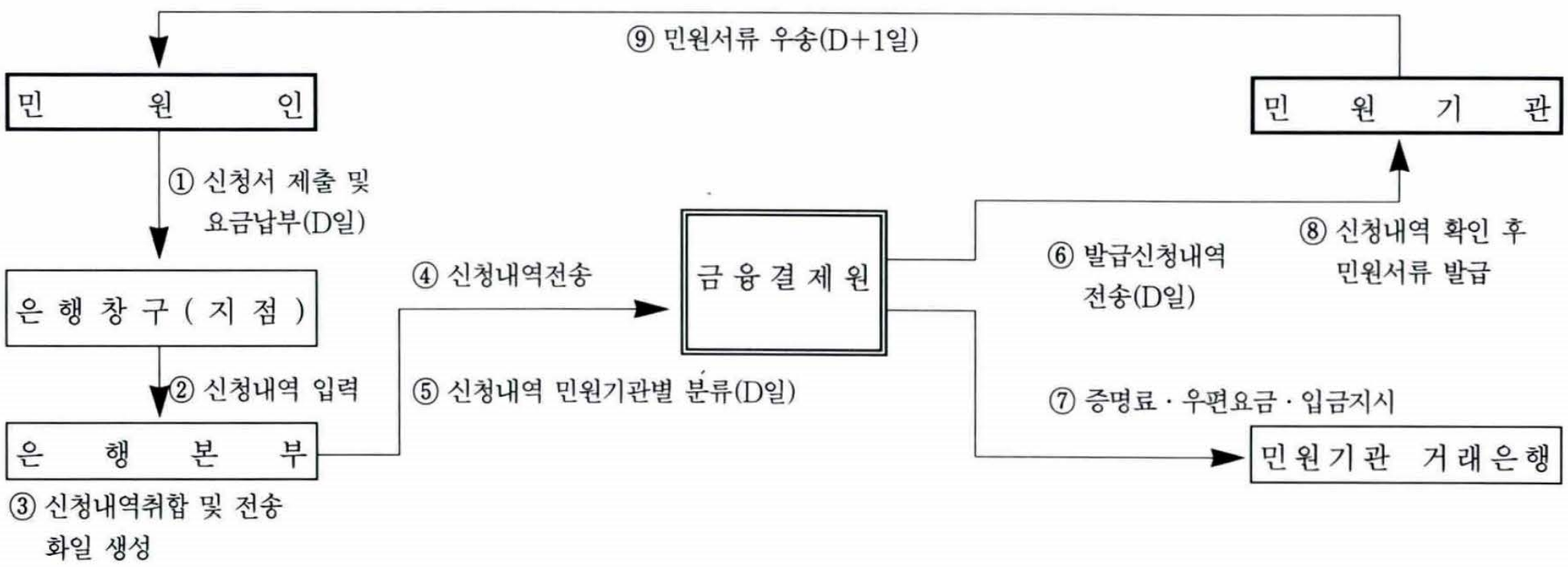

(온라인조회/전자문서발급〈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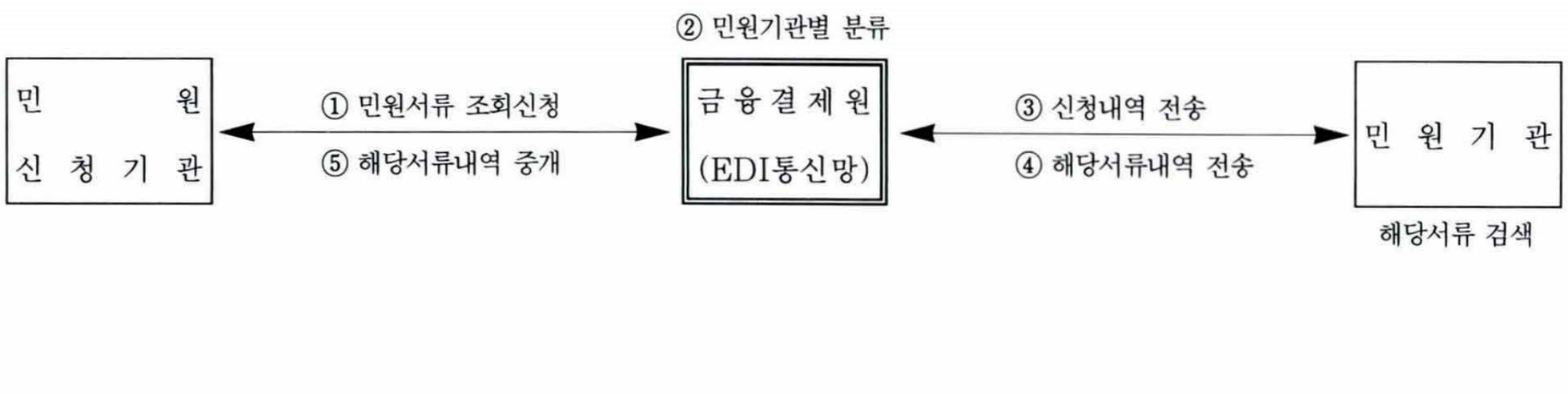

제5편 금융결제원의 미래상

제1장 금융 및 지급결제환경의 변화

제2장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제3장 금융결제원의 미래상

제1장 금융 및 지급결제환경의 변화

제1절 금융환경 변화

과거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수출주도적 경제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보다는 정부의 정책금융, 업무규제 등 각종 외부규제에 영향을 받아왔다.

1980년대 이후 민간주도적인 경제운용방식으로 경제정책이 수정됨에 따라 금융부문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의 운영과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정부의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은 금리자유화, 각종 규제 완화, 은행 경영자율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산업 개편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금융자유화

금융자유화는 금융기관이 자유경쟁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금융자산의 조달과 배분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금융시장에 가해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경영 자율화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가. 금리자유화

금융자유화 조치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금리자유화는 그동안 지나친 금리규제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금리규제하의 왜곡된 금리체제로 제1금융권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여 이

를 개선코자 1980년대초부터 여건을 조성하여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조치도 1990년에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창구지도를 통한 규제 등으로 사실상 철회되고 규제금리시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정부는 UR협상 등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자유화 요구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여 자금흐름의 왜곡을 방지하며, 금리와 통화량을 병행하는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기초로 하여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제1단계 금리자유화는 1991년 11월에 시행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제1금융권의 CD, 거액RP, 3년만기 정기예금 등의 수신금리와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등의 여신금리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제2금융권의 투자금융회사 거액기업어음, 3년이상 예금 등의 수신금리와 상업어음 할인, 투자금융회사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등 여신금리도 자유화하였으며, 2년이상 회사채 금리를 실세화하였다.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1993년 11월 시행되었는데 상호신용금고의 1년이상 예금, 2년이상 적금 등을 포함한 2년이상 정기예금 및 3년이상 적금 등의 수신금리와 재정 및 한은지원대상 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를 자유화하였으며, 2년미만 회사채, 금융채 및 국공채 발행금리를 실세화하였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는 1994~1995년 사이에 4회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994년 7월에는 CD, CP, RP의 최단만기일 단축 및 은행표지어음발행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1년이상 2년미만 예금 및 2년이상 3년미만 적금의 수신금리 자유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관련자금 금리를 우대금리 범위내에서 자유화하였다. 1995년 7월에는 6개월이상 1년미만 예금 및 1년이상 2년미만 적금의 수신금리 자유화, 단기 시장성상품 자유화폭 확대,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관련자금 금리의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6개월미만 예금 및 1년미만 적금의 수신금리 자유화, 단기 시장성상품 자유화폭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실시로 1991년 이후 추진하여 온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금리의 가격기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또한 예금자의 금융자산 선택폭이 넓어져 금융저축 증대 및 금융중개기능 제고가 기대되고 단기 수신금리

의 자유화로 장단기 금리간 연계성이 높아져 금융시장의 균형발전과 간접통화 관리의 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1997년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며, 현단계에서 자유화되지 않은 단기 수신 및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와 단기 시장성상품에 대한 제한이 철폐될 예정이다.

나. 규제 완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조달을 위하여 각종 규제조치가 가해져 경쟁력이 약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조치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 정책금융은 은행의 대출금 중 일부를 정부가 특정사업 또는 특정분야에 지원토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을 크게 하여 금융기관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책금융의 축소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형식상 전업주의를 채택하여 일반은행은 요구불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단기대출로 하는 상업금융업무,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의 자금공급업무, 투자금융회사는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업무,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금 및 중장기자금의 공급, 기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규모의 협소 등으로 특수은행이 일반상업은행업무를 겸업하는 등 겸업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며, 최근 금융시장 개방 및 선진국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부수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영역이 점차 완화되는 등 겸업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산업에의 신규진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왔으나 1980년대 초반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신한, 한미은행의 신설을 비롯하여 동화, 동남, 대동, 평화은행 등 시중은행의 신설, 투자금융회사의 시중은행(하나, 보람) 및 증권회사로의 전환, 투자신탁회사 신설, 생명보험회사 신설 등 많은 금융기관이 신설되거나 전환되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하여 타 부문의 진출을 허용하는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다. 은행 경영자율화

금융산업의 경쟁체제확립의 일환으로 은행 내부경영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던 각종 규정 및 통첩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은행 경영자율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정부의 은행장 인사에 대한 간여 배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자율화방안이 1988년에 발표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은행장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은행의 내부인사, 승진 등 은행경영의 자율화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은행경영 자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로는 일반은행 내부경영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철폐,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은행법상 자율경영 제한규정 삭제, 금융단협정 폐지, 지방점포 신설규정 폐지 등이 있으며 최근 발표된 금융기관 점포 신설의 자율화도 동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2.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 추진과정에서 외화조달을 위하여 1967년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을 허용한 이래 1980년대 외환거래의 자유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및 업무규제 완화, 외국인에 대한 국내주식의 직접투자 허용 등 금융시장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1990년대에는 UR협상에 있어서 금융부문 개방을 위한 다자간 협상,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금융시장의 전반에 걸쳐 개방폭이 확대되었다. 금융시장 개방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대우 철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행산업 개방,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은행산업의 개방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국내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각종 업무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외국은행 국내지점 증설, 금융전산망 가입,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한도 확대, ATM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외환자유화는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채택, 환율변동폭 확대, 외환포지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1992년 9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성큼다가온 金融개방
市場잠식 加速化우려
은행·기업 束手無策 ①
선진技法축적 外銀만 살판
換差損·경제손실 불보듯
전산網개방·환율변동폭확대 큰타격 예상

금융시장개방 가속화(1992.6)

및 규정의 전면 개정으로 외환관리체계를 원칙 자유, 예외 허용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1996년 중으로 외환관리법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당원의 자금중개실을 모체로 하는 외국환 중개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어 당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중의 하나이다.

자본자유화는 1988년 12월 자본시장 규제완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왔으며, 1991년 9월 주식시장 개방을 위한 추진방안이 확정되고 1992년 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종목당 투자한도 10%, 개인당 투자한도 3%내에서 외국인의 국내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는 1996년 4월 종목당 18%, 개인당 5%로 확대되었으며 추후에도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금융산업 개편

금융산업 개편은 각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간 불공정경쟁을 방지하며, 금융산업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 1993년 5월 금융산업발전심의회는 금융산업 개편 기본방향으로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산업 효율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금융산업 각 부문에 대한 신규진입정책 명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규제, 공정경쟁여건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산업 개편은 투자금융회사의 은행 및 증권회사 전환을 시발로 증권회사, 은행의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은행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금융전업가 육성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금융기관 설립요건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설립이 원칙적으로 자유화 된다. 즉 금융기관의 설립이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경될 예정이다.

4. 금융리스크 증대

선진기법을 보유한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가속화, 금리자유화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금리 및 환율 변동 리스크, 업무규제완화에 따른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증대 등으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업비용 축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집중 배치하는 무인점포 신설, 가상은행(Cyber Bank) 구축, 객장 재배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제2절 지급결제환경 변화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의미의 지급결제제도가 도입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아직까지 특별한 논의나 주장이 제기된 바는 없었으나 1909년 7월 공포한 「한국은행조례」에 의거 동년 11월 구 한국은행이 설립된 시점과 1910년 7월 사설 경성수형교환소의 개설시점을 감안할 때 1910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설 경성수형교환소의 설립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어음·수표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1977년 2월에 전기요금의 지로수납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어음교환제도와 은행지로제도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지급결제제도는 1981년 7월에 실시된 대량지급업무로서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도입후 상당기간 이용이 부진하였다. 일반국민이 전자지급결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약 2년에 걸쳐 구축한 금융전산망이 가동된 1988년 7월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전자지급결제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근대적인 의미의 지급결제제도가 어음·수표를 중심으로 도입되었고, 상당기간동안 이렇다할 만한 대체 지급결제수단이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어음·수표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어음·수표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일반국민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종 전자지급결제제도의 개발로 그 비중은 점차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등장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속·안전·저렴한 지급결제수단이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되었다. 1976년 1월 지로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반이 편성되어 1977년 2월 서울지역 전기요금 은행수납에 대한 은행지로제도를 실시한 이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대량지급, 자동계좌이체 등 다양한 지로제도가 도입되었고, 1984년 5월 확정된 금융전산망 기본추진방안에 따라 1986년 9월 개발팀이 구성되어 약 2년에 걸쳐 개발한 CD 공동이용시스템이 1988년 7월 본격 가동된 이후 ARS공동운용시스템, 타행환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도입되었다.

1996년 2월에 도입한 EFT/POS는 판매시점에서 현금거래 없이 예금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제도로서 현금없는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현금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급결제수단인 전자지갑의 실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급결제분야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 전자지급결제수단 이용 급증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되기 시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은 상당기간 일반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이용율이 저조하여 총 지급결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비용보다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지급결제제도 하부구조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CD/ATM, 타행환, 자동이체, 대량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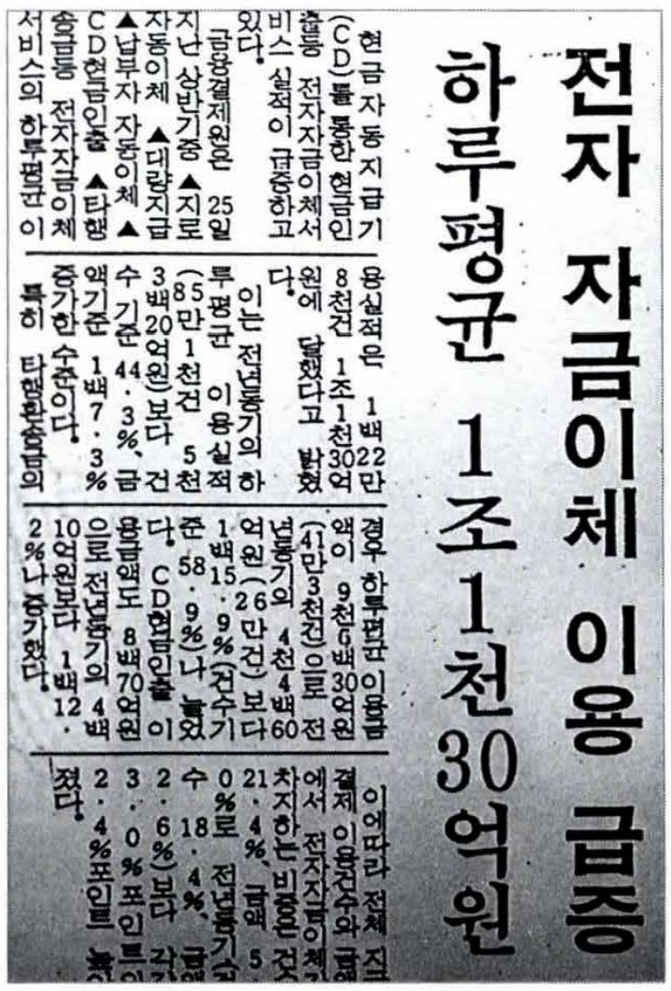

전자 자금이체 이용 급증
하루평균 1조 1천30억원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한 현금인출등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5일 지난 상반기중 ▲지로 ▲자동이체 ▲대량지급 ▲납부자 자동이체 ▲CD현금인출 ▲타행송금등 전자자금이체서비스의 하루평균 이용실적은 1백22만 8천건 1조1천3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의 하루평균 이용실적(85만1천건 3백20억원)보다 5천건 수 기준 44.3%, 금액기준 1백7.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타행환송금의 경우 하루평균 이용건수가 9천6백30억원(41만3천건)으로 전년동기의 4천4백60억원(26만건)보다 1백15.9%(건수기준 58.9%)나 늘었다. CD현금인출도 8백7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백10억원보다 1백12.2%나 증가했다.

이어따라 전체 지급결제 이용건수와 금액에서 전자지급이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의 21.4%, 금액 5.0%로 전년동기수 18.4%, 금액 2.6%)보다 각각 3.0%포인트와 2.4%포인트 높아졌다.

전자자금이체이용 급증(1995.7.28)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이용증가율은 건수기준 1994년 45.1%, 1995년 43.6%, 금액 기준으로 1994년 358.8%, 1995년 1,051.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증가율은 건수기준 1994년 9.5%, 1995년 16.8%, 금액기준 1994년 6.5%, 1995년 12.1%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지급결제규모에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에는 건수기준 11.2%, 금액기준 0.7%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건수기준 31.4%, 금액기준 47.6%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금액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은 1994년 12월말 BOK-Wire의 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5-1-1〉 전자지급결제수단 이용추이(총 지급결제규모 대비) (단위: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건 수	11.2	12.4	20.0	27.1	31.4
금 액	0.7	1.0	1.9	8.0	47.6

주: 신용카드(1991년), 한국은행 금융결제망(1994년12월) 이용실적 포함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율 둔화현상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현상으로 어음·수표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타 장표도 이용율이 둔화되거나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장표지급결제수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만간 이용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장표지급결제수단 처리방법 개선

어음·수표, 일반계좌이체로 대표되는 장표지급결제수단은 1980년대 초반까지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손으로 분류, 집계하여 처리하였으나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컴퓨터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산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1월 서울지역 어음교환업무를, 1983년 10월 일반계좌이체업무를 각각 기계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계좌이체와 같은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당원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IPS(Image

Processing System)와 같은 첨단 기술에 의한 처리방법을 도입·추진 중에 있다. 또한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도 1992년 도입·추진반이 구성되어 검토한 바 있으나 자기앞수표에 대한 수수료 부과,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이용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여건변화로 도입이 보류되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나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선진국 처리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장표 실물의 이동없이 지급결제정보를 주고 받는 형태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4. 지급결제규모 증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

경제성장에 따른 재화와 용역거래, 국가간 무역 규모, 외환거래 등의 증가로 금융시장의 결제수요가 급증하여 지급결제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 금융 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은행의 국제지급결제제도 참여확대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지급결제규모의 증대, 전자지급결제제도의 확산으로 지급결제리스크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급결제제도에 관련된 리스크로서는 지급결제 주체간의 신용공여에 따른 신용리스크,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지급결제분야의 컴퓨터 이용 확대, 네트워크 진전에 따라 리스크가 양적·질적으로 변화되어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등도 중시되고 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제도의 확산에 따른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통신네트워크 장애 등의 컴퓨터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 신규업체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1990년대까지 당원은 지급결제전담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전자지급결제수단을 처리하는 신규업체의 진입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급결제분야에서의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EFT/POS 실시를 계기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금융 VAN사와 풍부한 자본력, 뛰어난 기술력, 정

예화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분야를 잠식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들은 주로 전자지급결제분야, 즉 홈뱅킹, 펌뱅킹, 점포외 CD/ATM 공동망, EFT/POS,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ARS 등에 진출하고 있어 동 분야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제2장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제1절 당면과제

1.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는 전통적으로 장표중심의 어음교환제도 위주로 발달하여 왔으며,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지로제도도 장표 위주이어서 지급결제제도의 전산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이후 지급결제제도가 금융의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각종 전자지급결제제도가 도입되어, 효율성이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지급결제규모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저렴한 전자지급결제제도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최근 지급결제 참가기관간 상호의존성이 점차 심화되어 어느 한 기관의 안전성이 저해되면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효율성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총액결제방법과 차액결제방법의 조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1994년 12월까지 일정기간의 은행간 수취액과 지급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 결제하는 차액결제(Net Settlement)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은행간 자금결제를 건별로 각각 결제하는 총액결제(Gross Settlement) 방식의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이 1994년 12

월에 가동되기 시작하여 결제방법이 다양화되었다. 보통 소액 대량결제는 차액결제방법으로, 거액 소량결제는 총액결제방법으로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지급결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차액결제방법은 결제건수 및 금액을 대폭 줄임으로써 지급결제관련 업무량 및 비용, 지불준비금 보유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은행 당좌계정에서 최종 결제될 때까지 결제 종료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아 결제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총액결제방법은 거래 건별로 결제되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보유규모가 커 효율성측면에서는 차액결제방식에 비하여 떨어지나, 신속하고 리스크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총액결제의 이용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거나 타행환과 같은 차액결제의 송금한도가 낮게 책정되면 각각 이용율이 저하되어 특정 방법만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차액결제방법과 총액결제방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5-2-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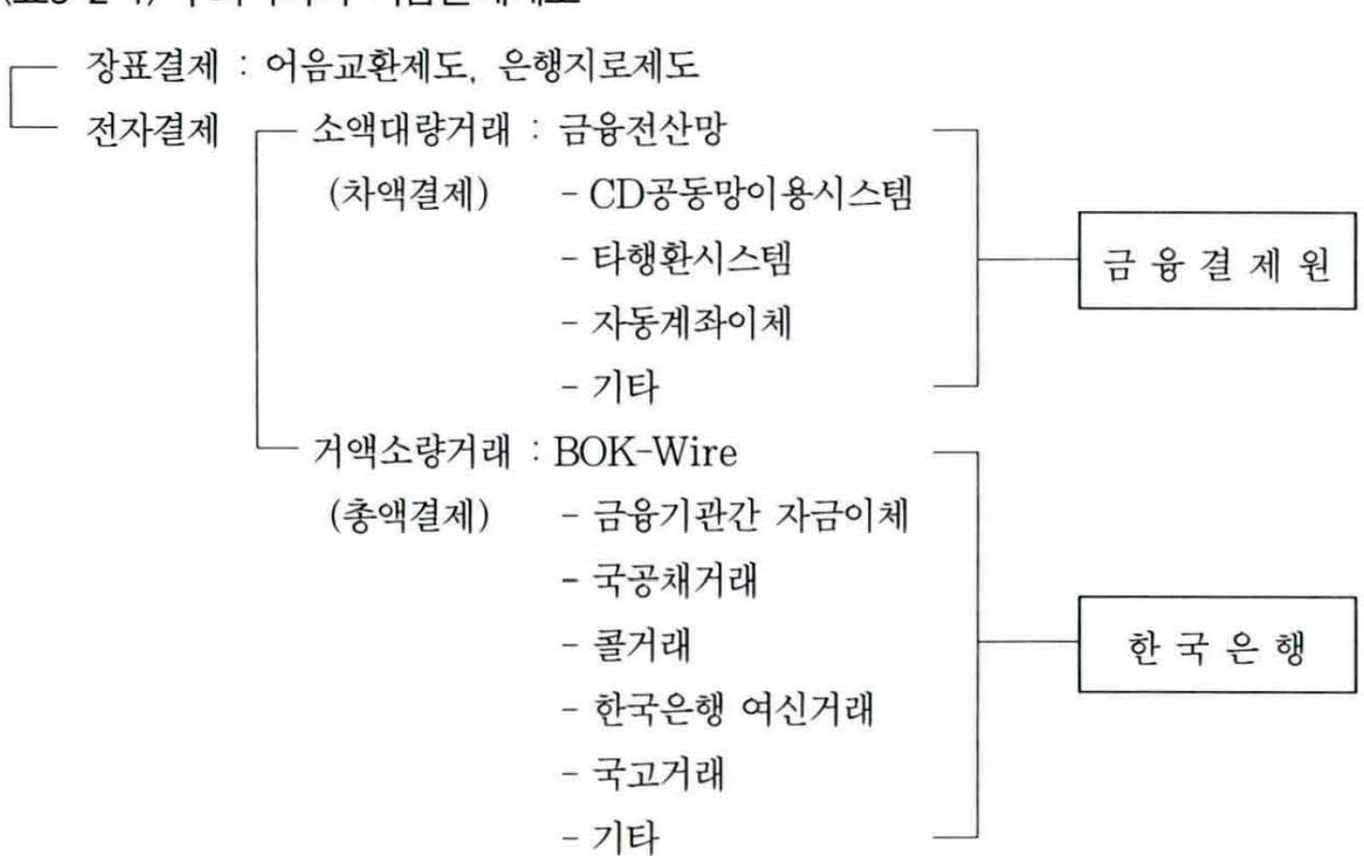

3. 리스크 관리 강화

지급결제규모의 증대와 지급결제수단 처리방법 개선 등으로 인하여 지급결제와 관련된 리스크의 양적 증대 뿐만 아니라 종래의 장표결제수단 위주의 지

급결제제도하에서 예상하지 못하던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는 등 질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리스크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급결제관련 리스크관리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급결제 참가기관인 개별은행도 결제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은행보호 등에 따라 은행의 도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차액결제제도만 존재하여 신용공여규모가 작았으며, 1994년 12월에 가동된 BOK-Wire도 일중(日中) 신용불허 등으로 지급결제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러나 차액결제제도에 있어서 지급인의 지급지시시점과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통한 최종 결제시점간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고, 총액결제제도도 거액의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 지급결제에 관련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지급결제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제2절 발전방향

1.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개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기관의 컴퓨터와 기업, 판매점, 개인의 컴퓨터 또는 각종 단말장치를 상호 접속하여 고객이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홈뱅킹, 펌뱅킹 등은 아직까지 이용건수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향후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2월 도입한 EFT/POS는 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구매대금

이 판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하여 즉시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제도로서 일상적인 소액거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지급결제수단이다. 그러나 동 지급결제수단은 신용사회가 조기에 정착된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제도로 현금 선호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아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영국의 Mondex사가 개발하여 시험 운용중인 전자지갑은 국내의 대부분 은행에서 개발·시험 중에 있으며, 전자지갑이 실용화되면 소액 지급결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지갑은 현금 선호경향이 강하고 신속한 결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성과 부합되어 도입 이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은 현금과 장표지급결제수단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지급결제 수요를 창출하여 지급결제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신속·정확·안전한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전자지급결제수단 이용 확대

전자화된 지급결제수단은 많은 지급결제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결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등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

전체 지급결제수단 중 전자결제수단의 이용율은 1994년에는 건수기준 27.1%, 금액기준 8.0%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건수기준 31.4%, 금액기준 47.6%로 전년대비 건수는 4.3%p, 금액은 39.6%p 증가하였다.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거액자금이체제도인 BOK-Wire가 1994년 12월부터 가동된 데 따른 것으로, 차액결제제도의 이용율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조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이용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 서비스 개선

전자지급결제수단 중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CD/ATM 가동시간이 08:00~22:00로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은행 영업시간 이후 가동되는 CD/ATM의 경우는 이용대상업무가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이용대상업무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행환의 경우 타행환 송금한도가 1993년 7월 3,000만원, 1994년 6월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도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한 송금한도액을 점차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수수료 차별화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많으나 가변비용의 비율은 낮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을수록 평균처리비용이 하락하여 수수료를 점차 인하할 수 있으나, 장표지급결제수단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적으나 가변비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용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평균처리비용이 전자지급결제수단과 같은 비율로 하락하지 않는다. 전자지급결제수단도 이용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면 이용자가 기피하게 되고 이용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면 금융기관이 취급토록 할 요인이 없으므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도입 초기에는 이용량이 증가할 경우 평균처리비용의 하락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이용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수수료가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이용수수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처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지급결제수단간 이용수수료의 차별화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홍보활동 강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이용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 도입 사실 및 이용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원인이 있으며, 기업과 가계가 주로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수단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의 도입시에는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자결제수단별로도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장표처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어음·수표, 은행지로제도 등 장표지급결제수단 위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특성상 장표지급결제수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당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중 장표지급결제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건수기준 80.5%, 금액기준 96.6%에서 1995년 건수기준 76.8%, 금액기준 94.2%로 각각 3.7%p, 2.4%p 감소하였으나,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률은 전년대비 건수기준 15.6%, 금액기준 11.0%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총 지급결제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처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증가하는 장표지급결제수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1995년 2월 도입전담반을 구성하여 도입 추진중인 IPS는 일반계좌이체 등 지로장표를 이미지화하여 처리하는 첨단 장표처리시스템으로 대량의 장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표 이동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장표지급결제수단의 궁극적인 처리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은행 점포에서 수납한 장표를 이동시키지 않고 지급결제정보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는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와 유사하며, 최근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이미지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정책에 초점을 둔 방안이다. 동 방안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급결제정보만 추출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표 전체를 이미지화하여 수납점에서 이미지를 저장 및 전송하는 방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IPS시스템

2000년대에는 이와 같은 처리방식의 도입은 물론 선진국에서 개발중인 전자수표, ATM을 통한 수표이미지 처리 등 장표이동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장표처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금융결제원의 미래상

제1절 금융산업에 기여하는 기관

1. 금융하부구조의 안정적 구축 · 운영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유가증권을 주고 받는 등의 결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의 대부분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금융시장이 원활히 운영되고 건전한 신용질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인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으로 구축 ·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의 하부구조로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규모 증대 등 지급결제제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은행지로제도를 비롯하여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금융전산망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지급결제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 안전성측면 등 질적인 향상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제도가 금융의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 ·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첫째 각종 재해시에도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신속 · 정확 · 저렴한 자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

율성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은 모두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겠다.

2.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통한 사원은행의 부담 경감, 일반국민의 지급결제제도 이용에 따른 사원은행의 수수료 수익 증대, 지급인의 지급지시 의뢰시점에서 자금결제시점까지의 자금운용수익 최대화 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장표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장표지급결제수단에 비하여 처리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제고시키는 한편 내부 경영혁신을 통하여 인원 및 경비절감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최근 금융 자유화와 금융기관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지 악화로 인하여 각종 수수료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실제로 금융기관의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이용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수수료 수익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수수료가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이용수수료를 차별화하여야 한다. 이용방법에 따른 수수료 차별화, 즉 이용자가 CD/ATM, ARS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용수수료도 다르게 책정하여 창구업무 분산은 물론 사원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지급결제수단의 처리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이용기관이 지급결제기간을 단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기관간 자금유치경쟁이 점차 가열되어 자금운용수익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자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간 과도한 자금유치경쟁을 스스로 자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한한 지급결제기간을 단축하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수익을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

3. 금융기관 이용자 편의 제고

은행지로제도, 금융전산망 등 지급결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는 경제활동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 현금 또는 어음· 수표 등을 주고 받음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금융기관 점포 수나 이용자 또한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지급결제제도가 도입되고 경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 점포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 하부구조의 구축이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일반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도 점차 활발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하부구조의 구축이 더욱 진전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원은 지급결제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금융전산망의 이용으로 전자지급결제수단은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를 도입하고 결제기간 및 이용수수료가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선진 지급결제기관으로 성장

1.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는 선진국과 같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있으나, 지급결제수단의 이용, 장표처리방식 등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정책이 양적 성장 위주로 이루어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된다. 향

후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용측면 모두에서 보다 선진화된 지급결제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지속적인 도입과 이용율 제고가 바람직하다. 전자지급결제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제도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가 용이하며, 추가적인 투자비용이나 보수유지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용율이 높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표 위주의 지급결제제도를 급속히 대체하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표지급결제수단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다. 장표지급결제수단은 처리비용이 높고, 결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장표 이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등 고도의 정보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경우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 및 전자수표제도 등의 도입, 은행지로에는 IPS 및 지로장표 정보교환결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일반계좌이체 등 장표방식 지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역규모 및 외환거래의 증대로 국가간 지급결제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가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거래에 따른 결제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급결제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지급결제제도의 국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지급결제제도의 확산에 따른 안전대책 강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의 구축, 지급결제기간의 단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 사업 다각화

당원은 1990년대 초까지 사원은행 공동업무만 추진하여 사업 다각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초부터 금융 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코자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EFT/POS 실시를 계기로 금융 VAN사의 급속한 성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지급결제업무 참여 등에 따른 당원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업무의 잠식에 대처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

보하고자 1994년 11월 총회 및 재정경제원의 허가를 얻어 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원 EDI 등 사원은행 공동업무라고 볼 수 없는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현재 수익사업은 도입 초기단계로 직불 및 신용카드관련 부가통신업무, 대고객 전산망관련 부가통신업무, 지로관련 자료의 온라인 송·수신업무, 각종 대금 온라인 수납관련 부가통신업무, 단말기 제조·보급업무 등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급결제업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본, 조직, 인원 등의 측면에서 타 VAN사에 비하여 열세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급결제전담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외 VAN사 및 제2금융권과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직, 인원 등의 보강을 통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당원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업은 수익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상호보완관계를 통한 사업다각화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수익사업의 다각화는 기본적으로 은행공동업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 등 공공 성격의 업무도 적극 유치하여 당원의 사업다각화를 도모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지급결제분야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지갑과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 등의 업무에도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경영혁신이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략적 결정에서부터 관리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해 변화를 추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금융 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금융산업 개편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여 경쟁을 제한하던 요소들이 점차 제거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기관도 권한의 대폭 이양, 신인사제도 도입 등 혁신적인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업은 새로운 초일류기업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현대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기

존의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느냐 하는 경영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원도 지금까지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법인 성격과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전담기관이라는 틀에 안주하여 금융 및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특유의 보수적인 업무추진형태,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의 풍토가 만연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가 향후에도 계속될 경우 당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사고로 모든 부문에서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영혁신이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직 개혁, 업무처리과정 개선, 관리제도 개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원도 조직의 활성화와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혁신 및 조직의 경량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업무처리과정의 개선은 장표처리시스템의 개선과 수익사업 시행에 따른 고객 서비스부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기타 부문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과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제도개혁은 각종 경영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개혁 및 업무처리과정 개선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 경영혁신이 가능하다. 당원에서는 능력위주의 신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전결권의 대폭 하향 이양, 모지부제도 등이 관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급변하는 금융 및 지급결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지급결제전담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화가 추진 될 것이다.

부록편

금융결제원 정관

금융결제원 위원회규정

역대임원

기구도표

역대 본부부서장

역대 지부장

직원명단

기구변천표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성장그래프

업무실적

업무별 참가기관 및 참가지역

임직원변동 일람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전산기기 보유현황

연표

금융결제원 정관

가. 설립당시의 정관

1986. 4.18 제4차 총회 의결
1986. 5.19 재무부장관 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관리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은행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관련기관과의 금융전산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다음의 지역에 지부를 둔다.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부천시,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대전시, 천안시,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정주시, 남원시, 광주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마산시, 충무시, 울산시, 진주시, 진해시, 삼천포시, 제주시

제4조(사업) 관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어음교환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은행지로에 관한 업무
3.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4.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
5.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관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2장 사 원

제5조(사원 및 준사원) ① 관리원의 사원은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준사원으로 관리원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희망에 따라 준사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사원자격의 취득) ① 관리원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승인과 가입금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가입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이 가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승인을 무효로 한다.

④ 가입신청기관이 제3항의 기일내에 가입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관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체없

이 사원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입신청 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사원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사원명부) ① 사원명부는 관리원의 주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본점 소재지
3.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4. 설립자인 사원은 출자금액, 설립후 가입한 사원은 가입금액

② 사원명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사원은 그 변경내용을 즉시 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때 또는 기타 변경이 생긴 때에는 원장은 즉시 사원명부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원의 대표권) ① 사원으로서 관리원에 대한 모든 행위는 사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

② 사원은 제1항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을 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원자격의 소멸) ① 사원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사원의 서면에 의한 탈퇴 통고
2. 제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의 상실
3. 파산선고
4.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소멸. 다만, 영업계속의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10조에 의한 제명

② 사원이 제1항의 사유로 사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사원의 제명결의) ① 사원이 이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거나 기타 관리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대표로 있는 사원 금융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안건을 부의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제26조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7일 전까지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르게 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사원의 표결권은 1개로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원과 관리원의 어느 사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표결권이 없다.

⑤ 준사원 및 원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입사원의 가입승인, 가입금의 결정 및 사원의 제명
3. 출자금 및 경비분담금 또는 경비분담방법의 결정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6. 기타 의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총회의사록의 작성 배포)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① 관리원의 이사는 사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 전원과 원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회무를 통할하고 안건을 부의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각 이사의 표결권은 1개로 한다.

④ 관리원과 관리원의 어느 이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표결권이 없다.

⑤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법령, 정관의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업무수행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배포)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급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급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6장 임 원

제23조(원장) ① 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전무이사) ① 전무이사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무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5조(상무이사) ① 관리원에 2인 이내의 상무이사를 두며 상무이사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상무이사는 원장,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① 관리원에 감사 1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임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매 정기총회에 당해년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와 직원

제27조(부서의 설치) ① 관리원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의 설치 및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8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8장 출자 및 회계

제29조(기본재산) ① 관리원의 기본재산은 사원의 출자금·가입금·참가금 및 기타 법인 존립의 근간이 되는 재산으로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경비) ① 관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과 사원 및 준사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경비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원 및 준사원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자금등의 반환청구의 금지) 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자금·가입금 및 경비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회계년도 및 예산·결산) ① 관리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전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④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정관변경

제33조(정관변경) ① 정관은 총회의장 또는 총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해 산

제34조(해산) ① 관리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해산시의 재산처분) ① 관리원을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사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0조, 제15조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보고) 관리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사·예산(회비징수기준 포함)·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4.5.9)

제1조(관리소의 업무개시일) 관리소는 1984년 5월 10일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제2조(업무 및 인원의 인수) 관리소는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로부터 어음교환업무, 신용정보관리업무 및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무업무와 이와 관련한 인원을 인수한다.

제3조(설립당시의 사원) 설립자가 대표하는 금융기관은 설립당시의 사원이 된다.

제4조(설립자) 관리소 설립자 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1984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총재 최 창 락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의 1번지
한국산업은행 총재 정 춘 택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회장 윤 근 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조흥은행 행장 송 기 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의 1번지
한국상업은행 행장 김 상 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3의 1번지
제일은행 행장 이 필 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
한일은행 행장 이 석 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의 1번지
서울신탁은행 행장 김 용 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36의 1번지
중소기업은행 행장 김 선 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의 1번지
국민은행 행장 박 종 석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한국외환은행 행장 정 인 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태평로 1가 61의 1번지
한국주택은행 행장 류 돈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의 1번지
신한은행 행장 전 세 창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한미은행 행장 황 창 기

제5조(경과조치) ① 1984년도의 회계년도는 1984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소 업무개시일 이전에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이사회에서 어음교환업무 및 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관리소의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5. 5.25)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8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5.19)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6. 6.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관리원은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이하 "지로관리소"라 한다)의 업무, 인원 및 재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② 지로관리소의 업무에 관하여 동 기관의 각급 회의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관리원의 총회 또는 각급 회의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③ 지로관리소의 각종 규약,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지로관리소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원의 해당부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업무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한다.

나. 정관 변천일람표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1986. 5.31	제3조	- 사무소 소재지역에 「평택시」,「태백시」 삽입	- 지부 신설
		- 「광주시」를 「광주직할시」로 변경	- 행정구역명칭 변경
	제25조 제1항	- 「2인이내의 상무이사」를 「3인이내의 상무이사」로 변경	- 금융전산망사업 전담임원 신설
	부칙 제2조 제5항	- 「1986년 6월 1일 현재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의 임원이 이 정관 시행일에 관리원의 직급명칭이 다른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각각 그 직에 초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가 유임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 삽입	- 부칙 신설
1987. 7. 6	제3조	- 사무소 소재지역에 「공주시」, 「논산군 논산읍」, 「홍성군 홍성읍」 삽입	- 지부 신설
	제4조 제3호	- 「금융전산위원회」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변경	- 자구수정
1989. 9.28	제1조	-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으로 변경	- 법인명칭 변경
	각 조	- 「관리원」을 「결제원」으로 변경 (제2조~10조, 제14, 16, 17조, 제19~23조, 제25~27조, 제29조, 제30, 32, 34, 35, 37조, 부칙)	- 자구수정
	제3조	- 「다만,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명으로 한다」를 신설 삽입	- 단서조항 신설
	제4조 제6호 (신설)	- 「6.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지침에 따른 콜거래중개에 관한 업무」를 신설 삽입	- 목적사업 추가
	제4조 제7호	- 「6. 제1호 내지 제5호」를 「7. 제1호 내지 제6호」로 변경하고 호 체하	- 자구수정 및 호 체하
	제4조 제8호	- 「제7호」를 「제8호」로 호 체하	- 호 체하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1990. 5.17	제3조	- 사무소 소재지역에 「안산시」 삽입	- 지부 신설
1991. 3. 5	제3조	- 사무소 소재지역에 「해남군 해남읍」 삽입	- 지부 신설
1992. 1.24	제26조의 2 (신설)	- 「결제원은 결제원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상임고문 1인을 둘 수 있다」와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를 제26조의 2 제1,2항으로 신설 삽입	- 상임고문 신설
1992. 7. 6	제5조	- 「사원 및 준사원」을 「사원 및 준사원등」으로 변경	- 자구 수정
	제5조 제1항	- 「한국은행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을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변경	- 가입자격요건 완화
	제5조 제2항	- 제2항의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준사원으로 결제원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와 제3항의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희망에 따라 준사원이 될 수 있다」를 「제1항에 정하는 금융기관중 결제원의 사원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준사원이 될 수 있다」로 변경	- 문구조정 및 항 통합
	제5조 제3항 (신설)	- 「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를 신설 삽입	- 사업별 참가제도 도입
	제29조 제1항	- 「사원의 출자금」을 「출자금」으로 변경	- 문구조정
	제36조 제1항	-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5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제1항 신설	- 자구수정 및 항 신설
	제36조 제2항 (신설)	-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기관에 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 삽입	- 사업별 참가기관의 준용 규정 신설
1992.12.30	제12조 제2항	- 「회무를 통할하고 안건을 부의한다」를 「회무를 통할한다」로 변경	- 문구조정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제13조 제2항 제2호	-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이」에서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한국은행이」로 변경	- 한은의 의안제의 및 회의소집 요구권 신설
	제15조 제6호 (신설)	- 「이사회 이사의 선임」을 신설 삽입	- 총회의결사항 추가
	제15조 제7호	- 「제6호」를 「제7호」로 호 체하	- 호 체하
	제17조 제1항	- 「결제원의 이사는 사원인 금융기관 대표자 전원과 원장으로 한다」를 「이사회의 이사는 원장과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8인으로 한다」로 변경	- 이사회 구성 변경
	제17조 제2항 (신설)	- 「원장 이외의 이사는 사원중 한국은행에서 1인, 특수은행에서 2인, 시중은행에서 4인을, 준사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의 대표권은 없다」를 신설 삽입	- 이사회 구성 변경
	제17조 제3항 (신설)	- 「제2항의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내 유고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그 직을 승계하는 자가 이사가 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신설 삽입	- 비상임이사의 임기 명시
	제17조 제4항	- 「제2항」을 「제4항」으로 항 체하	- 항 체하
	제18조 제1항	-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를 「의장은 원장이 된다. 다만,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로 변경	- 이사회 의장 선출방법 변경
	제18조 제2항	- 「의장은 이사회 회무를 통할하고 안건을 부의한다」를 「의장은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로 변경	- 문구조정
	제19조 제1항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를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한국은행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로 변경	- 회의소집요건 명기
	제19조 제2항	- 「제1항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4일 이	- 항 신설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신설) 제19조 제3항 제19조 제4~7호 부 칙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신설, 삽입 -「비상임이사는 그 위임장을 휴대한 대리인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를 신설, 삽입 -「제2항~제5항」을 「제4항~제7항」으로 항 체하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는 이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3명 또는 4명이 교체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	- 항 신설 - 항 체하 - 부칙 신설
1994. 6. 2	제3조	- 사무소 소재지역에 「이천군 이천읍」, 「김해시」를 삽입하고 「마산시」를 「창원시」로 변경	- 지부 신설 및 소재지 변경
1994.12.27	제36조 제2항	-「제30조 및 제31조」를 「제6조 내지 제10조, 제30조 및 제31조」로 변경	- 사업별 참가기관의 준용규정 추가
1995.11.17	제3조	- 사무소 소재지역에 「서산시」, 「양산군 양산읍」을 삽입하고 「진해시」, 「사천시」 삭제	- 지부 신설 및 폐쇄

다. 현행 정관

제정 1986. 5.19 재무부장관 허가

개정 1986. 5.31 재무부장관 허가
1987. 7. 6 〃
1989. 9.28 〃
1990. 5.17 〃
1991. 3. 5 〃
1992. 1.24 〃
1992. 7. 6 재무부장관 허가
1993. 1.15 〃
1994. 6.11 〃
1995. 1. 9 재경원장관 허가
1995.11.24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결제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은행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관련기관과의 금융전산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결제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다음의 지역에 지부를 둔다. 다만,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명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이천시,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홍성읍, 서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 해남읍,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창원시, 통영시, 울산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제주시

제4조(사업) 결제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어음교환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은행지로에 관한 업무
3.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4.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
5.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6.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지침에 따른 콜거래 중개에 관한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결제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2장 사 원

제5조(사원 및 준사원 등) ① 결제원의 사원은 한국은행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하는 금융기관 중 결제원의 사원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준사원이 될 수 있다.

③ 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사원자격의 취득) ① 결제원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승인과 가입금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가입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이 가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승인을 무효로 한다.

④ 가입신청 기관이 제3항의 기일내에 가입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결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사원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입신청 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사원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사원명부) ① 사원명부는 결제원의 주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본점 소재지
3.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4. 설립자인 사원은 출자금액, 설립후 가입한 사원은 가입금액

② 사원명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사원은 그 변경내용을 즉시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때 또는 기타 변경이 생긴 때에는 원장은 즉시 사원명부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원의 대표권) ① 사원으로서 결제원에 대한 모든 행위는 사원인 금융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

② 사원은 제1항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을 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원자격의 소멸) ① 사원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사원의 서면에 의한 탈퇴 통고
2. 제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의 상실
3. 파산선고
4.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소멸. 다만, 영업계속의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10조에 의한 제명

② 사원이 제1항의 사유로 사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결제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사원의 제명결의) ① 사원이 이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거나 기타 결제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대표로 있는 사원 금융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사원의 4분의 1이상 또는 한국은행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제26조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의장에게 소

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7일 전까지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사원의 표결권은 1개로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결제원과 결제원의 어느 사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표결권이 없다.

⑤ 준사원 및 원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입사원의 가입승인, 가입금의 결정 및 사원의 제명
3. 출자금 및 경비분담금 또는 경비분담방법의 결정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6. 이사회 이사의 선임
7. 기타 의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총회의사록의 작성 배포)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의 이사는 원장과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8인으로 한다.

② 원장 이외의 이사는 사원중 한국은행에서 1인, 특수은행에서 2인, 시중은행에서 4인을, 준사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의 대표권은 없다.

③ 제2항의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내 유고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그 직을 승계하는 자가 이사가 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다만,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사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한국은행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그 위임장을 휴대한 대리인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각 이사의 표결권은 1개로 한다.

⑥ 결제원과 결제원의 어느 이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표결권이 없다.

⑦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법령, 정관의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범위내에서 결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업무수행상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배포)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① 결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급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급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6장 임 원

제23조(원장) ① 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은 결제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전무이사) ① 전무이사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무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5조(상무이사) ① 결제원에 3인 이내의 상무이사를 두며 상무이사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상무이사는 원장,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① 결제원에 감사 1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임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결제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매 정기총회에 당해년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상임고문) ① 결제원은 결제원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상임고문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제7장 사무부서와 직원

제27조(부서의 설치) ① 결제원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의 설치 및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8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8장 출자 및 회계

제29조(기본재산) ① 결제원의 기본재산은 출자금·가입금·참가금 기타 법인 존립의 근간이 되는 재산으로 한다.

② 결제원은 제1항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경비) ① 결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과 사원 및 준사원의 경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경비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원 및 준사원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자금 등의 반환청구의 금지) 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자금·가입금 및 경비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회계년도 및 예산·결산) ① 결제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전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④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정관변경

제33조(정관변경) ① 정관은 총회의장 또는 총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해 산

제34조(해산) ① 결제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해산시의 재산처분) ① 결제원을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사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0조, 제15조 제2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기관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0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보고) 결제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사·예산(회비징수기준 포함)·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4. 5.9)

제1조(관리소의 업무개시일) 관리소는 1984년 5월 10일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제2조(업무 및 인원의 인수) 관리소는 사단법인 전국은

행협회로부터 어음교환업무, 신용정보관리업무 및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무업무와 이와 관련한 인원을 인수한다.

제3조(설립당시의 사원) 설립자가 대표하는 금융기관은 설립당시의 사원이 된다.

제4조(설립자) 관리소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1984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총재 최 창 락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의 1번지
한국산업은행 총재 정 춘 택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회장 윤 근 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조흥은행 행장 송 기 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의 1번지
한국상업은행 행장 김 상 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3의 1번지
제일은행 행장 이 필 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
한일은행 행장 이 석 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의 1번지
서울신탁은행 행장 김 용 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36의 1번지
중소기업은행 행장 김 선 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의 1번지
국민은행 행장 박 종 석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한국외환은행 행장 정 인 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태평로 1가 61의 1번지
한국주택은행 행장 류 돈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의 1번지
신한은행 행장 전 세 창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한미은행 행장 황 창 기

제5조(경과조치) ① 1984년도의 회계년도는 1984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소 업무개시일 이전에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이사회에서 어음교환업무 및 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관리소의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5. 5.25)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8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5.19)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6. 6.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관리원은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이하 "지로관리소"라 한다)의 업무, 인원 및 재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② 지로관리소의 업무에 관하여 동 기관의 각급 회의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관리원의 총회 또는 각급 회의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③ 지로관리소의 각종 규약,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지로관리소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원의 해당부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전국어음교환관리소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신

용정보관리업무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한다.

⑤ 1986년 6월 1일 현재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의 임원이 이 정관 시행일에 관리원의 직급명칭이 다른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각각 그 직에 초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가 유임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6. 5.31)

이 정관은 198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광주직할시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7.6)

이 정관은 1987. 7.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28)

이 정관은 1989. 10. 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명칭변경(이하 관련조항 포함)은 1989.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17)

이 정관은 1990.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5)

이 정관은 1991. 3.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4)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1992.1.24)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27)

이 정관은 1992. 7.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 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선임이사의 임기)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는 이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3명 또는 4명이 교체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4. 6.2)

이 정관은 1994. 6.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7)

이 정관은 1995. 1.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17)

이 정관은 1995. 11. 24부터 시행한다.

금융결제원 위원회규정

가. 설립당시의 위원회규정

1986. 5.23 이사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정관 제22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에는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은행지로운영위원회·전산추진위원회 및 경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장 기능 및 구성

제1절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제3조(기능) ① 어음교환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어음교환소의 신규가입·탈퇴·제명 및 제재
   가.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조에 의한 특별참가은행의 교환소 가입
   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10조에 의한 참가은행의 교환소 탈퇴
   다.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91조에 의한 참가은행의 제명 및 제재
3. 서울어음교환소의 참가료 및 제수수료의 결정
   가.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15조에 의한 특별참가은행의 참가료의 결정
   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16조에 의한 참가은행의 교환수수료의 결정
4.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제정 및 개폐
5. 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은행인수어음교환규약의 제정 및 개폐
7. 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의 제정 및 개폐
8.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어음처리규약의 제정 및 개폐
9. 내국환집중결제규약의 제정 및 개폐
10. 한국은행 본·지점이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자금결제규약의 제정 및 개폐
11. 콜거래규약의 제정 및 개폐
12. 금융결제관리원규약 위반시의 제재규약의 제정 및 개폐
13. 기타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음교환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해석 및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2.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81조에 의한 불량거래처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3.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의 해제 및 취소
4. 기타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어음교환심사위원회는 한국은행 저축부장 및 사원은행의 어음교환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한국은행 자금부장·외환관리부장·발권부장, 은행감독원 감독국장, 준사원은행의 어음교환담당부장,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리원의 관련 부서장은 어음교환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저축부장이 되며, 한국은행 저축부장 유고시에는 한국은행 저축부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된다.

제2절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제5조(기능) ① 은행지로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은행지로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은행지로업무규약의 제정 및 개폐
3. 은행지로업무규약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참가은행에 대한 제재 및 과태금 부과
4. 은행지로업무규약 제10조에 의한 계약체결의 승인
5. 기타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은행지로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은행지로업무규약의 해석 및 은행지로업무별 세부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폐
2. 기타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은행지로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 저축부장과 사원은행의 지로업무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사원은행의 지로업무담당부장,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리원의 관련 부서장은 지로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은행지로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저축부장이 되며, 한국은행 저축부장 유고시에는 한국은행 저축부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된다.

제3절 전산추진위원회

제7조(기능) ① 전산추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1.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
3. 금융기관의 전산업무지원 또는 대행
4. 금융기관 공동코드규약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전산추진위원회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산추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세부사항
2.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3. 금융기관의 전산업무지원 또는 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4. 기타 전산추진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전산추진위원회는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 및 사원은행의 전산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사원은행의 전산담당부장·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리원의 관련 부서장은 전산추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전산추진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이 되

며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 유고시에는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된다.

제4절 경리위원회

제9조(기능) 경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리원의 공동사업 등에 따른 경비분담에 관한 심의
2. 관리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3. 관리원의 세무업무 협의, 심의 또는 결정
4. 기타 경리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결정

제10조(구성) ① 경리위원회는 한국은행 계리부장 및 사원은행의 예산 또는 경리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사원은행의 예산 또는 경리담당부장,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리원의 관련 부서장은 경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경리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계리부장이 되며, 한국은행 계리부장 유고시에는 한국은행 계리부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된다.

제5절 지부운영위원회

제11조(기능) 지부운영위원회는 관할지역내의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음교환소규약의 제정·개폐 및 동 내용의 어음교환심사위원회 경유 이사회앞 보고
2. 어음교환소 참가기관에 대한 제재
3. 어음교환소 참가료 및 제수수료의 결정
4. 불량거래처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및 해제의 승인
5. 어음부도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의 취소 및 해제의 승인
6. 어음교환소규약에 관한 해석
7. 은행지로업무
8. 금융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10. 기타 지부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관할지역내의 사원 또는 준사원인 금융기관의 주된 점포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부의 장은 지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지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지점 또는 주재사무소 소재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지점장 또는 주재사무소장이 되며, 기타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운 영

제13조(의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의안을 부의한다.

제14조(결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의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개최)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에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어음교환심사위원회 : 매월 네째 수요일
2. 은행지로운영위원회 : 매월 첫째 목요일
3. 전산추진위원회 : 매월 첫째 화요일
4. 경리위원회 : 매월 둘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무를 처리한다.

제17조(의사록) 관리원 또는 지부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의 서명을 받은 후 그 사본을 위원에게 배포하고 그 원본과 관련서류를 보관한다.

부 칙 (1986. 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 6.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어음교환심사위원회·경리위원회·지소운영위원회 및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의 업무운영위원회와 공동CD전문위원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된 해당위원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어음교환심사위원회, 경리위원회 및 지소운영위원회 규정과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의 업무운영위원회 및 공동CD위원회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위원회규정 변천일람표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1987. 6.25	제1조	- 「정관 제22조에 의거 위원회」를 「정관 제22조에 의거 총회 또는 이사회 부의안건을 심의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정할 각 위원회」로 변경	- 위원회 설치 목적 명시
	각 조	- 「전산추진위원회」를 「전산위원회」로 변경 (제2조, 제7조, 제8조, 제15조)	- 자구수정
	각 조	- 「금융전산위원회」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변경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자구수정
	각 조	- 「심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를 「심의한다」로 변경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 자구수정
	각 조	- 「심의 결정한다」를 「결정한다」로 변경 (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 자구수정
	제4조 제1항	- 「한국은행 저축부장 및 사원은행의 어음교환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를 「한국은행 저축부장과 사원은행의 어음교환담당부장 및 관리원의 어음교환부장으로 구성한다」로, 「은행감독원 감독국장,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을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각각 변경	- 위원회 구성 변경
	제5조 제1항 제4호	- 「계약체결의 승인」을 「계약체결」로 변경	- 자구수정
	제6조 제1항	- 「사원은행의 지로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를 「사원은행의 지로담당부장 및 관리원의 지로업무부장으로 구성한다」로, 「준사원은행의 지로담당부장,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리원의 관련부서장」을 「준사원은행의 지로담당부장 및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각각 변경	- 위원회 구성 변경
	제8조 제1항	- 「전산추진위원회는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 및 사원은	- 위원회 구성 변경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행의 전산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를 「전산위원회는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과 사원은행의 전산담당부장 및 관리원의 금융전산추진부장으로 구성한다」로, 「준사원은행의 전산담당부장·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리원의 관련부서장은 전산추진위원회」를 「준사원은행의 전산부장 및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전산위원회」로 각각 변경	
	제9조 제1호	- 「경비분담에 관한 심의」를 「경비분담에 관한 심의 또는 결정」으로 변경	- 문구조정
	제9조 제3호	- 「관리원의 세무업무협의, 심의 또는 결정」을 「관리원의 세무업무 심의 또는 결정」으로 변경	- 자구수정
	제10조 제1항	- 「경리위원회는 한국은행 계리부장 및 사원은행의 예산 또는 경리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를 「경리위원회는 한국은행 계리부장과 사원은행의 예산 또는 경리담당부장 및 관리원의 총무부장으로 구성한다」로,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리원의 관련부서장」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각각 변경	- 위원회 구성 변경
	제11조	-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로 변경	- 문구조정
	제11조 제3호	- 「어음교환소 참가료 및 제수수료의 결정」을 「어음교환소 참가료 및 제수수료」로 변경	- 자구수정
	제11조 제7호	- 「은행지로업무」를 「은행지로업무의 이용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문구조정
	제12조 제1항	- 「금융기관의 주된 점포의 장으로 구성한다」를 「금융기관의 주된 점포의 장과 관리원 지부의 장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다만, 지부의 장은 지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삭제	- 위원회 구성 변경
	제14조	- 「결의」를 「의결」로 변경	- 자구수정
	제17조	- 「관리원 또는 지부는」을 「관리원 위원은」으로 변경	- 자구수정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1989. 8.28	제3조 제1항 제10호	- 「한국은행 본·지점」을 「한국은행 본·지점, 출장소 또는 사무소」로 변경	- 문구조정
	제12조 제2항	- 「주재사무소」를 「출장소 또는 사무소」로, 「한국은행 지점장 또는 주재사무소장」을 「한국은행 지점장, 출장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각각 변경	- 문구조정
1989. 9.29	제3조 제1항 제11호	- 「콜거래규약」을 「콜거래중개방법에 관한 규약」으로 변경	- 자구수정
1989.10.26	제3조 제1항 제11호	- 「콜거래중개방법에 관한 규약」을 「콜거래중개업무 방법서」로 변경	- 자구수정
	각 조	- 「금융결제관리원」을 「금융결제원」으로, 「관리원」을 「결제원」으로 각각 변경 (제1조, 제2~4조, 제6조, 제8조~10조, 제12조, 제17조)	- 법인명칭 변경
1990. 3.31	제3조 제1항 제3호	- 「서울어음교환소의 참가료 및 제수수료의 결정」을 「서울어음교환소의 참가료 및 위탁료의 결정」으로, 「나. 제16조에 의한 참가은행의 교환수수료의 결정」을 「나. 제17조에 의한 위탁은행의 위탁료의 결정」으로 각각 변경	- 문구조정
	제8조 제1항	-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준사원은행의 전산담당부장 및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준사원은행의 전산담당부장」으로 각각 변경	- 문구조정
	제8조 제2항	- 「한국은행 전자계산부장」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	- 위원회 구성 변경
	제10조 제1항	- 「결제원의 총무부장」을 「결제원의 기획실장」으로 변경	- 위원회 구성 변경
1991. 6.24	제18조 제1항 (신설)	- 「제2조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의장은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의할 수 있다」를 신설, 삽입	- 소위원회 신설
	제18조 제2항 (신설)	- 「소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5인 이내로 한다」를 신설, 삽입	- 소위원회 신설
	제18조 제3항	- 「소위원회는 당해 심의사항을 심의한 후 해산한다」를	- 소위원회 신설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신설)	신설, 삽입	
	제19조 제1항 (신설)	-「제2조의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 삽입	- 특별위원회 신설
	제19조 제2항 (신설)	-「특별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저축부장이 된다. 의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사원은행의 관련부서장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를 신설, 삽입	- 특별위원회 신설
	제19조 제3항 (신설)	-「특별위원회는 당해 심의사항을 심의한 후 해산한다」를 신설, 삽입	- 특별위원회 신설
1992.12.30	제2장	-「제2장 기능 및 구성」을「기능」으로 변경	- 자구수정
	제4조	-「제5조」를「제4조」로 조 체상	- 조 체상
	제5조	-「제7조」를「제5조」로 조 체상	- 조 체상
	제6조	-「제9조」를「제6조」로 조 체상	- 조 체상
	제7조	-「제11조」를「제7조」로 조 체상	- 조 체상
	제6절	-「제6절 특별위원회」를 신설, 삽입	- 절 신설
	제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중「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결제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제8조 제1항으로 체상	- 자구수정 및 조 체상
	제8조 제2항	- 제19조 제2항「특별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저축부장이 된다. 의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사원은행의 관련부서장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를 삭제하고, 제19조 제3항을 제8조 제2항으로 조, 항 체상	- 조, 항 체상
	제3장	-「제3장 운영」을「제3장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	- 자구수정
	제9조	-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통합하여「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전산위원회 및 경리위원회의 위원은 결제원의 관련 부서장 1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 8인으로 한다. 다만, 지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부관할 지역내의 사원 또는 준사원인 금융기관의 주된 점포의 장과 결제원 지부장이 되며 특	- 위원회 구성 변경 및 규정 일원화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별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선임한다」를 제1항으로 신설, 삽입	
		- 「제1항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은 사원은행을 대표하여 7인, 준사원을 대표하여 1인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 삽입	- 위원회 구성 변경
		- 「제2항의 비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내 유고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그 직을 승계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제3항으로 신설, 삽입	- 위원회 구성 변경
	제10조 (신설)	-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을 통합하여 「각위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사원은행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를 제1항으로 신설, 삽입	- 의장선출방법 변경
		-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소속된 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를 제2항으로 신설, 삽입	-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규정
		- 제13조 제1항, 제2항을 통합하여 「의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로 변경하여 제10조 제3항으로 조 체상	- 자구수정 및 조 체상
	제11조 제1항	- 제14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조 체상	- 조 체상
	제11조 제2항	- 「한국은행의 관련부서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부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를 신설, 삽입	- 한국은행의 위원회 참석 발언권 명시
	제12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에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어음교환심사위원회 : 매월 네째 수요일 2. 은행지로운영위원회 : 매월 첫째 목요일 3. 전산위원회 : 매월 첫째 화요일 4. 경리위원회 : 매월 둘째 수요일」을	- 위원회 개최방법 변경

개정일자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원은행 4분의 1이상 또는 결제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로 변경하여 조 체상	
	제12조 제2항	- 제1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제1항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4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조 체상	- 위원회 개최방법 변경
	제13조	- 제17조 「결제원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을 받은 후 그 사본을 위원에게 배포하고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를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와 「결제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로 변경, 제1항,제2항으로 삽입	- 의사록 작성방법 변경 및 항 신설
	제14조	- 제18조를 제14조로 조 체상	- 조 체상
	제16조	- 삭제	- 간사제도 폐지
	부 칙	-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4명이 교체되도록 그 임기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 삽입	- 부칙 신설
1993. 7.21	제9조 제1항	- 「위원 8인으로 한다. 다만,」를 「위원 8인으로 하고」로 변경하고, 「다만, 지부 관할지역내에 한국은행 점포가 없고 한국은행 임치화폐보관점이 있는 경우 그 보관점 담당조직의 장은 해당 지부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신설, 삽입	- 지부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

다. 현행 위원회규정

제정 1986. 5.23 이사회 의결

개정 1987. 6.25 이사회 의결
1989. 8.28 〃
1989. 9.29 〃
1989.10.26 〃
개정 1990. 3.31 이사회 의결
1991. 6.24 〃
1992.12.30 〃
1993. 7.2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의 정관 제22조에 의거 총회 또는 이사회 부의안건을 심의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정할 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결제원의 주된 사무소에는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전산위원회 및 경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장 기 능

제1절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제3조(기능) ① 어음교환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어음교환소의 신규가입·탈퇴·제명 및 제재
   가.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조에 의한 특별참가은행의 교환소 가입
   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10조에 의한 참가은행의 교환소 탈퇴
   다.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91조에 의한 참가은행의 제명 및 제재
3. 서울어음교환소의 참가료 및 위탁료의 결정
   가.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15조에 의한 특별참가은행의 참가료의 결정
   나.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17조에 의한 위탁은행의 위탁료의 결정
4.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제정 및 개폐
5. 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은행인수어음교환규약의 제정 및 개폐
7. 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의 제정 및 개폐
8.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어음처리규약의 제정 및 개폐
9. 내국환집중결제규약의 제정 및 개폐
10. 한국은행 본·지점, 출장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자금결제규약의 제정 및 개폐
11. 콜거래중개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개폐
12. 금융결제원규약 위반시의 제재규약의 제정 및 개폐
13. 기타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음교환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해석 및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2.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81조에 의한 불량거래처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3.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의 해제 및 취소

4. 기타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제4조(기능) ① 은행지로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은행지로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은행지로업무규약의 제정 및 개폐
3. 은행지로업무규약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참가은행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4. 은행지로업무규약 제10조에 의한 계약체결
5. 기타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은행지로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은행지로업무규약의 해석 및 은행지로업무별 세부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폐
2. 기타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전산위원회

제5조(기능) ① 전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위탁한 사항
2.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
3. 금융기관의 전산업무지원 또는 대행
4. 금융기관 공동코드규약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전산위원회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의 세부사항
2.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3. 금융기관의 전산업무지원 또는 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4. 기타 전산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절 경리위원회

제6조(기능) 경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결제원의 공동사업 등에 따른 경비분담에 관한 심의 또는 결정
2. 결제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3. 결제원의 세무업무 심의 또는 결정
4. 기타 경리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결정

제5절 지부운영위원회

제7조(기능) 지부운영위원회는 관할 지역내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어음교환소규약의 제정·개폐 및 동 내용의 어음교환심사위원회 경유 이사회앞 보고
2. 어음교환소 참가기관에 대한 제재
3. 어음교환소 참가료 및 제수수료
4. 불량거래처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및 해제의 승인
5. 어음부도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의 취소 및 해제의 승인
6. 어음교환소규약에 관한 해석
7. 은행지로업무의 이용추진에 관한 사항
8. 금융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10. 기타 지부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특별위원회

제8조(기능) ① 제2조의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결제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당해 심의사항을 심의한 후 해산한다.

제3장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①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은행지로운영위원회, 전산위원회 및 경리위원회의 위원은 결제원의 관련부서장 1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 8인으로 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부관할 지역내의 사원 또는 준사원인 금융기관의 주된 점포의 장과 결제원 지부장이 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지부 관할지역내에 한국은행 점포가 없고 한국은행 임치화폐보관점이 있는 경우 그 보관점 담당조직의 장은 해당 지부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은 사원은행을 대표하여 7인, 준사원을 대표하여 1인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비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내 유고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그 직을 승계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의장) ① 각 위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사원은행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소속된 기관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11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한국은행의 관련부서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안건에 관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제12조(개최)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원은행 4분의 1 이상 또는 결제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4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의장은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당해 심의사항을 심의한 후 해산한다.

부 칙 (1986.5.23)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1986. 6.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어음교환심사위원회 · 경리위원회 · 지소운영위원회 및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의 업무운영위원회와 공동CD전문위원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된 해당위원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어음교환심사위원회, 경리위원회 및 지소운영위원회규정과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의 업무운영위원회 및 공동CD전문위원회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7. 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6.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7.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10.4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변경 관련조항은 1989. 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2.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6.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일(1993.1.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선임위원의 임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4명이 교체되도록 그 임기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3. 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 7.21부터 시행한다.

역대임원

금융결제원

직 명	성 명	취임년월일	퇴임년월일
원 장	김 재 윤	1986. 6. 2	1986.11.28
	전 영 수	1986.11.29	1989. 1.13
	이 창 수	1989. 1.14	1992. 1.13
	박 찬 문	1992. 1.14	1995. 1.13
	신 복 영	1995. 1.14	현 재
전무이사	고 광 직	1986. 6. 2	1986. 7.17
	김 홍 배	1986. 7.18	1989. 7.17
	조 경 호	1989. 7.18	1992. 7.19
	오 경 희	1992. 7.20	1995. 7.19
	문 학 모	1995. 7.20	현 재
감 사	하 소 곤	1986. 6. 2	1988. 5. 9
	주 형 돈	1988. 5.10	1992. 5. 9
	최 형	1992. 5.10	1994. 5. 9
	백 남 정	1994. 5.10	1996. 5. 9
	편 원 득	1996. 5.10	현 재

직 명	성 명	취임년월일	퇴임년월일
상무이사	주 형 돈	1986. 6. 2	1988. 5. 9
	구 본 식	1986. 6. 2	1989. 6. 1
	권 영 달	1986. 7.18	1990. 5.19
	최 형	1988. 5.10	1992. 5. 9
	김 홍 배	1989. 6. 2	1992. 6. 1
	백 남 정	1992. 5.10	1994. 5. 9
	조 성 묵	1992. 6. 2	1995. 6. 1
	김 보 경	1992. 7.20	1993. 4. 8
	김 종 태	1994. 5.10	1995.10.12
	김 문 식	1993. 4. 9	현 재
	양 학 규	1995. 6. 2	현 재
	조 이 남	1995.10.17	현 재
상임고문	이 창 수	1992. 1.14	1995. 1.13
	박 찬 문	1995. 1.14	1995. 2.23
	오 경 희	1995. 8. 1	현 재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소 장	고 광 직	1984. 5.10	1986. 6. 1
감 사	하 소 곤	1984. 5.10	1986. 6. 1
부소장	구 본 식	1984. 5.10	1986. 6. 1

은행지로관리소

소 장	김 동 수	1975. 8.22	1981. 8.21
	김 두 춘	1981. 8.22	1986. 6. 1
감 사	박 정 서	1977. 7. 8	1979.10.11
	김 홍 석	1979.10.12	1980. 9.11
	장 규 진	1980. 9.12	1982. 6. 3
	곽 상 수	1982. 6. 4	1984.11.18
	김 재 윤	1984.11.19	1986. 6. 1
부 소 장	김 세 희	1980.12.31	1982. 2.26
	우 진 영	1982. 7.16	1985. 7.15

기구도표

1986. 6. 2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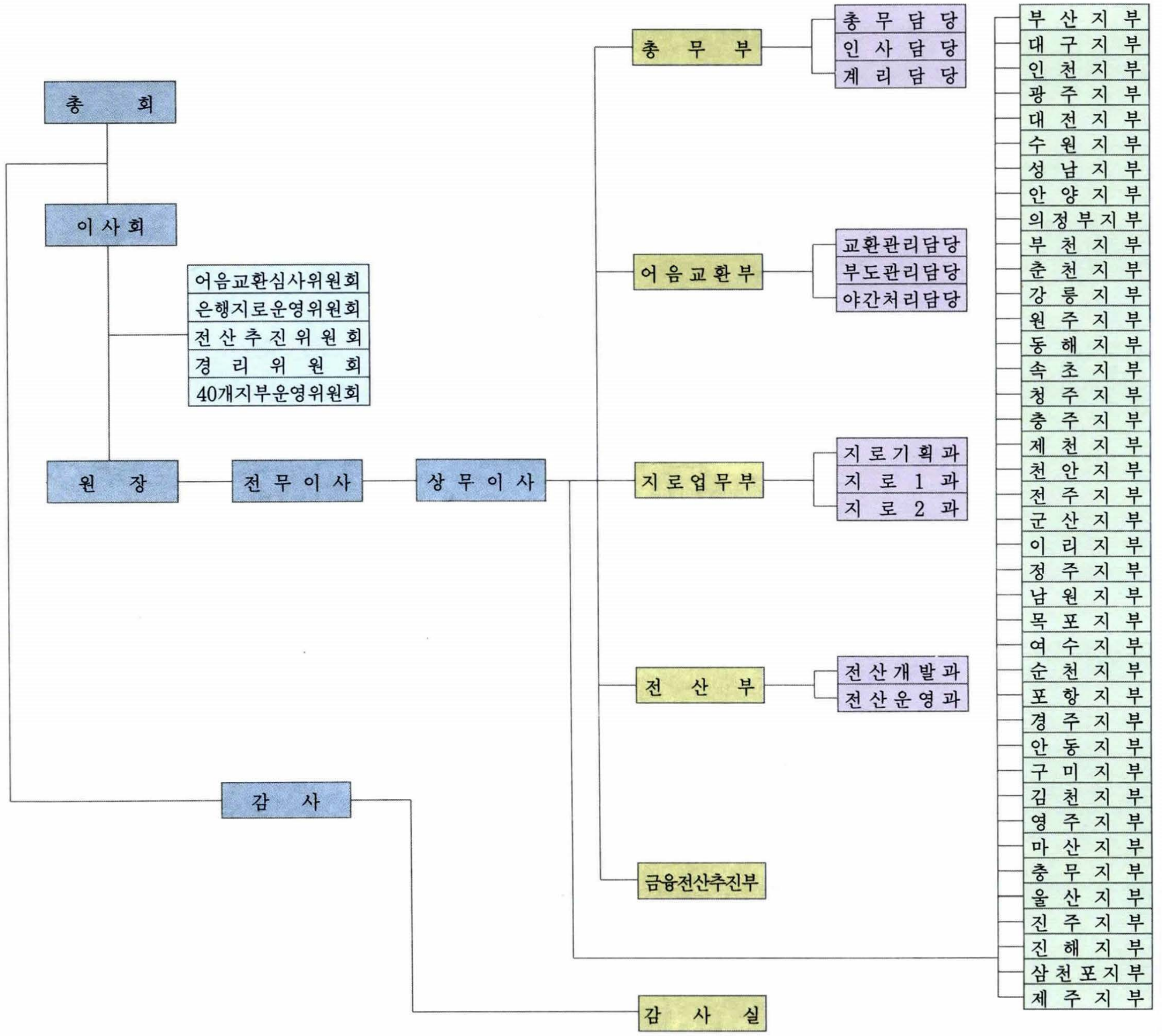

■ 본부 : 5부 1실 5과 6담당

■ 지부 : 40개 지부

1996. 2. 13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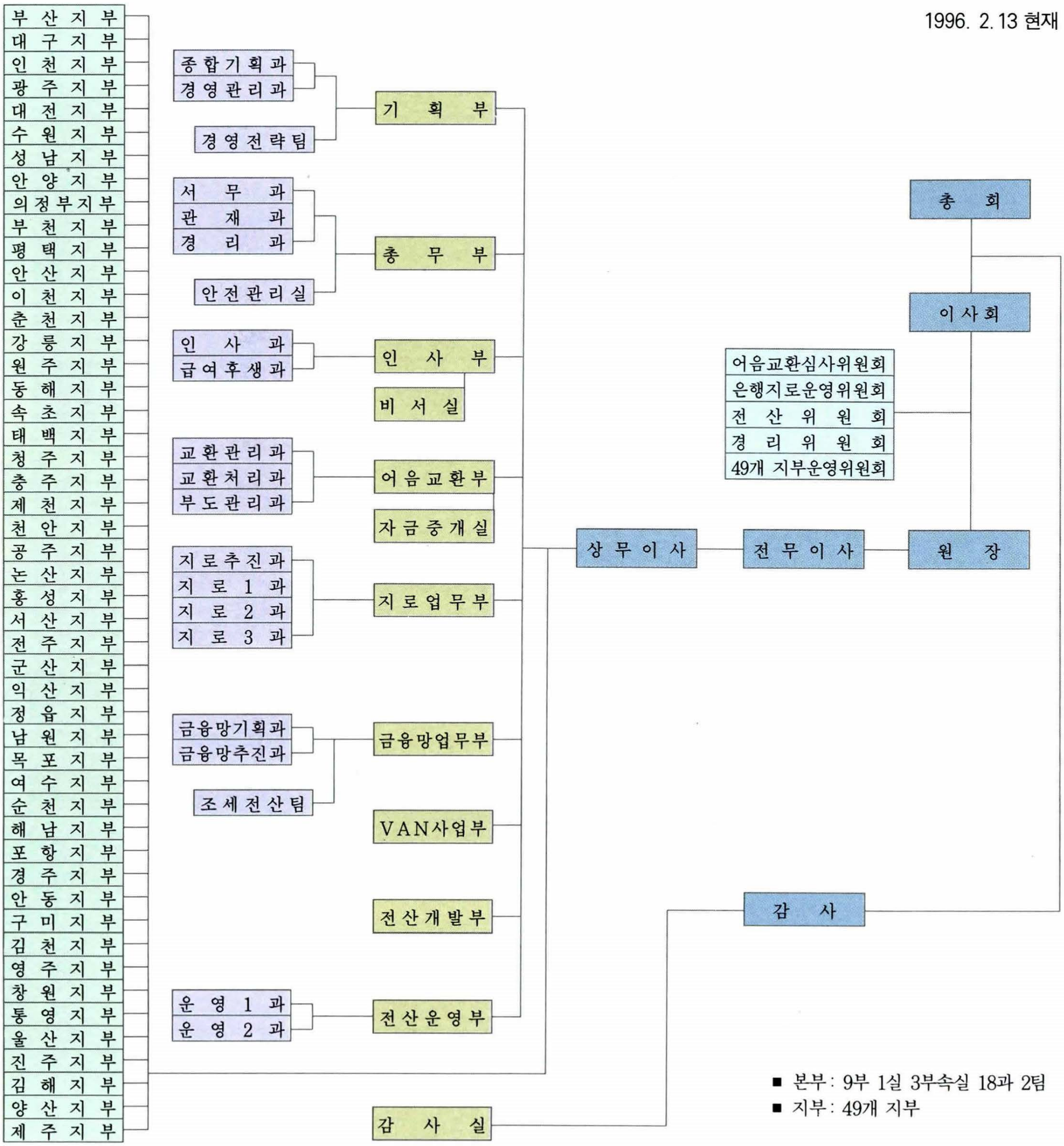

■ 본부 : 9부 1실 3부속실 18과 2팀
■ 지부 : 49개 지부

역대 본부부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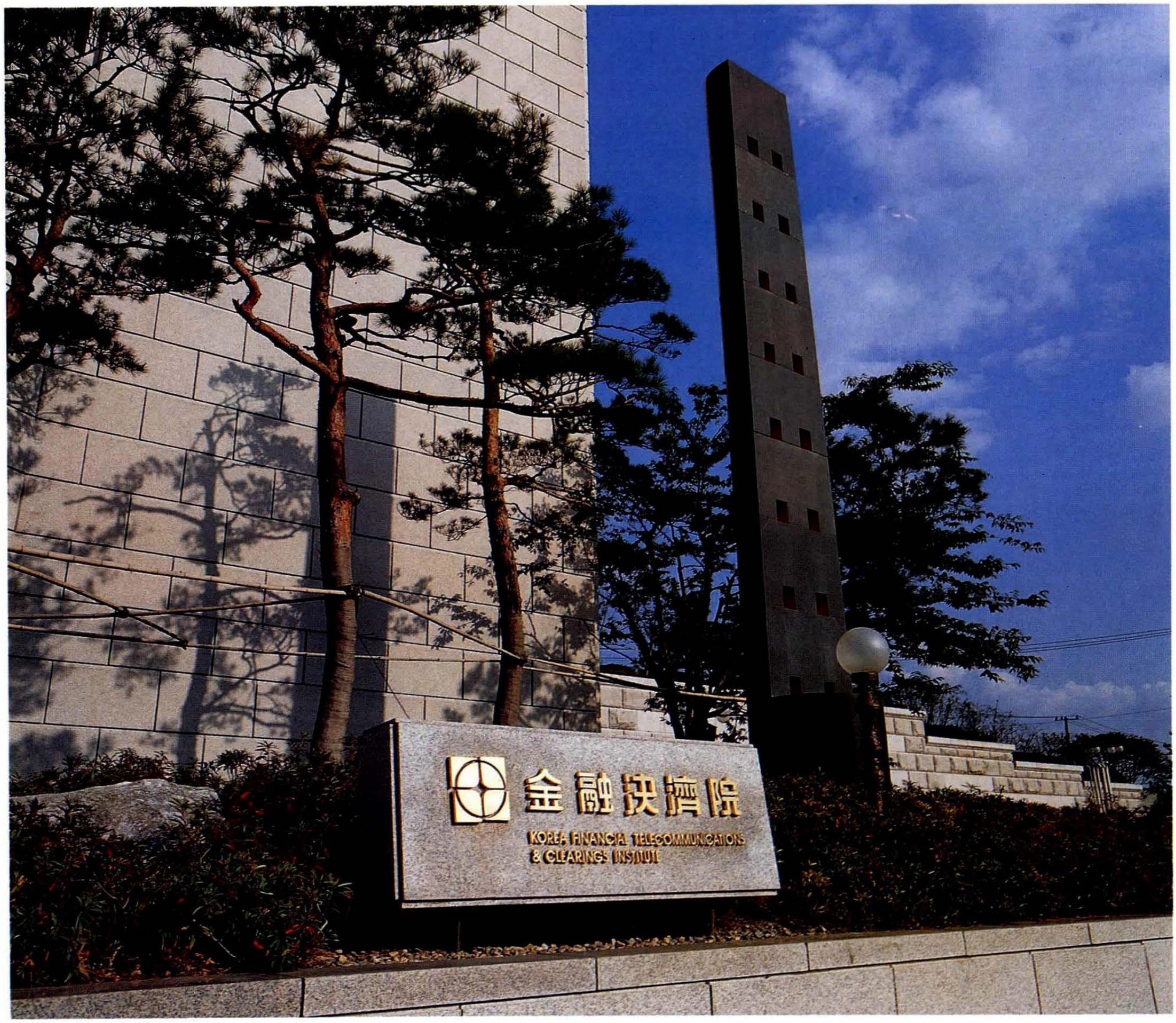
金融決濟院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금융결제원

기획부

역대부서장

박 국 노 1990. 1. 3 ~ 1991. 1.11
김 홍 휴 1991. 1.12 ~ 1992. 7.24
박 원 익 1992. 7.25 ~ 1996. 2. 4
이 한 형 1996. 2. 5 ~ 현 재

연혁

1988. 4. 1 총무부 기획실로 신설
1990. 1. 1 독립부서로 개편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신설
1992. 8. 1 조사홍보과 신설
1995. 9.18 경영전략팀 신설
조사홍보과 폐지
1996. 1.23 기획부로 개칭

총무부

역대부서장

조 성 묵 1986. 6. 2 ~ 1988. 1.31
박 국 노 1988. 2. 1 ~ 1990. 1. 2
조 성 묵 1990. 1. 3 ~ 1992. 7.24
배 희 철 1992. 7.25 ~ 1995. 8.13
이 창 신 1995. 8.14 ~ 현 재

연혁

1984. 5.10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무부로 신설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총무부로 개편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리담당
1988. 4. 1 과체제로 개편
총무과, 인사과, 계리과
1989. 6.23 비서실 신설
1991. 1.22 급여후생과 신설
1992. 8. 1 관재과, 안전관리과 신설
총무과를 서무과로, 계리과를 경리과로 개칭
1993. 4. 1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실로 개편

인사부

역대부서장

변 창 안　1993. 8. 6 ~ 현 재

연혁

1986. 6. 2　총무부 인사담당으로 신설
1993. 8. 4　독립부서로 개편
　　인사과, 급여후생과, 비서실
1994. 2.23　비서실에 부서장 직무권한 부여

어음교환부

역대부서장

허 윤 수　1986. 6. 2 ~ 1987. 8.31
김 홍 휴　1987. 9. 1 ~ 1991. 1.11
박 국 노　1991. 1.12 ~ 1993. 8. 6
이 순 우　1993. 8. 7 ~ 1994. 8.25
박 국 노　1994. 8.26 ~ 현 재

연혁

1984. 5.10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어음교환부로 신설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어음교환부로 개칭
　　교환관리담당, 부도관리담당, 야간처리 담당
1989. 6.23　과체제로 개편
　　교환관리과, 부도관리과, 교환처리1과, 교환처리2과
1992. 8. 1　교환처리1,2과와 교환관리과 (교환관리 · 접수)를
　　교환처리과로 개편

자금중개실

역대부서장

배 정 호　1994. 2.25 ~ 현 재

연혁

1984. 5.10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무부 외환교환실 및 콜거래실로 신설
1986. 1.28	외환교환실을 외환거래실로 개칭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총무부 외환거래실 및 콜거래실로 개편
1988. 4. 1	어음교환부 외환거래실 및 콜거래실로 개편
1989.10.14	외환거래실 및 콜거래실을 어음교환부 자금중개실로 개편
1991. 5. 1	콜거래실 폐지
1994. 2.23	부서장 직무권한 부여

지로업무부

역대부서장

양 학 규　1986. 6. 2 ~ 1988. 5.17
이 순 우　1988. 5.18 ~ 1991. 1.11
양 학 규　1991. 1.12 ~ 1993. 8. 5
김 영 신　1993. 8. 6 ~ 1996. 2. 4
김 영 택　1996. 2. 5 ~ 현 재

연혁

1977. 2. 1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사무국내 기획과, 업무과로 신설
1980.12.31	지로부로 개편 기획과, 업무과, 추진과 신설
1981. 8.14	OCR전담반 설치
1983. 3.17	기획과 및 추진과를 총무부 기획추진과로, 업무과를 업무부 업무1과, 업무2과로 개편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지로업무부로 개편 지로기획과, 지로1과, 지로2과
1988. 4. 1	지로기획과를 지로추진과로 개칭
1992. 8. 1	지로3과 신설
1995. 2.27	IPS 전담반 설치

금융망업무부

역대부서장

조 이 남	1986. 6. 2 ~ 1988. 5.17
양 학 규	1988. 5.18 ~ 1991. 1.11
조 이 남	1991. 1.12 ~ 1993. 8. 5
조 병 일	1993. 8. 6 ~ 1994. 8.25
조 이 남	1994. 8.26 ~ 1996. 2. 4
박 원 익	1996. 2. 5 ~ 현 재

연혁

1984.11.12	은행지로관리소 시스템실로 신설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금융전산추진부로 개편
1992. 8. 1	금융망업무부로 개편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신설
1995.11.20	조세전산팀 신설

VAN사업부

역대부서장

조 갑 장	1995. 2.18 ~ 현 재

연혁

1994. 4.11	금융망업무부 EFT/POS 전담반으로 신설
1995. 2. 8	부가통신사업실로 개편
	부서장 직무권한 부여
1996. 1.23	독립부서 VAN사업부로 개편

전산개발부

역대부서장

김 홍 휴	1986. 6. 2 ~ 1987. 8.31
이 순 우	1987. 9. 1 ~ 1988. 5.17
조 이 남	1988. 5.18 ~ 1991. 1.11
조 병 일	1991. 1.12 ~ 1992. 7.31
김 홍 휴	1992. 8. 1 ~ 1993. 3.31
조 병 일	1993. 4. 1 ~ 1993. 8. 5
조 이 남	1993. 8. 6 ~ 1994. 8.25
조 병 일	1994. 8.26 ~ 1995. 2.17
김 홍 휴	1995. 2.18 ~ 현 재

연혁

1983. 3.17	은행지로관리소 전산부 전산개발과로 신설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전산부 전산개발과로 개편
1988. 4. 1	전산개발과를 전산과로 개칭
1989. 6.23	전산과를 전산개발과로 개칭
1992. 8. 1	전산개발부로 개편
	개발1과, 개발2과 신설
1994. 2.17	과제도 폐지

전산운영부

역대부서장

조 병 일	1992. 8. 1 ~ 1993. 3.31
김 영 신	1993. 4. 1 ~ 1993. 8. 5
박 국 노	1993. 8. 6 ~ 1994. 2.21
양 학 규	1994. 2.22 ~ 1995. 8.10
김 홍 휴	1995. 8.11 ~ 1996. 2. 4
배 희 철	1996. 2. 5 ~ 현 재

연혁

1975.10. 1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사무국 자료처리과로 신설
1980.12.31	총무부 시스템운영과로 개칭
1983. 5.10	전산부 전산운영과로 개편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전산부 전산운영과로 개편
1988. 4. 1	전산운영과를 운영과로 개칭
1989. 6.23	운영과를 전산운영과로 개칭
1992. 8. 1	독립부서 전산운영부로 개편
	운영1과, 운영2과 신설

감사실

역대부서장

정 지 현　1986. 6. 2 ~ 1986. 8.31
박 국 노　1986. 9. 1 ~ 1988. 1.31
박 찬 용　1988. 2. 1 ~ 1991.12.31
이 순 우　1992. 1. 1 ~ 1993. 2.28
김 동 근　1993. 3. 1 ~ 1994. 2.28
이 창 신　1994. 3. 1 ~ 1995. 8.16
박 찬 용　1995. 8.17 ~ 현 재

연혁

1984. 5.10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감사실로 신설
1986. 6. 2　금융결제관리원 감사실로 개편

당원 발족이전의 역대 본부부서장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 무 부 장	유호룡	1984. 5.10 ~ 1985. 9.30	
	조성묵	1985.10. 1 ~ 1986. 6. 1	
어음교환부장	허윤수	1984. 5.10 ~ 1986. 6. 1	
신용정보관리부장	오진식	1984. 5.10 ~ 1985. 5.31	
	최주환	1985. 6. 1 ~ 1986. 6. 1	
감 사 실 장	박노헌	1984. 5.10 ~ 1986. 6. 1	
		은행지로관리소	
총 무 부 장	박만정	1980.12.31 ~ 1981. 4.12	
	황규원	1981. 4.13 ~ 1982. 3. 8	
	조휘경	1982. 3. 9 ~ 1983. 5. 9	
	정지현	1983. 5.10 ~ 1986. 6. 1	
지로업무부장	권영달	1980.12.31 ~ 1981. 4.27	지로부장
	김세희	1981. 4.28 ~ 1982. 7.15	위촉(부소장)
	우진영	1982. 7.16 ~ 1983. 5. 9	〃
	양학규	1983. 5.10 ~ 1986. 6. 1	업무부장
어음교환부장	기위호	1981. 1. 6 ~ 1981. 3.31	
전 산 부 장	조이남	1983. 5. 10 ~ 1986. 6. 1	
시스템실장	김홍휴	1984.11.12 ~ 1986. 6. 1	
검 사 역	황규원	1981. 1. 6 ~ 1981. 4.12	1 급
	박만정	1981. 4.13 ~ 1983. 5. 9	〃
	조휘경	1983. 5.10 ~ 1985. 8.25	〃
	김동근	1985. 8.26 ~ 1986. 6. 1	2 급

*1980.12.31 부제도 신설

역대 지부장

전국 지부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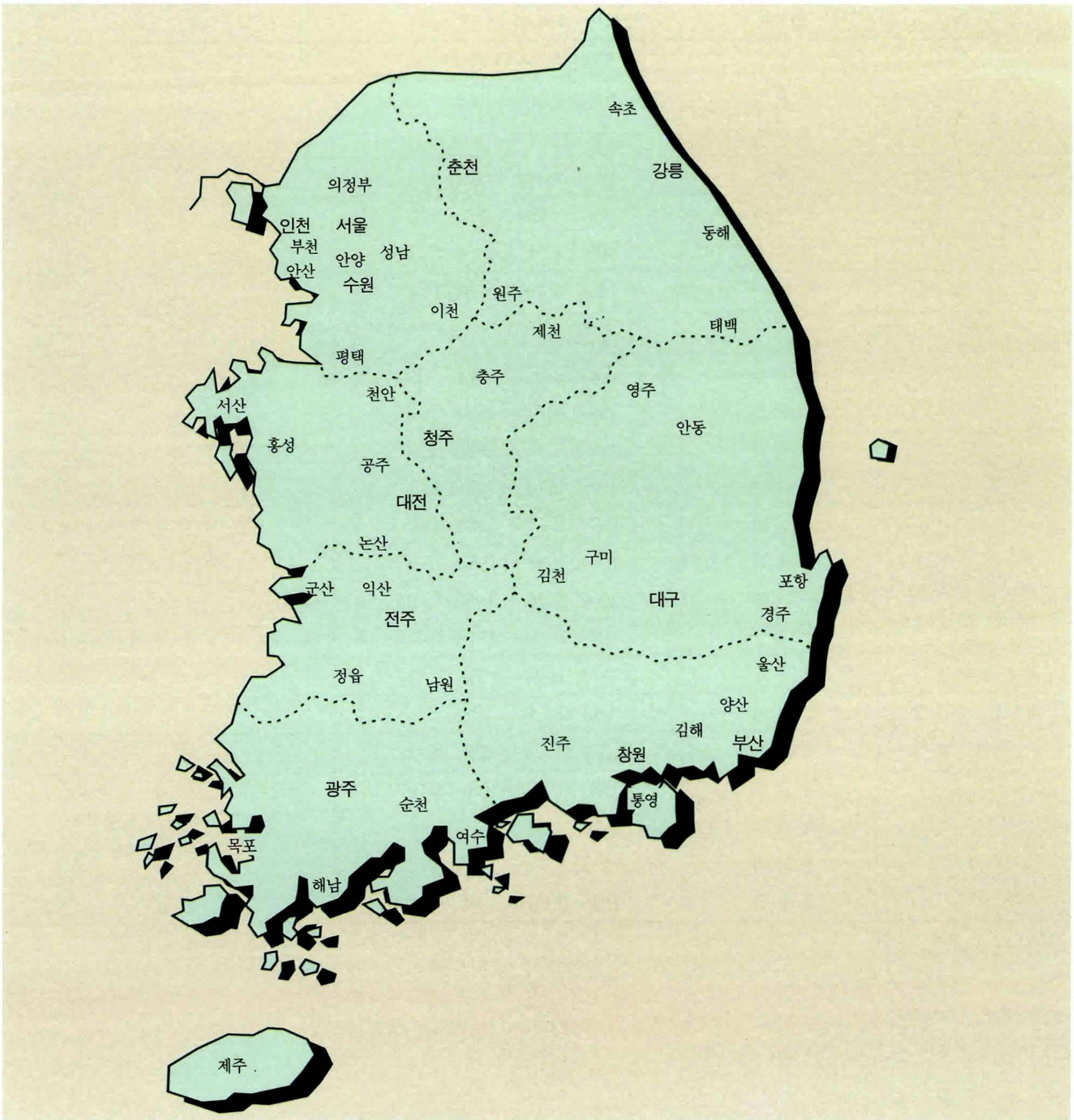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 49-1

역대지부장

김 영 화　1986. 6. 2 ~ 1987. 2.28
김 덕 수　1987. 3. 1 ~ 1988. 2.24
허 정 종　1988. 3. 1 ~ 1988. 5.31 직무대행
김 만 원　1988. 6. 1 ~ 1988. 8.25
장 동 익　1988. 9.19 ~ 1991. 9.31
신 기 현　1991.10. 1 ~ 1993. 3.31
김 홍 휴　1993. 4. 1 ~ 1994. 8.25
이 순 우　1994. 8.26 ~ 1996. 2. 6
전 풍 호　1996. 2. 7 ~ 현 재

연혁

1911. 4. 1	부산수형교환소(사설) 개설(부산부 대덕구 一丁目 44번지)
1917. 3	부산수형교환소 지정(조선총독부령 제17호)
1931. 8.25	사단법인 부산은행집회소 신설 (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49번지)
1933.12.29	부산수형교환소 신지정(조선총독부령 제148호)
1963.12.31	부산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8. 9.16	임시 사무실로 이전(부산시 중구 창선동 1가 9-3)
1969. 6.16	건물 신축이전(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49-1, 연건평 345.682평)
1969.10.	부산금융단 전용전화 교환대 설치
1975. 8.22	부산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부산지부로 개편
1977. 7. 1	내국신용장 교환실 설치
1981.10.13	부산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부산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부산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부산지부로 개칭
1993. 7.21	현부지 매입
1994. 4. 1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터 설치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1가 5

역대지부장

박 용 상　1986. 6.12 ~ 1991. 1.11
강 영 식　1991. 1.12 ~ 1994. 8. 8
이 용 호　1994. 8. 9 ~ 1996. 2. 6
손 기 선　1996. 2. 7 ~ 현 재

연혁

1921. 7. 1　대구수형교환소(사설) 지정 및 개설
1933.12.29　대구수형교환소 신지정(조선총독부령 제148호)
1952. 8.15　대구은행집회소(임의단체)로 신설(한국은행 대구지점 2층)
1958. 9.30　대구은행집회소, 사단법인으로 개편
1958.12.17　토지취득(대구시 중구 삼덕동 1가 5번지, 대지 525평)
1959. 1.10　건물매입 이전(대구시 중구 삼덕동 1가 5번지)
1961. 8.18　임시 사무실로 이전(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2층)
1963.12.31　대구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4. 5.15　본 사무실로 원대복귀
1970.12.10　대구금융단 전용전화 교환대(100회선) 설치
1975. 8.22　대구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대구지부로 개편
1977. 7. 1　내국신용장 교환실 설치
1977.12.27　건물 신축공사 착공
1978. 8.29　신축건물 준공(연건평 587.37평)
1981.10.13　대구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3. 8. 1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 대구분소를 지부내 설치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대구지소로 개편
1984. 9.31　금융단 전용전화 폐쇄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대구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대구지부로 개칭
1993. 7.21　현부지 매입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72-2

역대지부장

정 구 한	1986. 6. 2 ~ 1988.11.30	
염 윤 국	1988.12. 1 ~ 1991.12.31	
박 찬 용	1992. 1. 1 ~ 1995. 8.16	
김 동 근	1995. 8.17 ~ 1995.12.21	
전 풍 호	1995.12.22 ~ 1996. 2. 6	직무대행
이 용 호	1996. 2. 7 ~ 현 재	

연혁

1910.12. 1	인천수형교환소(사설) 개설(인천시 해안동 3가 1번지)
1917. 3.	인천수형교환소 지정(조선총독부령 제17호)
1933.12.29	인천수형교환소 신지정(조선총독부령 제148호)
1963.12.31	인천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8. 2.	인천은행집회소 설립인가(재무부)
1970. 5.	인천금융단 전용전화교환대 설치
1970. 9. 1	인천은행집회소로 신설(한국은행 인천지점)
1975. 8.22	인천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인천지부로 개편
1977. 7. 1	내국신용장 교환실 설치
1981. 5.25	사무실 이전(인천시 남구 숭의동 163-6, 112.6평)
1981.10.13	인천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인천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인천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인천지부로 개칭
1991.12.16	사무실 이전(인천시 남구 주안6동 72-2)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0-2

역대지부장

김 태 환　1986. 6. 2 ~ 1987. 7.31
최 동 복　1987. 8. 1 ~ 1991. 8.31
김 동 근　1991. 9. 1 ~ 1993. 3.31
정 진 래　1993. 4. 1 ~ 1993.11.30
윤 홍 식　1993.12. 1 ~ 현 재

연혁

1943. 5. 1	광주수형교환소 지정 및 개설
1947. 4	간사제도 실시
1957. 4. 1	광주은행집회소(임의단체)로 신설 (광주시 충장로 3가 6번지)
1962. 4	사무실 이전(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 12번지)
1963.12.31	광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5. 8.27	사단법인 광주은행집회소 설립총회 개최
1965. 9. 9	사단법인 광주은행집회소 설립승인 신청
1965.10.22	사단법인 광주은행집회소 설립인가 (재무부 이재 122.1-2371호)
1970.11. 6	신축부지 매입(광주시 동구 대인동 310-2)
1975. 7.11	사단법인 광주은행집회소 건물 신축 승인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1975. 8.22	광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 9. 1	신축공사 착공(지하1층, 지상2층)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광주지부로 개편
1975.12.29	신축 이전(광주시 동구 대인동 310-2)
1981.10.13	광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광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광주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지부로 개칭
1993. 7.21	현부지 매입
1993.11.26	신축부지 매입 (광주시 서구 상무신도심개발지구내 134블럭 3롯트 992㎡)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40

역대지부장

한 규 훈	1986. 6. 2 ~ 1987. 6.30
신 성 우	1987. 7. 1 ~ 1991. 4.30
박 규 서	1991. 5. 1 ~ 1992.10.31
박 훈 주	1992.11. 1 ~ 1993.11.30
정 진 래	1993.12. 1 ~ 현 재

연혁

1944. 5. 1	대전수형교환소 개설
1956. 4.16	사무소 이전(대전시 은행동 126)
1957. 4. 1	대전은행집회소로 신설
1963. 5.28	사무실 이전 승인 (금융기관대표자회의, 대전시 선화동 5번지)
1963.12.31	대전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6. 8.12	사단법인 대전은행집회소 설립인가 신청
1966.10.17	사단법인 대전은행집회소 설립인가(재이 1221.1-2098호)
1968. 7.12	사단법인 대전은행집회소 대지확보 및 건물 신축승인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1968. 9.16	토지 매입(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40, 261.2평)
1969. 5. 3	건물 신축공사 완공
1969. 5. 5	신축 이전(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40)
1975. 8.22	대전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대전지부로 개편
1977. 7. 1	내국신용장 교환실 설치
1981.10.13	대전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3.10. 1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 대전분소 설치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대전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대전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대전지부로 개칭
1993. 7.21	현부지 매입

수원지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2

역대지부장

김 두 추　1986. 6. 2 ~ 1988. 8.30
장 병 묵　1988. 7. 1 ~ 1992. 3.31
김 영 택　1992. 4. 1 ~ 1992. 7.31
김 영 신　1992. 8. 1 ~ 1993. 3.31
이 창 신　1993. 4. 1 ~ 1994. 2.28
김 동 근　1994. 3. 1 ~ 1995. 8.16
조 병 일　1995. 8.17 ~ 현 재

연혁

1965. 7. 8　수원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2호)
1965. 8. 1　수원어음교환소로 개설
1975. 8.22　수원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0.11　사무실 이전(수원시 영화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 69블럭)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수원지부로 개편
1976. 5. 1　사무실 이전(수원시 매산로 2가 30번지)
1981.10.13　수원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수원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수원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수원지부로 개칭
1989.11.28　사무실 이전(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008-17)
1993. 4.29　사무실 이전(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2)

성남지부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40

역대지부장

독고 란　1986. 6. 2 ~ 1986. 8.31
박 노 헌　1986. 9. 1 ~ 1991.12.31
박 덕 한　1992. 1. 1 ~ 1995. 2.20
최 동 식　1995. 2.21 ~ 현 재

연혁

1980.12.10　성남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0호)
1981. 1. 5　성남어음교환소 개설(성남시 신흥2동 2465-5)
1981.10.13　성남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성남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성남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성남지부로 개칭
1993. 3.13　사무실 이전(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40)

안양지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64

역대지부장

서 병 국	1986. 6. 2 ~ 1988. 1.31	
조 성 묵	1988. 2. 1 ~ 1990. 1. 2	
박 태 영	1990. 1. 3 ~ 1991. 1.15	
이 순 우	1991. 1.16 ~ 1992. 1. 2	
조 성 동	1992. 1. 3 ~ 1993.11.30	
전 풍 호	1993.12. 1 ~ 1995.12.21	
이 무 홍	1995.12.22 ~ 1996. 1.31	직무대행
	1996. 2. 1 ~ 현 재	

연혁

1980.12.10	안양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0호)
1981. 1. 5	안양어음교환소 개설(안양시 안양동 676-116)
1981.10.13	안양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3. 1.14	사무실 이전(안양시 안양5동 627-252)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안양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안양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안양지부로 개칭
1987.10.23	사무실 이전(안양시 안양동 622-264)

의정부지부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6

역대지부장

하 일 태	1986. 6. 2 ~ 1987. 8.31
김 동 근	1987. 9. 1 ~ 1990. 4. 5
강 성 웅	1990. 4. 6 ~ 1991. 1.15
박 태 영	1991. 1.16 ~ 1993. 3.31
신 순 헌	1993. 4. 1 ~ 현 재

연혁

1981.10.13	의정부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1.12. 1	의정부어음교환소 개설(의정부시 의정부1동 180-4)
1982. 1.16	사무실 이전(의정부시 의정부1동 180-4)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의정부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의정부지부로 개칭
1988. 2.27	사무실 이전(의정부시 의정부동 176-19)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의정부지부로 개칭
1990. 6.30	사무실 이전(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1992. 7.25	사무실 이전(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6)

부천지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0-10

역대지부장

김 덕 호	1986. 6. 2 ~ 1988.10.31
박 덕 한	1988.11. 1 ~ 1990. 4. 5
조 병 일	1990. 4. 6 ~ 1991. 1.15
강 성 웅	1991. 1.16 ~ 1993. 3.31
박 태 영	1993. 4. 1 ~ 현 재

연혁

1981.10.13	부천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2. 1. 4	부천어음교환소 개설(부천시 심곡동 550-10)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부천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부천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부천지부로 개칭

평택지부

평택시 평택동 65-6

역대지부장

김 경 열	1986.11. 3 ~ 1991. 1. 2
박 덕 한	1991. 1. 3 ~ 1992. 1. 5
김 기 돈	1992. 1. 6 ~ 1992.12. 9
김 호 중	1992.12.10 ~ 1996. 2. 6
오 병 환	1996. 2. 7 ~ 현 재

연혁

1986. 5. 9	평택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87호)
1986.11. 3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평택지부로 신설 (평택시 평택동 66-1)
1989. 5.15	사무실 이전(평택시 평택동 34-3)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평택지부로 개칭
1992.10.31	사무실 이전(평택시 평택동 65-6)

안산지부

안산시 고잔동 520-1

역대지부장

이 해 근	1990. 8.10 ~ 1992. 7.31
이 강 익	1992. 8. 1 ~ 1996. 2. 6
김 호 중	1996. 2. 7 ~ 현 재

연혁

1990. 3. 6	안산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340호)
1990. 8.10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안산지부로 신설 (안산시 고잔동 525-3)
1992.10. 1	사무실 이전(안산시 고잔동 520-1)

이천지부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7-23

역대지부장

이 영 화	1994. 7. 4 ~ 1995. 2.20 직무대행
안 상 웅	1995. 2.21 ~ 현 재

연혁

1994. 6. 2	이천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384호)
1994. 7. 4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이천지부로 신설 (이천군 이천읍 중일리 2)
1995. 9.30	사무실 이전(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7-23)

춘천지부

춘천시 중앙로 1가 83

역대지부장

이 성 헌	1986. 6. 2 ~ 1987.11.30
장 동 익	1987.12. 1 ~ 1988. 9.18
지 관 해	1989. 4. 1 ~ 1990.12.31
조 성 동	1991. 2.22 ~ 1991.12.31
이 용 호	1992. 1. 1 ~ 1993. 8. 7
이 왕 식	1993. 8. 9 ~ 현 재

연혁

1955.12.13	춘천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15호) 및 개설 (한국은행 춘천지점)
1963.12.31	춘천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74. 6.	사무실 이전(서울은행 춘천지점)
1975. 8.22	춘천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춘천지부로 개편
1979.10.	사무실 이전(춘천시 중앙로1가 83)
1981.10.13	춘천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춘천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춘천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춘천지부로 개칭

강릉지부

강릉시 금학동 48

역대지부장

손 명 훈	1986. 6. 2 ~ 1986. 7.31
지 관 해	1986. 8. 1 ~ 1989. 3.31
이 천 령	1989. 4. 1 ~ 1993. 3.31
구 영 서	1993. 4. 1 ~ 1994. 2.28
안 상 웅	1994. 3. 1 ~ 1995. 2.20
박 덕 한	1995. 2.21 ~ 현 재

연혁

1964.12. 5	강릉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1호)
1965. 1. 1	강릉어음교환소 개설(강릉시 성내동 20-3)
1974.12. 1	사무실 이전(강릉시 임당동 88-11)
1975. 8.22	강릉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강릉지부로 개편
1976. 7. 1	사무실 이전(강릉시 성내동 20-3)
1981.10.13	강릉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2. 7. 6	사무실 이전(강릉시 금학동 48)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강릉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강릉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강릉지부로 개칭

원주지부

원주시 단계동 862

역대지부장

윤 극 로	1986. 6. 2 ~ 1986. 6.30
김 경 린	1986. 7. 1 ~ 1991. 6.30
이 용 호	1991. 7. 1 ~ 1991.12.31
이 기 민	1992. 1. 1 ~ 1994. 2.28
김 주 영	1994. 3. 1 ~ 현 재

연혁

1965. 7. 8	원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2호)
1965. 8. 1	원주어음교환소 개설(원주시 중앙동 143)
1975. 8.22	원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7. 3. 7	사무실 이전(원주시 일산동 51-17)
1981.10.13	원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원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원주지부로 개편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원주지부로 개칭
1995. 2.17	사무실 이전(원주시 단계동862)

동해지부

동해시 발한동 19-5

역대지부장

김 진 국	1986. 6. 2 ~ 1987. 1.31
김 용 면	1987. 2. 1 ~ 1991. 2.28
이 갑 재	1991. 3. 1 ~ 1993. 3.31
강 창 희	1993. 4. 1 ~ 1994. 8.30
이 의 도	1994. 9. 1 ~ 현 재

연혁

1980. 5.28	동해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17호)
1980. 7. 1	동해어음교환소 개설(묵호읍 발한리 297-16)
1981.10.13	동해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3. 1.21	사무실 이전(동해시 발한동 296)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동해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동해지부로 개칭
1987.11. 9	사무실 이전(동해시 발한동 18-12)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동해지부로 개칭
1993. 7. 3	사무실 이전(동해시 발한동 19-5)

속초지부

속초시 중앙동 478-1

역대지부장			연혁	
이 태 관	1986. 6. 2 ~ 1986. 9.24		1969.12.10	속초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169호)
이 준 회	1986. 9.25 ~ 1986.12.31		1970. 1. 4	속초어음교환소 개설
김 종 철	1987. 1. 1 ~ 1987.12.31		1975. 8.22	속초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김 일 기	1988. 1. 1 ~ 1988.12.31		1981.10.13	속초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이 택 순	1989. 1. 1 ~ 1990. 9.30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속초지소로 개편
한 용 철	1990.10. 1 ~ 1992. 3.31	직무대행	1985. 5.28	사무실 이전(속초시 중앙동 476-24)
김 명 재	1992. 4. 1 ~ 1993. 3.31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속초지부로 개칭
이 창 주	1993. 4. 1 ~ 1995. 2.20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속초지부로 개칭
이 철 호	1995. 2. 21 ~ 현 재		1990. 1.21	사무실 이전(속초시 중앙동 478-1)

태백지부

태백시 황지1동 264-6

역대지부장		연혁	
서 강 윤	1986.10.13 ~ 1987. 1.31	1986. 5. 9	태백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87호)
신 석 환	1987. 2. 1 ~ 1991. 1.31	1986.10.13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태백지부로 신설 (태백시 황지동 253-71)
이 규 태	1991. 2. 1 ~ 1992.10.31		
이 일 신	1992.11. 1 ~ 1996. 2. 6	1987.12.30	사무실 이전(태백시 황지1동 264-6)
한 상 천	1996. 2. 7 ~ 현 재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태백지부로 개칭

청주지부

청주시 북문로 1가 101-1

역대지부장

홍 진 표	1986. 6. 2 ~ 1988. 3.31
천 윤 기	1988. 4. 1 ~ 1991. 3.31
정 진 래	1991. 4. 1 ~ 1993. 3.31
강 성 웅	1993. 4. 1 ~ 현 재

연혁

1951.11. 1	청주수형교환소 지정 및 개설(법무부령 제5호)
1963.12.31	청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75. 8.22	청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청주지부로 신설
1979. 3.15	사무실 이전(청주시 북문로 1가 9-3)
1980. 9.29	사무실 이전(청주시 남문로 1가 210-1)
1981.10.13	청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청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청주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청주지부로 개칭
1993. 2.22	사무실 이전(청주시 북문로 1가 101-1)

충주지부

충주시 성서동 1

역대지부장

백 문 현	1986. 6. 2 ~ 1987. 4.14
강 형 수	1987. 4.15 ~ 1991. 3.31
전 문 화	1991. 4. 1 ~ 1993. 4.30
이 광 수	1993. 5. 1 ~ 1995.11.22
백 정 택	1995.11.23 ~ 현 재

연혁

1964.12. 5	충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1호)
1965. 1. 1	충주어음교환소 개설(충주시 성서동 199-1)
1975. 8.22	충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81.10.13	충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충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충주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충주지부로 개칭
1991. 3.13	사무실 이전(충주시 성서동 205-41)
1996. 4. 3	사무실 이전(충주시 성서동 1)

제천지부

제천시 중앙로 1가 129

역대지부장

유 태 선	1986. 6. 2 ~ 1987.11.30
정 진 래	1987.12. 1 ~ 1991. 3.31
김 주 영	1991. 4. 1 ~ 1994. 2.28
김 옥 배	1994. 3. 1 ~ 1995. 8.16
최 종 원	1995. 8.17 ~ 현 재

연혁

1981.10.13	제천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2. 1. 4	제천어음교환소 개설(제천시 중앙로1가 129)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천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제천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제천지부로 개칭

천안지부

천안시 영성동 102-1

역대지부장

장 순 모	1986. 6. 2 ~ 1987. 3.10
신 동 필	1987. 3.11 ~ 1991. 2.28
차 홍 업	1991. 3. 1 ~ 1993. 3.31
조 성 인	1993. 4. 1 ~ 1996. 2. 6
이 강 익	1996. 2. 7 ~ 현 재

연혁

1965. 7. 8	천안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2호)
1965. 8. 1	천안어음교환소 개설(천안시 대흥동 80)
1975. 8.22	천안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천안지부로 개편
1980. 2. 1	사무실 이전(천안시 오룡동 190)
1981.10.13	천안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천안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천안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천안지부로 개칭
1990. 5.21	사무실 이전(천안시 영성동 102-1)

공주지부

공주시 중동 73-4

역대지부장

최 성 락	1987.12. 1 ~ 1991. 6.30	
민 병 철	1991. 7. 1 ~ 1994. 8.25	직무대행
박 상 진	1994. 8.26 ~ 1996. 2. 6	직무대행
유 주 현	1996. 2. 7 ~ 현 재	

연혁

1987. 2. 5	공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94호)
1987.12. 1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공주지부로 신설 (공주시 중동 73-4)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공주지부로 개칭

논산지부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70-4

역대지부장

이 기 원	1987.12. 1 ~ 1992. 3.31	
한 용 철	1992. 4. 1 ~ 현 재	직무대행

연혁

1987. 6.16	논산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300호)
1987.12. 1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논산지부로 신설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161-3)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논산지부로 개칭
1990. 8. 1	사무실 이전(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70-4)

홍성지부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1-1

역대지부장

강 영 식	1987. 8.17 ~ 1991. 1.21
이 광 현	1991. 1.22 ~ 1992. 7.31
박 성 희	1992. 8. 1 ~ 1993. 8. 8
오 병 환	1993. 8. 9 ~ 1996. 2. 6
이 일 신	1996. 2. 7 ~ 현 재

연혁

1987. 6.16	홍성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300호)
1987. 8.17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홍성지부로 신설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6)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홍성지부로 개칭
1992. 6.25	사무실 이전(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1-1)

서산지부

서산시 동문동 985-1

역대지부장

이 기 춘	1995.12.18 ~ 현 재

연혁

1995.11.16	서산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416호)
1995.12.18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서산지부로 신설 (서산시 동문동 985-1)

전주지부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50-5

역대지부장

김 종 철	1986. 6. 2 ~ 1986. 6.11
정 지 연	1986. 6.12 ~ 1988.11.30
최 창 희	1988.12. 1 ~ 1991. 3.30
오 병 환	1991. 4. 1 ~ 1993. 8. 8
김 종 철	1993. 8. 9 ~ 현 재

연혁

1949. 8.20	전주수형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호)
1949. 8.21	전주수형교환소 개설
1963.12.31	전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9.10. 1	사단법인 전주은행집회소로 신설
1974. 5. 1	사무실 이전(전주시 고사동 1가 417-1)
1975. 8.22	전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전주지부로 개편
1976. 6. 5	사무실 이전(전주시 경원동 3가 41-1)
1981.10.13	전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3.10. 1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 전주분소를 지부내 설치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전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전주지부로 개칭 (전주시 경원동1가 128-21)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전주지부로 개칭
1993. 3.13	사무실 이전(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50-5)

군산지부

군산시 중앙로 2가 89-1

역대지부장

성 재 용	1986. 6. 2 ~ 1986. 7.31
채 규 정	1986. 8. 1 ~ 1991. 8.31
김 종 철	1991. 9. 1 ~ 1993. 8. 8
노 충 호	1993. 8. 9 ~ 1995. 2.20
이 영 진	1995. 2.21 ~ 현 재

연혁

1924. 2. 1	군산수형교환소 지정 및 개설
1933.12.29	군산수형교환소 신지정(조선총독부령 제148호)
1963.12.31	군산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75.11. 1	군산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80. 3. 1	사무실 이전(군산시 중앙로 2가 89-1)
1981.10.13	군산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군산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군산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군산지부로 개칭

익산지부

익산시 창인동 1가 156

역대지부장

유 재 완	1986. 6. 2 ~ 1987. 7.31	
백 경 순	1987. 8. 1 ~ 1991. 4.30	
전 평 수	1991. 5. 1 ~ 1993. 3.31	
차 홍 업	1993. 4. 1 ~ 1994. 2.28	
정 해 성	1994. 3. 1 ~ 현 재	

연 혁

1964.12. 5	이리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1호)
1965. 1. 1	이리어음교환소 개설
1975. 8.22	이리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81. 8.17	사무실 이전(이리시 창인동 1가 145)
1981.10.13	이리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2. 4.26	사무실 이전(이리시 창인동 1가 156-1)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이리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이리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이리지부로 개칭
1995. 5.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익산지부로 개칭

정읍지부

정읍시 수성동 547-3

역대지부장

이 장 의	1986. 6. 2 ~ 1986.12.31	
신 석 천	1987. 1. 1 ~ 1988. 1. 3	
조 수 영	1988. 1. 4 ~ 1993. 3.31	
황 학 성	1993. 4. 1 ~ 1995. 2.14	직무대행
	1995. 2.15 ~ 1996. 2. 6	
서 석 주	1996. 2. 7 ~ 현 재	

연 혁

1981.10.13	정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2. 4. 1	정주어음교환소 개설(정주시 연지동 49-5)
1984. 1. 1	사무실 이전(정주시 연지동 49-51)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정주지소로 개편
1985. 5.30	사무실 이전(정주시 수성동 547-3)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정주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정주지부로 개칭
1995. 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정읍지부로 개칭

남원지부

남원시 금동 280-24

역대지부장

최 복 용	1986. 6. 2 ~ 1987. 1.12	
윤 석 준	1987. 1.13 ~ 1987. 7.31	
김 현 식	1987. 8. 1 ~ 1988. 3.31	
박 문 기	1988. 4. 1 ~ 1988.12.31	
김 옥 용	1989. 1. 1 ~ 1989.12.31	
김 동 철	1990. 1. 1 ~ 1990. 2.27	
문 원 태	1990. 2.28 ~ 1990.12.31	
박 우 식	1991. 1. 1 ~ 1991. 1.23	
정 준 성	1991. 1.24 ~ 1991.12.31	
최 순 우	1992. 1. 1 ~ 1992.12.31	
김 순 호	1993. 1. 1 ~ 1993. 1.26	
고 광 삼	1993. 1.27 ~ 1993. 3.31	
차 두 승	1993. 4. 1 ~ 1995. 2.20	직무대행
이 봉 호	1995. 2.21 ~ 현 재	직무대행

연혁

1985. 3.15	남원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71호)
1985. 5. 6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남원지소로 신설 (남원시 하정동 103-3)
1985. 5.28	사무실 이전(정주시 수성동 547-3)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남원지부로 개칭
1986. 7.19	사무실 이전(농협 남원군지부)
1987. 7.13	사무실 이전(남원시 하정동 107-2)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남원지부로 개칭
1993.10. 8	사무실 이전(남원시 금동 280-24)

목포지부

목포시 호남동 10-50

역대지부장

윤 홍 식	1986. 6. 2 ~ 1993.11.30
조 성 동	1993.12. 1 ~ 1995. 2.20
박 안 수	1995. 2.21 ~ 현 재

연혁

1923.12. 1	목포수형교환소 개설(한국은행 목포지점에서 업무 대행)
1931. 1.	목포수형교환소 지정
1933.12.29	목포수형교환소 신지정(조선총독부령 제148호)
1963.12.31	목포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75. 8.22	목포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0.11	사무실 이전(목포시 수강동1가 2)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목포지부로 개편
1981.10.13	목포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목포지소로 개편
1986. 1.25	사무실 이전(목포시 명륜동 1)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목포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목포지부로 개칭
1990. 4.29	사무실 이전(목포시 호남동 10-50)

여수지부

여수시 오림동 398-11

역대지부장

이 수 헌	1986. 6. 2 ~ 1987.12.31
조 이 태	1988. 1. 1 ~ 1989. 3.31
박 안 수	1989. 4. 1 ~ 1995. 2.20
장 두 현	1995. 2.21 ~ 현 재

연혁

1949.11. 1	여수수형교환소 개설
1949.11. 5	여수수형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3호)
1963.12.31	여수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71. 1. 1	사무실 이전(여수시 중앙동 468)
1975. 1.15	사무실 이전(여수시 교동 360-1)
1975. 8.22	여수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81.10.13	여수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여수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여수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여수지부로 개칭
1990. 4.24	사무실 이전(여수시 오림동 398-11)

순천지부

순천시 행동 79-2

역대지부장

문 원 태	1986. 6. 2 ~ 1986. 9. 1
이 일 남	1986. 9. 2 ~ 1987. 2. 2
정 진 웅	1987. 2. 3 ~ 1987. 4.14
최 창 희	1987. 4.15 ~ 1988.11.30
김 종 철	1988.12. 1 ~ 1990. 8.31
이 강 익	1990. 9. 1 ~ 1992. 7.31
전 봉 균	1992. 8. 1 ~ 현 재

연혁

1979. 2.14	순천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09호)
1979. 3. 9	순천어음교환소 설립인가(금정 1221-278호)
1979. 4. 2	순천어음교환소 개설(순천시 중앙동 86)
1981.10.13	순천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순천지소로 신설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순천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순천지부로 개칭
1990.11. 1	사무실 이전(순천시 행동 79-2)

해남지부

해남군 해남읍 해리 600-5

역대지부장

전 봉 균　1991. 4.19 ~ 1992. 7.31
이 영 진　1992. 8. 1 ~ 1995. 2.20
최 태 연　1995. 2.21 ~ 현 재

연혁

1991. 1.15　해남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347호)
1991. 4.19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해남지부로 신설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3-9)
1991. 6.24　사무실 이전(해남군 해남읍 해리 600-5)

포항지부

포항시 죽도2동 642-4

역대지부장

최 락 구　1986. 6. 2 ~ 1986. 8.31
황 금 일　1986. 9. 1 ~ 1992. 3.31
김 창 수　1992. 4. 1 ~ 1995. 2.20
조 성 동　1995. 2.21 ~ 현 재

연혁

1964.12. 5　포항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1호)
1965. 1. 1　포항어음교환소 개설(포항시 여천동 252-4)
1966. 8.31　사무실 이전(포항시 여천동 252-6)
1970.12.19　사무실 이전(포항시 중앙동 68)
1972. 9.30　사무실 이전(포항시 상원동 462-8)
1974. 8.24　사무실 이전(포항시 남빈동 470-21)
1975. 8.22　포항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6. 4.23　사무실 이전(포항시 죽도동 41-7)
1979. 1.16　사무실 이전(포항시 남빈동 415-15)
1981.10.13　포항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포항지소로 개편
1986. 5.26　사무실 이전(포항시 죽도동 96-70)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포항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포항지부로 개칭
1993. 5.28　사무실 이전(포항시 죽도2동 642-4)

경주지부

경주시 동부동 9-5

역대지부장

박 동 명	1986. 6. 2 ~ 1988. 5.31
오 병 환	1988. 6. 1 ~ 1991. 3.31
이 광 수	1991. 4. 1 ~ 1993. 3.31
김 명 재	1993. 4. 1 ~ 1995. 8.16
김 옥 배	1995. 8.17 ~ 현 재

연혁

1973. 7.26	경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185호) 및 개설 (경주시 노동동 172-9)
1975. 8.22	경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8.10.11	사무실 이전(경주시 동부동 9-5)
1981.10.13	경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경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경주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경주지부로 개칭

안동지부

안동시 남문동 145-3

역대지부장

박 경 서	1986. 6. 2 ~ 1989. 3.31
변 대 석	1989. 4. 1 ~ 1991. 9.30
신 순 헌	1991.10. 1 ~ 1993. 3.31
차 재 기	1993. 4. 1 ~ 1996. 2. 6
황 학 성	1996. 2. 7 ~ 현 재

연혁

1975. 8.22	안동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0. 1	안동어음교환소 개설(안동시 삼산동 114)
1975.11.26	사무실 이전(안동시 남문동 149-20)
1977.11.16	사무실 이전(안동시 서부동 81-10)
1981.10.13	안동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안동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안동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안동지부로 개칭
1991. 7. 1	사무실 이전(안동시 남문동 145-3)

구미지부

구미시 송정동 52

역대지부장

김 재 득	1986. 6. 2 ~ 1986. 8.31
최 락 구	1986. 9. 1 ~ 1990. 9.14
홍 한 식	1990. 9.15 ~ 1992. 7.31
최 락 구	1992. 8. 1 ~ 1996. 2. 6
변 대 석	1996. 2. 7 ~ 현 재

연혁

1979. 2.14	구미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09호)
1979. 4. 2	구미어음교환소 개설(구미시 공단동 199)
1981.10. 5	사무실 이전(구미시 공단동 204)
1981.10.13	구미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구미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구미지부로 개칭
1987. 8.12	사무실 이전(구미시 공단동 206-1)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구미지부로 개칭
1992. 4.24	사무실 이전(구미시 송정동 52)

김천지부

김천시 평화동 245-153

역대지부장

곽 기 순	1986. 6. 2 ~ 1986. 9. 2
한 규 열	1986. 9. 3 ~ 1987. 4.14
천 윤 기	1987. 4.15 ~ 1988. 3.31
김 인 규	1988. 4. 1 ~ 1992. 5.31
김 정 덕	1992. 6. 1 ~ 1993. 8. 8
조 화 제	1993. 8. 9 ~ 현 재

연혁

1981.10.13	김천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2. 2. 1	김천어음교환소 개설(김천시 평화동 279-4)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김천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김천지부로 개칭
1989. 7. 1	사무실 이전(김천시 평화동 245-7)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김천지부로 개칭
1995. 6.30	사무실 이전(김천시 평화동 245-153)

영주지부

영주시 하망3동 548-16

역대지부장

이 용 섭	1986. 6. 2 ~ 1986. 6.30
정 헌 철	1986. 7. 1 ~ 1986.12.31
조 문 용	1987. 1. 1 ~ 1987. 6.30
한 상 록	1987. 7. 1 ~ 1987.12.31
이 용 섭	1988. 1. 1 ~ 1988. 6.30
장 지 홉	1988. 7. 1 ~ 1988.12.31
박 노 성	1989. 1. 1 ~ 1989. 6.30
최 희 룡	1989. 7. 1 ~ 1989.12.31
이 재 효	1990. 1. 1 ~ 1990. 3.31
도 기 호	1990. 4. 1 ~ 1992. 7.31
조 동 묵	1992. 8. 1 ~ 1995. 2.20
조 성 범	1995. 2.21 ~ 현 재

연혁

1981.10.13	영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2. 2. 5	영주어음교환소 개설(영주시 하망3동 343-16)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영주지소로 개편
1985.11.27	사무실 이전(영주시 하망동 344-41)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영주지부로 개칭
1987. 8.12	사무실 이전(영주시 하망2동 344-41)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영주지부로 개칭
1989 12.15	사무실 이전(영주시 하망3동 548-16)

창원지부

창원시 중앙동 101-5

역대지부장

심 중 식	1986. 6. 2 ~ 1986.10.31
김 만 원	1986.11. 1 ~ 1988. 5.31
이 수 헌	1988. 6. 1 ~ 1990. 9.14
최 락 구	1990. 9.15 ~ 1991.12.16
최 동 식	1991.12.17 ~ 1995. 2.20
김 창 수	1995. 2.21 ~ 현 재

연혁

1956.11. 1	마산수형교환소 개설
1956.11.15	마산수형교환소 지정
1963.12.31	마산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6. 3.	사무실 이전(마산시 남성동 142-61)
1969.11.10	사무실 이전(마산시 창동 139)
1972. 1.18	사무실 이전(마산시 오동동 159-23)
1975. 8.22	마산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마산지부로 개편
1977. 7. 1	내국신용장 교환실 설치
1981.10.13	마산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3.10. 1	은행지로관리소 마산분소를 지부내 설치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마산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마산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마산지부로 개칭
1991.10.19	사무실 이전(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62-2)
1994. 6. 2	창원어음교환소로 개칭(법무부령 제384호)
1994. 6.1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창원지부로 개칭
1994. 6.13	사무실 이전(창원시 중앙동 101-5)

통영지부

통영시 북산동 1-2

역대지부장		연혁	
이 정 호	1986. 6. 2 ~ 1987.10.31	1969.12.10	충무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169호)
박 안 수	1987.11. 1 ~ 1989. 3.31	1970. 1. 4	충무어음교환소 개설(충무시 중앙동 91)
조 이 태	1989. 4. 1 ~ 1991. 8.31	1975. 8.22	충무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강 대 기	1991.10. 1 ~ 1992. 7.31	1981.10.13	충무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남 용 우	1992. 8. 1 ~ 1996. 2. 6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충무지소로 개편
김 형 환	1996. 2. 7 ~ 현 재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충무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충무지부로 개칭
		1990. 4.28	사무실 이전(충무시 북신동 1-2)
		1995. 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통영지부로 개칭

울산지부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49-7

역대지부장		연혁	
성 광 운	1986. 6. 2 ~ 1986. 7.31	1969.12.10	울산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169호)
이 중 배	1986. 8. 1 ~ 1991. 9.30	1970. 4. 1	울산어음교환소 개설(울산시 성남동 62-3)
허 정 종	1991.10. 1 ~ 1993.12. 7	1975. 8.22	울산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이 봉 호	1993.12. 8 ~ 1994. 2.28 직무대행	1976. 1.24	사무실 이전(울산상공회의소)
차 홍 업	1994. 3. 1 ~ 현 재	1981.10.13	울산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1.11.16	사무실 이전(주택은행 울산지점)
		1983.10. 1	사단법인 은행지로관리소 울산분소를 지부내 설치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울산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울산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울산지부로 개칭
		1993. 9.27	사무실 이전(울산시 남구 신정동 649-7)

진주지부

진주시 장대동 129-1

역대지부장

성 복 경	1986. 6. 2 ~ 1987.12.31
이 수 헌	1988. 1. 1 ~ 1988. 5.31
허 정 종	1988. 6. 1 ~ 1991. 9.30
변 대 석	1991.10. 1 ~ 1995. 2.20
강 영 남	1995. 2.21 ~ 현 재

연혁

1965.10.28	진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85호)
1965.12. 1	진주어음교환소 개설(진주시 동성동 10)
1975. 8.22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진주어음교환소 재지정 (법무부령 제193호)
1981.10.13	진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진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진주지부로 개칭
1987. 8.12	사무실 이전(진주시 장대동 129-1)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진주지부로 개칭

김해지부

김해시 부원동 606-9

역대지부장

권 용 기	1994. 7.11 ~ 1995. 8.16 직무대행
김 명 재	1995. 8.17 ~ 현 재

연혁

1994. 6. 2	김해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384호)
1994. 7.1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김해지부로 신설 (김해시 부원동 606-9)

양산지부

양산시 북부동 148-27

역대지부장

홍 한 식 1995.12.18 ~ 현 재

연혁

1995.11.16 양산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416호)

1995.12.18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양산지부로 신설
(양산시 북부동 148-27)

제주지부

제주시 일도1동 1476-11

역대지부장

이 원 철 1986. 6. 2 ~ 1988. 6. 9

박 태 영 1988. 6.10 ~ 1990. 8.31

이 광 현 1990. 9. 1 ~ 1991. 1.14

유 상 근 1991. 1.15 ~ 1995. 2.20

변 대 석 1995. 2.21 ~ 1996. 2. 6

유 상 근 1996. 2. 7 ~ 현 재

연혁

1963. 1. 1 제주어음교환소 개설

1963.12.31 제주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75호)

1964. 6.15 사무실 개소(제주시 삼도리 20-1)

1975. 8.22 제주어음교환소 재지정(법무부령 제193호)

1975.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제주지부로 개편
(제주시 이도리 1176-54)

1981. 3.30 사무실 이전(제주시 일도1동 1476-2)

1981.10.13 제주어음교환소 신지정(법무부령 제229호)

1983.10.17 사무실 이전(제주시 일도1동 1476-11)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주지소로 개편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제주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제주지부로 개칭

폐지지부

진해지부

역대지부장		연혁	
권 광 원	1986. 6. 2 ~ 1990.10.31	1981.10.13	진해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29호)
이 길 훈	1990.11. 1 ~ 1992. 7.31	1982. 2.18	진해어음교환소 개설(진해시 충무동 22-4)
홍 한 식	1992. 8. 1 ~ 1995.11.24	1984.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진해지소로 개편
		1986. 4.14	사무실 이전(진해시 충무로 6가 27-15)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진해지부로 개칭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진해지부로 개칭
		1995.11.1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진해지부 폐쇄(법무부령 제416호)

사천지부

역대지부장		연혁	
차 기 영	1986. 6. 2 ~ 1986 6.30	1984. 6. 7	삼천포어음교환소 지정(법무부령 제263호)
제 해 세	1986. 7. 1 ~ 1986. 8.26	1984. 8. 1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삼천포지소로 신설 (삼천포시 동동 156-7)
이 진 호	1986. 8.27 ~ 1988. 1.29		
곽 대 문	1988. 1.30 ~ 1988. 6.30	1986.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삼천포지부로 개칭
허 명 수	1988. 7. 1 ~ 1989. 7. 4	1989.11.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삼천포지부로 개칭
김 기 정	1989. 7. 5 ~ 1990. 4. 5	1995. 5.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사천지부로 개칭
진 준 근	1990. 4. 6 ~ 1995.11.24 직무대행	1995.11.1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사천지부 폐쇄(법무부령 제416호)

당원 발족이전의 역대 지부장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부산지부장	박원표	1945.12. 1 ~ 1970. 2.23	사무국장
	하광수	1970. 3. 9 ~ 1978. 6.30	〃
	김여택	1978. 7. 1 ~ 1980. 2.27	〃
	김동출	1980. 3.15 ~ 1980. 9.22	〃
	최현용	1980.10. 6 ~ 1984. 8.31	〃
	김영화	1984. 9. 1 ~ 1986. 6. 1	〃
대구지부장	손홍록	1953. 3.14 ~ 1956.12. 6	서기장
	방의환	1956.12. 7 ~ 1968. 3.22	〃
	홍상순	1968. 3.26 ~ 1973. 4.30	〃
	김용각	1973. 5. 1 ~ 1978. 3.31	사무국장
	심기용	1978. 4. 1 ~ 1980. 1.13	〃
	이욱영	1980. 1.14 ~ 1981. 8.31	〃
	신경술	1981. 9. 1 ~ 1986. 6. 1	〃
인천지부장	윤용식	1970. 8. 1 ~ 1975. 7.30	서기장
	구본겸	1975. 8. 1 ~ 1981. 8.31	사무국장
	오광수	1981. 9. 1 ~ 1985. 8.31	〃
	정구한	1985. 9. 1 ~ 1986. 6. 1	〃
광주지부장	박경주	1957. 4. 1 ~ 1960.12.31	서기장
	신현엽	1961. 1. 1 ~ 1962. 1.	〃
	박규철	1962. 1. ~ 1963. 5.	〃
	박종언	1963. 5. ~ 1971. 7.	〃
	고정수	1971. 9. 3 ~ 1977. 8.31	사무국장
	이용운	1977. 9. 1 ~ 1980.12.31	〃
	이용배	1981. 1. 1 ~ 1984. 4.30	〃
	김태환	1984. 5. 1 ~ 1986. 6. 1	〃
대전지부장	임동훈	1966.11.13 ~ 1970. 1.31	서기장
	이병준	1970. 2. 1 ~ 1977.11.30	사무국장
	홍순득	1978. 2. 1 ~ 1981. 6.30	〃
	이현배	1981. 7. 1 ~ 1984. 6.30	〃
	한규훈	1984. 7. 1 ~ 1986. 6. 1	〃
수원지부장	최동석	1972. 2.14 ~ 1977. 2.28	사무국장
	김옥평	1977. 3. 1 ~ 1977.10.31	〃
	원덕범	1977.11. 1 ~ 1982. 3.31	〃
	제병규	1982. 4. 1 ~ 1985. 7.31	〃
	김두추	1985. 8. 1 ~ 1986. 6. 1	〃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성남지부장	독고 란	1985. 6. 1 ~ 1986. 6. 1	사무국장
안양지부장	이갑순	1981. 1. 5 ~ 1985. 1.31	사무국장
	서병국	1985. 2. 1 ~ 1986. 6. 1	〃
의정부지부장	김희택	1982. 1. 1 ~ 1984. 5.31	사무국장
	하일태	1984. 6. 1 ~ 1986. 6. 1	〃
부천지부장	김영진	1982. 1. 4 ~ 1985. 9.30	사무국장
	김덕호	1985.10. 1 ~ 1986. 6. 1	〃
춘천지부장	이수영	1975.11. 1 ~ 1978. 5.31	사무국장
	윤팔중	1978. 6. 1 ~ 1981.12.31	〃
	박경달	1982. 1. 1 ~ 1984.10.31	〃
	이성헌	1984.11. 1 ~ 1986. 6. 1	〃
강릉지부장	함양륭	1975. 9.10 ~ 1978. 8.31	사무국장
	박정호	1978. 9. 1 ~ 1982.12.31	〃
	손명훈	1983. 1. 1 ~ 1986. 6. 1	〃
원주지부장	박인식	1977. 3. 7 ~ 1980. 7.28	비 상 임
	한승일	1980. 8.18 ~ 1981. 4.15	〃
		1981. 4.16 ~ 1982.10.31	사무국장
	윤극로	1982.11. 1 ~ 1986. 6. 1	〃
동해지부장	윤정수	1980. 7. 1 ~ 1981. 7.30	사무국장
	김세영	1981. 7.31 ~ 1983. 1.21	〃
	이용선	1983. 1.22 ~ 1984.10.18	〃
	홍 진	1984.10.19 ~ 1985. 7.22	〃
	정규인	1985. 7.23 ~ 1986. 5.16	〃
	김진국	1986. 5.17 ~ 1986. 6. 1	〃
속초지부장	류규선	~ 1984.12.31	사무국장
	박청환	1985. 1. 1 ~ 1985.12.31	〃
	이창록	1986. 1. 1 ~ 1986. 1.19	〃
	이태관	1986. 1.20 ~ 1986. 6. 1	〃
청주지부장	김정신	1973.10. 1 ~ 1975.10.31	비 상 임
		1975.11. 1 ~ 1977. 7.31	사무국장
	오윤옥	1977. 8. 1 ~ 1981. 5.31	〃
	이영근	1981. 6. 1 ~ 1985. 2.28	〃
	홍진표	1985. 3. 1 ~ 1986. 6. 1	〃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충주지부장	송세영	1977. 3. 7 ~ 1980. 4.30	비 상 임
	이명창	1980. 5. 1 ~ 1984. 4.30	사무국장
	백문현	1984. 5. 1 ~ 1986. 6. 1	〃
제천지부장	유태선	1984. 5. 1 ~ 1986. 6. 1	사무국장
천안지부장	지운용	1980. 2. 1 ~ 1981. 1. 9	비 상 임
	장순모	1981. 1.10 ~ 1986. 6. 1	사무국장
전주지부장	은순석	1969.10. 1 ~ 1975.10.31	서 기 장
	서승갑	1975.12.15 ~ 1979. 4.30	사무국장
	이종경	1979. 5. 1 ~ 1982. 3.31	〃
	정원국	1982. 4. 1 ~ 1986. 6. 1	〃
군산지부장	송태규	1971. 5. 1 ~ 1976. 4.30	비 상 임
	김정준	1976. 5. 1 ~ 1979. 8.31	〃
	강대석	1979. 9. 1 ~ 1981. 4.15	〃
		1981. 4.16 ~ 1982. 5.31	사무국장
	성재용	1982. 6. 1 ~ 1986. 6. 1	〃
이리지부장	안병열	1977. 3. 1 ~ 1980. 2.29	비 상 임
	김태진	1980. 3. 1 ~ 1984. 4.30	사무국장
	유재완	1984. 5. 1 ~ 1986. 6. 1	〃
정주지부장	이보기	~ 1984.12.31	사무국장
	노원삼	1985. 1. 1 ~ 1985.12.31	〃
	이장의	1986. 1. 1 ~ 1986. 6. 1	〃
남원지부장	김종수	1985. 5. 6 ~ 1985. 8.31	사무국장
	안병남	1985. 9. 2 ~ 1986. 4. 7	〃
	최복용	1986. 4. 8 ~ 1986. 6. 1	〃
목포지부장	조동권	1975. 4. 1 ~ 1978. 4.30	사무국장
	김우경	1978. 5. 1 ~ 1982. 3.31	〃
	이제호	1982. 4. 1 ~ 1982. 4.18	직무대행
	송길윤	1982. 4.19 ~ 1985. 5.31	사무국장
	윤홍식	1985. 6. 1 ~ 1986. 6. 1	〃
여수지부장	김명수	1963.12.31 ~ 1975. 1.31	비 상 임
	박경래	1975. 2. 1 ~ 1978. 1.31	〃
	김계환	1978. 2. 1 ~ 1981. 6.30	〃
	백운붕	1981. 7. 1 ~ 1984. 9.30	사무국장
	이수헌	1984.10. 1 ~ 1986. 6. 1	〃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김민현	1979. 4. 1 ~ 1980. 1.13	비 상 임
	김용보	1980. 1.14 ~ 1981. 2.21	사무국장
	김희상	1981. 2.28 ~ 1981.11. 9	
순천지부장	박동호	1981.11.10 ~ 1982. 6.18	〃
	임현섭	1982. 6.19 ~ 1983.11.11	〃
	채종배	1983.11.12 ~ 1985. 8.30	〃
	문원태	1985. 9. 1 ~ 1986. 6. 1	〃
	조석규	1966. 9. 1 ~ 1972. 7.30	비 상 임
	김정하	1972. 8. 1 ~ 1975. 3.31	〃
	최용걸	1975. 4. 1 ~ 1978. 2.28	〃
포항지부장	황승기	1978. 3. 1 ~ 1979. 7.22	〃
	이원철	1979. 7.23 ~ 1986. 4.30	사무국장
	최락구	1986. 5. 1 ~ 1986. 6. 1	〃
	김준영	1975. 1. 4 ~ 1978. 6.30	비 상 임
	예수해	1978. 7. 1 ~ 1982. 1.31	〃
경주지부장	박윤범	1982. 2.15 ~ 1985. 5.31	사무국장
	박동명	1985. 6. 1 ~ 1986. 6. 1	〃
	임규환	1975.10. 1 ~ 1979. 1.31	비 상 임
	박병원	1979. 2. 1 ~ 1982. 2.28	사무국장
안동지부장	임희준	1982. 3. 1 ~ 1985. 8.31	〃
	박경서	1985. 9. 1 ~ 1986. 6. 1	직무대행
	신세문	1979. 4. 2 ~ 1979. 4.30	사무국장
	원의종	1979. 5. 1 ~ 1980. 9.15	〃
	노재학	1980. 9.16 ~ 1982. 1. 7	〃
구미지부장	김진희	1982. 1. 8 ~ 1983. 2. 3	〃
	권영한	1983. 2. 4 ~ 1984. 7. 9	〃
	전병학	1984. 7.10 ~ 1986. 2.28	〃
	김재득	1986. 3. 2 ~ 1986. 6. 1	〃
	박화정	1982. 2. 1 ~ 1982. 3. 1	사무국장
	박진용	1982. 3. 2 ~ 1983. 3.31	〃
	박희석	1983. 4. 1 ~ 1983. 6.30	〃
김천지부장	김창환	1983. 7. 1 ~ 1983. 9.30	〃
	조종래	1983.10 .1 ~ 1983.12.31	〃
	김황식	1984. 1. 1 ~ 1985. 2.21	〃
	곽기순	1985. 2.22 ~ 1986. 6. 1	〃

직 명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영 주 지 부 장	권 태 일	~ 1982. 6.30	사 무 국 장
	성 기 목	1982. 7. 1 ~ 1982.12.31	〃
	김 훈	1983. 1. 1 ~ 1983. 6.30	〃
	구 자 옥	1983. 7. 1 ~ 1983.12.31	〃
	이 종 찬	1984. 1. 1 ~ 1984. 6.30	〃
	이 동 명	1984. 7. 1 ~ 1984.12.31	〃
	배 순 직	1985. 1. 1 ~ 1985. 6.30	〃
	김 성 환	1985. 7. 1 ~ 1985.12.30	〃
	이 용 섭	1986. 1. 1 ~ 1986. 6. 1	〃
마 산 지 부 장	유 재 칠	1953.11. 1 ~ 1955. 2.28	비 상 임
	배 금 식	1955. 3. 1 ~ 1966. 3.31	〃
	홍 순 균	1966. 4. 6 ~ 1975.10.31	
	안 교 승	1975.11. 1 ~ 1978. 5.31	사 무 국 장
	이 욱 영	1978. 6. 1 ~ 1980. 1.13	〃
	심 기 룡	1980. 1.14 ~ 1980. 7.27	〃
	최 락 구	1980. 7.28 ~ 1980. 9.17	직 무 대 행
	방 해 용	1980. 9.18 ~ 1983.11.30	사 무 국 장
	심 중 식	1983.12. 1 ~ 1986. 6. 1	〃
충 무 지 부 장	윤 상 열	~ 1978. 3.31	사 무 국 장
	방 희 구	1978. 4. 1 ~ 1982. 8.31	〃
	이 정 호	1982. 9. 1 ~ 1986. 6. 1	〃
울 산 지 부 장	정 동 우	1970. 4. 1 ~ 1979.11.30	비 상 임
	오 헌 기	1979.12. 1 ~ 1983. 3.31	사 무 국 장
	성 광 운	1983. 4. 1 ~ 1986. 6. 1	〃
진 주 지 부 장	변 재 욱	1970.10. 1 ~ 1975.10.31	비 상 임
	김 성 훈	1975.11. 1 ~ 1979. 9.30	〃
	강 한 원	1979.10. 1 ~ 1982.12.31	사 무 국 장
	성 복 경	1983. 1. 1 ~ 1986. 6. 1	〃
제 주 지 부 장	유 영 일	1975.11. 1 ~ 1978.11.30	사 무 국 장
	김 응 량	1978.12. 1 ~ 1983. 1.31	〃
	이 상 수	1983. 2. 1 ~ 1986. 4.30	〃
	이 원 철	1986. 5. 1 ~ 1986. 6. 1	〃

직 명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진해지부장	서영호	1982. 2.18 ~ 1982. 6.30	사무국장
	김영태	1982. 7. 1 ~ 1983. 6.30	〃
	김경진	1983. 7. 1 ~ 1983.12.31	〃
	이규형	1984. 1. 1 ~ 1984. 6.30	〃
	김중림	1984. 7. 1 ~ 1984.12.31	〃
	이규재	1985. 1. 1 ~ 1985. 6.30	〃
	권광원	1985. 7. 1 ~ 1986. 6. 1	〃
삼천포지부장	이훈중	1984. 8. 1 ~ 1985. 7.30	사무국장
	차기영	1985. 7.31 ~ 1986. 6. 1	〃

직원명단

(1996년 2월말 현재)

성 명	직 위	입사일
기 획 부		
이 한 형	부 장	80.10.15
신 재 호	차 장	83. 2. 3
【종합기획과】		
강 대 기	과 장	81. 7.27
최 영	대 리	84. 9.12
정 주 봉	대 리	89. 4. 1
배 일 환	대 리	89. 4. 1
배 경 숙	계 장	82.12.15
문 관 섭	계 장	91. 3. 5
고 해 록	사 원	93. 3. 8
홍 명 옥	사 원	85. 7.15
윤 형 식	사 원	95. 2.27
노 희 섭	사 원	94. 2.14
유 영 구	사 원	95.12. 2
【경영관리과】		
조 동 묵	과 장	79. 9. 1
정 도 일	대 리	83. 3.21
김 동 수	대 리	83. 9. 5
이 규 현	계 장	90. 4. 1
최 재 성	계 장	91. 3. 5
윤 호 열	계 장	86.12.22
조 병 대	사 원	94. 2.14
이 은 희	사 원	90.10.22
김 지 은	사 원	90.10.22
【경영전략팀】		
김 상 래	팀 장	83. 2. 3
배 정 현	과 장	82. 6.21
전 융	대 리	87.11. 1
박 연 상	대 리	86.12.22
노 반 석	대 리	90. 4. 1
최 규 선	사 원	93. 3. 8
서 은 정	사 원	92. 3.30
총 무 부		
이 창 신	부 장	69. 7.10
김 원 기	차 장	82. 6.21
【서무과】		
이 창 주	과 장	81. 6.10
이 순 용	대 리	81. 6.10
오 대 섭	사 원	90. 4. 1
박 용 미	사 원	84. 7. 9
박 선 영	사 원	92. 3.30
이 상 희	사 원	95.12. 2
현 효 택	별정직원	76. 8. 1
권 태 경	별정직원	69. 7.10
이 수 철	별정직원	80. 5.10
박 만 식	별정직원	77. 6. 9
정 순 진	별정직원	77. 6. 1
우 명 석	별정직원	82. 4. 1
김 기 남	별정직원	83. 1.18
김 종 인	별정직원	83. 9. 5
송 호 은	별정직원	83.11. 1
【관재과】		
최 재 승	과 장	82. 6.21
우 재 진	대 리	82.11. 1
권 용 기	대 리	84. 5. 1
민 장 기	사 원	93. 3. 8
김 시 홍	사 원	93. 8.23
유 한 상	사 원	95.12. 2
황 준 호	사 원	95. 2.27

성 명	직 위	입사일
김 희 중	사 원	95. 2.27
송 희 장	별정직원	71. 4. 1
유 재 각	별정직원	76. 5.17
이 호 복	별정직원	81. 2.16
이 태 열	별정직원	77. 8.20
최 백 용	서무직원	86. 8. 1
이 종 덕	서무직원	93. 3. 8
현 민 하	서무직원	93. 3. 8
【경리과】		
김 진 규	과 장	82. 4. 3
이 희 봉	대 리	84. 9.12
권 오 일	계 장	87.10. 1
박 문 숙	사 원	84. 7. 9
양 청 간	사 원	92. 3.30
문 승 욱	사 원	95. 2.27
방 수 정	사 원	91. 3. 5
유 세 영	사 원	95.12. 2
강 미 영	사 원	92. 3.30
【안전관리실】		
조 성 인	실 장	80. 7.19
김 추 하	조사역	83. 6. 1
김 연 광	대 리	83.10.26
조 광 칠	계 장	93.10. 1
소 광 호	사 원	89. 4. 1
박 정 복	청원경찰	81.11.19
김 해 덕	청원경찰	81.11.19
변 상 철	청원경찰	81.11.19
천 기 병	청원경찰	81.11.19
이 익 수	청원경찰	81.11.19
고 석 태	청원경찰	83. 9.12
이 일 연	청원경찰	83. 9.12
박 부 영	청원경찰	84. 5. 4
안 영 호	청원경찰	84. 5. 4
김 택 우	청원경찰	85. 9. 1
이 종 봉	청원경찰	85.12. 5
이 홍 주	청원경찰	92.10.23
김 기 욱	청원경찰	92.10.23
원 용 덕	청원경찰	86.11. 1
유 상 훈	청원경찰	92.10.23
김 홍 국	청원경찰	89. 1.19
인 사 부		
변 창 안	부 장	81. 4.27
이 종 호	차 장	80. 9. 2
【인사과】		
송 창 수	과 장	84. 9.12
임 재 욱	대 리	89. 4. 1
안 순 용	대 리	90. 4. 1
장 건 홍	계 장	90. 6.20
임 구 락	사 원	93. 3. 8
박 준 열	사 원	93. 3. 8
전 상 출	사 원	93. 8.23
이 미 자	사 원	91. 3. 5
【급여후생과】		
강 창 희	과 장	81. 2. 9
손 희 성	대 리	90. 4. 1
고 원 상	사 원	93. 8.23
윤 용 원	사 원	92. 3.30
김 제 광	사 원	95. 2.27
문 주 영	사 원	90. 3.19

성 명	직 위	입사일
【비서실】		
김 형 석	실 장	82. 1. 1
정 길 용	비 서 역	88. 3.24
민 경 운	사 원	95. 2.27
안 영 미	사 원	95. 2.27
김 란 미	사 원	91. 3. 5
임 기 숙	사 원	91. 3. 5
강 휘 정	사 원	93. 5.24
이 재 영	사 원	95. 5. 2
【인사제도개선팀】		
김 영 준	팀 장	86.12.22
유 경 선	대 리	83. 9. 5
김 하 균	계 장	91. 3. 5
【인사부 소속】		
이 순 우	조 사 역	67. 3. 2
김 영 신	조 사 역	78. 2.28
신 동 원	조 사 역	85. 8. 1
지 호 창	조 사 역	85. 7.15
권 팔 수	조 사 역	83. 9. 5
홍 현 무	조 사 역	83. 3.24
【노동조합】		
김 일 중	위 원 장	82. 6.21
박 만 준	부위원장	84. 5. 1
나 상 은	총무부장	89. 4. 1
유 기 숙	여성부장	83. 9. 5
지 영 미	계 장	82. 1. 1
어 음 교 환 부		
박 국 노	부 장	86. 9. 1
하 용 록	차 장	82. 1. 1

성 명	직 위	입사일
【교환관리과】		
장 우 찬	과 장	85. 7.15
박 종 민	과장대우	81. 4.24
김 은 규	대 리	82.11. 1
이 상 준	사 원	93. 3. 8
양 철 호	사 원	94. 2.14
김 옥 선	사 원	92. 3.30
김 동 건	사 원	94. 8. 8
조 형 섭	사 원	95. 2.27
임 찬 혁	사 원	94. 8. 8
김 대 중	사 원	95.12. 2
【교환처리과】		
이 광 수	과 장	79. 4. 7
민 병 철	대 리	83. 3.21
백 광 현	대 리	83.10.15
맹 복 태	대 리	84. 5. 1
원 영 임	계 장	78.12. 6
이 민 자	계 장	83. 4.14
장 재 영	계 장	88. 3.24
이 시 열	계 장	88. 3.24
최 재 성	계 장	86.12.22
김 현 철	계 장	91. 3. 5
박 노 선	사 원	89. 4. 1
김 종 규	사 원	87.10. 1
박 용 신	사 원	90. 4. 1
이 민 화	사 원	90. 4. 1
임 정 현	사 원	90. 4. 1
조 호 식	사 원	93. 3. 8
정 상 재	사 원	91. 3. 5
하 득 수	사 원	95. 2.27

성 명	직 위	입사일
이 동 욱	사 원	95. 2.27
박 기 홍	사 원	95. 2.27
김 창 호	사 원	90. 4. 1
신 동 희	사 원	92. 3.30
고 평 기	사 원	95. 2.27
박 현 경	사 원	89. 4. 1
문 경 미	사 원	90. 3.19
윤 연 순	사 원	91. 2. 1
【부도관리과】		
이 영 철	과 장	82. 8.16
이 근 황	대 리	88. 3.24
김 인	대 리	90. 4. 1
서 순 덕	계 장	80.12. 2
박 정 묵	계 장	92. 3.30
권 혁 신	사 원	93. 3. 8
이 도 기	사 원	94. 2.14
강 성 욱	사 원	94. 2.14
오 명 석	사 원	94. 8. 8
최 기 룡	사 원	95. 2.27
이 재 란	사 원	95. 2.27
자 금 중 개 실		
배 정 호	실 장	81.12. 3
이 형 원	차 장	80.12. 8
김 향 길	과 장	81. 3. 5
김 용 진	대 리	88. 3.24
정 형 철	대 리	90. 6.20
문 찬 식	대 리	91. 3. 5
엄 기 남	계 장	76. 6.23
최 선 이	계 장	77. 6.20
안 화 자	계 장	81. 7.18

성 명	직 위	입사일
곽 윤 성	계 장	84. 9.12
조 경 예	사 원	84. 7. 9
최 익 선	사 원	93. 3. 8
서 순 선	사 원	85. 9. 5
장 환	사 원	94. 8. 8
조 형 근	사 원	94. 8. 8
임 진 근	사 원	95.12. 2
오 상 승	사 원	95.12. 2
봉 원 란	사 원	89. 4. 1
위 은 선	사 원	89. 4. 1
김 희 선	사 원	89. 4. 1
김 은 희	사 원	89. 4. 1
이 삼 남	사 원	89. 6. 1
최 덕 균	사 원	93. 3. 8
서 원 진	사 원	92. 3.30
지 로 업 무 부		
김 영 택	부 장	81.12. 3
배 상 진	차 장	77. 2.12
【지로추진과】		
박 윤 배	과 장	85. 7.15
이 영 화	대 리	83. 3.21
임 성 재	대 리	84. 5. 1
차 두 승	대 리	82.12. 1
이 현 수	계 장	92. 3.30
유 수 상	계 장	92. 3.30
김 형 민	사 원	93. 3. 8
문 창 열	사 원	93. 3. 8
노 제 원	사 원	93. 3. 8
백 미 연	사 원	91. 3. 5
김 호 철	사 원	94. 8. 8

성 명	직 위	입사일	성 명	직 위	입사일
주 재 현	사 원	94. 8. 8	도 순 복	계 장	83. 9. 5
문 영 석	사 원	94. 2.14	전 미 경	계 장	82.12. 1
이 승 우	사 원	95. 2.27	조 용 익	계 장	90. 4. 1
한 미 행	사 원	89. 4.24	김 영 희	계 장	83. 2.22
백 혜 영	사 원	90. 3.19	배 재 국	계 장	87.10. 1
【지로1과】			송 미 헌	계 장	83. 9. 2
안 용 수	과 장	79. 4. 7	최 윤 옥	계 장	83.10.24
최 문 걸	대 리	84. 5. 1	서 경 숙	계 장	83. 4.20
안 대 성	대 리	82. 6.21	민 인 숙	계 장	83.11. 4
오 정 영	대 리	83. 3.21	이 영 란	계 장	83. 9.16
이 수 숙	대 리	77. 2.12	이 종 인	사 원	84. 7. 9
임 정 임	계 장	76. 6.23	조 경 자	사 원	84. 6.25
이 영 숙	계 장	77. 2. 1	정 미 경	사 원	84. 8. 7
김 영 숙	계 장	77. 2. 1	송 미 숙	사 원	84. 6.25
최 옥 자	계 장	80. 1.28	이 혜 영	사 원	84. 7.29
오 병 창	계 장	84. 9.12	왕 양 한	사 원	87.10. 1
정 명 희	계 장	80.10. 2	강 정 열	사 원	84.12.10
박 형 신	계 장	84. 5. 1	윤 미 애	사 원	84.12.10
신 상 금	계 장	81. 2.14	김 은 란	사 원	85. 1.11
김 정 자	계 장	81. 5. 1	이 종 순	사 원	85. 8.20
김 은 호	계 장	90. 6.20	손 옥 경	사 원	85. 8.20
김 미 경	계 장	81. 2.14	김 옥 화	사 원	85. 8.20
김 미 성	계 장	81. 2.14	권 태 량	사 원	85.12.26
현 덕 영	계 장	81. 8. 1	김 지 자	사 원	85. 7.15
김 선 희	계 장	81. 8. 1	이 은 경	사 원	85. 7.15
임 경 희	계 장	82. 2. 1	송 진 숙	사 원	85. 5. 1
이 행 숙	계 장	82. 1. 1	도 순 예	사 원	85. 7.15
이 기 홍	계 장	86.12.22	홍 옥 섭	사 원	86. 4. 1
이 명 옥	계 장	82. 7. 5	윤 동 일	사 원	87.10. 1
신 춘 진	계 장	82. 7. 5	이 재 근	사 원	90. 4. 1

성 명	직 위	입사일
임 미 자	사 원	86. 5.15
박 종 옥	사 원	90. 4. 1
오 일 석	사 원	93. 3. 8
허 경 애	사 원	86. 5.15
김 성 란	사 원	86. 5.15
송 수 경	사 원	86. 7.28
조 영 하	사 원	86. 7.28
최 교 순	사 원	88. 3.24
이 상 복	사 원	88. 3.24
송 종 선	사 원	86.12.20
정 재 희	사 원	95. 2.27
배 기 헌	사 원	95. 2.27
김 창 원	사 원	89. 4. 1
정 종 신	사 원	94. 8. 8
한 연 규	사 원	94. 8. 8
심 오 식	사 원	95.12. 2
김 호	사 원	91. 6.17
송 종 명	사 원	90. 4. 1
유 재 철	사 원	90. 4. 1
김 재 석	사 원	92. 3.30
서 강 원	사 원	89. 4. 1
김 경 숙	사 원	89. 4. 1
조 옥 희	사 원	89. 6. 1
김 경 희	사 원	90. 6.26
김 영 전	사 원	93. 3. 8
김 은 주	사 원	91. 3. 5
이 영 순	사 원	92. 3.30
임 경	사 원	92.12. 7
박 태 훈	사 원	95.12. 2
안 성 숙	사 원	95. 1. 5

성 명	직 위	입사일
정 혜 진	사 원	94.11. 1
조 혜 란	사 원	95.10. 2
김 성 자	사 원	95.12. 2
【지로2과】		
차 재 기	과 장	80. 3. 1
조 윤 숙	대 리	69.10. 1
송 경 순	계 장	72.11. 1
송 경 랑	계 장	77. 7.26
박 인 순	계 장	77. 2. 1
마 정 애	계 장	77. 2. 1
이 혜 란	계 장	81. 2.14
김 인 선	계 장	81. 2.14
편 경 임	계 장	81.11. 5
박 춘 희	계 장	82. 2. 1
박 혜 숙	계 장	82. 2. 1
조 창 순	계 장	82.10. 4
이 경 숙	계 장	83. 4.14
김 선	계 장	83. 9.10
이 미 라	사 원	84. 7. 9
이 중 기	사 원	89. 4. 1
이 승 자	사 원	84.11.28
정 재 철	사 원	92. 3.30
박 옥 자	사 원	86. 5.15
서 봉 교	사 원	95.12. 2
진 태 영	사 원	89. 4. 1
이 용 이	사 원	90. 9.10
강 경 숙	사 원	94. 4.11
김 현 희	사 원	94.11. 1
【지로3과】		
김 기 돈	과 장	79. 4. 7

성 명	직 위	입사일
맹 일 녕	대 리	83. 3.21
박 충 관	대 리	83. 3.21
신 경 현	대 리	83. 6. 1
김 덕 순	대 리	79. 3. 5
고 승 일	계 장	80. 4.19
손 귀 선	계 장	85. 8. 1
윤 석 태	계 장	84. 9.12
이 명 구	계 장	87.10. 1
오 순 경	계 장	83.12.29
윤 정 환	계 장	91. 5.20
황 규 현	계 장	92. 4.13
서 영 미	사 원	85.12.26
김 동 기	사 원	94. 8. 8
박 장 원	사 원	88. 3.24
서 동 학	사 원	90. 4. 1
공 웅 구	사 원	91. 3. 5
김 대 진	사 원	91. 3. 5
전 인 주	사 원	95. 2.27
임 도 형	사 원	95. 2.27
박 호 진	사 원	95. 2.27
한 봉 희	사 원	94. 8. 8
박 정 업	사 원	92. 3.30
강 창 문	사 원	92. 4.13
장 은 숙	사 원	89. 4. 1
이 경 재	사 원	95.12. 2
이 성 희	사 원	91. 3. 5
이 문 희	사 원	95.12. 2
【IPS전담반】		
강 영 길	과 장	81. 7. 2
이 순 락	대 리	86.12.22

성 명	직 위	입사일
임 병 안	대 리	88. 3.24
이 만 호	사 원	92. 3.30
김 민 제	사 원	93. 8.23
금 융 망 업 무 부		
박 원 익	부 장	81.12. 3
이 순 주	차 장	81. 4.17
【금융망기획과】		
한 상 환	과 장	84. 9.12
조 화 건	대 리	87.11. 1
오 기 선	대 리	87.11. 1
이 장 근	대 리	89. 4. 1
김 성 엽	대 리	90. 4. 1
심 재 광	사 원	93. 3. 8
차 병 주	사 원	91. 3. 5
최 석 민	사 원	94. 2.14
허 영 현	사 원	94. 2.14
강 남 호	사 원	94. 8. 8
정 재 철	사 원	95. 2.27
고 창 희	사 원	91. 9. 1
강 숙 이	사 원	92. 3.30
【금융망추진과】		
김 영 길	과 장	82.12. 1
이 현 제	대 리	88. 3.24
우 순 규	대 리	89. 4. 1
제 영 주	대 리	90. 4. 1
박 남 준	대 리	91. 3. 5
김 명 일	계 장	91. 3. 5
문 성 필	사 원	93. 3. 8
박 석 우	사 원	94. 2.14
강 은 하	사 원	92. 3.30

성 명	직 위	입사일
김 명 준	사 원	91. 3. 5
오 주 열	사 원	95.12. 2
신 용 수	사 원	95. 2.27
박 진 석	사 원	94. 8. 8
황 숙 경	사 원	94. 8. 8
김 종 남	사 원	90. 3.19
【조세전산팀】		
김 안 태	팀 장	83. 2. 3
임 상 빈	과 장	84.12.24
김 연 수	대 리	87.11. 1
서 성 윤	대 리	88. 3.24
신 정 환	계 장	91. 3. 5
정 대 성	계 장	92. 3.30
장 병 환	계 장	92. 3.30
안 윤 환	사 원	93. 3. 8
윤 철 표	사 원	95.12. 2
정 응 태	사 원	95.12. 2
V A N 사 업 부		
조 갑 장	부 장	81. 6. 5
곽 홍 희	차 장	83. 2. 3
노 충 호	과 장	81. 4.24
박 광 헌	과 장	86.12.22
김 승 호	대 리	86.12.22
김 충 진	대 리	86.12.22
양 형 모	대 리	89. 4. 1
남 진 석	대 리	89. 4. 1
김 홍 복	대 리	90. 4. 1
박 남 수	대 리	84. 9.12
박 철 우	대 리	90. 4. 1
류 재 수	계 장	91. 3. 5
서 문 석	계 장	89. 4. 1
권 영 식	계 장	88. 3.24
노 효 섭	계 장	92. 3.30
최 준 달	계 장	92. 3.30
김 시 영	사 원	92. 6. 8
오 병 일	사 원	93. 3. 8
김 영 욱	사 원	93. 3. 8
양 성 원	사 원	94. 2.14
민 경 석	사 원	93. 3. 8
강 민 정	사 원	93. 3. 8
권 성 호	사 원	94. 8. 8
이 종 우	사 원	94. 8. 8
강 인 양	사 원	95.12. 2
배 형 진	사 원	95.12. 2
최 지 연	사 원	95.12. 2
장 인 수	사 원	95.12. 2
최 대 원	사 원	95.12. 2
박 미 화	사 원	89. 4. 1
전 창 구	사 원	95.12. 2
전 산 개 발 부		
김 홍 휴	부 장	77. 4.18
박 성 엽	차 장	81. 7. 1
【원내관리 · 교육팀】		
박 성 엽	팀 장	81. 7. 1
임 채 호	대 리	88. 3.24
박 윤 아	사 원	87. 2.11
조 영 주	사 원	94. 8. 8
성 재 경	사 원	95.12. 2
장 지 선	사 원	89. 4. 1

성 명	직 위	입사일
【금융망팀】		
김 동 훈	팀 장	82.11. 1
장 승 미	대 리	81. 2.14
이 순 섭	대 리	86.12.22
박 완 성	대 리	88. 3.24
김 인 수	대 리	91. 3. 5
이 순 창	계 장	92. 3.30
이 진 민	사 원	91. 3. 5
박 진 우	사 원	88. 3.24
진 재 석	사 원	94. 8. 8
선 오 종	사 원	94. 2.14
최 은 희	사 원	93. 3. 8
이 상 운	사 원	95. 2.27
류 정 훈	사 원	95.12. 2
김 원 기	사 원	95.12. 2
양 윤 선	사 원	95.12. 2
【어음교환 · 지로팀】		
류 철 모	팀 장	83. 3.21
임 동 주	대 리	89. 4. 1
김 종 찬	대 리	90. 4. 1
김 동 식	사 원	93. 3. 8
이 영 우	사 원	92. 3.30
황 치 자	사 원	91. 3. 5
권 오 진	사 원	88. 3.24
박 은 정	사 원	92. 3.30
이 광 수	사 원	95. 2.27
김 상 훈	사 원	95.12. 2
정 현 주	사 원	93. 3. 8
이 재 현	사 원	95. 2.27
강 경 희	사 원	95.12. 2

성 명	직 위	입사일
【사무자동화팀】		
한 창 현	팀 장	85. 7.15
이 태 열	대 리	84. 9.12
임 형 욱	사 원	92. 6. 8
이 병 화	사 원	93. 3. 8
노 선 미	사 원	91. 3. 5
김 창 유	사 원	91. 3. 5
우 창 우	사 원	95.12. 2
이 지 혜	사 원	95.12. 2
【EDI팀】		
한 창 현	팀 장	85. 7.15
김 호 술	대 리	86.12.22
박 순 만	대 리	88. 3.24
이 계 영	대 리	88. 3.24
최 광 주	계 장	83. 3.21
방 운 혁	계 장	92. 3.30
이 송 원	사 원	93. 3. 8
권 오 신	사 원	93. 3. 8
전 영 준	사 원	93. 3. 8
조 인 석	사 원	93. 3. 8
김 용 준	사 원	95.12. 2
조 성 윤	사 원	94. 2.14
오 은 숙	사 원	95. 2.27
유 혜 선	사 원	95.12. 2
전 산 운 영 부		
배 희 철	부 장	77. 3. 4
조 영 숙	차 장	70. 4.27
【운영1과】		
정 재 칠	과 장	82.11. 1
정 진 영	대 리	83. 3.24

성 명	직 위	입사일	성 명	직 위	입사일
김 승 수	대 리	83.10.15	김 수 현	사 원	95.12. 2
임 경 빈	대 리	83.10.26	이 준 철	사 원	95.12. 2
한 명 건	대 리	82.11. 1	박 미 순	사 원	95. 5. 2
김 은 주	대 리	77. 2. 1	강 성 경	기 원	95. 8. 1
유 택 범	대 리	83. 9.16	【운영2과】		
조 정 란	계 장	81. 2.14	이 기 민	과 장	81. 4.24
박 정 숙	계 장	82. 1. 1	박 춘 래	과장대우	82.11. 1
문 우 엽	계 장	84. 9.12	류 재 곤	대 리	80.10.24
신 동 원	계 장	87.10. 1	이 인 철	대 리	86.12.22
박 정 국	계 장	91. 3. 5	정 재 훈	대 리	89. 4. 1
성 천 경	계 장	91. 3. 5	김 익 열	계 장	84.10.29
이 선 숙	계 장	84. 7. 9	민 양 규	계 장	87.10. 1
박 성 수	사 원	87.10. 1	임 명 규	사 원	89. 4. 1
김 진 수	사 원	88. 3.24	박 상 호	사 원	89. 4. 1
장 용 선	사 원	92. 4.13	변 공 식	사 원	89. 4. 1
고 재 연	사 원	93. 3. 8	최 석 준	사 원	91. 3. 5
정 호 원	사 원	87.10. 1	한 종 철	사 원	89. 4.24
정 병 구	사 원	94. 2.14	박 성 재	사 원	88. 3.24
김 호 식	사 원	90. 4. 1	김 원 기	사 원	90. 4. 1
한 건 수	사 원	91. 3. 5	한 정 훈	사 원	93. 3. 8
이 광 훈	사 원	94. 2.14	김 상 용	사 원	90. 4. 1
김 정 상	사 원	92. 3.30	한 태 환	사 원	90. 4. 1
이 병 훈	사 원	95. 2.27	정 의 광	사 원	88. 3.24
전 병 관	사 원	95. 2.27	이 환 우	사 원	95. 2.27
한 영 의	사 원	89. 4. 1	조 대 성	사 원	89. 4. 1
소 유 희	사 원	90. 3.19	황 의 철	사 원	95. 2.27
손 광 선	사 원	91. 3. 5	손 승 희	사 원	90. 3.19
김 태 동	사 원	92. 3.30	황 은 순	사 원	93. 1. 5
김 유 호	기 원	94. 8. 8	하 정 석	사 원	95.12. 2
전 희 갑	기 원	94. 8. 8			

성 명	직 위	입사일
감 사 실		
박 찬 용	실 장	81. 2.23
전 평 수	검 사 역	79.11. 5
박 성 희	검 사 역	80.10. 4
김 영 필	검 사 역	83. 3.21
김 동 식	검 사 역	89. 4. 1
김 선 희	사 원	90.10.22
부 산 지 부		
전 풍 호	지 부 장	73. 6. 1
도 기 호	차 장	79. 2. 1
김 관 수	과 장	82.12. 1
양 하 석	과장대우	81. 7.27
이 종 호	대 리	84. 9.12
김 수 용	기 술 역	77. 9. 1
이 재 윤	대 리	86.12.22
최 영 국	계 장	87.10. 1
이 선 희	계 장	83. 6.16
이 운	계 장	88. 3.24
김 영 희	계 장	84. 5.15
신 청 자	사 원	84. 6.25
허 영 미	사 원	84. 6.25
장 두 용	사 원	87.10. 1
이 미 숙	사 원	86. 2. 1
이 진 화	사 원	93. 8.23
이 성 규	사 원	89. 4. 1
장 규 형	사 원	89. 4. 1
류 선 임	사 원	89. 1.25
박 정 환	사 원	93. 3. 8
조 부 경	사 원	92. 6. 1
허 유 리	사 원	95. 2.27
정 애 란	사 원	95. 2.27
최 문 화	사 원	95. 2.27
이 현 주	사 원	95. 2.27
배 성 숙	사 원	95. 2.27
남 은 철	사 원	95.12. 2
전 경 아	사 원	95.12. 2
장 정 임	사 원	95.12. 2
최 유 진	사 원	95.12. 2
서 춘 길	별정직원	69. 6. 1
대 구 지 부		
손 기 선	지 부 장	78. 7. 5
남 용 우	과 장	79. 4. 1
박 인 석	사 원	87.10. 1
박 은 정	사 원	86.11. 1
석 경 구	사 원	92. 3.30
윤 종 달	사 원	92. 3.30
이 승 언	사 원	89.12. 1
권 주 하	별정직원	68.10. 1
김 승 동	별정직원	79.12. 1
인 천 지 부		
이 용 호	지 부 장	73.10.17
이 순 원	대 리	82. 3. 1
이 상 원	계 장	70. 9. 1
고 광 수	계 장	84.11.15
김 연 실	사 원	84. 2.16
김 현 식	사 원	88. 3.24
정 효 원	별정직원	77. 4. 1
광 주 지 부		
윤 홍 식	지 부 장	71.11.22
박 형 래	대 리	84. 9.12

성 명	직 위	입사일
정 진 형	계 장	87.10. 1
최 수 호	사 원	87. 8. 4
곽 진 곤	사 원	92. 3.30
이 인 식	별정직원	79. 8. 1
대 전 지 부		
정 진 래	지 부 장	69. 8. 1
박 상 진	대 리	84. 9.12
김 정 수	사 원	90. 4. 1
진 향 순	사 원	86. 1.20
오 광 진	사 원	92. 6. 8
조 인 식	별정직원	82. 2. 1
남 보 현	별정직원	85. 3. 1
수 원 지 부		
조 병 일	지 부 장	77. 1. 6
정 재 웅	대 리	83. 6. 1
최 미 영	사 원	84.12.10
김 보 영	사 원	92. 3.30
정 현 민	사 원	95.12. 2
신 현 웅	별정직원	77. 5. 2
성 남 지 부		
최 동 식	지 부 장	78. 5.15
김 향 진	사 원	85.10. 7
구 송 본	사 원	91. 3. 5
안 양 지 부		
이 무 홍	지 부 장	79. 4. 7
최 길 호	대 리	83.10.15
최 영 학	계 장	82. 5. 1
최 옥 선	사 원	84.11.28
김 완 동	서무직원	86. 5. 1

성 명	직 위	입사일
의 정 부 지 부		
신 순 헌	지 부 장	79. 4. 9
김 진 열	사 원	89. 4. 1
김 진 운	사 원	89. 6. 1
이 학 우	별정직원	68. 3. 1
부 천 지 부		
박 태 영	지 부 장	70. 8.13
박 승 효	과장대우	93.10. 1
정 계 준	계 장	84.10.23
김 혜 진	사 원	92. 1.15
조 우 영	별정직원	81. 9. 1
평 택 지 부		
오 병 환	지 부 장	70. 4. 4
김 민 수	사 원	90. 4. 1
최 은 희	사 원	91. 6.17
안 산 지 부		
김 호 중	지 부 장	80. 9. 2
손 기 숙	계 장	82. 3. 1
한 익 현	사 원	90. 4. 1
이 천 지 부		
안 상 웅	지 부 장	83. 2. 3
황 예 자	계 장	83. 5.16
김 상 환	사 원	89. 4. 1
춘 천 지 부		
이 왕 식	지 부 장	75.11. 1
이 동 렬	대 리	83. 3.21
박 명 순	사 원	93. 3. 3
박 진 홍	서무직원	86. 5. 1
강 릉 지 부		
박 덕 한	지 부 장	71. 6.15

성 명	직 위	입사일
박 기 복	계 장	80. 6. 1
천 은 주	사 원	88. 5. 9
원 주 지 부		
김 주 영	지 부 장	76. 4.20
김 태 형	계 장	87. 4. 1
백 이 숙	사 원	84. 4.11
동 해 지 부		
이 의 도	지 부 장	80.10. 4
신 애 자	계 장	81. 1. 1
시 영 재	사 원	91. 3. 5
속 초 지 부		
이 철 호	지 부 장	82. 6.21
김 부 영	사 원	86.12.22
정 경 숙	사 원	91.12. 5
태 백 지 부		
한 상 천	지 부 장	83. 3.21
라 향 숙	사 원	95. 3. 2
청 주 지 부		
강 성 웅	지 부 장	69. 7. 1
김 학 필	대 리	84. 5. 1
김 영 미	사 원	85. 1. 1
유 완 영	사 원	91. 3. 5
이 종 완	서무직원	86. 5. 1
충 주 지 부		
백 정 택	지 부 장	83. 4.11
이 선 희	계 장	81. 3. 7
제 천 지 부		
최 종 원	지 부 장	83. 9.16
신 향 순	사 원	87. 7.10

성 명	직 위	입사일
천 안 지 부		
이 강 익	지 부 장	72.11. 1
고 희 순	계 장	81. 2. 1
서 의 식	사 원	89. 4. 1
공 주 지 부		
유 주 현	직무대행	82. 6. 1
하 숙 자	사 원	88. 6. 1
논 산 지 부		
한 용 철	직무대행	81. 3. 1
김 태 순	사 원	88. 6. 1
홍 성 지 부		
이 일 신	지 부 장	79. 4. 7
김 천 수	사 원	90. 4. 1
이 정 복	사 원	87.10. 1
서 산 지 부		
이 기 춘	지 부 장	80.12. 2
모 정 길	사 원	87.10. 1
김 승 희	사 원	95. 2.27
전 주 지 부		
김 종 철	지 부 장	74. 5.10
박 승 진	대 리	85. 8. 1
양 해 영	계 장	87.10. 5
홍 현 주	사 원	92. 9. 1
군 산 지 부		
이 영 진	지 부 장	79. 4. 7
김 호 길	계 장	88. 3.24
주 현 성	사 원	91.10.14
익 산 지 부		
정 해 성	지 부 장	79.11. 5
박 기 원	계 장	84. 7. 1

성 명	직 위	입사일
최 옥	사 원	84.10.15
정 읍 지 부		
서 석 주	지 부 장	84. 9.12
김 쌍 원	사 원	89. 3.18
남 원 지 부		
이 봉 호	직무대행	80. 9. 2
한 명 희	사 원	86. 3.15
목 포 지 부		
박 안 수	지 부 장	68.12. 2
김 광 성	사 원	89. 4. 1
문 영 임	사 원	90. 9. 5
한 성 모	서무직원	85.12.21
여 수 지 부		
장 두 현	지 부 장	82. 6.21
장 광 홍	계 장	84. 9.12
김 봉 숙	사 원	93. 1.25
순 천 지 부		
전 봉 균	지 부 장	71. 1. 1
천 명 재	사 원	90. 4. 1
강 성 숙	사 원	95. 2.27
해 남 지 부		
최 태 연	지 부 장	80. 5. 1
박 애 경	사 원	92. 9. 1
포 항 지 부		
조 성 동	지 부 장	81. 8. 1
한 재 식	계 장	87. 9. 1
김 공 주	사 원	92.10.21
이 상 정	서무직원	86. 5. 1
경 주 지 부		
김 옥 배	지 부 장	80. 9. 8
임 천 진	계 장	84. 9.12
석 정 미	사 원	89.10.16
안 동 지 부		
황 학 성	지 부 장	80.12. 2
지 선 희	사 원	89.10.26
구 미 지 부		
변 대 석	지 부 장	75. 2.14
신 원 규	사 원	92. 6. 8
이 금 희	사 원	94.11.16
김 천 지 부		
조 화 제	지 부 장	82. 2. 1
박 순 자	계 장	82. 3. 1
김 명 수	사 원	92. 4.13
영 주 지 부		
조 성 범	지 부 장	82. 7. 8
김 영 옥	사 원	94. 9.12
창 원 지 부		
김 창 수	지 부 장	73.10.17
진 준 근	과장대우	81. 8. 1
김 은 곤	사 원	86. 9. 1
이 미 숙	사 원	88. 8. 1
윤 좌 원	서무직원	86. 5. 1
통 영 지 부		
김 형 환	지 부 장	79. 6.30
김 인 숙	계 장	81. 7.10
울 산 지 부		
차 홍 업	지 부 장	81. 7.27
정 의 훈	대 리	89. 4. 1
이 봉 섭	계 장	82. 6.14
이 선 희	사 원	95. 5. 2

성 명	직 위	입사일
이 상 원	서무직원	85. 3.18
진 주 지 부		
강 영 남	지 부 장	81. 4.24
박 주 연	사 원	85. 5. 8
김 경 진	사 원	91. 5.20
김 해 지 부		
김 명 재	지 부 장	79. 8. 1
김 양 희	계 장	82. 4. 1
최 돈 호	계 장	88. 3.24

성 명	직 위	입사일
양 산 지 부		
홍 한 식	지 부 장	75. 1. 1
정 남 수	계 장	81. 3. 1
천 정 희	사 원	92. 3.30
제 주 지 부		
유 상 근	지 부 장	74. 4. 1
김 기 자	계 장	80. 3. 1
진 윤 동	사 원	91. 3. 5

기구변천표

금융결제원			
1986. 6. 2	1988. 4. 1	1989. 6.23	1989.10.14
5부 1실 5과 6담당	5부 1실 1부속실 8과 3담당	5부 1실 2부속실 12과	5부 1실 3부속실 12과
총 무 부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리담당 어음교환부 교환관리담당 부도관리담당 야간처리담당 지로업무부 지로기획과 지로1과 지로2과 전 산 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금융전산추진부 감 사 실	총 무 부 기 획 실 총 무 과 인 사 과 계 리 과 어음교환부 교환관리담당 부도관리담당 야간처리담당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전 산 부 전 산 과 운 영 과 금융전산추진부 감 사 실	총 무 부 기 획 실 비 서 실 총 무 과 인 사 과 계 리 과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부도관리과 교환처리1과 교환처리2과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전 산 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금융전산추진부 감 사 실	총 무 부 기 획 실 비 서 실 총 무 과 인 사 과 계 리 과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부도관리과 교환처리1과 교환처리2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전 산 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금융전산추진부 감 사 실
40개 지부	45개 지부	45개 지부	45개 지부
■ 지부 신설 • 86.10.13 태백 • 86.11. 3 평택 • 87. 8.17 홍성 • 87.12. 1 공주, 논산	• 총무부내 기획실 신설 • 총무부 과체제로 개편 • 지로기획과 → 지로추진과, 전산개발과 → 전산과, 전산운영과 → 운영과로 개칭	• 총무부내 비서실 신설 • 어음교환부 과체제로 개편 • 전산과 → 전산개발과, 운영과 →전산운영과로 개칭	• 어음교환부내 자금중개실 신설 • 금융결제원으로 개칭 (1989.11. 1)

금융결제원

1990. 1. 1	1991. 1.22	1992. 8. 1	1993. 4. 1
5부 2실 2부속실 14과	5부 2실 2부속실 15과	6부 2실 2부속실 22과	6부 2실 3부속실 21과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총 무 부 총 무 과 인 사 과 계 리 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부도관리과 교환처리1과 교환처리2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전 산 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금융전산추진부 감 사 실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총 무 부 총 무 과 인 사 과 급여후생과 계 리 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부도관리과 교환처리1과 교환처리2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전 산 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금융전산추진부 감 사 실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조사홍보과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인 사 과, 급여후생과 경 리 과, 비 서 실 안전관리과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전산개발부 개발1과 개발2과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조사홍보과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인 사 과, 급여후생과 경 리 과, 비 서 실 안전관리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전산개발부 개발1과 개발2과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45개 지부	46개 지부	47개 지부	47개 지부
• 총무부 기획실→ 기획실(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신설)로 개편 ■ 지부 신설 • 90. 8.10 안산	• 급여후생과 신설 ■ 지부 신설 • 91. 4.19 해남	• 금융전산추진부 · 전산부 → 금융망업무부 · 전산개발부 · 전산운영부, 교환처리1·2과 → 교환처리과로 개편 • 총무과 → 서무과, 계리과 → 경리과로 개칭 • 조사홍보과, 관재과, 안전관리과, 지로3과 신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실로 개편

금융결제원			
1993. 8. 4	1994. 2.17	1995. 2. 8	1995. 9.18
7부 2실 3부속실 21과	7부 2실 3부속실 19과	7부 2실 4부속실 19과	7부 2실 4부속실 18과 1팀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조사홍보과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경 리 과, 안전관리실 인 사 부 인 사 과, 급여후생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전산개발부 개발1과 개발2과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조사홍보과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경 리 과, 안전관리실 인 사 부 인 사 과, 급여후생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조사홍보과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경 리 과, 안전관리실 인 사 부 인 사 과, 급여후생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부가통신사업실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경영전략팀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경 리 과, 안전관리실 인 사 부 인 사 과, 급여후생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부가통신사업실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47개 지부	47개 지부	49개 지부	49개 지부
• 총무부 인사과, 급여후생과, 비서실 → 인사부로 개편	• 전산개발부 과체제 폐지 ■ 지부 신설 • 94. 7. 4 이천 • 94. 7.11 김해	• 부가통신사업실 신설	• 조사홍보과 폐지, 경영전략팀 신설

금융결제원		
1995. 12. 18	1996. 1. 23	1996. 2. 13
7부 2실 4부속실 18과 1팀	9부 1실 3부속실 18과 1팀	9부 1실 3부속실 18과 2팀
기 획 실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경영전략팀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경 리 과, 안전관리실 인 사 부 인 사 과, 급여후생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부가통신사업실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기 획 부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경영전략팀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경 리 과, 안전관리실 인 사 부 인 사 과, 급여후생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VAN사업부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기 획 부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경영전략팀 총 무 부 서 무 과, 관 재 과 경 리 과, 안전관리실 인 사 부 인 사 과, 급여후생과 비 서 실 어음교환부 교환관리과 교환처리과 부도관리과 자금중개실 지로업무부 지로추진과, 지로1과 지로2과, 지로3과 금융망업무부 금융망기획과 금융망추진과 조세전산팀 VAN사업부 전산개발부 전산운영부 운영1과, 운영2과 감 사 실
49개 지부	47개 지부	49개 지부
■ 지부 폐쇄 • 95. 11. 24 진해, 사천 ■ 지부 신설 • 95. 12. 18 서산, 양산	• 금융망업무부 부가통신사업실 → VAN사업부로 개편 • 기획실 → 기획부로 개칭	• 조세전산팀 신설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은행지로관리소			
1984. 5. 10	1975. 10. 1	1977. 2. 1	1980. 1. 25	1980. 12. 31
3부 1실	1국 4과	1국 5과	1국 6과	3부 6과
총 무 부	사 무 국	사 무 국	사 무 국	지 로 부
	총 무 과	개 발 과	기 획 과	기 획 과
어 음 교 환 부	개 발 과	업 무 과	개 발 과	추 진 과
	연 수 과	자료처리과	업 무 과	업 무 과
신용정보관리부	자료처리과	기 획 과	자료처리과	
			어음교환과	어 음 교 환 부
감 사 실		총 무 과	총 무 과	총 무 부
				총 무 과
				정보관리과
				시스템운영과
40개 지소	• 금융기관전자계산소로 발족	• 연수과 폐지 • 업무과, 기획과 신설 •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1977. 6.22)	• 어음교환과 신설	• 부제도 신설 및 추진과 신설 • 개발과 → 정보관리과, 자료처리과 → 시스템 운영과로 개편 • 검사역제 신설

은행지로관리소					
1981. 4. 8	1981. 8.14	1981.10.21	1981.12.31	1983. 5.10	1984. 7.13
2부 6과	2부 6과 1반	2부 6과 2반	2부 5과 2반	3부 6과	3부 1실 6과
총 무 부 총 무 과 정보관리과 시스템운영과	총 무 부 총 무 과 정보관리과 시스템운영과	총 무 부 총 무 과 정보관리과 시스템운영과	총 무 부 총 무 과 시스템운영과	총 무 부 총 무 과 기획추진과	총 무 부 기획추진과 총 무 과
지 로 부 기 획 과 추 진 과 업 무 과	지 로 부 기 획 과 추 진 과 업 무 과 OCR전담반	지 로 부 기 획 과 추 진 과 업 무 과 OCR전담반 CD전담반	지 로 부 기 획 과 추 진 과 업 무 과 OCR전담반 CD전담반	업 무 부 업 무 1 과 업 무 2 과 전 산 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업 무 부 업 무 1 과 업 무 2 과 전 산 부 전산개발과 전산운영과 시 스 템 실
• 어음교환부 폐지	• OCR 전담반 설치	• CD 전담반 설치	• 정보관리과 폐지 (신용정보관리업무 전국은행협회로 이관)	• 업무과 → 업무부로 개편 • 시스템운영과 → 전산운영과로 개칭 • 기획과, 추진과 → 기획추진과로 개편 • 전산부 신설	• 시스템실 신설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1996년 4월말 현재)

구분	기 관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가입(참가)일자	주 소
사원 (17)	한 국 은 행	이 경 식	1950. 6.12	1984. 5.1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한 국 산 업 은 행	김 시 형	1954. 4. 1	1984. 5.10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2
	농 협 중 앙 회	원 철 희	1961. 8.15	1984. 5.10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조 흥 은 행	우 찬 목	1897. 2.19	1984. 5.1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한 국 상 업 은 행	정 지 태	1899. 1.30	1984. 5.1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제 일 은 행	이 철 수	1929. 7. 1	1984. 5.10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한 일 은 행	이 관 우	1932.12.16	1984. 5.1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
	서 울 은 행	손 홍 균	1959.12. 1	1984. 5.1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중 소 기 업 은 행	김 승 경	1961. 8. 1	1984. 5.10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국 민 은 행	이 규 증	1963. 2. 1	1984. 5.1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한 국 외 환 은 행	장 명 선	1967. 1.30	1984. 5.10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한 국 주 택 은 행	신 명 호	1967. 7.10	1984. 5.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신 한 은 행	라 응 찬	1982. 7. 7	1984. 5.10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한 미 은 행	홍 세 표	1983. 3.16	1984. 5.10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
	동 화 은 행	이 재 진	1989. 9. 5	1989. 8.31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66
	동 남 은 행	허 한 도	1989.11. 1	1989.10.27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5-3
	대 동 은 행	허 홍	1989.11. 7	1989.10.27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13-7
준사원 (18)	한국수출입은행	문 헌 상	1976. 7. 1	1984. 5.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수 협 중 앙 회	박 종 식	1962. 4. 1	1984. 5.1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한국장기신용은행	김 광 현	1967. 4.25	1984. 5.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신 용 보 증 기 금	안 공 혁	1976. 6. 1	1984. 5.1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축 협 중 앙 회	송 찬 원	1981. 1. 1	1984. 5.10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
	대 구 은 행	서 덕 규	1967.10. 7	1984. 5.10	대구시 수성구 수성 2가 118
	부 산 은 행	이 연 형	1967.10.25	1984. 5.10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38
	충 청 은 행	윤 은 중	1968. 4.22	1984. 5.10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6-1
	광 주 은 행	박 형 수	1968.11.20	1984. 5.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1-11
	제 주 은 행	김 영 제	1969. 9.19	1984. 5.10	제주시 이도1동 1349
	경 기 은 행	주 범 국	1969.12. 8	1984. 5.1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7
	전 북 은 행	박 찬 문	1969.12.10	1984. 5.10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강 원 은 행	최 종 문	1970. 4. 3	1984. 5.10	춘천시 운교동 72-3
	경 남 은 행	김 형 영	1970. 5.22	1984. 5.10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충 북 은 행	민 형 근	1971. 4.24	1984. 5.10	청주시 상장구 영동 86-3
	하 나 은 행	윤 병 철	1991. 7.15	1991. 7.1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보 람 은 행	구 자 정	1991. 9. 2	1991. 8.2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9-10
	평 화 은 행	박 종 대	1992.11. 2	1992.10.2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1
특별참가기관 (5)	C I T I 은 행	존M. 비맨	1967. 9. 8	1993. 1.2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9
	우 체 국	이 석 채	1884. 4.22	1994.12.29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농 협 회 원 조 합	원 철 희	-	1994.12.31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수 협 회 원 조 합	박 종 식	-	1994.12.3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축 협 회 원 조 합	송 찬 원	-	1994.12.3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

총지급결제 규모

단위: 백만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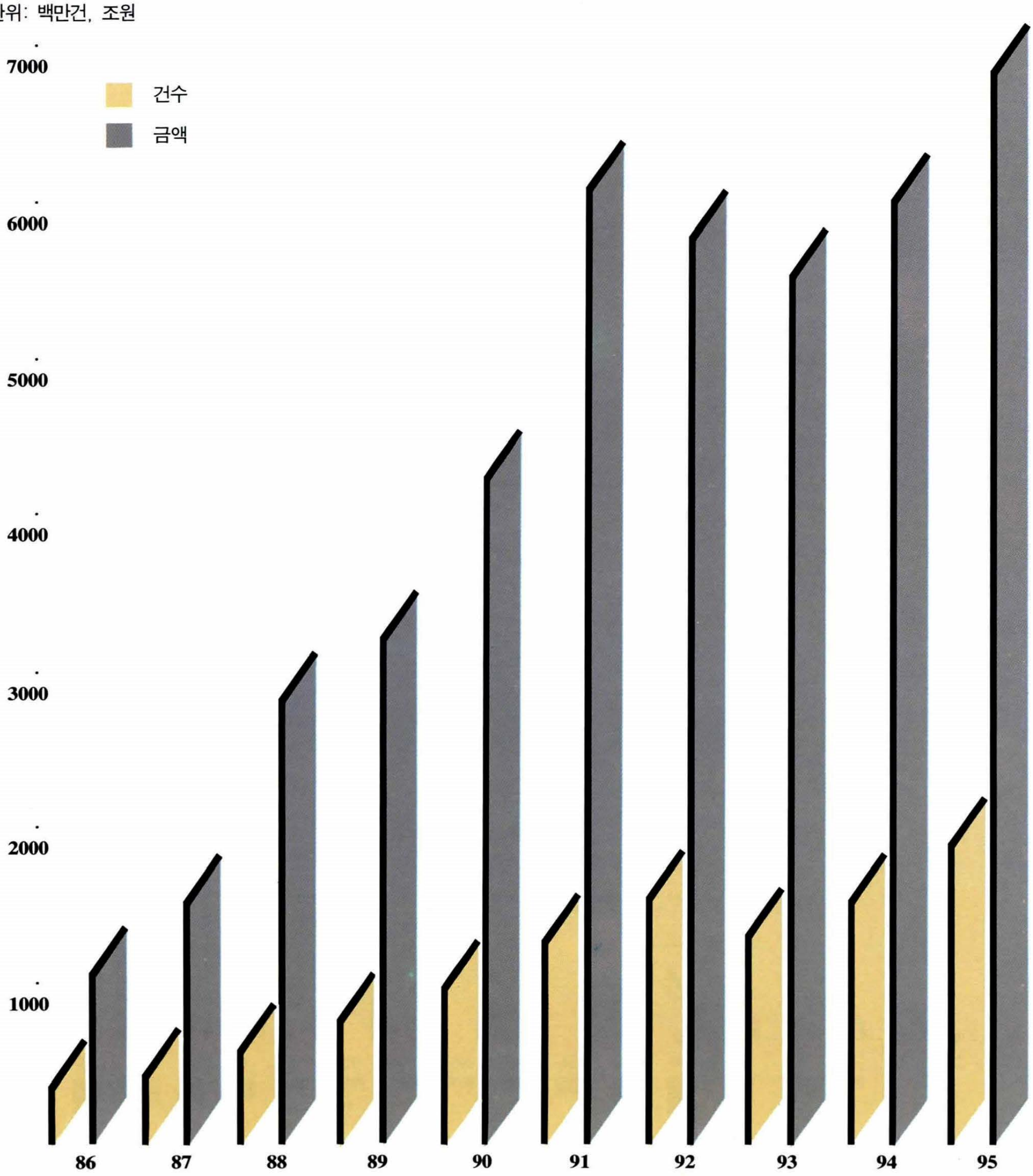

주: 총지급결제규모는 어음교환, 은행지로, 금융전산망실적의 합계임

어음교환(전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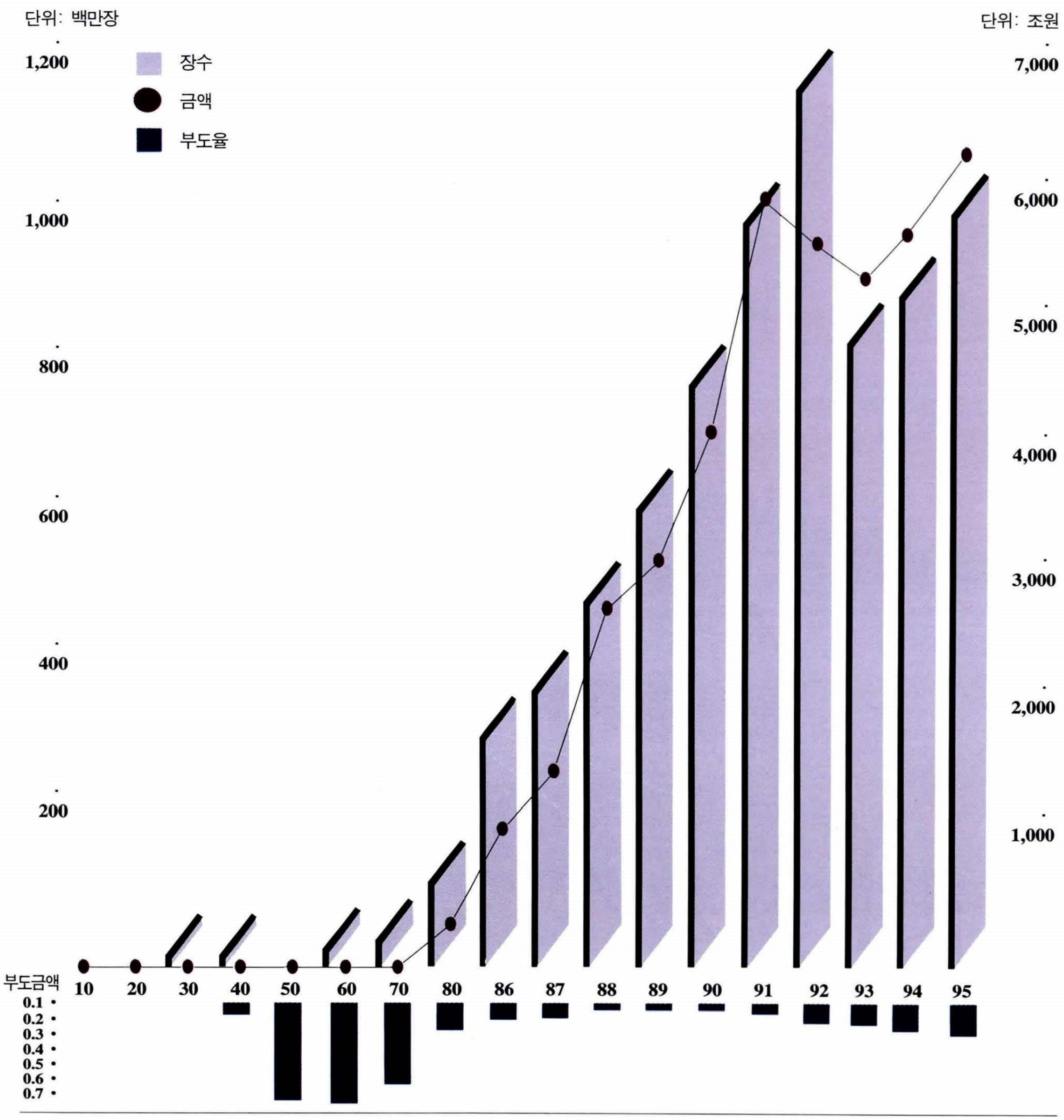
단위: 백만장
1,200
1,000
800
600
400
200
장수
금액
부도율
단위: 조원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부도금액
0.1
0.2
0.3
0.4
0.5
0.6
0.7
10
20
30
40
50
60
70
8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은행지로 추이

단위: 백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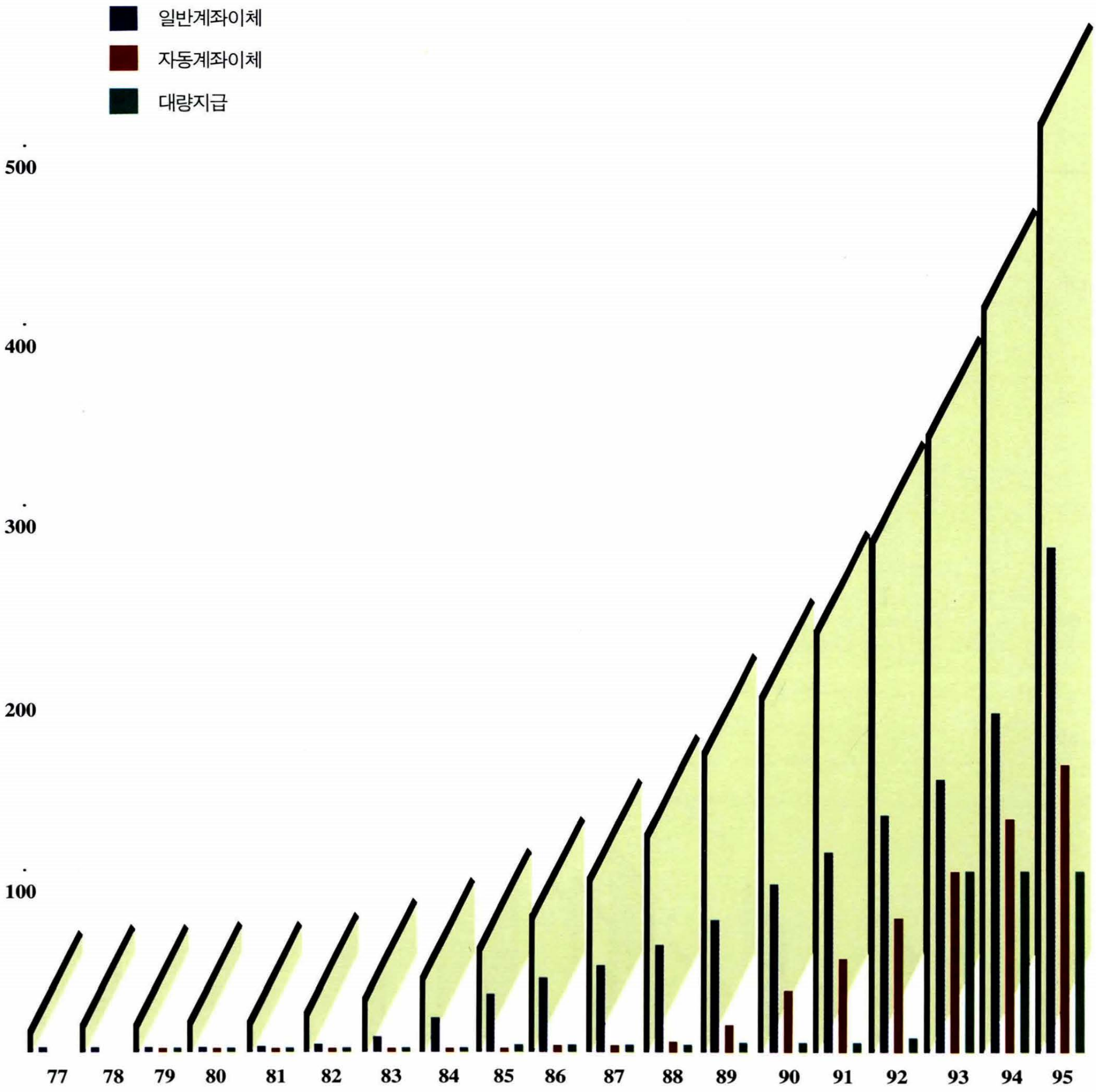

금융전산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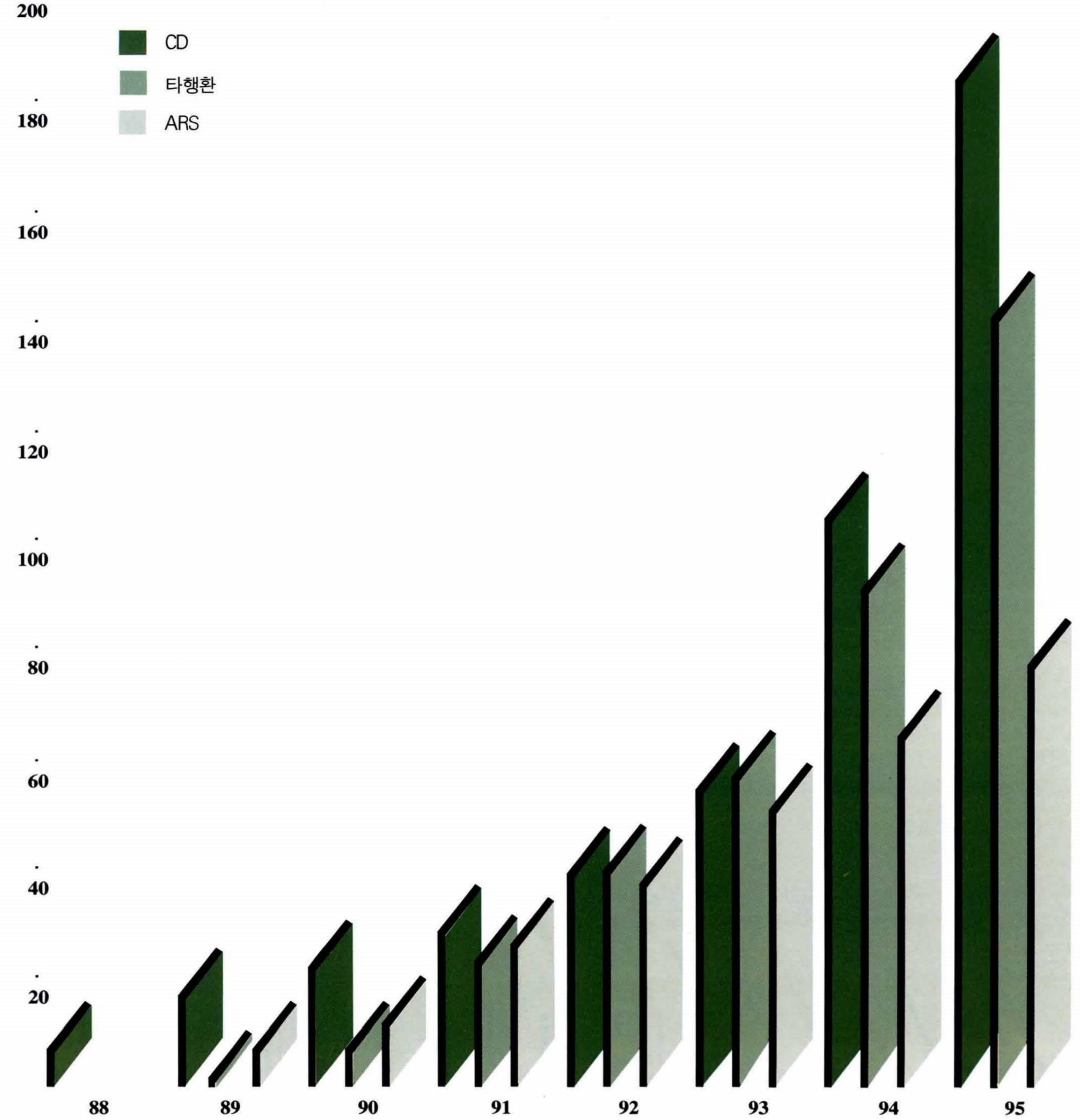
단위: 백만건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CD
타행환
ARS
88
89
90
91
92
93
94
95

자산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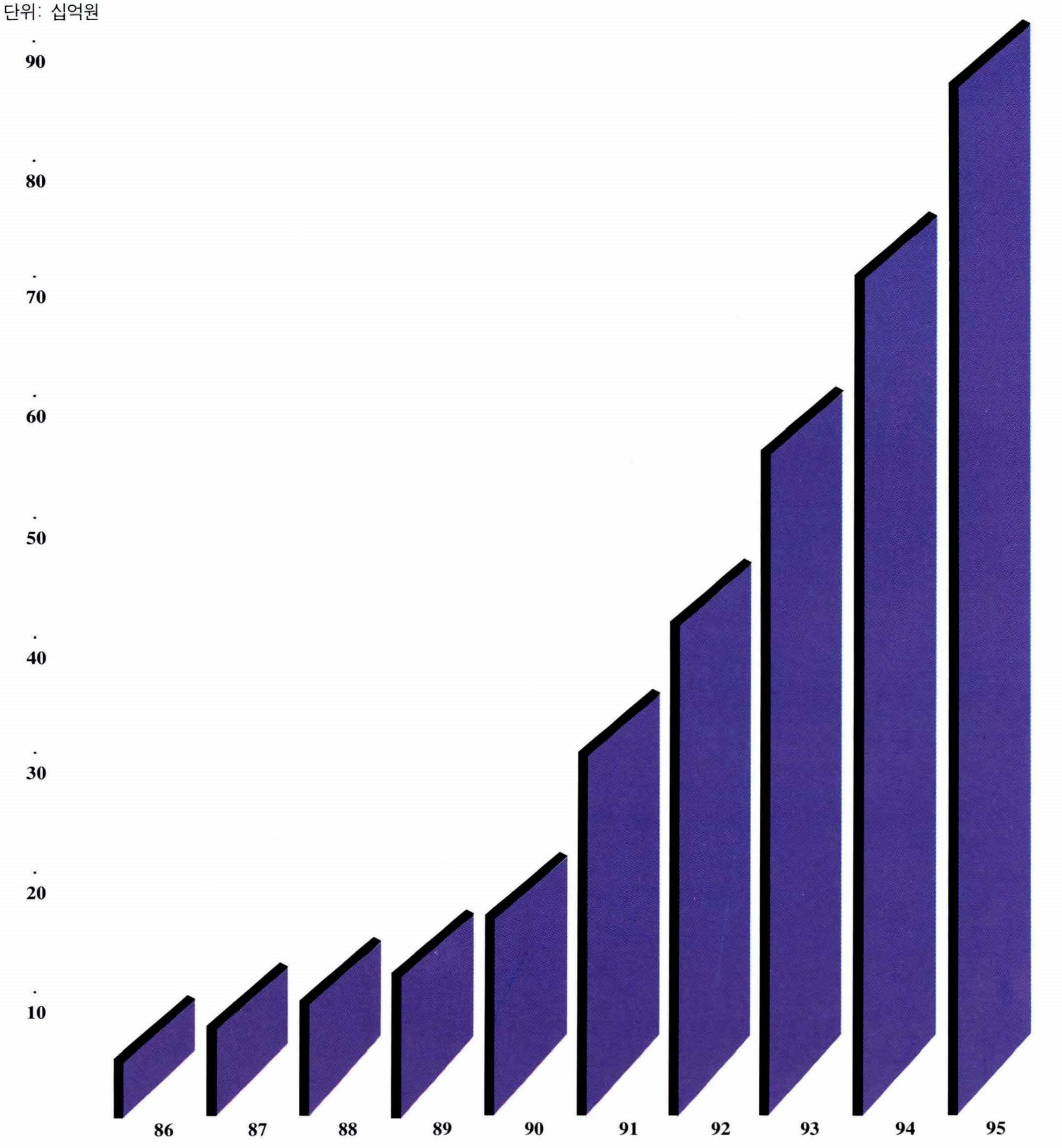

임직원변동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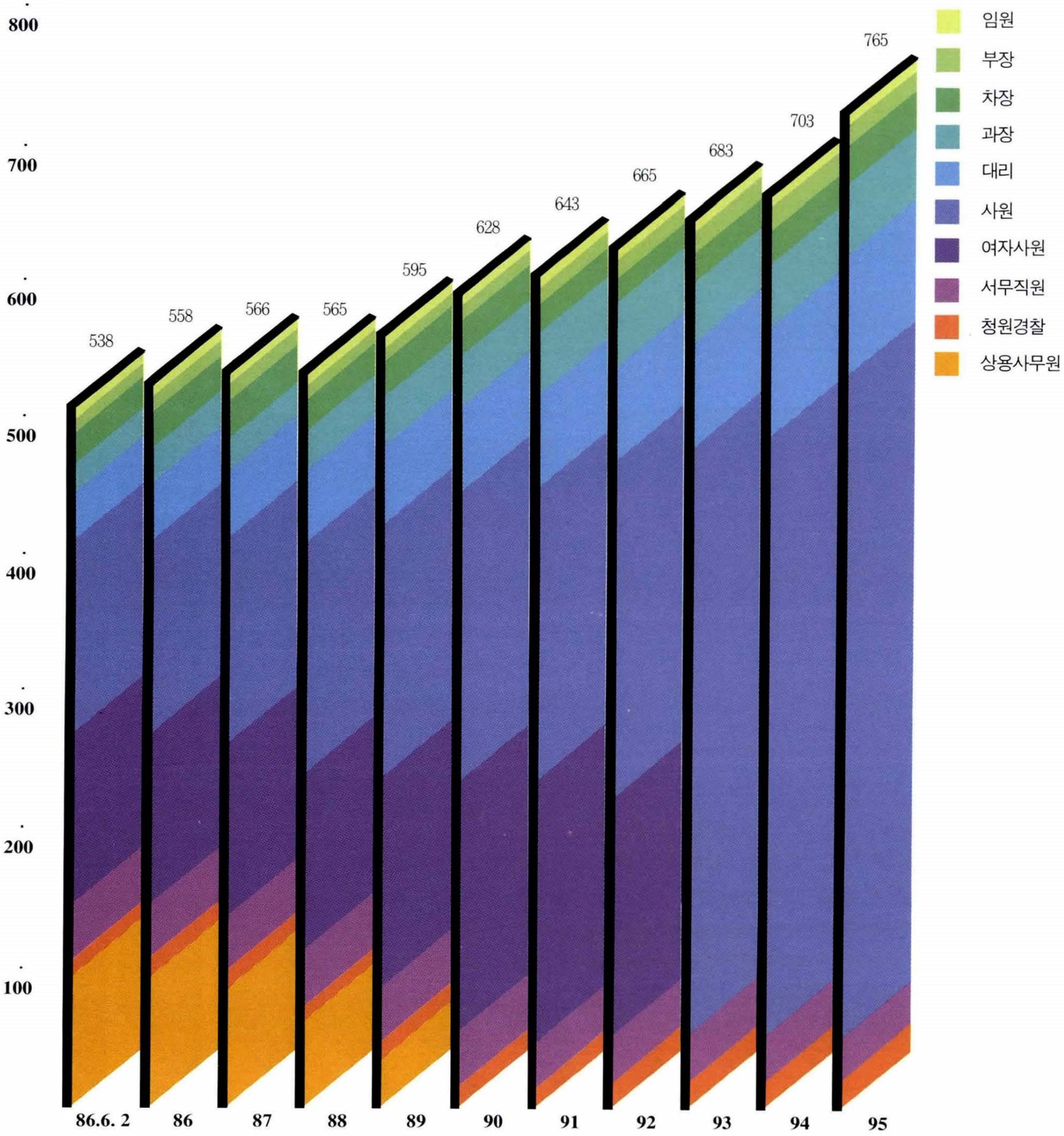

주: 1993~1995 임직원에 상용사무원 제외

업무실적

가. 어음교환실적

① 전국어음교환량

(단위: 천장, 십만원)

연도	어음교환		장당평균	일평균 교환실적		부도(장, 천원)		부도율(%)	
	장 수	금 액	금 액(원)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10	59	205	347	0.20	0.68				
1911	248	726	293	0.83	2.42				
1912	332	985	297	1.11	3.28				
1913	407	1,013	249	1.36	3.37				
1914	434	908	209	1.45	3.03				
1915	468	987	211	1.56	3.29				
1916	569	1,329	234	1.90	4.43				
1917	691	2,029	294	2.30	6.76				
1918	996	4,127	414	3.32	13.76				
1919	1,342	9,624	717	4.47	32.08				
1920	1,410	8,493	602	4.70	28.31				
1921	1,761	8,521	484	5.87	28.40				
1922	2,056	9,359	455	6.85	31.20				
1923	2,007	8,460	421	6.69	28.20				
1924	2,099	9,391	447	7.00	31.30				
1925	2,115	9,752	461	7.07	32.62				
1926	2,323	10,918	470	7.77	36.51				
1927	2,304	10,709	465	7.71	35.82				
1928	2,431	11,811	486	8.10	39.51				
1929	2,475	12,282	496	8.28	41.08				
1930	2,277	10,012	439	7.62	33.49				
1931	2,085	8,330	400	6.97	27.86				
1932	2,133	8,858	415	7.11	29.53				
1933	2,290	10,900	476	7.66	36.45				
1934	2,568	13,849	539	8.59	46.32				
1935	2,862	16,135	563	9.57	53.96				
1936	3,075	17,824	579	10.25	59.41				
1937	3,012	19,615	651	10.08	65.60	3,862	1,619	0.13	0.08
1938	2,992	23,428	783	10.01	78.36	2,341	1,015	0.08	0.04

주: 1910~1924년의 일평균실적은 년간영업일수 300일 기준 산정

(단위: 천장, 십억원 · 환)

연도	어음교환		장당평균	일평균 교환실적		부도(장, 백만환 · 원)		부도율(%)	
	장 수	금 액	금액(천환 · 원)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39	3,397	3.4	1.0	11.36	0.01	1,753	1.2	0.05	0.03
1940	3,511	4.5	1.3	11.70	0.01	2,267	3.1	0.06	0.07
1941	3,536	5.2	1.5	11.83	0.02	2,892	3.6	0.08	0.07
1942	3,646	6.5	1.8	12.20	0.02	2,402	3.6	0.07	0.05
1943	3,464	7.8	2.2	11.59	0.03	2,107	4.2	0.06	0.05
1944	2,763	9.5	3.4	9.24	0.03	1,083	4.0	0.04	0.04
1945	934	7.8	8.3	3.08	0.03	812	12.3	0.09	0.16
1946	557	32.1	58	1.8	0.09	3,882	145.5	0.69	0.48
1947	922	111	121	3.5	0.43	10,070	612.4	1.09	0.55
1948	117	247	210	3.9	0.82	15,367	1,525	1.10	0.62
1949	181	480	323	7.5	0.24	2,343	237	1.30	0.49
1950	1,141	490	429	3.8	1.63	17,690	3,144	1.55	0.64
1951	560	2,758	4,924	1.9	9.19	3,570	9,480	0.64	0.34
1952	2,056	16,428	7,990	8.5	54.76	11,320	36,690	0.55	0.22
1953	1,713	257	150	5.7	0.86	15,620	974	0.91	0.39
1954	2,908	625	215	9.7	2.08	45,640	4,670	1.74	0.75
1955	3,775	1,289	341	12.6	4.30	50,148	8,190	1.33	0.64
1956	4,776	2,255	472	15.9	7.52	87,920	15,940	1.84	0.71
1957	4,476	2,415	540	14.9	8.05	66,010	19,320	1.47	0.80
1958	4,924	2,719	552	16.4	9.06	73,420	20,460	1.49	0.75
1959	5,791	3,521	608	19.3	11.74	79,070	25,650	1.38	0.73
1960	6,138	4,759	775	20.4	15.87	95,460	31,296	1.56	0.66
1961	5,314	5,150	969	18	2	85,668	30,456	1.62	0.58
1962	5,524	630	114	19	2	55,890	2,480	1.01	0.39
1963	5,964	909	152	20	3	56,110	4,180	0.94	0.46
1964	6,684	1,339	200	22	4	47,016	5,560	0.70	0.42
1965	7,938	1,543	194	26	5	52,332	7,824	0.66	0.52
1966	10,038	2,059	205	33	7	73,656	11,376	0.74	0.53
1967	12,315	3,243	263	42	11	64,968	11,952	0.53	0.37

주: 1) 화폐단위중 1939~1952년은 원, 1953~1961년은 환, 1962년 이후는 원표시임
2) 1944년까지는 북한지역실적 포함

(단위: 천장, 십억원)

연도	어음교환		장당평균	일평균 교환실적		부도(장, 백만원)		부도율(%)	
	장 수	금 액	금액(천원)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68	15,230	4,592	302	50	15	91,092	17,568	0.60	0.39
1969	20,373	7,363	361	69	25	136,170	31,424	0.67	0.43
1970	27,446	8,408	306	91	28	161,260	44,780	0.58	0.53
1971	31,318	9,998	319	104	33	141,550	43,500	0.45	0.44
1972	34,216	11,078	324	115	37	94,380	34,830	0.27	0.32
1973	31,705	15,719	496	106	53	56,680	24,750	0.18	0.16
1974	27,470	22,842	832	92	76	42,780	25,720	0.16	0.11
1975	32,274	34,285	1,062	109	115	61,450	42,270	0.19	0.14
1976	45,682	52,896	1,158	152	176	88,990	81,810	0.19	0.16
1977	65,333	81,983	1,255	217	272	98,970	108,630	0.15	0.13
1978	71,749	163,090	2,273	242	549	79,950	135,430	0.11	0.08
1979	89,635	282,113	3,147	304	956	115,130	292,500	0.13	0.10
1980	108,374	325,812	3,006	366	1,101	199,700	551,810	0.18	0.17
1981	143,509	455,650	3,175	485	1,539	201,690	630,910	0.14	0.14
1982	205,776	678,795	3,299	684	2,255	235,360	815,810	0.11	0.12
1983	254,926	947,752	3,718	847	3,149	308,570	1,013,440	0.12	0.11
1984	250,698	1,104,127	4,404	841	3,705	269,280	944,530	0.11	0.09
1985	271,309	1,304,374	4,808	910	4,377	248,277	935,061	0.09	0.07
1986	301,989	1,083,165	3,587	1,020	3,659	277,925	1,056,710	0.09	0.10
1987	367,474	1,542,104	4,197	1,241	5,210	320,724	1,314,159	0.09	0.09
1988	486,475	2,825,784	5,809	1,632	9,482	303,541	1,104,603	0.06	0.04
1989	612,830	3,201,781	5,225	2,092	10,928	284,426	1,141,321	0.05	0.04
1990	779,369	4,227,123	5,424	2,642	14,329	359,911	1,579,166	0.05	0.04
1991	997,114	6,056,272	6,074	3,369	20,460	460,957	3,740,537	0.05	0.06
1992	1,179,532	5,715,350	4,845	3,971	19,244	694,686	7,039,662	0.06	0.12
1993	838,595	5,429,692	6,475	2,805	18,160	639,083	6,868,275	0.08	0.13
1994	898,623	5,781,761	6,434	3,005	19,337	991,635	9,870,161	0.11	0.17
1995	1,010,470	6,416,338	6,350	3,414	21,677	1,138,438	12,984,858	0.11	0.20

② 서울어음교환량

(단위: 천장, 십만원)

연도	어음교환		장당평균	일평균 교환실적		부도(장, 천원)		부도율(%)	
	장 수	금 액	금 액(원)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10	59	205	347	0.20	0.68				
1911	167	505	302	0.56	1.68				
1912	218	636	292	0.73	2.12				
1913	260	645	248	0.87	2.15				
1914	284	573	202	0.95	1.91				
1915	307	579	189	1.02	1.93				
1916	392	819	209	1.31	2.73				
1917	401	1,260	314	1.34	4.20				
1918	668	2,479	371	2.23	8.26				
1919	863	5,722	663	2.88	19.07				
1920	921	5,458	593	3.07	18.19				
1921	1,120	5,421	484	3.73	18.07				
1922	1,299	5,719	440	4.33	19.06				
1923	1,233	5,147	417	4.11	17.16				
1924	1,181	5,049	428	3.94	16.83				
1925	1,128	5,217	463	3.76	17.38				
1926	1,217	6,167	507	4.06	20.55	902	235	0.07	0.04
1927	1,197	6,024	503	3.99	20.08	943	272	0.08	0.05
1928	1,253	6,874	549	4.18	22.91	771	261	0.06	0.04
1929	1,286	7,414	577	4.29	24.71				
1930	1,180	6,034	511	3.93	20.11				
1931	1,074	4,871	453	3.58	16.24				
1932	1,113	5,184	466	3.71	17.28				
1933	1,206	6,711	556	4.02	22.37				
1934	1,349	8,467	628	4.50	28.22				
1935	1,489	9,689	651	4.96	32.30				
1936	1,636	11,056	676	5.45	36.85				
1937	1,615	12,409	769	5.38	41.36	1,247	668	0.08	0.05
1938	1,635	15,335	938	5.45	51.12	837	483	0.05	0.03

주: 1910~1924년의 일평균실적은 년간 영업일수 300일 기준 산정

(단위: 천장, 십억원 · 환)

연도	어음교환		장당평균	일평균 교환실적		부도(장, 백만환 · 원)		부도율(%)	
	장 수	금 액	금액(천환 · 원)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39	1,868	2.3	1.2	6.29	0.08	604	0.5	0.03	0.02
1940	1,940	3.0	1.5	6.47	0.10	1,028	1.6	0.05	0.05
1941	1,925	3.4	1.8	6.42	11.3	1,246	1.6	0.06	0.05
1942	2,010	4.4	2.2	6.70	14.6	984	1.7	0.05	0.04
1943	1,877	5.3	2.8	6.26	17.7	1,050	2.2	0.06	0.04
1944	1,419	6.7	4.7	4.73	22.2	536	2.2	0.04	0.03
1945	581	6.2	10.7	1.94	20.7	678	11.5	0.12	0.19
1946	360	22.4	62	1.20	0.08	2,975	114.9	0.83	0.51
1947	575	74.6	186	0.20	0.04	6,971	413.4	1.21	0.55
1948	724	170.4	272	0.24	0.07	10,436	1,016	1.44	0.60
1949	116	32.4	347	0.41	0.14	1,547	127.4	1.34	0.39
1950	747	324.9	435	2.49	1.08	13,560	2,390	1.82	0.73
1951	0.91	5.17	57	0.30	0.02	-	-	-	-
1952	169	604.1	3,575	0.56	2.01	1,530	2,490	0.90	0.41
1953	490	74.9	153	1.63	0.25	9,790	550	2.00	0.73
1954	1,438	319.6	222	4.79	1.07	38,660	3,700	2.69	1.16
1955	2,121	705.0	332	7.07	2.35	37,540	5,890	1.77	0.84
1956	2,643	1,211.6	458	8.81	4.04	71,050	12,530	2.69	1.03
1957	2,513	1,446.4	576	8.38	4.82	34,490	9,970	1.37	0.69
1958	3,009	1,739.1	578	10.03	5.80	41,770	11,400	1.39	0.67
1959	3,760	2,282.8	607	12.53	7.61	45,930	14,600	1.22	0.64
1960	4,178	3,294.5	789	13.93	10.98	60,410	19,490	1.45	0.59
1961	3,519	3,601.9	1,024	12	12	56,232	19,608	1.59	0.83
1962	3,563	464	130	12	2	32,028	1,900	0.90	0.41
1963	3,825	632	165	13	2	33,552	2,664	0.89	0.47
1964	4,370	968	222	15	3	28,836	3,588	0.66	0.41
1965	5,216	1,074	206	17	4	31,308	4,848	0.59	0.47
1966	6,937	1,424	205	23	5	45,840	7,584	0.66	0.56
1967	8,813	2,321	263	30	8	37,980	7,464	0.43	0.30

주: 1) 화폐단위중 1939~1952년은 원, 1953~1961년은 환, 1962년 이후는 원표시임
2) 1951년에는 6·25전쟁으로 11월~12월에만 어음교환이 이루어짐(부도자료 입수 불가)

(단위: 천장, 십억원)

연도	어음교환		장당평균	일평균 교환실적		부도(장, 백만원)		부도율(%)	
	장 수	금 액	금액(천원)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68	10,528	3,303	314	35	11	56,604	10,740	0.48	0.33
1969	14,728	5,591	380	50	19	83,021	22,093	0.56	0.39
1970	20,901	6,362	304	69	21	100,970	31,690	0.48	0.50
1971	25,152	7,575	301	83	25	90,450	31,500	0.36	0.41
1972	28,152	8,492	302	95	29	56,060	24,400	0.20	0.28
1973	25,959	12,137	468	87	41	29,580	16,570	0.12	0.14
1974	21,806	17,920	822	73	60	23,830	17,220	0.11	0.09
1975	25,808	27,256	1,056	87	92	32,860	30,180	0.13	0.11
1976	35,122	41,126	1,172	117	137	42,680	44,850	0.12	0.11
1977	49,946	64,640	1,294	166	215	49,670	65,880	0.10	0.10
1978	54,816	135,102	2,465	185	455	41,550	88,390	0.08	0.07
1979	68,337	243,205	3,559	232	824	60,990	186,740	0.09	0.08
1980	82,422	275,847	3,347	278	932	96,540	311,400	0.12	0.11
1981	107,827	393,382	3,648	364	1,329	95,112	331,390	0.09	0.08
1982	147,023	596,736	4,059	488	1,983	116,292	481,833	0.08	0.08
1983	177,043	820,044	4,632	588	2,724	148,006	512,997	0.08	0.06
1984	167,725	957,981	5,712	563	3,215	126,644	502,710	0.08	0.05
1985	178,482	1,147,124	6,427	599	3,849	122,014	544,958	0.07	0.05
1986	195,673	934,322	4,775	661	3,156	143,411	617,285	0.07	0.07
1987	234,225	1,304,602	5,724	791	4,529	173,503	807,573	0.06	0.06
1988	300,959	2,533,227	8,417	1,010	8,501	170,992	637,461	0.03	0.03
1989	363,719	2,836,182	7,798	1,241	9,680	163,103	669,199	0.02	0.02
1990	443,344	3,710,725	8,370	1,503	12,579	204,830	873,676	0.04	0.04
1991	542,900	5,348,801	9,852	1,834	18,070	243,348	2,136,585	0.04	0.04
1992	631,809	4,952,010	7,838	2,127	16,673	341,316	3,572,345	0.05	0.07
1993	425,493	4,651,879	10,933	1,423	15,558	310,754	3,431,238	0.07	0.07
1994	449,805	4,884,201	10,858	1,504	16,335	511,505	5,097,378	0.11	0.10
1995	492,520	5,490,448	11,148	1,664	18,549	568,107	6,527,796	0.12	0.12

③ 상호어음교환량

(단위: 천장, 십억원)

연도	전 국		서 울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85	-	-	-	-
1986	42,183	24,822	39,753	21,543
1987	53,414	32,779	49,994	28,132
1988	71,757	47,837	66,483	40,900
1989	88,643	62,772	81,830	54,562
1990	115,049	88,385	106,553	77,539
1991	148,754	115,014	138,889	101,846
1992	113,378	103,943	105,586	90,614
1993	16,341	80,882	13,514	68,176
1994	14,545	92,916	11,253	77,667
1995	15,120	79,505	11,096	59,359

주: 1977~1985년 상호어음교환실적 입수 불가

④ 내국신용장

(단위: 천장, 백만US$)

전 국		서 울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489	11,739	425	10,512
659	15,058	573	13,203
874	21,256	764	18,877
1,025	28,026	901	25,116
976	29,398	867	26,787
1,121	31,714	963	28,651
1,095	24,993	953	22,032
1,098	23,804	942	21,292
1,122	24,430	975	19,905
1,145	27,344	977	22,394
1,120	28,396	937	21,982

주: 1977~1984년 내국신용장 교환실적 입수 불가

나. 은행지로실적(전국)

① 업무실적

연도	합 계		일반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납부자자동계좌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7	7,820	119	-	-	-	-	3	0.23	-	-
1978	10,269	169	-	-	-	-	4	0.41	-	-
1979	10,859	429	-	-	-	-	3	0.44	-	-
1980	11,583	685	-	-	-	-	3	0.41	-	-
1981	13,026	978	784	49	0.36	0.03	17	4	-	-
1982	16,699	1,302	2,818	206	139	3	151	41	-	-
1983	24,534	1,865	7,698	525	463	10	418	146	-	-
1984	36,710	2,780	16,762	1,019	557	14	1,073	367	-	-
1985	51,906	3,703	29,185	1,549	1,520	41	1,790	600	-	-
1986	70,387	4,980	39,369	2,085	2,227	79	2,162	736	-	-
1987	91,550	6,936	46,646	2,898	3,230	155	2,670	981	-	-
1988	114,536	10,222	57,952	4,050	4,808	259	3,222	1,344	-	-
1989	160,638	15,099	72,098	6,122	14,655	653	3,870	1,975	-	-
1990	189,259	17,675	90,685	9,028	33,157	1,340	4,544	2,743	-	-
1991	225,753	22,195	108,120	11,492	51,105	2,298	4,728	3,447	-	-
1992	277,784	28,143	129,241	14,130	73,259	4,340	5,102	4,231	-	-
1993	336,414	35,215	148,651	17,563	98,746	5,948	5,691	4,997	-	-
1994	407,218	43,756	186,591	22,045	127,395	7,325	6,381	6,479	295	69
1995	509,014	47,705	278,257	26,911	157,125	8,573	6,825	7,820	1,325	293

주: 1) 업무개시 : 전기요금 1977.2.1. 대량지급 1977.5.16. 채권자계좌이체 1979.4.1. 일반계좌이체 1981.3.1.
자동계좌이체 1981.8.1. 은행신용카드 1982.6.1. 통합공과금 1983.10.1. 지방세 1986.5.1.
납부자자동계좌이체 1994.4.30
2) 업무폐지 : 통합공과금 1994.12.26. 채권자계좌이체 1995.3.1
3) 업무이관 : 은행신용카드업무 1989.11월말 (주)BC카드로 이관

(단위: 천건, 십억원)

채권자계좌이체		전기요금		통합공과금		지방세		은행신용카드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7,817	119	-	-	-	-	-	-	1977
-	-	10,265	169	-	-	-	-	-	-	1978
29	164	10,827	265	-	-	-	-	-	-	1979
46	267	11,534	417	-	-	-	-	-	-	1980
54	333	12,170	591	-	-	-	-	-	-	1981
70	340	13,008	688	-	-	-	-	513	23	1982
73	346	13,067	721	506	14.78	-	-	2,309	102	1983
79	431	12,926	784	3,470	79.18	-	-	1,843	85	1984
92	424	13,416	853	3,509	87.04	-	-	2,394	150	1985
105	459	13,923	900	3,411	92.68	5,080	286	4,110	342	1986
120	532	11,783	925	14,607	369.84	5,256	304	7,239	771	1987
133	613	10,623	1,261	17,402	481	7,887	426	12,509	1,787	1988
140	863	2,729	1,195	40,878	1,087	9,052	541	17,216	2,663	1989
172	1,179	3,014	1,349	49,582	1,419	8,105	618	-	-	1990
178	1,691	3,420	1,379	56,022	1,725	2,180	162	-	-	1991
176	1,808	3,180	1,324	65,007	2,155	1,820	155	-	-	1992
197	2,203	2,930	1,651	77,875	2,665	2,324	188	-	-	1993
228	2,905	13,059	2,146	71,227	2,633	2,042	155	-	-	1994
32	377	64,460	3,696	-	-	990	35	-	-	1995

② 이용기관 및 지로번호부여 현황

(단위: 개)

연도	지로이용기관									지로번호		
	일반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통합공과금	지방세	합계	신규	취소	누계
	OCR	정액OCR	MICR	소계								
1981	-	-	612	612	3	14	-	-	629	-	-	-
1982	-	-	911	911	5	30	-	-	946	-	-	-
1983	40	-	1,730	1,770	11	40	5	-	1,826	1,770	-	1,770
1984	135	4	3,016	3,155	15	200	5	-	3,375	1,539	154	3,155
1985	172	154	3,948	4,274	18	279	5	-	4,576	1,437	318	4,274
1986	181	320	5,335	5,836	19	349	22	61	6,287	1,564	2	5,836
1987	198	735	6,262	7,195	27	418	22	61	7,723	1,739	380	7,195
1988	275	1,036	6,935	8,846	39	465	56	94	9,500	2,150	499	8,846
1989	372	1,566	8,298	10,436	59	506	77	104	11,182	2,702	1,112	10,436
1990	452	1,892	9,149	11,493	78	547	77	104	12,299	3,442	2,385	11,493
1991	629	2,505	11,225	14,359	104	601	78	92	15,234	4,585	1,719	14,359
1992	816	3,196	12,904	16,916	129	636	106	111	17,898	3,888	1,331	16,916
1993	1,021	3,693	12,887	17,601	170	609	109	153	18,642	4,921	4,236	17,601
1994	1,500	4,201	14,952	20,653	220	630	109	145	21,757	4,934	1,882	20,653
1995	2,116	4,643	16,230	22,989	246	645	-	108	23,988	5,661	5,250	22,989

다. 금융전산망실적

(단위: 천건, 십억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C D	현금 지급	현금인출	4,536	481	11,431	1,301	14,858	1,886	19,590	2,843
		잔액조회	1,377	-	4,138	-	5,729	-	7,411	-
	신용카드	서비스인출	-	-	-	-	-	-	-	-
		서비스조회	-	-	-	-	-	-	-	-
	점외CD	현금인출	-	-	-	-	-	-	-	-
		잔액조회	-	-	-	-	-	-	-	-
	계좌이체	이체	-	-	-	-	-	-	-	-
		조회	-	-	-	-	-	-	-	-
	합계		5,913	481	15,569	1,301	20,587	1,866	27,000	2,843
타행환	현금송금		-	-	15	12	6,133	5,322	21,932	21,848
	수표조회		-	-	1	-	85	-	67	-
	합계		-	-	16	12	6,218	5,322	21,999	21,848
ARS	조회		-	-	2,922	-	9,713	-	22,672	-
	신용카드		-	-	-	-	254	-	1,688	-
	통지		-	-	-	-	-	-	2	-
	기타		-	-	116	-	244	-	502	-
	합계		-	-	3,038	-	10,211	-	24,864	-

주: 업무개시 CD 1988.7.1, ARS 1989.4.19, 타행환 1989.12.6

(단위: 천건, 십억원)

구 분			1992		1993		1994		199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C D	현금 지급	현 금 인 출	27,965	4,334	39,170	6,660	58,135	11,000	84,311	16,450
		잔 액 조 회	9,695	-	12,605	-	19,154	-	30,968	-
	신용 카드	서비스인출	-	-	1,128	171	10,226	1,836	19,371	3,995
		서비스조회	-	-	153	-	1,407	-	2,907	-
	점외 CD	현 금 인 출	-	-	141	8	3,745	226	14,796	978
		잔 액 조 회	-	-	37	-	909	-	4,212	-
	계좌 이체	이 체	-	-	-	-	4,060	3,345	11,940	10,592
		조 회	-	-	-	-	5,036	-	14,386	-
	합 계		37,660	4,334	53,234	6,839	102,672	16,407	182,891	32,015
타 행 환	현 금 송 금		37,604	37,903	55,465	70,170	89,758	173,391	139,057	348,131
	수 표 조 회		11	-	9	-	142	-	349	-
	합 계		37,615	37,903	55,474	70,170	89,900	173,391	139,406	348,131
A R S	조 회		32,526	-	43,639	-	54,951	-	67,163	-
	신 용 카 드		2,518	-	4,508	-	6,467	-	6,418	-
	통 지		490	-	441	-	335	-	263	-
	기 타		832	-	955	-	1,291	-	2,113	-
	합 계		36,366	-	49,543	-	63,044	-	75,957	-

라. 자금중개실적

① 외환거래

(단위: 건, 백만US$)

연도	금 액	연도	금 액	연도	건 수	금 액
1971	622	1980	-	1988	-	24,072
1972	812	1981	1,364	1989	18,295	23,334
1973	1,333	1982	5,552	1990	38,348	55,312
1974	1,571	1983	5,354	1991	55,888	81,791
1975	2,001	1984	5,969	1992	80,906	123,816
1976	3,453	1985	6,403	1993	144,505	294,381
1977	4,368	1986	9,217	1994	202,273	507,544
1978	-	1987	13,139	1995	262,002	485,615
1979	-					

주: 1978~1980년 외환거래자료 입수 불가

② 외화콜거래

(단위: 건, 백만US$, ¥, DM, £)

연도	달러화		엔 화		마르크화		파운드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89	244	906	-	-	-	-	-	-
1990	5,211	27,037	-	-	-	-	-	-
1991	5,163	30,307	1,648	149,070	-	-	-	-
1992	5,549	39,218	1,520	122,470	35	18	-	-
1993	6,453	47,465	2,667	261,540	559	447	-	-
1994	6,722	51,139	2,359	247,300	824	726	66	20
1995	4,732	45,401	2,623	290,910	1,304	998	284	57

주: 미달러화 1989.12.1, 엔화 1991.3.4, 마르크화 1992.9.1, 파운드화 1994.11.1 콜거래중개 실시

③ 원화콜거래

(단위: 백만원)

연도	금 액	연도	금 액	연도	금 액
1975	2,558	1981	50,150	1987	179,116
1976	10,207	1982	61,637	1988	232,033
1977	22,149	1983	116,699	1989	191,686
1978	45,939	1984	119,797	1990	399,854
1979	85,011	1985	158,273	1991	125,526
1980	65,460	1986	149,840		

주: 1991.5.1 원화콜거래중개업무 폐지

마. SWIFT실적

(단위: 건)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시스템메시지	35,632	43,057	44,397	49,291
고 객 송 금	638,379	1,129,332	1,580,883	2,102,988
은행간이체	342,992	746,108	1,003,937	1,280,128
외 환 매 매	31,442	134,488	239,783	351,532
추 심	23,574	52,817	107,088	170,170
유 가 증 권	6,275	41,332	121,103	231,644
신디케이트	30	2	-	6
신 용 장	583,886	1,359,544	1,881,797	2,392,988
여행자수표	196	24	203	274
특별메시지	92,321	219,852	345,200	514,753
합 계	1,754,727	3,726,556	5,324,391	7,093,774

바. COM실적

(단위: fiche)

연도	당원	은행	합계	연도	당원	은행	합계
1983	-	-	333	1990	31,930	419,671	451,601
1984	-	-	40,640	1991	39,031	413,732	452,763
1985	5,116	148,961	154,077	1992	47,379	364,636	412,015
1986	7,570	203,044	210,614	1993	57,830	339,983	397,768
1987	13,668	256,616	270,284	1994	78,409	182,487	260,896
1988	17,300	276,524	293,824	1995	106,603	39,886	146,489
1989	24,374	329,126	353,500				

업무별 참가기관 및 참가지역

가. 참가기관

참가기관명	업무별 참가일자				
	어음교환	은행지로	CD공동업무	ARS공동업무	타행환업무
한국은행	1910. 7. 1	-	-	-	-
한국산업은행	1910. 7. 1	1989. 2.13	1995. 4.26	-	1992. 2.27
농협중앙회	1934. 1. 1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90. 4. 4
조흥은행	1910. 7. 1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90. 4. 4
한국상업은행	1910. 7. 1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89.12.16
제일은행	1929. 7. 1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89.12.16
한일은행	1932.12.16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90. 4. 4
서울은행	1959.12. 1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90. 7.14
중소기업은행	1961. 8. 1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89.12.16
국민은행	1962. 2. 2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89.12.16
한국외환은행	1967. 1.30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90. 7.14
한국주택은행	1967. 7.10	1977. 2. 1	1988. 7. 1	1989. 4.19	1989.12.16
신한은행	1982. 7. 7	1982. 7. 7	1988. 7. 1	1989. 4.19	1989.12.16
한미은행	1983. 3.16	1983. 3.17	1988. 7. 1	1989. 4.19	1989.12.16
동화은행	1989. 9. 5	1989. 9. 5	1991.11. 6	1990.12.22	1990. 4. 4
동남은행	1989.11. 1	1989.11. 1	1990. 3. 8	1990.12.22	1990. 4. 4
대동은행	1989.11. 7	1989.11. 7	1990. 3. 2	1990.12.22	1990. 4. 4
한국수출입은행	-	-	-	-	-
수협중앙회	1969. 1.10	1977. 2. 1	1991. 2.28	1990.12.22	1991. 3.30
한국장기신용은행	1980. 6. 2	1989. 2.13	1991. 6. 7	1992. 9.26	1990. 7.14
신용보증기금	-	-	-	-	-
축협중앙회	1983.12. 1	1983. 9.16	1989. 6. 1	1989. 4.19	1989.12.16
대구은행	1967.10. 7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89.12.16
부산은행	1967.10.25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89.12.16
충청은행	1968. 4.22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90. 4. 4
광주은행	1968.11.20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90. 4. 4
제주은행	1969. 9.19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89.12.16
경기은행	1969.12. 8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90. 4. 4
전북은행	1969.12.10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90. 4. 4
강원은행	1970. 4. 3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89.12.16
경남은행	1970. 5.22	1977. 2. 1	1988.10. 6	1990.12.22	1989.12.16
충북은행	1971. 4.24	1977. 2. 1	1988.10. 6	1992. 2.17	1990. 4. 4
하나은행	1991. 7.15	1991. 7.15	1991.11.30	1991.11.30	1991.11.30
보람은행	1991. 9. 2	1991. 9. 2	1991.12.13	1991.12.20	1991.12.13
평화은행	1992.11. 2	1992.11. 2	1993. 2. 1	1993. 2. 1	1993. 2. 1
CITI은행	1985.10. 5	1993. 4.12	-	-	1994. 8.13
CMB	1985.10. 5	-	-	-	-
우체국	1910. 7. 1	1995. 6. 1	1995. 9.16	1995. 6.24	1995. 6.24
농협회원조합	-	1995. 6. 1	1995. 6.24	1995. 6.24	1995. 6.24
수협회원조합	-	1995. 6. 1	1995. 6.24	1995. 6.24	1995. 6.24
축협회원조합	-	1995. 6. 1	1995. 6.24	1995. 6.24	1995. 6.24

나. 참가지역

① 어음교환 (1995년말 현재)

교환소명	참가지역		참가은행		상호교환지역(실시일)	비 고
	행정구역명	참가일자	은행수	점포수		
서 울	서울특별시	1910. 7. 1	36	2,348	인천, 수원(77.3.2), 안양(81.1.5), 성남(81.1.10), 부천, 의정부(81.12.1), 청주(85.5.7), 춘천, 대전(85.7.2), 평택(86.11.3), 충주, 원주, 천안(86.11.10), 홍성(89. 6.1), 안산(90.8.10), 이천(94.7.16), 서산(95.12.18)	
	구 리 시	1976. 4.16	12	18		
	고 양 시	1976. 4.16	21	77		
	김 포 군	1976. 4.16	11	15		
	파 주 군	1976. 4.16	12	19		
	하 남 시	1978. 1.27	7	9		
	광 주 군	1978. 1.27	10	11		
	광 명 시	1982. 1.21	14	38		
	남양주시	1982. 6. 1	11	27		
	과 천 시	1982.12. 9	11	17		
	가 평 군	1986. 2.24	2	3		
부 산	부산광역시	1911. 4. 1	30	542	울산(84.5.10), 창원(85.8.2), 진주(89.10.4), 김해(94.7.12), 양산(95.12.18)	
대 구	대구광역시	1921. 7. 1	28	372	구미(82.11.1), 포항, 경주(85.8.1), 김천(94.10.4)	
	경 산 시	1967.10.10	11	29		
	영 천 시	1985.10. 2	4	9		
	성 주 군	1986. 6.21	2	3		
	고 령 군	1994. 6.20	2	3		
	청 도 군	1994. 6.20	2	3		
인 천	인천광역시	1910.12. 1	30	256	서울(77.3.2), 수원(79.1.4), 안양(81.1.5), 성남(81.1.10), 부천, 의정부(81.12.1), 평택(86.11.3), 천안(86.11.10), 안산(90.8.10), 이천(94.7.6)	
광 주	광주광역시	1943. 5. 1	24	180	목포(83.3.2), 여수, 순천(88.1.11)	
	나 주 시	1981. 9. 1	4	9		
	화 순 군	1982. 6. 1	4	6		
	장 성 군	1982. 6. 1	4	6		
	담 양 군	1984. 3.16	2	3		
	영 광 군	1989. 1.26	3	6		
	곡 성 군	1990. 2. 9	2	3		
	함 평 군	1992. 1. 3	2	3		

주: 참가은행(은행수, 점포수)은 금융기관공동코드집에 의한 실제참가점포 기준임

교환소명	참가지역		참가은행		상호교환지역(실시일)	비 고
	행정구역명	참가일자	은행수	점포수		
대 전	대전광역시	1944. 5. 1	27	188	청주(85.5.1), 서울(85.7.2), 천안(86.12.5), 논산(91.10.15)	
	금 산 군	1986. 5. 1	4	5		
	옥천군(충북)	1987. 5.14	4	5		
	논산군두마면(용동·석계·부남·정장·남선리)	1989. 7. 1	4	5		
	영동군(충북)	1993. 2.20	3	4		
수 원	수 원 시	1965. 8. 1	24	93	서울(77.3.2), 인천(79.1.4), 안양(81.1.5), 성남(81.1.10), 부천, 의정부(81.12.1), 청주(86.8.11), 평택(86.11.3), 천안(86.11.10), 안산(90.8.10), 이천(94.7.6)	
	오 산 시	1978. 8. 1	7	9		
	용 인 군	1978. 8. 1	16	43		
	화 성 군	1980. 1. 1	3	5		
안 양	안 양 시	1981. 1. 5	25	89	서울, 인천, 수원(81.1.5), 성남(81.1.10), 부천, 의정부(81.12.1), 평택(86.11.3), 천안(86.11.10), 안산(90. 8.10), 이천(94.7.6)	• 1966. 6 시흥군 안양읍(현 안양시) 서울어음교환소 참가
	군 포 시	1981. 1. 5	13	22		
	의 왕 시	1981. 1. 5	5	10		
성 남	성 남 시	1981. 1. 5	24	101	안양(81.1.5), 서울, 인천, 수원(81.1.10), 부천, 의정부(81.12. 1), 평택(86.11.3), 천안(86.11.10), 안산(90. 8.10), 이천(94.7.6)	• 1976. 5 성남시 서울어음교환소 참가
의정부	의 정 부 시	1981.12. 1	16	33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부천(81.12.1), 평택(86.11.3), 천안(86.11.10), 안산(90.8.10), 이천(94.7.6)	• 1976. 4 의정부시 서울어음교환소 참가
	양 주 군	1981.12. 1	3	4		
	동 두 천 시	1982. 6. 1	4	5		
	포 천 군	1982. 6. 1	6	10		
	연 천 군	1983. 9. 1	3	4		
	철 원 군	1987. 2. 1	3	7		
부 천	부 천 시	1981.12. 1	25	90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의정부(81.12.1), 평택(86.11.3), 천안(86.11.10), 안산(90. 8.10), 이천(94.7.6)	• 1966. 6 부천군 소사읍(현 부천시) 서울어음교환소 참가
평 택	평 택 시	1986.11. 3	13	36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의정부, 청주(86.11.3), 천안(86.11.10), 안산(90.8.10), 이천(94.7.6)	• 1977.7 평택군평택읍(현 평택시), 안성군 수원어음교환소 참가
	안 성 군	1986.11. 3	9	12		

교환소명	참가지역		참가은행		상호교환지역(실시일)	비 고
	행정구역명	참가일자	은행수	점포수		
안 산	안 산 시	1990. 8.10	22	52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천안(90.8.10), 이천(94.7.6)	• 1981.4 반월공단출장소(현안산시), 1981.1 시흥군(현시흥시) 안양어음교환소 참가
	시 흥 시	1990. 8.10	5	8		
이 천	이 천 군	1994. 7. 4	13	18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천안, 청주, 안산(94.7.6)	• 1980.1 이천군,여주군 수원어음교환소 참가 • 1986. 2 양평군 서울어음교환소 참가
	여 주 군	1994. 7. 4	6	9		
	양 평 군	1994. 7. 4	3	4		
춘 천	춘 천 시	1955.12.13	18	34	서울(85.7.2)	
	홍 천 군	1991. 4.22	4	5		
강 릉	강 릉 시	1965. 1. 1	15	30	속초, 동해(86.11. 1)	
원 주	원 주 시	1965. 8. 1	11	22	서울(86.11.10)	
	횡 성 군	1989.11.10	2	3		
속 초	속 초 시	1970. 1. 4	9	13	강릉, 동해(86.11.1)	
	양 양 군	1991. 9. 9	4	4		
	고 성 군	1992. 7. 1	3	3		
동 해	동 해 시	1980. 7. 1	7	11	강릉, 속초(86.11.1)	
	삼 척 시	1986.11. 1	5	10		
태 백	태 백 시	1986.10.13	5	9		
청 주	청 주 시	1951.11. 1	23	76	대전(85.5.1), 서울(85.5.7), 수원(86.8.11), 충주(87.5.1), 평택(86.11.3), 이천(94.7.6)	
	청 원 군	1951.11. 1	1	1		
	진 천 군	1986.10. 1	4	7		
	괴 산 군	1986.10. 1	5	9		
	음 성 군	1987. 5. 1	4	5		
	보 은 군	1987. 5. 1	2	3		
	연기군(충남)	1987. 5. 1	6	8		
충 주	충 주 시	1965. 1. 1	11	20	서울(86.11.10), 청주(87.5.1)	
제 천	제 천 시	1982. 1. 4	8	16		
	단 양 군	1988. 3.14	2	3		
천 안	천 안 시	1965. 8. 1	19	38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86.11.10), 대전(86.12.5), 안산(90.8.10), 이천(94.7.6)	
	아 산 시	1986. 6.13	8	12		

교환소명	참가지역		참가은행		상호교환지역(실시일)	비 고
	행정구역명	참가일자	은행수	점포수		
홍 성	홍 성 군	1987. 8.17	10	14	서울(89.6.1)	
	예 산 군	1987. 8.17	4	6		
	보 령 시	1987. 8.17	6	9		
	청 양 군	1987. 8.17	2	3		
공 주	공 주 시	1987.12. 1	6	10		
논 산	논 산 군 (대전어음교환소 참가지역 제외)	1987.12. 1	9	15	대전(91.10.15)	
	부 여 군	1987.12. 1	3	5		
서 산	서 산 시	1995.12.18	12	19	서울, 홍성(95.12.18)	• 1987.8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홍성어음교환소 참가
	당 진 군	1995.12.18	7	9		
	태 안 군	1995.12.18	4	5		
전 주	전 주 시	1949. 8.21	22	85	군산, 익산(81.3.16), 정읍(87.12.1)	
	완 주 군	1949. 8.21	3	6		
	김 제 시	1987. 8.17	5	6		
군 산	군 산 시	1924. 2. 1	19	34	전주(81.3.16), 익산, 정읍(87.12.1)	
	서 천 군	1994. 2. 1	4	6		
익 산	익 산 시	1965. 1. 1	15	37	전주(81.3.16), 군산, 정읍(87.12.1)	
정 읍	정 읍 시	1982. 4. 1	7	11	전주, 군산, 익산(87.12.1)	
	고 창 군	1995.11. 6	2	3		
남 원	남 원 시	1985. 5. 6	6	6		
목 포	목 포 시	1923.12. 1	16	34	광주(83.3.2), 여수, 순천(88.1.11), 해남(95.4.20)	
	무 안 군	1988. 6. 1	3	4		
	신 안 군	1988. 9.20	-	-		
여 수	여 수 시	1949.11. 1	13	22	순천(87.6.1), 광주, 목포(88.1.11)	
	여 천 시	1971. 1. 1	8	10		
	여 천 군	1971. 1. 1	4	5		
순 천	순 천 시	1979. 4. 2	16	31	여수(87.6.1), 광주, 목포(88.1.11)	
	광 양 시	1985. 6.24	12	23		
	보 성 군	1989. 5.29	4	7		
	구 례 군	1993.12.20	2	2		
해 남	해 남 군	1991. 4.19	9	16	목포(95.4.20)	
	장 흥 군	1991. 4.19	3	5		
	강 진 군	1991. 4.19	3	3		

교환소명	참가지역		참가은행		상호교환지역(실시일)	비 고
	행정구역명	참가일자	은행수	점포수		
해 남	영 암 군	1991. 4.19	2	3		
(계속)	완 도 군	1991. 4.19	3	4		
	진 도 군	1991. 4.19	3	3		
포 항	포 항 시	1965. 1. 1	21	62	대구, 구미, 경주(85.8.1), 김천(94.10.4)	
경 주	경 주 시	1973. 7.26	15	25	대구, 구미, 포항(85.8.1), 김천(94.10.4)	
안 동	안 동 시	1975.10. 1	10	16		
구 미	구 미 시	1979. 4. 2	17	34	대구(82.11.1), 포항, 경주(85.8.	• 1983.10 칠곡군 왜관읍
	칠 곡 군	1995.11. 6	8	9	1), 김천(94.10.4)	대구어음교환소 참가
김 천	김 천 시	1982. 2. 1	7	11	대구, 구미, 포항, 경주(94.10.4)	
영 주	영 주 시	1982. 2. 5	7	14		
창 원	마 산 시	1956.11. 1	21	75	부산, 울산(85.8.2), 진주(89.10.4),	• 1953. 4 마산시,
	창 원 시	1980. 4. 1	22	73	김해(94.7.12), 양산(95.12.18)	1980. 4 창원시
	함 안 군	1990. 8.13	2	3		마산어음교환소 참가
	창 녕 군	1990.12.10	2	4		• 1982. 2 진해시
	밀 양 시	1991. 9.16	5	7		진해어음교환소(1995.
	의 령 군	1993. 2.20	2	3		11.24 폐쇄) 참가
	진 해 시	1995.11.16	7	11		
진 주	진 주 시	1965.12. 1	18	38	부산, 창원, 울산(89.10.4), 김해	• 1984. 8 삼천포시
	산 청 군	1994. 7. 1	2	2	(94.7.12), 양산(95.12.18)	(현 사천시) 삼천포
	함 양 군	1995.10.23	2	2		어음교환소 참가
	사 천 시	1995.11.16	8	14		(1995.11.24 폐쇄)
울 산	울 산 시	1970. 1. 4	27	127	부산(84.5.10), 창원(85.8.2), 진주	
					(89.10.4), 김해(94.7.12), 양산	
					(95.12.18)	
통 영	통 영 시	1970. 1. 4	10	17		
	거 제 시	1992. 6. 2	8	17		
	고 성 군	1992. 6. 2	3	4		
김 해	김 해 시	1994. 7.11	15	31	부산, 창원, 울산, 진주(94.7.12),	• 1979. 6 김해시
					양산(95.12.18)	부산어음교환소 참가
양 산	양 산 군	1995.12.18	17	29	부산, 창원, 울산, 진주, 김해(95.	• 1978.12 양산군
					12.18)	부산어음교환소 참가
제 주	제 주 시	1963. 1. 1	16	59		
	서 귀 포 시	1978. 2. 1	7	17		
	북 제 주 군 (추자면 제외)	1979. 6. 1	3	3		
	남 제 주 군	1983. 4.20	2	6		

② 은행지로 (1995년말 현재)

업 무 명	개시일자 (최초실시지역)	업 무 확 대 실 시 내 역	
		실시일자	행정구역명 또는 업무내용
일반계좌이체	1981. 3. 1 (서울)	1981.12. 1	• 부천
		1982. 7. 1	• 인천, 수원, 안양, 안산, 성남, 천안, 의정부, 동두천, 구리, 송탄, 평택
		1983. 8. 1	• 부산, 대구, 광주, 김해, 나주
		10. 1	• 대전, 전주, 울산, 마산, 경주, 창원
		1984. 7.20	• 군산, 이리, 목포, 구미, 진해
		10. 1	• 청주, 춘천, 강릉
		1985. 8. 1	• 원주, 동해, 진주, 포항, 여수, 순천, 광명, 과천
		10. 1	• 영천
		1986. 1. 1	• 온양
		11. 1	• 송정
		1987. 7. 1	• 여천, 삼척
		8. 1	• 남원, 정주, 제천, 충주, 태백, 속초, 영주, 안동, 김천, 제주, 서귀포
		1989. 1. 1	• 의왕, 시흥, 군포, 김제, 동광양, 미금, 하남, 경산
		8. 1	• 홍성, 서산, 대천
		12. 1	• 충무, 장승포
		1990. 9. 1	• 삼천포
		1991.10. 1	• 밀양시, 밀양군
		1992. 2. 1	• 고양
		1992.12.14	• 충남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
		1993. 4. 1	• 충북 영등군, 경남 의령군
		1994. 3. 2	• 충남 서천군
		7. 1	• 경북 고령군, 청도군
		8. 1	• 전남 해남, 장흥, 강진, 영암, 완도, 진도군, 경남 산청군
		1995. 6. 1	• 전국 확대(울릉군, 옹진군 등 일부 도서지역 제외)
자동계좌이체	1981. 8. 1 (서울)	1982. 1. 4	•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 실시
		7. 1	• 전화요금 자동계좌이체 실시
			• 은행신용카드대금 자동이체 실시
		1983. 5. 1	• 생명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실시
		1985. 8. 1	•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 전역
		1988. 8. 1	• 전화요금 자동계좌이체 실시지역 확대(지로업무 실시지역 전역)
			•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 실시지역 확대(경기도 전역)
		11. 1	•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 실시지역 확대(지로업무 실시지역 전역)
		1989. 1. 4	• 55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온라인출금 가능점포에 한함)
		6. 1	• 통합공과금 자동계좌이체 실시(서울시)
		10. 1	• 통합공과금 자동계좌이체 실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주시)
		1990. 5. 1	• 통합공과금 자동계좌이체 실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춘천, 청주, 전주, 울산, 마산, 창원, 제주)
		1992.12.14	•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
		1993. 4. 1	•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
		4.26	• 국세 자동계좌이체 실시(중부 및 반포세무서 관할지역)
		7.26	• 체신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실시

업 무 명	개시일자 (최초실시지역)	업 무 확 대 실 시 내 역	
		실시일자	행정구역명 또는 업무내용
대량지급	1981. 7. 9	1985. 8. 1	•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 전역
		1989. 8. 1	• 충무, 장승포
		1990. 9. 1	• 삼천포시
		1992.12.14	•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
		1993. 4. 1	•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
통합공과금	1983.10. 1 (서울 용산구, 동작구, 대전, 경주시)	1986.12. 1	• 인천, 대구
		1987. 1. 5	• 서울 은평구, 강남구,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1988.11. 1	• 서울시 전역, 부산, 광주
		1990. 2. 1	•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성남, 부천, 안양, 마산, 울산
		1992. 7. 1	• 의정부, 광명, 안산, 과천, 구리, 미금, 시흥, 군포, 하남, 원주, 강릉, 충주, 천안, 군산, 이리, 포항, 안동, 경산, 충무, 김해, 의왕
		8. 1	• 제천, 구미, 영주, 진주, 진해
		9. 1	• 여수, 순천
		1993. 3. 1	• 목포
			• 통합공과금업무 폐지(1994.12.26)
지방세	1986. 5.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경기도 12개시 재산세)	1988. 3. 1	• 서울시 자동차세 수납 실시
		1989. 6.10	• 경기도 시흥, 군포, 오산, 의왕, 미금시
		1990.11. 1	• 서울시 주차위반과태료 수납실시
		1991. 1. 3	• 서울시 재산세, 자동차세 지로이용 해지
		5. 1	• 서울시 주차위반과태료 지로이용 해지
		1992. 6. 1	• 부산시 재산세 지로이용 해지
		12.14	•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
		1993. 4. 1	•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
		6. 1	• 29개 시군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로이용 실시 (의정부, 광명, 안산, 과천, 구리, 미금, 시흥, 군포, 하남, 원주, 강릉, 충주, 천안, 군산, 이리, 포항, 안동, 경산, 충무, 김해, 의왕, 제천, 구미, 영주, 진주, 진해, 여수, 순천, 목포)
		1994. 4. 7	• 대구, 인천시 지방세 지로이용 해지
		1995. 4.21	• 광주, 대전시 지방세 지로이용 해지
		5.30	• 경기도 지방세 지로이용 해지
전기요금	1977. 2. 1 (서울)	1977. 6. 1	• 성남시, 과천, 인천, 구리, 고양, 광명, 하남
전기요금(OCR)	1994.11.20		• 통합공과금 실시지역(47개시) 일반전력분
납부자자동계좌이체	1994. 4.30	1994.12.23	• 지로 전참가은행으로 확대
채권자계좌이체	1979. 4. 1 (서울)		• 채권자계좌이체업무 폐지(1995. 3. 1)

임직원변동 일람

■ 금융결제원

(단위: 명)

구 분	1986.6.2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임 원	5	6	6	6	6	6	6	6	6	6	6
1 급	11	11	12	10	10	12	13	14	16	18	16
2 급	22	28	28	24	27	27	22	19	22	26	30
3 급	24	26	27	32	37	40	48	50	48	49	54
4 급	38	46	52	57	62	66	72	73	81	86	94
사 원	149	150	160	178	197	224	230	262	456	467	516
여 자 사 원[2]	132	133	134	138	164	196	196	184	-	-	-
서 무 직 원	44	43	43	43	42	41	40	38	38	33	33
청 원 경 찰	13	13	13	12	13	13	13	16	16	16	16
상 용 사 무 원[1]	100	101	92	65	37	3	3	3	-	-	-
합 계	538	558	566	565	595	628	643	665	683	703	765

주: 1) 상용사무원(파출분소장 제외)은 1988~1990년 기간중 여자사원으로 전환
2) 여자사원은 1993.5 사원으로 전환

■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단위: 명)

구 분	1984.5.10	1984	1985	1986.5.31
임 원	3	3	3	3
1 급	15	13	10	7
2 급	16	17	21	20
3 급	20	20	21	18
4 급	18	18	18	16
사 원	102	112	104	76
여 자 사 원	98	93	91	78
서 무 직 원	25	24	26	31
청 원 경 찰	12	12	13	13
상 용 사 무 원	-	-	-	-
합 계	309	312	307	262

■ 은행지로관리소

(단위: 명)

구 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임 원	1	1	1	1	1	2
1 급	1	2	2	2	2	4
2 급	-	-	-	-	-	4
3 급	2	2	6	4	5	7
4 급	10	9	6	9	9	15
사 원	14	17	19	28	28	72
여 자 사 원	9	8	45	43	43	70
서 무 직 원	7	7	10	10	10	12
청 원 경 찰	-	-	-	-	-	-
상 용 사 무 원	-	-	-	-	-	-
합 계	44	46	89	97	98	186

(단위: 명)

구 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5.31
임 원	2	2	2	2	1	1
1 급	3	2	2	4	4	4
2 급	3	3	2	3	3	2
3 급	3	5	6	6	6	6
4 급	10	12	12	16	16	22
사 원	24	41	50	74	77	73
여 자 사 원	57	54	56	55	55	54
서 무 직 원	10	12	12	12	12	13
청 원 경 찰	-	-	-	-	-	-
상 용 사 무 원	-	-	-	43	58	88
합 계	112	131	142	215	232	263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금융결제원

가. 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86	1987	1988	1989	1990
자산	예치금	2,426,606	3,793,518	4,511,520	5,137,297	6,396,228
	유가증권	20,044	30,650	31,976	34,472	44,627
	본·지부	-	-	-	-	-
	미수금	-	-	-	-	-
	가지급금	-	250	-	-	-
	국민연금전환금	-	-	-	-	-
	보증금	2,151,754	2,588,613	3,168,563	4,341,367	6,883,681
	주택구입지원금	-	260,000	527,600	667,958	1,018,487
	고정자산	624,704	935,703	1,504,659	1,990,294	2,602,513
	합계	5,223,108	7,608,735	9,744,317	12,171,388	16,945,536
부채	예수금	22,290	121,270	62,768	83,271	160,404
	미지급금	96,964	-	-	-	-
	본·지부	-	-	-	-	-
	충당금	1,166,502	1,600,567	1,980,957	2,351,715	2,814,736
	소유물조정금	329,590	645,698	1,228,009	1,727,173	2,351,445
	기본재산	2,153,155	2,877,605	3,591,827	6,130,903	9,889,322
	출자금	-	-	-	-	-
	가입금	-	-	-	300,000	300,000
	참가금	-	-	-	-	-
	적립금	1,653,255	296,489	302,484	314,035	323,015
	사무실임차기금	-	1,803,315	2,164,342	2,940,599	4,234,449
	주택임차기금	499,900	777,802	1,125,002	1,535,502	2,939,850
	별도적립금	-	-	-	1,040,768	2,092,008
	후기이월금	1,454,607	2,363,595	2,880,756	1,878,326	1,729,628
	합계	5,223,108	7,608,735	9,744,317	12,171,388	16,945,536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91	1992	1993	1994	1995
자산	예치금	13,596,245	22,834,657	17,822,115	28,205,868	39,778,605
	유가증권	59,220	61,360	315,455	334,024	348,414
	본·지부	-	-	-	-	-
	미수금	-	88	-	-	-
	가지급금	-	-	229,350	516,038	841,798
	선급법인세	-	-	-	-	522,073
	국민연금전환금	-	-	178,043	395,381	-
	수익사업전출금	-	-	-	-	4,034,481
	보증금	10,772,681	12,115,457	15,503,086	17,891,609	21,581,495
	주택구입지원금	1,178,725	1,256,845	1,490,899	1,949,705	1,936,511
	고정자산	5,080,724	5,364,118	20,562,210	21,794,625	17,930,407
	합계	30,687,595	41,632,526	56,101,159	71,087,250	86,973,784
부채	예수금	168,742	217,804	200,934	307,393	498,447
	미지급금	8,350	-	6,500,000	5,000,000	3,500,000
	본·지부	-	-	-	-	-
	충당금	3,810,200	4,912,610	5,934,093	6,746,985	2,304,757
	소유물조정금	4,846,805	5,236,040	13,940,613	16,673,028	18,970,679
	기본재산	19,413,680	25,158,743	23,854,326	40,473,157	57,326,793
	출자금	-	-	-	-	-
	가입금	3,450,000	4,480,000	5,180,000	5,880,000	6,580,000
	참가금	-	16,500	346,200	11,861,000	21,667,300
	적립금	341,891	345,021	352,141	358,341	375,541
	사무실임차기금	7,749,009	7,339,064	8,955,057	11,025,117	14,067,486
	주택임차기금	4,146,510	6,296,510	7,586,510	8,716,000	9,420,000
	별도적립금	3,726,270	6,681,649	1,434,418	2,632,700	5,216,416
	후기이월금	2,439,818	6,107,327	5,671,193	1,886,688	4,373,108
	합계	30,687,595	41,632,526	56,101,159	71,087,250	86,973,784

〈수익사업〉

■ 콜거래중개사업(1989. 10~1991. 5)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1989	1990	1991
Ⅰ. 자 산			
1. 유동자산	(5,604)	(114,390)	(155,032)
기업자유예금	5,604	16,390	532
금전신탁		98,000	154,500
2. 투자와 기타자산	(1,250)	(1,250)	(1,250)
전화가입권	1,250	1,250	1,250
3. 고정자산	(8,539)	(10,957)	(9,860)
집기	9,630	15,301	15,301
감가상각충당금	-1,091	-4,344	-5,441
자 산 총 계	15,393	126,597	166,142
Ⅱ. 부 채	10,680	36,193	26,122
1. 유동자산	(119)	(19,342)	(6,683)
예수금	119	447	-
미지급법인세		18,895	6,683
2. 고정자산	(10,561)	(16,851)	(19,439)
퇴직급여충당금	10,561	16,851	19,439
Ⅲ. 자 본	4,713	90,404	140,021
1. 자본금	(10,880)	(10,880)	(10,880)
2. 이익잉여금	-6,167	(79,524)	(129,140)
임의적립금			79,524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49,616
- 이월결손금		-6,168	-
- 전기손익수정계산서			-6,560
- 당기순이익	-6,167	85,692	56,17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393	126,597	166,142

■ VAN사업(1995. 4~12)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1995
자산	Ⅰ. 유동자산	6,781,485
	(1) 당좌자산	(3,659,257)
	보통예금	638
	기업자유예금	59,201
	금전신탁	1,800,000
	양도성정기예금	1,500,000
	외상매출금	122,868
	미수이자	176,550
	(2)재고자산	(311,410)
	상품	311,410
	(3)기타 유동자산	(2,810,818)
	부가세대급금	33,671
	선급법인세	577,505
	선급비용	40,787
	고유목적사업전출금	2,158,855
	Ⅱ. 기타자산	24,000
	전화가입권	24,000
	Ⅲ. 고정자산	34,539
	집기	61,712
	감가상각충당금	-27,173
자 산 총 계		6,840,024
부채	Ⅰ. 유동부채	3,148,213
	지급어음	453,750
	예수금	13,103
	미지급비용	43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680,928
	Ⅱ. 고정부채	29,735
	퇴직급여충당금	36,219
	국민연금전환금	-6,484
	부 채 총 계	3,177,948
자본	Ⅰ. 자본금	4,034,481
	Ⅱ. 이익잉여금	-372,405
	당기순이익	-372,405
	자 본 총 계	3,662,07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840,024

나. 수지결산서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1986		1987		1988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지출	소 유 물 비	1,528,673	1,487,099	1,126,821	1,043,852	1,470,846	1,292,059
	인 건 비	3,581,629	3,401,564	4,911,020	4,595,828	5,302,013	5,158,825
	경 비	2,587,631	2,295,372	3,272,037	2,964,923	4,177,293	3,616,664
	전 산 업 무 비	1,950,112	1,773,530	2,893,416	2,047,815	3,642,347	2,526,000
	예 비 비	232,369	-	48,088	-	398,655	-
	후 기 이 월 금	-	1,454,607	-	2,363,595	-	2,880,756
	합 계	9,880,414	10,412,172	12,251,382	13,016,014	14,991,154	15,474,303
수입	사 원 분 담 금	2,698,531	2,692,230	3,589,817	3,589,817	3,979,681	3,978,383
	참가은행분담금	792,183	1,248,476	800,000	1,410,207	1,000,000	1,298,265
	어음교환실적분담금	1,716,746	1,711,317	1,978,942	1,977,460	2,121,724	2,119,419
	지로실적분담금	2,336,503	2,336,503	3,400,000	3,400,000	3,410,000	3,410,000
	COM이용분담금	198,451	198,451	255,503	255,503	260,000	260,000
	BC처리분담금	293,863	293,863	509,568	466,089	510,000	456,032
	CD이용분담금	-	-	-	-	980,000	980,000
	콜거래운영분담금	99,000	150,934	100,000	173,722	150,000	228,950
	유선통신이용분담금	85,957	74,443	85,946	68,003	76,155	67,819
	예금 및 국공채이자	64,958	107,252	69,999	200,372	129,999	295,378
	잡 수 입	7,000	11,481	7,000	20,233	10,000	16,462
	전 기 이 월 금	1,587,222	1,587,222	1,454,607	1,454,607	2,363,595	2,363,595
	합 계	9,880,414	10,412,172	12,251,382	13,016,014	14,991,154	15,474,303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89		1990		1991		199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지출	소유물비	1,880,942	1,749,245	3,513,591	3,397,412	7,608,649	7,305,831	2,884,946	2,591,599
	인건비	6,305,636	6,203,475	7,589,296	7,401,388	9,574,236	9,427,393	10,997,851	10,928,880
	경비	4,990,854	4,595,709	6,336,734	5,674,651	8,714,791	7,896,321	9,950,594	9,192,231
	전산업무비	5,250,520	4,489,326	6,319,299	5,680,523	7,288,920	6,569,644	11,668,638	8,642,172
	예비비	-	-	29,406	-	60,000	-	540,000	-
	후기이월금	-	1,878,326	-	1,729,628	-	2,439,818	-	6,107,327
	합계	18,427,952	18,916,080	23,788,326	23,883,602	33,246,596	33,639,007	36,042,029	37,462,210
수입	사원분담금	3,888,202	3,888,202	7,178,299	6,966,951	8,861,893	8,849,033	8,978,189	8,978,189
	참가은행분담금	130,000	250,970	176,000	282,498	280,000	347,628	-	-
	어음교환실적분담금	3,309,258	3,307,426	3,981,420	3,839,334	5,434,092	5,423,378	5,914,348	5,912,494
	지로실적분담금	3,528,325	3,528,325	5,011,950	5,011,950	7,073,237	7,073,237	7,477,635	7,477,635
	COM이용분담금	204,132	204,132	353,596	353,596	441,093	441,093	379,890	379,890
	BC처리분담금	182,440	284,695	-	-	-	-	-	-
	금융전산망분담금	3,898,684	3,898,684	-	-	-	-	-	-
	CD실적분담금	-	-	1,577,728	1,577,728	2,219,920	2,219,920	2,633,950	2,633,950
	ARS실적분담금	-	-	1,742,367	1,742,367	3,898,370	3,898,370	5,552,251	5,552,251
	타행환실적분담금	-	-	1,374,199	1,374,199	2,255,813	2,255,813	2,374,556	2,374,556
	콜거래운영분담금	150,000	174,833	-	-	-	-	-	-
	외환거래분담금	-	11,271	178,118	202,134	374,871	369,949	483,331	466,596
	유선통신이용분담금	76,155	70,370	76,155	71,253	83,679	69,993	80,061	70,644
	예금 및 국공채이자	170,000	359,792	222,000	490,597	562,000	856,786	750,000	1,592,084
	잡수입	10,000	56,625	32,000	86,502	32,000	104,178	50,000	656,103
	전기이월금	2,880,756	2,880,756	1,884,494	1,884,494	1,729,628	1,729,628	1,367,818	1,367,818
	합계	18,427,952	18,916,080	23,788,326	23,883,602	33,246,596	33,639,007	36,042,029	37,462,210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93		1994		1995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지출	소유물비	3,919,223	3,874,889	4,160,653	4,102,694	4,374,134	4,626,973
	인건비	12,102,207	11,987,475	13,823,704	13,781,840	17,581,698	17,485,870
	경비	10,849,156	10,082,055	12,773,001	11,432,261	15,147,887	13,894,322
	전산업무비	11,743,266	8,904,416	9,949,565	9,158,436	11,323,549	8,614,301
	예비비	795,000	-	-	-	-	-
	후기이월금	-	5,671,193	-	1,886,688	-	4,373,108
	합계	39,408,852	40,520,028	40,706,923	40,361,919	48,790,268	48,994,574
수입	기본분담금	5,863,540	5,863,540	5,813,049	5,813,049	10,346,525	10,346,525
	참가은행분담금	-	-	-	-	-	-
	어음교환실적분담금	6,357,388	6,357,388	6,328,384	6,328,384	7,290,242	7,290,242
	지로실적분담금	9,111,399	9,111,399	10,489,214	10,489,214	13,991,718	13,991,718
	COM이용분담금	527,643	527,643	520,762	520,762	536,663	536,663
	BC처리분담금	-	-	-	-	-	-
	금융전산망분담금	-	-	-	-	-	-
	CD실적분담금	2,637,407	2,637,407	2,506,720	2,506,720	3,304,474	3,304,474
	ARS실적분담금	4,560,948	4,560,948	4,243,890	4,243,890	4,581,331	4,581,331
	타행환실적분담금	3,016,329	3,016,329	2,695,411	2,695,411	3,012,238	3,012,238
	콜거래운영분담금	-	-	-	-	-	-
	외환거래분담금	687,399	687,399	626,897	626,897	856,129	856,129
	유선통신이용분담금	72,472	111,589	131,412	116,044	134,260	134,835
	예금 및 국공채이자	1,000,000	2,036,087	2,000,000	1,539,656	2,700,000	2,680,928
	잡수입	60,000	95,972	100,000	230,709	150,000	372,803
	전기이월금	5,514,327	5,514,327	5,251,184	5,251,184	1,886,688	1,886,688
	합계	39,408,852	40,520,028	40,706,923	40,361,919	48,790,268	48,994,574

〈수익사업〉

■ 콜거래중개사업(1989. 10~1991. 5)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1989	1990	1991
Ⅰ. 영업수익		(203,577)	(90,232)
1. 콜거래수수료	-	203,577	90,163
2. 잡수입	-		69
Ⅱ. 영업비용	(6,204)	(93,964)	(40,208)
1. 기준급여	1,400	18,480	7,915
2. 제수당	753	10,134	3,902
3. 상여금	1,058	11,660	3,640
4. 연월차휴가보상금	519	4,458	3,733
5. 잡급	-	1,692	800
6. 급식비	471	4,732	1,718
7. 보건의료비	-	78	98
8. 복리비	918	9,218	6,521
9. 체육교양비	-	350	-
10. 소모품비	-	1,005	262
11. 피복비	-	558	-
12. 도서신문비	-	77	27
13. 인쇄비	393	894	780
14. 연료비	-	653	409
15. 통신비	-	5,181	1,833
16. 전력수도료	-	6,703	2,147
17. 세금공과	-	216	139
18. 수선유지비	-	9	-
19. 광고선전비	-	77	88
20. 용역비	-	7,447	2,419
21. 업무추진비	-	779	92
22. 전산업무부	-	21	-
23. 감가상각비	692	3,254	1,097
24.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6,289	2,588
Ⅲ. 영업이익	-6,204	109,612	50,024
Ⅳ. 영업외수익	(36)	(4,550)	(12,835)
예금 및 국공채이자	36	4,550	12,835
Ⅴ. 경상이익	-6,168	114,162	62,859
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6,168	114,162	62,859
Ⅶ. 법인세 등	-	28,471	6,682
Ⅷ. 당기순이익	-6,168	85,691	56,177

■ VAN사업(1995. 4~12)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1995
Ⅰ. 매출액	(440,173)
1. 상품매출액	440,170
매출에누리와 환입	0
2. 수입수수료	3
직불카드 수수료	
Ⅱ. 매출원가	(371,730)
1. 기초상품 재고액	0
2. 당기매입액	683,140
가. 당기상품 총매입액	(683,140)
나. 매입에리와 환출	0
3. 기말상품 재고액	311,410
Ⅲ. 매출 총이익	68,443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46,332)
1. 기준급여	136,180
2. 제수당	69,620
3. 상여금	112,050
4. 연월차휴가보상금	21,423
5. 잡급	20,031
6. 퇴직금	36,219
7. 급식비	24,212
8. 보건의료비	787
9. 복리비	61,846
10. 체육교양비	2,766
11. 당직비	1,640
12. 국내여비	3,530
13. 소모품비	1,517
14. 비품비	180
15. 피복비	8,486
16. 도서신문비	336
17. 인쇄비	1,708
18. 차량비	1,931
19. 통신비	7,132
20. 세금공과	2,268
21. 운반보관료	2,297
22. 보험료	18
23. 광고선전비	24,500
24. 용역비	13,920
25. 업무추진비	25,910
26. 판공비	11,800
27. 감가상각비	18,803
28. 전산업무비	235,581
Ⅴ. 영업이익	-777,888
Ⅵ. 영업외수익	3,134,655
예금 및 국공채이자	3,134,655
잡수입	-
Ⅶ. 영업외비용	2,729,173
매출할인	48,24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2,680,928
Ⅷ. 경상이익	-372,406
Ⅸ. 당기순이익	-372,406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가. 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84	1985
자산	예치금	1,300,103	1,986,659
	유가증권	1,250	6,530
	보증금	73,600	515,027
	고정자산	42,971	128,468
	합계	1,417,924	2,636,684
부채	충당금	275,427	290,764
	소유물조정금	42,971	128,468
	적립금	80,452	619,793
	가수금	6,060	10,436
	후기이월금	1,013,014	1,587,222
	합계	1,417,924	2,636,684

나. 수지결산서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84		1985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지출	소유물비	82,159	70,621	473,176	471,249
	인건비	1,424,269	1,372,543	2,442,921	2,433,596
	경비	921,573	778,594	1,463,487	1,392,383
	전산업무비	716,001	685,203	1,157,515	963,844
	예비비	87,312	-	254,000	-
	후기이월금	-	1,013,014	-	1,587,222
	합계	3,231,314	3,919,975	5,791,099	6,848,294
수입	전기이월금	-	-	1,013,014	1,013,014
	사원분담금	992,207	992,207	1,656,394	1,656,394
	조합은행분담금	730,000	1,372,913	845,967	1,743,759
	교환실적분담금	1,403,199	1,403,436	2,111,767	2,109,658
	유선통신이용분담금	70,368	57,789	95,387	88,280
	콜거래운영분담금	24,000	68,468	40,000	155,252
	예금 및 국공채이자	7,340	18,737	22,270	75,331
	잡수입	4,200	6,426	6,300	6,606
	합계	3,231,314	3,919,975	5,791,099	6,848,294

은행지로관리소

가. 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76. 3.31	1976. 9.30	1977. 3.31	1977.12.31	1978.12.31	1979.12.31
자산	예치금	7,681	32,529	48,048	71,225	68,577	119,722
	유가증권	-	730	1,062	832	602	396
	미수금	7,894	9,806	11,331	283	879	-
	미수이자	-	-	-	864	625	1,083
	소유물	4,805	9,193	-	-	-	-
	고정자산	-	-	17,368	11,225	74,134	729,888
	합계	20,380	52,258	77,809	84,430	144,817	851,090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432	7,169	12,828	22,879	27,086	32,490
	가수금	1,172	1,205	1,119	152	2,219	2,448
	미지급금	8,282	8,282	8,472	10,346	-	2,003
	부가가치세	-	-	-	-	1,260	117
	감가상각충당금	-	-	2,555	-	-	-
	소유물대충	-	-	18,430	-	-	-
	고정자산대충	-	-	-	11,225	74,134	729,888
	유가증권대충	-	-	-	832	602	396
	기금	4,805	9,923	-	-	-	-
	당기잉여금	-	-	34,403	38,995	35,556	80,791
	후기이월금	5,689	25,679	-	-	-	-
	미지급법인세	-	-	-	-	3,961	2,955
	합계	20,380	52,258	77,809	84,430	144,817	851,090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80.12.31	1981.12.31	1982.12.31	1983.12.31	1984.12.31	1985.12.31
자산	예치금	230,438	220,020	374,250	438,279	554,046	887,371
	유가증권	1,306	4,076	4,371	5,411	7,415	7,698
	미수금	-	853,036	-	-	-	-
	미수이자	4,254	2,642	5,223	-	-	-
	고정자산	756,671	876,458	908,037	961,777	1,142,535	1,347,376
	합계	992,669	1,956,232	1,291,880	1,405,467	1,703,996	2,242,445
부채	가수금	2,290	6,425	6,533	8,219	9,179	12,476
	미지급금	5,818	552,234	-	-	52,579	-
	퇴직급여충당금	24,618	124	28,347	60,297	98,316	171,876
	고정자산대충	756,671	876,458	928,024	1,019,885	1,207,618	1,411,845
	유가증권대충	1,306	4,077	4,371	5,411	7,415	7,698
	적립금	-	-	15,000	30,000	34,101	42,627
	주택임차기금	-	-	-	-	58,000	176,000
	당기잉여금	201,966	516,914	309,605	281,655	236,788	419,922
	합계	992,669	1,956,232	1,291,880	1,405,467	1,703,996	2,242,445

나. 수지결산서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76. 3.31	1976. 9.30	1977. 3.31	1977.12.31	1978.12.31	1979.12.31
지출	자본지출	1,057	2,009	-	-	-	-
	경비	97,510	106,487	138,870	278,373	436,887	1,344,517
	당기잉여금	-	-	34,403	38,995	35,556	80,791
	후기이월금	5,689	25,679	-	-	-	-
	고정자산취득	-	-	-	111	3,208	-
	법인세	-	-	-	-	3,961	2,955
	기계도입비용	-	-	-	-	63,488	-
	합계	104,255	134,174	173,273	317,480	543,100	1,428,264
수입	분담금	102,070	131,833	152,340	281,332	458,975	1,361,698
	수입이자	305	317	1,187	6,833	6,876	5,226
	잡수입	823	15	278	85	82	3,036
	감가상각비	1,057	2,009	-	-	-	-
	전기잉여금	-	-	19,469	29,231	38,995	35,555
	전산용역료	-	-	-	-	37,942	22,748
	유가증권상환	-	-	-	-	230	-
	합계	104,255	134,174	173,273	317,480	543,100	1,428,264

(단위: 천원)

계정과목		1980.12.31	1981.12.31	1982.12.31	1983.12.31	1984.12.31	1985.12.31
지출	경비	1,052,074	2,229,646	1,409,970	2,272,911	2,969,141	3,834,889
	당기잉여금	201,966	516,914	309,605	281,655	236,787	419,922
	합계	1,254,040	2,746,560	1,719,575	2,554,566	3,205,929	4,254,812
수입	사원분담금	1,151,200	1,431,217	1,175,155	2,210,827	2,889,373	3,948,230
	예치금이자	18,951	44,338	25,452	34,122	31,075	62,324
	잡수입	3,098	1,069,039	2,053	12	3,826	7,471
	전기잉여금전입	80,792	201,966	516,914	309,605	281,655	236,787
	합계	1,254,040	2,746,560	1,719,575	2,554,566	3,205,929	4,254,812

전산기기 보유현황

(1995년 12월말 현재)

설 비 명	수량	용 량	설 비 명	수량	용 량
금 융 전 산 망 관 련 시 스 템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이용시스템】 〈TANDEM HIMALAYA K10004B〉			【일괄전송 및 EFT/POS 시스템】 〈HIMALAYA K10004B〉		
CPU	4	128MB	CPU	4	128MB
DISC DRIVER	6	24GB	DISC DRIVER	28	56GB
M/T	1		M/T	2	
C/T	2		C/T	2	
PRINTER	1		PRINTER	2	
【타행환공동망시스템】 〈TANDEM CYCLONE, VLX〉			【무역자동화망 접속용 시스템】 〈MIRACLE 20000〉		
CPU CYCLONE	2	32MB	CPU	4	64MB
CPU VLX	7	16MB	DISC DRIVER	5	5GB
DISC DRIVER	18	14GB	C/T	1	
M/T	4		PRINTER	1	
PRINTER	2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운용시스템】 〈TANDEM CLX〉					
CPU	6	16MB			
DISC DRIVER	6	3GB			
M/T	1				
C/T	1				
PRINTER	1				
〈자동응답장치〉	56				

* M/T: Magnetic Tape Driver, C/T: Cartridge Tape Driver

설 비 명	수량	용 량	설 비 명	수량	용 량

어 음 교 환 및 은 행 지 로 관 련 시 스 템

본 부

【MAIN】			【READER/SORTER】
〈UNISYS - 2200/434〉 : 어음교환, 은행지로 공동이용			〈TRACE - 1000 : 2대〉 : 어음교환용
CPU	1	32MB	〈TRACE - 1000 : 3대, TRACE 2000 : 2대〉 : 은행지로용
DISC DRIVER	24	38GB	
M/T	5		
C/T	4		
PRINTER	3		
〈IBM 9375 - 060〉 : 부도관리용			
CPU	1	8MB	
DISC DRIVER	4	0.8GB	
M/T	3		
PRINTER	2		

부 산

【MAIN】			【READER/SORTER】
〈VS - 6110 : 2대〉 : 은행지로용			〈TRACE - 600 : 2대, TRACE 4000 : 1대〉 : 은행지로용
CPU	2	16MB	
DISC DRIVER	3	6GB	
M/T	4		
PRINTER	2		

연표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10	6. 2 한성은행(조흥), 경성수형교환소 가입계약 체결 6.23 탁지부대신(현 재경원장관), 경성수형교환소 한국은행내 설치 인가 6.29 대한천일은행(상업), 경성수형교환소 가입 6.29 한국은행, 경성수형교환소 가입 7. 1 경성수형교환소(사설) 업무개시 ▶ 京城府本町三丁目十一番戶(경성 한국은행내) 7. 1 조선통감부 통신관리국, 경성우편국원을 경성수형교환소에 파송 12. 1 인천수형교환소(사설) 개업	8.29 한일합병조약 조인, 조선총독부 설치
1911	4. 1 부산수형교환소(사설) 개업	2.11 대한천일은행, 조선상업은행으로 발족 2.28 조선은행법 공포 6. 조선이식제한령 공포 6.20 조선회사령 공포 8.15 한국은행 폐쇄, 조선은행으로 발족
1912		3.18 조선민사령, 형사령 공포 10. 은행령 공포
1913		10. 부제(府制) 공포
1914		1. 11 호남선 개통
1917	3. 수형교환소 지정, 법제화(상법 제534조의2로 규정) ▶ 경성, 인천, 부산수형교환소가 조선총독부령 제17호로 최초 지정	6. 면제(面制)공포 10. 7 한강인도교 개통
1918	1. 평양수형교환소 개업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4. 일본화폐법 조선에 통용 10. 1 조선식산은행 설립
1919		3. 1 3·1운동 4.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상해)
1920	2. 원산수형교환소 개업	3. 5 조선일보 창간 4. 1 동아일보 창간 12. 구한국 통화의 통용 금지
1921	7. 1 대구수형교환소 개업	
1923	12. 1 목포수형교환소 개업	10. 신탁법, 신탁업법 공포
1924	2. 1 군산수형교환소 개업	
1926		2.27 신도량형령 공포(미터법 시행): 4.1부터 시행 6.10 6·10만세운동
1927		3. 금융공항 4.22 지불유예시행(~5.12)
1928	11. 1 경성은행집회소, 경성수형교환소 운영전담	9. 조선금융조합협회 창립 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발족 ▶ 京城府 北米倉町 九十三番地 (현 한은 신관자리) 12.24 신은행령 공포
1929	진남포수형교환소 개업	7. 1 조선저축은행(제일) 창립
1931	1. 목포수형교환소, 조선총독부령으로 지정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8.25 부산수형교환소 이전(부산시 중구 대청동1-49) 8.25 부산은행집회소, 부산수형교환소 운영전담	8.25 사단법인 부산은행집회소 발족
1932		5. 조선증권금융 설립 12.16 조선신탁주식회사(한일) 창립
1933	12.29 9개 수형교환소, 조선총독부령 제148호로 신지정 ▶ 명칭 및 소재지 경성수형교환소(경기도 경성부) 인천수형교환소(경기도 인천부) 군산수형교환소(전라북도 군산부) 목포수형교환소(전라남도 목포부) 대구수형교환소(경상북도 대구부) 부산수형교환소(경상남도 부산부) 평양수형교환소(평안남도 평양부) 진남포수형교환소(평안남도 진남포부) 원산수형교환소(함경남도 원산부)	2. 조선무역협회 창설 8.17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발족 12.28 소절수법 적용에 있어 은행과 동일시되는 자 또는 시설에 관한 건 제정(1934.1.1 시행) 12.29 조선총독부령 제17호 폐지 12. 수형법, 소절수법 제정
1934		1. 1 수표 제시기간의 특례에 관한 건 실시 8. 한·일·만간 수표교환실시
1937	11. 경성우체국, 경성수형교환소에 객원가입	7. 7 중·일전쟁 발발
1938	함흥수형교환소 개업	5.10 국가총동원령 공포 12. 조선금융단 결성
1940	청진수형교환소 개업	2.11 창씨개명제 실시
1942		6.16 조선금융단 정식발족(금융통제단체령) ▶ 이사장에 조선은행 총재 취임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43	5. 1 광주수형교환소, 해주수형교환소 개업	5. 1 조선은행 광주지점 개업 7. 조선증권취인소 설립 10. 한성은행, 조흥은행으로 개칭
1944	5. 1 대전수형교환소 개업 9. 1 내국환집중교환제도 실시	
1945		8.15 해방 10. 1 한미공정환율 50원대 1달러로 책정
1946		4. 조선상호은행 설립 9.18 경성부, 경기도에서 분리 서울시로 개칭 10.29 조선신탁(주), 조선신탁은행으로 개칭
1947		7. 7 조선환금은행 설립
1948	9. 1 경성수형교환소, 서울수형교환소로 개칭	4. 1 자기앞수표로 수표지급보증 실시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9. 1 경성은행집회소, 서울은행집회소로 개칭
1949	8.20 전주수형교환소, 법무부령 제2호로 지정 8.21 전주수형교환소 개업 11. 1 여수수형교환소 개업 11. 5 여수수형교환소, 법무부령 제3호로 지정	
1950		4. 조선신탁은행, 한국신탁은행으로 개칭 4. 대한천일은행, 한국상업은행으로 개칭 5. 조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으로 개칭 6. 5 정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구성 6.12 조선은행 폐쇄, 한국은행으로 발족 6. 서울은행집회소 임시사무소로 이전 ▶ 부산은행집회소내 설치 6. 조선상호은행, 한국상공은행으로 개칭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7. 서울수형교환소 폐쇄(~9월)	6.25 6·25동란 발발 10. 3 시중은행, 서울점포 영업재개
1951	1. 서울수형교환소 폐쇄(~10월) 11. 1 청주수형교환소, 법무부령 제5호로 지정	4.19 예금지불준비제도 실시 10. 1 한국조폐공사 설립 11. 1 은행 두취, 은행장으로 개칭
1952		8.15 대구은행집회소(비법인) 설립 12.22 수표책대금제 시행
1953	5.17 수형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에 관한 금융단협정 제정 9. 4 부도수형대금 결제시각연장 서울일부 폐지 ▶ 청량리, 돈암동, 용산, 마포지구	2.15 통화개혁(원화를 100대 1로 인하하여 환화 통용) 10. 사단법인 서울은행집회소 사무소 복귀 ▶ 현 국민은행 남대문지점
1954	4.16 한국산업은행, 서울수형교환소 사원가입 4.20 1일2회(토요일 1회) 수형교환 실시 ▶ 서울, 부산, 대구지구	4. 1 한국식산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 발족 4. 서울은행집회소, 월간「금융」창간호 발간 5.21 통지예금제 실시 10. 1 한국신탁은행, 한국상공은행을 흡수 한국흥업은행으로 개칭 11. 서울은행집회소 사무실 이전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번지
1955	8.17 춘천수형교환소, 법무부령 제15호로 지정 12.13 춘천수형교환소 개업	8.17 외환집중제 실시
1956		2.17 보통송금수표의 암호사용화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3. 1 금융기관간 발행수표 암호사용 실시
	4.16 대전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대전시 은행동 126	
	5. 1 농업은행, 서울수형교환소 사원가입	5. 1 농업은행 창립(구 농협)
	5. 서울어음교환소 사무소 이전 ▶ 중구 남대문로 4가 17-8 → 중구 명동 1가 4-1	
		10.19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제 실시
	11. 1 마산수형교환소 개업	
	11.15 마산수형교환소 지정	
	12. 1 어음,수표 어음교환 협정필제도 실시	
1957	2.15 체신부장관, 금융기관 사설 전화시설 설치 인가	
	3.15 수형교환 횟수 변경(1일2회 → 1회)	
		4. 1 광주은행집회소(비법인) 발족
		7. 금전신탁제 실시
1958		3. 11 외환관리법 공포
		4. 1 특수법에 의한 농업은행 발족
		9.30 사단법인 대구은행집회소 발족
		12. 한국저축은행, 제일은행으로 개칭
1959	1.10 대구어음교환소 사무소 이전 ▶ 대구시 삼덕동 1가 5번지	
	5. 월말 1일2회 교환제도 실시	
		7.30 저축예금제 실시
	11.21 서울은행, 서울수형교환소 사원가입	
		12. 1 서울은행, 지방은행으로 발족
1960		1. 1 당좌수표책대금 변경 ▶ 5,200 → 2,700환(1권 50장)
		1. 1 한국흥업은행, 한일은행으로 개칭
		2.22 정기적금제 실시
	5.20 월말 1일2회 교환제도 폐지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7.23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 발족
1961	1.23 부도수형대전, 본점 집중결제제도 실시 8. 1 중소기업은행, 서울수형교환소 사원가입 8.18 대구어음교환소 임시사무소로 이전 ▶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2층	 7. 3 부정수표단속법 제정 8. 1 구 농업은행에서 분리되어 중소기업은행 발족 8.15 구 농협과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발족 12.31 외국환관리법 공포
1962	1.19 10일 · 20일 · 말일, 1일 2회 어음교환실시 결의 2. 1 협정필인 날인 어음(수표)제도 실시 2. 2 한국국민은행, 서울수형교환소 사원가입 4. 광주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 12번지 5. 4 수형교환 보충사항 및 추가협정 승인 ▶ 한국은행의 자행당좌계좌 예입규정 10. 1 금융기관 신용조사소 개설	1.13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1.20 어음법 · 수표법 제정(1963.1.1 시행) 2. 1 한국국민은행 발족 4.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족 4. 6 성업공사 발족 6.10 제2차 통화개혁 (환화를 10대1로 인하하여 원화 통용) 9.26 서울은행, 전국은행으로 발족
1963	1. 1 제주어음교환소 개업 1.25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반환어음지급통지서, 월말 2회 어음교환제도 도입 5.28 대전수형교환소 사무실 이전 승인 ▶ 대전시 선화동 5번지 11. 1 월말 1일2회 어음교환 규약개정 승인 ▶ 영업시간 종료후 1시간 30분부터 12.20 서울수형교환소규약 전면개편	 2. 1 한국국민은행, 국민은행으로 발족 10. 1 당좌수표용지대 인상(300원, 1권 50매) 10. 1 금융기관 영업시간 변경 12. 법무부, 어음교환소지정에 관한 규칙 제정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 서울수형교환소 → 서울어음교환소로 개칭 교환소 감사 → 교환부장으로 개칭 ▶ 심사위원회, 예비교환 및 대리교환제도 신설 ▶ 조합은행 → 사원·가맹은행·객원으로 세분 12.31 14개 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75호로 재지정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제주 어음교환소	
1964	1.31 월말 1일2회 어음교환제도 폐지 5.15 대구어음교환소, 본사무소로 원대 복귀 12. 5 4개 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81호로 지정 ▶ 강릉, 충주, 이리, 포항어음교환소 12.24 지방어음교환소, 연말 1일2회 어음교환 실시	3.10 정부, 보안업무규정 제정 5. 3 단일변동환율제도 및 외환증서제도 채택 5.29 금융경영자협의회 설립 7.31 서울은행집회소 규약위반시 제재규약 제정
1965	1. 1 강릉, 충주, 이리, 포항어음교환소 개업 4. 1 금융단협정절차필 인영의 개인날인제 실시 ▶ 서울지역 당좌수표 대상 7. 8 3개 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82호로 지정 ▶ 수원, 원주, 천안어음교환소 8. 1 수원, 원주, 천안어음교환소 개업 10.28 진주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85호로 지정 12. 1 진주어음교환소 개업	3.22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
1966	2. 1 1일 2회 어음교환, 서울 및 부산지구 실시 ▶ 서울지구의 소사, 김포공항동, 송파, 창동소재 점포 제외 3.11 금융단,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어음처리규약 제정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3.11	금융단,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당좌거래규제협정 제정		
	3.	마산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마산시 남성동 142-61		
	8.31	포항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포항시 여천동 252-4	8. 3	외자도입법 제정공포
1967	1.13	한국외환은행, 서울어음교환소 사원가입	1.30	한국외환은행 발족
			3. 4	한국은행에 통화안정계정 설치
	4.17	외환증서교환 실시	4.25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한국장기신용은행) 발족
	6.30	한국주택금고, 대리교환 참가승인		
	6.	가입금 및 참가료 사정기준요강 제정		
	7.21	CMB 서울지점, 대리교환 참가승인	7.10	한국주택금고 발족
	7.21	내국환집중교환결제협정 제정	7.21	CMB 서울지점 개점
			9. 4	동경은행 서울지점 개점
			9. 8	CITI은행 서울지점 개점
			10. 7	대구은행 발족
			10.20	미쓰비시은행 서울지점 개점
			10.25	부산은행 발족
			10.25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20년사 발간
	12.15	한국주택금고, 서울어음교환소 사원가입 승인	12. 1	아메리카은행 서울지점 개점
			12.30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전환
1968			2. 2	스탠다드차터드은행 서울지점 개점
			3. 1	상업어음 할인제 실시
			4. 1	향토예비군 창설
			4.22	충청은행 발족
	9.26	부산어음교환소 사무소 이전 ▶ 부산시 중구 창선동 1가 9-3		
	11.29	한국신탁은행, 서울어음교환소 사원가입 승인	11.20	광주은행 발족
			12. 2	한국신탁은행 발족
1969	1. 4	사고어음, 사고신고예수금제도 실시	1. 4	한국주택금고, 한국주택은행으로 발족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69	1.10 수협중앙회, 대리어음교환 참가승인 2.28 자기앞수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통일 승인 5. 2 은행점포를 통한 세금 및 요금의 자동불입 시행 5. 5 대전어음교환소 사무실 현위치로 신축 이전 6.16 부산어음교환소 사무소 현위치로 신축 이전 7.16 재무부, 금융기관 사무기계화지침 시달 8.25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 발족 ▶ 초대위원 선임 위 원 장: 김성환(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부위원장: 전준철(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부원장) 위 원: 이면석(한국은행 이사)외 14명 ▶ 주요방침 - 사무기계화 기본원칙 전금융기관으로 확대 - 전자계산조직(EDPS)의 집중화방식 채택 - 대한금융단 EDPS센타 설치 ▶ 개발위원회규정 및 전자계산본부 운용요강 제정 9. 1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발족준비위원회 구성 9. 5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발족준비작업반 구성 10. 1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은행컴퓨터 공동센타로 발족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 ▶ 초대임원 선임 본부장 전준철, 사무국장 김두춘 ▶ 1국 3부 사무국(총무부, 개발부, 연산부) ▶ 전문위원회 신설 11.10 마산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마산시 창동 139 12. 과학기술처, UNIVAC-9400 시스템 도입 추인 12.10 3개 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169호로 지정 ▶ 충무, 울산, 속초어음교환소	1.28 은행법 개정 4.25 한국감정원 설립 7. 1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 발급개시 7.21 경인고속도로 개통 9.19 제주은행 발족 12. 8 인천은행 발족 12.10 전북은행 발족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70	1. 4 충무, 울산, 속초어음교환소 개업	1. 1 소액자기앞수표 발행금액 인상 ▶ 5,000원 → 10,000원
		2.16 재무부, 금융업무쇄신 8개원칙 마련
		2.16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제정
		4. 3 강원은행 발족
		4.15 정부,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5.22 경남은행 발족
		6.27 경부고속도로 개통
	7. 3 전임 어음교환부장제도 실시 ▶ 김정태 선임(시중은행 부장대우)	7. 1 사단법인 저축추진중앙위원회 발족
	7. 3 약속어음 · 환어음, 규격 · 서식통일 규정	
	8.21 외환교환실규약 제정	
	9.14 외환교환실 설치(한국은행 본점내)	
	10. 2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금융기관 최초 컴퓨터 UNIVAC-9400시스템 가동	10.30 서울은행집회소 노동조합 발족
	11. 6 광주어음교환소 신축부지 매입 ▶ 광주시 동구 대인동 310-2	11.27 외국환관리규정 제정
	12.19 포항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포항시 중앙동 68	
1971	1. 1 여수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목포시 중앙동 468	1.13 예금, 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 1 1일2회 어음교환, 서울 · 부산지역 폐지	4.24 충북은행 발족
	7.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서울어음교환소 기계화 기초조사위원회 설치	
	8.31 월말 1일2회 어음교환실시 승인 ▶ 서울, 부산지역의 자기앞수표, 송금수수료, 100만원이상 부도대전	
	9.24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조직개편 ▶ 1국1실1과 ▶ 총무부 → 총무과, 개발부 · 연산부 → 전자계산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실로 개칭, 실무자회의·사무차장제 신설, 전문위원회 폐지	
		11.23 공동무선통신망 설치
1972	1.18 마산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마산시 오동동 159-23	1.24 후지은행 서울지점 개점
	1.20 재무부,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추진원칙 시달	
	1.28 외환교환실 사무실 이전 ▶ 한국은행 본점 → 서울은행집회소 건물	
		2. 7 다이이치강교 서울지점 개점
	4.29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제2대 본부장 안종직 취임	
		6. 1 인천은행, 경기은행으로 개칭
	7.14 지방어음교환소 설치기준 및 처리절차 조정보고	
	7.28 수협중앙회,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가입	
	8.11 대구·부산은행, 서울어음교환소 대리교환 참가	8. 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공포
	9.30 포항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포항시 상원동 462-8	
		11.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재무부령)
	12.22 경기은행, 서울어음교환소 대리교환 참가	
1973		1. 1 금융기관 예금이자 과세실시
		3. 2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실시
		5. 1 가계예금제도 신설
		5. 1 주민세 신설
	6.18 UNIVAC-9480 시스템 도입승인	
	7.26 경주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185호로 지정 및 개업	
		9. 5 사단법인 전국지방은행협회 발족
	11.21 금융기관 CODE제정반 편성	
		12. 4 유류가격 대폭 인상
1974	4.19 UNIVAC-9400, UNIVAC-9480으로 교체 설치	
	5. 1 전주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전주시 고사동 1가 417-1	5. 1 양도성 정기예금 신설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6. 춘천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서울은행 춘천지점 7. 1 제주은행, 서울어음교환소 대리교환 참가 8.24 포항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포항시 남빈동 470-21 12. 1 강릉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강릉시 임당동 88-11 12.12 경남은행, 서울어음교환소 대리교환 참가	8. 1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 개점 8.15 육영수여사 서거 8.16 가계종합예금제도 실시 10.26 재무부, 외환집중관리제 실시
1975	1.11 재무부, 금융업무 전산화지침 시달 1.15 여수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여수시 교동 360-1 4. 1 서울은행집회소, 서울은행협회로 개편 ▶ 서울어음교환소, 대한금융단연수원,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대한금융단 및 공동무선통신 관리소 통합 ▶ 전자계산부 신설 4.18 금융기관 사무기계화 개발위원회, 금융업무 전산화 개발위원회로 발족 6.27 금융기관 콜거래실 규약 제정 6.30 재무부, 금융기관 콜거래중개사업 허가 7. 1 금융기관 콜거래실 설치(서울은행협회 건물내) 7.11 금융기관대표자회의, 금융업무 전산화 종합육성 계획 승인 ▶ 전자계산소 신설 7.11 E.D.P.S.도입 심의기준 제정 7.11 전자계산조직 도입 심의요강 제정 7.24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위원장 김동수, 위원 정교영 · 이관홍 · 양학규 8.22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정관 제정 및 초대소장 임명	2.20 외국인외화예금 자유화 실시 4. 1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실시 7.16 방위세법 공포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8.22 27개 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193호로 재지정 ▶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청주, 충주, 대전, 천안, 광주, 목포, 여수, 전주, 이리, 마산, 군산, 진주, 충무, 울산, 대구, 포항, 제주, 경주, 안동어음교환소 9. 1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재무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9. 1 광주어음교환소 사무소 신축공사 착공 9. 5 외환거래회수 변경 (1일 1회 → 1일 2회, 토요일 1회) 9.19 재무부,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설립허가신청 반려 (소정요건 불비) 10. 1 안동어음교환소 개업 10. 1 서울은행협회 전자계산부, 사단법인 금융기관 전자계산소로 발족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4-1 ▶ 임원선임 소장 김동수, 사무국장 정교영 취임 ▶ 1국 4과 사무국(총무과, 개발과, 연수과, 자료처리과) 11. 1 서울은행협회, 전국은행협회로 개편 ▶ 13개 지방은행집회소, 지부로 신설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전주, 수원, 청주, 목포, 강릉, 춘천, 마산, 제주은행집회소 ▶ 13개 지방어음교환소, 협회관할 포항, 울산, 진주, 여수, 군산, 안동, 경주, 원주, 이리, 충주, 충무, 천안, 속초어음교환소 11.26 안동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국민은행 안동지점 12.29 광주어음교환소 현위치로 신축 이전	9.30 재무부, 금융쇄신심의위원회 신설
1976	1.10 은행지로제도 도입준비 실무반 편성 ▶ 13개 은행 13명 1.24 울산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 울산 상공회의소	
	3.19 전국은행협회 이사회, 어음교환지역 광역화 추진 결의	2.20 전국은행협회, 금융인 새마을연수원 설치 3.15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4. 2 어음교환차액결제계좌 변경(5.1 시행) ▶ 서울어음교환소 당좌예금계좌 →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4.23 포항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포항시 죽도동 41-7	
	5. 1 수원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수원시 매산로 2가 30번지	
	5.29 금융기관전자계산소, 법인설립인가 재신청	
	6. 5 전주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전주시 경원동 3가 41-1 주택은행 전주지점	6. 1 신용보증기금 발족 6. 5 대한금융단 금융연수원, 전국은행협회에서 분리 발족
	6.22 재무부, 금융기관전자계산소 법인설립 인가	
	7. 1 강릉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강릉시 성내동 20-3	7. 1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7. 6 금융기관전자계산소 법인등기	
	7.29 전자계산조직 도입 및 확장계획 심의 사무처리 요령 제정	
	8. 은행지로제도 실시준비 전담반 편성	8. 5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 합병, 서울신탁은행으로 발족
	9.10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토지금고 및 신용보증기금, 서울어음교환소 객원 가입	
		10. 4 파리국립은행 서울지점 개점
		11. 1 시카고제일국립은행 서울지점 개점
	12.31 은행지로제도 실시계획 확정	
	12.31 은행지로업무 취급규정 제정	
1977	1. 7 은행지로제도 실시계획, 재무부장관앞 보고	
	1.28 10개 지방은행·수협중앙회, 은행지로관리소 준사원 가입승인	
	2. 1 전기요금수납업무, 은행지로제 서울지역 실시	
	2. 1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조직개편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77	▶ 1국 5과 업무과 · 기획과 신설, 연수과 폐지	
	▶ 사무국장 권영달 취임	
	2.11 부도어음대전, 별도모점 지급제 실시	
	3. 2 어음교환소간 상호어음교환 최초 실시	
	▶ 서울 ↔ 인천, 수원	
	4. 1 경기은행 서울지점,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가입	
	4.13 E.D.P.S. 도입 사후관리요령 제정	
	4.29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협정 제정	
	5.11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5.27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은행 서울지점 개점
	5.16 급여계좌이체업무, 서울지역 가계당좌예금에 실시	
	5.16 개인신용정보, 서울어음교환소 집중관리	
	▶ 정보의 종합기록, 관리 및 전산보존은 은행지로관리소에 위임처리	
	6. 3 내국신용장 교환실 규약 제정	6. 7 로이즈 국제은행 서울지점 개점
	6.22 금융기관 전자계산소,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	
	▶ 임원선임 소장 김동수, 사무국장 권영달 취임	
	▶ 업무운영위원회 신설	
	7. 1 내국신용장 교환실 설치	7. 1 부가가치세제 시행
	▶ 서울 · 부산 · 대구어음교환소	
	7. 1 내국신용장어음교환 실시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마산 어음교환소	
	7. 8 은행지로관리소 초대감사 박정서 취임	
	7.30 어음수표에 은행점포번호 표시제 확대	
		9. 5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개점
		9.16 금융단,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제도 시행
		9.19 인도해외은행 서울지점 개점
	10.21 제2단계 금융업무전산화 종합계획작성 작업반 편성	10. 1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인상
		▶ 10,000원 이하 → 50,000원 이하
	11.16 안동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11. 7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 발족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	11. 9 비씨씨아이 서울지점 개점
	11.17 어음교환 기계화추진 실무위원회 해체	11.21 한불종합금융주식회사 발족
	11.18 은행지로 및 어음교환업무 기계화 추진방안 확정	11.23 파리바 서울지점 개점
		11.29 씨큐리티 퍼시픽 국립은행 서울지점 개점
		12. 1 사이타마은행 서울사무소 개소
		12.22 수출 100억불 달성
		12.22 아메리카은행 부산지점 개점
		12.30 씨티은행 부산지점 개점
		12.30 은행법 개정
		▶ 결산기 변경(1.1~12.31)
1978		1. 9 그린드레이즈 서울지점 개점
	2. 3 금융기관 콜거래실 참가료 신설	2.22 동경은행 부산사무소 개소
	2.23 콜참가 수수료 징수개시(1억당 70원)	
		3. 3 아세아종합금융주식회사 발족
		3. 3 한국은행, 국고금의 채권자계좌입금제도 도입
		3.23 싱가포르은행 서울지점 개점
		3.27 노바스코시아은행 서울지점 개점
	4. 7 외환교환실 시장율 게시통화 확대	4.13 유니온은행 서울사무소 개소
	4.21 금융기관대표자회의, 제2단계 금융업무전산화 종합계획 승인	
		5. 1 콘티넨탈은행 서울지점 개점
		6.20 모간은행 서울지점 개점
	7. 7 은행인수어음 교환규약 제정	7.14 크레디 리요네 서울지점 개점
	7.14 어음교환용 기기 도입승인	
	▶ NCR N-8450, 6780 R/S 각2Set	
	7.14 금융기관 공동코드 제정, 개폐 및 운영관리원칙 제정	
	7.28 금융기관 공동코드규약 제정	
	8. 1 9개(경기 제외) 지방은행,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가입	8. 1 유로피안 아시아은행 서울지점 개점
	8. 1 MICR용 수표·어음, 사용 개시	
	▶ 서울, 인천, 수원어음교환소 관할지역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8.29 대구어음교환소 신축건물 준공	
	9.13 수표·어음 및 어음교환소 공동코드 제정	9. 6 케미칼은행 서울지점 개점
	10.27 EDPS 도입심의 관련 4개 규정 폐지	10. 5 자연보호헌장 선포
	▶ EDPS 도입심의기준	
	▶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요강	
	▶ 전자계산조직 도입 및 확장계획 심의사무처리요강	
	▶ EDPS 도입사무관리요령	
		11.20 몬트리올은행 서울지점 개점
	12. 1 가계당좌거래, 부산직할시, 대구시로 확대	12. 5 메뉴펙처러스 하노버 트러스트 컴퍼니
	12. 6 은행지로관리소 노동조합 발족	서울지점 개점
	▶ 초대위원장 노재관 취임	12.22 뱅커스 트러스트 컴퍼니 서울지점 개점
1979	2. 7 서울지역의 어음교환업무 기계화 기본방침 확정	
	2.14 2개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09호로 지정	
	▶ 순천, 구미어음교환소	
	3.15 토지금고,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탈퇴	3.16 알지메느 서울지점 개점
	3.15 청주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청주시 북문로 1가 9번지	
	4. 1 국고금, 채권자계좌앞 이체업무 지로제 실시	
	4. 2 순천, 구미어음교환소 개업	
	6. 금융기관대표자회의, 기업정보시스템 전산화 의결	
	7. 1 기업신용정보 처리업무 기계처리 개시	7. 9 유바프 서울지점 개점
		7.26 재무부, 은행간 장외콜거래 전면 허용
	8.22 콜자금의 1차거래에 신청	
	8.23 콜참가수수료 인하(1억당 70 → 30원)	
	8.25 NCR Main 및 R/S 설치완료	
	9. 6 가계당좌거래 폐지	
	10.12 은행지로관리소 감사 김홍석 취임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 어음교환용 R/S 가동	
	10. 춘천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춘천시 중앙로 1가 83	
		11.20 MICR 양식 어음,수표용지 사용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0	1.11 어음교환 기계처리, 서울지역 실시 ▶ 서울어음교환소 670개 점포분 집중처리 1.25 은행지로관리소 조직개편 ▶ 1국 6과 어음교환과 신설 2.27 외환증서 매매제도 폐지 2.27 은행인수어음교환, 서울지역 실시 3. 1 군산어음교환소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5. 1 천안, 서울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실시 5. 9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발족 및 동협의회 규약 제정 5.28 동해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17호로 지정 6. 2 한국장기신용은행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가입 6.20 콜거래 금리인하(연25% → 24%) 7. 1 동해어음교환소 개업 9.12 은행지로관리소 감사 장규진 취임 9.29 청주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청주시 남문로 1가 210-1 12. 1 의정부·부천, 서울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실시 12.10 성남, 안양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20호로 지정 12.31 은행지로관리소 조직개편 ▶ 3부 6과 - 추진과 신설, 개발과 → 정보관리과, 자료처리과 → 시스템운영과로 변경 - 사무국, 총무과 → 지로부, 총무부, 어음교환부로 개편 ▶ 초대 부소장 김세희 취임 ▶ 검사역제 신설	2.27 복합바스킷제도에 의한 유동환율제 실시 4. 2 우체국, 자기앞수표발행제도 도입 5.17 광주 민주항쟁 6. 2 한국장기신용은행 발족 7. 1 선물환거래제 실시 8. 1 전국 금융기관 영업시간 변경 12. 1 컬러TV방송 개시 12.10 재무부, 시중은행 경영자율화시책 발표 12. 사단법인 전국지방은행협회 해산
1981	1. 5 성남, 안양어음교환소 개업 2. 6 금융기관 계좌이체 수수료율 결정	1. 1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족 2.17 캘리포니아은행 서울지점 개점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1	3. 1 일반이체업무 서울지역 실시 ▶ 대량수납(보험료, 물품대금, 월부금 등), 일반송금 3. 2 은행지로관리소, 신용카드 전산개발 착수 3.14 지로이용안내홍보, 일간신문에 최초 게재(~3.23) 3.30 제주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제주시 일도1동 1476-2 4. 1 은행지로관리소, 어음기계교환업무 및 NCR Main, R/S 전국은행협회에 이관 4. 1 콜거래실, 전국은행협회 업무부에서 운영 4. 8 은행지로관리소 직제개편 ▶ 2부 6과 어음교환부 폐지 5. 1 계좌이체M/T 교환업무 처리개시 5.22 교환어음 접수입회제도 도입 5.25 인천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인천시 남구 숭의동 163-6 7.13 계좌이체M/T교환업무, 대량지급업무로 명칭변경 7.13 지로처리 컴퓨터 교체(PRIME 550) 7.16 교환어음 접수입회제도 폐지 승인 7.24 어음교환부장, 기획조사부장으로 직명 변경 7.24 지방어음교환소 설치절차, 제정 시행 8. 1 영등포 파출분소 설치 ▶ 교환어음 및 지로장표 파출수납 8. 1 자동계좌이체업무, 서울지역 개시 8.14 은행지로관리소 조직개편 ▶ 2부 6과 1전담반 OCR 전담반 신설 8.17 이리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이리시 창인동 1가 145 8.22 은행지로관리소 제3대 소장 김두춘 취임 8.31 강남, 성동파출분소 설치 10. 5 구미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3. 3 제12대 전두환대통령 취임, 3.20 크락커 서울지점 개점 4. 1 공정거래법 발효 4. 7 마린미들랜드 서울지점 개점 6.20 신종기업어음(C.P) 발행 7. 1 대구시 및 인천시 직할시로 승격 7. 1 한일은행 민영화 7.27 자기앞수표 정액 3종 신설 ▶ 10, 30, 50만원권 10. 5 싱가포르개발은행 서울지점 개점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 구미시 공단동 204번지 10.13 39개 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29호로 신지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성남, 안양, 춘천, 원주, 동해, 강릉, 속초, 청주, 충주, 대전, 천안, 전주, 군산, 이리, 광주,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마산, 울산, 진주, 충무, 제주, 부천, 의정부, 정주, 김천, 영주, 진해, 제천어음교환소 10.21 은행지로관리소 조직개편 ▶ 2부 6과 2전담반 CD전담반 신설 11.16 울산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주택은행 울산지점 12. 1 부천 의정부어음교환소 개업 12.19 의정부, 부천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실시 12.19 은행지로관리소, 신용정보관리업무 및 기업정보 업무 전국은행협회에 이관 12.31 은행지로관리소 조직개편 ▶ 2부 5과 2반 정보관리과 폐지	
1982	1. 1 콜거래금리 인하(연17% → 16%) 1. 4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 실시 1. 4 제천어음교환소 개업 1. 4 은행지로관리소 사무실 이전 ▶ 중구 명동1가 4-1 → 강남구 삼성동 171-2 1. 4 은행지로관리소 도서실 설치 1.15 은행지로관리소 명동분실 설치 ▶ 지로자료 수발 및 업무연락 1.16 의정부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의정부시 의정부1동 180-4 2. 1 김천어음교환소 개업 2. 1 온라인 급여자동이체제도 실시	1. 1 야간통행금지 해제 2. 4 스미토모 서울지점 개점 2.24 금융산업 발전심의위원회 설치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2	▶ 단신 원격지근무 공직자대상	
	2. 3 지로입출금지시 M/T방식 실시	
	2. 5 영주어음교환소 개업	
	2.18 진해어음교환소 개업	
	3.15 지로입출금 M/T로 일괄처리	
	4. 1 정주어음교환소 개업	4. 7 은행신용카드협회 발족
	4.26 이리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4.10 정부, 의식개혁 9대요강 발표
	▶ 이리시 창인동 1가 156-1	
	5. 7 가계수표 부도 및 거래정지통지 변경	5. 4 이철희, 장영자 거액어음 사기사건 발생
	▶ 전조합은행 → 해당점포	
	6. 1 은행신용카드 자금결제, 지로제 이용	6. 7 은행신용카드 발급개시
	6. 4 은행지로관리소 감사 곽상수 취임	6.28 통지예금 폐지
	6.18 5만원이하 자기앞수표 사용폐지 승인	
	6.23 신한은행의 은행지로관리소 사원가입 승인	
	6.23 콜참가 수수료 인상(1억당 30원 → 50원)	
	6.30 콜거래이율 적용기준 변경	
	▶ CP평균 매출이율 적용	
	최고 20% 이내 → 최고 14% 이내	
	7. 1 은행지로관리소 부소장 우진영 취임	7. 7 신한은행 발족
	7. 1 전신전화요금, 예금계좌 자동이체 실시	
	7. 6 강릉어음교환소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7. 7 신한은행, 서울어음교환소 참가	
		8.12 금융기관의 국공채매매 허용
		8.20 상화은행 서울지점 개점
		9. 1 금융기관 상업어음 일반매출업무 개시
		9. 8 은행에 대한 일부 증권업 허용허가
	10. 1 지로장표 처리용 기기 설치	10. 7 퍼스트내쇼날 보스톤은행 서울지점 개점
	▶ UNIVAC 1100/11 시스템	10. 8 세팍 서울지점 개점
	11. 1 대구, 구미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실시	
	11. 5 공동 CD 전문위원회 설치	
	11.26 외환거래회수 변경(1일2회 → 1회)	
	12. 1 외환거래실 1일1회 개장 실시	12. 1 캐나다로얄 서울지점 개점
	▶ 서울 15:00, 부산 11:00 개장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2. 3 SWIFT 사무국 은행지로관리소에 설치 12.13 거래정지기간 연장(1년 → 2년) 12. 한국은행, SWIFT본부앞 가입서 제출	
1983	1.14 안양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안양시 안양동 676-116 1.21 자기앞수표의 발행 · 수납은행간 자금조정협정 신설 1.21 월말 2회 교환제도 폐지 1.23 동해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농협 묵호지점 2. SWIFT본부 이사회, 우리나라 특별가입 승인 3. 2 광주, 목포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개시 3.16 한미은행, 서울어음교환소 참가 3.17 한미은행 은행지로관리소 사원가입 승인 5. 1 생명보험료 자동납부제 실시 5.10 은행지로관리소 조직개편 ▶ 3부 6과 전산부 신설, 지로부 업무과 → 업무부, 시스템운영과 → 전산운영과, 기획과 · 추진과 → 기획추진과로 개편 7. 1 학자금 수납업무 지로제 적용 7.15 지로장표처리용 기기 설치 ▶ REI TRACE-I R/S 1Set 8. 1 은행지로관리소, 17개 지방분소의 지로업무 은행직원에게 담당의뢰 및 파견 8. 1 일반이체업무 부산, 대구, 광주지역 실시 9.16 축협중앙회 은행지로관리소 준사원 가입 승인 9.23 CD 공동이용시스템 개발기본계획 확정 9.23 CD 실무위원회 설치 10. 1 기업정보 전용컴퓨터 도입설치 10. 1 은행지로관리소, 4개 지방분소 설치	3. 2 교복폐지, 자유복 첫등교 3.12 OPEC, 기준유가 인하(34 → 29불) 3.16 한미은행 발족 4. 1 지방은행에 신탁업 허가 4. 자기앞수표 정액5만원권 폐지 5.30 신용관리기금 설립 7. 1 금융거래 실명제 일부 실시 7.29 인구 4천만 돌파 8.11 은행신용카드, 비씨카드로 개칭 8.15 독립기념관 기공 8.25 도오카이 서울지점 개점 10. 1 정보산업육성위원회(현 기술진흥심의회), 5대 국가기간 전산망의 구성 제안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 대전, 전주, 울산, 마산지역 10. 1 지로일반이체업무 지방 5개지역에 확대 ▶ 대전, 전주, 울산, 마산, 경주지역 10. 1 통합공과금 수납업무 지로제 실시 ▶ 서울시 용산구·동작구, 대전시, 경주시 10.17 제주어음교환소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0.21 통합공과금 OCR방식으로 대량처리 11. 4 거래정지처분 부도요건 완화(2 → 3회) 12. 1 COM 시스템(DX-4590)의 공동이용 개시 12. 1 축협중앙회, 서울어음교환소 가맹은행 참가 12. 1 일반계좌이체업무, OCR방식으로 대량처리	
1984	1. 1 정주어음교환소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16 미결제어음 통보제 실시(토요일 제외) 4. 7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 위원장 김재윤 취임 4.27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창립총회 개최 ▶ 임원선임 소장 고광직, 감사 하소곤, 부소장 구본식 ▶ 정관 제정 5. 금융기관대표자회의, 금융전산망 기본추진방안 확정 ▶ 금융전산추진위원회 발족 ▶ 금융전산망 구축 전담기관의 설치 ▶ 금융기관 공동업무의 단계적 통합 5. 9 재무부,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법인설립 허가 5. 9 전국어음교환관리소규약 제정 5.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발족 ▶ 서울시 중구 명동1가 4-1 ▶ 3부 1실 38지소 총무부, 어음교환부, 신용정보관리부, 감사실 38개 전국은행협회 지부 및 어음교환소를 지소로 개편	1.15 소시에테제너럴 서울지점 개점 4. 1 정부, 단기금융사에 CMA 업무허용 5.10 전국은행협회,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5.14 코리아펀드 설립 5.22 지하철2호선 전면 개통

연도	금융결제원	일반동향
	5.10 15개 금융기관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준사원 참가 ▶ 10개 지방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장기신용은행, 신용보증기금 5.10 부산, 울산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실시 5.10 전국은행협회, 금융기관 콜거래실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 이관 5.24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노동조합 발족 5.25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법인설립 등기 6. 7 삼천포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63호로 지정	6. 1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도입 6.29 공정거래법, 금융·보험업에 확대 적용 6.29 한국은행, 금융기관 자율경영확대 관련 제규정·통첩 정비
	7.13 은행지로관리소 조직개편 ▶ 3부 1실 6과 시스템실 신설 7.20 전국어음교환관리소규약 전면 정비 7.23 외환교환실 규약 및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폐지 8. 1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삼천포 지소 개설 ▶ 삼천포어음교환소 개업 8. 3 일반계좌이체업무 M/T로 입금지시 9.31 대구지부 전용전화 폐쇄 11. 9 은행지로관리소 감사 김재윤 취임 12.31 지로업무시스템 변경 ▶ UNIVAC 1100/11 철거 1100/71로 용량 확장	7.23 금융단협정 폐지(금융자율화의 여건조성 및 금융기관책임경영체제 유도) 8.14 웰스파고 서울지점 개점 9.14 금융전산위원회 발족 11.13 은행 여,수신 최고금리 일부조정 및 콜금리 상한 철폐 11. 한국은행,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 설치 12.10 홍콩상하이 서울지점 개점
1985	3.15 남원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71호로 지정 5. 6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남원지소 개설	1. 7 대화은행 서울지점 개점 1.11 레이니어 서울지점 개점 3. 4 가계수표 장당발행한도 인상 ▶ 10만원 → 30만원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 남원어음교환소 개업 5. 7 청주, 서울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실시 7. 2 춘천·대전, 서울어음교환소와 상호교환 실시 7. 한국은행 기획부, 금융결제관리원 설립준비작업반 운용 8. 1 대구, 포항·경주어음교환소와 상호교환 실시 8. 2 부산, 마산·진해어음교환소와 상호교환 실시 8. 3 어음교환 기계처리 분산실시 ▶ 야간교환제도 도입 조흥, 한일, 기업, 국민은행 야간교환 참가 10. 5 서울어음교환소에 CITI은행 서울지점, C.M.B. 서울지점 어음교환업무 특별참가 10.19 상업, 제일, 주택은행 야간교환 참가 11.27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영주지소 사무실 이전 ▶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12.10 지로장표처리용 기기 추가설치 ▶ R/S(REI TRACE-I) 1Set (1호기)	7.19 부산지하철 개통(범어사 → 범내골) 9.12 재형저축 가입대상자 범위확대 (월정급여 4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10.29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 개정 ▶ 내국신용장 지급거절사유 신설
1986	1.25 목포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목포시 명륜동 제일생명 목포영업국 3층 1.28 외환거래실규약 제정 3. 6 장학금규정 제정 3. 6 국내학술연수시행요령 제정 3. 8 서울신탁은행 야간교환 참가 3.25 원화여행자수표, 어음교환 대상증권에 추가 3. 주요 선진제국의 지급결제제도 책자 발간 4.14 진해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1. 1 마린미들랜드은행 서울지점 폐쇄 2.10 재무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설치 2.17 가계수표 장당발행한도 인상 ▶ 10만원 → 30만원(3.25 시행) 2.28 크락커 서울지점 폐쇄 3. 1 미들랜드 서울지점 개점 3.25 원화 여행자수표 3종 신설 ▶ 2, 5, 10만원권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6	▶ 진해시 충무로 1가 27-15 4.15 원화여행자수표, 자금조정 실시 4.18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공식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위원장: 고광직(전국어음교환관리소장) 김두춘(은행지로관리소장) ▶ 간 사: 조성묵(전국어음교환관리소 총무부장) ▶ 위 원: 허윤수(〃 어음교환부장) 정지현(은행지로관리소 총무부장) 양학규(〃 업무부장) 김영생(한국은행 기획부 차장) 홍순익(한국은행 전자계산부 차장) 한석우(한국은행 저축부 차장) 5. 1 지방세중 재산세 수납업무 지로제 실시 5. 9 평택, 태백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87호로 지정 5.12 OCR R/S 2호기 설치 5.19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정관 변경 5.23 은행지로관리소 청산인에 금융결제관리원장 선임 5.23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신용정보업무 전국은행연합회에 이관 5.23 금융결제관리원 위원회규정 제정 5.25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정관변경 5.26 포항어음교환소 사무실 이전 ▶ 포항시 죽도동 96-70 5.31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정관 수정결의 6. 1 은행지로관리소 감사 김재윤 퇴임 6. 2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은행지로관리소를 흡수통합 금융결제관리원으로 개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4-1 ▶ 초대임원 원장 김재윤, 전무이사 고광직, 감사 하소곤 상무이사 주형돈 · 구본식 취임	5.12 전산망보급 및 이용확장에 관한 법률 제정 5.13 웨스트팩 서울지점 개점 6.10 한국은행, 당좌수표에 의한 공공요금납부제도 허용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6	▶ 5부 1실 5과 6담당 40지부	
	6. 2 은행지로관리소 청산절차 개시	
	6. 4 방위지원위원회운영규정 제정	
	6.19 디자인 표준화작업(C.I.P) 실무작업반 편성	
	6.24 은행지로운영위원회, 금융기관 각계정에 지로계정 보유 허용	
	7. 9 현금카드표준화 작업반 편성	7.21 한미통상협상 일괄타결
	7.10 시간외근무수당지급요령 제정	▶ 담배, 보험의 수입개방, 저작권, 소프트웨어, 물질특허의 보호 등
	7.1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CD공동이용시스템 개발업무 수탁	
	7.18 전무이사 김홍배, 상무이사 권영달 취임	
	7.19 남원지부 사무실 이전	
	▶ 농협 남원군지부	
	7.24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요령 제정	
	7.28 식대지급기준 제정	
	7. 전국어음교환통계, 월보자료로 첫발간	
		8.30 모간은행 서울지점 개점
	9. 8 서식관리규정 제정	9.20 제10회 아시안게임 개막
	9.10 CD전담반 구성	
	9. 현금카드 표준규격 채택 및 ISO카드용 CD기 표준화	
	9.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추진일정 확정	
	10.13 태백지부 개설	
	▶ 태백어음교환소 개업	
	10.14 상용사무원관리규정 제정	
	10.16 학자금지급기준 제정	
	10.20 감사규정시행세칙 제정	
	10.25 4급책임자 자격고시 실시	
	11. 1 강릉, 속초·동해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11. 1 광주, 직할시로 승격
	11. 3 평택지부 개설	11. 3 캘리포니아은행 서울지점 개점
	▶ 평택어음교환소 개업	
	11.10 전산업무관리규정 및 전자계산실관리세칙 제정	
	11.10 원주·충주·평택, 서울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1.29 제2대 원장 전영수 취임 12. 4 저축금관리요령 제정 12. 제1기 신입직원 21명 채용 12.26 사고신고예탁금제도 강화 12.26 토요일 미결제어음통보제 실시 12.26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 제정	12.31 전산망보급 및 이용확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7	2. 2 어음교환 증명서 발급개시 2. 4 상벌규정 제정 2. 5 공주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294호로 지정 3. 3 현금카드 사양확정 3. 6 CD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계획 확정 3.23 ARS시스템 개별운용 의결 4. 1 지로자료 송달 상호교환편 이용개시 4. 1 제1회 전산자원이용 효율화 제안 공모실시 (~4.30) 4.14 주택구입자금지원요령 제정 6. 1 지방 지로업무, 각 지부에서 관장 ▶ 각행 분소파견 직원 원대복귀 6. 2 창립 1주년 기념식 6. 3 타지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및 대지급가계수표의 수납지 교환결제제도 도입(7.1 시행) 6.16 홍성, 논산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300호로 지정 6.18 간행물 발간기준 제정 6.25 정관 변경 6.30 사료관리규정 제정 6.30 CD공동이용시스템 기본설계서 확정	1. 5 재무부, 노후생활연금신탁 도입 1.21 원화 여행자수표 50만원권 신설 1.31 호주 뉴질랜드 서울지점 개점 1.31 그린드레이즈 서울지점 폐쇄 2.28 평화의 댐 기공 3.12 코리아 유로펀드 설립 3.18 은행직원 정년연장(55 → 58세) 4.19 범양상선 부도사건 발생 4.23 재무부, 미국계 생보사에 국내보험사업 인가 5.30 신용카드업법 제정(8.28 시행) 5. 전산망조정위원회 발족 6. 1 파키스탄 국립은행 서울지점 개점 6.16 한국은행,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6.30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요강 제정 6. 금융전산위원회,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개편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7. 6 정관 변경 7. 9 가족수당지급기준 제정 7.13 남원지부 사무실 이전 ▶ 유남상호신용금고 2층 8.17 홍성지부 개설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6 8.25 CD중계시스템 설치 9.18 ARS운용방침 수정 ▶ 각행 개별운용 → 공동운용 9.18 이리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9.22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부터 ARS공동운용업무의 개발 및 실시업무 수탁 10.14 콜자금공급 및 상환방식 변경 10.23 안양지부 사무실 이전 ▶ 안양시 안양동 622-264 11. 7 체신부, CD공동이용시스템 정보통신회선 특례사용 승인 11. 9 동해지부 사무실 이전 ▶ 동해시 발한동 18-12 11.10 공업진흥청, 당원을 ISO/TC68(금융부문 국제표준화기구) 국내간사기관으로 당원 지정 11.25 여자사원의 중견사원 전환고시요령 제정 12. 1 공주, 논산지부 개설 ▶ 공주, 논산어음교환소 개업 12. 5 CD공동이용시스템 관리시스템(NMS) 설치 12.14 본부 사무실 이전 ▶ 명동 1가 4번지 → 강남구 삼성동 171-2 임원실, 총무부 및 감사실 이전 12.30 태백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7.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설립 7.29 정부, 해외여행허가 확대방안 발표 9. 1 현금카드 발급업무 개시 9. 한국정보과학회, 금융전산망 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보고서 발간 10.28 마린미들랜드 서울사무소 개소 11. 5 금통위, 은행감독원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1.24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신설 12. 3 중부고속도로 개통 12.31 레이니어 서울지점 폐쇄
1988	1.11 광주, 순천어음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1.25 전자계산업무수당지급요령 제정 2. 1 민방위대 편성인가	1. 1 국민연금제도 및 최저임금제 실시 1.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개시 2. 1 주택은행 전세자금대출제도 신설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8	2.19 금전위, 타행환공동망시스템 개발 위탁	2.25 13대 노태우대통령 취임
	2.26 CD공동이용업무규약 제정	2. 금전위,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의결
	2.27 의정부지부 사무실 이전	
	▶ 의정부시 의정부동 176-19	
	3. 1 서울시 자동차세 수납업무 지로제 적용	3.17 재무부, 외환관리자유화방안 발표
	3. 2 가계수표 부도자, 전은행에 통지	
	3. 7 ARS공동운용 시행계획 확정	
	3. 8 업무분장규정 제정(4.1 시행)	
	4. 1 조직개편	4. 1 국민주 1호 포철주 청약개시
	▶ 5부 1실 12과	4. 2 외무부,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발표
	기획실 신설, 지로기획과 → 지로추진과,	4. 전산망조정위,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확정
	전산개발과 → 전산과, 전산운영과 → 운영과	
	개칭	
	▶ 총무부, 어음교환부로 콜거래실 이관	
	4.20 CD공동이용업무 세부처리지침 제정	
	4.30 CD공동이용 1단계 실시	
	4.30 CD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 가동	
	5.10 감사 주형돈 취임, 상무이사 최영 취임	5.20 정부, 금융산업개편 기본방안 발표
	5.16 MICR 및 정액OCR 지로장표 계수집계 전산화	
	5.28 CD공동이용 2단계 실시	
	6.16 지방어음교환소규약 표준화(안) 제정	
	6. 30 CD공동이용시스템 명칭 CDNET으로 결정	
	7. 1 CD공동이용시스템 가동식	7. 1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전면자유화
	7.27 교환어음처리용 R/S 설치	7. 6 한은, 일반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 REI TRACE-1000 2Set	7. 6 은행감독원, 금융기관 이용자보호지침 마련 실시
	7. 타행환공동망시스템 구축 세부추진계획 확정	7.15 미들랜드 서울지점 폐쇄
		7.30 어빙트러스트 서울지점 개점
		7.30 콘티넨탈 서울지점 폐쇄
	8.31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제도 신설(10.1 시행)	8. 1 미들랜드 서울사무소 신설
	9. 8 교환어음처리용 기기 인수	9.17 서울올림픽 개막
	▶ IBM 9375-060 MAIN 시스템	
	9. ARS공동운용 단일전화번호 사용 확정	
	10. 6 당직근무수칙 및 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정	10. 5 국회, 16년만에 국정감사 재개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0. 7 통합공과금 세부종목 명칭, 수납마감일 등 변경 ▶ 오물수수료, 폐기물수집수수료로 개칭, 방범비 폐지 ▶ 수납마감일 월 3회(10,20,말일)로 변경 등	10.11 교화, 다이요코베 서울지점 개점 10.17 사이타마 서울지점 개점
	10.16 목포지부 사무실 이전 ▶ 목포시 명륜동 제일생명 2층	
	10.20 CD공동이용서비스 전국확대 실시	
	10.25 ARS공동운용 시스템 기본설계서 확정 및 금융전산망 통신프로토콜 표준화 의결	
	11. 1 지로장표 송달, 거래은행 수취제도 도입	11. 1 한국, IMF 8조국 가입
	11. 1 체신부, ARS공동운용시스템 특정통신회선 타인사용 승인	11.29 다이와은행 서울지점 개점
	11. 1 통합공과금, 수납이체업무 실시지역 확대	
	11. 주요업무연혁집 발간	
	12. 1 지로차액결제내역 통지 온라인 전송개시	12. 1 한은, 가계수표 장당발행한도 변경 ▶ 30만원 → 30만원, 100만원이하
	12.21 제재금, 과태금 적립방안 수립	12. 5 재무부 · 금통위, 금리자유화 시행
		12. 전산망조정위,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1989	1. 1 자동계좌이체업무 전국 확대	1. 1 해외여행 자유화
	1. 4 지로일계오류 과태금 신설	1.16 자기앞수표 정액 100만원권 신설
	1. 4 3개 차액결제내역 통지 온라인 전송개시 ▶ 어음교환, 자금조정, 콜거래차액	
	1.14 제3대 원장 이창수 취임	
	2. 1 어음교환업무용 전산시스템 교체 가동 ▶ IBM 9375, R/S(TRACE 1000)	2. 2 금통위, 금융기관 국내영업소 인가업무취급규정 마련(읍면지역 점포 설치가능)
	2. CD이용 수수료 징수 개시	
	2. 어음교환전산처리지침서 발간	
	2.13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지로업무 취급	
	3. 9 타행환용 시스템 인수 ▶ TANDEM VLX 303	3.20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돌파 3.23 재무부,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방안 및 추진계획 발표
	3.29 ARS공동업무시행세칙 제정	
	3. REJECT RE-ENTRY시스템 통합공과금업무에	3.28 금융업계 정화추진위원회 폐지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9	첫 적용	
	4. 1 전산전문 검사역제 도입	4.11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발족
	4.12 독신직원합숙소 관리운영요령 제정	4.20 금통위, 한계지급준비제 도입
	4.18 ARS공동업무규약 제정	
	4.18 독신직원합숙소 자치회규칙 제정	
	4.19 ARS공동업무 서울지역 실시	
	5. 1 직원합숙소 설치	5. 2 아랍은행 서울지점 개점
	▶ 강남구 삼성동 158-6	5.28 전교조 결성
	5. 3 간행물 발간규정 제정	
	5.15 평택지부 사무실 이전	
	▶ 평택시 평택동 34-3	
	6. 1 통합공과금 자동계좌이체 서울지역 실시	6. 1 내쇼날 카나다은행 서울지점 개점
	6. 1 홍성, 서울어음교환소와 상호교환	
	6. 2 상무이사 김홍배 취임	
	6. 2 모범어음교환원 포상 첫 실시	
	6. 3 어음교환 야간교환참가 요건완화	
	▶ 교환장수의 5% → 1%	
	6.16 비씨카드(주), 은행신용카드업무 인수요청	
	6.23 조직개편	
	▶ 5부 1실 2부속실 12과 비서실 신설, 전산과 → 전산개발과, 운영과 → 전산운영과로 개칭	
	6. 업무편람 발간(어음교환, 은행지로)	
	7. 1 김천지부 사무실 이전	7.27 한은,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설치
	▶ 김천시 평화동 245-7	
	7. 8 신한은행 야간교환 참가	
	7.18 전무이사 조경호 취임	
	8.28 SWIFT 이용자규약 제정	8. 1 무역어음제도 시행
	8.28 동화은행 사원가입 승인	8. 1 웰스파고 서울지점 폐쇄
	8.29 촉탁지부장 임용규정 제정	8. 1 하와이은행 서울지점 개점
	8. 서울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수납업무 지로제 실시	8. 한국은행 사무소, 당좌예금업무 취급 개시
	9. 1 선물환거래 개시	9. 5 동화은행 발족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89	9. 5 외환시장 정보 AP, Reuter단말기로 제공 개시	9.20 환율자율화 시행
	9.12 중기발전계획 수립(1989~1991)	
	9.25 국내금융기관, SWIFT가입신청서 제출	
	9.27 본부 사무실이전준비반 구성	
	9.28 정관 변경	
	9.29 콜거래중개업무방법서 제정	
	10. 4 재무부, 콜거래 중개업무 수익사업 허가	10. 4 재무부, 콜거래시장 통합방침 발표
	10. 4 콜자금결제통지서 자금조정 실시	10. 4 내쇼날 호주은행 서울지점 개점
	10. 4 진주, 부산·마산·진해·울산어음교환소와 상호교환	10. 6 어빙트러스트, 뉴욕은행으로 개칭
	10.14 조직개편	10.25 재무부, 외화콜시장 개설방안 발표
	▶ 5부 1실 3부속실 12과 외환거래실, 금융기관콜거래실 → 자금중개실로 확대개편	10.28 한국, GATT 수입제한조항 졸업
	10.24 타행환공동망업무 세부처리지침 제정	
	10.26 동남, 대동은행 사원가입 승인	
	11. 1 당원 명칭 금융결제원으로 변경	11. 1 비씨카드, 통신판매업무 개시
	11. 8 원화 콜거래 수익사업 개시	11. 1 동남은행 발족
	11.11 원화 콜거래 정보제공시스템 설치	11. 7 대동은행 발족
	▶ 전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단말기	11. 9 베를린장벽 전면개방
	11.28 수원지부 사무실 이전	11.15 정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008-17	
	11.30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제정	
	11.30 은행신용카드대금 수납업무 지로제 적용폐지	
	11.30 어음,수표 용지색채 전면변경(1990.1.3 시행)	
	12. 1 외화콜거래 중개업무 개시(미달러화)	12. 1 외화콜시장 개설
	12. 1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발족 및 동 위원회 규정 제정	12.23 금융단체협의회 창립
	12. 1 은행간 외환거래지침 제정	12.30 한국외환은행 민영화
	12. 1 체신부, 타행환 정보통신 타인사용 특례 인정	
	12.15 영주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2.16 타행환공동망 업무 개시	
	12.28 전세보증금지원요령 제정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0	1. 1 조직개편 ▶ 5부 2실 2부속실 14과 총무부 기획실 → 기획실로 개편 종합기획과, 경영관리과 신설	
	1. 1 모지부 6개 지정, 운영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강릉지부	
	1. 1 은행신용카드업무, 비씨카드(주)에 이관	
	1.17 전산자원이용효율화 제안제도 폐지	
	1.21 속초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2. 5 입력변환(D,K.)업무 전량 용역처리 개시	2. 8 한은, 한계지준제 폐지, 기본지준율 인상
	2.16 사원 기본분담금 분담율 조정	2.28 한계지준제 폐지 및 기본지준율 실시
	2.17 한국외환은행 야간교환 참가	
	2.28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2.28 외국환 매매기준율 산출규정 제정	
	3. 2 시장평균환율 산출, 고시	3. 2 시장평균환율(MAR)제도 실시
	3. 2 자금중개업무 전산화	3.15 경제기획원, 금융자본시장 개방일정 발표
	3. 5 비상시 업무처리대책 수립	
	3. 6 안산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340호로 지정	
	3.16 통근비지급기준 제정	
	3.28 일괄전송시스템 실시계획 확정 ▶ 은행 및 지로이용기관대상	
	3.29 COM 시스템(XC/AP) 인수(2호기)	
	3.29 지로업무용 기기 설치 완료 ▶ REI TRACE-1000 R/S 시스템(3호기)	
	3.31 정관 변경	
	4. 사무실 이전전담반 설치	
	4.16 어음종류별 통계 집계방법 변경(월간 → 일간)	
	4.19 ARS 현금서비스 개시	
	4.20 당원 심볼마크, 로고 상표등록(제11194,5호)	
	4.20 여수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4.28 충무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4.29 목포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5.10 감사 주형돈 중임	5. 9 재무부, 증권시장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0	5.11 특수인력(전산, 회계, 법률 등) 사용 명문화 5.14 외환거래분담금 경비분담기준 변경 5.15 기획실 및 도서실 이전(동남빌딩) 5.17 정관 변경 5.19 상무이사 권영달 퇴임 5.21 천안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5.22 시설경비협의회 구성 6. 1 부도업무 전산처리 개시 6. 지방세 수납처리 Reject Re-Entry 시스템 도입 6.30 의정부지부 사무실 이전 ▶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7. 장기신용은행 금융전산망 신규참가 7. 6 과장대우, 계장제 신설 7. 9 도서자료관리규정 제정 8. 1 논산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8. 2 국제특정통신회선 사용계약 및 특약, 데이콤 및 SWIFT측과 체결 8. 9 중동지역 4개통화 환율고시 중단 ▶ SAR, BHD, AED, KWD 8.10 안산지부 개설 ▶ 안산어음교환소 개업, 상호교환 실시 8.16 지로일계표, 수납점에서 인자 8.21 현송금영수증 자금조정 8.21 외국환평형기금 외환거래 참가 8.27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거래 참가 9.10 금융전산망관련 전산기기 인수 ▶ TANDEM VLX 302, MEMORY MODULE 등 9.21 경영합리화위원회, 본지부예산통합운영 검토보고 10. 5 자금중개업무 전산시스템 교체 ▶ TG 386 → MIPS RC-3240	6. 1 아멕스 부산지점 개점 6.23 전은행 가계용 은행거래기본약관 제정 7. 조흥은행 자행CD기 휴일가동 개시 8. 2 이라크, 쿠웨이트 점령 8.28 한은, 시장에 사모채 인수허용 10. 1 한·소 국교 수립 10. 3 동서독, 통일독일출범 선언 10.10 재무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1. 1 일반계좌이체 B장표 계좌불명분 처리 전산화 11. 1 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 수납업무 지로제 실시 11. 1 순천지부 사무실 이전 12. 1 일괄전송시스템 가동 ▶ CD공동업무 참가은행 대상 12. 1 자동납부신청서 서식 표준화 및 전산화 12. ARS HOST컴퓨터 교체 ▶ SSM-32/1000 → TANDEM(VLX) 12. 타행환시스템 DISC QUEUING 방식 도입 12.22 ARS공동업무 지방확대 12.24 제안사례집 발간 12.26 신 규정집 발간 12.27 CI메뉴얼 발간	11.27 재무부, 증권산업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촉진 방안 마련
1991	1. 서울시 재산세,자동차세 수납업무 지로이용 해지 1.15 해남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347호로 지정 1.22 조직개편 ▶ 5부 2실 2부속실 15과 급여후생과 신설 1.26 영동파출분소 폐쇄 1.27 명동파출분소 신설 2. 2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거래 참가 중단 2.19 정관 변경 3. 2 ARS, 카드상품안내 3. 4 외화콜거래 중개대상통화 추가(엔화) 3. 5 정관 변경 3.13 SWIFT이사회, 국내금융기관 회원가입 승인 3.13 충주지부 사무실 이전(충주시 성서동 205-41) 4. 1 SAR, BHD, AED통화 환율고시 재개 4.15 영동파출분소 이전 4.19 해남지부 개설 ▶ 해남어음교환소 개업 4.30 합숙소 이전(송파구 가락본동 3-8)	1.16 경제기획원, UR서비스협상 양허계획표 확정 3. 1 화교은행 서울지점 개점 3.16 재무부, 6개단자사의 은행 증권사로의 전환 내인가 4. 1 BC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실시 4. 1 사이타마 폐쇄 4. 1 교화, 사이타마 합병 교환사이타마로 개칭 4.20 재무부, 원화콜시장제도 개선방안 마련 4.22 씨티은행 24시간입출금업무 개시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1	4.30 재무부, 당원의 원화콜거래 중개허가 취소 4. 서울시 주차위반과태료 수납업무 지로이용 해지 5. 6 선물환거래 중개종목 확대(1종 → 13종) 5.10 상무이사 최영 중임 5.11 농협중앙회 야간교환 참가 6.24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6.24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제도 신설 7. 1 안동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7.11 총회, 하나은행 준사원 가입승인 7.11 기본재산의 운용지침 제정 8.20 총회, 보람은행 준사원 가입승인 9. 2 환율 1일 변동폭 확대 ▶ MAR ± 0.4 → MAR ± 0.6% 9. 2 청량리 파출분소 이전 9. 9 KWD 통화 환율고시 재개 10. 1 OCR 정상처리장표 발송 생략 10.15 대전, 논산어음교환소와 상호교환 10.19 마산지부 사무실 이전 ▶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62-2 10.31 2차 중기발전계획(1992~1994) 수립 11.16 본부 사무실 일부이전 ▶ 강남구 삼성동 → 강남구 역삼동 717 기획실, 총무부, 임원실, 도서실, 노동조합 이전 11.17 감사실 이전(역삼동) 11.18 사옥이전 기념식 개최 11.18 구내식당 설치 11.30 ARS FAX 통지업무 서울지역 실시 11.30 은행계 신용카드업무 지방확대	5. 1 원화콜시장 통합운영 개시 6. 7 재무부, 외화예금 1억달러로 확대 6.17 재무부, 단자사 기능조정방안 발표 (단자사 어음발행 폐지) 6. 주택은행, 정액자기앞수표 본점보관제도 시행 7.15 하나은행 발족 7.20 케미칼은행 폐쇄 7.23 미쓰비시 신탁 서울지점 개점 7.31 미, 케미컬은행과 매뉴팩처러스은행 합병 발표 8. 1 은행감독원, 비씨씨아이 인가취소 8.23 재무부,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마련 8.29 소련 공산당 종식 선언 9. 2 보람은행 발족 9. 3 케미칼은행 사무소 개소 9.21 알지메느, 에이비엔암로로 개칭 10. 1 미쓰이 폐쇄 10.16 일본장기신용은행 개점 10. 31 로이즈은행 폐쇄 11. 4 한국은행 강남지점 개점 11.21 재무부,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 시행 11.30 정부, 주식시장 개방일정 발표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2.13 당원 본지부 경비분담기준 일원화 및 분담금의 은행본부 일괄분담방안 제정(1992.1.1 시행) 12.13 어음교환통계자료집(1960~1990) 발간 12.16 인천어음교환소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2.26 지로업무용 기기 설치 ▶ UNISYS 2200/424 MAIN 시스템 12.30 ARS PC서비스 서울지역 실시 12.30 ARS FAX 통지업무 지방확대	12.23 주가지수 600선 붕괴 12.31 엔엠비포스트, 네덜란드국제로 개칭
1992	1. 1 지로번호 부여관리 전산화 1.14 제4대 원장 박찬문 취임 1.20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신고업무 24시간 실시 1.20 동일은행, 동일인 및 타인명의의 계좌이체 실시 1.23 어음교환부 사무실 및 어음교환용 MAIN시스템 이전 1.24 정관 변경 1.24 상임고문에 전임원장 이창수 선임 1.26 영동파출분소 본부건물로 이전 2.29 타행환시스템 이전 3. 2 SWIFT 시스템 가동 3. 수표수납점보관제도 도입전담반 구성(~8월) 3.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연혁집 발간 4.24 구미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5. 2 명동파출분소 및 내국신용장실 명동YWCA로 이전 5.10 감사 최형, 상무이사 백남정 취임 5.15 서울지방노동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인가 5.23 동화은행 야간교환 참가 5.23 금융전산망(ARE, LAN, PABX) 시스템 이전 5.25 어음교환관련 통계 및 정보관리지침 제정 시행 5.26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거래 참가 재개	1. 3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허용 2. 법인인감 등기제도 변경 ▶ 대표이사 인감만 등기 2.24 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징수 3.20 개인정보보호법,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 3.27 금융시장 개방 1단계 계획 확정 4. 1 타이요코베 미쓰이 서울, 사쿠라로 개칭 4.23 세팍, 아메리카은행 을지로지점으로 개칭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2	5.30 금융전산추진부 사무실 및 CD·ARS시스템 이전, ARC, CD, NMS시스템 이전 6. 1 A장표 이용수수료 부과방법 변경 ▶ 의뢰인 → 이용업체, 선납 → 후납 6. 1 부산시 재산세 수납업무 지로이용 해지 6. 2 상무이사 조성묵 취임 6. 6 지로 R/S 3호기 이전 6.13 한미은행 야간교환 참가 6.22 외환시장정보 Infomax에 제공 개시 6.24 국내학술연수규정 제정 6.25 안양지부, 홍성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6.27 정관 변경 ▶ 외국은행 사원가입기준 완화 ▶ 사업별 특별참가제도 신설 6.27 전산부 COM 1호기 이전(역삼동) 6.27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개정 6. 부산시, 재산세 지로해지 7. 1 정액자기앞수표 상호교환대상에서 제외 7. 2 환율 1일 변동폭 확대 ▶ MAR ± 0.6 → MAR ± 0.8% 7. 5 지로업무부 사무실 이전(역삼동) 7. 6 전산부 사무실 이전(역삼동) 7. 8 은행지로용 MAIN시스템 이전(역삼동) 7.10 COM 시스템 이전(역삼동) 7.20 전무이사 오경희, 상무이사 김보경 취임 7.25 의정부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8. 1 조직개편 ▶ 6부 2실 2부속실 22과 - 조사홍보과, 관재과, 안전관리과, 지로3과 신설 - 금융전산추진부 · 전산부 → 금융망업무부 · 전산개발부 · 전산운영부로, 교환처리1-2과 ·	6.12 재무부,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방안 발표 6.19 메뉴팩처러스 하노버 트러스트 컴퍼니, 케미칼로 개칭 6.29 재무부, 2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확정

<table>
<tr><th>연 도</th><th>금 융 결 제 원</th><th>일 반 동 향</th></tr>
<tr><td>1992</td><td>교환관리과 일부 → 교환처리과로 개편
- 총무과 → 서무과, 계리과 → 경리과로 개칭
8.14 해외여행직원의 휴가처리요령 제정
8.20 사보, 「금융결제원 소식」 창간호 발간
9. 1 외화콜거래 중개대상통화 추가(독일 마르크화)
10. 1 안산지부 사무실 현 위치로 이전
▶ 안산시 고잔동 520-1
10.15 상호교환실시지침 제정 시행
10.15 지로업무용 R/S 시스템 설치
▶ REI TRACE-1000 (4호기)
10.17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 제정
10.20 의료비 보조금지급기준 제정
10.23 총회, 평화은행 준사원 가입 승인
10.31 평택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1. 2 상호교환어음 기계처리 실시
11. 2 외환매매용 전화자동녹음시스템 설치
11. 8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신고업무, 서울지역 휴일서비스 실시
12.30 정관 변경
12.30 자율경영체제 확립
▶ 이사회 · 위원회 위원 및 의장선출 변경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종 전</th><th>변 경</th></tr><tr><td rowspan="2">이사회</td><td>이사</td><td>사원 대표자 전원 및 원장</td><td>원장 및 총회선임이사 8인</td></tr><tr><td>의장</td><td>이사회 선출</td><td>원장(당연직)</td></tr><tr><td rowspan="2">위원회</td><td>위원</td><td>사원 및 당원 관련부서장</td><td>당원관련부서장 및
이사회 선임위원 8인</td></tr><tr><td>의장</td><td>한국은행 관련부서장(당연직)</td><td>각위원회 선임</td></tr></table>
12.30 외환거래분담금 경비분담기준 개정</td><td>11. 2 평화은행 발족
12. 대통령, 금융전산망과 체신금융 온라인망 연결 공약</td></tr>
<tr><td>1993</td><td>1. 3 미결제어음통보시각등 부도연장제도, 어음교환소별로 실시
1. 4 부도정보, 일괄전송 통지
1.15 이사회, CITI은행 은행지로사업 특별참가 승인</td><td></td></tr>
</table>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3	1.25 금융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 접속	
	1.27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 도입실무 작업반 설치	
	2. 5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2. 1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 폐지(7월 시행)
	2. 6 순천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2.15 금융전산망, 경찰전산망 상호접속	
	2.15 은행계좌 부정사용범의 현장검거체제 구축 실시	
	2.22 청주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2.24 국세 자동계좌이체 실시	
	3.13 전주, 성남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4. 1 조직개편	4. 1 외환집중제도 완화조치
	▶ 6부 2실 3부속실 21과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실로 개편	
	4. 9 상무이사 김문식 취임	
	4.10 SBS「장애인을 가족처럼」캠페인 협찬(~6.30)	
	4.12 CITI은행 지로업무 취급개시	
	4.15 대한통계협회 회원 가입	
	4.17 전산시스템 운영지침서 발간	
	4.22 교양그룹, 사진회 신설	
	4.24 상무이사 김보경 별세	
	4.24 ARS PC서비스 및 자기앞수표 서비스 실시	
	4. I.J.P. 이용 OCR장표 발행 시범실시(4개 업체)	
	4.29 수원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4.30 기술역, 기원직제 신설	
	5. 1 여자사원제 폐지, 전원 사원으로 전환	
	5. 1 여자사원의 중견사원 전환요령 폐지	
	5. 4 MBC 캠페인 "어린이에게 새생명을"에 성금기탁	
	5.10 ARS,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 신고	
	24시간 연중무휴 실시	
	5.27 총회, 4개지부 사옥매입 승인	
	▶ 대구, 부산, 광주, 대전	
	5.28 포항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5. 원가 제정	
	6.10 영문정관 발간	6.17 행정쇄신위원회, 금융전산망과 우체국전산망의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3	6.19 직원합숙소 추가 설치(송파구 가락동) 7. 1 재무부, 당원을 보안산하기관으로 지정 7. 1 부도제재기준 완화 7. 1 현금서비스 1회 인출한도 변경(50 → 70만원) 7. 3 동해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7. 9 보안규정 제정 7.12 지로입금 수취인 계좌번호 기준으로 처리 개선 7.16 타행환 1회 송금한도 확대(1,000 → 3,000만원) 7.19 전산기기 도입업무지침 제정 7.21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 도입추진 일정 수정 7.24 조사홍보과, 도서실 아시아시멘트빌딩으로 이전 7.26 체신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실시 7. 상설연성장제도 도입 8. 2 태백지부, 사택임차 8. 3 4개 매입지부, 소유권 이전등기 8. 4 조직개편 ▶ 7부 2실 3부속실 21과 총무부 인사과, 급여후생과, 비서실 → 인사부로 개편 8. 6 직무분석 실시(~11.30) 8.20 부도신고 및 부도통지 취소제도 신설 9. 1 BC카드, 타행CD로 현금서비스 실시 9. 6 지로자료 수록매체 C/T 추가 9. 7 책임자자격고시 외국어, 연2회 시행제 도입 9.22 금융전산망, 점외CD전산망과 상호접속계약 체결 9.27 울산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0. 2 한국은행 본·지점, 출장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지방에 있어서의 자금결제방법 변경 10. 5 환율 1일 변동폭 확대 ▶ MAR ± 0.8 → MAR ± 1.0% 10. 6 금융전산망, 점외CD전산망과 접속 가동 10. 8 남원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0.22 외환거래용 직통전화 설치 가동	상호연결 추진방안 확정 8.12 정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10.11 내쇼날 웨스트민스트 서울지점 개점 10.25 케이와이씨 부도 10.26 정부, 2단계 금리자유화계획 발표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1.26 광주지부 신축부지 매입계약 체결 11.27 보증가계수표, 어음교환대상 추가 11.30 부산권역 지로업무용 기기 인수 ▶ Main : WANG-VS16110 2대 ▶ R/S : TRACE 600 2대 · 4000 1대, 12. 6 지로입금지시 일괄전송으로 일원화 12.17 금융기관 공동코드 온라인 전송처리업무 세부 처리지침 제정 12.22 무역자동화망 접속업무규약 제정 12.29 금융전산망 네트워크 정비용 시스템 인수 ▶ IDNX 70, IDNX 20등 12.29 ARS시스템용 기기 인수 ▶ DIREX-8128 3대	11. 8 정부, 국제화 추진대책 발표 11.27 보증가계수표 4종 신설 ▶ 10, 50, 100, 200만원권 12 UR협상 타결 12. 신용카드업법 개정(직불카드 관련)
1994	1. 1 통합공과금 미수요금 우선납부제 폐지 1. 4 사무자동화 표준 제정 1.25 금융전산망, 종합무역자동화망과 상호접속 가동 2. 1 은행간 E-MAIL시스템 가동 2. 4 금융기관 공동코드 온라인 전송 실시 2. 5 타행 CD를 이용한 동행내 계좌이체 실시 2. 5 CD공동망을 이용한 은행간 계좌이체 실시 2.16 이사회 CITI은행 어음교환사업 특별참가 승인 2.17 조직개편 ▶ 7부 2실 3부속실 19과 3담당 전산개발부 과 제도 폐지 2.24 가트너그룹 회원 가입 3.21 「KOREA FOREX」클럽 회원 가입 4. 1 지로업무 부산권역 분산처리 실시 ▶ 부산지부에 처리센타 설치 부산, 울산, 진주, 삼천포, 김해, 충무지부 ▶ 일반계좌이체, 통합공과금, 지방세업무처리 4. 1 촉탁 지부장 임용제 폐지 4. 4 부산권역 분산처리센타 가동	2. 3 재무부, 외환제도개혁 추진계획 발표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4	4. 8 MBC TV 협찬광고(~4.28) 4.10 명동파출분소 및 내국신용장 사무실 이전 (한일빌딩 별관 2층) 4.11 환율고시대상통화 추가 ▶ CNY, THB, IDR, ECU(25개 → 29개) 4.11 EFT/POS 전담반 설치 4.26 카드키 관리기준 및 팩시밀리운용기준 제정 4.27 CITI은행 타행환사업 특별참가 승인 4.29 재무부, 직불카드 시행안 확정 4.30 촉탁지부장임용규정 폐지 4.30 납부자 자동계좌이체업무 지로제 실시 5. 2 지로 및 은행공동망 이용 수수료 자율화 5.10 감사 백남정, 상무이사 김종태 취임 5.11 사무자동화 추진전담반 구성 5.14 일괄전송 전용시스템 구축계획 확정 5.26 해외여행직원의 휴가처리요령 폐지 5.28 전산개발부 사무실 이전(화원빌딩) 6. 2 정관 변경 6. 2 4개 어음교환소 법무부령 제384호로 지정 및 변경 ▶ 김해·이천 신설, 마산을 창원어음교환소로개칭 6.11 마산지부, 창원시로 이전 6.11 타행환 송금한도 확대(3,000 → 5,000만원) 6.30 CD공동이용시스템 S/W(BASE24-ATM) 인수 7. 4 이천지부 개설 7. 6 이천어음교환소 개업 및 상호교환 실시 7.11 김해지부 개설 ▶ 김해어음교환소 개업 및 상호교환 실시 7.21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관리기준 제정 7.29 직불카드공동망 참여은행협의회, 당원을 직불카드 VAN사업자로 선정 7. 참가은행 및 지로이용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8.13 CITI은행 타행환업무 실시 8.22 을지연습 94 실시(~8.25)	5.23 한국은행 저축부, 금융결제부로 개편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및 그 시행에 관한 규정 제정 7. 1 3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7. 1 금전위, 우체국을 금융전산망 이용기관으로 지정 8. 3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5.1.1 시행)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4	9. 1 부도어음, 역교환 반환제도 실시 9. 9 참가기관 공동테스트 지침 제정 9.10 지로장표 수취시간 분산 실시 10. 1 김천, 4개 교환소와 상호어음교환 실시 ▶ 대구, 구미, 포항, 경주어음교환소 10. 4 우체국,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참가 10. 7 금전위, 판매대금자동결제망(EFT/POS) 구축 위탁 10.10 가계수표, ARS사고조회 및 신고업무 실시 10 14 직원임차주택 대여업무취급요령 폐지 10.15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조문별 연혁집 발간 10.17 대용사택취급요령 제정 11. 1 외화콜거래 중개대상통화 추가(영국 파운드화) 11. 1 환율 1일변동폭 확대 ▶ MAR±1.0 → MAR±1.5% 11. 2 금융결제원 사원 특별참가금 산출기준 개정 11. 3 금융전산망 참가기관간 전용전화망 구축 11.10 EFT/POS추진계획 확정 11.20 전기요금장표 OCR화 ▶ 통합공과금 실시지역의 일반전력분 대상 전기요금과 TV수신료 합산고시 11.28 어음교환차액결제자료 작성 전산화 12. 1 자동납부신청서 접수, 수납기관에 허용 12. 5 가계수표 한도초과 부도제재 강화 12. 5 타지자기앞수표 교환결제제도 개선 12. 5 자기앞수표 조정자금 납입 및 시한 변경 12.12 지로이용안내 ARS 실시 12.12 자기앞수표 타행환 송금 실시 12.17 EFT/POS 전담반 이전(아세아타워 빌딩) 12.22 재무부, 부가통신사업 수익사업 승인 12.26 통합공과금 수납업무 폐지 12.27 정관 변경 12.27 이사회,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 지로 및 금융전산망 사업 특별참가 승인	9. 국민은행 민영화 12.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가동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5	1. 1 정주, 충무지부 및 어음교환소 명칭변경 ▶ 정주 → 정읍, 충무 → 통영 1.14 제5대 원장 신복영 취임 1.14 상임고문에 전 원장 박찬문 위촉 1.21 서울중앙우체국 야간교환 참가 1.25 무역망시스템 가동 1.26 부서장 추천제안제도 도입 2. 8 조직개편 ▶ 7부 3실 3부속실 19과 3담당 부가통신사업실 신설 2.10 어음교환관련 통계 및 정보관리지침 개정 2.17 원주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2.20 일괄전송 및 EFT/POS 전용시스템 가동 2.27 IPS 도입전담반 설치 3. 2 채권자 계좌이체업무 폐지 3. 2 외환매매거래 당일결재 현물환(Value today) 거래시간 단축 ▶ 15:00 → 12:00 3.24 BANK POS 단말기 명칭 및 로고타입 결정 4. 1 대량지급의뢰 명세 제출기일 단축(4 → 3영업일전) ▶ 광주, 대전광역시 4. 1 가계수표 한도초과발행 부도 제재 강화 4. 1 95 MBC TV 캠페인 「세계로 50년, 미래로 50년」 협찬 광고(~6.31) 4. 1 부가통신사업, 수익사업 개시 4. 1 「열린제언」 제도 도입 4.20 해남·목포어음교환소와 상호교환 실시 4.25 신원보증규정 전면개정 4.26 한국산업은행, CD공동업무 실시 5. 1 이리, 삼천포어음교환소 명칭변경 ▶ 이리 → 익산, 삼천포 → 사천 5. 4 금전위, 금융기관 IC카드 표준 제정 5.11 제3차 중기발전계획(1995~1997) 수립	1. 1 WTO 공식 출범 3. 1 유선방송 개국 4.28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5.31 교육개혁 발표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5	5.26 해외여행직원의 휴가처리요령 폐지	
	5.30 경기 17개시 지방세 수납업무 지로이용 해지	
	6. 1 지로업무 전국 73개시 98개군에 확대 실시	6. 1 서울신탁은행, 서울은행으로 개칭
	▶ 옹진군, 울릉군, 신안군(지도읍 제외), 북제주군, 추자면, 우도면 제외	6.27 4대 지방선거 실시
	6. 1 우체국, 농수축협 회원조합 지로업무 취급	6.29 삼풍백화점 붕괴
	6. 1 어음교환통계관리 개선	
	▶ 지역별 통계관리 모지부제 신설 등	
	6. 2 상무이사 양학규 취임	
	6. 8 「금융결제원 1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	
	6. 9 파트타이머사용관리요령 제정	
	6.10 평화은행, 야간교환 참가	
	6.12 VAN사업 HELP DESK 설치	
	6.15 서울어음교환소규약 해설집 발간	
	6.16 토요일 전일근무 및 격주휴무제 도입	
	6.17 ARS공동망 수표조회업무 24시간 실시	
	6.21 지로업무 IPS 구축 기본계획 수립	
	6.24 우체국, 농수축협 회원조합 금융전산망 참가	
	6.24 무역자동화망(KTNET) 운영시간 연장	
	▶ 16:00 → 19:30	
	6.25 점외 CD/ATM 운영시간 연장	
	▶ 09:30~17:00 → 08:00~22:00	
	6.27 진해지부 사무실 이전	
	▶ 진해시 송학동 33-1	
	6.28 은행지로 관련자료 온라인 송수신업무 추진방안 확정	
	6.30 김천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7. 1 무역자동화망, DACOM과 추가 접속	7. 1 지방자치제 실시
	7. 1 가계수표 부도통지, 전 참가점포로 확대	7. 부동산실명제 실시
	7. 1 직원복지연금 지원개시	
	7.13 「리뷰 전산정보」 창간호 발간	
	7.15 수협중앙회 야간교환 참가	
	7.18 상임고문에 전 전무이사 오경희 위촉	

연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5	7.20 전무이사 문학모 취임	
	8.21 인사관리 설문조사 실시(~8.26)	8.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8.22 95 을지연습 실시(~8.23)	8.15 광복50주년, 조선총독부건물 철거
	8.26 CD공동이용시스템 교체 가동	
	▶ TXP → HIMALAYA	
	9. 1 부산권역 지로처리센타 조회검색업무 실시	9. 5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9. 1 대량지급 이용 예금에 개인연금신탁 추가	9. 어음수표법 개정
	9. 지로업무용 R/S 추가 설치	▶ 서명에 의한 어음발행 추가
	▶ TRACE 2000 1대	
	9.18 조직개편	
	▶ 7부 2실 3부속실 18과 1실 1팀	
	경영전략팀 신설	
	9.19 지방어음교환소 설치절차 개정	
	9.19 ARS 수표조회 24시간 운영개시	
	9.20 지방어음교환소 설치절차 개정	
	9.23 CD공동이용시스템 평일 운영시간 연장	
	▶ 09:30~17:00 → 08:00~22:00	
	9.23 창립 제9주년기념 등반대회	
	9.26 전산기기 관리시스템 개발완료	
	9.29 이천지부 사무실 현위치로 이전	
	10. 2 SWAP거래(원/달러) 중개 실시	10.19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폭로
	10. 9 금전위, 자금관리시스템(CMS) 공동이용시스템	10.28 수출 1000억불 돌파
	구축 위탁	
	10.12 상무이사 김종태 사임	
	10.16 관세 국고수납업무 실시	
	10.17 상무이사 조이남 취임	
	10.17 금전위로부터 민원 EDI시스템 개발 수탁	
	10.30 여자 청원경찰 1명 배치	
	10. 카드 VAN협의회 가입	
	11. 3 국세청, 조세신고 및 납부전산화 전담사업자로	11. 8 한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당원 선정	11.16 노태우 전대통령 구속
	11. 4 어음교환 전산처리시스템 변경	11.21 재경원,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 IBM → UNISYS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1. 4 토요일 근무복장 자율화 11. 7 지로통계자료집(1977~1994) 발간 11.16 4개 어음교환소 개폐, 법무부령 제416호로 공포 ▶ 양산·서산 신설, 진해·사천 폐쇄 11.17 정관 변경 11.24 진해,사천지부 창원 및 진주지부에 각각 흡수통합 12. 1 지로번호 및 특수장표 신청서류 간소화 12. 1 환율 1일변동폭 확대 ▶ MAR±1.5% → MAR±2.25% 12. 1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관리기준 개정 12.12 종합근무평정요령 전면개정 ▶ 상향식 평가제도 등 도입 12.13 「원-달러화」 선물환 평가환율 산출방안 제정 (1996.1.31 시행) 12.15 노동조합 가요제 개최 12.15 CBS-FM(기독교방송) 「신용사회 만들기」 공익 캠페인 협찬(~1996.6.14) 12.18 서산, 양산지부 개설 ▶ 서산, 양산어음교환소 개업 12.19 재정경제원, 금융기관의 데이타 보안장비(HSM) 사용 승인 12.19 재해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규약 제정 12.22 지로자료 온라인 송수신(지로EDI서비스) 본격실시 12.23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 타행환 실시	12. 3 전두환 전대통령 구속 12. 6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2.19 5·18 특별법 제정 12.29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정
1996	1.27 일괄전송 24시간 운영개시 1.23 조직개편 ▶ 9부 1실 3부속실 18과 1팀 기획실 → 기획부, 부가통신사업실 → VAN사업부로 개칭 2.13 조직개편 ▶ 9부 1실 3부속실 18과 2팀 조세전산팀 신설	2.12 중소기업청 신설

연 도	금 융 결 제 원	일 반 동 향
1996	3.28 보람은행 야간교환 참가승인	3.15 「재정경제원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556호) 제정 시행
	4. 1 우체국 비장표업무 일괄전송 실시	4.11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실시

편찬후기

당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금융결제원 1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결제원 10년사」는 1986년 6월 금융결제원 발족이후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온 당원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당원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 편찬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10년사」는 단순히 당원 한 기관의 성장·발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의 금융결제원이 만들어지기까지 땀과 정성을 쏟은 전신기관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발전사이기도 합니다.

편찬작업 초기의 의욕적인 계획과는 달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자료의 부실과 경험부족 등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 연사를 발간하고 보니 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보다는 내용상의 미흡함과 오류가 없는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지급결제전담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 곳에 정리하였다는 데 무한한 자긍심도 느낍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이후 당원의 20년사, 30년사의 기초가 되어 점차 보완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의 이 노력들이 내일의 발전을 위한 반성과 의욕의 출발점이 되어 관련업무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21세기 선진 지급결제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서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연사 편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필위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 그리고 편집실무를 담당한 직원 여러분의 열과 성에 감사를 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편집출판에 임해주신 장스콤 박상순 사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 6. 2

편찬위원장 전무이사 문 학 모

편찬조직

편찬위원회	위	원	장	전무이사	문학모
	위		원	기획부장	이한형
				총무부장	이창신
				인사부장	변창안
				어음교환부장	박국노
				자금중개실장	배정호
				지로업무부장	김영택
				금융망업무부장	박원익
				VAN사업부장	조갑장
				전산개발부장	김홍휴
				전산운영부장	배희철
				감사실장	박찬용
	간		사	종합기획과장	강대기

집필위원	기	획	부	과 장	강대기	인사부	대 리 임재욱
				과 장	조동묵	어음교환부	과 장 이영철
				과 장	배정현		대 리 김은규
				과장대우	정도일	지로업무부	과 장 박윤배
				대 리	최 영	금융망업무부	과 장 임상빈
				대 리	박연상	VAN사업부	차 장 곽홍희
	총	무	부	과 장	이창주		과 장 노충호
				과장대우	우재진	전산개발부	과 장 한창현
				대 리	김연광	전산운영부	과장대우 박춘래
	비	서	실	실 장	김형석	감 사 실	검사역 박성희
	인	사	부	과 장	강창희	정읍지부	지부장 서석주
				과 장	송창수	서산지부	지부장 이기춘

편찬실무진	기	획	부	대	리	정주봉
				계	장	윤호열
				사	원	노희섭

금융결제원10년사

1996년 5월 15일 인쇄
1996년 6월 2일 발행

발행인 원 장 신 복 영
편집인 전무이사 문 학 모
발 행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편 집 장 스 콤(525-6268/9)
인 쇄 주식회사 두산동아

〈비매품〉